2018

# 법무 연감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 받는 사회

2019

## 국 가 비 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 국 정 목 표

- 국민이 주인인 정부
- 더불어 잘사는 경제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 법무행정비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법무부 기(旗)




법무부장관 박상기



법무부 전경



법무부 간부 일동

#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2018년 한 해 동안 법무행정의 주요 활동과 그 성과를 담은 서른 한 번째 법무연감을 발간합니다.

지난 한 해 법무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은 사회를 위해 법무행정의 각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와 결실을 이루어 냈습니다.

먼저, 법무부 탈검찰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조정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과 직권 재심청구를 통해 과거의 잘못된 사건처리를 바로잡고 최초로 검사 인사기준을 법제화하였습니다.

적폐사건과 중대 부패범죄 및 불법영상물·음주운전·가정폭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상법 및 집단소송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차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기업과 인권' 등 새로운 과제를 신설하고 인권보호 수사준칙을 개정하여 형사절차상 인권보호를 강화하였으며,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출국금지 심사를 엄격히 하기 위해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등 인권친화적 출입국·외국인 정책을 적극 시행하였고,

교정시설도 심각한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시설 내에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을 설치하여 가족과의 단절을 방지하는 등 합리적 처우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MINISTRY OF JUSTICE

교육부·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소년비행예방협의회」를 구축하고 소년원 시설을 개선하여 과밀수용을 해소하였으며, 소년원생들의 체험형 교육을 확대하고 전자장치를 개선하여 전자감독대상자의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범죄예방과 척결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올해는 연감의 형식과 서술에도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즉 직전 연도의 핵심내용 위주로 작성하였으며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편집방식도 새롭게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발간시기를 종전 10월에서 5월로 크게 단축하여 이른 시기에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연감이 법무·검찰 직원들에게 지난해의 정책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참고가 되기를 바라며, 학계와 법조계,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무정책을 이해하는데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희망합니다.

올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고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민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며 국민이 원하는 법무·검찰 개혁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법무·검찰 행정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5월
법무부장관 박상기

# 2018 법무행정일지

## 1월

1. 2.
- 법무부 시무식
-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본격 시행

1.11.
- 법무부 법조기자단 간담회

1.12.
- 차치지청장 간담회

1.15.
- 장관, 제47기 사법연수원생 수료식 참석

1.16.
- 안양소년원 재능나눔 프로젝트 발대식
- 2017년도 SNS홍보 우수기관 및 공무원 포상식

1.18.
- 대한변호사협회장 예방

1.19.
- 장관,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참석

1.22.
- 대한법무사협회장 예방
- 전국 교정시설 설맞이 교화행사 시행(1.22.~2.23.)

1.24.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신청사 준공식

1.25.
- 2018년 정부 업무보고
- 장관, KBS 뉴스라인 방송 출연

1.26.
- 장관, 평창올림픽대회 지원 위원회 참석
- 장관, 서울소년원·안양소년원 의료시스템 점검 정책현장 방문
- 법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우수법률 홈닥터' 장관표창
- 상가임대차 환산보증금을 상향하고 차임·보증금의 인상률 상한을 인하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공포·시행

1.29.
- 법무부 자체 홍보영상 촬영
-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 전국확대 시행

1.31.
-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 장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등 정책현장 방문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검찰 내 성폭력' 관련 권고안 발표

## 2월

- 2. 2.
  - 부치지청장 1차 간담회
- 2. 5.
  - 탈검찰화, 평검사 직위까지 외부전문가 임용 (법무실 8개, 인권국 1개)
- 2. 6.
  - '검찰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설치
  - 범죄피해자지원 스마일공익신탁 여섯 번째 나눔 실시, 범죄피해자와 유가족 등 6명에게 3,500만원 지원
- 2. 7.
  - 『법무부-대한의사협회』, 소년원 의료재능나눔 업무협약
  - 차관, 독일대통령 평창올림픽 관련 방한 환영행사 참석
  - 『법무부-금융위원회』, 최고금리 인하 및 안전망 대출 출시안내
- 2. 8.
  - 제4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 및 시상식 개최
  - 제1회 국가배상 본부배상심의회
- 2. 9.
  -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 개최
- 2.11.
  - 신임검사 임관식
- 2.12.
  - 장관, 서울서부지검 정책현장 방문
  - 차관, 설맞이 전통시장(박달시장) 및 사회복지시설 방문(안양의 집)
  -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사회 이해' 교육 동영상 온라인 배포
- 2.13.
  -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식
  - 장관, 설맞이 전통시장(산본시장) 및 사회복지시설 방문(평화의 집)
- 2.14.
  - 차관,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참석
- 2.19.
  - 성희롱 예방 직장 교육 실시
- 2.22.
  - 관계부처 합동,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 발표
- 2.23.
  -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활동계획 발표
- 2.26.
  - 2018년도 제1차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개최
  - 장관, 재난관리평가 인터뷰
  - 장관, 평창 동계패럴림픽 선수단 격려방문
- 2.28.
  - 명예교도관 위촉식('슬기로운 감빵생활' 출연배우)

## 3월

**3. 1.**
- 장관, 3·1절 기념식 참석
- 손안의 인공지능(AI) 법률비서 2세대 『버비』 서비스 시작
-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시행
- 국제결혼안내 프로그램에 인권교육 추가

**3. 2.**
- 장관 청와대 페이스북 생방송 출연,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엄중처벌 방침 및 적극적 신고 당부 등 국민청원 답변

**3. 9.**
- '제11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 수기·사진 공모전 개최(3.9.~3.30.)

**3.12.**
-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법무부 장관에게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권고
- 외국인 무역비자제도 개선시행

**3.13.**
- 조 이건 영국 사무변호사협회장 및 주한 영국대사 예방

**3.14.**
- 사법정책연구원장 예방
- 법무부 정책위원회 개최

**3.16.**
- 부치지청장 2차 간담회

**3.21.**
- 『법무부-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 이민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 이주여성 성폭력 종합 대책 발표
- 장관, 서울보호관찰소 정책현장 방문

**3.22.**
- 장관, 범죄피해자 가정 및 서울 서부스마일센터 정책현장 방문
-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대폭 확대
- 재향 교정동우회 임원진 예방

**3.23.**
- 국적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콜센터) 10주년 축하 기념식
- 『법무부-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협의회 개최

**3.29.**
- 우리 기업의 역외 지식재산권 보호 및 투자 보호를 위한 『법무부-WIPO (세계지식재산기구)』 업무협약 체결(장관, 스위스 제네바 방문)
- 차관, 한국이민재단 및 서울·서울남부출입국 관리사무소 정책현장 방문

## 4월

- 4. 2.
  - 신임검사 임관식
  - 차관, 한국가족법학회 공동 학술대회 참석
  - 범죄예방정책국장 및 과장 3개 직위에 비(非) 검사 임용
  - 손주 돌보는 결혼 이민자 부모 국내 체류요건 완화
  - 외국인 숙련 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선발기준 개선
- 4. 9.
  - 독립유공자 후손 배우자 7명 국적증서 수여식
- 4.10.
  -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천사공익기금 전달
- 4.11.
  - 장관, 대전교도소 및 대전 고·지검 정책현장 방문
- 4.18.
  - 국가인권위원회의 '외국인 보호시설 개선 권고' 관련 적극 수용 및 개선방안 검토 추진
- 4.19.
  - 국가인권정책실무협의회 개최
- 4.20.
  - 장관, 서울중재센터 개소식 및 국제중재센터 출범식 참석
  - 제13차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개최,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1,599명) 결정
- 4.23.
  - 제1~7회 변호사시험 법학전문대학원별 합격률 공개
- 4.25.
  -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 제55회 법의 날 기념식 거행
  - 미국 한인변호사협회장 및 LA시 법원판사 예방
- 4.26.
  -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 4.30.
  - 신임검사 임관식

# 2018 법무행정일지

## 5월

**5. 1.**
- 로봇공학, 산업안전관리, 전자상거래 분야 특정활동(E-7) 비자 직종 신설·시행

**5. 2.**
- 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예방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성평등 증진을 위한 권고 발표

**5. 3.**
- 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면담

**5. 4.**
-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성희롱 등 고충처리시스템(안전한 피해신고 및 보호 등) 개선 권고

**5. 9.**
- 장관, 의정부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5.10.**
- 장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현판식 참석
-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외국인청〉·〈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으로 명칭 변경
- 장관, 법학전문대학원 10주년 기념행사 참석
- 제2회 국가배상 본부배상심의회

**5.11.**
- 2018년 교정대상 시상식
- 윌리엄 레이시 스윙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총장 예방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신용도 변호사) 임명장 수여식

**5.14.**
- 장관, 경력검사 리더십과정 간담회 참석

**5.15.**
- 장관, 한겨레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참석
- 호주 빅토리아주 법무부장관 예방

**5.16.**
- 전국 지진대피훈련 실제 훈련 실시
- 차관, 레일라니 파르하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 면담
- 차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참관
- 검사인사제도 개선방안 발표

**5.17.**
- 총리 주재, 제7회 지방선거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개최

**5.18.**
- 장관, 제38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운용 심의회 개최
- 제11회 세계인의 날 행사 개최

**5.23.**
- 여성가족부장관 예방
- 장관, 천고법치문화상 시상식 참석

5.24.
- 장관, KTV 인터뷰(성폭력 근절대책 등)
- 사회적 참사 특조위원장 예방
- 행정안전부 차관, 서울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방문
- 어려운 교도소 행정용어, 국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

5.28.
- 장관, 공주치료감호소 정책현장 방문
- 검찰과거사위원회, '장자연 리스트 사건' 중 강제추행 부분 재수사 권고

5.30.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 1주년 기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현장간담회
- 장관, 몰카·데이트폭력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 지시
- 전자어음 만기 단축 시행(발행일로부터 6개월 초과금지, 향후 매년 1개월씩 단축, '21.5.30.부터는 3개월로 단축)

5.31.
-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명선거와 투표 참여를 당부하는 대국민 담화문 발표
- 전국 출입국 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회의 개최

## 6월

6. 1.
- 장관,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방문
- 베라 요로바 EU 사법소비자 양성평등 총국 집행위원 예방

6. 4.
- 장관, 경희대·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방문
- 현장맞춤형 사회통합정책을 위한 전국 이민자네트워크 대표초청 간담회 개최
- 신안·완도 도서지역에 폭력예방 진로체험 법교육 실시(6.4.~7.17.)

6. 5.
- 故맥그린치 신부, 명예국민증 헌정(사후 헌정으로는 최초)
-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고려대학교 인권센터 공동, 제4회 국제인권심포지엄 개최

6. 6.
- 장관, 대전현충원 현충일 추념식 참석

6. 8.
- 난민위원회 위원 위촉식
- 「알기 쉬운 민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2018 법무행정일지

6.11.
- 감사원 전략감사단 예방
- 장관,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방문

6.14.
-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국적제도 개선 자문 T/F 가동

6.15.
- 법무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 몰카 등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전면전 선포 및 관련 대국민 발표
- 무사증 입국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계획 발표

6.16.
- 범죄피해자를 돕는 걷기대회, 제5회 다링행사 개최

6.18.
- 장관, 세계헌법대회 축사
- 장관, 주요현안 관련 한겨레 인터뷰
- 장관, 청주여자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 세계 난민의 날 기념,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와 공동으로 학술포럼 개최

6.19.
- 검찰 고위간부 인사

6.20.
- 장관, 'Live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 인터뷰(취임 1주년 관련)
- 장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참석
- 화상공증제도 시행
- 태국 불법체류자 대책 논의를 위한 한-태국 이민청간 실무협의 1차 회의

6.21.
- 장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 참석
- 제60대 이금로 법무부차관 이임식

6.22.
- 제61대 김오수 법무부차관 취임식

6.25.
- 장관, 6.25전쟁 제68주년 행사 참석
-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조상희) 임명장 수여식

6.26.
- 자동출입국심사제 도입 10년(누적이용자 1억명 돌파)

6.27.
- 장관, 신임부장검사 리더십과정 강화
- 차관, 대한법무사협회 정기총회 참석

6.29.
- 제주 예멘난민 관련 관계부처 긴급회의 개최

## 7월

- 7. 2.
  - 해외 우수인재 비자 관련, 온라인 전자고용추천제 시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사전예약 확대 시행
- 7. 4.
  - 장관, 서울동부구치소 정책현장 방문
- 7. 5.
  - 불법입국·취업알선 브로커 등 1,160명 적발 발표(단속기간 5.14.~6.22.)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 이강에류(주)』 소년원학생 등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7. 6.
  - 2018 범죄예방한마음대회 개최
- 7.10.
  - 차관, 제주 예멘인 난민심사 현장점검 및 제주도지사(원희룡)와 난민 현안 협력방안 논의
- 7.11.
  -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7.16.
  - 최영승 신임 대한법무사협회장 예방
  - 라오스 법무부 대표단 예방
  - 북방경제협력 대상 3개 국가(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조지아) 및 몽골 국민에 대한 복수비자 확대시행
  - 범죄피해자 작품전시회, '어울림' 행사 개최
  -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성평등정책관 신설 및 인사제도 개선 등 성평등조직문화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 권고
- 7.17.
  - 장관, 제70주년 제헌절 경축식 참석
- 7.18.
  - 법무정책 포스터 공모전 시상식
- 7.23.
  - 『법무부-국방부』,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혹 관련 검·군 합동수사기구 구성 추진 협의
- 7.24.
  - 2018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
- 7.30.
  -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감사장 전달식
  - 공익법무관 임용식
- 7.31.
  -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 제3차 국적심의위원회 개최, 마라토너 에루페 등 5명 특별귀화대상자로 선정

# 2018 법무행정일지

## 8월

8. 1.
- 신임 검사 임관식
- 장관, 제주난민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 국내 비영리기관 초청 1회성 강연 등에 대한 외국인 취업비자 면제 시행

8. 6.
- 『법무부-외교부』 국장급 첫 인사교류 실시

8. 7.
- 『2018-2022년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8. 8.
- 장관, 미하엘 라이터러 유럽연합 대사 면담(EU대사 공관)

8. 9.
- 장관, 대구 고·지검 정책현장 방문
-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성희롱 등 관련 감찰시스템 전면적 개선 권고

8.10.
- 제1회 출국금지 심의위원회 개최

* 출국금지로 인한 과도한 인권침해를 해소하기 위한 출국금지 심의위 신설·운영

8.13.
-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

8.15.
- 장관, 광복절 경축식 참석

8.16.
- 『법무부-서울특별시』 공동, 집합건물법 개정 관련 정책현장 간담회 개최
- 우즈베키스탄 검찰총장 예방

8.17.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관련 정책간담회 개최
- 차관, 동해선도로남북출입사무소 방문, 제21차 이산가족상봉행사 지원 남북출입심사 준비상황 점검

8.20.
- 장관, 교정본부 심신케어프로그램 행사현장 격려방문
- 장관, 광주 고·지검 정책현장 방문

8.21.
-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
- 「민영소년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8.22.
-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

8.23.
- UN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당선자 예방

8.24.
- 기업인권경영 표준안 도입을 위한 간담회 개최

8.27.
- 장관,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회식 축사

8.29.
- 해리 해리스 신임 주한미국대사 예방

8.31.
- 장관,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식 참석

## 9월

- 9. 3.
  - 「소년 강력범죄 대응과 개선방안」 학술대회 개최
  - 전국 교정시설 추석맞이 교화행사 시행(9.3.~10.5.)
- 9. 4.
  - 소속기관 대상 '찾아가는 청렴교육' 실시
- 9. 5.
  - 장관, 중앙일보(연재중인 '2018 교도소 실태보고서' 관련) 인터뷰
  - 인도네시아 해외주재관 회의, 최초로 국내 유치 발표
  - 제3회 국가배상 본부배상심의회
- 9. 6.
  - 전자감독제도 시행 10주년 기념 행사 및 학술대회 개최
  - 장관,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제7기 개강식 축사
- 9. 7.
  - 난민위원회 위원 위촉식
- 9.10.
  - 투자자-국가분쟁 해결 제도 개선에 대한 지역별 관점을 주제로 한, 제1회 국제연합 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 회기간 회의 공동 개최
  - 『한-인도네시아』 출입국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 교정시설 설계 대학생 공모전 수상작 발표
- 9.11.
  -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 및 보증금을 확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9.12.
  - 『법무부-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고용 관련 규제해소 논의
  - 감찰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
  - '민방위의 날' 지진대피 실제 훈련 실시
  - 법무부 정책위원회 감사패 전달식
  -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부차관보 예방
- 9.13.
  - 장관,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참석
  - 「최신 미국통상법」 및 「중국의 무역구제 제도」 발간
- 9.14.
  - 제53회 전국교도관 무도대회 개최
  - 차관, 추석맞이 전통시장(산본) 및 사회복지시설(평화의집) 방문
  -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심사결과 1차 발표
  - 2018 전국 전자감독 전담직원 워크숍 개최
- 9.17.
  - 관련 시민단체·전문가와 함께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위한 현장정책 간담회
  - 『법무부-KOTRA』 해외진출 중소·중견 기업을 위한 법률자문서비스 업무협약(MOU) 체결
  - 장관,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안양의 집) 방문

9.19.
- 장관, 김천지역 소재 산하기관 방문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제9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발표

9.20.
- 불법체류외국인의 국민 일자리 잠식을 막기 위한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대책” 발표

9.21.
- 대한상사중재원장 예방
- 영주권자에 대한 10년 단위 영주증 갱신제도 도입

9.27.
- 장관, 신임검사 강화[講話]

9.28.
- 태국 노동부장관 예방 및 태국인 불법체류 문제 등 논의
- 장관, 네이버 법률판 인터뷰(‘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한다’ 이벤트 관련)
-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경감을 위해 정부구매 신용카드를 직불형 카드로 교체

## 10월

10. 1.
- 신임 법무심의관 임명장 전수식
-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위원 감사장 전달식
- 장관 불법촬영·유포범죄, 법정 최고형 구형 등 엄정 대처 지시
- 해외우수인재유치를 위한 외국인 점수제 구직비자(D-10)제도 도입·시행
- 불법체류자 특별대책 본격 시행, ‘특별자진출국기간(6개월간)’ 시작
- 등록외국인도 사전등록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가능

10. 2.
- 미주 한인회장단 면담

10. 5
- 차치지청장 간담회

10. 8.
- 외국인 고액투자자, 우수인재 및 특별공로자 등에 대한 영주자격 처리기간 단축

10.10.
- 검찰과거사위원회, ‘형제복지원 사건’ 조사·심의결과보고서 발표

10.11.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예방
- 검찰과거사위원회, '김근태 고문 은폐 사건' 및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조사·심의결과 보고서 발표

10.12.
- 법무부 국정감사

10.15.
- 유공 공증인 표창장 수여식
- 장관, '알 권리 교란' 허위·조작정보 엄정대처 지시

10.16.
- 장관, 경북북부 제1교도소, 공주치료감호소 정책현장 방문

10.17.
-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심사 결과 2차 발표
- 이민정책포럼 개최
- '전국 소년원학교' 체육대회 개최

10.18.
- 장관, 제11회 한국법률가대회 참석

10.19.
- 장관, 청와대 국민청원 관련 '음주운전 및 불법 촬영·유포범죄' 엄정대처 방침 발표

10.23.
- 차관, 세계성년후견대회 축사
- 기업환경개선 컨퍼런스 개최

10.24.
-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대표 접견

10.26.
- 제73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 교육부·여성가족부·법무부 장관, 스쿨미투 간담회 참석
- 제4차 국적심의위원회 개최,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감독 등 5명 특별귀화대상자로 선정
- 제47회 교정작품 전시회(과천시민회관) 개최(10.26.~11.1.)

10.28.
- 법무부·건강사회운동본부 공동주최, 내·외국인 한마음 걷기 축제 및 정부합동 고충상담 실시

10.29.
- 법무부 종합감사

10.31.
- 제6회 전국 교도관 응급처치 경연대회 개최

## 11월

11. 1.
- 성희롱 등 폭력 예방 직장 교육 실시
- 「국가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례 해설」 발간
- 모든 생명보험을 전자서명으로 간이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상법」 시행
- 배우자의 모국어를 배우는 국제결혼대상자, 배우자 초청에 인센티브 부여
-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단 간담회 개최

11. 2.
- 2018년도 전국 교정기관장 연수회 개최
- 올해의 명예보호관찰관 시상식 개최

11. 4.
- 안젤리나 졸리 유엔난민기구(UNHCR) 특사 접견

11. 5.
- 법무부, 검사인사규정(대통령령) 등 제·개정 발표
- 제7회 아시아·태평양 ADR 컨퍼런스 개최(11.5.~11.6.)

11. 6.
-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간담회 개최
- 30번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 인가
- 검찰과거사위원회,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 관련 주요 위증 혐의자 조사결과 및 수사권고 발표

11. 7.
- 『법무부-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허그(HUG)후원의 날 개최

11. 8.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법무부 업무보고
- 법무부·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

11. 9.
- 6개 중앙부처 공동, 공정경제 전략회의 개최

11.12.
- 제3회 스마일센터 심포지엄 개최,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및 스마일센터 발전방향 모색

11.13.
- 제4회 한·일 교정직원 친선 무도대회(11.13.~11.19.)

11.14.
- '한-키르기즈', 「범죄인 인도」·「형사사법 공조」·「수형자 이송」3개 조약에 대한 조약서명식 개최
- 제11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 검찰과거사위원회,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 관련 '남산 3억원 의혹' 수사 촉구 권고 발표

11.15.
- 『법무부·외교부』, 제7차 한-중남미 치안협력 세미나 공동 개최

11.16.
-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부산 서부준법지원센터 개청
- 제2회 범죄피해회복 희망수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

11.19.
- 『법무부-SK텔레콤』, 첨단정보기술(ICT)을 활용한 사회적 약자 보호와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을 위한 교육부 및 대학교 관계자 간담회 개최

11.21.
- 장관, 부산교도소 및 부산고·지검 정책현장 방문
- 제15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촉식
- 검찰과거사위원회,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조사·심의결과보고서 발표

11.22.
- 법무연수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형사사법 포럼 공동개최

11.23.
- 송무담당 공익법무관 워크숍 개최

11.26.
- 상법 개정 관련 한국경영총협회 간담회 개최

11.27.
- '민방위의 날' 화재대피 실제훈련 실시
- 법무부·여가부 등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방지대책 발표

11.28.
- 변호사시험 개선방안 발표

11.30.
- 루스란벡 다브렛토프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장관 예방
- 장관, 폐기물 불법투기·매립 범죄 엄정대처 지시
- 법무부,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종합대책 관련 단속결과 발표
  * (9~11월) 직업소개소 등 알선자 및 불법취업자 724명 적발
- 2018년 기업환경 개선 국제컨퍼런스 개최

# 2018 법무행정일지

## 12월

12. 3.
- 검찰인사위원회 위원장 등 기념패 수여식
- 범죄피해자 보호 실무위원회 개최

12. 4.
- 일본 최고검찰청 공안부장 예방
- 법무부·대한상의·세계은행, 해외진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및 국제무역규칙에 관한 공동세미나 개최

12. 5.
- 청주스마일센터 개소식
- 차관, 청주보호관찰소, 안양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 18년만에 교정공무원 근무복 개선
- 중앙행정기관 소송총괄관 회의 개최

12. 6.
- 장관, 청렴사회를 위한 반부패 개혁 국제포럼 축사

12. 7.
- 정부법무공단이사장 추천위원회 개최
- 법무부·표창원 국회의원실 및 한국공안행정학회, "보호관찰 정책의 최근 주요 현안 논의 및 발전 방안 모색" 학술대회 공동개최

12.10.
- 장관, 국민일보 창간 30주년 기념식 참석
- 『법무부-한국소비자원』, 외국인 대상 소비자교육 확대 업무협약 체결

12.11.
- 범죄피해자지원 스마일공익신탁 일곱 번째 나눔 실시, 범죄피해자와 유가족 등 6명에게 3,400만원 지원

12.12.
-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 개최
- 우수 인권 법무·검찰 공무원 14명 표창
- 마을변호사 5주년 기념식 개최

12.13.
- 집단소송제 관련 '2018년 선진법제 포럼' 개최
- 올해의 교사 및 보호관찰인상 시상식
- 2018년도 제4차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개최, 화재 현장에서 할머니 목숨 구한 스리랑카인에게 영주권 부여
- 소년수형자 창작 뮤지컬 '안녕! 내일' 공연

12.14.
- 차관, 연말 성금모금행사 참여(SBS)

12.17.
- 『법무부-서울시』 외국인정책 업무협약 체결식

12.18.
- 장관, 연말 성금모금행사 참여(KBS)
- 검사인사규정(대통령령) 등 제정·공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발간
- 적법체류 결혼이민자를 범죄피해구조금 지급대상에 포함,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2.19.
- 국적법 제정 70주년 기념, 모범귀화자 기념패 수여식(최초)
- 제1회 소년비행예방협의회 개최, 「제1차 소년비행예방기본계획(2019-2023년)」 발표
- 장관, 주요현안 관련 경향신문 인터뷰
-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개최

12.20.
- 울산스마일센터 개소식
- 장관, 울산지검 정책현장 방문
-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절차 신설 등 개정 『국적법』시행
- 『법무부-한국법제연구원』, 국적법 제정 70주년기념 세미나 개최
- 「표준준법통제기준」 개정('19.1.1.시행)

12.26.
- 『법무부-숭실대학교』,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제4회 국가배상 본부배상심의회 및 위원 위촉식

12.27.
- 국군장병 위문행사(강원 화천 육군 제7보병사단)

12.31.
- 「2019-2023년 중재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19.1.1.시행)

# 2018년 법무부가 만든
#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2018년 법무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을 위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다양한 법무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정의를 지켜온 법무부의 2018년 활동들을 사진과 함께 소개합니다

## 2018. 01.



**1월 2일** 2018년 법무부 시무식

**1월 15일**
제47기 사법연수생
수료식 참석






**1월 16일** 2017년 SNS 홍보 우수기관 및 공무원 포상식




**1월 24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신청사 준공식



**1월 25일** 2018년 정부업무보고




**1월 25일** KBS 뉴스라인 출연



**1월 26일** 서울소년원 정책현장 방문



**1월 26일**
안양소년원 정책현장 방문




**1월 26일**
우수법률홈닥터
장관표창 수여식

# 2018. 02.




**2월 7일**
법무부-대한의사협회
업무협약식



**2월 11일** 신임검사 임관식




**2월 9일**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



**2월 12일**
서울서부지방
검찰청 방문




**2월 13일**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식



**2월 13일** 산본시장 방문




**2월 26일** 외국인 인권보호·권익증진 협의회



**2월 28일** 명예교도관 위촉식



**2월 26일**
평창동계패럴림픽
선수단 격려방문

# 2018. 03.



**3월 13일** 조 이건 영국사무변호사협회 회장 접견




**3월 21일** 이민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3월 21일** 전자투표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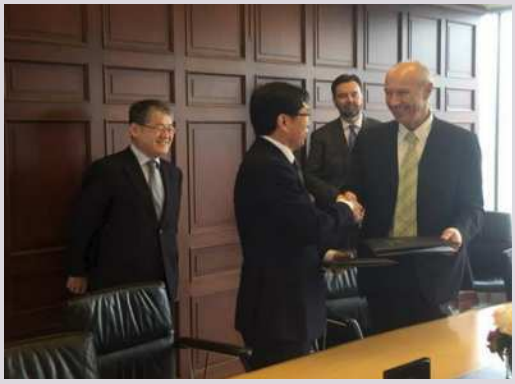

**3월 22일**
서울서부스마일센터 방문




**3월 23일** 국적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3월 23일**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개소 10주년 기념방문



**3월 29일** 법무부-WIPO 업무협약 체결식

# 2018. 04.




**4월 2일** 신임검사 임관식




**4월 9일** 독립유공자 후손 배우자 국적증서 수여식




**4월 11일** 대전 고등·지방검찰청 방문




**4월 11일** 대전교도소 방문




**4월 20일** 서울중재센터 개소식 및 국제중재센터 출범식




**4월 25일**
법의 날 기념식



**4월 30일** 신임검사 임관식

# 2018. 05.




**5월 10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현판식




**5월 11일** 윌리엄 레이시 스윙 국제이주기구 사무총장 접견



**5월 11일** 제36회 교정대상 시상식



**5월 14일** 경력검사 리더십 과정 간담회



**5월 16일**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5월 24일** KTV 인터뷰

# 2018. 06.



**6월 1일** EU사법소비자양성평등 총국 집행위원 접견




**6월 5일** 故맥그린치 신부 명예국민증 수여식



**6월 16일**
다링안심 캠페인




**6월 18일** 제10회 세계헌법대회 축사



**6월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

# 2018. 07.




**7월 6일**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개최



**7월 16일**
신임 대한법무사
협회장 접견




**7월 30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감사장 전달식

# 2018. 08.



**8월 1일** 신임검사 임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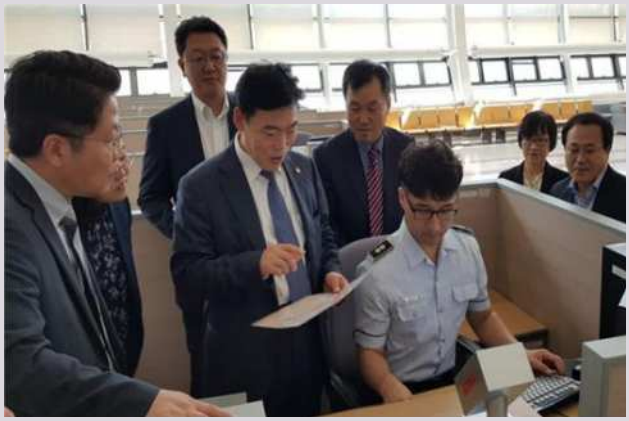
**8월 13일**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




**8월 16일**
집합건물법 개정을 위한
현장정책간담회




**8월 17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



**8월 17일** 이산가족상봉 남북출입심사 현장점검




**8월 21일**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 서명식




**8월 27일**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




**8월 29일**
해리 해리스
신임 주한미국대사 면담

# 2018. 09.




**9월 6일** 전자감독 시행 10주년 기념 정책현장 방문




**9월 6일**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9월 10일**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회기간 회의



**9월 14일**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




**9월 17일**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




**9월 17일** 법무부-KOTRA 법률자문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9월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본부 방문



**9월 27일**
신임검사 대상 강화




**9월 28일**
태국 노동부장관 접견

# 2018. 10.




**10월 15일** 유공 공증인 표창장 수여식




**10월 18일** 한국법률가대회




**10월 24일** UN난민기구 최고대표 접견



**10월 26일** 스쿨미투 간담회 참석




**10월 26일**
교정의 날 기념식

# 2018. 11.




**11월 1일**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11월 2일** 올해의 명예 보호관찰관 시상식



**11월 2일**
전국 교정기관장 연수회



**11월 4일** 안젤리나 졸리 UN난민기구 특사 접견



**11월 7일** 허그 후원의 날




**11월 14일** 법무부-키르기즈, 국제형사조약 체결




**11월 14일**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11월 21일** 부산 고·지검 방문



**11월 21일** 부산교도소 방문



**11월 26일** 상법 개정 관련 정책 간담회




**11월 30일**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장관 면담

# 2018. 12.




**12월 6일** 반부패 개혁 국제포럼 축사




**12월 13일** 선진법제포럼



**12월 13일**
올해의 교사상·보호관찰관상
시상식




**12월 17일**
법무부-서울시 업무협약 체결식




**12월 19일** 모범귀화자 선정, 격려행사




**12월 19일** 소년비행예방협의회 개최




**12월 20일**
울산스마일센터
개소식




**12월 27일**
국군장병 위문행사

2018
# 법무연감

## CONTENTS


### 제1장 총 설

**제1절** 법무행정의 기본방향 54
**제2절** 기구·인원 61
**제3절** 예산·시설 79

### 제2장 업무실적

**제1절** 기획조정업무 90
1. 법무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탈검찰화 추진 90
2. 국민이 체감하는 법무부 정부혁신 추진 94
3. 법무행정개선 추진 98
4. 민원행정 서비스 강화 101
5. 규제혁신 적극 추진 103
6. 성과중 심의 법무행정 추진 104
7.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 110
8. 비상대비 및 재난안전 관리 강화 112
9. 정보화 업무 116
10. 법무연수원(교육과 연구의 내실화) 123

**제2절** 정책 홍보 활동 145
1. 기관장 소통 강화 145
2. 온라인을 활용한 소통 151
3. 국민 참여 이벤트 실시 154
4. 광고 캠페인 157
5. 법무부 정책홍보전략 실무협의회 159

**제3절** 법무업무 160
1.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법제 정비 160
2.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법제 정비 및 법령자문 기능 강화 161
3. 편리한 인터넷 화상공증제도 시행 163

4. 법의 문턱을 낮추는 마을변호사 제도 165
5.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168
6. 국제법무 협력 및 교류 171
7. 국제규범 형성과정 참여 174
8. 국제법무 역량 강화 177
9. 국가송무행정의 효율적 수행 182
10. 4.27 판문점 선언 등 후속조치 추진 및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법률지원 190
11. 상사법의 체계적 정비 등 기업법제 개선 193
12. 기업환경지수 개선 사업 추진 195
13. 중소·벤처기업 법률지원제도 운영 196
14. 집단소송제 확대도입 197
15. 법정 최고금리 인하 199
16. 전자어음제도 운영 및 관리·감독 200
17. 전자증권제도 시행 준비 202
18. 중재산업 활성화 204
19. 공익신탁 제도 활성화 205
20. 선진상사법률연구 발간 206
21. 선진법제포럼 개최 207
22. 공정한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 운영과 제도 개선 도모 209

**제4절** 검찰업무 213
1. 검찰 역량의 강화 213
2. 검찰업무의 추진방향 218
3. 사회·경제질서의 엄정 확립 222
4. 국민의 권익 보호 233
5. 미래형 선진수사시스템 구축 235
6. 테러 등 국가안보위해 세력 엄정대처 및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장 251
7. 과거사 사건 진실규명 및 침해된 인권 회복 노력 252
8.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253
9. 노사 간 균형있고 공정한 법집행 254
10.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에 기여 255
11. 국제공조를 통한 사회·경제 질서의 엄정 확립 257
12.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법령 제·개정 추진 264
13.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268

**제5절** 범죄예방업무 271
1. 보호관찰 내실화·전문화를 통한 실효성 제고 271
2. 성폭력 등 특정범죄자 관리·감독 279
3. 감호제도 개선 284

4. 정신질환 범죄자 관리 강화 290
5. 청소년 비행 예방 강화 292
6. 소년재비행방지 역량 강화 301
7.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법교육 전개 308
8.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질서 실천운동 313
9. 출소자 사회복귀 역량강화를 위한 갱생보호사업의 추진 318

**제6절** 감찰·감사업무 326
1. 감찰업무 326
2. 감사업무 328

**제7절** 인권업무 331
1. 국가인권정책 총괄·선도 331
2. 범죄피해자보호·지원 강화 335
3.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구조 강화 344
4. 자체 인권보호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민의 인권보호 강화 356
5. 여성·아동의 권익 보호 강화 359
6.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 운영 363
7.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364

**제8절** 교정업무 366
1. 인권을 존중하는 교정행정 구현 366
2. 국민 중심 교정행정 서비스 제공 373
3.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교정현장 활력 제고 381
4. 수용자 교정·교화 실효성 향상을 위한 교정정책 추진 387

**제9절** 출입국·외국인정책업무 396
1. 편리하고 안전한 고품격 출입국행정서비스 제공 396
2.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비자정책 추진 406
3.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419
4. 이민자 사회통합지원 강화 425
5. 귀화자의 국민정체성 함양 및 국적 신청자 처우 개선 434
6. 효율적 난민심사제도 구축 및 난민신청자 등의 처우 개선 438
7. 미래지향적 외국인정책 추진 및 국제협력 강화 448

**제10절** 검찰 과거사 진상 규명 업무 457
1. 검찰과거사위원회 설치 배경 및 운영 경과 457
2.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 대상 사건 조사현황 및 향후 계획 458

## 제3장 법령정비


**제1절** 개관 462
**제2절** 법률 463
**제3절** 대통령령 483
**제4절** 총리령 및 법무부령 505


## 제4장 국회업무


522


## 제5장 통 계


**제1절** 법무업무 통계 532
**제2절** 검찰업무 통계 545
**제3절** 범죄예방업무 통계 566
**제4절** 인권업무 통계 602
**제5절** 교정업무 통계 604
**제6절** 출입국·외국인정책업무 통계 626


## 자 료


**제1절** 직제 644
**제2절** 훈령·예규 및 주요지시 672
**제3절** 장관 연설문 683
**제4절** 역대 법무·검찰 간부 명단 729
**제5절**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명단(2018. 12. 31. 기준) 746
**제6절** 인사 793
**제7절** 국외훈련·출장 794
**제8절** 국제교류 현황 795
**제9절** 상훈 807
**제10절** 위원회 현황 820
**제11절** 소속기관 및 단체 현황 825


## 부 록


**법무부 본부 기구 변천표**
**법무부 및 소속기관 기구표**

# 法務年鑑

# 01



# 총 설

제1절 법무행정의 기본방향
제2절 기구·인원
제3절 예산·시설

# 제1절 법무행정의 기본방향

## 1. 국정방향과 법무행정 지표

혁신행정담당관실 사무관 김용갑

### 가. 국정방향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이 주인인 정부' 및 '더불어 잘사는 경제' 등을 5대 국정목표로 정하고, 국가비전 및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전략으로서 20대 국정전략을 설정하였으며, 국정전략별로 핵심정책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 또한 국정과제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487개 실천과제를 세분류하고, 각 실천과제별로 연차별 이행목표와 이행계획 설정 등 새로운 국가정책의 기본방향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한 문재인정부의 국가비전과 5대 국정목표 및 20대 국정전략은 다음과 같다.

| 표 1-1 | 국가비전 - 5대 국정목표 - 20대 국정전략

| 국가비전 |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 | | | |
|---|---|---|---|---|---|
| 5대 국정목표 | 국민이 주인인 정부 | 더불어 잘사는 경제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
| 20대 국정전략 | ① 국민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 | ①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 ①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 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 ①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 |
| | ②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 ②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 ②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 ② 골고루 잘사는 균형 발전 | ②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
| | ③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 ③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 ③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 ③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 ③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
| | ④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 ④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 ④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 | |
| | | ⑤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 ⑤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 | |
|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 | 15개 과제 (71개 실천과제) | 26개 과제 (129개 실천과제) | 32개 과제 (163개 실천과제) | 11개 과제 (53개 실천과제) | 16개 과제 (71개 실천과제) |

100대 국정과제 중 법무부 소관 과제는 1번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등 4개 주관과제와 14번 '민생치안 역량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등 5개의 협조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실천과제는 총 16개 과제로 2018년 법무부 국정과제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표 1-2 |** 2018년 법무부 국정과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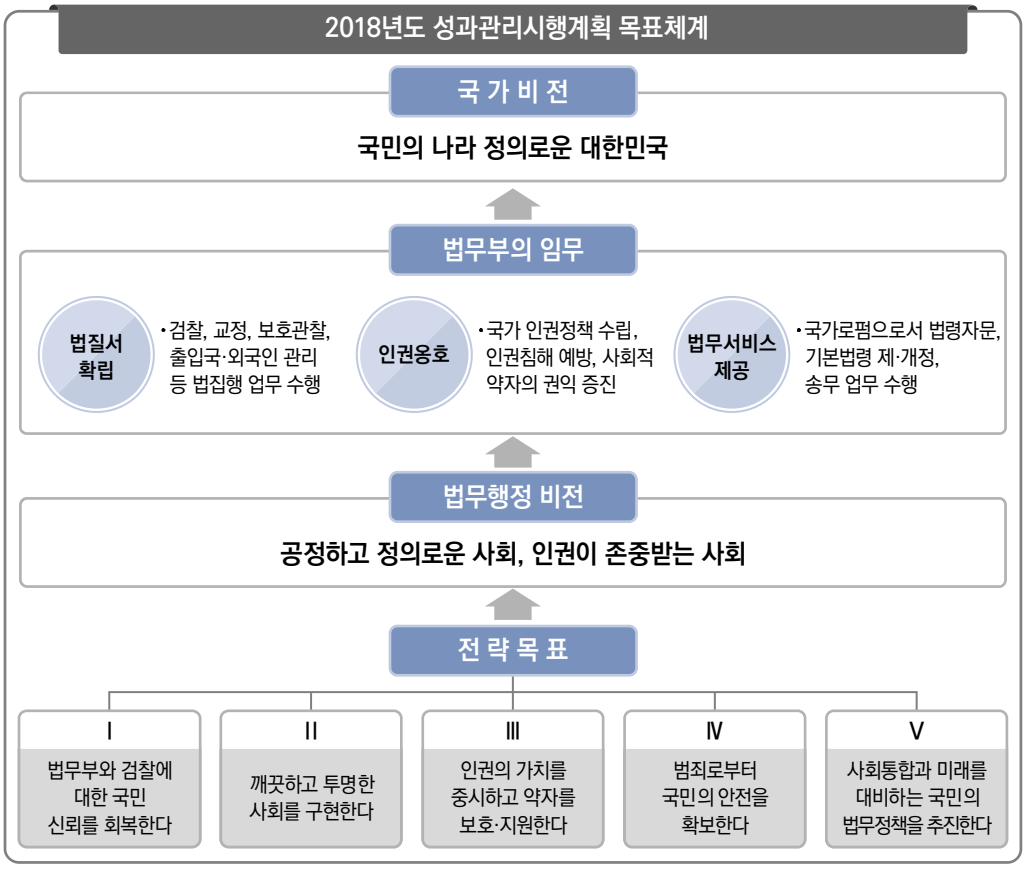
| 국정 목표 | 국정 전략 | 국정과제 (주관 4개, 협조 5개) | 주관 (협조) | 실천과제 (16개) |
|---|---|---|---|---|
| 국민이 주인인 정부 | ① 국민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 | 1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 법무부 (권익위 문체부) | 1. 국정농단의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br>2.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범죄수익환수 등 후속조치 |
| | | 2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 권익위 법무부 | 2.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와 예산낭비의 방지<br>3.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처벌강화와 국민 권익 보호<br>5. 공익법인의투명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시민공익위원회(가칭)'의 설치 |
| | ②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 6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 법무부 행안부 인권위 | 1. 국민 인권 보호 강화<br>2. 국가권력의 불법사찰 근절<br>3. 국가폭력 피해자 지원<br>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
| | ④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 13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 법무부 경찰청 | 1.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br>2. 검찰인사의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 |
| | |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협조) | 경찰청 (법무부) | 8.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및 생활안전분야 역량 강화 |
| 더불어 잘사는 경제 | ①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 2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협조) | 금융위 (법무부) | 4.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대출채권 관리 강화 |
| | ②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 24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협조) | 공정위 (법무부) | 1. 총수일가의 전횡 방지를 위한 법적기반 구축 |
| | | 25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협조) | 공정위 (법무부) | 4. 집단소송제 등 도입 |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 ④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 66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협조) | 여성가족부 (법무부) | 5. 젠더폭력 처벌강화 및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

## 나. 법무행정 지표

법무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및 국정목표 등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법질서 확립', '인권옹호', '법무서비스 제공' 등 법무부 3대 임무를 기본 바탕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법무행정 비전으로 삼아 국정과제, 대통령지시사항 등 국정기조와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 등을 반영하여 2018년도 법무부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성과관리시행계획은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 등 5대 전략목표 아래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와 적폐청산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등 13개 성과목표 및 '국정농단 관련 보충수사 및 공소유지 철저' 등 70개의 관리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도 우리 부 성과관리시행계획 목표체계 및 전략목표에 따른 성과목표와 관리과제는 다음과 같다.

**| 표 1-3 |** 2018년 성과관리시행계획 목표체계



**| 표 1-4 |** 2018년 성과관리시행계획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현황

| 전략목표 | 성과목표 | 관리과제명 | 주요내용 |
|---|---|---|---|
| Ⅰ.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 | 1.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제고와 적폐청산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 ① 국정농단 관련 보충수사 및 공소유지 철저 | • 국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실형선고율 제고 |
| | | ②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국회 논의 지원<br>• 검·경 수사권의 합리적 조정 추진 |
| | | ③ 검찰인사의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 | • 법무부 탈검찰화 및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 축소 등 |
| | 2. 공정한 법집행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 | ① 사회지도층 범죄 엄단 | • 반부패특별수사부를 중심으로 지위·권력관계를 이용한 비리 수사 추진 |
| | | ②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 • 선거전담반을 통한 단계별 비상근무 실시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철저 |
| | | ③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 | • 합법·평화적 집회·시위 최대 보장, 불법집단행동에 따른 원칙적 대응 등 |
| | | ④ 국민이 신뢰하는 국가송무 실현 | • 상소심의위원회 활성화 등 적정상소권 행사 방안 추진 및 업무처리의 신속성 향상을 위해 국가송무 정보시스템 포털 구현 |
| | | ⑤ 국제협력을 통한 법집행 공정성 강화 | • 특별관리대상 국외도피사범을 중심으로 국가별·사안별 맞춤형 송환추진<br>• 국제협약을 통해 국제공조체제 강화 |
| | | ⑥ 감찰·감사활동 강화를 통한 내부 비위근절 및 예방 | • 본부 및 소속·산하공공기관 감찰·감사를 강화하고 감찰·감사인력 전문화 추진 |
| Ⅱ.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한다 | 1.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깨끗한 사회 실현에 기여한다 | ① 5대 중대 부패범죄 엄단 | •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 집중 단속 등 |
| | | ② 방위사업 비리, 공기업·공무원 비리, 보조금 부정수급 엄단 | • 유관기관 협력으로 부정수급 자료 분석, 공기업 등의 구조적·고질적 비리 적발 등 |
| | | ③ 법조브로커, 사이비언론, 교육 비리 척결 | • 반부패특별수사부 등을 중심으로 법조브로커 등 전문직역 비리 사범 상시 단속 |
| | | ④ 법조 비리 제재 강화 및 변호사 제도 개선 | • 변호사징계위원회 확대 개최, 변호사 업무정지명령 적극 활용으로 법조 비리 제재 강화 |
| | | ⑤ 공익법인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방안 마련 | • 공익법인의 총괄 관리·감독 기구인 '시민공익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안 마련 |
| | | ⑥ 부패, 비리 등 범죄로 인한 국고손실 환수 철저 | • 입찰담합 및 부패·비리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유기적 대응으로 국고손실 환수 노력 |
| | | ⑦ 비리 예방을 위한 '클린피드백' 정착 | • 수사현장 비리구조 재발방지 개선사항 발굴 등 |
| | 2. 경제질서 저해사범을 단속한다 | ① 금융·증권범죄 및 불공정거래 척결 | • 자본시장교란행위, 횡령·배임 등의 기업범죄 등 기업활동 저해사범 집중 단속 |
| | | ② 조세포탈 범죄 집중 단속 | • 해외 조세피난처에 대한 투자명목 탈세 등 조세포탈 범죄 집중 단속 등 |
| | | ③ 기술유출·지식재산권 침해 사범 엄단 | • 지식재산권 전담 검사실 중심으로 유관기관 특사경과 협력하여 지속 단속 |

| 전략목표 | 성과목표 | 관리과제명 | 주요내용 |
|---|---|---|---|
| Ⅲ. 인권의 가치를 중시하고 약자를 보호·지원한다 | 1. 인권 보호 체계 및 국제인권 대응체계 강화 등 법무행정의 인권수준을 향상한다 | ① 인권보호체계 구축 및 국제인권 대응 |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br>• 「인권기본법」 제정 추진 |
| | | ② 인권침해 자체예방 및 조사·구제 시스템 강화 | • 구금·보호시설 실태점검·개선조치 등 인권침해 자체예방 및 인권보호 시스템 강화 |
| | | ③ 통신 및 안보수사 과정에서의 인권보장 강화 | •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통신비밀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안 마련 |
| | | ④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 • 국선변호 제도 개선 및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마련 등 |
| | | ⑤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수용환경 개선 | • 교정시설 신축, 수용동 증·개축, 리모델링 등을 통한 수용환경개선 |
| | 2.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지원과 법률복지를 강화한다 | ①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강화 | •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을 통해 구조금 지급대상 범위 확대 등 |
| | | ② 여성·아동 등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및 양성평등의식 제고 | • 아동, 장애인 등 특수성에 맞는 진술조력인 추가 양성 및 확대 배치 등 |
| | | ③ 마을변호사 제도의 발전적 정착 | • 마을변호사-법률홈닥터를 연계한 대형 재난 대비 법률지원단 구성 등 |
| | | ④ 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사회봉사 집행 강화 | • 영세·고령농가 일손돕기 등 취약계층 관련 봉사활동 확대 추진 |
| | | ⑤ 상가·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확대 등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 등 |
| | | ⑥ 집합건물 분쟁해결을 위한 집합건물법 개정 | • 층간소음 등 생활형 분쟁 해결 시스템 보완 등을 내용으로 집합건물법 개정 추진 |
| | | ⑦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맞춤형 법률 지원 활성화 | • 변호사조력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법률 서비스 및 비용 지원 |
| Ⅳ.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한다 | 1.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엄단한다 | ① 테러 등 국가안보 위해세력 엄정 대처 | • 테러 대비 사전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 및 안보위해 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 등 |
| | | ② 성폭력,가정폭력 등 젠더폭력 및 아동학대 사범 처벌 강화 | •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설치 확대, 개정 성폭력 범죄 수사매뉴얼 배포 등 |
| | | ③ 마약범죄 및 강력범죄 대응역량 강화 | • 마약류 밀수, 판매 등 공급사범 엄단<br>• 국제회의 참가 등을 통해 국제공조 지속 추진 |
| | | ④ 서민생활안전·대형안전사고·교통안전 관련 범죄 엄단 | • 불법 사금융·채권추심등 서민 상대 갈취 사범 등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 |
| | 2. 범죄예방 활동 및 준법문화 조성으로 안전한 사회를 구현한다 | ① 성폭력 등 강력범죄 방지 대책 강화 | • 일체형 전자발찌 보급 및 범죄징후예측시스템 시범운영 등 위치추적시스템 고도화 |
| | | ②불법체류자에 대한 실효적 관리체계 구축 | • 불법입국·취업 알선자, 비전문취업 기간도과자 등 집중 단속 |
| | | ③ 학교폭력 등 청소년 비행예방기능 강화 | • 청소년 폭력예방 통합 프로그램 개발·보급, 가족회복 프로그램 강화 등 |
| | | ④ 주민참여형·맞춤형 법교육을 통한 준법의식 함양 | • '찾아가는 로파크', '법교육 출장강연' 등 지역별·대상별 맞춤형 법교육 강화 |

| 전략목표 | 성과목표 | 관리과제명 | 주요내용 |
|---|---|---|---|
| | 3. 실질적인 처우를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 ①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 내실화 | • 맞춤형 직업교육, 다양한 수용자 교정·교화 방송 콘텐츠 개발 등 |
| | | ② 수형자 취업역량 강화 | • 산업수요를 반영한 직업훈련과정 다양화 |
| | | ③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위한 가석방 확대 | •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위한 모범수형자 가석방 대상 확대 등 |
| | | ④ 성폭력·중독사범 등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강화 | • 성폭력·중독범죄 및 정신질환 범죄수용자 대상 맞춤형 심리치료프로그램 개발 등 |
| | | ⑤ 수용자 의료처우시스템 내실화 | • 의료보조인력 확보, 교정기관 방역 및 수용자 외부기관 건강검진 실시 등 |
| | | ⑥ 소년원 재범방지 맞춤형 교육 및 사회복귀지원 강화 | •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처우와 체계적인 교정교육 실시 등 |
| | | ⑦ 치료환경 개선을 통한 치료감호 내실화 | • 의사 채용방법 다양화 및 의료 인력 확보, 병동시설 현대화·소규모화 등 |
| | | ⑧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전문처우 프로그램 강화 | • 맞춤형 보호관찰 프로그램 및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멘토링 프로그램 확대 실시 |
| | | ⑨ 출소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갱생보호사업 추진 | • 취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 구축과 무주택 출소자 주거지원사업 등 취업연계 활성화 |
| Ⅴ. 사회통합과 미래를 대비하는 국민의 법무정책을 추진한다 | 1. 사회통합의 외국인 정책을 추진한다 | ① 고품격 출입국행정서비스 제공 | • 외국인 자동심사대 이용대상 확대 실시 등 |
| | | ②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비자정책 추진 | • 글로벌인재비자센터 설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확대 등 실시 |
| | | ③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 제고를 통한 미래지향적 이민행정서비스 구현 | • 차세대 이민행정시스템 구축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 |
| | | ④ 이민자 사회통합지원 강화 | •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및 중도입국자녀 공교육진입 지원 등 |
| | | ⑤ 미래지향적 외국인 정책 추진 |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18년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 수립·추진 |
| | | ⑥ 수요자를 고려한 국적제도개선 및 귀화자의 국민정체성 함양 | • 국민선서·국적증서 수여식 및 독립유공자 후손·배우자에 대한 국적증서 수여식 실시 |
| | | ⑦ 효율적 난민심사제도 구축 및 난민 신청자 등의 처우 개선 | • '18 ~ '19년 제2차 재정착난민 수용 시범사업 실시 |
| | 2. 미래지향적 법무정책을 추진한다 | ① 법률시장 개방 대비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 | • 찾아가는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설명회 실시,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운영 |
| | | ②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 | • 남북교류협력 재개 대비 남북합의서, 교류협력법제 및 해외사례 심층 연구 등 |
| | | ③ 북한이탈주민 법률교육 및 지원 | • 하나센터와 공동으로 탈북민 법률지원 실태 점검 및 개선 |
| | | ④ 선진형 형사사법체제 정비 | • 스토킹처벌법 제정, 성폭력 범죄 처벌규정·불법사찰 관련 법령 개선 추진 |
| | | ⑤ 공증제도 활성화 및 선진화 방안 | • 화상공증제도 관련 법령 개정 등 |
| | | ⑥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 개선 | •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방안 연구 및 '19년 변호사시험 5대 권역 확대실시 준비 |

| 전략목표 | 성과목표 | 관리과제명 | 주요내용 |
|---|---|---|---|
| | 3. 국민과의 소통 및 정보공유 등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한다 | ① 공공정보의 적극적 사전공개와 정보공유를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 • 정보공개 모니터단, 외부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통한 사전정보공개 확대 실시 |
| | | ②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법무정책 홍보 | • 방송뉴스 및 시사교양프로그램을 활용한 소통, 신문 기획보도 및 영상콘텐츠 제작 |
| | | ③ 기관 간 협업을 통한 대국민 형사사법서비스 제고 | • 차세대 형사사법시스템 구축 사업 시행 등 |
| | | ④ 사이버 접견 제도 활성화 | • 인터넷화상접견시스템과 민원인 스마트폰 연결 시스템 도입 등 |
| | | ⑤ 교정정책의 국민소통 강화 | • 보라미준법교실 운영 등 교정정책 홍보 |
| | | ⑥ 출입국·외국인 정책 홍보 강화 | • 미담사례 홍보, 출입국 현장투어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만족도 조사 실시 |
| | 4. 법무행정 지원 역량을 강화한다 | ① 전자민원서비스 및 행정효율 제고 | • 사이버안전 관리체계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 등 |
| | | ② 국가 비상대비 및 재난 안전 관리 효율성 강화 | • 지진 발생 등 재난·재해에 대한 철저한 예방 및 체계적인 관리 |
| | | ③ 국민이 원하는 법무시설 조성 | • 시설 및 공사현장 안전점검 강화 등 |

## 다. 국정과제 등 관리체계

법무부는 국정과제별 세부이행계획 수립, 주기적 이행점검회의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자체평가 등을 통해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제2절 기구·인원

## 제1항 본 부

### 1. 기구

본부 기구는 2018. 12. 31. 현재 2실 3국 2본부 9관 47과로 편성되어 있다.

#### 가.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은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시설담당관, 정보화담당관,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을 두고 있으며 법무부 주요 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예산의 편성 및 결산, 당정협의, 국회업무, 부내 행정개선 총괄·지원 및 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사무, 조직 및 정원의 관리, 법무시설 조성, 법무행정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과 국가 비상사태 대비업무,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의 총괄·조정,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 국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민원·정책 피드백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나. 법무실

법무실은 법무심의관, 법무과, 국제법무과, 국가송무과, 통일법무과, 상사법무과, 법조인력과를 두고 있으며, 대통령·국무총리·행정각부에 대한 법령자문 및 유권해석, 국내외 법무자료의 조사연구와 국제법무 관계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변호사 및 공증인 업무의 감독, 공익법무관의 관리,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지휘·감독, 국가배상·헌법재판 관련업무, 국고손실 환수송무 업무, 남북대화·교류협력 관련 법적지원, 변호사시험, 법조윤리시험의 관장·실시, 법조인 양성제도의 조사·연구 및 개선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 다. 검찰국

검찰국은 검찰과, 형사기획과, 공안기획과, 국제형사과, 형사법제과를 두고 있으며, 검찰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검찰권 행사에 대한 일반적 지휘·감독, 검찰공무원의 인사, 검찰청 정원 배정, 검찰예산의 편성 및 배정, 범죄정보의 수집·분석 및 범죄의 예방과 단속을 위한 대책 수립, 형 집행의 지휘·감독, 형사보상금 지급사무의 지휘·감독, 마약류보상금 및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지급 심의 및 결정 사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사무, 주한미군 지위협정에 의한 재판관할권 행사문제,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사무,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집행 및 피보안관찰자에 대한 사후관리, 형사관계법령의 입안 등의 업무도 맡고 있다.

## 라.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정책국은 범죄예방기획과, 보호정책과, 치료처우과, 보호관찰과, 소년보호과, 특정범죄자관리과를 두고 있으며, 범죄예방 기획·조직·인사·예산·복무관리 등 범죄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법질서 준수의식 고양을 위한 캠페인 전개, '법사랑 사이버랜드' 운영, 법교육 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법교육 교재·프로그램 보급, 법교육 전문인력 양성 연수지원, 법질서 실천운동 등 선진 법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치료감호 정책 기획 및 집행 감독,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운영 및 결정 집행, 법원의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이수명령·위치추적 전자감독·성충동 약물치료·성폭력범죄자의 등록·관리 및 임시퇴원·가석방된 보호관찰 대상자를 지도·원호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소년원생에 대한 적정한 분류처우와 학과교육, 인성교육 및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소년범 사회 내 처우 전담, 소년 보호관찰·조사·수강·사회 봉사 등 청소년 비행예방대책을 총괄하고 있으며, 출소자·보호관찰대상자·퇴원생에 대한 숙식제공·주거지원·직업훈련·취업지원 등 사회 복귀를 돕는 갱생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마. 감찰관실

감찰관실은 감찰담당관, 감사담당관을 두고 있으며, 감찰관은 장관을 보좌하여 사정업무,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 법무부 소속기관·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및 소속기관·산하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공직자윤리 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사항에 관한 조사·처리,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 병역사항의 신고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운영 지원,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 바. 인권국

인권국은 인권정책과, 인권구조과, 인권조사과, 여성아동인권과를 두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국가인권정책의 수립·총괄·조정업무와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정부보고서 및 답변서의 작성 등을 수행 하고 있으며,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및 법률구조법인의 관리·감독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법무행정 수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 법무부 공무원의 인권 교육, 검찰국·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교정본부·범죄예방정책국 산하기관에 대한 인권보호 상황평가, 법무부 내 여성·아동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여성·아동 관련 시책의 추진을 위한 다른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사. 교정본부

교정본부는 교정정책단에 교정기획과, 직업훈련과, 사회복귀과, 복지과를 두고 있으며, 보안정책단에 보안과, 분류심사과, 의료과, 심리치료과를 두고 있다. 교정본부는 교정행정 기획, 조직·인사·예산·복무 감독·상훈·홍보·국제관계업무, 교정관련 법령정비, 교도작업 운영, 취업·창업 지원, 수용자 교육 기획, 출소예정자 사회 적응 지원, 수용자 수용·처우·석방·접견, 참관, 이송, 가석방, 분류처우, 수용자 보건위생, 의료 및 약제, 질병예방, 수용자 청원, 인권 및 소송, 수용자 심리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출입국정책단과 국적·통합정책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입국정책단은 출입국기획과, 출입국심사과, 체류관리과, 이민조사과, 이민정보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적·통합정책단은 외국인정책과, 국적과, 이민통합과, 난민과로 구성되어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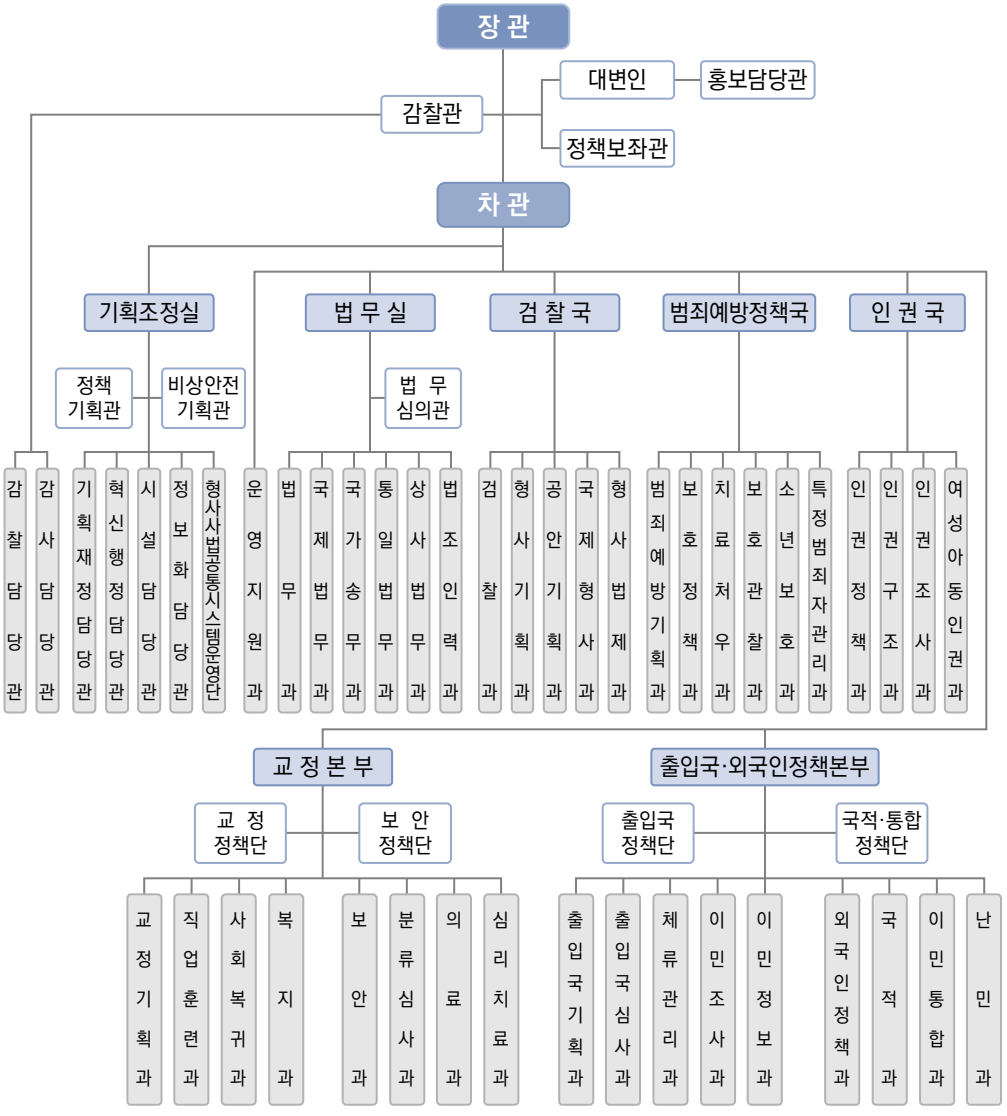
본부는 출입국관리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출입국관리 조직·인사·예산·복무관리, 소관법령의 입안 및 외국인정책 계획 수립 및 총괄, 내·외국인 출입국심사 및 남북 왕래자의 출입심사, 사증 및 사증발급 인정서의 발급심사, 출입국 규제, 외국인의 체류자격부여 등 각종 체류허가, 외국인등록, 출국권고·출국명령·강제퇴거명령 및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출입국관리법령 위반 관련 조사, 외국인 동향조사, 귀화·국적회복·국적판정 등 국적취득, 국적상실 및 이탈, 난민인정심사 업무 및 출입국항 난민신청 회부심사 업무, 난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 및 국내 정착지원,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급 등 난민의 처우 관련 정책, 재한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정책 총괄, 다문화(多文化)의 이해 증진에 관한 정책, 외국 국적동포의 입국·체류·취업자격부여에 관한 정책 총괄, 외국의 출입국·외국인 정책 담당기관과 협력강화를 통한 재외국민의 출입국·체류 지원, 출입국·외국인정책 행정에 관한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외국인정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자. 기 타

그밖에 대변인실은 법무부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 수립 및 조정,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법무정책에 관한 각종 홍보상황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운영지원과는 보안, 기록물 관리, 소속 공무원의 급여 및 복리후생, 국유재산과 물품관리, 자금의 운용 및 회계, 정보공개업무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2018. 12. 31. 현재 법무부 기구는 〈표 1-5〉와 같다.

| 표 1-5 | 본부 조직도


장관
대변인
홍보담당관
감찰관
정책보좌관
차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법무심의관
감찰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시설담당관
정보화담당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운영지원과
법무과
국제법무과
국가송무과
통일법무과
상사법무과
법조인력과
검찰과
형사기획과
공안기획과
국제형사과
형사법제과
범죄예방기획과
보호정책과
치료처우과
보호관찰과
소년보호과
특정범죄자관리과
인권정책과
인권구조과
인권조사과
여성아동인권과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교정정책단
보안정책단
출입국정책단
국적·통합정책단
교정기획과
직업훈련과
사회복귀과
복지과
보안과
분류심사과
의료과
심리치료과
출입국기획과
출입국심사과
체류관리과
이민조사과
이민정보과
외국인정책과
국적과
이민통합과
난민과

## 2. 인원

상사분야 법령 제·개정, 주택 및 상가임대차 제도 개선, 변호사 징계 등 법조윤리, 난민심사 등 담당 인력 11명을 증원하여 2018. 12. 31. 현재 본부 정원은 679명, 현원은 668명으로 직종별 정원 및 현원은 〈표 1-6〉과 같다.

**| 표 1-6 |** 본부 직종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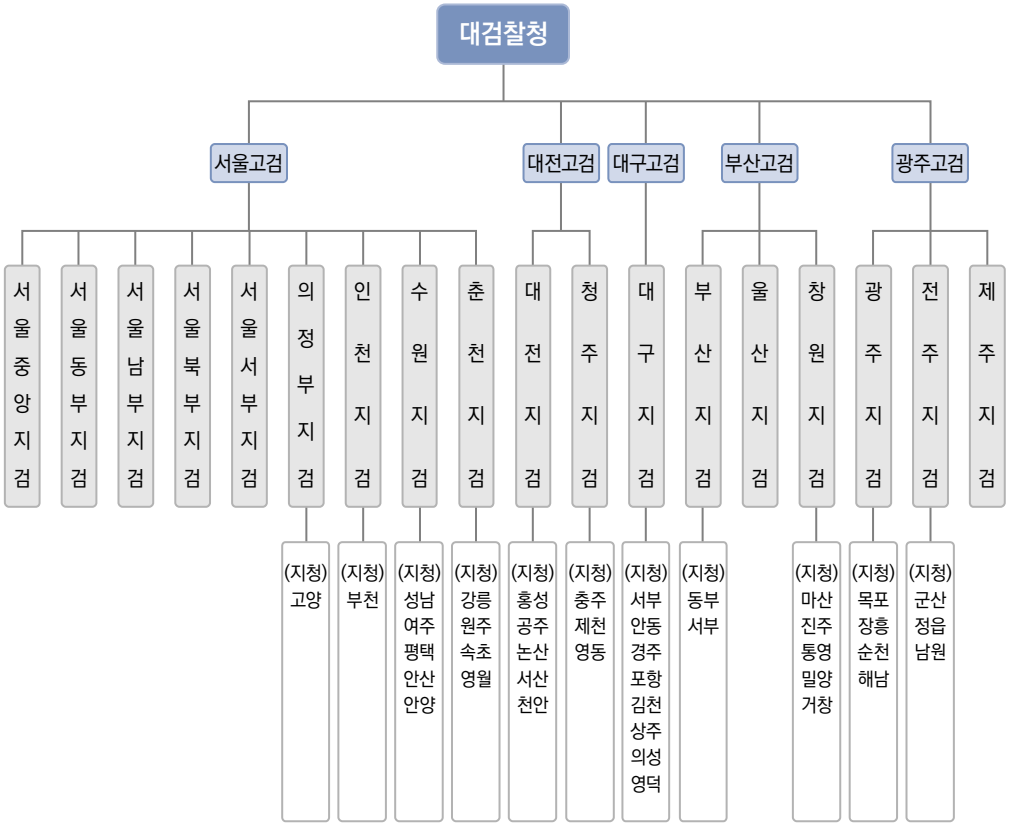
| 구분 | 계 | 정무직 | 검사 | 일반직 | 별정직 |
|---|---|---|---|---|---|
| 정원 | 679 | 2 | 25 | 648 | 4 |
| 현원 | 668 | 2 | 44 | 620 | 2 |

# 제2항 소속기관

## 1. 검찰청

검찰기구는 2018. 12. 31. 현재 대검찰청과 5개 고등검찰청, 18개 지방검찰청, 41개 지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찰청 조직 정원 및 현원은 아래와 같다.

| 표 1-7 | 검찰청 조직도



## | 표 1-8 |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정원

(단위 : 명)

| 구 분 | 계 | 검 사 | 일반직 |
|---|---|---|---|
| 인 원 | 10,696 | 2,252 | 8,444 |

## | 표 1-9 | 검사의 직위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 직 위 | 정 원 | 현 원 |
|---|---|---|
| 계 | 2,252 | 2,050 |
| 검찰총장 | 1 | 1 |
| 고등검사장급 | 6 | 6 |
| 대검검사급 | 31 | 29 |
| 검사 | 2,214 | 2,014 |

## | 표 1-10 | 검사 외의 검찰청소속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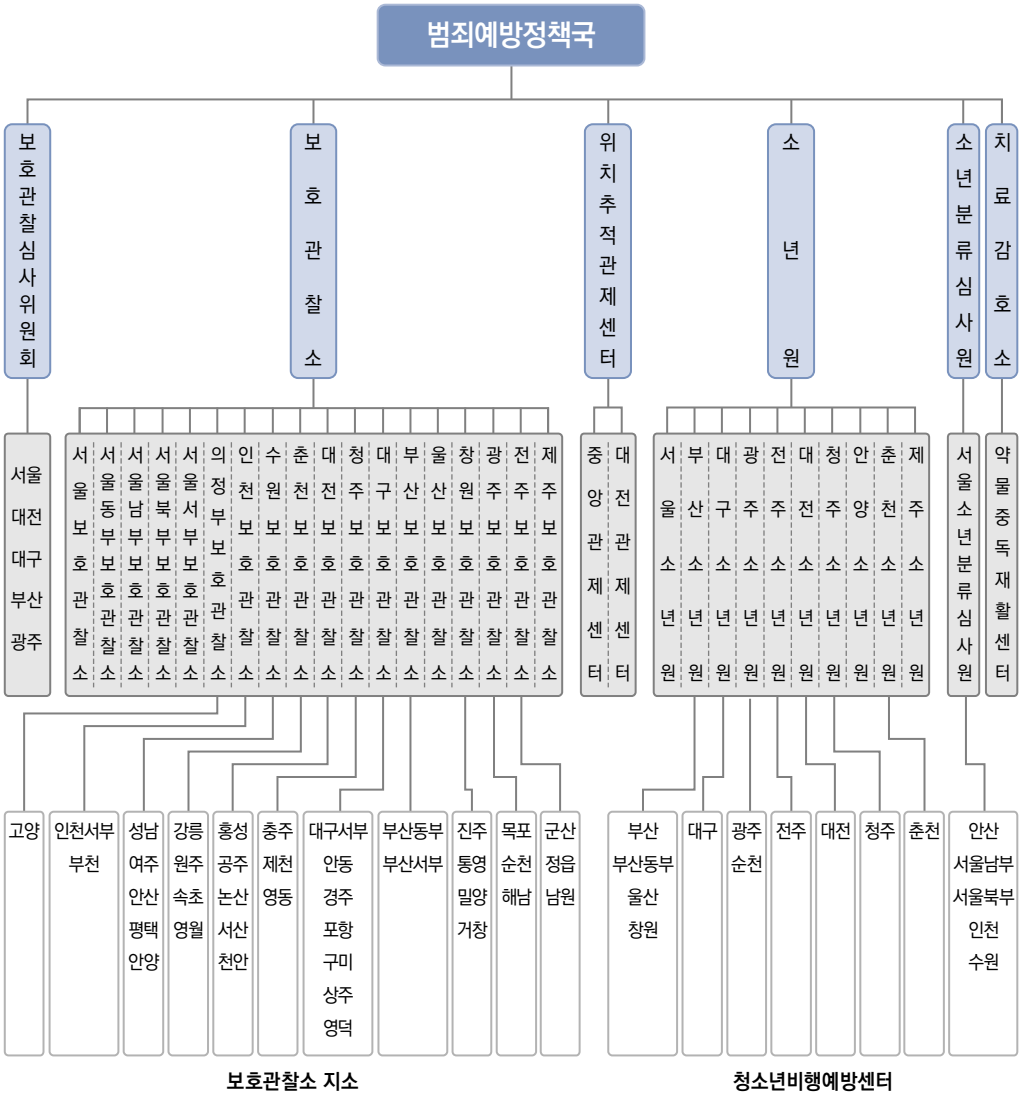
(단위 : 명)

| 직 급 | 정 원 | 현 원 |
|---|---|---|
| 계 | 8,444 | 8,445 |
| 고위공무원단 | 25 | 24 |
| 검찰부이사관 | 15 | 14 |
| 검찰수사서기관 | 182 | 165 |
| 임기제서기관 | 1 | 1 |
| 검찰사무관·수사사무관 | 457 | 411 |
| 검찰사무관·마약수사사무관 | 22 | 21 |
| 검찰주사 | 1,454 | 1,463 |
| 검찰주사보 | 1,847 | 1,848 |
| 검찰주사보(속기사) | 28 | 24 |
| 검찰서기 | 1,091 | 1,082 |
| 검찰서기보 | 859 | 862 |
| 마약수사직 | 272 | 263 |
| 통계직 | 1 | 1 |
| 전산직 | 232 | 224 |
| 시설·공업직 | 88 | 84 |
| 사서직 | 4 | 3 |
| 임업직 | 2 | 2 |
| 운전직 | 273 | 269 |
| 방호직 | 157 | 155 |
| 위생직 | 1 | 2 |
| 관리운영직 | 1,363 | 1,464 |
| 연구직 | 66 | 60 |
| 전문경력관 | 4 | 3 |
| 별정직 | 0 | 0 |

## 2. 보호기관

보호기관은 2018. 12. 31. 현재 18개 보호관찰소, 39개 보호관찰지소, 2개 위치추적 관제센터, 5개 보호관찰심사위원회, 10개 소년원, 1개 소년분류심사원, 16개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1개 치료감호소, 1개 약물중독재활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및 현원은 〈표 1-11〉 내지 〈표 1-14〉과 같다.

**| 표 1-11 |** 보호관찰·소년보호기관 조직도



| 표 1-12 | 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관찰소·위치추적관제센터의 직급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 직 급 | 정 원 | 현 원 |
|---|---|---|
| 계 | 1,609 | 1,563 |
| 고위공무원단 | 1 | 1 |
| 고위공무원단(임기제) | 2 | 2 |
|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 4 | 3 |
| 서기관 | 29 | 25 |
| 서기관(임기제) | 3 | 3 |
|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 | 6 | 6 |
| 보호사무관 | 189 | 187 |
| 보호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 | 1 | 1 |
| 보호주사 | 263 | 251 |
| 전산주사 | 2 | 3 |
| 보호주사보 | 355 | 349 |
| 보호주사보또는전산주사보 | 4 | 2 |
| 보호서기 | 348 | 328 |
| 보호서기또는전산서기 | 1 | 1 |
| 공업서기 | 4 | 5 |
| 운전서기 | 2 | 2 |
| 보호서기보 | 313 | 300 |
| 보호서기보또는전산서기보 | 1 | 1 |
| 공업서기보 | 1 | 2 |
| 운전서기보 | 61 | 61 |
| 방호서기보 | 15 | 16 |
| 관리운영직 | 4 | 14 |

**| 표 1-13 |**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소속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 직 급 | 정 원 | 현 원 |
|---|---|---|
| 계 | 872 | 854 |
| 고위공무원단 | 2 | 2 |
| 서기관 | 16 | 16 |
| 기술서기관 | 9 | 7 |
|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 | 9 | 6 |
| 보호사무관 | 45 | 45 |
| 의무사무관 | 13 | 7 |
| 보호사무관 또는 의무사무관 | 2 | 2 |
| 보호주사 | 97 | 96 |
| 공업주사 | 3 | 3 |
| 시설주사 | 1 | 1 |
| 간호주사 | 3 | 3 |
| 보호주사보 | 170 | 170 |
| 공업주사보 | 3 | 4 |
| 의료기술주사보 | 1 | 1 |
| 간호주사보 | 12 | 11 |
| 보호서기 | 167 | 165 |
| 보호서기 또는 간호서기 | 1 | 1 |
| 공업서기 | 5 | 6 |
| 시설서기 | 2 | 2 |
| 식품위생서기 | 7 | 6 |
| 보호서기 또는 식품위생서기 | 2 | 2 |
| 조리서기 | 1 | 1 |
| 방호서기 | 1 | 0 |
| 보호서기보 | 148 | 147 |
| 공업서기보 | 8 | 8 |
| 식품위생서기보 | 4 | 4 |
| 보호서기보 또는 식품위생서기보 | 3 | 0 |
| 운전서기보 | 23 | 23 |
| 조리서기보 | 56 | 55 |
| 방호서기보 | 20 | 21 |
| 관리운영직군 | 16 | 18 |
| 전문경력관나군(직업훈련담당) | 22 | 21 |

**| 표 1-14 |** 치료감호소의 직급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 직 급 | 정 원 | 현 원 |
|---|---|---|
| 계 | 419 | 391 |
| 고위공무원단 | 2 | 0 |
|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 1 | 1 |
|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 | 1 | 0 |
| 서기관 | 1 | 1 |
| 기술서기관 | 16 | 7 |
| 보호사무관 | 2 | 2 |
| 보호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 2 | 2 |
| 의무사무관 | 2 | 2 |
| 약무사무관 | 1 | 1 |
| 간호사무관 | 2 | 2 |
| 보건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 | 1 | 1 |
| 보호주사 | 3 | 2 |
| 보호주사 또는 행정주사 | 5 | 5 |
| 약무주사 | 2 | 0 |
| 간호주사 | 22 | 20 |
| 간호조무주사 | 2 | 2 |
| 보건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 4 | 4 |
| 의료기술주사 | 1 | 1 |
| 방호주사 | 1 | 1 |
| 보호주사보 | 5 | 5 |
| 보호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 | 4 | 2 |
| 약무주사보 | 3 | 5 |
| 간호주사보 | 51 | 45 |
| 간호조무주사보 | 6 | 5 |
| 보건주사보 또는 의료기술주사보 | 2 | 2 |
| 의료기술주사보 | 2 | 2 |
| 시설주사보 | 1 | 1 |
| 전산주사보 | 1 | 1 |
| 공업주사보 | 1 | 2 |
| 방송통신주사보 | 1 | 1 |
| 조리주사보 | 1 | 1 |
| 기계운영주사보 | 1 | 1 |

| 직 급 | 정 원 | 현 원 |
|---|---|---|
| 보 호 서 기 | 6 | 6 |
| 보호서기 또는 행정서기 | 5 | 5 |
| 공 업 서 기 | 2 | 2 |
| 간 호 서 기 | 53 | 51 |
| 의 료 기 술 서 기 | 3 | 3 |
| 간 호 조 무 서 기 | 15 | 14 |
| 전 기 운 영 서 기 | 1 | 1 |
| 기 계 운 영 서 기 | 2 | 2 |
| 보호서기보 또는 행정서기보 | 2 | 2 |
| 식 품 위 생 서 기 보 | 1 | 1 |
| 시 설 서 기 보 | 1 | 1 |
| 공 업 서 기 보 | 1 | 0 |
| 운 전 서 기 보 | 3 | 3 |
| 간 호 조 무 서 기 보 | 124 | 123 |
| 조 리 서 기 보 | 17 | 17 |
| 방 호 서 기 보 | 12 | 12 |
| 관 리 운 영 직 군 | 4 | 6 |
| 전문경력관가군(의료시설담당) | 1 | 1 |
| 전문경력관나군(작업치료담당) | 1 | 1 |
| 전문경력관나군(사회사업담당) | 4 | 3 |
| 전문경력관나군(재활치료담당) | 1 | 1 |
| 전문경력관나군(직업훈련담당) | 5 | 4 |
| 전문경력관다군(작업치료담당) | 1 | 1 |
| 전문경력관다군(사회사업담당) | 1 | 1 |
| 전문경력관다군(특수치료담당) | 1 | 1 |
| 전문경력관다군(직업훈련담당) | 2 | 2 |

# 3. 교정기관

2018. 12. 31. 현재 법무부 산하 전국의 교정기관은 중간 감독기관인 4개의 지방 교정청과 38개의 교도소, 11개의 구치소, 3개의 지소 등 총 56개소에 이르고 있다. 또한 2010. 12. 1. 개청한 국내 최초 민영 교도소가 운영되고 있다.

소속 교정기관의 교정공무원 정원은 15,999명이며, 2018. 12. 31. 현재 15,905명의 교정공무원이 수용관리와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2018년 소속 교정기관 및 교정공무원 현황은 아래와 같다.

| 표 1-15 | 교정기관 조직도



**| 표 1-16 |** 교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 직 급 | 정 원 | 현 원 |
|---|---|---|
| 계 | 15,999 | 15,905 |
| 고위공무원 | 19 | 18 |
| 부이사관(교정) | 7 | 7 |
| 서기관(교정) | 97 | 93 |
| 교정관 | 340 | 336 |
| 교감 | 1,421 | 2,857 |
| 교위 | 1,751 | 6,440 |
| 교사 | 5,406 | 2,862 |
| 교도 | 5,864 | 2,241 |
| 의료직 | 273 | 242 |
| 식품위생직 | 64 | 64 |
| 기술직·기타 | 273 | 265 |
| 운전직 | 261 | 257 |
| 전문경력관 | 119 | 116 |
| 관리운영직 | 100 | 104 |
| 기록연구사 | 4 | 3 |

# 4. 출입국기관

2018. 12. 31. 현재 법무부 소속 출입국기관은 6개 출입국·외국인청, 13개 출입국·외국인사무소, 2개 외국인보호소, 1개 센터 및 24개 출장소로 구성되어 있다. 출입국기관의 공무원 정원은 2,330명이며, 현원은 2,270명이고, 세부현황은 아래와 같다.

**| 표 1-17 |** 출입국기관 조직도




(6개 청, 13개 사무소, 2개 보호소, 1개 센터, 24개 출장소)

**| 표 1-18 |** 출입국기관 소속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 구 분 | 정 원 | 현 원 |
|---|---|---|
| 계 | 2,330 | 2,270 |
| 고 위 공 무 원 | 3 | 3 |
| 부 이 사 관 | 3 | 3 |
| 서 기 관 | 26 | 25 |
| 출 입 국 관 리 사 무 관 | 108 | 97 |
| 출 입 국 관 리 주 사 | 373 | 361 |
| 출 입 국 관 리 주 사 보 | 627 | 614 |
| 출 입 국 관 리 서 기 | 621 | 594 |
| 출 입 국 관 리 서 기 보 | 454 | 460 |
| 전 산 직 | 44 | 44 |
| 의 무 직 | 3 | 3 |
| 간 호 직 | 3 | 3 |
| 관 리 운 영 직 군 등 | 65 | 63 |

# 5.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은 검사, 검찰·보호·출입국관리직 공무원 교육을 담당하는 기획부, 교정직 공무원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교정연수부,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위원, 원내 일반 운영을 총괄하는 총무과, 로스쿨 출신 신임검사 교육·로스쿨 지원, 국제교류,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특별사법경찰·국가송무 수행자 등의 교육을 맡고 있는 용인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8. 12. 31. 현재 직급별 정·현원은 아래와 같다.

**| 표 1-19 |** 법무연수원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 구 분 | 정 원 | 현 원 |
|---|---|---|
| 계 | 130 | 157 |
| 검 사 | 14 | 26 |
| 고 위 공 무 원 | 6 | 1 |
| 서 기 관 · 검 찰 수 사 서 기 관 등 | 7 | 6 |
| 행 정 사 무 관 · 교 정 관 등 | 19 | 19 |
| 행 정 주 사 · 교 감 등 | 26 | 35 |
| 행 정 주 사 보 · 교 위 등 | 22 | 36 |
| 검 찰 서 기 · 교 사 등 | 26 | 30 |
| 행 정 서 기 보 · 운 전 서 기 보 등 | 10 | 4 |

# 제3절 예산·시설

## 1. 예 산

### 가. 개 요

2018년도 법무부 예산은 법무행정의 비전인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을 위해 교정시설 수용자의 인권 개선과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 확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 강화, 범죄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 정신질환 범죄로부터 국민불안 해소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교도작업특별회계를 합하여 세입이 전년보다 10.0% 증액된 2조 443억 9,700만 원, 세출이 10.4% 증액된 3조 6,845억 3,500만 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1,011억 4,500만 원으로 회계별 내역은 〈표 1-20〉와 같다.

**| 표 1-20 |** 2018년도 예산 및 기금

○ 총 규 모

(단위 : 백만 원)

| 구 분 | | 2017 예산 | | 2018 예산 (B) | 2017 대비 | |
|---|---|---|---|---|---|---|
| | | 본예산(A) | 추경 | | 증△감 (B-A) | % |
| 예산 | 세 입 | 1,858,895 | 1,858,895 | 2,044,397 | 185,502 | 10.0 |
| | 세 출 | 3,337,774 | 3,385,352 | 3,684,535 | 346,761 | 10.4 |
| 기금 | 수 입 | 101,869 | 101,869 | 101,145 | △724 | △0.7 |
| | 지 출 | 101,869 | 101,869 | 101,145 | △724 | △0.7 |

○ 일반회계

(단위 : 백만 원)

| 구 분 | 2017 예산 | | 2018 예산 (B) | 2017 대비 | |
|---|---|---|---|---|---|
| | 본예산(A) | 추경 | | 증△감 (B-A) | % |
| 세 입 | 1,756,682 | 1,756,682 | 1,914,472 | 157,790 | 9.0 |
| 세 출 | 3,235,561 | 3,283,139 | 3,554,610 | 319,049 | 9.9 |

○ 교도작업 특별회계

(단위 : 백만 원)

| 구 분 | 2017 예산 | | 2018 예산 (B) | 2017 대비 | |
|---|---|---|---|---|---|
| | 본예산(A) | 추경 | | 증△감(B-A) | % |
| 세 입 | 102,213 | 102,213 | 129,925 | 27,712 | 27.1 |
| 세 출 | 102,213 | 102,213 | 129,925 | 27,712 | 27.1 |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단위 : 백만 원)

| 구 분 | 2017 기금 | | 2018 기금 (B) | 2017 대비 | |
|---|---|---|---|---|---|
| | 본예산(A) | 수정 | | 증△감(B-A) | % |
| 수 입 | 101,869 | 101,869 | 101,145 | △724 | △0.7 |
| 지 출 | 102,213 | 102,213 | 101,145 | △724 | △0.7 |

## 나. 일반회계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세입이 전년보다 9.0% 증액된 1조 9,145억 원, 세출이 전년보다 9.9% 증액된 3조 5,546억 원으로 정부 일반 회계 예산 301조 4,172억 원에 대한 점유율은 세입이 0.6%, 세출이 1.2%이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3조 5,546억 원을 프로그램별로 보면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구성된 행정 지원이 67.9%인 2조 4,126억 원, 검찰활동이 8.0%인 2,834억 원, 교정활동이 8.4%인 2,986억 원이며, 기타 법무활동·출입국관리·범죄예방활동·법무교육훈련·법무시설조성 등 8개 프로그램이 15.8%인 5,600억 원이다. 주요 경비별·사업비별·프로그램별 예산 내역은 〈표 1-21〉 내지 〈표 1-23〉과 같다.

**| 표 1-21 |** 주요 경비별 예산내역(세출)

(단위 : 백만 원)

| 구 분 | 2017 예산 | | 2018 예산 (B) | 2017 대비 | |
|---|---|---|---|---|---|
| | 본예산(A) | 추경 | | 증△감 (B-A) | % |
| 계 | 3,235,561 | 3,283,139 | 3,554,610 | 319,049 | 9.9 |
| 인 건 비 | 2,064,045 | 2,064,045 | 2,223,896 | 159,851 | 7.7 |
| 기 본 경 비 | 142,636 | 142,636 | 142,804 | 168 | 0.1 |
| 사 업 비 | 948,771 | 996,349 | 1,107,800 | 159,029 | 16.8 |
| 기금전출금 | 80,110 | 80,110 | 80,110 | - | - |

| 표 1-22 | 사업비 예산내역

(단위 : 백만 원)

| 사 업 명 | 2017 예산 | | 2018 예산 (B) | 2017 대비 | |
|---|---|---|---|---|---|
| | 본예산 (A) | 추경 | | 증△감 (B-A) | % |
| 계 | 948,771 | 996,349 | 1,107,800 | 159,029 | 16.8 |
| • 국가송무수행및공익법무관운영 | 4,060 | 4,060 | 2,273 | △1,787 | △44.0 |
| • 국가배상금지급 | 100,000 | 100,000 | 200,000 | 100,000 | 100.0 |
| • 국제거래및국제통상법률지원 | 1,244 | 1,244 | 1,138 | △106 | △8.5 |
| • 개발도상국법제정비지원(ODA) | 162 | 162 | 167 | 5 | 3.1 |
| • 국제투자분쟁중재수행및대응 | 1,814 | 1,814 | - | △1,814 | △100.0 |
| • 기업환경지수개선 | 331 | 331 | 298 | △33 | △10.0 |
| • 국민편익증진법제정비 | 1,290 | 1,290 | 1,157 | △133 | △10.3 |
| • 성장동력확충을위한기업법제선진화 | 2,423 | 2,423 | 4,596 | 2,173 | 89.7 |
| • 변호사시험및사법시험관리 | 3,738 | 3,738 | 3,190 | △548 | △14.7 |
| • 정부법무공단운영지원 | 462 | 462 | 416 | △46 | △10.0 |
| • 공증제도운영및활성화 | 2,001 | 2,001 | 572 | △1,429 | △71.4 |
| • 변호사제도의선진화 | 1,085 | 1,085 | 2,378 | 1,293 | 119.2 |
| • 통일대비법률통합실질화 | 564 | 564 | 503 | △61 | △10.8 |
| • 법률구조 | 47,742 | 47,742 | 50,264 | 2,522 | 5.3 |
| • 서민법률보호를위한법률홈닥터 | 4,235 | 4,235 | 4,227 | △8 | △0.2 |
|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2,494 | 2,494 | 3,343 | 849 | 34.0 |
| • 인권교육 | 219 | 219 | 219 | - | - |
| • 법무검찰조직문화개선을위한양성평등교육 | 150 | 150 | 150 | - | - |
| • 아동인권증진 | 180 | 180 | 180 | - | - |
| • 국제인권역량강화및국제인권DB구축 | 91 | 91 | 129 | 38 | 41.8 |
|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 1,843 | 1,843 | 269 | △1,574 | △85.4 |
| • 이민정책개발지원 | 278 | 278 | 410 | 132 | 47.5 |
| • IOM이민정책연구원운영 | 1,298 | 1,298 | 1,417 | 119 | 9.2 |
| • 출입국사무소시설운영 | 35,312 | 35,540 | 41,311 | 5,999 | 17.0 |
| • 외국인등록증발급 수입대체경비 | 3,815 | 3,815 | 4,116 | 301 | 7.9 |
| • 외국인보호관리 | 10,597 | 10,597 | 12,487 | 1,890 | 17.8 |
| • 외국인사회통합지원 | 10,961 | 10,961 | 11,610 | 649 | 5.9 |
| • 외국인체류질서확립 | 7,753 | 7,753 | 7,037 | △716 | △9.2 |
| •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운영 | 6,532 | 6,532 | 6,852 | 320 | 4.9 |
| • 검찰청시설운영 | 51,467 | 57,266 | 53,809 | 2,342 | 4.6 |

| 사 업 명 | 2017 예산 | | 2018 예산 (B) | 2017 대비 | |
|---|---|---|---|---|---|
| | 본예산 (A) | 추경 | | 증△감 (B-A) | % |
| • 검찰국외훈련및국제형사협력지원 | 5,900 | 5,900 | 6,450 | 550 | 9.3 |
| • 과학수사인프라구축 | 10,632 | 10,632 | 6,712 | △3,920 | △36.9 |
| • 국제형사협력지원(ODA) | 782 | 782 | 782 | - | - |
| • 검찰업무정보화(정보화) | 34,292 | 34,292 | 31,945 | △2,347 | △6.8 |
| • 첨단범죄및디지털수사(정보화) | 13,413 | 13,413 | 13,117 | △296 | △2.2 |
| • 검찰수사지원 | 20,027 | 20,027 | 20,074 | 47 | 0.2 |
| • 수사일반 | 67,588 | 67,588 | 77,515 | 9,927 | 14.7 |
| • 공안수사 | 6,100 | 6,100 | 5,601 | △499 | △8.2 |
| • 국민생활침해사범단속 | 14,287 | 14,287 | 13,354 | △933 | △6.5 |
| • 마약수사 | 5,374 | 5,374 | 4,760 | △614 | △11.4 |
| • 성범죄등4대악사범단속 | 5,339 | 5,339 | 4,561 | △778 | △14.6 |
| • 안전비리등민관유착비리사범단속 | 9,218 | 9,218 | 8,350 | △868 | △9.4 |
| • 공소유지 | 1,153 | 1,153 | 1,461 | 308 | 26.7 |
| • 형집행및범죄수익환수 | 1,485 | 1,485 | 1,285 | △200 | △13.5 |
| • 형사보상 | 27,500 | 27,500 | 33,213 | 5,713 | 20.8 |
| • 형사법정비 | 439 | 439 | 439 | - | - |
| • 교도소행정지원 | 21,382 | 21,382 | 27,116 | 5,734 | 26.8 |
| • 교정시설장비운용및현대화 | 48,631 | 87,543 | 67,062 | 18,431 | 37.9 |
| • 교정시설수용관리및공공요금 | 189,240 | 189,240 | 197,038 | 7,798 | 4.1 |
| • 교정교화 | 7,512 | 7,512 | 7,358 | △154 | △2.1 |
| • 범죄예방기관시설운영 | 6,033 | 7,385 | 6,084 | 51 | 0.8 |
| • 소년원생수용 | 16,983 | 16,983 | 18,360 | 1,377 | 8.1 |
| • 청소년비행예방 | 5,058 | 5,058 | 5,277 | 219 | 4.3 |
| • 갱생보호활동 | 27,218 | 28,183 | 28,110 | 892 | 3.3 |
| • 치료감호자수용관리 | 7,552 | 7,552 | 7,307 | △245 | △3.2 |
| • 보호관찰활동 | 10,150 | 10,150 | 10,832 | 682 | 6.7 |
| • 특정범죄관리 | 14,845 | 14,845 | 17,072 | 2,227 | 15.0 |
| • 법질서준수및법교육활동 | 4,829 | 4,829 | 4,632 | △197 | △4.1 |
| • 기타법무시설개보수및확충 | 13,392 | 13,392 | 12,631 | △761 | △5.7 |
| • 연수원시설관리및교육시설장비현대화 | 4,046 | 4,368 | 3,872 | △174 | △4.3 |
| • 법무검찰공무원등교육운영및개선 | 1,364 | 1,364 | 1,483 | 119 | 8.7 |
| • 법무연수원수입대체경비 | 512 | 512 | 486 | △26 | △5.1 |
| • 로스쿨출신신임검사교육및로스쿨지원 | 887 | 887 | 843 | △44 | △5.0 |

| 사 업 명 | 2017 예산 | | 2018 예산 (B) | 2017 대비 | |
|---|---|---|---|---|---|
| | 본예산 (A) | 추경 | | 증△감 (B-A) | % |
| •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 717 | 717 | 681 | △36 | △5.0 |
| • 국민불편해소를위한민원정책피드백 | 135 | 135 | 135 | - | - |
| • 행정서비스지원인력경비 | 2,849 | 2,849 | 4,943 | 2,094 | 73.5 |
| • 정책연구개발사업(R&D) | 46 | 46 | 48 | 2 | 4.3 |
| • 법무행정정보화(정보화) | 27,472 | 27,472 | 31,217 | 3,745 | 13.6 |
| • 서민사회적약자지원법무정책홍보 | 887 | 887 | 919 | 32 | 3.6 |
| •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정보화) | 8,148 | 8,148 | 9,118 | 970 | 11.9 |
| • 특별감찰활동 | 1,213 | 1,213 | 1,039 | △174 | △14.3 |

### | 표 1-23 | 프로그램별 예산내역(세출)

(단위 : 백만 원)

| 구 분 | 2017 예산 | | 2018 예산 (B) | 2017 대비 | |
|---|---|---|---|---|---|
| | 계 | 추경 | | 증△감 (B-A) | % |
| | 3,235,561 | 3,283,139 | 3,554,610 | 319,049 | 9.9 |
| • 법무활동 | 119,174 | 119,174 | 216,688 | 97,514 | 81.8 |
| • 인권활동 | 56,954 | 56,954 | 58,781 | 1,827 | 3.2 |
| • 출입국관리 | 76,546 | 76,774 | 85,240 | 8,694 | 11.4 |
| • 검찰활동 | 274,996 | 280,795 | 283,428 | 8,432 | 3.1 |
| • 교정활동 | 266,765 | 305,677 | 298,574 | 31,809 | 11.9 |
| • 범죄예방활동 | 92,668 | 94,985 | 97,674 | 5,006 | 5.4 |
| • 법무시설조성 | 13,392 | 13,392 | 12,631 | △761 | △5.7 |
| • 특별감찰관활동 | 2,408 | 2,408 | 2,232 | △176 | △7.3 |
| • 법무교육훈련 | 6,809 | 7,131 | 6,684 | △125 | △1.8 |
| • 행정지원 | 2,245,740 | 2,245,740 | 2,412,568 | 166,828 | 7.4 |
| • 기금전출금 | 80,110 | 80,110 | 80,110 | - | - |

## 다. 교도작업특별회계

2018년도 세입과 세출예산은 동일하게 1,299억 2,500만 원이며, 세입예산은 작업생산품 판매수익 759억 6,6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80억 원, 작업부산물 판매수입 등 잡수입 3억 3,800만 원, 기금예탁원금회수 436억 4,200만 원, 기금예탁이자수입 19억 7,9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본경비 5억 8,600만 원, 교도작업 528억 8,100만 원, 직업훈련 58억 2,600만 원, 시설보완 72억 9,700만 원,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633억 3,500만 원으로 〈표 1-24〉와 같다.

**| 표 1-24 |** 교도작업특별회계 세부내역

가. 세 입

(단위 : 백만 원)

| 구 분 | 2017 예산 | | 2018 예산 (B) | 2017 대비 | |
|---|---|---|---|---|---|
| | 본예산(A) | 추경 | | 증△감 (B-A) | % |
| 계 | 102,213 | 102,213 | 129,925 | 27,712 | 27.1 |
| 교도작업수입 | 71,883 | 71,883 | 75,966 | 4,083 | 5.7 |
| 잡수입 | 328 | 328 | 338 | 10 | 3.0 |
| 전년도이월금 | 17,100 | 17,100 | 8,000 | △9,100 | △53.2 |
| 기금예탁원금회수 | 12,000 | 12,000 | 43,642 | 31,642 | 263.7 |
| 기금예탁이자수입 | 902 | 902 | 1,979 | 1,077 | 119.4 |

나. 세 출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 2017 예산 | | 2018 예산 (B) | 2018 대비 | | 내 역 | |
|---|---|---|---|---|---|---|---|
| | 본예산 (A) | 추경 | | 증△감 (B-A) | % | | |
| 계 | 102,213 | 102,213 | 129,925 | 27,712 | 27.1 | | |
| 기본경비 | 596 | 596 | 586 | △10 | △1.7 | • 운영비 등 | 586 |
| 교도작업 | 49,610 | 49,610 | 52,881 | 3,271 | 6.6 | • 작업재료비<br>• 보 상 금<br>• 일반수용비 등 | 25,051<br>20,646<br>7,184 |
| 직업훈련 | 5,675 | 5,675 | 5,826 | 151 | 2.7 | • 훈련재료비<br>• 자산취득비<br>• 일반수용비 등 | 1,921<br>784<br>3,121 |
| 시설보완 | 2,215 | 2,215 | 7,297 | 5,082 | 229.4 | • 작업장 신축 등<br>• 작업장비구입비 | 5,844<br>1,453 |
| 예비비 | 475 | 475 | - | △475 | 순감 | • 예비비 사업 폐지 | |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금 | 43,642 | 43,642 | 63,335 | 19,693 | 45.1 | | |

## 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

2018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동일하게 1,011억 4,500만 원이며, 수입은 변상금 10억 7,500만 원,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199억 6,000만 원이고, 일반회계 전입금 801억 1,000만 원, 지출은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 368억 600만 원, 여성가족부 범죄피해자보호 318억 9,600만 원, 보건복지부 범죄피해자보호 193억 200만 원, 운영비 5,600만 원, 여유자금 130억 8,5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표 1-25〉와 같다.

**| 표 1-25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세부내역

가. 수 입

(단위 : 백만 원)

| 구 분 | 2017 기금 | | 2018 기금 (B) | 2017 대비 | |
|---|---|---|---|---|---|
| | 본예산(A) | 추경 | | 증△감 (B-A) | % |
| 계 | 101,869 | 101,869 | 101,145 | △724 | △0.7 |
| 변 상 금 | 724 | 724 | 1,075 | 351 | 48.5 |
|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 21,035 | 21,035 | 19,960 | △1,075 | △5.1 |
| 전 입 금 | 80,110 | 80,110 | 80,110 | - | - |

나. 세 출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 2017 기금 | | 2018 기금 (B) | 2017 대비 | | 내 역 |
|---|---|---|---|---|---|---|
| | 본예산 (A) | 추경 | | 증△감 (B-A) | % | |
| 계 | 101,869 | 101,869 | 101,145 | △724 | △0.7 | |
|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 | 32,208 | 32,208 | 36,806 | 4,598 | 14.3 | •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범죄피해 구조금 등 6개 사업 |
| 여가부 범죄피해자보호 | 33,790 | 33,790 | 31,896 | △1,894 | △5.6 | • 성폭력 피해자 지원 |
| 보건복지부 범죄피해자보호 | 18,297 | 18,297 | 19,302 | 1,005 | 5.5 | •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 운 영 비 | 54 | 54 | 56 | 2 | 3.7 | |
| 여 유 자 금 | 17,520 | 17,520 | 13,085 | △4,435 | △25.3 | |

# 2. 시 설

시설담당관실 주무관 김희준

## 가. 개 요

법무시설이란 법무행정을 구현하는 청사시설로 검찰청과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보호관찰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법무연수원 등을 말하며 법무부에는 검찰청사 64개, 보호관찰소 63개, 소년원 및 비행예방센터 29개, 교정시설 56개, 출입국관리사무소 45개 등 총 257개의 법무시설이 있다.

법무부에서는 5년 단위 중기사업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신설되는 기관과 노후하고 협소한 법무시설을 우선으로 확충하여 매년 5개정도의 법무시설을 개청해 나가고 있다.

## 나. 국민과 함께하는 법무시설 조성

법무시설 조성시 지역주민 및 수요기관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TF팀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협의를 하였으며, 법무시설 청사 외곽 담장 낮추기, 체육시설 주민개방, 교정시설의 청사 미관 개선 및 아름다운 주벽과 녹지 가꾸기 등으로 주민친화형 법무시설을 조성하였고, 그 결과 2018년 법무시설(서울동부구치소 등 4개 기관) 사용자 및 외부전문가 '만족도 조사'에서 90.7점의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또한, 지열 및 태양광 발전설비를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 도입 확대, 고효율 에너지기기 적용 등 에너지 1등급의 친환경 법무시설을 조성하였다.

## 다. 법무시설 조성사업 단계별 추진상황

2018년 준공사업은 중앙지검 구치감 증축, 평택지청 증축, 대전고검 어린이집 신축, 청주외국인보호소 행정동 증축, 남원보호관찰소 신축 총 5개 사업으로 모두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으며, 신규사업은 순천지청 증축, 원주준법지원센터 증축, 김천소년교도소 수용동 증축 총 3개 사업을 착공하였다. 계속사업은 전주지검 신축, 인천지검 부천지청 별관 증축, 서울남부지검 별관 증축, 대구교도소 신축, 거창구치소 신축, 속초교도소 신축, 전주소년원 신축,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신축, 서울남부 출입국사무소 신축, 수원고·지검 신축 총 10개 사업을

계속 추진 중이다.

법무시설 조성사업에 투입된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비는 총 1,289억 원으로 검찰시설에 472억 원(36.4%), 보호시설에 201억 원(15.6%), 교정시설에 510억 원(39.6%), 출입국관리시설에 108억 원(8.4%)을 집행하였다.

2018년도에 시행한 주요 법무시설 조성 사업 추진 실적은 아래와 같다.

**| 표 1-26 |** 2018년도 주요 법무시설 조성사업 추진실적

(단위 : 억 원)

| 구 분 | 공 사 명 | 규모(㎡) | | 소요예산 (총사업비) | 공사기간 |
|---|---|---|---|---|---|
| | | 부지 | 건물 | | |
| 준공 (5) | 중앙지검 구치감 증축 | 60,727 | 998 | 22 | '17. 4월~'17. 12월 |
| | 평택지청 증축 | 7,630 | 1,317 | 31 | '17. 12월~'18. 11월 |
| | 대전고검 어린이집 신축 | 30,741 | 990 | 23 | '17. 12월~'18. 12월 |
| | 청주외국인보호소 행정동 증축 | 22,507 | 2,056 | 63 | '16. 12월~'18. 6월 |
| | 남원보호관찰소 신축 | 1,534 | 1,230 | 26 | '17. 5월~'18. 4월 |
| 신규 (3) | 순천지청 증축 | 13,307 | 734 | 19 | '18. 11월~'19. 7월 |
| | 원주준법지원센터 증축 | 5,383 | 3,021 | 41 | '18. 4월~'19. 4월 |
| | 김천소년교도소 수용동 증축 | 105,926 | 994 | 29 | '18. 4월~'19. 2월 |
| 계속 (10) | 전주지검 신축 | 33,235 | 26,216 | 741 | '16. 12월~'19. 10월 |
| | 인천지검 부천지청 별관 증축 | 20,000 | 6,303 | 150 | '17. 12월~'19. 12월 |
| | 서울남부지검 별관 증축 | 13,818 | 8,384 | 174 | '17. 8월~'19. 8월 |
| | 대구교도소 신축 | 280,572 | 60,760 | 1,746 | '16. 11월~'19. 10월 |
| | 거창구치소 신축 | 160,818 | 19,844 | 835 | '15. 12월~'18. 10월 |
| | 속초교도소 신축 | 140,965 | 19,465 | 647 | '16. 7월~'19. 6월 |
| | 전주소년원 신축 | 34,756 | 9,013 | 272 | '16. 12월~'19. 2월 |
| |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신축 | 18,759 | 4,347 | 88 | '18. 3월~'20. 3월 |
| |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축 | 11,570 | 9,917 | 625 | '17. 12월~'19. 12월 |
| | 수원고·지검 신축* | 33,924 | 68,962 | 2,189 | '16. 11월~'19. 1월 |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위탁사업 : 수원고·지검

# 法務年鑑

# 02



# 업무실적

제1절 기획조정업무
제2절 정책 홍보 활동
제3절 법무업무
제4절 검찰업무
제5절 범죄예방업무
제6절 감찰·감사업무
제7절 인권업무
제8절 교정업무
제9절 출입국·외국인정책업무
제10절 검찰 과거사 진상 규명 업무

# 제1절 기획조정업무

## 1. 법무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탈검찰화 추진

혁신행정담당관실 주무관 유창환

### 1) 추진 배경

그 동안 법무부는 검찰 외에 교정, 출입국·외국인 정책, 범죄예방, 인권옹호 등 다양한 법무행정 사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실·국·본부장 7개 중 6개 직위에 모두 검사를 보임하는 등 주요 직위에 직제 상으로 검사만 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검사를 보임하여 왔다.

이로 인해 법무부는 주요 법무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검사가 1년 내지 3년의 짧은 인사 주기에 따라 이동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추진이 어렵고, 검찰 사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검찰의 시각만을 반영하여 정책을 추진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 2) 제도 개요

'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이 선정되었고, 그 세부과제로 법무부 탈검찰화도 포함되었다.

'17년 8월 법무부가 법무·검찰의 개혁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추진하기 위하여 외부위원들을 위촉하여 발족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 한인섭)에서는 제1차 권고안으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17년 8월부터 법무실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권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을 모두 외부 인사 또는 검사가 아닌 내부 공무원 출신으로 임명하는 등 탈검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탈검찰화의 지속적 추진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본연의 임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법무행정 영역에서 전문성과 지속성을 강화함은 물론 국민의 시각을 보다 충실히 반영한 법무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3) 추진 경과

'17년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친 직제 개정으로 법무부 검사 직위 61개 중 69%인 42개 직위에 비(非)검사도 보임이 가능하도록 복수직제화 하였으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제13차 권고안('18. 6월)을 수용하여 '18. 12월에는 검찰국 2개 과장 직위에도 비(非)검사 보임이 가능하도록 직제를 개정하였다.

**| 표 2-1 |** 탈검찰화 관련 법무부 직제 개정 현황

| 구분 | 개정일자 | 직제 개정 내용 | 비고 |
|---|---|---|---|
| 실·국·본부장 직위 | '17. 8. 1. | 3개 실·국·본부장 직위 보임범위 확대<br>- 검사 →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 • 기획조정실장<br>• 법무실장<br>• 범죄예방정책국장 |
| 국장급 직위 | '17.10.20. | 2개 국장급 직위 보임범위 확대<br>- 검사 →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 • 감찰관<br>• 법무심의관 |
| 과장급 직위 | '17.10.20. | 10개 과장급 직위 보임범위 확대<br>- 검사 → 검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 | • 감찰담당관<br>• 법무과장<br>• 국제법무과장<br>• 상사법무과장<br>• 국가송무과장<br>• 통일법무과장<br>• 법조인력과장<br>• 범죄예방기획과장<br>• 치료처우과장<br>• 인권조사과장 |
| | '18.12.31. | 2개 과장급 직위 보임범위 확대<br>- 검사 → 검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 | • 국제형사과장<br>• 형사법제과장 |
| 평검사 직위 | '17.10.20. | 27개 평검사 직위 보임범위 확대<br>- 검사 → 검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 | • 감찰관실 2개<br>• 기획조정실 2개<br>• 법무실 19개<br>• 범죄예방정책국 3개<br>• 인권국 1개 |

※ 2017년 8월 법무부 탈검찰화 추진 이후, 법무부 검사 직위 61개 중 44개(72%) 직위를 비(非)검사 보임이 가능하도록 복수직제화

직제 개정과 동시에 주요보직에 비(非)검사 임용을 추진하여 4개 실·국·본부장, 1개 국장급, 8개 과장급, 14개 평검사 등 총 27개 직위에 비(非)검사를 임용하였다.

먼저, 법무실장('17. 8. 22.),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17. 9. 4.), 인권국장('17. 9. 29.)을 각 법무행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로 보임하는 한편, 범죄예방정책국장('18. 4. 2.)은 보호직 공무원 출신 인사로 임용하여, 법무부 내 검사 보임 실·국·본부장 비율을 기존 85.7%(7명 중 6명)에서 28.6%(7명 중 2명)로 축소하였다.

**| 그림 2-1 |** 비(非)검사 실·국·본부장 임명



이용구 법무실장 임명(2017. 8. 22.)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임명(2017. 9. 4.)



황희석 인권국장 임명(2017. 9. 29.)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 임명(2018. 4. 2.)

또한, 국장급인 법무심의관을 외부에 개방하여 법제처 공무원 출신 인사로 임용하였으며, 범죄예방기획과장 등 8개 과장 직위 및 14개 평검사 직위에도 외부전문가, 내부 우수공무원 등 비(非)검사를 임용하였다.

| 표 2-2 | 법무부 검사 보임직위의 비(非)검사 보임 내역

| 구분 | 소속(직위) | 직급 | 임용일 | 비고 |
|---|---|---|---|---|
| 실·국·본부장 (4개) | 법무실장 | 고위공무원(가등급) | '17. 08. 22. | 외부 전문가 |
|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고위공무원(가등급) | '17. 09. 04. | 외부 전문가 |
| | 인권국장 | 고위공무원(나등급) | '17. 09. 29. | 외부 전문가 |
| | 범죄예방정책국장 | 고위공무원(나등급) | '18. 04. 02. | 내부 공무원 |
| 국장급(1개) | 법무심의관 | 고위공무원(나등급) | '18. 10. 01. | 외부 전문가 |
| 과장급(8개) | 인권정책과장 | 부이사관 | '17. 11. 16. | 내부 공무원 |
| | 보호정책과장 | 서기관 | '18. 04. 02. | 외부 전문가 |
| | 여성아동인권과장 | 서기관 | '18. 04. 02. | 외부 전문가 |
| | 국제법무과장 | 부이사관 | '18. 04. 09. | 외부 전문가 |
| | 상사법무과장 | 부이사관 | '18. 07. 23. | 외부 전문가 |
| | 범죄예방기획과장 | 부이사관 | '18. 08. 27. | 내부 공무원 |
| | 치료처우과장 | 서기관 | '18. 08. 27. | 내부 공무원 |
| | 인권구조과장 | 서기관 | '18. 09. 03. | 외부 전문가 |
| 평검사(14개) | 보호정책과 1개 직위 | 보호사무관 | '18. 02. 05. | 내부 공무원 |
| | 법무심의관실 3개 직위 | 행정사무관 | '18. 02. 05. | 외부 전문가 |
| | 법무과 1개 직위 | 행정사무관 | '18. 02. 05. | 외부 전문가 |
| | 국가송무과 1개 직위 | 행정사무관 | '18. 02. 05. | 외부 전문가 |
| | 국제법무과 2개 직위 | 행정사무관 | '18. 02. 05. | 외부 전문가 |
| | 통일법무과 1개 직위 | 행정사무관 | '18. 02. 05. | 외부 전문가 |
| | 인권구조과 1개 직위 | 행정사무관 | '18. 02. 05. | 외부 전문가 |
| | 범죄예방기획과 1개 직위 | 서기관 | '18. 02. 05. | 내부 공무원 |
| | 상사법무과 1개 직위 | 행정사무관 | '18. 02. 25. | 외부 전문가 |
| | 보호정책과 1개 직위 | 서기관 | '18. 08. 27. | 내부 공무원 |
| | 치료처우과 1개 직위 | 서기관 | '18. 08. 27. | 내부 공무원 |

### 4) 향후 계획

법무부는 탈검찰화를 통해 각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고품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탈검찰화로 입직한 인사의 공직사회 조기 적응을 위하여 신규 채용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실무에 대한 이해와 내부 소통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채용과정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블라인드 방식 등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내부 공무원을

보임하도록 하고 있다.

향후 인사시기에 맞추어 검사로 보임하고 있는 일정 직위를 선별하여 탈검찰화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탈검찰화로 신규 임용된 보임자들을 궁극적으로 법무행정에 정통한 인재로 양성함으로써 탈검찰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의 눈높이에 보다 충실한 법무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내부 혁신을 거듭해 나갈 것이다.

## 2. 국민이 체감하는 법무부 정부혁신 추진

혁신행정담당관실 주무관 최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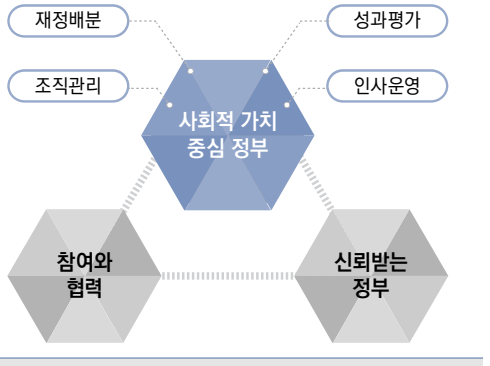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018년 3월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을 목표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법무부는 국민의 참여와 신뢰, 유관 부처와 협업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시행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체계적인 정부혁신 추진을 위해 정책기획관을 정부혁신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실·국·본부 실무진이 참여하는 '정부혁신 추진 실무단'을 구성·운영 하였다. 또한, 기획조정실장이 주재하고 실·국·본부 주무과장이 참석하는 '정부혁신 추진 현황 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법무부 정부혁신 추진현황 전체를 점검하고, 다양한 우수사례를 검토하여 시행하였다.

**| 그림 2-2 |** 정부혁신 추진 현황 점검회의 및 정부혁신 3대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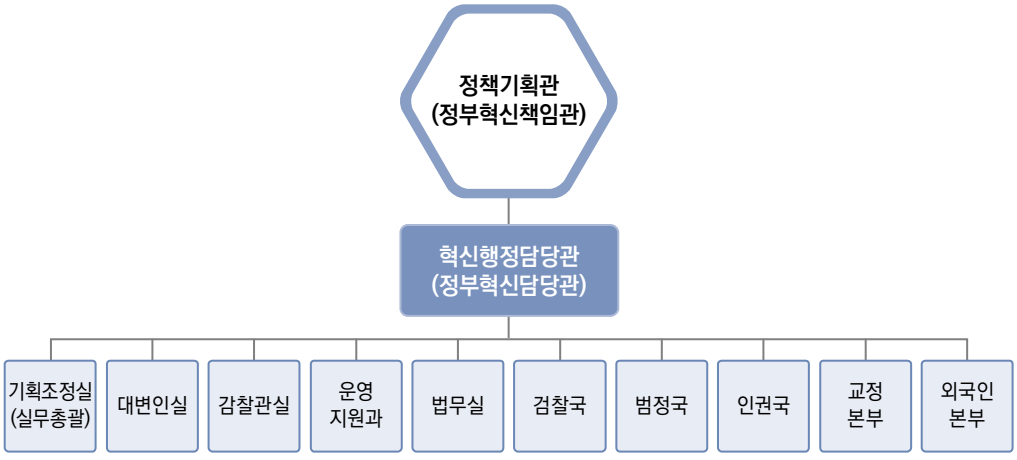


정부혁신 추진 현황 점검회의




정부혁신 3대 전략

| 그림 2-3 | 정부혁신 추진 실무단 구성도




## 2) 주요 성과

기존 효율과 성장 위주의 정부 운영 및 정책 설계 기준을 사회적 가치[1]에 중점을 두고 전면 전환하였다.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농어촌의 극심한 구인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행한 결과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통합 증진에 기여하였다. 공증 이용 시 촉탁인 등이 반드시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여 공증인을 직접 대면해야 하는 불편함(특히, 공증사무소가 없는 지역의 주민이나 재외국민은 공증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인터넷 화상공증'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편익이 증진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빈곤, 무지, 정신적·신체적 장애 등으로 제때 필요한 법률보호를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법률과 복지를 결합한 총체적인 해결책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홈닥터' 사업을 실시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보호를 한층 강화하였다.

법무부 고유 정책 및 행정 내부 분야까지 국민의 실질적 참여를 확대하고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사회봉사명령 집행방식을 전환하여 국민들로부터 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신청을 받아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하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실시,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투입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강화하였다.

행정안전부·국세청 등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 체류 외국인의 세금체납 정보를 확인 후, 체류기간 연장을 결정함으로써, 외국인의 세금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국가세수를 확충하는 공동목표를 달성하였다.

1)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인권, 노동권, 안전, 사회적 약자 배려,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등)

낡은 관행을 혁신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하고 국민에게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법무행정을 전환하였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법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정보 전달시스템인 '손안의 인공지능 법률서비스(AI) 버비'를 개시하여 일반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웹사이트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형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변호사 사무실이 없는 지역의 국민들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하여 읍·면·동 지역에 '마을변호사'를 배치, 물리적 거리를 해소하고 법률 복지를 향상시켰다.

이러한 노력들은 그 효과를 인정받아 각종 정부혁신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 표창 및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등을 수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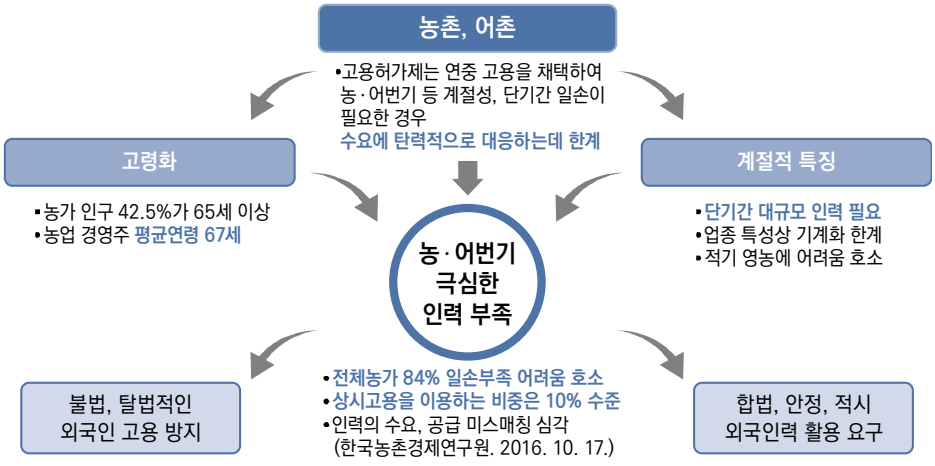
**| 표 2-3 |** 2018년 주요 수상내역

| 시기 | 주관부처 | 평가 항목 | 결 과 |
|---|---|---|---|
| '18. 7월 | 행정안전부 | 일하는 방식 혁신 우수사례 | 국무총리 표창「외국인 비자 연장 전, 세금 체납확인 제도」 |
| '18.10월 | 행정안전부 |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 국무총리상(은상) 수상「인터넷 화상공증」 |
| '18.11월 | 행정안전부 |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 행안부 장관상(동상) 수상「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

**| 표 2-4 |** 2018년 수상 제도 주요 내용

| 제 도 | 내 용 |
|---|---|
|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세금 체납 확인 제도 | 01 징세기관 ⇒ 법무부 자료 요청 → 만 19세 이상 합법체류 등록 외국인 자료<br>02 법무부 ⇒ 징세기관 외국인 자료제공 → 성명, 외국인 등록번호 신분구분<br>03 징세기관 ⇒ 법무부 체납 정보 제공 → 등록 외국인의 체납액, 전자 납부번호 등<br>04 출입국관리 공무원체납 확인/ 납부고지 → 외국인 비자연장 신청 시<br>05 체납액 납부 → 05 체납액 미납부<br>06 정상적* 비자연장 → 06 제한적** 비자연장 |

*정상적 비자연장 : 비자종류별로 차이는 있으나 통상 2~5년
**제한적 비자연장 : 원칙적으로 6개월 이하 허가

| 제 도 | 내 용 |
|---|---|
| 인터넷 화상 공증 |  |
|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  |

# 3. 법무행정개선 추진

혁신행정담당관실 주무관 김미선, 정대연

## 가. 추진배경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 지원을 목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민중심의 법무행정서비스 제공 기틀을 마련하고자 '국민·현장 중심의 행정제도 개선', '국민눈높이를 충족하고 조직의 변화를 주도할 창의적 인재육성', '소통·조화·배려의 조직문화 조성' 을 추진하였다.

## 나. 추진내용 및 성과

### 1) 창의 및 직무역량 강화, 조직문화 향상을 위한 변화관리 교육과정 운영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법무 행정능력 강화를 위해 사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2018년 변화관리 교육과정은 '창의 역량 강화', '조직문화 향상', '직무역량 강화' 3개 분야 13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여 3,760명의 직원이 참여하였다.

**| 표 2-5 |** 2018년도 변화관리 교육과정 운영(3개 분야 13개 과정, 3,760명 참여)

| 구분 | | 과정명 | 대상 | 인원 | 시기 | 비고 |
|---|---|---|---|---|---|---|
| 창의역량 강화 | | ① 솔루션 역량강화[2] | 솔루션 8팀 | 86 | 5 ~ 10월 | 3회 |
| | | ② 독서증진 | 전 직원 | 987 | 5 ~ 10월 | 6회 |
| 조직문화 향상 (활성화) | | ③ 비전스케치 | 소속기관 | 276 | 6 ~ 11월 | 15회 |
| | | ④ 재충전 감성여행 | 장기재직자 | 40 | 6월 | 1회 |
| | | ⑤ 워라밸 | 본부/소속기관 | 80 | 6 ~ 10월 | 4회 |
| 직무역량 강화 | 교육 | ⑥ 전화외국어 | 전 직원 | 240 | 5 ~ 10월 | 3회 |
| | 워크숍 | ⑦ 지식행정리더 | 지식활동 우수직원 | 71 | 4월 | |
| | | ⑧ 비상대비 | 업무 담당자 | 34 | 5 ~ 6월 | |
| | | ⑨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 업무 담당자 | 148 | 5 ~ 6월 | |
| | | ⑩ 청렴업무 | 업무 담당자 | 121 | 7월 | |
| | | ⑪ 보호관찰업무 | 업무 담당자 | 65 | 10월 | |
| | | ⑫ 인권행정 | 인권국 직원 | 59 | 11 ~ 12월 | |
| | 연구모임 | ⑬ 학습동아리지원 | 우수 학습동아리(5팀)[3] | 1,553 | 11월 | |
| 합계 | | 13개 과정 | | 3,760 | | |

### 2) 국민·현장 중심의 행정제도 개선 및 법무행정서비스 제공 지원

현장직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하여 자체 '행정개선 관리시스템'을 운영, 전 직원이 자유롭고 손쉬운 방법으로 제안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2018년 938건의 행정개선 제안을 접수하여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사전예약 창구 확대', '민원인에 대한 수용자 영치금계좌 안내 출력 서비스 제공' 등 총 115건을 채택하였으며, 채택제안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안자의 소속기관 행정개선 마일리지 부여, 우수기관 및 직원에 대한 표창 등 동기부여 방안을 다양화하여, 직원들의 관심과 지지 유도를 통한 행정개선제도 활성화에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2018. 4월 자체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교정민원콜센터1363 구축', '손안의 인공지능 법률비서 2세대 서비스 제공' 등 제도개선 우수사례 10건을 선정하여 포상하였다. 특히 2018. 11월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시·도, 시·군·구, 시·도교육청)이 참여한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법무부 자체 우수사례경진대회를 거쳐 선정된 "농어촌 일손 부족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동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 하여 이를 공유·확산함으로써 지속적인 행정제도 개선 추진력 확보 및 조직 내 창의적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다.

**| 표 2-6 |** 법무행정제도 개선 인센티브 부여 기준

| 분야 | 일시 | 인센티브 | 비고 |
|---|---|---|---|
| 제도개선 아이디어 제안 채택 | 매월 | • 포상금지급<br>• 상시학습시간 인정<br>• 행정개선마일리지[4] 부여 | 개인 |
| | | • 행정개선마일리지 부여 | 채택기관(부서) |
| 행정개선 우수기관·공무원 포상 | 연말 | • 장관 표창 및 인사가점 | 개인/기관 |

2) 업무현장의 문제점을 과제로 선정, 과제별 팀을 구성한 후 팀원 간 토론과 협업, 문제해결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최적의 Solution을 찾는 행정개선 기법

3) 우수학습동아리 활동회원(1,553명)
- 바른급식사랑방: 429명, 보호관찰정책 연구모임: 466명, 전자감독: 596명, 신상정보제도 학습마당: 46명, 이민법연구회: 16명

4) 행정개선마일리지 : 제도개선 제안 채택 등 혁신 활동에 부여되는 점수로 득점 순위에 따라 개인 및 부서에 포상 실시

| 표 2-7 | 자체 우수사례 내용

| 순위 | 우수사례명 | 기관(부서) | 포상등급 |
|---|---|---|---|
| 1 | 교정민원콜센터1363 구축 | 교정기획과 | 최우수상 |
| 2 | 농어촌 일손부족 지원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 체류관리과 | 우수상 |
| 3 | 손안의 인공지능 법률비서 2세대 서비스 제공 | 보호정책과 | |
| 4 | 희망이음 사업을 통한 교도작업 개선 | 부산교도소 | |
| 5 | 보호관찰대상자 무료 치료 지원 | 수원(보) 안산지소 | 장려상 |
| 6 | 외국인 입국심사인 날인 방식 개선 | 인천공항(출)·외국인청 | |
| 7 | 레인보우 포인트를 활용한 공공요금 할인 | 서울구치소 | |
| 8 | 교정기관 무전기에 통역 어플 설치 | 법무부 보안과 | |
| 9 | 과잉 전화회선 정리를 통한 공공요금 절감 | 서울구치소 | |
| 10 | 교정시설 내 소화전함 잠금장치 개선 | 울산구치소 | |

| 그림 2-4 | 법무부 및 행정안전부 "2018년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






### 3) 조직문화개선을 위한 보람있고 행복한 직장만들기 추진

조직과 구성원이 함께 성장하는 보람있고 행복한 직장분위기 및 생산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실국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조직문화개선 활동을 스스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기관단위 찾아가는 소통교육',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음악회', '청사시설 개방', '가정과 함께 가는 근무제도 적극 활용', '연가사용 활성화로 쉼표 있는 삶 추구', '사랑의 손잡기', '소외계층 장학금 지원' 등이 있다.

## 다. 향후 추진계획

법무부는 조직의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각종 불합리한 제도 개선, 구성원의 창의역량 강화 및 자기개발 등 지속적인 변화관리 추진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법무행정서비스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 4. 민원행정 서비스 강화

혁신행정담당관실 행복민원센터 주무관 박승구

## 가. 추진배경

최근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 속에서 개인 권익보호 및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더욱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민원서비스로는 국민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요구에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해지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국민 개개인의 요구와 현장의 목소리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직접 듣고 소통하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나. 추진내용 및 성과

### 1) 국민신문고 민원 등 신속하고 내실있는 민원 처리

법무부에 접수·처리 된 민원은 총 24,961건으로, 그 중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처리된 민원이 전체 민원의 73.2%를 차지하는 등 온라인을 통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표 2-8 | 법무부 유형별 민원처리 현황

(2018. 1. 1. ~ 2018.12.31. 기준)

| 구분 | 계 | 국민신문고 접수·처리 | 우편, FAX, 방문접수 접수·처리 | 장관과의 대화 접수·처리 |
|---|---|---|---|---|
| 건수 | 24,961 | 18,276 | 6,167 | 518 |

법무부는 민원의 접수·배부·이송·처리 등 전 단계마다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요지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하는 한편, 처리기간 준수 여부 등 민원처리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민원서비스에 대한 체감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8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었다.

### 2) 불합리한 민원제도 개선

지역사회단체·대학교 등 민원사무와 관련된 정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민원 제도 및 정책을 발굴하고, 국민신문고 등 인터넷을 통해 접수된 개선 가능한 민원을 찾아 해결하는 '민원 끝까지 챙기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11건의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하였다.

| 표 2-9 | 국민불편 주요 개선사례

| 연번 | 발굴경로 | 개선사항 |
|---|---|---|
| 1 | 국민신문고 | 전자민원허가확인서 외국인 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개선 |
| 2 | 국민공모 | 교정기관 수용(출소)증명서 온라인 민원서비스 발급 시행 |
| 3 | 공모제안 |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 온라인 신청 개선 |
| 4 | 공모제안 | 교정기관 다수접견 예약 시 기본정보 저장 및 접견불가사유 안내 입력 개선 |
| 5 | 국민제안 | 민원24 민원처리기준표 안내 개선(민원서류 접수기간 수정) |

### 3) 국민제안 활성화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 및 의견을 법무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국민제안 제도를 활성화하였다. 주요 제안으로는 '성폭력 근절 포스터 내 용어 변경 사용 개선' 등 총 1,060건의 국민제안 중 27건을 채택하여 실제 정책에 반영하였고, 연 2회의 국민공모 제안을 통해 178건을 제안받아, 그 중 9건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성과를 낳았다.

그 결과 2018년 행정안전부 주관 「중앙우수제안 및 제안활성화 경진대회」에서 '출입국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과 '교정·치료감호소 간 공급품 관리체계 일원화' 과제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고,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에 재입국 허가 신청 추가' 과제는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 4) 법무부 민원행정서비스 점검

본부 및 소속기관의 민원서비스 제공 수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피드백을 위해 '2018년도 법무부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및 전화민원응대 친절도 점검'을 실시하였다.

법무부 민원행정서비스 종합만족도는 10점 만점에 8.85점으로, 전년도 대비 0.20점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8.77점으로 가장 낮은 신청 편리성 항목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민원응대 친절도는 100점 만점 기준 87.7점으로 전년도 대비 0.7점 하락하였으며, 차원별 친절도는 수신단계 90.6점, 응대단계 88.6점, 종료단계 84.0점 순으로 나타났다.

평가결과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장관 표창을 수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으며, 미흡한 기관은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토록 하였다.

또한 우수사례 및 미흡사례에 대해서는 본부 및 소속기관에 전파하여 벤치마킹 및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 다. 향후 추진계획

법무부는 민원·정책현장 방문을 확대하여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국민신문고·국민제안 등 온라인 창구를 통한 국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민원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등 국민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 5. 규제혁신 적극 추진

혁신행정담당관실 행복민원센터 주무관 신혜정

###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정부의 규제혁신 기조인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로 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 및 국민 개개인 삶의 질 향상' 원칙에 따라 경제 활성화 지원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확대 등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였다.

### 나. 추진내용과 성과

#### 1)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 경감 등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

주요 내용으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대폭 인하하였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소 및 상가임차인 보호 확대에 힘썼다. 또한 뿌리산업 분야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 쿼터를 400명에서 600명으로 확대하였으며, 방문취업 비자발급 연령 요건을 25세에서 18세로 완화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였다.

#### 2) 출입국·비자제도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일자리분야에서는 3개국 이상을 기항해야 하는 크루즈 관광상륙허가 기항요건을 폐지하여 2개국을 기항하는 선박에 대하여도 크루즈 관광상륙을 허가하였으며,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요건이 없어도 지식재산권 보유 등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외국인이면 기술창업 비자(D-8-4)를 취득할 수 있게 요건을 완화하였다. 또한, OECD 회원국을 방문한 경력이 있는 중국·동남아 국가 국민에게 복수비자 발급을 확대하였고, 베트남 등 동남아 3개국 우수기업 직원 및 우수대학 재학생에게 관광비자 신청서류를 간소화하였다.

### 3) 新산업 분야 규제 개선

상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생명보험을 전자서명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게 하였으며, 공증사무소 방문 없이 인터넷 화상 장치를 통해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도록 화상공증제도를 시행하였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新산업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활동 비자(E-7) 발급 대상에 로봇공학 기술자 등 3개 직종을 추가하였고, 첨단과학기술 분야 등 전문 인력에 대한 '전자고용추천제'를 도입하여 비자발급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 다. 향후 추진계획

법무부는 앞으로도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각종 법령, 제도 등을 적극 개선함으로써 혁신성장 新산업 지원,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활동 보장,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지원, 생활의 걸림돌이 되는 불편·부담해소 등 규제 혁신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6. 성과중심의 법무행정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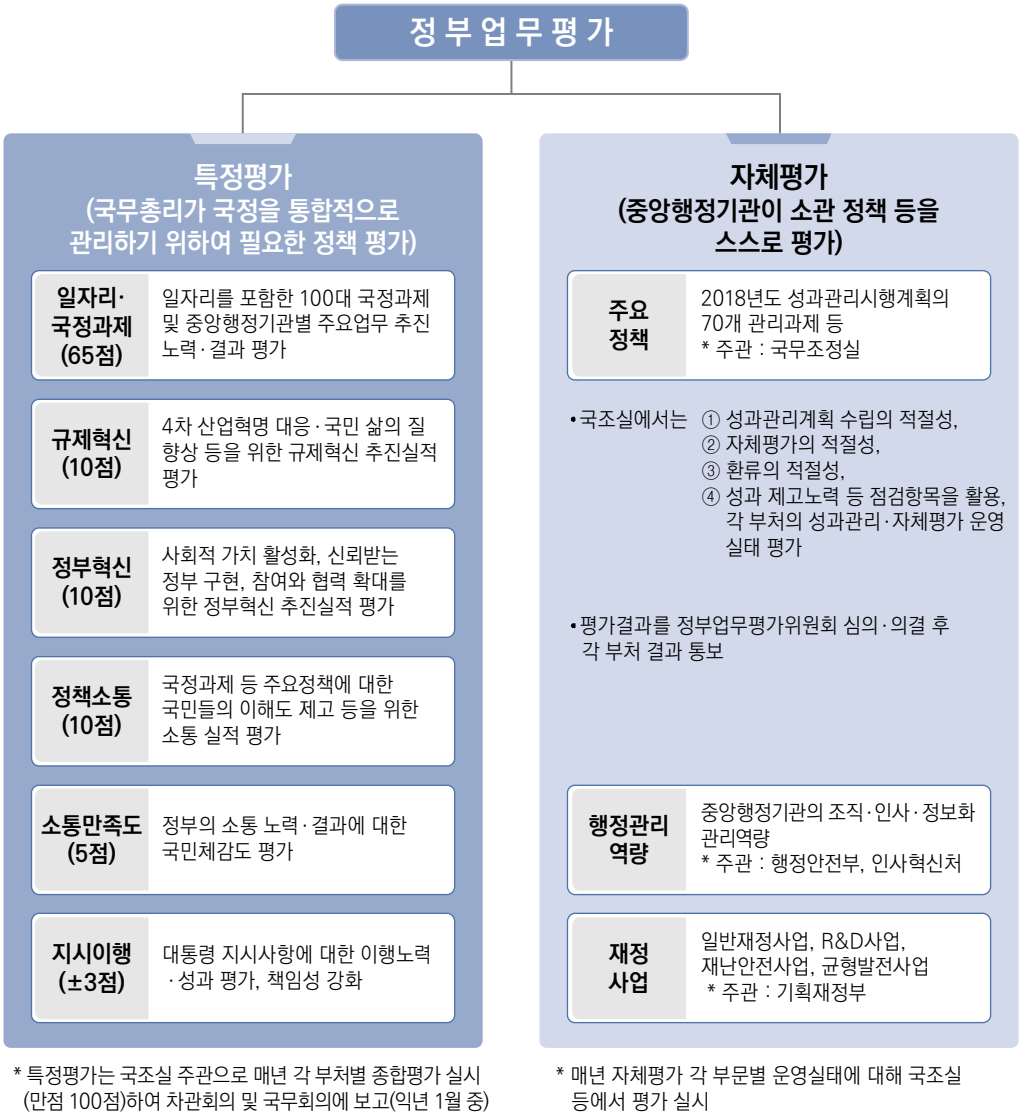
혁신행정담당관실 사무관 박상열

## 가. 정부업무평가

국무조정실에서는 국정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재정성과, 인사, 조직 등 주요업무 분야에 대하여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매년 정부업무평가에 관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정부업무평가는 국무총리가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평가하는 특정평가와 기관이 소관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자체평가 부문으로 구분되며, 평가부문별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그림 2-5 |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 1) 특정평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국무조정실에서는 2018년도 평가부문 등을 확정한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처에 통보하였고, 이에 법무부에서는 평가방향, 부문별 평가방법 등을 검토한 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였고,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실시한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법무부는 권력기관 개혁 등 주요 개혁입법 지연 등으로 인해 '미흡'평가를 받았다.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의 특정평가 부문별 주요성과 및 보완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일자리·국정과제 부문 (주관과제)

| 과제명 | 주요성과 | 보완사항 |
|---|---|---|
| 1.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 • **국정농단 사건 관련 보충수사·공소유지 철저**<br>• **부정축재 재산 환수를 위한 추징보전조치 실시**<br>• **범죄수익환수 전담조직 신설**<br>* 대검 범죄수익환수과(2018. 2월), 범정부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2018. 6월) | •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 시 불법재산환수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외국 사법당국과의 공조 강화 |
| 2.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 • **5대 중대 부패범죄 관련 검찰 사건 처리기준 개정을 통한 부정부패 척결 강화**<br>• **형법 개정을 통한 다중인명 피해범죄 법정형 상향 방안 확정** | • **'(가칭)시민공익위원회'설치 추진**<br>* 관계부처 이견을 해소하여 법 추진 |
| 6. 국민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18 ~ '22년] 발표**(2018년 8월)<br>•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확대 및 스마일센터**(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 **청주·울산 신설** (2018년 12월) | • 인권위·법무부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가인권정책의 기본법 역할을 하는 「인권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
| 13.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 • **검·경 등 권력기관 개혁기반 마련**<br>*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문 발표(2018년 6월)<br>* 후속조치로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개정안 발의(2018년 11월)<br>• **검찰개혁 추진**<br>* 과거사위원회의 과거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 진상규명 및 후속조치<br>* 법무부 탈검찰화 적극 추진<br>- 실국장 검사보임비율: ('17.1월) 85.7% → ('18.12월) 28.5%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br>• **검경 수사권 조정의 본격적 추진 대비한 검·경간 협업** |
| (주요정책과제)<br>47. 출소자 취업지원 강화 | •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추진**<br>* 5,726명 참여, 수료자 2,220명 중 1,528명 취업(취업률 68.8%)<br>• **지역별 취업박람회 개최(28회) 등 출소자 취업을 위한 구직 기회 확대**<br>• **취업지원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2018. 8월)<br>• **출소자 허그 후원의 날 개최**<br>* (2018. 11월) 출소자 인식 개선을 위한 국민친화적 홍보활동 전개 | • **취업한 참여자의 장기근속 방안 마련**<br>• **고용협력기업 인센티브 확대로 기업 참여 유도** |

② 규제혁신 부문

| 주요성과 | 보완사항 |
|---|---|
| •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따른 규제개혁과제 12건 중 11건 완료**<br>• **변호사시험 장소 확대 등 국민생활 불편규제 4건 정비**<br>• **규제혁신 국민소통 실적 관련 정·부기관장 현장행보 실적 29건, 대언론 소통 총 665건 등** | • 현장 애로 건의 수용률 12.5%에 불과, 건의 수용률 제고<br>• 新산업 분야 및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발굴 성과 향상 |

③ 정부혁신 부문

| 주요성과 | 보완사항 |
|---|---|
| • **국민의 참여와 협력,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시행**<br>*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세금 체납 확인 (국무총리 표창, 2018. 7월)<br>* 편리한 인터넷 화상공증 (국무총리 표창, 2018. 12월)<br>*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행안부장관상, 2018. 11월) | • 법무행정 전반에 걸친 혁신 체감 확산<br>• 실·국·본부 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하는 협업 추진체계 강화 |

④ 정책소통 부문

| 주요성과 | 보완사항 |
|---|---|
| • **(기관장 소통) 기관장의 다양한 소통 활동[언론, 온라인, 현장]을 통한 정책 홍보 강화**<br>* 한국경제 8회 연속 기고(집단소송제, 임대차보호법 등), 지역 언론 기자들과 연속 간담회 개최 등<br>• **(기획홍보) '젠더폭력 처벌강화 및 피해자 보호·지원',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기간 운영' '미투 운동' 관련 기획홍보 강화**<br>• **(이슈 대응) '제주 예멘인 난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등 사회 주요 이슈에 대해 선제적 홍보 실시** | • **외신 홍보 활성화**<br>* 국내외 현안 발생·외신 관심 부족 등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지 못한 아쉬움<br>• **정책에 대한 국민 만족도·인지도 반영 홍보**<br>* 정책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및 인지도 조사 정기적 실시 |

⑤ 지시이행 부문 (가감점)

| 주요성과 | 보완사항 |
|---|---|
| • **법무부 탈검찰화 추진**<br>* 법무부 실국장 검사보임비율 축소 ('17년 1월 85.7% → '18년 12월 28.5%)<br>* 14개 국과장급 검사 직위를 비검사로 임명 등<br>• **몰래카메라 피해방지 관련**<br>* 성폭력처벌법 개정(2018년 12월)을 통해 범죄자 처벌 강화, 긴급구조금 지급금액 상향 등 반영<br>• **상가임대료 부담 경감 대책의 조속한 추진**<br>*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5년→10년), 권리금 보호 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9%→5%) 등 상가임대차법령 개정 | • **과거사 진상규명 및 사과**<br>* 사건 재배당 및 방대한 사건기록 검토 등으로 사건조사 미완료<br>•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양형기준 상향**<br>*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기술유출 범죄 관련 안건 미상정 |

## 2) 자체평가

### 가) 주요정책 평가

법무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성과관리 전략계획'에 기초하여 당해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국정과제, 대통령 업무보고 등을 종합 반영하여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등 5개 전략목표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및 적폐청산의 차질 없는 추진' 등 13개 성과목표 및 70개 관리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였다.

수립된 정책의 이행상황 점검 및 목표달성을 위하여 '계획수립의 적절성', '시행과정의 적절성', '정책 효과성', '정책 환류 및 소통', '평가역량 제고 노력도'의 5개 평가항목과 11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각 관리과제별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였다. 자체평가결과 매우우수 3개(5%), 우수 12개(17%), 다소우수 10개(15%), 보통 24개(34%), 다소미흡 10개(14%), 미흡 7개(10%), 부진 4개(5%)로 나타났으며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신변보호를 강화하였으며,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을 통해 3억 8,000만원을 모금하여 피해자 총 49명에게 2억 1,58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상가임차인의 영업권을 보장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제도 시행, 모바일로 수용자와 접견을 할 수 있는 스마트 접견 실시 등으로 법무행정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성을 개선하였다.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확대를 통해 구인난을 겪고 있는 44개 지자체에 외국인 근로자 3,655명을 배정함으로써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국세청·관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세금 체납이 확인되는 외국인에게는 비자연장을 제한하는 '세금체납 확인제도' 전면시행으로 2018년 206억 원의 세금 체납액 감소 및 체류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



제1회 자체평가위원회(2018. 1. 31.)



정책현장(동부구치소)방문(2018. 9. 17.)

### 나) 행정관리역량 평가

행정관리역량에 대한 평가는 조직, 인사, 정보화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직분야에서는 재배치정원제 시행, 정부조직정보 관리 및 시스템 이용 활성화 등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책품질 개선에 적극 노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인사분야는 상시학습 기준시간 이상 이수, 생산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유연근무제 이용활성화 등 내실 있게 운영하였으나, 개방형 및 공모직위 운영, 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직위 지정 추진실적은 공안직 비율이 높은 법무부 특성으로 인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보화분야에서는 효율적인 웹사이트 운영, IoT·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형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기관 개인정보보호 및 대민서비스 정보보호 수준 향상 등을 통해 사이버 안전수준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다) 재정사업 자율 평가

재정사업 자율 평가는 사업 수행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평과결과를 재정운영에 활용하는 제도로 원칙적으로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이 해당된다.

우리 부는 22개의 단위사업에 대해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하여 상대평가로 실시하고 있으며, 우수 4개(20%), 보통 14개(65%), 미흡 4개(15%)로 3단계 등급화 하였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실효성과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기준·절차 및 평가결과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하여 대외에 공개하였고, 미흡사업은 부진원인을 분석하고, 성과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2차에 걸쳐 각 부처별 이행실적을 재정관리점검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 라)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이란 제도 운영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부처의 자율적인 관리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자체평가 계획 수립단계부터 자체평가 및 평가결과 환류에 이르기까지의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것으로, 주요정책 부문(국무조정실 주관)과 행정관리역량 부문(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주관)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2018년 법무부는 주요정책 부문에서 '상반기 점검 및 자체평가의 적절성', '환류의 적절성' 및 '성과 제고노력'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전년에 비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성과관리계획 수립의 적절성' 등 일부 항목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로는 '보통' 평가를 받았고, 행정관리역량 부문에서는 '기관역량 제고 노력도', '자체평가 운영의 충실성', '환류의 적절성' 등 전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최근 5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나. BSC 및 성과중심 조직문화 구축

BSC(Balanced Score Card, 균형성과평가제도)는 조직의 임무, 비전, 전략·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을 설정하고 그 달성 정도를 고객, 정책, 행정개선 등 다양한 관점에서 조직·개인의

성과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인사, 성과급 등에 환류하는 제도이다.

법무부는 2006년부터 BSC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조직 및 개인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평가하기 위하여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의 BSC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 내 862개 부서, 2만3천여 명에 대한 조직 및 개인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승진에 10%, 성과급에 20%, 교육훈련에 10% 반영함으로써 성과중심 조직문화 구축과 국민이 만족하는 법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7.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

혁신행정담당관실 사무관 박상열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는 대통령이 회의·행사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행한 지시를 정리·분류·전달하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함으로써 국정 최고책임자의 지시와 의견이 정책추진 과정에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혁신행정담당관실(정책성과관리팀)에서는 지시사항 접수 시 소관부서에 신속히 전달하고, 지시이행계획 수립 및 분기별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지시사항이 완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현행 법무부에 시달되어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지시사항 현황은 총 12건으로 '18. 12. 31. 기준 현재 총 5건을 이행완료하고 7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타부처 협조 지시사항도 총 7건으로 이 중 2건을 추진 완료하고, 5건은 추진 중에 있다.

## 1) 법무부 주관 지시사항(12건)

| 연번 | 지시일자 | 지 시 사 항 | 이행상황 |
|---|---|---|---|
| 1 | 2017년 5월 |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 | 종 료 |
| 2 | 2017년 7월 | 법무부 탈검찰화 및 검찰개혁 | 추진중 |
| 3 | 2017년 8월 | 몰래카메라 피해방지 관련 대책 마련 | 종 료 |
| 4 | 2017년 8월 | 국적취득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종합적 지원(국적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 종 료 |
| 5 | 2017년 8월 | 과거사 진상규명 및 사과 | 추진중 |
| 6 | 2017년 8월 | 근로감독관과 검찰 간 긴밀한 협력 | 추진중 |
| 7 | 2018년 1월 | 상가임대료 부담 경감 대책의 조속한 추진 | 종 료 |
| 8 | 2018년 2월 |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방안 마련 | 추진중 |
| 9 | 2018년 2월 | 검찰 관련 현안에 대한 엄정한 진상규명 및 공수처 설치 | 종 료 |
| 10 | 2018년 4월 |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양형 기준 상향 | 추진중 |
| 11 | 2018년 4월 | 범죄수익 환수 방안 마련 | 추진중 |
| 12 | 2018년 10월 |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 추진중 |

## 2) 타부처 협조 지시사항(7건)

| 연번 | 지시일자 | 지 시 사 항 (주관부처) | 이행상황 |
|---|---|---|---|
| 1 | 2017년 10월 |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권익위) | 추진중 |
| 2 | 2017년 10월 | 평창올림픽에 대한 전방위 홍보 (문체부) | 종 료 |
| 3 | 2018년 3월 | 금융혁신 과제들의 속도감 있는 추진 (금융위) | 추진중 |
| 4 | 2018년 3월 | 평창올림픽·패럴림픽 후속대책 마련 (문체부) | 추진중 |
| 5 | 2018년 4월 |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의 반부패 기관 간 정보공유 확대 (금융위) | 추진중 |
| 6 | 2018년 4월 | 장애인 대책 점검 및 장애인 체육 활성화 (복지부) | 추진중 |
| 7 | 2018년 5월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관한 명확한 통계 확인 및 홍보 (교육부) | 종 료 |

# 8. 비상대비 및 재난안전 관리 강화

## 가. 비상대비 태세 확립

비상안전기획관실 주무관 김인애

### 1) 개 요

연이은 남북·북미 정상회담 실시로 2018년 한반도는 긴장 국면에서 대화 분위기로 전환되면서 대표적인 정부 비상대비 훈련인 “을지연습”이 유예되었다. 대신 국가 비상대비 태세 필수 분야 및 전시 기본임무 수행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전시 상황전파체계 가동훈련”(8. 29. ~ 31.)을 실시했다. 이 훈련에는 국가지도통신망 전환훈련, 전시 상황전파 및 보고체계 점검훈련, 전시 종합상황실 운영능력 숙달 훈련, 전시 정부종합상황실 ↔ 중앙부처 간 영상회의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통해 자체적으로 확고한 국가 안보태세를 유지하였다.

현재 “을지연습”은 2019년부터 한국군 단독연습인 태극연습과 연계해 새로운 형태의 “을지태극연습”으로 변경되었으며, 범국가적인 위기를 가정한 포괄적 안보[5] 개념의 연습모델로 발전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새로워진 비상대비 훈련의 추진방향을 공유하며 효율적인 훈련 실시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 그림 2-6 |** 전시 상황전파체계 가동훈련



정부종합상황실 ↔ 중앙부처 간 영상회의



전시 종합상황실 운영능력 숙달훈련

5) **포괄적 안보** : 전통적인 안보 위협(군사)뿐만 아니라 비전통적 안보 위협(정치·사회분열, 환경 오염 등)과 초국가적 위협(테러, 재해·재난, 사이버 테러 등)에 총체적으로 대응·대비하는 안보개념

### 2) 비상대비 계획 수립·실시

전년도 을지연습 시 도출한 개선과제 및 국내외 안보상황을 반영하여 전시 법무, 검찰, 보호, 인권, 교정 및 출입국관리 사무에 관한 충무계획(「법무부 집행계획」·「자체충무계획」·「자유화통합계획」)을 개정하였으며, 본부 각과, 소속기관, 유관부처에 배부하였다. 또한 소속기관 114곳의 법무시행계획을 면밀히 검토, 승인하여 체계적인 비상대비 계획 수립에 기여했다. 특히, 2018년 충무계획은 어려운 군사·전문용어는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고, 비밀취급인가자에 한해 볼 수 있었던 자체충무계획은 보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부적으로 공개하는 등 직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평소 업무 시 숙지·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3) 국가중요시설 방호 업무 수행

국가중요시설인 소속기관(교정시설)의 방호실태를 점검(11. 5. ~ 8.)하여 적 침투, 수용자 폭동 등 비상사태 시 위기대응 능력을 제고하였으며, 효율적인 시설 방호를 위해 교정시설 본소와 떨어진 지소 3곳을 별도의 국가중요시설로 신규지정을 추진하였다. 법무부 소속기관은 물론 관계 부처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굳건한 통합방위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통합방위본부[6]로부터 2018년 통합방위 유공(국가중요시설 분야)으로 본부장 표창을 수상하였다.

## 나. 재난 안전관리 효율성 강화

비상안전기획관실 주무관 장인선

### 1) 소속기관 불시 재난 안전 점검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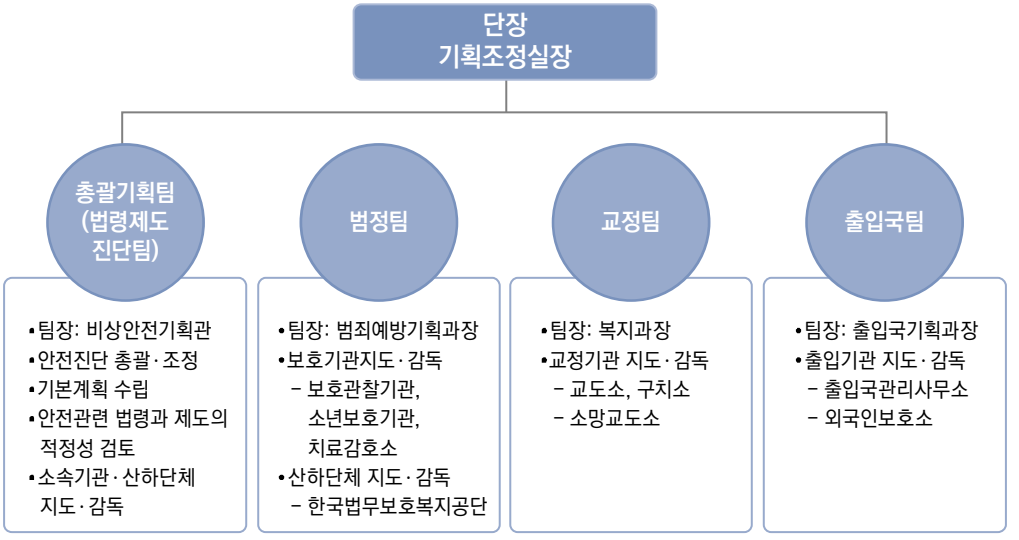
소속기관의 각종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각 5일간에 걸쳐 시설담당관실과 합동으로 불시 재난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화재 및 지진대피 불시 훈련 실시를 통한 재난 매뉴얼 작동실태 및 직원의 숙지 여부 확인, 유관기관과의 합동소방훈련 실시 여부 및 소화전·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 점검, 가스·연료 등 각종 위험시설물 관리 상태를 점검하였다. 특히, 2018 동절기 재난점검시 위험 테마로 보일러를 선정, 노후 보일러 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화재 등 대형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다. 점검에 따라 발생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소속기관에서는 즉시 시정조치하여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인명과 재산의 피해방지 체계를 구축하였다.

6) **통합방위본부** :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 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통합방위 주관 기구

### 2) 안전대진단

안전사고 예방 및 생활안전 강화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시설 관리주체, 국민 등이 진단주체가 되는 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2018. 2. 5. ~ 4. 13. 68일간 공공건축물, 전기, 가스, 소방 분야 등 1,325개 시설에 대해 민간 전문가 합동점검과 기관 자체점검을 실시하였다. 2017년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및 2018년 1월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2017년 11월 포항 지진 발생을 계기로 취약 소방분야 설비, 노후화된 건물의 시설 등 관리 전반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다. 점검 결과 기관 청사 출입구 계단 침하 보수·보강공사 시행, 취사장 회전솥 도시가스 배관 개선 등 지적사항에 대한 현장조치와 보강작업을 실시하였다. 안전대진단을 통해 재난 발생 요인을 효과적으로 사전 제거하여 사고 예방에 기여하였고, 안전에 대한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 그림 2-7 | 법무부 안전대진단 추진단 구성




### 3)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참여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재난대비훈련 실시)에 근거하여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및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연1회 실시하고 있다.

2018 안전한국훈련(5. 14. ~ 5. 18.) 기간 동안 법무부에서는 '풍·수해 대응훈련', '화재 대응훈련', '지진·해일 대응 훈련' 등 3개 분야에 걸쳐 본부 및 전 기관이 참가하여 재난 대응 시스템을 일제 정비하였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5. 16.)에서는 이금로 차관 주재로 수용·보호시설 화재를 대비하여 화성소방서, 화성서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법무부 및 소속·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이러한 범정부적 재난대응 종합 훈련을 통해 재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하였고, 기관 간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강화하였다.

**| 그림 2-8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진행된 '201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 4) 재난관리 평가 수검

법무부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개인, 부서, 기관, 네트워크별 재난관리 핵심역량 및 주요 재난안전정책 추진실적 등 29개 지표에 대한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평가를 받았다. 재난관리 조직 및 인력 운용 실적, 재난 예방을 위한 기관장 현장점검 및 홍보 등 지표별 사전분석을 통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2017년도 추진 실적에 대한 서면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였다. 또한 교수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재난관리평가단과의 현장점검시 재난관리를 위한 비전·관심도 및 주요 정책 등에 대한 장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18년 중앙부처 재난관리평가(등급 : 우수, 보통, 미흡)에서 법무부는 교정시설 안전사고 예방 노력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를 통해 법무부의 재난관리 수준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하였으며, 평가결과가 언론에 공개됨으로써 재난안전관리 역량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였다.

# 9. 정보화 업무

## 가.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지원, 법무정책정보시스템 구축

정보화담당관실 주무관 송정미

장·차관이 법무부 주요 정책 및 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8년 11월 법무정책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법무정책정보시스템은 각종 통계 정보, 업무 현안 정보, 법률 제·개정 현황, 위원회 운영 현황, 언론보도 등 127종의 정보를 계량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 표 2-10 | 법무정책정보 표출 자료

| 구 분 | 주요 내용 |
|---|---|
| 통계정보 | • 실·국·본부에서 생산되는 일일·월·분기 통계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단순 수치자료 제공뿐만 아니라 정책 추세와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제공 |
| 업무현안 | • 각 부서에서 매일 발생하는 현안 중 장·차관이 알아야하는 중요 보고사항을 확인 |
| 법령 제·개정 현황 | • 법무부 소관 법령의 제·개정 현황과 국회의결 법률안, 국회 계류 중 법률안 등 법률 현황과 대통령령·부령의 목록과 상세내용을 확인 |
| 위원회 운영현황 | • 법무부 정책위원회 등 업무 분야별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구성 현황과 위원명단을 종합 제공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를 위한 기초정보로 활용 |
| 언론보도 | •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조·석간 언론보도 자료에서 제일 많이 언급된 단어들을 '언론 키워드맵'으로 시각화하여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주요 관심이 무엇인지 여론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지 쉽게 파악 |

## 나. 국민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홈페이지 개편

정보화담당관실 주무관 이루다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최근 스마트폰을 활용한 법무부 홈페이지 접속이 급증하고,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 대한 서비스지원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다양한 접속 환경에서 불편 없이 사용하고, 법무행정에 대한 국민 참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법무부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2019. 1. 6.)하였다. 또한, 노후화된 홈페이지 시스템을 최신의 G-클라우드[7] 기반으로 전환하여 저비용·고효율의 홈페이지

7) G-클라우드 : 다수 부처 자원을 통합하여 필요한 만큼 자원을 자동 할당

운영 환경을 마련하였고, 홈페이지 사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온라인 민원의 불편사항을 제거하는 등 홈페이지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 2) 추진내용과 성과

개편된 홈페이지는 국민 참여 활성화 및 정책 홍보 강화를 위해 국민이 참여한 '법무행정 현장' 메뉴와 정책을 알기 쉽게 설명한 '정책 웹툰' 메뉴 등을 메인 화면에 배치하였으며, SNS와 실시간 연동, 휴대폰 본인인증 도입, Active-X 제거 등으로 홈페이지 이용 편의성을 크게 개선하였다.

| 그림 2-9 | 개편 전 법무부 대표 홈페이지 메인



| 그림 2-10 | 개편 후 법무부 대표 홈페이지 메인



### 3) 발전방향

앞으로도 접근이 편리한 모바일의 특성을 활용하여 법무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온라인 상의 대국민 소통 창구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법무부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신속·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 다. 다양한 사이버보안 활동으로 안전한 업무환경 구축

정보화담당관실 전산사무관 정성훈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최근 국가·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메일 계정 및 개인정보 탈취 목적의 해킹메일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국가기관 정보시스템의 취약요소를 찾아내기 위한 공격자들의 활동이 빈번하게 탐지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침해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한 법무행정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2) 추진내용

법무부는 사이버 공격 및 개인 부주의 등으로 인한 내부 정보의 무단 유출을 방지하고, 법무부 정보통신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2008년부터 업무-인터넷 망분리를 진행하였다. 2018년에는 서울·대전지방교정청 및 소속 27개 교정기관을 대상으로 망분리를 추진하여 총 169개 기관(본부 포함)에 망분리를 완료하였다.

| 표 2-11 | 법무부 망분리 추진경과

| 구축연도 | 대상기관 |
|---|---|
| 2008년 | • 법무부 본부 |
| 2010년 | • 인천공항 등 출입국관리기관(7개) |
| 2015년 | • 법무연수원 등 정보시스템 운영기관(9개) |
| 2016년 | • 소년보호기관(27개), 출입국관리기관(35개) |
| 2017년 | • 보호관찰기관(64개) |
| 2018년 | • 서울·대전 지방교정청(2개) 및 소속 교정기관(27개) |

한편,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을 실시(2회)하여 보호조치 미비사항을 개선하였고, 소관 법령 및 각종 서식 정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보완,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총 45,185명) 등을 통해 법무부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을 제고하였다. 또한, 법무사이버안전센터에서는 법무정보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본부 및 소속·산하 시스템 운영기관(22개)을 대상으로 보안취약점을 진단하고 조치하였으며, 24시간 365일 철저한 보안 관제를 통해 홈페이지 위변조 및 개인정보 노출 정보 확인(55건), 유해 IP(622건)·사이트(12,095건) 등록·차단, 보안담당자 대상 정보보안 워크숍 개최(9월) 등 보안사고 예방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 3) 발전방향

2019년에는 대구·광주지방교정청 및 소속 27개 교정기관을 대상으로 망분리를 추진하여 본부를 비롯한 전체 소속기관의 업무·인터넷 망분리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정보시스템 및 사용자 대상의 사이버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사이버 공격 또는 부주의에 의해서 중요 자료가 유출되는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라. 지식행정 활성화를 통한 고품질 법무지식 축적·활용

정보화담당관실 보호주사 홍성원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018년에는 업무 효율 향상 및 조직성과 창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법무지식[8]의 축적·공유를 목표로 업무 개선사례, 노하우, 연구논문 등 품질 높은 법무지식의 발굴·공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 2) 추진내용

고품질의 법무지식 축적·공유를 위해 전년도에 이어 '법무지식 컨테스트'를 개최(7-9월)하였는데, 2018년에는 개인부문 외 단체부문을 신설하여 총 70개의 신지식을 응모 받아 개인부문에서는 '지능형 스마트 출입국 시스템 구축'을, 단체부문에서는 '교정시설 청렴위반 사례 모음집'을 최우수 지식으로 선정·포상하고 전 직원에게 공유하였다. 성과중심의 학습동아리 양성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여 부내 학습동아리 5개('보호관찰 정책연구모임' 등)에 지원금을 지급하였고, 인사혁신처 주관 공무원 연구모임 운영비 지원 사업에도 2개 학습동아리('바른 급식 사랑방', '전자감독')가 선정되어 운영비(150만원)를 지원 받았다. 또한, 연간 지식 창출의 성과가 뛰어난 직원 4명(교정2, 보호 1, 출입1)을 법무부 올해의 지식인으로 선정하여 장관표창 및 인사가점을 부여하고, 포상금(240만원, 전년대비 100% 상향)을 지급하는 등 지식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직원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평가와 보상을 하였다. 그리고, 우수지식인, 지식검증자, 학습동아리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지식행정 리더역량 강화 교육(4월)을 실시하여 지식우수사례 공유 및 토의 등 지식의 질적 향상을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하였다.

### 3) 발전방향

2019년에도 고품질 법무지식의 축적 및 활용 극대화를 목표로 다양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업무에 직접 활용된 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지식등록의 날'을 신설하여 전 직원이 집중적으로 우수 지식을 등록·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술발전 및 환경변화에 대응한 법무행정을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갈 것이다.

8) **법무지식** : 업무수행 과정에서 체득한 개인 또는 부서의 경험, 노하우 등 유·무형의 실천적 정보

## 마.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정보공동활용 및 대국민 서비스 확대

### 1) 정보공동활용 및 대국민 서비스 확대로 국민중심의 서비스 제공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주무관 김종훈

신속·공정·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고, 형사사법 분야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 권익 신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10년 법무부·경찰·검찰·법원이 공동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이하 'KICS')을 구축한 이래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및 대국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형사사법기관 간 406종의 정보를 공동활용하고, 약 70개 시스템을 연계하여 하루 평균 210만 건 상당의 정보를 처리하고 있다.

2018년 말 기준으로 전자문서 누적 유통건수 약 5,474만 건, 사건정보 등 누적 유통건수 약 50억 5,735만 건, 전자약식 누적 처리건수 699,725건, 전자불기소 누적 처리건수 42,242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변사자 보험가입 조회를 위해 손해보험협회와의 연계 시스템을 개발하여 경찰 연계 서비스는 2018년에 시행하였으며, 검찰과 해경은 2019년 상반기에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교정기관의 방문 없이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수용·출소 증명서를 바로 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였고, 웹 환경에서만 회원가입이 가능하던 것을 모바일에서도 가능하도록 모바일 앱을 개선하였으며, Active-X 제거 사업을 실시하여 국민들의 형사사법포털에 대한 접근성·호환성 및 보안성을 강화하였다.

**| 표 2-12 |** 형사사법포털 이용 비율

(단위 : %)

| 연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 이용비율[9] | 269 | 292 | 297 | 341 | 431 |

이러한 노력으로 형사사법포털 이용비율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표 2-12〉 참조) 2018년 형사사법포털 및 모바일 접속 건수는 5,341,384건, 사건진행 조회 10,549,778건, 벌과금 조회 1,927,813건, 민원서비스 신청은 60,690건에 이르고 있다.

9) 형사사법포털 이용자수 / 전체 형사사건 관계인 수(검찰사건기준) × 100

## 2)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을 위한 BPR/ISP 사업 수행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사무관 원민정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에서는 2018. 5. 17. ~ 12. 13. 까지 법무부·검찰·경찰·해양경찰과 공동으로 첨단 지능정보기술의 형사사법업무 적용,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을 위한 BPR/ISP 사업』(업무분석·재설계 및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을 수행하였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설계한 지 14년, 구축한 지 약 10년이 경과되어 최근의 눈부신 정보통신기술발전의 결과물들을 수용하기에는 다소 노후하였다는 일선의 의견이 있어왔고, 갈수록 높아지는 민원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였다.

이에 2018년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을 위한 BPR/ISP 사업』은 국민중심의 형사사법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대국민 서비스 혁신, 공정하고 투명한 형사절차 실현을 위한 형사사법 업무 혁신, 디지털 시대 지능정보사회에 걸맞은 미래지향 IT구조 개선을 전략목표로 하여 구체적 개선 과제를 도출하였다.

**| 그림 2-11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BPR/ISP 사업




사업 착수보고회 및 실무자 워크숍




사업 종료보고회

이번 BPR/ISP 사업을 통하여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기본 방향과 미래모델이 설계되었으며, 실제 구축 사업 완료 시 형사절차의 완전 전자화 기반 제공과 함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서비스, 모바일 현장조사 서비스, 원격 화상조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확대 개선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이고 공정·투명한 형사절차를 실현하여 대국민 형사사법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3)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대·내외 홍보 및 법무한류 실현 노력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경정 김동윤

전국 단위의 5개 형사사법기관이 하나의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모든 형사사건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우수한 시스템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여러 나라에서 시스템 도입 여부 등과 관련하여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18. 5월 호주, 11월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의 국가 방문 시 KICS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였고 '18. 6. 21.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을 방문한 싱가포르 법무부 소속 검사 일행은 국제기구를 통하여 알게 된 KICS의 구체적인 모습을 직접 확인하고, 자국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을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KICS에 깊은 관심을 보이기도 하였다.

**| 그림 2-12 |** KICS의 법무한류 실현 노력



호주 NSW(뉴사우스웨일즈주) 경찰청 방문



싱가포르 법무부(AGC)공무원 법무부 방문

또한 중앙경찰학교, 각 지방경찰청 교육원, 법무연수원 등의 강의를 통해 형사사법 실무자 및 국제연수생들에게 KICS 시스템, 전자약식, 전자불기소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으며, '18. 5월 '제1차 한국 공공행정 우수사례 기관방문 설명회'에서 주한 외교사절 및 외신관계자를 대상으로 KICS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해외진출의 토대를 마련하는 등 법무한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8. 9월에는 행정한류 우수 콘텐츠에 선정(행정안전부 주관)되어 『2018년 범부처 행정한류 우수 콘텐츠 소개집』에 KICS의 구축과정 및 현황이 수록되었다. 본 책자는 외국공관 및 재외공관 등에 배포되어 KICS의 세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10. 법무연수원(교육과 연구의 내실화)

## Ⅰ. 교육 방향

법무연수원 기획과 주무관 박길

법무연수원은 2018년도 교육 목표를 「국민에게 봉사하는 법무·검찰 인재」, 「열정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정의를 실현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공직자」, 「소통과 통합 그리고 혁신의 리더」 양성으로 설정하고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교육 과정은 법무연수원 교육 체계를 혁신하여 장기·집중 방식의 「단계별 교육」과 사례·실무 중심의 「타겟형 교육」으로 대폭 개편하는 한편, 교육 내용은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실습 중심으로 개선하여 교육에 내실을 기하였다.

시대적 과제인 법무·검찰 개혁을 교육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인권·정의·공정 등 헌법가치'에 대한 교육, '반부패·청렴', '인권 및 양성평등'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남북관계 발전 및 통일비전' 등에 관한 교육을 확대하였다.

또한 법무·검찰의 근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검찰·보호·출입국·교정 각 기관의 역사를 정리한 법무연수원 역사교재를 발간하여 신규자 등 교육에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 그림 2-13 | 법무연수원 역사교재 편찬




법무연수원은 2018년도 검사, 검찰직, 보호직, 출입국관리직, 교정직 등 법무·검찰공무원, 유관기관 및 외국 공무원,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총 798개 과정, 7,309회 185,013명(집합교육 153개 과정, 289회, 11,093명, 사이버교육 645개 과정, 7,020회, 173,92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하여 6.9% 증가(집합교육 182명, 사이버교육 11,679명 증가)한 인원이다.

# Ⅱ. 법무연수원 교육체계 개편

법무연수원 기획과 주무관 박길

## 가. 장기·집중 방식의 단계별 교육 실시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변모된 시대상황에 걸맞은 경력단계별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은 계속 증가하였으나, 기존 신규자, 승진자 대상 기본교육은 짧은 기간으로 인해 각 경력 단계에서 당해 직급 공무원에게 필수적인 능력과 자질을 배양하기에 불충분한 측면이 있었고, 같은 과정을 몇 차례에 걸쳐 나누어 진행하였기에 교육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균질화된 교육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2017년 9월 기존의 단기·분산 방식의 기본교육을 장기·집중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전국 고검장 및 지검장 의견 조회, 대검 회의 등을 거쳐 확정하였고, 일선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17년 11월 다음연도에 대한 교육 일정을 조기 확정한 후 일선에 통보하여, 2018년부터 본격 개편된 교육 체계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 2) 추진내용 및 주요성과

기존의 경력별 교육과 업무별 교육이 혼재된 교육과정을 경력·직급에 따른 교육과 직무에 따른 교육으로 구분하여, 경력·직급에 따른 기본교육은 경력 단계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규자, 승진자, 관리자로 이어지는 「단계별 교육」으로 체계화하였다.

**| 그림 2-14 |** 장기·집중 방식의 단계별 교육 실시



경력검사리더십 과정



부장검사리더십 과정

### 3) 평가 및 발전방향

짧은 기간, 여러 번 나누어 실시하던 단기·분산방식의 기본교육을 충분한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장기·집중방식의 단계별 교육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경력단계별 교육의 내실은 다지면서도 보다 효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

2018년 단계별 교육 도입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9년에는 저년차 검사들에게 체계적이고 고도화된 직무교육과 함께 성장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저년차 검사 역량강화 과정'을 신설하여 단계별 교육과정을 완성할 계획이다.

## 나. 사례·실무 중심의 타겟형 교육 도입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전문분야 교육은 일선기관의 과중한 업무 등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데 있어 부담으로 작용하여 왔고, 법무부 및 대검 소관부서 교육 등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었기에 각종 전문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높아져 갔다.

또한, 시대변화와 급속도로 변화하는 업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필요성 또한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단계별 교육과 함께 2017년 9월 전문분야 교육을 사례·실무 중심의 타겟형 교육으로 개편하는 교육 방안을 확정하고 2017년 11월 다음연도에 대한 교육 일정을 조기 확정한 후 일선에 통보하여 2018년부터 본격 개편된 교육 체계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 2) 추진내용 및 주요성과

일선의 업무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교육효과는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5일 간의 범용형 필수·전문가 교육을 대검 소관부서와 협력하여 진행하는 실무와 사례 중심 2~3일 간의 단기 「목표중심형(Target) 교육」으로 개편하고, 실제 일선의 업무기법과 착안사항을 신속하게 정리·대응하여 즉시 현장업무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실무 교육을 강화하였다.

| 그림 2-15 | 사례·실무 중심의 타겟형 교육 도입



조세·관세 교육과정



환경수사 교육과정

### 3) 평가

교육기간 단축으로 교육 참여에 대한 부담이 감소하면서 기존에 비해 교육 참여율이 향상되는 한편, 교과목 및 강사 선정 등 교육 설계를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대검 각 소관부서에서 담당함으로써 필요한 현안과 실제 사례 및 실무 위주로 교육을 진행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

## Ⅲ. 실무 중심 교육 실시로 직무역량 강화

### 가. 신임검사 통합 교육 실시

법무연수원 대외연수과 주무관 김대엽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용인분원에서는 사법연수원 교육 폐지에 대비하고 사법시험 출신과 변호사시험 출신으로 이원화된 교육과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임검사 통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7년 하반기부터 신임검사 교육개편 TF를 운영하여 통합교육 방안을 마련하고 대검, 법무부 협의를 거쳐 2018년부터 실시하였다.

한편, 통합교육 시 예상되는 사법시험 출신과 변호사시험 출신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변호사시험 출신 검사 예비합격자를 대상으로 결정문 작성방법 등 사법연수원 과정을 3~4월에 집중 교육하는 입교준비과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였다.

### 2) 추진 내용 및 성과

신임검사 통합교육은 사법시험 출신 및 변호사시험 출신 신임검사 총 112명을 대상으로 2018년 5월부터 2019년 2월까지 4쿼터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이 중 사법시험 출신 및 변호사시험 경력 신임검사 44명은 2018년 9월 2쿼터까지 5개월간의 교육을 수료하였다. 변호사시험 7기 및 변호사시험 4기 법무관 출신 신임검사 68명은 3쿼터 일선 청 실무수습(2018. 10 ~ 12월)까지 종료하였고, 이후 4쿼터(2019. 1 ~ 2월) 과정을 거쳐 수료할 예정이다.

교육과정 중 특히 직무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롤플레잉 조사실습」 등 과목을 집중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사건의 쟁점 파악능력 및 조사역량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특히 롤플레잉 조사실습은 교수들을 피조사자로 하여 실제로 사람을 조사해보고, 신임검사들도 직접 피조사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조사능력 제고뿐만 아니라 조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사례를 인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편, 저년차 검사 역량강화 과정을 비롯한 신임검사 통합 교육 과정에서 1:1 튜터링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신임검사 등 지도·교육 목적 예산 9,200만원을 확보하였다.

| 그림 2-16 | 롤플레잉 조사실습



### 3) 평가

기존의 법리·판례 암기 및 결정문 작성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롤플레잉 조사실습 등 교과목을 반영하여 수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특히 사법시험 출신 신임검사들에 대하여는 교육기간을 5개월로 연장하여 실무 역량을 증대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신임검사 통합교육에 대한 신임검사들의 교육 전 찬성 의견은 59.8%였으나 교육실시 후 찬성 의견은 92.16%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등 통합교육을 통하여 출신과 기수 등이 다양한 신임검사들이 함께 교육을 받음으로써 검사 상호 간 교류하고 연대감을 높일 수 있었던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신임검사 등에 대한 1:1 튜터링 교육을 통해 선배검사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 뿐만 아니라 구속·불구속, 압수수색 등 상황별 또는 피의자, 참고인 등 대상자별 인권보호 방법 및 사례, 관련자 등 주요 인물 배려 및 관리 노하우 등을 전수할 수 있어 신임검사 등의 전체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나. 검찰직, 보호직, 출입국관리직 신규자 과정 운영 개선

법무연수원 일반연수과 주무관 박창현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비직무과목 선택합격자가 증가함에 따라 법률 및 직무관련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가되었다. 이에 직렬별 9급 신규자과정 교육기간을 확대하여 직무교육을 보강하고 신규자의 공직관·국가관을 확립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 2) 추진내용 및 주요성과

2017년 출입국관리직 신규자과정은 4주, 검찰직 및 보호직 신규자과정은 5주간 운영하였으나, 직무교육 강화를 위해 2018년에는 직렬별 각 6주로 확대하여 운영하였다.

2017년에 비하여 "검찰직 신규자과정"은 법률과목을 35시간에서 40시간으로, 수사실무과목을 18시간에서 42시간으로 확대하였고, "보호직 9급 신규자과정"은 7개 직무과목을 신설하고, 교육시간을 확대 편성하였고, "출입국 9급 신규자과정"은 직무과목 13시간과 일선청 수습교육 35시간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독립기념관, 국립현충원 등을 방문하고 참배함으로써 신규자들이 바람직한 공직관·국가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검찰직 신규자과정"의 경우 법제처장 특강과 검찰총장과의 대화시간을 마련하여 검찰신규자의 올바른 법의식(legal mind)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 그림 2-17 |** 신규자 교육과정 개편



검찰신규자 현충원 방문




검찰신규자 법제처장 특강

## 다. 수사관 역량강화 과정 신설

법무연수원 일반연수과 주무관 박창현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비직무과목을 선택하여 합격한 신규수사관 채용이 증가하였고 승진 소요연수가 감소함에 따라 수사경험이 부족한 검찰수사관이 수사실무에 배치되고 있어 직무관련 실습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한편, 정부 수사권 조정안이 실시될 경우 검찰에 직고소하는 재산범죄 사건을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일선청 업무 증가로 청별 교육이 어렵고 단순 이론교육만으로 교육효과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인 점을 고려하여 2018년에 실무·실습 중심의 체계적 교육과정인 "수사관 역량강화 과정"을 신설하였다.

### 2) 추진내용 및 주요성과

대검찰청에서 실시한 서울동부, 청주, 광주지검 등 직수사건 시범청 운영과 관련하여 시범청 소속 수사관의 수사·조사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무연수원에서는 5일간(2018. 8. 20. ~ 24.) 3개청 수사·조사과 과장을 포함한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수사·조사과 수사관 수사역량강화과정"을 운영하였다.

기존 전문교육 과정과 달리 법무연수원 검사교수 및 검찰 교수요원 전원과 연구위원 등 활용 가능한 전문 인력을 총 동원하여 롤플레잉 등 실습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개인별 완결사건 사례를 제공하여 고소장 접수에서 의견서 작성까지 진행하고 결과를 교수에게 제출한 후 교수가 개인별로 피드백(feedback)함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교육을 통해 교육생의 조서작성 등 조사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었고 이에 따라 교육기간, 교육 대상 등 교육 과정을 개편하여 "8급 수사관 수사역량강화과정"을 신설하였다.

2018년에는 "8급 수사관 수사역량강화과정"을 20일간 2회 실시하였고, 2019년부터는 7급, 6급, 5급으로 교육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라. 교정훈련센터를 통한 이론-실기 연계 교육 강화

법무연수원 교정훈련과 교감 조부현·이동근

### 1) 추진배경

교정직 신규자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교정관련 법령·제도 등 이론교육 뿐만 아니라

모의교정시설을 갖춘 교정훈련센터에서 이론과 실기를 연계한 실무·실습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100여 명의 교육생이 교정훈련센터 로비에서 실습 전 이론수업을 받는 과정에서 뒷좌석에 앉은 교육생들은 장비 조작 모습을 직접 볼 수 없어 수업의 효율이 저하되는 등의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미디어 장비를 보강하였다.

또한 교정직 신규자들을 대상으로 수용시설에서의 응급상황 발생 시 현장감 있는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일선기관으로부터 응급구조차량을 교육용으로 관리전환 받아 교육을 실시하였다.

**| 그림 2-18 |** 교정훈련센터 실습교육 강화



교정훈련센터 교육모습



긴급상황별 조치 및 구조 실습 모습

### 2) 추진내용 및 주요성과

교정훈련센터에서의 교육을 위해 정밀디지털장비(캠코더)를 구매한 후,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빔프로젝터와 연계하여 교육 영상을 전면 스크린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보완하여, 뒷좌석 교육생들에게도 동일한 교육 효과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장비 조작 과정을 보다 정밀하게 보여줌으로써 교육 집중도를 향상시켰다.

또한 실습용 응급구조차량을 확보함으로써 교정직 신규 7급 및 9급 교육과정 중 '긴급상황별 조치 및 구조 실습' 수업 시간에 교육생들이 사고 현장에서의 대처방법 뿐만 아니라, 직접 환자를 사고현장에서 응급구조 차량까지 이동시켜 스트래쳐카를 고정시키는 훈련을 해봄으로써, 실제 응급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 마. 교정공무원 체포현장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실사격 표적지 디자인 변경

법무연수원 교정훈련과 교감 김종호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대부분의 교육생이 군복무 시절 K-2 소총 등을 활용한 사격훈련은 받은 적이 있으나 권총 사격 경험이 없는 상태이고, 원형 표적지를 이용한 소량(5발)의 사격 훈련의 경우 표적지 명중률이 낮은 경향이 있었다. 이는 사격에 대한 자신감 결여로 연결될 수 있어 실제 상황발생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등 사격훈련의 목적달성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용자의 도주 상황 등에 대비하여 신체의 치명적인 부위를 피하여 사격하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표적지를 개선하였다.

| 그림 2-19 | 실사격 표적지 디자인 변경



실사격 훈련 모습






표적지 변경 전 ⇒ 표적지 변경 후

### 2) 평가

기존 표적지의 경우 명중률이 낮아 사격 종료 후에 훈련 효과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으나, 새로 도입한 표적지의 경우 수용자 도주 상황 등 실제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생들의 사격에 대한 자신감도 향상시킬 수 있었다.

## 바. 야간 통합 무도교실 운영

법무연수원 교정훈련과 교감 김충호

### 1) 추진배경 및 추진내용

신임검사를 포함한 검찰·교정·보호·출입국 직렬 신규 교육생들의 일체감 조성을 위해 야간 통합 무도교실을 운영하였다. 일과시간 후에 함께 검도, 유도, 태권도를 익힘으로써 교육생간 일체감 조성과 이해의 폭을 넓힐 뿐만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응용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여 업무에 직·간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표 2-13 |** 2018년 무도교실 운영 실적

(단위 : 명)

| 직렬 | 신임검사반 | 검찰직 | 출입국관리직 | 보호직 | 신규 교정 7급 | 신규 교정 9급 |
|---|---|---|---|---|---|---|
| 인원 | 46 | 43 | 266 | 118 | 36 | 180 |

**| 그림 2-20 |** 야간 통합무도교실 운영



태권도 교육



유도 교육

### 2) 평가

야간무도교실을 통해 교육생간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타 직렬과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업무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제고하였다.

## 사. 교정훈련센터 내 교정역사관 재단장

법무연수원 교정훈련과 교감 유하나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교정훈련센터에 위치한 교정역사관은 130여 평의 면적에 1,000여 점의 교정관련 자료를 전시 중이다. 이 전시공간은 연수원 방문객들과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교정행정 홍보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교정 정체성 확립과 교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장으로써 역사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법무연수원이 2015년 용인에서 진천으로 이전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역사관 전시공간의 재단장 및 전시물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전시물의 교체, 관람자 이해 중심의 체계적 자료 분류, 전시방법의 현대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교정 자료의 수집 및 전시 등 현대적 감각에 맞추어 기존의 교정 역사관을 전면 재단장 하였다.

### 2) 추진 내용 및 주요성과

먼저 전시자료를 교정 행정 변천, 교정공무원, 수용생활, 교정교화, 대외협력 등 5개로 대분류하고, 전시공간을 통로식으로 배치하여 관람자들이 이해하기 편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이전 보유 자료를 전수 조사하여 정리하였고, (구)광주교도소 사형장, 청주교도소 등 현장을 방문하여 역사적 가치가 있는 교정 자료를 추가 수집하였다.

아울러 관람객들의 직관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대형 디아섹(Diasec, 틀 없는 액자)을 제작하고, 미디어 시청각 자료를 보강하는 등 전시방법을 현대화 하였다.

나아가 교도소장 체험코너를 신설하고 국제협력 자료를 내실화하여, 관람객들이 교정 행정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고 외국 교정기관과의 국제교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하였다.

### 3) 평가 및 발전방향

교정역사관을 전면 재단장함으로써 연수원을 방문하는 외부 인사들에게 법무연수원과 우리나라 교정 행정의 발전사를 알리고, 교정행정에 대한 거리를 좁혀 친밀감을 형성하였고, 내부 교육생들에게는 교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자부심을 갖게 함으로써 교정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법무부 소속기관에서 근무를 시작하는 신규 직원들에게 형집행의 변천 과정을 한눈에 보여줌으로써 생동감 있는 업무 이해와 직무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교정역사관의 전시 자료를 수집·보완하고 전시방법을 개선하는 등 교정역사관의 전시·구성을 지속적으로 체계화·고도화시킬 예정이다.

| 그림 2-21 | 교정역사관 재단장




교정역사관 재단장 전




교정역사관 재단장 후

## Ⅳ. 연구활동의 전문화

### 가. 형사사법포럼 개최

법무연수원 기획과 주무관 윤양섭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국가 형사정책 수립의 중추적인 연구기관인 법무연수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바람직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공동으로 연구하고자 2010년 1월 28일 제1회 형사사법포럼을 개최한 이래로, 매년 이슈가 되는 형사정책적 과제에 대하여 선제적인 형사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 표 2-14 | 형사사법포럼 연혁 및 주제

| 연도 | 주제 | 날짜 | 장소 |
|---|---|---|---|
| 2010 | 범죄피해자의 피해 실태 및 보호·지원 대책 | 1월 28일 | 대검찰청 |
| 2011 | 이성의 빛과 형사사법의 진실 | 3월 9일 | 대검찰청 |
| 2012 | 과학기술의 발달과 공판 : 공판절차의 선진화 | 3월 22일 | 대검찰청 |
| 2013 | 여성·아동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 | 10월 24일 | 법무연수원 |
| 2014 | 경제범죄의 현황과 형사정책적 과제 | 7월 3일 | 대검찰청 |
| 2015 | 재난 없는 안전사회를 위한 형사정책적 과제 | 9월 3일 | 대검찰청 |
| 2016 | 신뢰의 프리즘으로 본 형사사법 | 6월 15일 | 대검찰청 |
| 2017 | 소년사법의 현황과 소년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 12월 22일 | 대검찰청 |
| 2018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형사정책적 과제와 대응방안 | 11월 22일 | 법무연수원 |

### 2) 추진 내용 및 성과

2018년 11월 22일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저스티스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형사정책적 과제와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제9회 형사사법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①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와 형사정책적 대응(발표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지영 위원), ②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분석과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발표자 : 대검찰청 정대희 연구관)를 소주제로 하여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기술적 수단들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특히 자율주행차의 범죄적 이용 가능성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 기준의 확립, 그리고 자율주행차의 특성에 맞는 압수·수색절차의 도입이 논의 되었고, 범죄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범죄예방 활용방안과 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제안과 토론이 있었다.

| 그림 2-22 | 제9회 형사사법포럼 개최






### 3) 평가 및 발전방향

형사사법포럼은 법무연수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형사사법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열린 장으로서 형사사법발전의 초석을 다지는데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학계 및 형사정책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행사에 참석하도록 하고 논의된 내용들이 형사사법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형사사법 분야 연구를 선도하는 학술회의로 발전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 나. 법무연수원 비상임 교수 위촉

법무연수원 대외연수과 주무관 김대엽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연수원에서는 '실무 중심의 살아 있는 교육' 구현을 목표로 현장의 생생한 우수 기록들을 발굴하여 실습하도록 하고, 교육생들이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선 청에서 근무하는 결정, 수사, 조사, 공판, 수사지휘 등 각 분야의 최우수 인력을 선정하여 비상임 교수로 위촉하였다.

### 2) 추진 내용과 성과

신임검사 교육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8년 11월 30일 법무연수원 비상임 교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법무연수원 훈령 제171호)을 제정하여 같은 날부터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2018년 12월 14일 일선 검찰청에 근무하는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 분야별 전문가 31명을 비상임 교수로 위촉한 후 워크숍을 개최하여 신임검사 교육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그림 2-23 | 법무연수원 비상임교수 워크숍 개최



### 3) 평가 및 발전방향

비상임 교수단을 통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신임검사 교육에 적합한 기록을 추천받아 교육 및 평가에 활용하는 등 일선 청과 소통하는 실무 중심의 살아 있는 교육환경 토대가 조성되었다.

향후 지속적으로 우수 기록을 제공받음으로써 교육용 기록은행 구축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다. 정책연구용역 심의소위원회 재구성

법무연수원 기획과 주무관 하정우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행정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무연수원은 자체적으로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정책연구용역 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 있다.

2018년에는 전문성을 갖춘 외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명을 새로이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정책연구용역 연구자 선정의 투명성과 연구과제 심의 기능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 표 2-15 | 2018년 정책연구용역 심의소위원회 위원 명단

| 구분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비고 |
|---|---|---|---|---|
| 위원장 | 법무연수원 | 부원장 | 이영주 | |
| 위원 | 법무연수원 | 연구위원 | 안미영 | |
| 위원 | 법무연수원 | 기획과장 | 박기동 | |
| 위원 | 법무연수원 | 대외연수과장 | 박영진 | |
| 위원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교수 | 이효원 | 신규위촉 |
| 위원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교수 | 이성우 | 신규위촉 |
| 위원 |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 교수 | 이정민 | |
| 위원 |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 교수 | 박형관 | |

### 2) 평가 및 향후계획

법무연수원은 정책연구용역 심의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2018년에 『뇌기능 및 신체활동능력 저하에 따른 범죄현황과 형사·행정적 대응 방안』등 법무 행정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5건을 엄선하여 추진하였다.

연구용역 결과물은 강의자료 또는 범죄백서 특집 게재 등 교육 및 연구 업무 발전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법무연수원은 정책연구용역 주제 및 연구자 선정 시 정책연구용역 심의소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법무 정책 개선 및 발전에 도움이 되는 주제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 표 2-16 | 2018년 정책연구용역 추진 현황

| 구분 | 용역 과제명 | 책임연구원 |
|---|---|---|
| 1 | 노령화 등으로 인한<br>뇌기능 및 신체활동능력 저하에 따른 범죄현황과 형사·행정적 대응방안 | 전남대학교<br>김봉수 |
| 2 | 2018년 사이버교육 콘텐츠 제작 | ㈜에프엑스디자인 |
| 3 | 로스쿨 출신 신임검사 교육 관련 사례집 표준 교재개발<br>[수사실무교재-상사법 지식을 요하는 형사사례집 교재개발] | 중앙대학교<br>이순옥 |
| 4 | 로스쿨 출신 신임검사 교육 관련 사례집 표준 교재개발<br>[수사실무교재-회계·조세지식을 요하는 형사사례집 교재개발] | 영남대학교<br>예상균 |
| 5 | 로스쿨 실무교육 교재 개발 | 충남대학교<br>이창원 |

## V. 법무한류 확산 및 국제협력 강화

### 가. 국제연수과정 실시

법무연수원 대외연수과 주무관 김대엽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연수원은 1997년부터 국제연수과정을 운영하여 형사사법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확립하고, 국제 형사사법 공조체계를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을 널리 전파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정착, 경제발전을 지원함과 아울러 국제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도 기여하고 있다.

#### 2) 추진내용과 주요성과

2018년 현재까지 112개 과정, 91개국, 1,750명의 국제연수생을 배출하였으며, 그 중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와 협업을 통하여 2018년 5월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를 모델로 내무부 과학수사센터 내에 ICT 도입부를 신설하고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연수과정을 개설하였으며, 대검찰청 아카데미가 고등검찰청급으로 승격됨에 따라 용인분원이 검사교육,

특별사법경찰 및 국가송무 교육 과정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등 법무행정 제도를 수출하는 실질적인 성과도 도출하였다. 2018년 법무연수원에서 실시한 국제연수과정 현황은 아래 〈표 2-17〉과 같다.

**| 표 2-17 |** 2018년 국제연수과정 운영 현황

| 순번 | 과 정 명 | 기 간 | 대 상 |
|---|---|---|---|
| 1 | CIS 과학수사 역량강화 | 3. 8. ~ 3. 28. | 아제르바이잔 등 4개국 검사 15명 |
| 2 | 몽골 형사사법 및 검찰 역량강화 | 4. 12. ~ 4. 27. | 몽골 검찰 아카데미 검사 등 15명 |
| 3 | CIS 출입국관리행정 역량강화 | 5. 10. ~ 5. 30. | 우즈베키스탄 등 4개국 출입국공무원 14명 |
| 4 | 몽골 법률집행대학 교도관 역량강화 | 6. 17. ~ 6. 30. | 몽골 법률집행대학 교수 20명 |
| 5 | 베트남 최고인민검찰원 역량강화 | 7. 15. ~ 7. 28. | 베트남 최고인민검찰원 고검장 등 20명 |
| 6 |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 8. 30. ~ 9. 19. | 콜롬비아 등 10개국 검사 및 수사관 등 18명 |
| 7 | 필리핀 검찰 과학수사 역량강화 | 10. 11. ~ 10. 26. | 필리핀 검사 및 국가수사국 수사관 등 19명 |
| 8 | 이라크 출입국관리행정 역량강화 | 11. 8. ~ 11. 21. | 이라크 출입국공무원 등 10명 |

**| 그림 2-24 |** 2018년 국제연수과정



필리핀 검찰 과학수사 역량강화 과정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과정

## 나. 국제교류 및 협력 확대

법무연수원 대외연수과 주무관 김대엽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정부의 신남방정책 기조에 따라 캄보디아, 필리핀을 방문하여 캄보디아 검찰총장, 필리핀 법무부 장관 등과 면담하고, 면담결과를 향후 ODA(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양국의 법무행정 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국제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외국 법무연수기관과 지속적으로 교류·협력하여 2018년 3월에는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예비판사 1명을 대상으로 2주 동안 연수과정을 운영하였다.

| 그림 2-25 | 국제교류 및 협력 강화



캄보디아 검찰총장 면담




필리핀 법무부 장관 면담

### 2) 향후계획

법무연수원은 정부의 신남방 정책에 따라 미양마 등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정부의 신북방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과 법무·검찰 교육 관련 상호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 Ⅵ. 국민과 함께하는 법무교육 실현

### 가. 기업법무리더과정 개편

법무연수원 기획과 주무관 나민수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기존 교육은 충청권 중소기업 및 공기업 임직원만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참여율이 저조해지는 등 교육과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발생했고, 20시간에 불과한 교육시간이 주 1회씩 8주 내지 12주간 장기로 진행되어 교육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기업경영에 불편을 초래할 여지가 있었다.

이에 전국의 중소도시 소재 중소기업 경영자들로 교육 대상자를 확대하고 교육 기간을 1박 2일로 압축하여 교육의 효율적 설계를 추진하였다. 2018년의 경우 시범적으로 안동지청 관할인 안동, 영주, 봉화지역 기업 경영자 3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사전 설문 등을 통해 교육대상자들이 선호하는 교과목을 재편하는 등 교육대상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였다.

### 2) 평가 및 발전방향

기존 '혁신법무리더과정'의 명칭을 '법무·검찰과 함께하는 기업법무리더과정'으로 변경하여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참여형 교육을 도모하였다.

기업법무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도시 기업인들에게 품격있는 법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림 2-26 | 제1기 법무·검찰과 함께하는 기업법무리더 과정



## 나. 어린이 법교실 및 학생직업체험 과정 운영

법무연수원 기획과 공익법무관 박재천

### 1) 추진배경 및 추진내용

법무연수원은 법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에 기여·봉사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 법교실은 체험·활동 중심의 법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어린이들이 책임의식과 자부심을 갖춘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특히 미래 법조인을 꿈꾸는 초등학생들에게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학생직업체험 과정은 중·고등학생에게 법무행정 분야의 직업을 소개하고, 직업 관련 강의 및 모의교도소 등 시설 체험을 통해 진로·직업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2) 주요성과

어린이 법교실은 2017년까지는 용인분원에서 진행되었으나, 2018년부터 진천본원으로 이관되어 진천, 용인, 고성 지역의 초등학생 54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직업체험 교육은 2018년도에 충북 교육청과 연계하여 4개 학교(청원고등학교, 신흥고등학교, 덕산중학교, 진천여자중학교) 학생 1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3) 평가 및 발전방향

학생직업체험 과정은 프로그램의 우수성과 교육생들의 높은 만족도로 인해 교육부로부터 직업체험 우수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향후 우수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종래 충북소재 학교를 대상으로만 운영되던 교육과정을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과 직업체험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교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 횟수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 그림 2-27 |** 제12기 어린이법교실




## Ⅶ. 교육생 힐링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

기획과 행정사무관 차유진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연수원은 교육생의 힐링과 재충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북쪽 부지에 무궁화 정원 및 무궁화 쉼터를 조성하였고, 다양한 수종의 나무를 식재하여 조경 환경을 개선하였다. 이와 함께 교육생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 원내 부지를 자연친화적인 교육 환경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카페 공간에 만화책을 비치하는 등 창의적인 휴식 공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2) 추진내용 및 주요성과

법무연수원 북쪽 매산 뒤편 넓은 공터에 산책로 포장 공사를 진행해 기존 산책로와 연계하여 법무연수원 구석구석을 자전거와 도보로 산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교육생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2018년 3월 29일부터 5월 21일까지 법무연수원 북쪽 부지에 무궁화 묘목 1만주를 태극기 모양으로 식재하여 무궁화 정원을 만들고 아담한 정자를 설치하여 무궁화 쉼터를 조성하였다. 앞으로 교육생들이 시원한 그늘에서 만개한 무궁화를 바라보면서 국가와 민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림 2-28 |** 무궁화 쉼터 조성



무궁화 쉼터



무궁화 쉼터 현판식

또한 2018년 상반기에는 소나무, 금강송, 자작나무, 개나리, 왕벚나무 등 다양한 수목을 식재하였고, 하반기에는 교육생들이 식사 및 산책을 위해 자주 왕래하는 행복관 주변 함박천을 따라 배롱나무, 수양버드나무 등을 식재하였다.

**| 표 2-18 |** 조경 추진 현황

| 식재 기간 | 식재 내용 |
|---|---|
| 3. 20. ~ 4. 13.(25일) | 법연둘레길 및 어린이집 주변에 자작나무 1,400여주와 개나리 1,500여주 식재 |
| 3. 27. ~ 4. 2.(7일) | 진천군청(왕벚나무 100주, 소나무 50주), 음성군청(왕벚나무 115주)에서 기증한 수목을 법연둘레길 등에 식재 |
| 3. 29. ~ 4. 9.(12일) | 무궁화 1만여주를 태극기 모양으로 식재하여 무궁화 공원 조성 |
| 4. 4.(1일) | 식목일을 맞아 연수원과 법무부 직원이 함께 국궁장, 북문 주변 등에 무궁화(440주)와 자산홍(400주)을 식수 |
| 4. 11. ~ 4. 17.(7일) | 대왕참나무, 금강송, 소나무, 자작나무 등 800여주를 법연둘레길에 식재 |
| 5. 21. 및 5. 28.(2일) | 백일홍(840본) 및 해바라기(100본)를 무궁화쉼터 주변 및 야구장 주변 화단에 식재 |
| 10. 24.(1일) | 행복관 주변에 함박천을 따라 배롱나무 41주, 수양버드나무 5주 식재 |
| 11. 2. ~ 11. 4(3일) | 음성군청(대왕참나무 55주, 소나무 40주)에서 기증한 수목을 둘레길 산책로 등에 식재 |
| 11. 29.(1일) | 숲가꾸기 행사의 일환으로 연수원과 법무부 직원이 생활관 뒤편과 주차장 주변에 이팝나무 60주 식재 |
| 12. 19. ~ 12. 24(4일) | 용인분원 오죽 화분 이전 설치(4개소) → 진천본원 제1, 2 강의동 로비 |

이와 함께 교육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원내 부지를 사슴벌레, 고라니 등이 서식하는 동물 공감 교육 환경으로 조성하고 있는데, 10월 18일에는 추가로 토끼 10마리를 방사하였다. 그리고 교육생들과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행복관 1층에 설치된 카페에 웹툰 등 다양한 만화책을 비치하였다.

**| 그림 2-29 |** 교육환경 개선



동물공감 교육환경 조성



행복관 카페 만화책 비치

### 3) 향후 계획

앞으로도 법무연수원은 내실 있는 교육프로그램 마련 및 교육생 힐링을 위한 지속적인 환경 개선을 통해 직무역량과 함께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따뜻한 인간미를 겸비한 법무·검찰 공무원 양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제2절 정책 홍보 활동

## 1. 기관장 소통 강화

대변인실 서기관 송세시리아

### 가. 네이버 법률판 인터뷰

양방향 소통 강화를 위해 누리꾼(네티즌)들이 장관에게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고 해당 질문에 장관이 직접 답변하는 〈열린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네이버 법률판'과 '지식iN'을 활용하여 2018. 9. 4. ~ 2018. 9. 11.까지 총 2,245건의 질문이 접수되었으며, △로스쿨 △검찰개혁 △낙태법 △난민법 △불법체류 △불법촬영 △사형제도 △여성·아동 범죄 △주취 감경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였다. 해당 질문에 대한 장관 답변은 기사화하여 네이버에 게시하였고 답변 모습은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법무부 홈페이지와 유튜브,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를 통해 배포하였다.

| 그림 2-30 | 네이버 법률판 보도 내용




국민 질문 접수




네이버 기사

| 그림 2-31 | 〈열린 인터뷰〉 답변 영상




## 나. SNS 라이브 방송 (4회)

장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는 SNS 라이브 소통을 시도하였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 처벌 강화(3. 2.) △난민 관련(8. 1.) △불법영상·음주운전 처벌 강화(10. 17.)에 대한 라이브 인터뷰와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국민들에게 지난 1년의 성과를 설명하는 소통(6. 20.)도 진행하였다. 해당 인터뷰 모습은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법무부 홈페이지, 유튜브 등 SNS를 통해 배포하였다.

| 그림 2-32 | 법무부장관 SNS 라이브 방송




|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 처벌 강화 | 난민 관련 | 불법영상·음주운전 처벌 강화 |
|---|---|---|

## 다. 방송 출연 및 인터뷰 (5회)

법무부장관은 법무 정책 홍보를 위해 KBS〈뉴스라인〉(1. 25.), KTV〈직격 인터뷰〉(5. 24.)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비롯하여 한겨레(6. 23.), 중앙일보(9. 5.), 경향신문(12. 26.)과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아동학대 범죄 예방 △소년범죄 예방 정책 △검찰개혁 △미투 운동 △이주여성의 성폭력 대책 △성폭력 근절방안 △적폐 청산 △인권정책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등의 정책에 대한 깊은 소통이 이루어졌다.

**| 그림 2-33 | 법무부장관 방송출연 및 인터뷰**




KBS 뉴스라인




KTV 직격 인터뷰




한겨레


"재범 막게 생계형 초범 따로 수용…일 끝나면 교도소로 퇴근"

중앙일보


"감찰 받던 김태우, 왜 폭로하는지 발화점 보면 본질 드러나"

경향신문

## 라. 브리핑 홍보 (12회)

법무 정책 홍보를 위해 언론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대변인이 54회에 걸쳐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법무 정책에 대한 언론의 취재 요청 960건을 응대하였다. 또한 336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법무 정책 및 다양한 행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언론의 오해·왜곡 보도 및 비판 보도에 대해 71건의 설명 자료를 배포하여 법무부 입장을 상세히 전달하였다.

기관장의 언론 브리핑을 통해 주요 현안 및 법무 정책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였다. 장관이 직접 △법무부 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2. 2.) △검사 인사제도 개선(5. 16.)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와 투표참여 당부(5. 31.)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담화 및 서명식(6. 21.)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8. 21.) 등의 브리핑을 통해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며, 차관 역시 △2018 정부업무보고 관련 브리핑(1. 25.) △제주 예멘 난민 관련 브리핑(6. 29.)으로 이슈에 신속히 대처하였다.

이 외에도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 발표 관련 여성가족부와 합동 브리핑(2. 22.)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의 활동상황 및 권고안 발표(4. 4. / 5. 17.) △법무실장의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대상 사건' 선정 관련 설명(5. 3.) △대변인의 '불법영상물 엄정 대처 방안'(10. 1.) 관련 브리핑이 진행되었다.

**| 그림 2-34 |** 법무부장관 브리핑 장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담화 및 서명식




전속고발제 폐지 관련 브리핑

## 마. 한국경제 연속 기고 (8회)

주요 법무 정책 홍보를 위해 법무부장관 명의로 한국경제에 총 8회 기고를 냈다. △제1편 전속고발제 폐지를 주제로 한 “정의와 경제”(9. 6.)를 시작으로 △제2편 다수 소비자 위한 집단소송제(9. 13.) △제3편 공씨책방과 임대차보호법(9. 20.) △제4편 소년범죄 예방(9. 27.) △제5편 가짜뉴스를 다룬 “현대판 주초위왕(走肖爲王)”(10. 4.) △제6편 인권존중, 지속가능 경영의 조건(10. 11.) △제7편 난민, 그 복잡성과 특수성(10. 18.) △제8편 교정의 오늘과 내일(10. 25.) 등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법무 정책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 그림 2-35 |** 한국경제 기고




9. 6. 9. 13. 9. 20. 9. 27.




10. 4. 10. 11. 10. 18. 10. 25.

## 바. 기자 간담회 (15회)

### 1) 법조 출입 기자 간담회

언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기관장-기자 간담회'를 총 8회 진행했다. 2018. 1. 11. 신년 및 장관 취임 6개월 기자 간담회, 법조언론인클럽 간담회(3. 19.), 한국일보 간담회(5. 2.), 동아일보 간담회(5. 3.),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간담회(9. 3.), 대법원 법조팀장 간담회 (11. 3.)를 시행하였다.

특히 1. 11.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개최한 '신년 및 장관 취임 6개월 기자 간담회'는 법조 출입기자 40여 명과 장·차관 및 실·국·본부장이 모두 참석한 대규모 간담회였다. △가상화폐 △검·경 수사권 조정 △민영소년원 설치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장관이 직접 답변하면서 브리핑과 간담회가 혼합된 형식의 깊이 있는 소통이 이루어졌다. 또한 11. 3. 진행한 대법원 법조팀장 간담회는 장·차관과 실·국·본부장들이 20여명의 기자들과 서울대공원 뒷산 둘레길을 걸으면서 다양한 주제를 자유롭게 논의하는 새로운 형식의 만남이었다.

**| 그림 2-36 |** 2018. 1. 11. 법조 출입기자 간담회




### 2) 지역 언론과 연속 간담회

법무부장관으로는 처음으로 지역 언론사들과 7회 연속 간담회를 추진하였다. 2018년 부산·울산·경남(10. 17.), 대구·경북(11. 13.), 충청(11. 27.), 광주·전남(12. 4.), 전북(12. 11.) 지역 언론들과 만났으며 2019년에 강원·제주(1. 8.), 경기(1. 22.) 지역 언론과 소통하였다.

참여한 언론 대부분은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도입 등 검찰개혁 문제 △사형제도 존폐논란 △특별사면 △공권력 확립 대책 등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거창 법조타운 문제 △전주법원과 검찰청 부지 활용 방안 △제주 예멘 난민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 2. 온라인을 활용한 소통

대변인실 사무관 이상우

## 가. 모바일 최적화 콘텐츠 제작

PC에서 모바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홍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 정책 홍보 콘텐츠도 모바일 환경에 가장 적합한 동영상, 카드뉴스, 웹툰 형식으로 제작하는데 집중하였다.

모바일 환경에서 분량이 짧은 동영상을 선호하는 동영상 시청행태를 분석하여 제작에 반영하였다. 장관의 현장 행보를 1분이라는 제한된 시간에 담은 '1분 무브'와 10초 동안 법무 정책의 시행 전·후를 비교하여 한 눈에 바뀐 정책을 알리는 '10초 동영상' 등 다양한 동영상 콘텐츠를 54건 제작하였다.

또한 카드뉴스, 웹툰을 통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인터넷 화상공증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 등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들을 알기 쉽게 홍보하였다.

| 그림 2-37 | 동영상




| 그림 2-38 | 카드뉴스, 웹툰



## 나. 민생정책 관련 홍보 동영상 제작

2018년 법무부는 국민의 삶을 챙기는 '민생 법무부' 구현을 위해 장관의 '민생 행보'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시행하였다. 특히 △상가임차인 보호 정책 △주택임차인 보호 정책 △집단소송제 도입 △집합건물법 개정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 정책 시행을 위해 장관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였다. 이러한 현장 소통 행보를 '법무부 장관이 간다!'라는 콘셉트의 영상콘텐츠로 제작하여 국민께 현장과 소통하는 법무부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 그림 2-39 | 법무부 장관 민생행보 콘텐츠




## 다. 위기관리 홍보 콘텐츠 제작

### 1) 제주 예멘 난민 관련 카드뉴스 및 동영상 제작

2018년 6월, 제주도 예멘 난민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확산되면서, '무사증제도 폐지','난민법 폐지' 등을 요구하는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었다. 더불어 제주 예멘 난민과 관련된 가짜뉴스가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다.

이에, 근거 없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콘텐츠 제작에 돌입하였다. 제주 예멘 난민 관련 가짜뉴스를 직접 확인하고, 해당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카드뉴스 '팩트체크'를 제작하여 법무부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배포하였다.

| 그림 2-40 | 제주도 예멘 난민 팩트체크 카드뉴스



제주도 예멘 난민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난민 신청자 관리가 부실하여 제주도의 치안이 불안하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동영상 콘텐츠도 제작하였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난민 숙소를 방문 공개하고, 아랍어 통역관의 일상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모습 등을 직접 촬영하여 보여주면서 국민의 우려와는 달리 난민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난민법의 존재 이유와 난민법 개정 방향을 설명하는 동영상도 제작하였다. 사회적 이슈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직접 국민과 소통함으로써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책임감 있는 법무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였다.

**| 그림 2-41 |** 제주도 예멘 난민 현장 최초공개 동영상




**| 그림 2-42 |** 제주도 예멘 난민 통역관 소개 동영상



| 그림 2-43 | 법무부 장관이 말하는 '난민법' 동영상




###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카드뉴스 제작

법무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 정부의 인권정책 청사진을 담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NAP)'을 2018년 8월 7일 수립·공표하였다. NAP는 계획이 수립되기 전부터 부정적이고 확인되지 않는 뉴스들이 생산되었는데, 특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NAP의 최저임금 정책이 인권 정책 청사진을 퇴색시키고, 기업 인권을 명시한 것이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국민 사이에서 잘못된 뉴스들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NAP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SNS를 통해 배포함으로써 오해와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였다.

## 3. 국민 참여 이벤트 실시

대변인실 사무관 이상우

### 가. 법무 정책 포스터 공모전

법무 정책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8 법무 정책 포스터 공모전'을 시행하였다. 2016년에 시작되어 3회째를 맞는 법무 정책 포스터 공모전의 주제로 국내 체류 외국인이 281만명을 돌파한 국내 현실을 반영하여 '재한외국인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회'가 선정되었다.

4. 9. ~ 6. 8.까지 116개 팀(개인)이 총 139개의 작품을 응모하였는데, 3번의 심사를 거쳐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을 선정하고 각각 법무부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하였다.

| 그림 2-44 | 2018 법무 정책 포스터 공모전 당선작




대상: 소중한 이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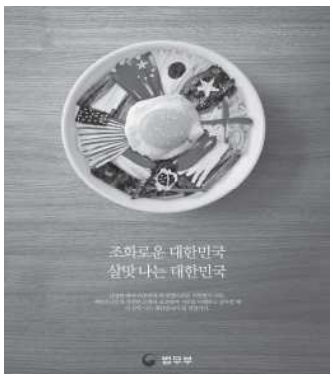

최우수상: 더하기의 의미




최우수상: (재)한 (외)국인




우수상: 다양한 사랑들로 가득 찬 대한민국




우수상: 살맛나는 대한민국




우수상: 마음의 잠금을 풀어주세요

## 나. SNS 투표 및 퀴즈 이벤트

법무 정책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모션 총 12건(월1회)을 진행하였다.

누리꾼(네티즌)의 참여가 가장 높았던 이벤트는 2018. 5. 16. ~ 5. 27. 2주간 진행한 '법무부 우수정책 투표 이벤트'였다. 이 이벤트는 법무부의 2017년 하반기 및 2018년 상반기 성과를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그중에서 가장 칭찬하고 싶은 정책을 댓글로 남기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벤트에 응모한 의견은 총 352건이었으며, 의견을 분석한 결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국민생활 편익 증진 △법무부 탈검찰화 △인권이 강화된 외국인 정책에 대해 국민이 대체로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2. 16.) △법정 최고금리 인하(3. 6.) △범죄피해자 지원제도(6. 4.)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10. 23.) 등 주요 민생 관련 법무 정책에 대한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여 국민이 법무 정책의 주요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그림 2-45 |** SNS 투표 및 퀴즈 이벤트




## 다. '급훈' 공모전

2014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급훈 공모전'은 학급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급훈'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나아가 청소년 법의식 고양을 위해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국민 참여형 프로모션이다. '2018 급훈 공모전'은 교육부와 협업을 통해 법무부 SNS 채널뿐 아니라 교육부 SNS 채널에도 공모전 내용을 게시하여 양방향으로 홍보하면서 보다 많은 청소년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2018년 공모전에는 2017년보다 10개가 늘어난 30개 학급이 응모하였다.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생활하는 학급(군산 옥구초, 장애 학생 4명, 비장애 학생 17명이 한 반에서 생활함)이 서로 배려하는 내용의 급훈으로 참여하는 등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급훈들이 다수 모집되었다. 국민 댓글과 좋아요 수를 종합하여 잠원 중학교 3학년 4반의 '손잡아 줄게'가 1위 급훈(총 418득표)으로 선정되었다.

| 그림 2-46 | 2018 급훈공모전 주요 콘텐츠




## 4. 광고 캠페인

대변인실 사무관 이상우

### 가.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제도 홍보

최근 불법체류자가 급증함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제도'를 2018. 10. 1. ~ 2019. 3. 31.까지 시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불법 체류자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위한 기획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변인실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불법체류 다발 국가(태국·중국·베트남·필리핀·러시아 등 5개 국가)의 언어와 한글을 함께 적은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제도' 동영상과 카드뉴스를 제작하였다.

이후, 외국인 밀집지역인 서울 중부·남부·인천권·경기 수원권역에 있는 버스 승차대 70기 140면에 관련 광고를 게시하였고, 경기버스(G버스) 8,000대의 내부 모니터 16,000기에 광고 영상을 송출하였다(2018. 11. 20. ~ 2019. 1. 20.).

서울, 부산 등에 있는 옥외 전광판과 수원역 근처 대형 쇼핑몰 등에도 제도 안내 영상을 송출하였고, 페이스북을 통해 6개 언어로 된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제도' 안내문을 태국, 베트남, 러시아, 필리핀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확산하는 SNS 홍보도 진행하였다.

| 그림 2-47 |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제도 광고



## 나. 미투(me too) 관련 범죄피해자지원 제도 홍보

2018년에는 법조계, 연예계, 체육계 등 사회 전반적으로 성폭력 관련 미투 캠페인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성폭력 범죄피해자 지원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졌다. 이에 범죄피해자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다.

"법무부가 #With you합니다"라는 콘셉트로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와 진술조력인 제도를 알리는 40초 캠페인 영상을 제작하여 채널A와 YTN에 광고를 송출하였고, 지하철 차량 내부 액자형 광고와 2호선 승강장 행선안내기 광고를 통한 생활 접점 매체 광고도 진행하였다(2018. 4. 11. ~ 2018. 5. 10.).

또한 법무부 공식 페이스북 및 트위터에도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와 진술조력인 제도 관련 카드뉴스 및 영상 콘텐츠를 게재하였다.

| 그림 2-48 | 미투 캠페인 광고



# 5. 법무부 정책홍보전략 실무협의회

대변인실 서기관 송세시리아

법무부 정책 홍보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매주 목요일 '정책홍보전략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협의회는 차관주재로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정책기획단장, 정책보좌관(2인), 실·국·본부장(6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실·국·본부장과 실·국·본부 주무과장이 격주로 교대 참석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협의회는 7. 5. ~ 12. 31.까지 총 21회 개최하였다. 특히 7. 5. ~ 8. 14.까지는 협의회를 매주 화·목요일 주 2회 개최하여 홍보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협의회는 논의를 통해 △제주 예멘인 난민신청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등 위기관리 과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였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집단소송제 등 민생 현안과 관련된 이슈에도 힘을 모았다. 또한, 조간 보도 분석을 통해 대응이 필요한 이슈에 대해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했고,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제도 △음주운전 처벌 △허위조작정보 대처 △불법 촬영·유포 범죄 대응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전략적 홍보를 추진하였다.

# 제3절 법무업무

## 1.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법제 정비

법무심의관실 검사 이경민

### 가. 상가임대차 법제 개선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상가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는 등 보호가 미흡하여,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권리금 보호대상에 대규모 점포인 전통시장을 포함시켰으며, 권리금 보호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였다.

아울러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기존 9%에서 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 2) 평가 및 발전방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위치에 있는 상가임차인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여 임차인의 생존권 및 안정적 영업권을 보장하고,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임차인 보호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임대료 급등의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나. 주택임대차 법제 개선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주택임차인의 소액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고, 최근 전세가 상승 등 주택임대차 시장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넓히고, 보증금 수준이 크게 상승한 지역의 지역군을 조정하였으며, 최우선변제금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 2) 평가 및 발전방향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택임차인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보증금에 대한 걱정을 덜어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법제 정비 및 법령자문 기능 강화

법무심의관실 행정사무관 고민지

### 가. 추진 배경

법무부는 국민 편익 증진 도모 및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법제 정비를 추진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 내 법령자문 기능을 강화하였다.

### 나. 주요내용

#### 1) 국민 편익 증진과 사회적 약자 권익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

과태료 징수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결손처분 근거조항을 직접 명시하는 내용의 의원발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적극 지원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또한 2018. 3. 2. 자녀의 진술청취 의무화, 미성년 자녀를 위한 절차보조인 도입, 양육비 이행 확보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과 2018. 8. 31.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등 성적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유예 특례를 마련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더불어 국민 편익 증진과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령정비 사업 추진을 위하여 T/F,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법령에 관한 전문적·심층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법령 정비와 법무정책 수립에 연계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8. 3월부터 2018. 7월까지 공익법인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관련 T/F를 구성하여 총 9차례 회의를 진행하였고, 2018. 9월부터 2018. 12월까지 비부동산 담보 활성화 도모를 위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개정 관련 T/F를 구성하여 총 6회의 회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관리비 거품 제거를 통한 서민의 안정적 주거·영업 환경 조성, 집합건물 이용 편의

증대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18. 8. 16. 서울특별시와의 공동 현장 정책 간담회를 포함하여 2018. 4월부터 2018. 10월까지 총 5차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작업을 추진하였다.

나아가 법률을 한글화하고 일본식 한자어·표현을 개선하는 등 일반 국민이 알기 쉽도록 민법을 정비하기 위하여 2018. 2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2018. 6월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2) 법령자문 기능 강화

법무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징수기관과 국민생활에 유용한 사례를 엄선하여 수록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을 제작·배포하였고, 국내외 주요 사건 및 법률 문제에 대하여 각종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정부의 법령 제·개정 작업과 법령 관련 업무수행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였다.

법무부는 2018년도에 6,541건의 법령자문 및 178건의 유권해석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중 법령자문 질의내용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법령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 표 2-19 |** 연도별 법령자문 및 유권해석 현황

(단위 : 건)

| 구분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계 | 3,532 | 3,368 | 4,083 | 3,754 | 5,106 | 4,626 | 4,996 | 5,277 | 6,210 | 6,719 |
| 법령자문 | 3,530 | 3,365 | 4,072 | 3,740 | 5,096 | 4,458 | 4,811 | 5,089 | 6,039 | 6,541 |
| 유권해석 | 2 | 3 | 11 | 14 | 10 | 168 | 185 | 188 | 171 | 178 |

### 3) 법·제도 개선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

법무부는 2018. 2월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모의 법령안 작성·발표를 심사하는 제4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에게 모의 입법의 경험을 제공하고 각종 분야의 법령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2018. 6월 '폭력적 충돌, 평화구축 그리고 헌법'을 주제로 150개국, 700여명의 헌법학자, 실무가 등이 참석한 제10차 세계헌법대회를 공동 개최하는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였다.

### 다. 평가 및 발전방향

법무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사법령의 법제 정비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각 부처의 법령 제·개정 절차와 법률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책자 발간을 수행하며, 정부의 법령 제·개정 작업과 법령 관련 업무수행을 적극 지원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권을 보호할 예정이다.

## 3. 편리한 인터넷 화상공증제도 시행

법무과 행정사무관 윤성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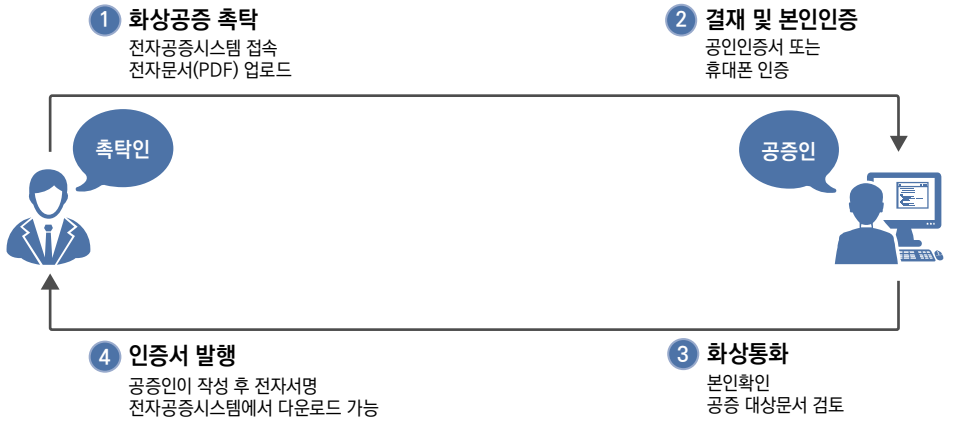
### 가. 추진배경

법무부는 2010년부터 전자문서 파일에 공증을 받을 수 있는 전자공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전자공증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일반 공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촉탁인 등이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여 공증인을 직접 대면해야 했다. 공증을 받기 위한 전자문서 파일은 온라인으로 전달이 가능함에도, 공증을 받는 경우 반드시 직접 공증사무소에 방문해야했기 때문에 전자공증제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껴 개선이 필요하였다.

### 나. 추진내용

법무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공증제도의 장점과 편리함을 살리고자, 2018. 6. 20.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를 도입·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공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이나 웹캠(Web-Cam) 등을 이용한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함으로써 편리하게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그림 2-49 | 화상공증 진행절차




## 다. 주요성과 및 평가

화상공증은 촉탁 신청, 공증인 대면, 인증서 발급 등 공증의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므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공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공증 사각지대(공증인이 없는 읍·면) 주민들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들도 공증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호주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은행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화상공증을 완료하는 등 재외국민들도 편리하게 화상공증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법인은 법인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총회 등 의사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화상공증을 통해 법인의사록 인증을 받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신청을 하면 등기신청의 전(全)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어 등기 사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화상공증제도는 2018년도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다.

화상공증을 이용하면 공증의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공증사무소에 방문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절감된다. 특히 먼 거리의 촉탁인이나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을 등기하기 위해 빈번하게 공증을 받아야 하는 법인의 경우 공증사무소에 방문하기 위해 소모하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약할 수 있다. 화상공증이 활성화되면 공증의 상당 부분이 전자공증으로 이루어져 공증사무소의 공증서류 보관을 위한 부담도 감소할 것이다.

화상공증제도는 여러 단계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안전성을 강화하였다. 특히 정부기관 최초로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과 경찰청의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연계하여 보다 확실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화상공증의

모든 과정이 암호화된 보안 채널을 통해 녹음·녹화되고 편집 및 조작의 여지없이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에 저장되기 때문에, 일반 공증에 비해 분쟁 예방 기능이 강화되고 공증인의 직무 충실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4. 법의 문턱을 낮추는 마을변호사 제도

법무과 행정사무관 설기석

### 가. 개요

법무부는 전국의 변호사가 2만여 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개업 변호사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85% 이상이 서울 및 6개 광역시에 각 편중된 문제점을 인식하고, 무변촌(無辯村) 등 법률서비스 소외지역의 법률안전망을 제고할 목적으로 2013. 6월 대한변호사협회·행정자치부(現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마을변호사 제도를 출범시켰다.

법무부는 2014년부터 마을변호사 제도의 발전에 기여한 모범 마을변호사·지방자치단체·담당공무원 등에게 표창을 수여해 왔고, 2018. 12월 마을변호사 5주년을 맞이하여 모범 마을변호사·지방자치단체·담당공무원 등 10명에게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하였다.

| 그림 2-50 | 마을변호사 5주년 기념식 현장사진



## 나. 제도의 의의

### 1)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 제고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읍·면·동 지역 주민들이 손쉽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틈새 없는 법률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 표 2-20 | 마을변호사 제도 도입 성과

| 구분 | 도입 전의 상황(As-is) | 마을변호사 도입 후 변화(To-be) |
|---|---|---|
| 상담방법 | 직접 변호사 사무실 방문 | 전화, 이메일 등 원격 진행 |
| 비용 | 고비용, 감당 어려움 | 무료(변호사의 재능 기부) |
| 거리감 | 물리적 거리감(법원 소재지 근처)<br>심리적 거리감(어려운 존재) | 물리적 거리 해소(원격 진행)<br>심리적 거리 해소(친근함) |

### 2) 변호사의 공익활동 장려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공익활동에 종사할 의무가 있으나 실제 변호사가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의 순수한 재능기부 활동으로 운영되므로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창구가 되었다.

### 3) 민·관의 모범적 협력 모델

마을변호사 제도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변호사 재능기부 활동으로 정착했고 그 결과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정부혁신 행정서비스 30선'에 선정되고(2017년), 매경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2017년, 2018년)하는 등 민·관의 모범 협력모델 사례로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성과를 이루었다.

### 4)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

2017. 11월 포항지진 피해지원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홈닥터와 연계하여 법률지원단 활동을 했으며, 2018. 5월 전국 16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마을변호사·법률홈닥터가 협력하여 이민자 가정,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2018. 9월 부당한 처우(갑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집중 법률상담을 실시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다. 마을변호사 배정·상담 현황

2013. 6월 250개 읍·면에서 415명의 제1기 마을변호사로 제도를 출범하였으나, 배정지역 및 마을변호사 인원을 꾸준히 확대해 온 결과 2018. 12월 기준 전국 1,411개 읍·면·동에서 1,409명의 제4기 마을변호사가 활동 중이다.

| 표 2-21 | 마을변호사 배정 현황

| 구분 | 제1기 ('13. 6월~'14. 6월) | 제2기 ('14. 6월~'16. 6월) | 제3기 ('16. 6월~'18. 6월) | 제4기 ('18. 6월~) |
|---|---|---|---|---|
| 배정지역수 | 250개 읍·면 | 1,412개 읍·면 | 1,413개 읍·면 | 1,411개 읍·면·동 |
| 마을 변호사수 | 415명 | 1,455명 | 1,519명 | 1,409명 |

※ 마을변호사 1인이 담당하는 평균 읍·면·동은 약 2.2개로 실제 마을변호사 배정건수는 3,096건임

제도 출범이후 현재까지 집계된 누적 상담건수는 5,405건에 달하며, 마을변호사가 상담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상담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 라.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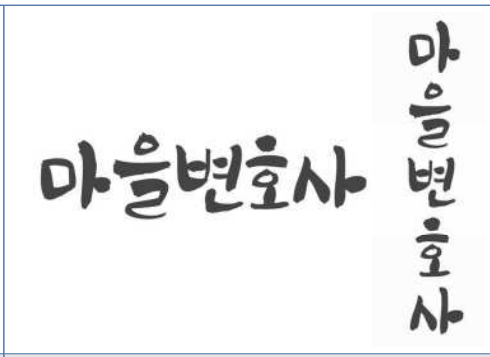
### 1) 마을변호사 대표 캐릭터 등 개발

법무부는 2018. 10월 주민들이 마을변호사에 대한 친근함과 제도에 대한 신뢰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마을변호사 캐릭터 및 캘리그래피(전용서체)를 개발하였다.

| 그림 2-51 | '마을변호사 대표캐릭터' 마우리 변호사, 캘리그래피(전용서체)




'마을변호사 대표캐릭터' 마우리 변호사




캘리그래피(전용서체)

### 2) 다양한 홍보컨텐츠 제작·배포 및 온라인 소통창구 운영

법무부는 마을변호사 캐릭터 등을 활용한 포스터, 우수상담사례집, 동영상 등 다양한 홍보컨텐츠를 제작했고, 이를 전국의 마을변호사 사무소,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에 배포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인지도를 향상시켰다.

또한 블로그(mabyun.blog.me),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mojmabyun) 를 운영함으로써 온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 그림 2-52 | 마을변호사 홍보컨텐츠




홍보포스터




우수상담사례집




홍보동영상

## 5.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 가.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

국제법무과 행정사무관 김수진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이하 ISDS)'는 양자투자협정(BIT) 및 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된 국제중재제기 합의 규정에 따라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ISDS는 국가마다 다른 법 체제와 정책 상황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투자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외국으로부터의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해외에 진출하는 자국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2018년 말 기준 전 세계적으로 체결된 3,322개 투자협정 중 대부분이 ISDS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BIT 88건, FTA 15건 중 독일, 튀니지,

프랑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BIT를 제외한 모든 BIT와 FTA에 ISDS 규정을 두고 있다.

법무부는 론스타의 ISDS 중재 제기 당시부터 ISDS 사건에 적극 대응하여 왔다. 론스타는 2012. 11. 21.「한·벨기에 BIT」위반을 근거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ISDS 중재를 제기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국무총리실 산하 '관계부처 T/F'에 참여함은 물론 법무부 산하에 설치된 '분쟁대응단'(단장 : 법무실장)을 통하여 실제 소송업무의 수행, 국내·외 자문로펌과의 협의, 자료수집 및 정리, 대응논리 개발, 관계 부처 간 실무협의 등을 진행하였다.[10] 론스타 사건은 2016년 변론을 종결하고 현재 판정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판정 선고와 관련된 상황을 사전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8년에는「한·미 FTA」위반을 근거로 3건[11],「한·EFTA FTA 부속투자협정」위반을 근거로 1건[12]의 ISDS 중재가 제기되었다. 법무부는 위 각 사건의 중재의향서를 접수한 직후 청구의 근거가 된 처분을 담당하였던 처분청 및 기타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분쟁대응단(단장 : 법무실장)을 구축하여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적극 대응하고 있다.

### 2) 평가 및 발전방향

법무부는 우리나라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중재 사건과 관련하여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전개하여 왔다. 향후 론스타 사건의 판정 선고와 관련하여 후속 조치 등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울이는 한편 신규 제기된 중재사건에서 우리나라에 유리한 판정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는 보다 체계적인 ISDS 사건 예방 및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근거규정 입안 및 조직 구성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 나. 지자체·해외진출 우리기업 국제투자 분쟁 예방과 해결 적극 지원

국제법무과 행정사무관 이언호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주요 ISDS 사건이 접수되면서 우리 정부에 대한 ISDS 제기 및 그 결과에 대한 대처는 물론,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수의 해외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바, 사업과정에서 분쟁 발생시 외국인 투자자의 ISDS 제기 위험성이 상존하므로, ISDS를 예방하기 위해 투자유치 MOU 작성단계부터 중앙정부의

10) 관계부처 TF(29회), 분쟁대응단(27회) 등 총 65회의 대응 관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반박 준비서면 2회(총 1,464면), 전문가증인 진술서 17회, 증인진술서 38회, 증거 593건 제출)

11) 2018. 7. 12. 엘리엇 ISDS 중재 제기, 2018. 7. 12. 미국투자자 ISDS 중재 제기, 2018. 9, 13, 메이슨 ISDS 중재 제기(각 UNCITRAL 중재규칙 선택)

12) 2018. 10. 11. 쉰들러 ISDS 중재 제기(UNCITRAL 중재규칙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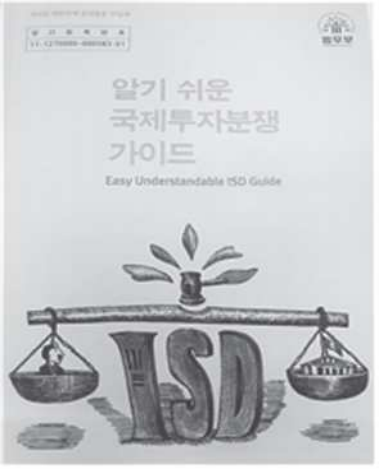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공기업·지자체 및 기업에 대한 ISDS 대응방안 교육, ISDS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를 통하여 투자유치 단계에서부터 분쟁을 예방하려 노력하고 있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과 연계하여 해외진출 국내기업을 찾아가 ISDS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현지 법령 이해를 돕기 위한 법적 지원활동을 추진해왔다.

법무부는 2009. 10월부터 2018. 12월까지 총 101여 회에 걸쳐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제자유구역청 및 공사 등을 대상으로 ISDS 제도 소개, 발생 경위 및 사례 검토, 예방 및 대응 전략을 교육하는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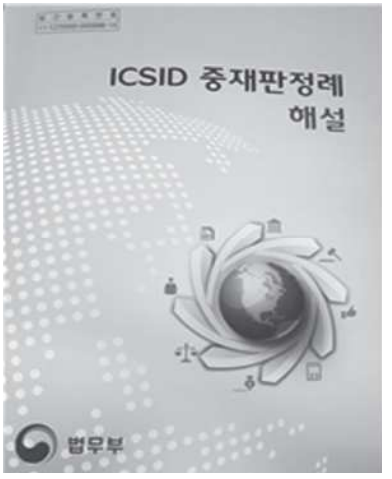
### 2) 평가 및 발전방향

앞으로 법무부는 정부부처·공기업·지자체·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ISDS 예방 및 대응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관계자, 공기업, 해외진출기업 등의 ISDS에 대한 이해도 및 대응역량 제고를 위하여 연구보고서, 투자협정 및 투자분쟁판례 관련 서적 등을 출간할 예정이다. 또한 각 지자체에 공문을 송부하고 공청회를 통해 기존 MOU 문건 및 MOU 체결상 애로사항을 수집한 다음, 해외투자유치 관련 전문가(교수, 변호사 등)를 섭외하여 연구용역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각 투자기관(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을 상대로 한 세분화된 MOU를 개발하여 각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ISDS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각 공공기관의 ISDS 예방 및 대응역량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림 2-53 |** 국제투자분쟁 관련 안내 책자




ISD 소개 책자




투자중재 판정례 해설집

# 6. 국제법무 협력 및 교류

## 가. 법무 관련 국제회의 참가 및 법률지원

국제법무과 행정사무관 이언호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사법 분야의 국제적 통일규범 마련을 위한 국제회의와 자유무역협정(FTA), 양자투자협정(BIT) 등 통상분야 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법무부는 2018년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회의에 8회 참가하고, 사법통일국제회의(UNIDROIT) 2회, 공정거래네트워크(ICN) 1회,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1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3) 회의에 2회 참석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통일규범과 국내규범의 조화와 발전을 도모하였으며, 외교부와 산업부 등 관계부처의 법률자문 요청에 대응하여 이를 지원하고 있는 바, 2018년도에는 총 14건의 법률자문을 시행하는 등 타부처에 대한 법률지원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 표 2-22 |** 2018년도 법률자문 현황(14회)

| 연번 | 월일 | 제 목 | 요청기관 | 담당자 |
|---|---|---|---|---|
| 1 | 1. 23. |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2실무작업반(분쟁해결제도) 회의 의제 사전 검토의견 | 외교부 | 신동환 검사 |
| 2 | 2. 21. |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1실무작업반(중소기업제도) 회의 의제 사전 검토의견 | 외교부 | 신동환 검사 |
| 3 | 3. 22. |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4실무작업반(전자상거래법) 회의 의제 사전 검토의견 | 외교부 | 신동환 검사 |
| 4 | 4. 17. |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실무작업반(국제투자분쟁) 회의 훈령(안) 검토의견 | 외교부 | 신동환 검사 |
| 5 | 4. 18. |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5실무작업반(도산법) 회의 의제 사전 검토의견 | 외교부 | 신동환 검사 |
| 6 | 4. 18. |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6실무작업반(담보거래법) 회의 의제 사전 검토의견 | 외교부 | 신동환 검사 |
| 7 | 4. 27.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 | 산업통상자원부 | 이언호 사무관 |
| 8 | 5. 25. |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국제상사합의 집행 관련 협약(안) 및 모델법(안)에 대한 의견 | 외교부 | 신동환 검사 |
| 9 | 6. 5. | 한-UAE 투자보장협정 UAE측 개정제안 검토의견 | 외교부 | 신동환 검사 |
| 10 | 7. 31. | FAO 한국연락협력사무소 설립 협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 외교부 | 신동환 검사 |
| 11 | 9. 20. |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1실무작업반(중소기업제도) 회의 의제 사전 검토의견 | 외교부 | 이언호 사무관 |
| 12 | 9. 29. | 한-사우디 사법 협력 조약 사우디측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 | 외교부 | 김상현 검사 |
| 13 | 10. 19. |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실무작업반(국제투자분쟁) 회의 의제 사전 검토의견 | 외교부 | 신동환 검사 |
| 14 | 12. 3. |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6실무작업반(담보거래법) 회의 의제 사전 검토의견 | 외교부 | 이언호 사무관 |

### 2) 평가 및 발전방향

앞으로도 법무부는 통상, 국제거래 등 다양한 국제법무 분야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요 국제회의에 정부대표단으로 참가하여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고, 관계부처의 법률적 자문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FTA와 BIT 체결 및 기체결 조약에 기초한 분쟁 상황의 예방 및 대응 등 국제공법적 쟁점이 점차 강조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통상 분야에 대한 전문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적시에 자문을 제공해 나갈 것이다.

## 나. 국제법무교류 및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

국제법무과 행정사무관 박주현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국가 간 협력 및 국익 증진이라는 목표 하에 외국 유력 법조인들과의 교류 및 법무협력협정, 상호 자료교환협정의 체결과 같은 실무적 교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나아가 주요 개발도상국에 대한민국의 선진 법률체계를 소개하여 입법 작업을 지원하는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국가 간의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시킴은 물론, 향후 우리 기업의 진출 시 유리한 통상 환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8. 3. 13. 영국 사무변호사협회 조 이건 협회장이 법무부장관을 예방하여 법률시장개방 및 반부패 정책 등 실무적 차원에서 대한민국과 영국 법무 관련 논의를 하였다. 2018. 3. 29. 법무부장관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를 방문하여 우리 기업의 지식 재산권 보호, 기술 유출 예방을 위하여 UN 산하 지식 재산 분야 전문기구 WIPO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2018. 6. 1. EU 사법분야 집행위원 베라요로바, 주한EU대표부 대사 미하엘 라이터러가 법무부장관을 예방하여 대한민국과 EU간 법무 및 인권 정책 추진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2018. 12. 11. 캄보디아 치브 송학 법무부차관이 법무부차관을 예방하여 양국 법무부 간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또한 개발도상국 법제 정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UNCITRAL 아태사무소, 대한상사중재원 등과 협업하여 2012년부터 라오스 중재법 정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016. 12월 및 2017. 12월에는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라오스 중재법 정비 지원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2018. 9월에는 같은 장소에서 대한상사중재원, UNCITRAL 아시아 사무소와 공동으로 중재 및 조정 법제 정비지원 작업반 회의를 각 개최하는 등 라오스의 중재법 정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한편 2018. 4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같은 해 10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법률구조법제 개선사업을 진행하였고, 구체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현지에서 법률구조의 의의와 가치, 우리나라의 법률구조법제 소개, 현지 법제의 상세 개선 방안 등을 설명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나아가 2018. 7월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외국인투자 옴부즈먼 제도에 대하여 소개하고 양국의 협력을 도모하였다.

| 그림 2-54 | 법률구조법제 개선사업



몽골 법률구조법제 개선사업



캄보디아 법률구조법제 개선사업

### 2) 평가 및 발전방향

국제법무교류와 개발도상국 법제 정비 사업은 대상국가에 대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해외 진출에 편의를 더하고 주요 개도국 법제의 현대화로 현지인들의 인권 및 법률 복지 향상을 꾀함으로써 보편적인 인류애와 국제공동체 정신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는 주요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의 개발도상국 법제 정비 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과 노력, 우수성 등을 홍보하고 지원 사업 대상 국가 및 법제 분야(법률구조법, 외국인투자법, 중재법 등)를 확대하는 한편, 동남아시아 주요 수원국의 법제 개선을 통하여 신남방정책 등으로 표현되는 정부의 외교적 방향과 연계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의 이익 보호와 국격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중앙당국 역할 수행

국제법무과 행정사무관 박주현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다른 국가로 이동되거나 유치된 아동(탈취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가입에 발맞춰(2012. 2월 협약 가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부적으로 법무부장관이 협약의 이행 업무를 총괄할 중앙당국으로 선임되었고 협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 절차와 재판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이행법률 제정이 추진되었다. 동 법 부칙 제1조는 협약 가입일로부터 법률이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12. 12월 외교통상부가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국내에서는 2013. 3. 1. 협약이 발효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행 법률도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기존 가입국이 신규 가입국의 가입을 수락해야 양국간 발효되는데, 2018. 12월 현재 기존 가입국 96개국 중 58개국이 우리나라의 가입을 수락하였고, 지속적으로 수락국의 확대를 추진 중이다. 2013년부터 누적된 지원 신청 접수 건수는 2018. 12월 현재 총 37건을 기록하고 있다.

### 2) 평가 및 발전방향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라 일방 배우자에 의한 아동의 국외 무단탈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사전에 방지할 제도가 현재 부재한 상태이다. 특히, 우리 국민과 결혼하는 사람이 많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과 같은 나라의 경우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가입하지 않거나 우리나라와 상호 수락국이 아닌 경우가 많아서 동 협약에 따른 지원이 불가능한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법무부는 부부 일방의 의도만으로 아동을 국외로 무단 탈취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 유사한 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해외 입법례를 참조하여 아동의 국외탈취를 방지하기 위한 법원의 심판절차 도입을 연구하고 있다. 법제처, 국회 등 입법 관련 부처와의 협의 및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제도화시킬 예정이다.

## 7. 국제규범 형성과정 참여

국제법무과 행정사무관 이언호

### 가. 추진배경 및 추진 경과

국제교류 증대와 민·상사 규범의 세계적 통합 양상에 따라 각종 규범의 통일화 작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고, 이러한 현상은 중재, 도산, 운송, 담보,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등 각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국제 신인도 제고,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내법제 선진화를 위해서 국제규범의 도입

및 수용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민·상사 통일규범 관련 국제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성안과정에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고, 논의결과를 분석하여 국내에 전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법무부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사법통일국제회의(UNIDROIT)와 헤이그 국제사법회의(HCCH) 등 사법 분야의 국제통일규범 성안 회의에 활발하게 참석하고 있는 바, 2018년에 총 15회의 UNCITRAL 회의에 참석하여 국내 법제의 관점과 국제적 표준규범의 조화를 도모하고 선진적 글로벌 통일규범 마련 작업에 일조하였고, UNIDROIT 연차총회 및 담보분과 실무작업반 회의, HCCH 외국판결의 승인집행 협약 특별위원회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사법과 민사절차 분야에서 국제적 표준규범 마련 과정에 적극 참여하였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002년부터 UNCITRAL 6개 실무작업반 회의에 정부대표를 지속적으로 파견하는 등 국제적인 논의 동향에 능동적으로 대응한 결과, 전 세계 최초로 UNCITRAL의 지역사무소를 인천에 유치하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아·태지역에서 국제거래규범의 연구·전파의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견고히 확보해 나가고 있다

특히 2018. 9. 10. ~ 11. 이틀간 인천 송도에서 세계 최초로 UNCITRAL 회기간 회의를 개최하여,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제도(ISDS)의 개선을 위한 UNCITRAL 공식 논의의 장을 열었으며, 동 회의에는 각 국 정부대표단과 비정부기구 대표, 학계와 실무계 등 100여명의 국제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ISDS 제도 개선 논의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제적 ISDS 제도 개선 논의를 선도하는 수준 높은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ISDS 개선 의견은 UNCITRAL 제3실무작업반 정례회의에 안건으로 채택되어 다루어질 전망이다.

**| 그림 2-55 |**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실무작업반 회기간회의 개최



또한 2018. 11. 5.~9. 법무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대한상사중재원, 서울국제중재센터, 국제상업회의소(ICC) 등 5개 기관이 공동으로 대체적 분쟁해결 관련 국제회의(SAF, Seoul ADR Festival)를 개최하였는 바, 위 회의에는 안나 주뱅브레 UNCITRAL 사무총장, 알렉산더 G. 페사 ICC 국제중재재판소장 등 국내·외 전문가 200여 명이 참여하여 국제중재의 최신 경향과 주요 쟁점을 공유하였다. 특히 법무부는 SAF 기간 중 2018. 11. 5. 아시아·태평양 ADR 컨퍼런스 특별 세션을 개최하여 한국의 국제중재 현황에 대하여 공유하고 국제적 석학·실무가들과 국제중재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법무부는 이러한 국제적 회의의 주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그 결과를 국내 법제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2002. 2월 로펌변호사, 교수, 판·검사 등 각 계의 전문가를 망라한 '국제거래법 연구단'을 발족하여 여러 분과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이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위 연구단은 이미 제정된 국제규범의 도입을 위한 연구뿐 아니라 새로운 규범의 제정을 위한 각종 국제회의에도 적극 참석하여 우리의 입장이 반영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국제규범의 제정단계에서부터 우리의 국익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나. 평가 및 발전방향

앞으로도 법무부는 대한민국 법과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특히 국제거래규범의 조화 및 통일화 과정에 국내 선진 법체계의 입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기여를 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뿐만 아니라 사법통일국제회의,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 다양한 국제기구의 국제통일규범 마련 회의에 참여하는 등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 폭을 넓혀갈 예정이다.

# 8. 국제법무 역량 강화

## 가. 법률시장 개방 법제화 및 관리·감독제도 구축

국제법무과 검사 김상현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위한 개정안은 2016. 3. 2. 공포된 이후 2016. 7. 1. EU를 대상으로 최초로 적용되었다.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통하여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이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합작법무법인은 국내 변호사를 고용하여 외국법 사무 및 일부 국내법 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17. 3. 15. 미국, 2018. 12. 20. 베트남을 대상으로도 3단계 개방이 이루어졌다.

2018. 12월 현재 자격승인·설립인가를 신청한 외국변호사는 194명이고, 외국로펌은 36개로, 그 중 자격승인을 받은 외국법자문사는 164명(미국법자문사 124명, 영국법자문사 27명, 프랑스법자문사 1명, 호주법자문사 8명, 중국법자문사 2명, 뉴질랜드법자문사 1명, 싱가포르법자문사 1명),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로펌은 28개(미국로펌 22개, 영국 로펌 5개, 중국 로펌 1개)이다. 2016 ~ 17년에 걸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총 27곳을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다.

2018년에는 연구용역을 통해 각국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법제를 연구하였으며, 법률시장 개방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 받는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법률시장 개방 정책 및 협의 과정 등을 조사하였다. 이로써 추후 법률시장 개방의 폭을 확대하는 우리나라의 추세에 맞추어 각국의 사례를 수집하였다.

### 2) 평가 및 발전방향

앞으로 법률시장 개방 법제 관련 세계 동향을 꾸준히 살피어 우리나라의 법제를 개선하고, 심사업무의 처리 속도 및 정확성을 높여 더욱 완성된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또한 이미 승인된 외국법자문사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대하여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등록말소 규정 및 징계위원회 구성 관련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작업을 마무리 짓는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이로써 안정적인 법률시장 개방 제도를 구축하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에게 제공되는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법률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나. 국내 법률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국제법무과 검사 김상현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국내 법률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2. 5월과 2015. 4월에는 중국 상해에서, 2012. 12월과 2014. 4월에는 홍콩에서, 2016. 5월에는 UAE에서 각각 국내 로펌 합동 해외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청년법조인 및 예비법조인들을 해외 로펌, 국내 로펌 해외사무소 및 국제기구 등에 인턴으로 파견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2012년 하반기에 14명, 2013년 46명, 2014년에 84명, 2015년에 47명, 2016년에 46명, 2017년에 38명, 2018년 38명을 선발·파견함으로써 국내 신규 법조인들이 해외에서 업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 업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특히, 2014. 9월부터는 청년법조인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세계한인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O.K. Academy)'를 개설하여 국제법무에 정통한 변호사들을 강사진으로 섭외해 청년법조인들을 교육하고 있다. O.K. 아카데미 수료생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하반기 해외 로펌, 국내 로펌·해외사무소 등 여러 기관에 장기(3개월 ~ 1년) 인턴으로 파견하여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였고, 2015년 7명, 2016년 5명, 2017년 3명, 2018년 2명을 선발 파견하였다. 2012년 하반기부터 계속 중인 단기(2 ~ 4주) 인턴 과정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2) 평가 및 발전방향

O.K. 아카데미 운영 및 인턴 기회 제공을 함으로써 청년법조인 및 예비법조인들의 국제법무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국제 업무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였고, 이는 대한민국 법률서비스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청년법조인의 취업기반 마련의 토대가 되어 왔다. 앞으로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법조인들에게 유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O.K. 아카데미 수강생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강의 과목과 강사진 구성 등에 만전을 기하고, 다양한 분야의 인턴 파견기관 확보 및 파견 인턴 수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법률서비스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가지게 되면, 법률서비스 무역수지 개선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다.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

국제법무과 검사 신동환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되면서 국제 법률자문 수요가 증가하고, 중소기업 법률지원을 통하여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해짐에 따라, 법무부는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의 운영을 통하여 중소기업들에게 계약서 검토, 현지 법령 해석 등의 무상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의 법률자문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64건, 2014년 133건, 2015년 231건, 2017년 216건에 이어 2018년 432건에 이르렀다.

또한 법무부는 중소기업 맞춤형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8. 9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와는 2018. 4월 '중소기업 동남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를, 2018. 10월 '중남미 진출전략 설명회'를 각 개최함으로써 매년 상·하반기 정기 법률설명회 개최 및 법무부-전경련 업무협약(MOU) 추진을 위한 초석을 다지기도 하였다. 한편 2018. 10월 인도네시아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 기업들을 위한 법률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8. 12월 서울에서 세계은행-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국제 컴플라이언스[13] 등을 주제로 법률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기업들이 진출한 해외 현지에서 국제투자규범과 현지 법령정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준법경영, 지식재산권 등 특정 현안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 교육을 제공 하는 '찾아가는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 설명회'(2018년 국내 10회, 해외 1회)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 그림 2-56 |**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을 위한 설명회 및 워크숍



법무부-전경련 동남아시장 법률설명회



법무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출전문위원 워크숍

13)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 기업의 경영투명성과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해 강제적 혹은 자율적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

한편, 2010년부터 중소기업 실무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제투자·비즈니스 가이드』와 『알기 쉬운 수출계약서 작성 실무』 등 총 24종을 발간·배포하였으며, 2018년에는 『법률자문 50선 사례집』,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법률가이드-종합편』 2종을 발간하였다.

### 2) 평가 및 발전방향

자문 수요의 폭증에도 기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 추가 위촉, 관련 예산 증액 등 제반 행정체계를 완비할 계획이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분야의 다각화를 통해 진출 기업의 다양한 법적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스타트업 등 소규모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혁신성장을 장려하는 한편, 해외진출 우리 기업의 '준법경영' 지원을 위해 ① 실무상 쉽게 참조할 수 있는 『국가별·쟁점별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북』(가칭) 발간을 추진하고, ② 국내·외 법률설명회 내 '해외투자에 따른 준법경영 길라잡이' 세션 삽입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며, 우리 중소기업의 활발한 해외진출과 이에 따른 경제성장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라. 전문학술지 및 연구자료 발간

국제법무과 행정사무관 이언호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1995. 2. 1. 국제통상 전문학술지인 『통상법률』을 창간하여 격월로 발간해오고 있는 바, 장관급 고위인사의 시론 및 국제통상 전문가들의 수준 높은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1995년 1호부터 2011년 100호까지 게재되었던 논문의 총목록을 정리한 통권 100호를 거쳐 2018. 12월 현재 141호에 이르기까지, 『통상법률』은 국제상사중재 및 각국의 통상·환율 정책, 국제 환경법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다룸으로써 한국의 국제통상 관련 연구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2010. 7. 13. 영문 법률 계간지 『Recent Trends of Law & Regulation in Korea : Focusing Business and Investment(한국법령의 최신 동향 : 기업과 투자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를 창간한 이래로 2018년 통권 30호까지 지속적으로 발행을 해오고 있다. 본 저널은 '한국의 법동향', '법무부 정책소개', '외국투자자를 위한 출입국 정보'

| 그림 2-57 | 한국법령의 최신동향




『Recent Trends of Law & Regulation in Korea : Focusing Business and Investment』 30호

코너를 통해 기업·투자 활동과 관련된 법령 재·개정 사항, 판례 동향, 정부 정책과 외국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출입국 정보를 영문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투자관련 법규, 정책을 해외에 알리는 영문 정기간행물로서 외국투자자들로 하여금 우리나라 법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2) 평가 및 발전방향

법무부는 자체 학술지 및 저널의 발간뿐만 아니라, 국제규범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 준법경영(컴플라이언스) 등 중소기업의 법무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안내 자료의 발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제 국제 분쟁 예방 및 해결이나 국제적 법률자문이 필요한 영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간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 마. '국제법무자문위원회' 운영

국제법무과 검사 김상현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법률서비스 분야에서 민·관의 역량을 모아 법률시장 개방의 성공적 안착과 법률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을 찾기 위하여 2011. 5월 '국제법무자문위원회'를 발족하였다. 법률시장 개방과 로스쿨 시대의 도래라는 대내·외적 변화에 직면하여, '국제법무자문위원회'는 법률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법률가들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며, 법률시장 개방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다. 법무법인 변호사, 로스쿨 교수, 경제단체, 사내변호사, 외국법자문사 등 법률서비스 산업 유관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본 자문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바, 2018. 12월 현재 총 10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 2) 평가 및 발전방향

지금까지 국제법무자문위원회는 각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의와 자문을 함으로써 다양한 의견 수렴창구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법무관계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의 자문에 응한다는 법무자문위원회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어 왔다. 앞으로 ISDS, 법률시장 개방, ODA 등 급박하고 다변화하는 국제법무 현안을 적시에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본 자문위원회의 역할과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질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국제법무 주요 현안에 대응하는 자문위원 구성, 충실한 위원회 준비, 자문 내용의 업무 반영을 통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9. 국가송무행정의 효율적 수행

국가송무과 검사 황진아

## 가. 개요

2018년 국가소송은 전년 대비 접수건수는 1.3% 증가, 패소율은 1.4%p 감소하였고, 행정소송은 전년 대비하여 접수건수는 0.4% 증가, 패소율은 0.2%p 증가하였다.

## 나. 적정 상소권 행사를 위한 개선 방안 시행

### 1) 추진배경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의 관행적 상소를 방지함으로써 소송 지연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정 낭비를 방지하는 한편, 과거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인권침해 관련 배상소송의 경우 무리한 상소를 자제하고 소송의 조기종결을 도모함으로써 신속한 피해회복을 통한 인권보장에 기여하고자 '적정 상소권 행사를 위한 개선 방안'을 시행하였다.

### 2)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2017. 11월부터 전국 5개 고등검찰청에 외부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였다. 2018. 12월 현재까지 총 18차례 상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요사건 32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였고,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상소 여부를 결정하였다.

### 3) 과거사 국가배상 Fast Track 시행

2018. 1월부터 재심 무죄 확정된 과거사 국가배상사건의 신속하고 적정한 피해전보를 위해 '과거사 국가배상 Fast Track'을 시행하고 있다. 과거사 국가배상 Fast Track의 시행을 위해서 과거사 사건의 패소원인 및 위자료 금액을 사건 유형별로 분석하고, 배상책임의 성부 및 적정 위자료 금액에 대한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일선에 배포하였다. 또한 자체 기준에 따라 무리한 상소를 자제하고, 화해·조정·청구인낙 등을 적극 활용하여 소송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4) 상소기준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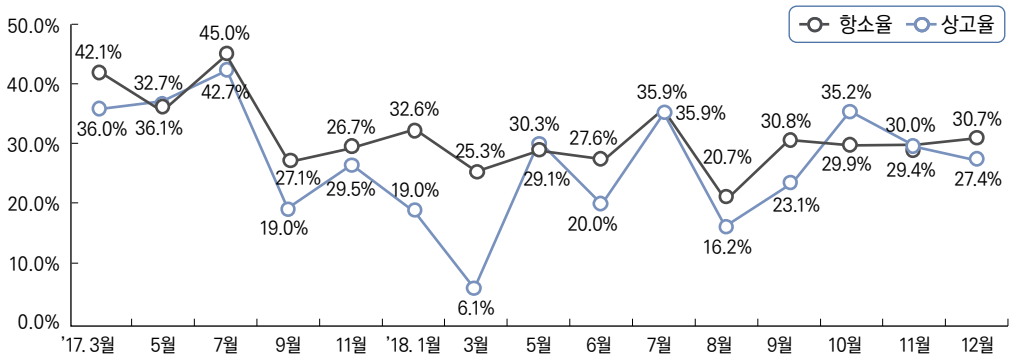
2018. 1월 최근 3년간 주요 패소사례에 대한 법리를 분석한 소책자를 발간, 소송수행자들을

대상으로 이를 배포 및 교육하였으며, 또한 최근 5년간 과거사 국가배상 판례의 위자료 금액 분석을 통해 유형별 적정 위자료 기준을 수립하여 배포하였다. 한편 주요 패소사례 및 위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상소권 적정행사 업무처리 지침」(상소기준)을 개정하였다. 현재 법무연수원에서 각 소송수행청 담당자들에게 '국가·행정소송 주요 패소사례 및 공통법리' 교육을 연 14회 실시하고 있다.

### 5) 추진 성과

절제된 상소권 행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확산되면서 자연스레 상소율이 감소하였고, 현재까지 상소율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 그림 2-58 | 상소율 변화 추이




한편, '과거사 국가배상 Fast Track' 시행 후 현재까지 구로농지 사건, 민청학련 사건,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사건 등 46건에 대하여 상소 포기·화해권고동의 등을 통해 소송의 조기 종결을 이끌어 내었다.

### 6) 향후 계획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일선청과의 피드백을 통해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며, 「상소권의 적정행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상소권 행사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지휘·감독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송무 교육 출강, 송무지도점검, 소송총괄관 회의 및 송무 담당 법무관 워크숍 등 일선청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소권 적정 행사 관련 선순환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합리적 상소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 다. 소송수행 역량 제고

### 1) 법률전문가에 의한 국가소송 수행 확대

국가의 중요 정책·재정과 직결되는 소송이 증가하고 사건이 고액화·대형화 되는 추세에 맞추어 국가소송 중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소가 5,000만 원 이상 사건 및 중요사건에 대하여 각 검찰청의 검사·공익법무관이 실질적으로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는 '검사·공익법무관 직접수행 성과지표제'를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소송 직접수행률이 2017년 45.5%에서 2018년 50.2%로 증가하였고, 부당한 국가 패소 방지에 기여하였다.

### 2) 송무지도점검 실시

소송업무 수행실태 등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 및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송무지도점검반을 편성, 인천지검(3월), 청주지검(4월), 대전고검(5월), 울산지검(8월), 대구고검(9월), 서울고검(11월) 총 6개 검찰청에 대하여 국가소송·행정소송·국가배상 업무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다.

지도 점검을 통하여 각 고·지검이 소송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법무부의 훈령·예규 및 지시·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살피고 미비점을 찾아내어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수검대상 고·지검은 법무부의 지적 사항을 수용, 개선하여 조치결과를 보고함으로써 소송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제고하였다.

### 3) 송무 담당 공익법무관 워크숍 및 전국 소송총괄관 회의 개최

2018. 11. 23. 전국 검찰청 및 소송수행청에 근무하는 송무 담당 공익법무관 100여 명을 대상으로 송무 담당 공익법무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각 검찰청 및 수행청 파견 공익법무관들이 실제로 겪은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국가·행정소송, 국가배상신청사건, 헌법재판, 국가송무정보시스템 사용 등 송무 업무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일선 공익법무관들로부터 업무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함으로써 워크숍을 송무행정 발전의 계기로 만들 수 있었다.

한편, 2018. 12. 5. 전국 중앙행정기관 소송총괄관 40여 명을 대상으로 일선 소송수행청의 송무업무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소송총괄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법무부에서는 적정 상소권 행사를 위한 개선방안, 국고손실 환수송무, 국가송무정보시스템 개선작업 등 진행 현황을 설명하고 각 기관 소송총괄관들의 질의에 답하였다. 또한 국가송무행정 관련 애로사항·건의사항을 기탄없이 논의하여 법무부와 일선 소송수행청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 4) 송무업무유공자 포상

각급 행정청 소송수행 공무원을 격려하고 소송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2011. 5. 3.시행)에 따라 송무 기여도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소송수행 유공자 64명, 관리업무 유공자 37명 등 총 101명에 대하여 3,03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 5) 정부법무공단 운영지원

2008년 출범한 정부법무공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행정기관 및 공공단체로부터 위임받은 국가·행정·민사소송 및 헌법재판 사건의 수행을 통하여 국가재정 손실방지 및 정책의 순조로운 추진에 기여하는 등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공단의 2018년 수임사건은 1,858건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하였고, 평균 승소율은 72.2%로 전년 대비 2.4%p 감소하였다. 법무부는 앞으로 공단의 전문경쟁력 강화와 적극적인 홍보활동 등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 라. 송무업무 실적

### 1) 국가소송

패소율은 국가소송의 검사·공익법무관 등 법률전문가에 의한 직접수행, 전국 송무담당 공익법무관 워크숍, 법무연수원 국가송무과정 소송수행자 교육, 소송총괄관회의, 송무지도점검 등 송무수행 역량강화를 통해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가 2017년에는 전년 대비 1.4%p 증가하였으나, 2018년 전년 대비 1.4%p 감소한 10.7%의 패소율을 보였다.

국가소송 접수 및 처리현황은 〈제5장 통계 : 표 5-12〉와 같다.

### 2) 행정소송

행정소송사건 패소율은 2007년 이후 꾸준한 감소추세를 유지하다가 2010년 이후 다시 증가추세로 전환하였고, 2018년 패소율은 2017년 대비 0.2%p 증가한 9.8%를 기록하였다.

행정소송 접수 및 처리현황은 〈제5장 통계 : 표 5-16〉과 같다.

### 3) 국가배상 신청사건

국가배상신청사건(「한·미주둔군 지위 협정」 사건 포함)은 1992년 이후 다소간의 증감을 보이다가 2000. 12. 29. 「국가배상법」 개정(필요적 전치주의에서 임의적 전치주의로) 이후 대폭 감소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전년 대비 33% 증가한 6,064건을 접수하여 그 중 1,129건을 인용하고, 2,777건을 기각하는 등 총 4,054건을 처리하였다.

## 마. 헌법재판 업무

국가송무과 행정사무관 박건우

### 1) 개요

헌법재판제도는 헌법의 해석·적용상 분쟁이 발생하거나 헌법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헌법규범을 기준으로 내리는 판단으로서 이를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확립하여 왔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대 상황 속에서 법무부는 헌법소송 주무부처로서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사건뿐만 아니라 타 부처 소관 법령에 대한 사건에서도 의견서 작성 및 검토 등을 담당하며, 권한쟁의 사건에서 정부가 당사자인 경우 정부를 대표한다. 또한 의견서 작성, 각종 회의 개최 및 참석 등 유관 행정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법무부는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헌법재판에서 정책과 입법의 정당성 등 정부의 입장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왔는 바 앞으로도 국가정책의 수립·시행에 앞서 그것이 헌법과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들에게 정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는 노력 또한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 2) 헌법재판 직접 수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소원(2017헌바473) 사건에서 직접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법무부의 자체의견 제출은 총 42건이다.

### 3) 위헌법률심판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당해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제도로서, 2018년에는 총 39건이 처리되어 그 중 합헌 10건, 각하 3건, 위헌 26건이 선고되었으며, 그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

-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강제퇴거대상자 보호수용) 위헌제청** (2018. 2. 22. 2017헌가29) : 합헌
- **「형법」 제263조(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위헌제청** (2018. 3. 29. 2017헌가10) : 합헌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국무총리 공관 경계지점 100미터이내 옥외집회·시위 금지) 위헌제청** (2018. 6. 28. 2015헌가28) : 헌법불합치

### 4) 헌법소원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과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된 경우에 제청신청 당사자가 제기하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2018년에는 총 2,403건이 처리되어 그 중 합헌 등 369건, 각하 1,892건, 위헌 등 142건이 선고되었으며, 그 주요사건은 다음과 같다.

-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병역종류 및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조항) 위헌소원**(2018. 6. 28. 2011헌바379) : 헌법불합치, 합헌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법원 경계지점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시위금지) 위헌소원** (2018. 6. 28. 2018헌바137) : 헌법불합치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청구기간 조항) 위헌확인** (2018. 11. 29. 2017헌마1245) : 합헌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등(취소소송 제소기간 조항) 위헌소원** (2018. 6. 28. 2017헌바66) : 합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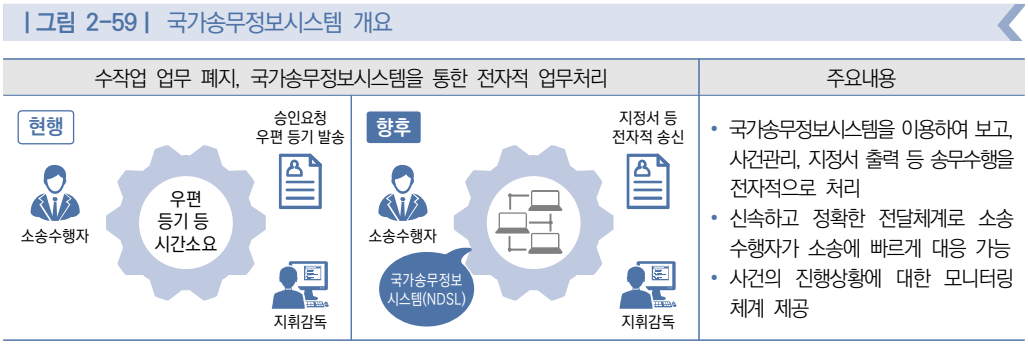
## 바. 국가송무정보시스템 개선

국가송무과 검찰사무관 이창균

### 1) 개요

국가송무는 매년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사 소송, 비행장 소음소송, 세월호 사건 관련 소송, 구로농지 관련 소송 등과 같이 국가재정이나 중요 정책, 국민생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2011. 5월 민사소송에 있어 전자재판이 도입되고, 2013. 1월 행정소송에도 전자소송이 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국가송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국가송무정보시스템(National Database System on Litigation, NDSL)' 구축 및 전 소송수행청 확대를 추진하게 되었다.

| 그림 2-59 | 국가송무정보시스템 개요



### 2) 추진 내용

2011. 12월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소송유관기관과 사건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모범사례·패소사례 및 훈령·예규·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가송무 지식포털'을 구축하였으며, 2012. 12월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을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 전면 시행하였다.

2013. 1월부터 현재까지 전문업체와 국가송무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계약을 체결,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소송수행자 지원서비스를 강화하여 소송수행 역량을 제고하였고, 2016년에는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의 인터넷 망 구축 및 포털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모든 소송수행청이 이용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2018년에는 소송을 지휘하는 14개 고·지검에 소송수행청이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10종의 소송사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3) 기대 효과

국가송무정보시스템 기반구축 및 행정기관 확대·시행으로 국가송무의 통일적·효율적·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고, 송무 관련 법령·판례·선례·논문 등 정보의 축적을 통하여 소송 대응 및 수행능력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소송수행청의 국가송무 수행실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그에 따른 적절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가송무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고도화 사업 등 사용자 편의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시스템의 오류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를 즉각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이용자의 활용률을 제고하는 등 대국민 송무 관련 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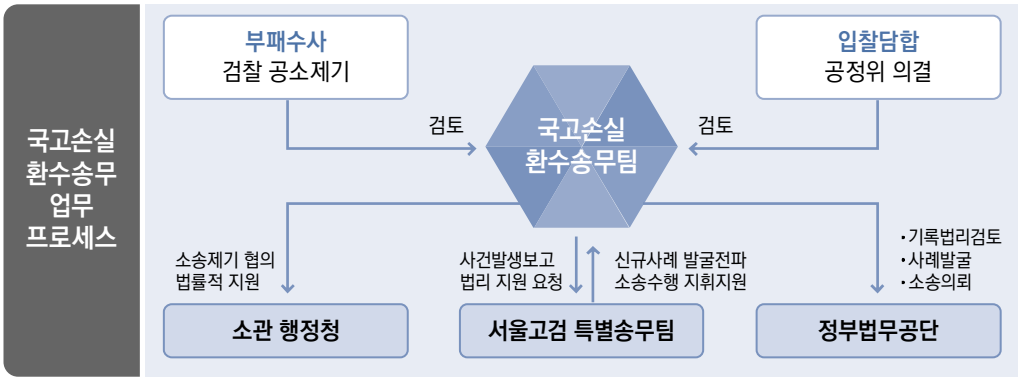
## 사. 국고손실 환수송무팀 운영

국가송무과 행정사무관 류정민

### 1) 개요

기존에는 환수소송이 소관청마다 개별적·산발적으로 진행되고, 별도의 소송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국고손실에 대한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2015. 9. 22. 출범한 법무부 국가송무과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환수소송의 적극적·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그림 2-60 | 국고손실 환수송무 업무 프로세스




### 2) 환수 실적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국가상대 입찰담합으로 인한 공정위 과징금 부과사건 의결서 및 부패비리에 대한 검찰수사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환수가능 사례를 발굴하여 환수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국고가 투입된 경우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손실된 국고를 환수할 수 있도록 자문과 지원을 하고 있다.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2018년 입찰담합 3건, 부패·비리 180건 등에 대해 소관행정청과 협의하여 환수소송을 제기하였고,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1건에 대해 자문과 지원을 하였다.

2018년에는 입찰담합 사건, 서민주택자금 사기대출 사건, 우체국 보험사기 사건, 성폭력 무고사건 피해자변호사 보수 환수 사건, 국유지 무단처분 사건, 국유림 산불훼손 손해배상 사건 등에서 합계 10억 9,145만원을 환수하였다.

# 10. 4.27 판문점 선언 등 후속조치 추진 및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법률지원

통일법무과 행정사무관 황성연

## 가. 남북 교류협력 법제 연구 심화

### 1) 추진배경

4.27 판문점 선언, 6.12 북미정상회담 및 9.19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예상되는 남북 교류협력 관련 법률적 쟁점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2) 추진내용

2018. 3 ~ 12월 법무자문위원회 산하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를 3개 소위원회 체제로 운영하여 '남북경협법제 개선방안', '북한의 조약 체결 현황과 내용' 및 '북한 기업법제'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한편 2018. 5월 헌법학회·북한법연구회와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관련 법적 과제'를 주제로, 2018. 11월 사법정책연구원·헌법학회와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2018. 12월 통일부·법제처와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남북관계 발전 과정에서 제기되는 법적쟁점', '개성공업지구에서의 투자분쟁해결' 및 '남북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체육진흥 분야 법제정비 방안' 등에 대해 통일법제 유관부처 실무가들과 학계 전문가들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심도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 3) 주요성과 및 평가

위와 같이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의 운영 및 연구결과서 발간, 공동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예상되는 법률적 쟁점에 관한 선제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 나. 남북 교류 협력 대비 법률전문가 양성

### 1) 추진배경

향후 남북 교류 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다양한 법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 양성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북한 현실에 대한 이해를 넓힐 필요도 생겼다. 이에 남북관계 진전에 맞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제7기를 운영하였고, '북한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 2) 추진내용

2018. 9 ~ 11월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업하여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제7기 과정을 개설하여, 변호사, 사법연수생, 법학전문대학원생 등 법률전문가와 예비 법조인 60여 명 등을 대상으로 법학자, 경제학자, 정치학자 및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관련 전문가 10명이 동북아 국제정세, 한반도 비핵화, 북방경제협력 및 북한의 사법제도 등을 강의하였다.

아울러, 전직 외교관, 전직 군인 등 북한에서 다양한 전문분야에 종사했던 북한이탈주민들을 '북한 전문가 간담회'에 초청하여 북한에 대한 이해의 틀을 넓히고 통일법무 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 3) 주요성과 및 평가

위와 같이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강좌 개설, 북한 전문가·북한이탈주민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통일대비 법률전문가 양성 및 통일법 전문가 저변 확대에 기여하였다.

## 다.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법률지원

### 1) 추진배경

남한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계속적인 증가와 함께 북한이탈주민들이 범죄 피해를 입거나 각종 법적 문제에 휘말리는 등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맞춤형 법률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 2) 추진내용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부딪힐 수 있는 법적 문제들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제공하기 위해 검사,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서기관 및 사무관이 매월 직접 국가정보원 산하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와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를 방문하여 '대한민국의 사법체계', '조심해야 하는 범죄유형' 및 '민사관계 기본유형' 등을 주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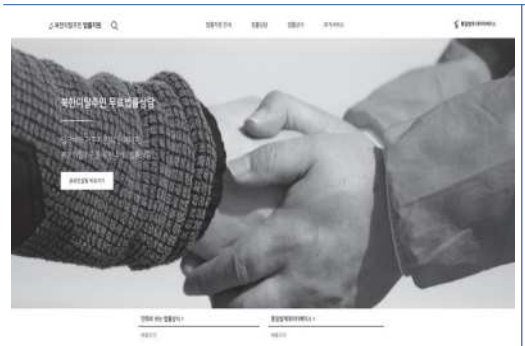
강의하고, '북한이탈주민 전담 법무담당관'이 유선 법률상담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실제 겪고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을 모색하였다.

2018. 6월 북한이탈주민에게 법률상담·교육콘텐츠 등을 통합 제공하는 법률지원 인터넷 사이트를 구축하고, 2018. 12월 그동안 북한이탈주민 상담과정에서 축적된 사례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을 개정하여 북한이탈주민과 관련 업무담당자들에게 배포하였으며, 『만화로 보는 북한이탈주민 법률상식』을 제작하였다.

### 3) 주요성과 및 평가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정착지원 사무소 방문 교육,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사이트' 구축,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 개정 및 법률상담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인 대한민국 정착을 위해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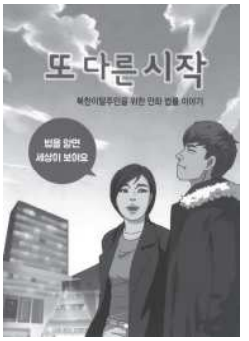
**| 그림 2-61 |**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사이트 및 교재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통합 인터넷 사이트




2018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




만화로 보는 북한이탈주민 법률상식

# 11. 상사법의 체계적 정비 등 기업법제 개선

상사법무과 검사 이혜미

## 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추진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경제민주화와 혁신성장 기반을 동시에 구축하기 위한 '공정경제'를 실현하고자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을 위하여 2017. 10 ~ 2018. 12월 '상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5차례에 걸친 회의 후에 마련된 상법특별위원회안을 참고하여 유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법무부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 2) 추진내용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상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이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 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해당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이고, 전자투표제 의무화는 현재 전자투표제 실시여부가 회사의 선택 사항에 맡겨져 있으나, 일정 수 이상의 주주수를 가진 상장회사는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집중투표제는 사회적으로 경영 건전성 제고가 특별히 강하게 요구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한정하여 소수주주의 청구에 따라 집중투표 실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현재 상법은 이사를 먼저 선출한 후 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하도록 규정하나, 감사위원 중 일부를 이사 선출 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별도로 선출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 3) 평가 및 발전방향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은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기업의 의사결정기구의 정상화, 견제와 균형의 구조를 실현하여 기업의 투명경영·책임경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개정안의 주요 쟁점의 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나. 기업준법경영 및 준법지원인 제도 개선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준법지원인 제도는 지난 2011. 4월 「상법」 개정(2012. 4월 시행)시 처음 도입되어, 법무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2. 4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을 제정하여 배포한 바 있다. 최근 기업의 준법·윤리경영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고, 이에 준법지원인 제도 활성화를 통한 기업 내부 준법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법무부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2018. 10월 학계, 법조계, 상장회사의 준법지원인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표준준법통제기준 개정 TF'를 구성하여 총 3차례에 걸친 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2) 추진내용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상법」 제542조의13 제1항 및 「상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규정된 준법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기업실무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고, 「상법」 및 「상법 시행령」의 범위를 넘어서는 요건이나 책임을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에서 규정하지 않도록 정비하였다. 개정된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준법지원인이 신분이 보장된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임사유를 열거하고 해임에 관하여 의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였고, 준법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각 회사 및 부서의 상황을 고려한 준법 훈련 프로그램을 세분화하여 준법교육을 강화하였으며, 공식적이고 일상적인 내부통제절차 구축을 위해 준법지원인이 임직원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신고 또는 보고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 3) 평가 및 발전방향

이번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 개정을 통해 준법통제 시스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상장회사에 준법경영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법무부는 향후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지속적인 공조를 통하여 준법지원인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 12. 기업환경지수 개선 사업 추진

상사법무과 검사 이혜미

## 가. 기업환경지수 개선 목적 및 필요성

세계은행(World Bank)은 매년 190개국의 기업환경지수를 평가하여 국가별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기업환경지수는 기업의 경영 환경을 투자자보호, 계약분쟁해결, 지급불능 해소 등 10개 분야로 나누어 지수화 한 것으로 매년 10월 경 분야별 순위 및 종합 순위가 발표된다. 기업환경지수는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국 선택과 관련한 주요 참고 자료로 해외 자금의 유치를 위해서 지속적인 관리 및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세계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법령 개정 내용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였고, 그 결과 2018. 10월 발표된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평가대상 190개국 중 종합순위 5위를 기록하였다. 특히 10개 평가분야 중 법무부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인 '계약분쟁 해결절차' 분야는 세계에서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되어 세계 190개국 중 2위에 올랐다. 이는 법무부가 2011년부터 기업환경 개선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세계은행에 개선 내용을 설명하는 등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이다.

| 표 2-23 | 2018년 기업환경지수 계약분쟁 해결절차 분야 주요 국가 순위

| 국가 | 싱가포르 | 대한민국 | 노르웨이 | 미국 | 러시아 | 영국 | 일본 |
|---|---|---|---|---|---|---|---|
| 순위 | 1위 | 2위 | 3위 | 16위 | 18위 | 32위 | 52위 |

## 나.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통한 기업환경 개선 방안 모색

법무부는 우리나라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2018. 11. 30.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기업환경 개선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기업환경 개선 국제 콘퍼런스'는 세계은행이 평가하는 기업환경지수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활력 넘치는 기업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이다.

본 회의에는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담당자, 각국의 정부 관계자 및 법률가 30여 명과 국내 전문가 등 총 50여 명이 참석하여 기업환경 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였다.

회의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은 각국의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며, 법무부는 '기업환경 개선 국제 콘퍼런스' 개최를 비롯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 13. 중소·벤처기업 법률지원제도 운영

상사법무과 검사 이혜미

## 가. 법무부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법무부는 경제 주체들이 현장에서 겪는 법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9. 1. 21. 상사법무과장을 단장으로 하여 검사 1명, 사무관(변호사) 1명, 공익법무관 3명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을 발족하였다. 그 후 법무부는 2009. 3. 12. 중소기업청(現 중소벤처기업부) 및 대한변호사협회와 중소기업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로 구성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現 154명)을 구성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법률지원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법무부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은 2009년 법률상담 484건을 처리한 것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1,160건의 전화·인터넷 법률상담을 처리하고, 17건에 대하여 자문단에 의뢰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든든한 법률지원 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와 함께 법무부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이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수동적 법률지원이라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무부는 2010. 1월부터는 중소기업의 일선 경영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중소기업에 필요한 법무지식 강연 및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현장방문 강연 및 법률상담' 제도를 도입하였고, 2018년에는 39회의 현장상담 및 홍보강연 출장을 실시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들이 법률분쟁 상황에서 상시 참고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강연』 단행본, 9988법률지원단 절차 안내 리플렛, 『법률분쟁 상황에서 점검해야 하는 체크리스트』 소책자들을 꾸준히 개정하여 발간하고, 이를 코스닥협회 및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였다.

우수지원 사례로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의 법률 지원을 받아 진행한 상표 무단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절차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분쟁을 원만히 해결한 바 있다.

### 나.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중소·벤처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법률리스크에 대한 인식 정도가 낮고 대응 능력이 떨어져 법률분쟁 발생 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17개 광역시·도에 설치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이용하는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는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공익법무관을 파견(2018년 현재 공익법무관 5명 파견)하여 현장 무료 법률상담 및 자문, 계약서 검토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법률서비스를 체계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2015. 8월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을 발족하였다. 특히, '1벤처 1자문변호사 제도'를 시행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 선정 유망 벤처기업 275개를 대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소속 자문변호사 127명을 1대1로 지정하여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판교테크노벨리 등 법률지원 수요 증가가 집중되는 지역에 자문 변호사를 추가 위촉하여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맞춤형 법률지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수지원 사례로는 스타트업 기업이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의 법률 지원을 받아 법인 전환 절차 및 향후 투자 유치를 위한 정관 수정·검토에 관한 법률 자문을 통해 경영 초기 단계에서 법률 문제를 사전적으로 관리한 바 있다.

## 14. 집단소송제 확대도입

상사법무과 서기관 이규철

###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등을 계기로 다수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증권 분야에 한정하여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소비자 분야에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집단소송제는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후 배상책임을 현실화함으로써 기업의 준법경영노력을 향상시키고 이로써 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 사전규제를 완화하고 기업활동의 폭을 넓힘으로써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주요한 정책이다(국정과제).

법무부는 2017년 하반기에 학계·법조계 및 소비자보호 관련 실무전문가·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집단소송제 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확대 도입방안을 마련하였고, 2018년 상반기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주요 집단적 피해사고 피해자 등과의 현장정책간담회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2018. 9월 정부추진방안을 확정하였다.

정부추진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현행 증권 분야 외에 제조물책임, 담합·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 표시·광고행위, 금융소비자 보호, 개인정보보호, 식품안전, 금융투자상품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고, 활성화를 위해 집단소송절차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 추진방안을 바탕으로 정부는 2018. 9. 21.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김종민의원 대표발의)의 국회제출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2018. 12. 13. '선진법제포럼'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 그림 2-62 |**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위한 정책 현장




피해자 등과의 현장정책간담회



공정경제 전략회의 법무부장관 발표

## 나. 평가 및 발전방향

법무부 추진방안을 바탕으로 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대표발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으로, 향후 집단소송 도입 위한 다른 법률안과 함께 법안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법무부는 국회 법안심사를 적극 지원하여 조속히 집단소송제가 확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향후 이러한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소비자 피해구제·예방 및 기업의 준법경영 활동 노력을 제고함과 아울러, 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와 사후 피해구제의 충실화를 현실화하여 사전 차단적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5. 법정 최고금리 인하

상사법무과 서기관 이규철

##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신용이 낮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고금리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급증하는 국가 가계부채 해소에 기여하고자 법정최고금리 인하 및 여신금융기관·대부업자에 대해 적용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최고금리와의 일원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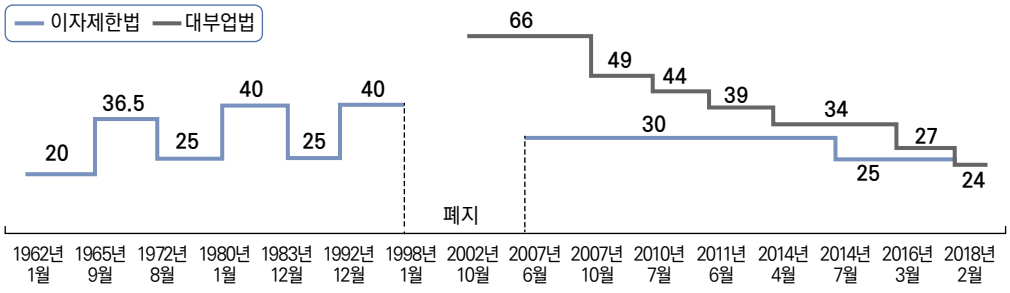
법무부는 속도감 있는 정책효과 달성을 위해 법률의 위임한도 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고, 금융위원회와 함께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계약상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동시 개정을 추진하였다.

2017. 11. 7. 개정 대통령령이 공포되었고, 2018. 2. 8.부터 일반 사인(미등록대부업자 포함) 및 여신전문금융기관·대부업자에 대한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하향되었다.

**| 표 2-24 |** 법정 최고금리 하향 내용

| 구분 | 이자제한법 | 대부업법 |
|---|---|---|
| 적용대상 | **사인 간의 일반 금전대차**<br>(※ 불법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대부업법에 따라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준용) |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의 대부** |
| 기존 | **연 25%** | **연 27.9%** |
| '18. 2. 8. 부터 | **연 24%** | **연 24%** |

**| 그림 2-63 |** 법정 최고금리 변동 현황



## 나. 평가 및 발전방향

서민의 고금리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향후 경제사정 및 서민신용공급 위축 우려에 대한 보완대책의 시행추이 등을 지켜보아 관계부처와 함께 단계적인 추가 인하를 검토할 예정이다.

# 16. 전자어음제도 운영 및 관리·감독

상사법무과 서기관 이규철

## 가. 전자어음제도 운영

법무부는 2005년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전자어음을 도입한 이래 전자어음의 정착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동안의 지속적인 법령 정비와 홍보를 통해 도입 10여 년이 넘는 2018년에는 건수 기준으로 전자어음이 전체 어음 발행 건수 중 83.9%에 이르는 등 전자어음의 약속어음 대체정책은 성공적인 결과를 드러내고 있다. 기존 어음은 실물종이 어음으로 발행·유통되어 거래 안전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위·변조 위험과 보관·이동 등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며 어음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하여 어음 관련 정책 수립에 제약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러한 전자어음제도는 2009. 5월 및 2014. 4월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약속어음 발행 시 전자어음 형태로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가 최종적으로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의 법인사업자로 확대됨에 따라 종이어음의 전자어음으로 대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전자어음제도의 정착에 따라 약속어음의 만기가 장기로 발행되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약속어음의 최장만기를 단축하기 위해 법무부는 2016. 5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고 2018. 5월부터 전자어음의 최장만기는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매년 1개월씩 단축하여 2021. 5월부터는 최장만기가 3개월을 넘을 수 없게 될 예정이다.

## 나. 전자어음제도 관리·감독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전자어음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2018. 12. 16.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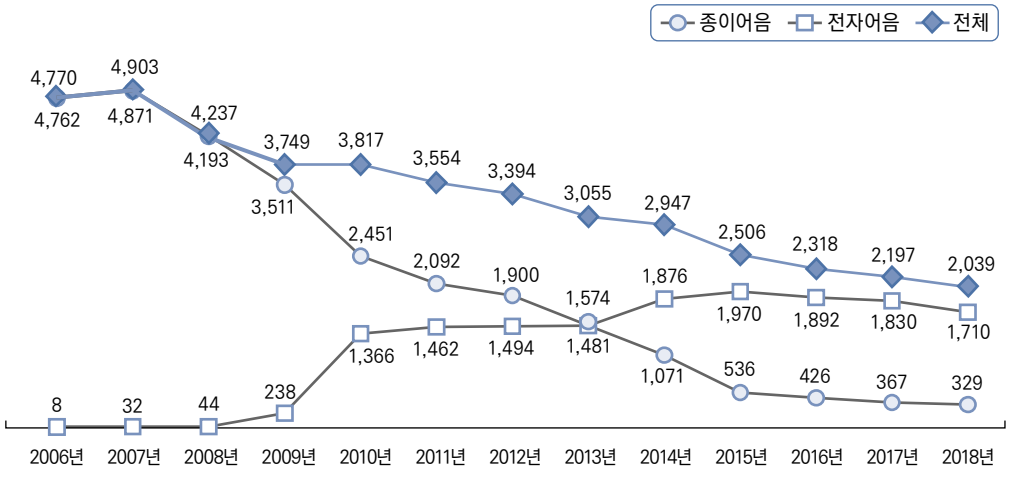
2018년도에 전자어음은 171만건(전년대비 6.57% 감소), 484조원(전년 대비 27.4% 감소)이 발행되었고, 같은 기간 종이어음을 포함한 전체 약속어음 대비하여 건수 기준 83.9%(전년대비 2.3%p 증가) 금액 기준 41.8%(전년대비 11.0%p 감소)의 추이를 보였다. 참고로 종이어음은 32만 9천건(전년대비 10.3% 감소), 677.3조원(전년대비 14.1% 증가)이었다. 전체적인 약속어음 발행규모가 감소하는 과정에서 전자어음의 활용건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금액기준의 경우 기업어음(CP) 및 금융기관간 단기자금 조달용 어음발행 등으로 경기추이에 따라 종이어음 발행규모가 변동하고 있다. 이로써 순수한 기업간 결제과정에서는 전자어음의 대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2) 평가 및 발전방향

전자어음제도 도입의 취지에 따라 전자어음의 종이어음 대체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법무부는 향후 관계부처와 함께 약속어음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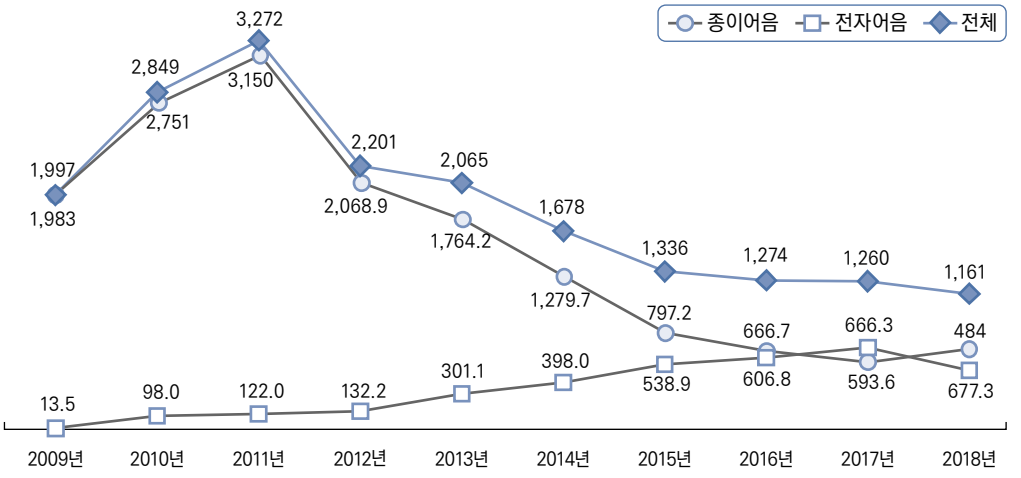
**| 그림 2-64 |** 종이어음·전자어음 발행건수 추이

(단위: 천 건)



| 그림 2-65 | 종이어음·전자어음 발행금액 추이

(단위: 조 원)




# 17. 전자증권제도 시행 준비

상사법무과 서기관 이규철

##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식·사채 등에 관하여 종이 실물을 전제로 한 법률관계 및 거래현상을 선진화하기 위해 종이 실물증권을 폐지하고 전자등록을 통해 완전 무권화(無券化)를 이루는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 당시 상장 주식·사채 등이 전면 일괄전환될 예정이다. 전자증권제를 통해 차명주식 및 탈세 방지 등 권리관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회사 및 증권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제고하며, 증권과 관련한 관리·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며 또한 ICT 기술과 결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전자증권제도의 근거법률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을 2016. 3. 22. 제정하였고, 공포된 날부터 4년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2018년 한해 금융위원회와 함께 시행령 제정 작업을 진행하는 등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2019년 연초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 그림 2-66 | 전자증권제도 홍보 내용




## 나. 평가 및 발전방향

법무부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2019년 하반기 전자증권제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상사·증권법제의 선진화 및 회사·금융 분야 등의 혁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8. 중재산업 활성화

상사법무과 행정사무관 이지은

##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국내 및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중재를 활성화하고, 국제중재사건을 유치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중재산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법무부는 2016년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2017년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여 중재산업 진흥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18년 대한상사중재원에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을 하여 세계적 규모의 분쟁해결시설인 서울중재센터를 개소하였다. 또한 법무부는 중재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19. ~ '23.)」을 수립해 2019. 1. 1.부터 시행한다.

| 그림 2-67 | 법무부 장관, 서울중재센터 개소식 참석







## 나. 평가 및 발전방향

서울중재센터는 현재 중재사건 심리장소, 중재 교육 및 각종 행사 시설로 이용되고 있으며, 중재 관련 단체 및 외국 중재기관들이 입주해 중재산업 발전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울중재센터 개소로 여러 중재사건을 동시에 심리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대한상사중재원의 사건처리 역량이 강화되었으며, 대형 국제중재사건의 유치가 가능해져 법률 서비스, 관광·숙박 등 관련 산업에서의 연관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됨에 따라 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 방안이 마련되어,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 중재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 19. 공익신탁 제도 활성화

상사법무과 검찰사무관 배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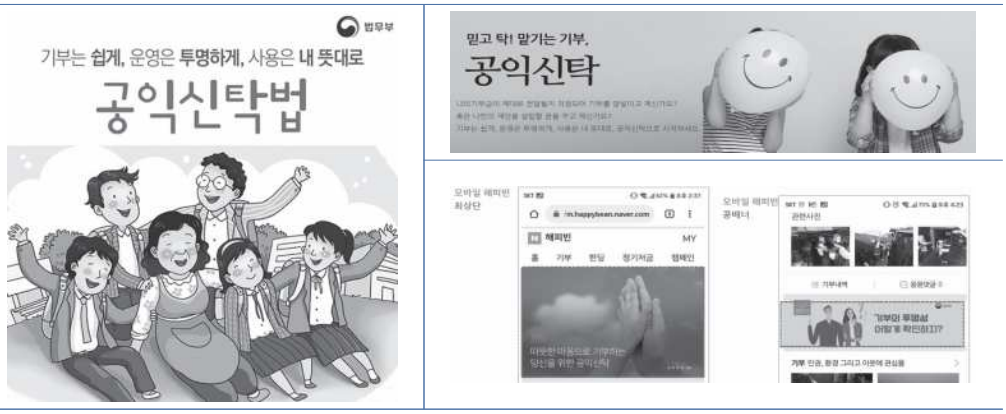
##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나눔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10. 3. 25.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익신탁법」 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2010. 7. 6.까지 8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공익신탁법」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법무부는 관계부처 의견조회와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2011. 10. 27. 차관회의 및 2011. 11. 1.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을 18대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이에 19대 국회에서 입법을 재추진하여 2012. 7. 24.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14. 2. 29. 통과되어 법률 제12420호로 공포되었으며, 2015. 3. 19.부터 시행되었다.

## 나. 평가 및 발전방향

새로 제정된 「공익신탁법」은 공익신탁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법무부 장관의 권한으로 일원화하여 관리·감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공익신탁의 설정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여 누구나 쉽게 공익신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신탁은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며 법무부에서 관리·감독을 전담하도록 하는 등 공익신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 그림 2-68 | 공익신탁 홍보 관련



또한 2018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공익신탁 홍보영상을 종합편성채널 등에 송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한 결과 2018년 말까지 아동학대 피해 어린이 및 범죄피해자 지원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25개의 공익신탁이 인가되어 여러 공익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향후 공익신탁 제도는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사회계층간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 선진상사법률연구 발간

상사법무과 검찰사무관 배근수

###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상사법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선진상사법제 마련을 위하여 전국의 상사법 연구자와 실무가들에게 관련 원고를 모집하고 이를 심사하여 1·4·7·10월 네 번에 걸쳐 「선진상사법률연구」 학술지(KCI 등재지)를 발간하였다.

2018년의 경우 1월에 발간한 통권 제81호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기업규제 법리'라는 주제로 특별기획을 구성하여 신현윤(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기업집단 내부거래의 규제법리와 입법쟁점』 등 논문 3편과 논단 5편, 최완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2017년 상사법학계와 상사판례의 동향』 논문을 포함한 신년기획, 실무논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4월에 발간한 통권 제82호에는 김정호(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 대법원 2017. 3. 23. 2015다248342 판결에 대하여 평석한 『주주명부 기재의 효력』 논문 외 4편의 논고를 수록하였고, 7월에 발간한 통권 제83호는 대법원 2017. 7. 18. 2017다207499 판결을 평석하고 관련 쟁점을 분석한 김성탁(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논문을 비롯하여 총 4편의 논문이 수록되었다.

마지막으로 10월에 발간한 통권 제84호는 『타인명의의 주식인수와 주주권의 귀속』에 대하여 논한 정응기(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기고를 포함하여 6편의 글이 수록되었다.

### 나. 평가 및 발전방향

선진상사법률연구는 발간 시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를 비롯하여 각 대학도서관, 법경제단체·경제부처, 국회, 로펌 등에 약 600여부를 배포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상사법 연구 및 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림 2-69 | 선진상사법률연구




선진상사법률연구 제83호




선진상사법률연구 제84호

## 21. 선진법제포럼 개최

상사법무과 행정사무관 김효선

###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선진법제포럼'은 경제법령의 입법에 관한 아이디어와 신속한 법제정보 수집을 위해 2007. 11월 결성된 전문가 그룹으로, 학계·시민단체·언론계·경제계 전문가 8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무부는 가습기 살균제, 라돈 침대, 신용카드사·가상통화거래소 개인정보유출, 자동차 연비표시 조작, 주행 중 차량화재 등 집단적 피해사고에 대한 효율적 구제책 마련을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8. 9월 법무부가 마련한 「집단소송제 확대도입방안」을 바탕으로 실효적이고 합리적인 집단소송제 도입 방향 및 보완 필요성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18. 12. 13. '전문가가 바라 본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 및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는 기존 회원뿐만 아니라 학계 전문가, 주요 기업 및 로펌의 기업법무 담당자, 주요 경제단체 관련자 등도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 나. 평가 및 발전방향

이번 포럼에서는 김홍엽 교수(성균관대 초빙교수·법무법인 충정)의 사회로 '집단소송제 개선방안 및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함영주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주제발표, 김주영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 이승희 변호사(법무법인(유) 화우), 정선주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송해연 변호사(대한변협 공보이사·법무법인 정진)의 토론이 있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실효적이고 합리적인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보완필요사항(증거조사절차 개선 및 소송허가제도 개선)과 집단소송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 그림 2-70 |** 2018 선진법제포럼 개최



선진법제포럼 토론회 개최




선진법제포럼 법무부 장관 축사

# 22. 공정한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 운영과 제도 개선 도모

법조인력과 행정사무관 김효민

## 가. 제7회 변호사시험 실시

### 1) 시험 문제 합숙 출제 및 시험 시행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의 문제출제를 위하여 2017. 12. 27.부터 18일간의 합숙출제를 실시하였다. 출제오류방지와 자격시험의 성격에 부합하는 양질의 문제 출제를 위하여 교수, 실무가 등으로 시험위원을 위촉하고 최적의 합숙환경 및 보안을 위한 합숙시설·보안업체의 선정을 거쳐 합숙출제를 시행하였다.

제7회 변호사시험은 전국 5개 시험장(서울 4, 대전)에서 2018. 1. 9.부터 1. 13.까지 시행되었고 3,490명이 출원하고 3,240명이 응시하였다.

심도 있는 문제유형 연구 작업을 거쳐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법조인 선발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일구어 낸 이전의 변호사시험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사전 준비와 계획 하에 제7회 시험도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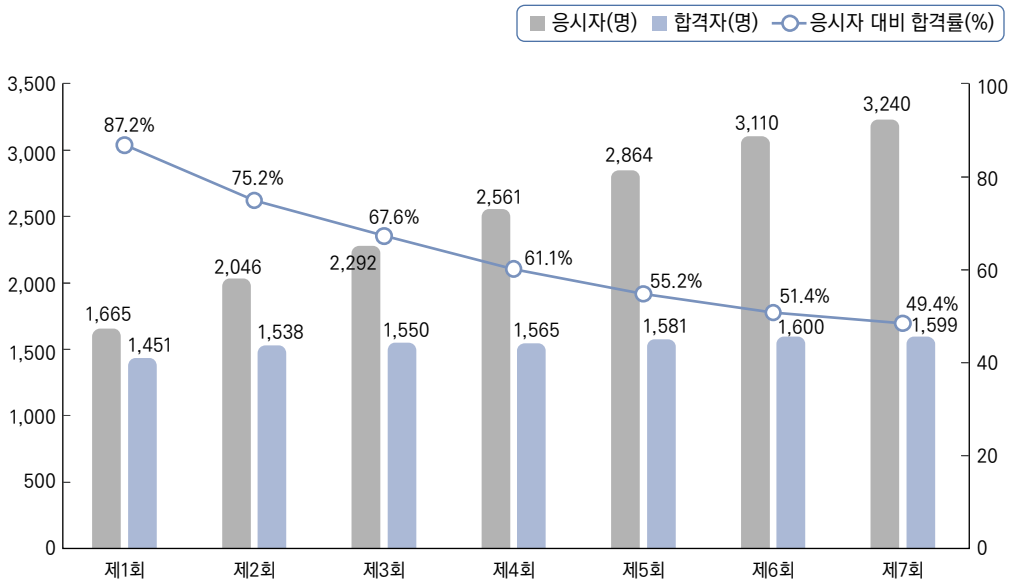
### 2) 채점 및 합격자 결정

2018. 1. 23.부터 1. 25.까지 시행된 채점기준표 작성회의에서는 세트반복형 가채점 방식으로 채점위원별 채점편차 최소화, 채점기준의 객관화 등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4분할 채점제를 채택하여 채점기간을 단축하면서도 점수조정을 통한 채점위원 간 편차를 줄여 시험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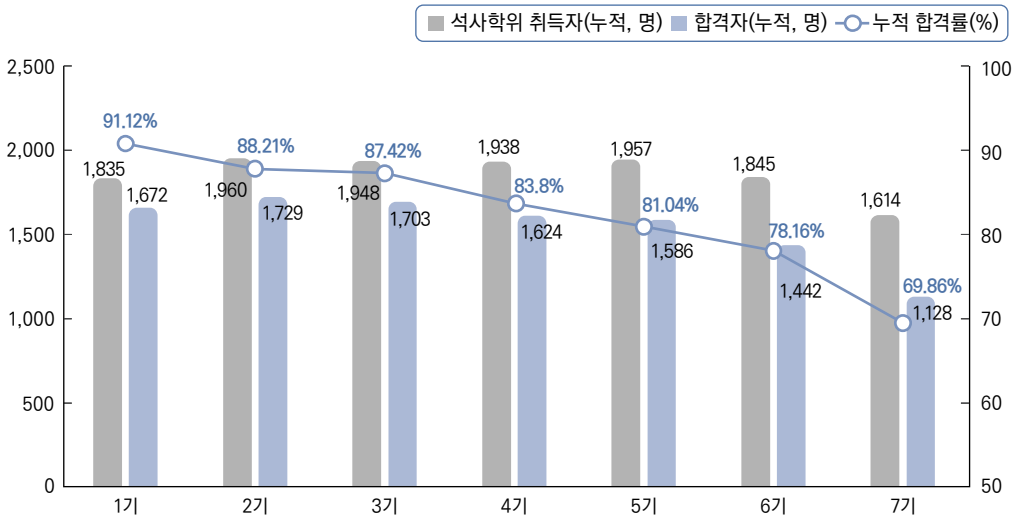
그 외에 시험위원을 상대로 한 출제오류 사례 교육, 출제 과정에서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의 분리를 통한 상호검증, 시험 정답 가안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정답확정회의를 통해 정답을 확정하는 등 문제오류를 방지하여 복수정답 인정사례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2018. 4. 20.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599명으로 결정하였다. 이는 2018년도 제13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 및 합격률'이라는 기준과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가', '법조인 수급 상황',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관리 현황', '채점 결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시험의 검증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수준에서 합격자를 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 그림 2-71 | 역대 변호사시험 현황




## | 그림 2-72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기수별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누적합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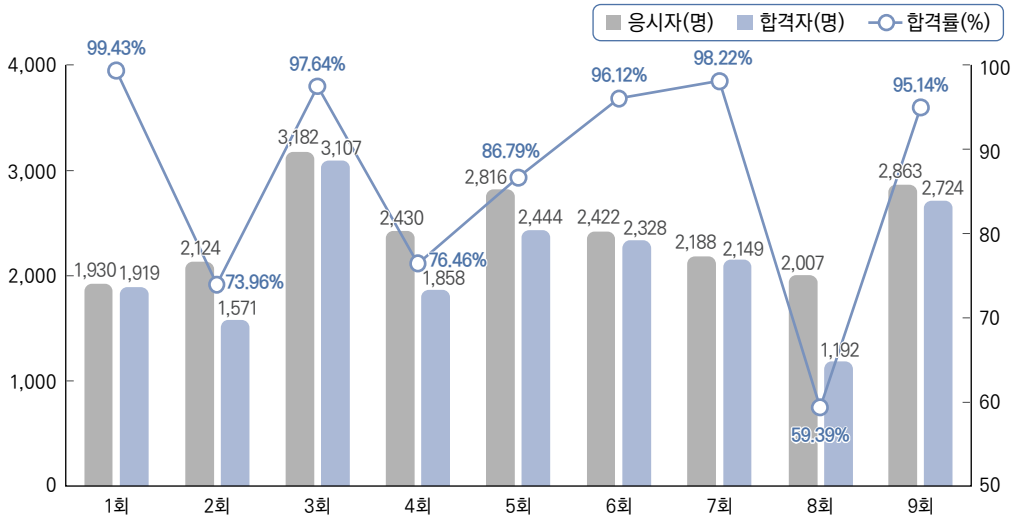
## 나. 제9회 법조윤리시험 실시

2018년도 제9회 법조윤리시험은 2018. 8. 4. 전국 8개 시험장(서울 3,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주)에서 실시되었다.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면서도 지엽적이지 않고 중요한 판례 위주의 출제를 통하여 시험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였다.

법조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직무윤리뿐만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령 등에 관한 실질적인 평가를 통하여 직역윤리를 검증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총 2,892명이 출원하여 그 중 2,863명이 응시(응시율 98.99%)한 결과, 2,724명(합격률 95.14%)이 합격하였다.

※ 2017년 제8회 법조윤리시험 : 2,007명 응시, 1,192명 합격(합격률 59.39%)

| 그림 2-73 | 역대 법조윤리시험 현황




## 다. 시험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 전개

### 1)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방안」 마련, 시행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10년에 즈음하여 '17년 사법시험의 폐지로 법조인 선발방식이 일원화됨에 따라 높아진 정책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내실있는 변호사시험을 운영, 양질의 법조인 선발·양성 및 선진 법률서비스 제공 토대 마련하기 위하여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2018. 3 ~ 10월 '변호사시험 개선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고, 2018. 11. 28. 변호사시험

개선 위원회 운영 결과, 법학전문대학원 여론 수렴 결과 및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변호사시험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기본적 법률분야에 대한 충실한 교육 유도,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충실화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한 조치로서,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제도가 정착단계를 넘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시험장 지방 확대 및 판례 출제범위 제한 등 즉시 시행 가능한 사항은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에 반영하기로 하였고, 출산 등 응시기간 연장 및 선택형 시험 과목 축소 등은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시험 개선 및 노트북 활용 답안 작성 방식 도입 등 중·장기적 검토 필요 사항과 관련하여 심층적 연구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 2) 시험행정 서비스 강화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법조윤리시험 관련 통계 공개 등 시험행정 서비스 강화에 노력하였다. 특히 2018. 4. 22. '제1~7회 변호사시험 법학전문대학원별 응시자 대비 합격률' 및 '법학전문대학원별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누적합격률'을 공개하였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10년을 맞아 투명성 강화 필요성, 국민들에게 다양한 고려 요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

# 제4절 검찰업무

## 1. 검찰 역량의 강화

◎ 검찰과 검사 이건표

### 가. 검사 인사제도 개선

#### 1) 추진 배경 및 경과

신뢰받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뒷받침하는 검사 인사제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무부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2018. 5월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고, 2018. 11월 '검사인사규정(대통령령)' 등 검사 인사 관련 규정 제정안을 마련하여 법제화 절차에 착수하였으며, 2018. 12월 최초로 검사 인사 관련 원칙과 기준의 법제화를 완료하였다.

- 2018. 12. 18. 검사 인사에 관한 기본 원칙 규정인 「검사인사규정」(대통령령) 공포·시행
- 2018. 12. 18. 인사의 기회균등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세부 인사기준 및 절차를 수립하여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 예규) 제정·시행
- 2018. 11. 30.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무평정 특례 확대 등 「검사복무평정규칙」(법무부령) 일부 개정안 공포·시행

#### 2) 주요 내용 및 성과

최초로 복무평정을 중시하는 검사 인사에 관한 기본 원칙(대통령령)과 기회 균등을 강화하는 세부 인사 기준, 절차(법무부 예규)를 법제화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법규범에 따른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① 경향교류 강화, 다면평가 근거 명문화 등 기회 균등 제고를 통한 검찰의 중립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 ② 출산·육아목적 동일 청 장기 근속제도 등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규정, ③ 일반검사 인사 시기 명문화 등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한 인사 대상자 배려 규정들로 구성되었다.

향후 「검사인사규정」 등 공개된 법규범에 따른 검사 인사를 통해 기회균등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인사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통해 검찰의 중립성·공정성을 더욱 확보해 나갈 것이다.

## 나. 검찰 조직 개편

### 1) 추진배경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이 첫 번째 과제로 선정되어 범죄수익 환수 업무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국정농단 관련자의 부정축재 재산 환수 및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기능 강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축소하고, 검찰의 역할을 '수사기관'에서 '인권보호' 기관으로 재정립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에 인권업무 전반에 대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였고 이와 더불어 사건 처리의 전문성·신속성 향상을 통해 수사결과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검찰 내 조직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 2) 추진경과

2018. 2. 5. 대통령령 제28622호, 2018. 7. 23. 대통령령 제29055호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각각 공포 및 시행되었다.

### 3) 주요내용과 성과

2018. 2월 대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과를,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를 각각 신설하여 국정농단 관련자의 범죄수익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추적·환수할 수 있게 되었고, 성폭력·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효율적·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천지방검찰청 등 6개 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하였으며, 특허사건 처리의 신속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대전지검에 특허범죄조사부를, 서울중앙지검에 제4차장검사, 공정거래조사부 및 형사제9부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등 3개 지청에 형사부를 각 신설하는 한편 서울중앙지검 신설부서인 공정거래조사부, 범죄수익환수부 등 7개부를 제4차장검사 산하로 배치하였다.

또한 2018. 7월 형사절차상 피의자·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인권부를 신설하였고 산하에 인권기획과와 인권감독과를 신설하였으며, 반부패범죄와 강력범죄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대검 반부패부와 강력부를 통합하여 '반부패·강력부'로 개편하는 한편, 사이버범죄의 전문적·효율적 대응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의 '첨단범죄수사1부'를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전하여 '사이버수사부'로 변경하였다.

또한 '첨단범죄수사1부'의 서울동부지검 이전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조직개편 필요성이 제기되어 제3차장검사 산하 '과학기술범죄수사부'와 '강력부'를 제4차장검사 산하로, 제4차장검사 산하 '공정거래조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를 제3차장검사 산하로 각각 재배치하여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였고,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을 축소하기 위해 울산지검과 창원지검의 '특별수사부'를 '형사부'로 각 개편하였다.

### 4) 평가 및 기대효과

범죄수익환수 부서 신설로 국내외 부정축재 재산을 적극 환수함으로서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대검찰청에 인권부를 신설하여 검찰이 인권옹호 기관으로서의 검찰의 역할·기능을 재정립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검찰 내 인권업무 전반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신설로 여성아동대상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세심하고 전문적인 수사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더욱 강화됨은 물론, 공정거래조사부·특허범죄수사부·사이버수사부 등 전문분야 수사부서의 신설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사건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고품격의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림 2-74 | 검찰 조직 개편 관련 언론기사



최순실·전두환 재산추적선수 발탁...대검 범죄수익환수과 출범(종합)

대검찰청이 대형 부패범죄의 범죄수익 환수 강화를 위해 반부패부 산하에 범죄수익환수과를 신설했다.

대검찰청은 12일 오후 4시 청사에서 문무일 검찰총장 등이 참석해 범죄수익환수과 출범을 기념한 현판식을 개최했다. 신설 범죄수익환수과는 부정부패 범죄 정워로 부당하게 얻은 수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다.

검찰은 범죄수익환수과 출범 이전에는 사건별로 추집팀을 꾸려 범죄수익 환수 작업을 진행해왔다. 범죄수익환수과가 상설부서로 신설됨에 따라 앞으로는 범죄수익 국고환수가 강화될 방침이다.

대검찰청 인권부 신설...인권감독관도 7개 지검에 추가 배치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13일 법무부는 하반기 검사 인사와 함께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먼저 대검찰청에 인권부를 신설한다. 이 부서는 형사절차와 관련한 인권정책 수립, 피해자 보호, 인권감독·인권침해 조사, 양성평등 업무 등 인권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인권부 설치는 지난달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 관계 장관 협장들과의 오찬에서 지시한 사항이다.

## 다. 전문수사인력 증원을 통한 수사역량 강화

### 1) 추진배경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검사정원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증원하는 내용으로 「검사정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8년도에 증원되는 검사 70명을 보조하기 위하여 수사 및 공판 참여 등에 필요한 인력과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장에 따른 마약류 사범 검거에 필요한 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또한 대검찰청의

형사·재판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연구하기 위한 특수기록관이 개관되어 기록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증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 2) 추진경과

2018. 3. 30. 대통령령 제28757호, 2018. 5. 29. 대통령령 제28922호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각각 공포 및 시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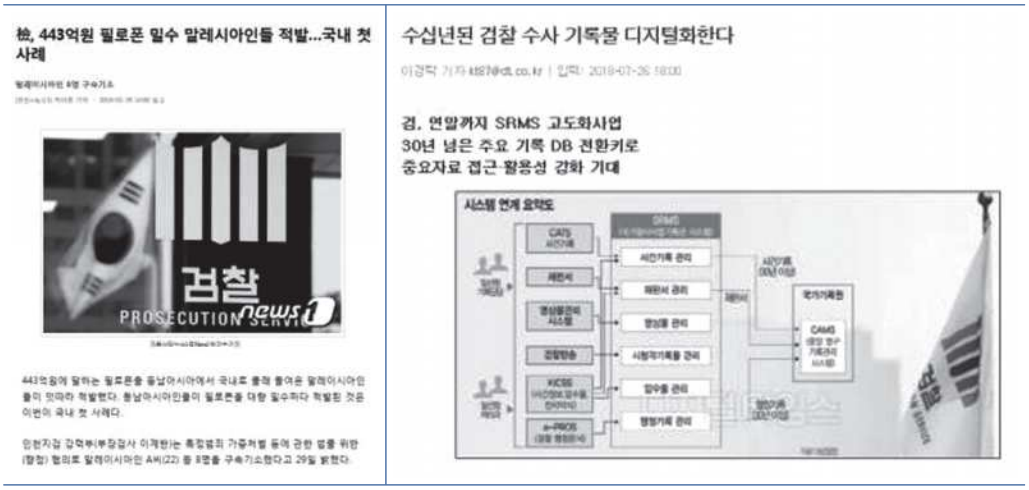
### 3) 주요내용과 성과

2018. 3. 30. 검사 70명 증원에 따른 검사보조인력 84명(6급 24명, 7급 29명, 8급 17명, 9급 14명) 및 인천공항 2터미널 마약류 차단 및 마약사범 검거 인력 8명(6급 4명, 7급 3명, 8급 1명)을 증원하였고, 대검찰청 특수기록관 개관에 따른 운영·관리에 필요한 15명(4·5급 1명, 5급·연구관 1명, 6급 이하 9명, 연구사 4명)을 증원하였다. 또한 공무원 직종개편 및 기관 내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별정직·관리운영직 등 총 18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였다.

### 4) 평가 및 발전방향

검사보조인력의 증원으로 신속한 사건처리가 가능해졌고, 인천공항 마약사범 검거 인력 증원으로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마약류 유입이 차단되어 우리나라의 마약청정국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특수기록관 개관 및 운영인력 증원에 따라 검찰 주요 기록물에 대한 디지털화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연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림 2-75 |** 전문수사인력 증원을 통한 주요성과 관련 언론기사



## 라. 검찰 구성원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 예산 지원

법무부는 검찰 업무 및 인사 특수성에 따른 고충 해결,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등 검찰 구성원들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오고 있다.

### 1) 단신 부임 근무자 「수도권-지방」 교통비 지원 신설

검사 및 검찰수사관은 '향피제' 및 '경향교류' 등 인사 원칙의 특수성에 따라 1 ~ 2년 단위로 전국 65개 청에서 순환 근무를 하고 있으며,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단신 부임이 보편화됨에 따라 장기간 가족과 별거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누적 및 주말 가정 복귀를 위한 교통비용 지출로 경제적 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검찰 구성원의 정신적, 경제적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단신 부임 근무자들의 주말 가정 복귀를 위한 KTX, SRT 교통비 지원 예산 6.6억원을 신규 편성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 지원을 강화하였다.

### 2) 형 집행 업무 위험수당 신설

형 집행 분야는 검찰 고유의 업무로, 일선 검찰청 재산형 집행 및 자유형 집행 담당 수사관들은 재산형에 대한 대체집행인 노역장유치집행 및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를 위해 검거기동반을 편성하여 현장에 출동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국가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

한편, 벌금 등 재산형은 형벌이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이 팽배하고 재산은닉 및 납부회피 방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불구속재판의 확대 및 궐석재판에 의한 실형선고 증가 등으로 자유형미집행자 또한 꾸준히 증가하여 형 미집행자 들의 도피 수법이 날로 흉포화·지능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2018. 4. 2. 대전지방검찰청 검찰수사관 2명이 재산형미집행자가 휘두르는 칼에 하복부 자상, 손가락 신경절단 등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형 집행 과정에서 검찰수사관이 신체 안전을 위협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법무부에서는 인사혁신처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재산형 및 자유형 미집행자 등 형 집행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신설하였다.

### 3) 검찰시설 및 환경 개선

법무부는 전국 노후 검찰청 시설 및 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검사실 등 보안시설에 대한 개별 전자출입통제 시스템 구축, 인권보장을 위한 법정형 조사실 설치, 근무인원 증가 등으로 협소·과밀한 서울서부지검 및 충주지청 증축, 수원고·지검 신축 및 이전 관련 예산을 신규 편성하는 등 검찰 구성원의 근무환경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 및 환경 개선 사업의 효과는 업무 효율성 향상뿐만 아니라 검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 등의 만족도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 검찰업무의 추진방향

형사기획과 검사 한지혁

## 가. 사회적 약자의 권익 향상

법무부는 그동안 여성, 장애인, 아동,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형사절차에 관한 제반 법령을 정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사회 양극화의 심화로 인한 부작용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법치주의 구현이 요구되어 수사과정에서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여성·아동 전용조사실 설치, 수사과정에서의 녹음·녹화제 활용도 증대, 신뢰관계자의 동석 범위 확대 등을 각종 법령·지침 등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2004. 12월 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인천지검·수원지검 등 4대 지검에 녹음·녹화실, 편면경 (one-way mirror) 등을 완비한 영상녹화조사실을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 검찰청에 여성·아동 조사실을 설치하였고, 2013. 7월 종전의 '성폭력피해자 조사지침'과 '성폭력범죄 사건 처리지침'을 통합하여 성폭력사건 처리 관련 세부내용과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절차 및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2차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기 위하여 사건의 성격 및 피조사자에 따라 적합한 조사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인권보호와 프라이버시 친화적 조사 환경을 구축하였다. 아울러 법무연수원에도 여성·아동관련 범죄 수사실무 교육 프로그램 및 성폭력피해자 조사기법 강좌를 개설하여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다.

한편, 사회문제로 대두된 아동 성폭력문제에 더욱 강력히 대응하기 위하여 2012. 12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개정하여,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를 폐지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13세 미만자 등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였다. 아동성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9. 10월부터 전국 검찰청에 아동성폭력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2013. 7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3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전문가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조회 및 법정 증언 관련 절차 및 내용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성폭력범죄전문가 의견조회 및 활용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2014. 4월부터 다년간 성폭력 관련 심리상담 또는 치료 업무에 종사하여 온 소아정신과 전문의, 임상심리전문가, 범죄심리전문가, 사회복지사 등 107명을 대검찰청 성폭력범죄 전문가로 선정, 위촉하여 피해아동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해 진단하고 진술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피해아동의 2차 피해 및 중복조사를 방지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1. 9월 서울중앙지검에, 2016.

1월 대구·광주지검, 2017. 2월 대전·부산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하여 아동·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피해자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2015. 11월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검사 지정·운영 및 조사 시 유의사항 등을 규정하는 「발달장애인 사건조사에 관한 지침」을 마련·시행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결혼이민 여성을 상대로 여성 범죄예방위원과의 결연사업, 지방자치단체와의 다문화가족 보호지원 업무협약 등을 추진함으로써 이주 여성들이 국내 연고 부족 등으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가정폭력과 국내정착 등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2018. 2월 수원·인천·서울 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에 6곳에 성폭력, 아동학대 등 여성·아동대상 범죄 전담부서를 추가 신설하고, 전담 부서의 특수성을 살려 각 지역의 여성·아동대상 범죄 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범죄에 대한 전문 대응체계 강화하였고, 2018. 3월 전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세미나, 2018. 11월 여성·아동전담 부장 회의, 여성·아동 범죄 전담 검사 및 수사관 워크숍을 통해 전문 수사 역량을 제고 하였다.

또한 성폭력 등 여성·아동 대상 성범죄 수사 시 활용하기 위해 2018. 2월 '성폭력 수사매뉴얼' 제작·배포하였고, 2018. 5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 수사 중단 등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재개정·시행하였으며, 성폭력 무죄 사건 등을 연구하기 위해 '18. 5~9월 성폭력 무죄사례 T/F를 운영하였고, '18. 12월 법률 개정에 따라 업무상위력간음·추행 사건처리기준을 개정하였다.

특히 새롭게 사회문제로 대두된 불법촬영·유포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자 2018. 10월 카메라등이용촬영·유포 사건처리기준을 세분화 하는 등 개정·시행하였고, 2018. 12월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사건처리 기준을 재개정 하였으며, 2018년 불법촬영·유포 사범 184명을 구속 기소 하였다.

이와 더불어 '18. 12월 여성·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공동 대처 및 연구를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실효적 대응을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2007. 6월에는 '성·가정·아동폭력 연구검사'를 지정하였고, 2007. 8월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입법화하였다.

한편 2013. 7월에는 흉기 휴대 또는 상습적 가정폭력의 경우 구속을 원칙으로 하는 등 가정폭력사건의 처리기준을 강화한 「가정폭력사건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였고, 2015. 9월에는 친족간 성폭력·가정폭력 등 가정 내 범죄에 대해 기 시달된 사건처리기준 및 지침을 엄격히 적용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범행 동기 및 경위, 재범의 위험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고, 2018. 10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강서구 주차장 전처 살인 사건' 발생을 계기로 검찰은 가정폭력사건을 더욱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데이트폭력 범죄가 증가하면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대검찰청은 정부의 「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데이트폭력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구속기준 및 사건처리기준을 정비·강화하여 전국 검찰청에서 2018. 7. 2.부터 시행하고 있는 바,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강화하고, 데이트폭력 가중 양형인자를 추가하여 엄정대처하는 한편, 단계별 맞춤형 피해자지원, 보복범죄 차단 등의 조치를 통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 나.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

법무·검찰은 수사과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법 집행의 엄정성·효율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먼저, 진술에 의존하는 기존의 수사기법이나 조사방법을 탈피하여 물적 증거 수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사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날로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과학수사역량 강화 및 수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6. 12월경부터 총 144억원을 투입하여 2008. 10월경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지상 6층, 지하 1층, 연면적 7,844㎡ 규모)를 완공하여, 그동안 분산되었던 디지털증거 수집·분석 및 감정·감식 업무를 한 곳에 집중시켜 효율적인 증거 수집 및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문서감정 등 범죄수사 관련 감정·감식, DNA 및 법생화학 감식, 전자적 증거의 수집·분석, 사이버범죄 대응 등 전방위적인 과학수사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에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2007. 4월 서울중앙지검, 2008. 6월 부산고검, 2009. 9월 대구고검, 2010. 4월 광주고검, 2010. 12월 대전고검, 2011. 5월 인천지검, 2012. 6월 수원지검, 2014. 11월 서울고검·서울남부지검·창원지검, 2017. 12월 서울북부지검·춘천지검 등 일선 청에 디지털포렌식팀을 설치·운영하여 급증하는 디지털증거 수집·분석업무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다음으로, 인권존중 수사관행을 정착하고 과학수사 역량 강화 및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2. 12월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제정, 2006. 6월 전면적으로 이를 개정하여 시행하였다. 수사과정의 투명성과 인권보장의 일환으로 2004. 6. 1. 4개 검찰청 12개 검사실에 영상녹화시설 설치를 시작으로 2018. 12. 31.까지 전국 64개청에 총 841실로 확대 설치하여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의 소지를 최대한 불식시키고 수사 인력 및 조사시간 단축을 통해 효율적인 수사체계를 확립하였다.

한편, 대검찰청에서 2006. 6월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전국 검찰청에 시달하였는바, 동 지침에서 수사는 '불구속 수사 원칙'으로 구속 수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형사소송법」상의 구속 사유를 상세화한 '일반적 기준'을 두는 한편 '일반 형사·공안·부패·강력 사범' 등 주요 범죄별로 구분하여 구속 기준을 예시한 '범죄

유형별 기준'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위 지침은 그동안 각급 검찰청에서 관행적·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기준을 집대성하여 최초로 지침화하고 전국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정립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2011. 12월 구속수사의 일반적 기준과 범죄유형별 기준을 좀 더 세분하여 위 지침 제정 이후 구속수사 실무 기준을 반영하였다.

대검찰청은 2008. 6월 형법범(208개 조문, 293개 범죄유형), 가중사범(4개 법률, 101개 범죄유형), 특별법범(232개 법률, 1,149개 범죄유형) 등 총 1,543개 범죄유형별로 구속기준, 구공판기준, 구형기준, 벌금기준 등을 규정한 '검찰사건처리기준'을 수립·시행하였으며, 2011. 12월에는 시행 3년을 맞아 그간 폐지되거나 변경된 법령과 변화된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여 '검찰 사건처리기준'을 재정비 하였다. 또한 2012. 9월에는 지역적 범죄 특성과 당해 사건의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선 청에서 사건처리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월, 포항 등 9개청에서 산지관리법위반, 수산업법위반 등 19개 특별법범에 대해 지역의 특수성과 경제적 사정 등을 반영한 자체 사건처리기준을 수립·시행하였다.

2016. 9월 '검찰사건처리기준' 개정 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고하고, 사건 및 피의자 관련 제반정상을 고려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 구형 원칙을 규정한 『검찰 구형 및 항소에 관한 업무지침』을 반영하였으며, 3차례 개정된 형법 개정 사항 〈유사강간죄 신설, 혼인빙자간음죄 등 삭제('13. 6월 시행), 범죄단체조직죄, 약취와 유인의 죄 등 정비('14. 4월 시행), 특수상해·강요·공갈죄 등 신설, 간통죄 삭제 등('16. 1월 시행)〉을 반영하였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추가하여 가중사범을 총 6개 법률로 확대함과 동시에, 총 42개 특별법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교통사고·음주운전 등 대검의 강화된 신병 및 구형 기준을 반영하였다.

한편, 대검찰청은 검사의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등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0. 7. 2. 전국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검찰시민위원회를 도입하여, 2013. 5. 22. 전국 5대 고검에 추가 설치 현재 전국 64개청에서 확대 시행하고 있다.

고·지검 및 지청 소속 위원회의 경우 11명 이상 6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분담·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안에 상설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탄력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들의 경우에는 지방검찰청 등의 장이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건전한 상식과 균형감을 갖춘 일반 시민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되,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직업, 연령, 성별,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고 있다.[14]

아울러 2004. 7월부터 항고심사회를 설치·운영해 왔으나,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대상과 사실상 동일하여 위원회 중복 운영으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 제기로, 기존의 항고심사회 기능을 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위원회는 검사의 요청에 따라 ①

14)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제17조, 제18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위촉 배제

공소제기의 적정성, ②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③ 구속취소의 적정성, ④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이외에도 최근 심의대상의 확대를 통하여 일반 시민들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5년 검찰시민운영위원회 운영실적은 〈표 2-25〉와 같다.

| 표 2-25 | 최근 5년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실적

| 구분 / 연도 | 개최횟수 | 심의건수 | | | | | | |
|---|---|---|---|---|---|---|---|---|
| | | 합계 | 기소 | 불기소 | 재청구 | 구속취소 | 영장청구 | 항고 |
| 2014년 | 655 | 1,286 | 682 | 384 | 137 | 10 | 73 | - |
| 2015년 | 728 | 1,525 | 566 | 607 | 88 | 10 | 247 | - |
| 2016년 | 850 | 1,766 | 531 | 667 | 106 | 5 | 409 | 48 |
| 2017년 | 956 | 2,086 | 557 | 971 | 66 | 5 | 390 | 70 |
| 2018년 | 1,078 | 2,324 | 618 | 1,180 | 277 | 1 | 277 | 94 |

## 3. 사회·경제질서의 엄정 확립

형사기획과 검사 한지혁

### 가. 개요

법무·검찰은 권력형 비리 등 사회지도층 비리를 중점 단속하고,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지방공기업과 관련된 지역토착비리와 보조금 비리·조세포탈 등 국가재정 관련 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부패유발요소에 대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정책수립에 반영하였다. 또한 불법수익의 철저한 박탈로 부패범죄에 대한 동기를 차단하기 위하여 대검 반부패부·강력부 수사지원과에 설치된 '범죄수익환수 전담반'을 통하여 일선청의 범죄수익환수 업무를 지원하였고, 2018. 2월 범죄수익환수 기능 강화를 위하여 대검 반부패부·강력부에 '범죄수익환수과'를 별도 신설, 서울중앙지검에 4차장 및 그 산하에 '범죄수익환수부'를 신설하여 범죄수익환수 기능을 제고하였다.

2018. 7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를 통합 신설하고,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에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조사부 신설, 4차장 산하에 과학기술범죄수사부 신설, 서울동부지검에 사이버수사부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을 통해 수사 역량을 집중하였다.

법무·검찰은 국민생활 안정의 위협요소를 차단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방위사업 분야의 고질적·구조적 비리와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고위공직자,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의 권력형 비리, 국가 경쟁력·투명성을 저해하는 공기업·공공기관 민관유착 비리, 법조 브로커 등 법조비리, 언론비리, 교육비리, 경제 질서 저해 사범 등 금융·증권비리, 조세포탈 비리, 재벌총수일가의 횡령·배임 범죄 등의 근절에도 총력을 기울여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하였다.

2018. 11월 임대 토지 등에 폐기물을 불법투기·매립하여 사회적·환경적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폐기물 불법투기·매립사범에 대한 엄정대응 지시 등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환경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2018년 하반기에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주장하여 법원에서 만연히 형벌을 감경받는 것 아닌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바(위 사건에서는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정되었음),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피고인이 형을 부당하게 감면받거나 치료가 미흡한 상태에서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다.

## 나. 부정부패사범의 척결

### 1) 부정부패 척결 지속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부정부패 척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2018년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27위로서 2013년 수준(22위)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효율성 부문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도 2018년도 180개국 중 45위(OECD 36개국 중 30위)로 국제 평가기관들이 평가하는 우리나라의 낮은 청렴수준과 부패척결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은 상황에 법무부는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더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먼저 검찰에서는 공공분야 구조적 비리, 재정·경제분야 고질적 비리, 전문직역 숨은 비리를 중점 수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왔다. 특히 2018년에는 부정부패사범 척결에 대한 국민적 기대 등을 반영하여 기존 주요 수사대상이었던 부정부패 범죄와 함께 국가경쟁력·투명성을 저해하는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여 937명 기소(233명 구속)하였고, 5대 중대 부패범죄 관련 구속기준 등을 정비하여 검찰 사건처리기준을 개정·시행('18. 6월)하였다. 전국 부패범죄수사 전담부장 화상회의를 개최('18. 8월)하여 특별수사의 문제점과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를 하였고, 전국 검찰청의 부패범죄수사 전담부를 중심으로 지역 토착비리 단속, 보조금 비리 수사,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증권·금융범죄 관련

수사 등 각종 부정부패 수사를 진행하였고, 특히 갑질범죄 근절을 위해 채용비리 수사 등에 집중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2018년도 부정부패사범 단속실적은 〈표 2-26〉 내지 〈표 2-27〉과 같다.

**| 표 2-26 |** 2018년 부정부패사범 단속실적

(단위 : 명)

| 구분 / 유형 | 단속인원 | 구속인원 |
|---|---|---|
| 인사 | 59(11) | 11(1) |
| 건축 | 47(11) | 12(3) |
| 토지 | 5(3) | 0(0) |
| 공사 | 59(21) | 19(3) |
| 보건·환경 | 11(5) | 2(2) |
| 교통 | 1(0) | 0(0) |
| 소방 | 0(0) | 0(0) |
| 노동 | 3(1) | 0(0) |
| 수사 | 12(5) | 2(1) |
| 세무 | 65(15) | 19(7) |
| 교육 | 10(8) | 2(1) |
| 병무 | 1(1) | 0(0) |
| 금융 | 442(7) | 63(0) |
| 법조주변 | 84(5) | 27(2) |
| 납품 | 22(10) | 10(6) |
| 사이비언론 | 10(0) | 4(0) |
| 기타 | 245(66) | 80(24) |
| 합계 | 1,076(169) | 251(50) |

( )는 공무원

| 표 2-27 | 2018년 공직자비리 단속실적

(단위 : 명)

| 직급별 \ 죄명 | 뇌물수수 뇌물공여 | 직권남용 직무유기 | 허위공문서 작성 등 | 기타 | 계 |
|---|---|---|---|---|---|
| 3급 이상 | 11(3) | 13(0) | 0(0) | 9(1) | 33(4) |
| 4급 이하 | 112(35) | 82(0) | 26(1) | 30(3) | 250(39) |
| 합 계 | 123(38) | 95(0) | 26(1) | 39(4) | 283(43) |

( ) 구속인원

### 2) 부패 유발요소에 대한 제도적 개선사항 발굴

부패 관련 수사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클린피드백 유관부처 회의를 통해 관계 기관에 다음과 같이 10건의 제도개선을 건의하였다.

| | |
|---|---|
| 제도개선 발굴, 건의 실적 | • 1/4분기 클린피드백 회의('18. 3월) 건의 실적<br>– 대마 매매·알선에 대한 처벌규정 개선(식약처)<br>–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형사 처벌규정 도입 등(소방청)<br>• 2/4분기 클린피드백 회의('18. 6월) 건의 실적<br>– 의료법 시행규칙에 자가발전시설을 설치해야 할 대상 세부기준 마련(보건복지부)<br>– 소방기본법의 금지명령 주체 대상 위임규정 제정 등(소방청)<br>– 회사 쪼개기 실태 파악을 위한 정기 및 불시점검(고용노동부)<br>– 게임산업법 및 음악산업법에 규정된 청소년에 관한 정의를 청소년보호법과 동일하게 규정(문화체육관광부)<br>• 3/4분기 클린피드백 회의('18. 9월) 건의 실적<br>– 예비군법 처벌 규정 개정(국방부)<br>– 수산업법 어구의 규모 등 제한 위반 처벌규정 개정(해양수산부)<br>– 영유아보육법 상 어린이집 CCTV 열람요구자를 어린이집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가능하도록 개정(국토교통부)<br>• 4/4분기 클린피드백 회의('18. 12월) 건의 실적<br>–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건의(국토교통부)<br>[2018. 12. 31. 기준 10건] |

## 다. 엄정한 사회질서의 확립

### 1) 음주운전 사범 엄정 대처

2018. 9월 부산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하여 군복무 중이던 대학생인 윤창호 군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국민청원'이 제기되면서 음주운전 처벌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에 법무부 장관은 2018. 10. 19.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 철저 이행 및 상습 음주 운전자 등에 대한 원칙적 구속수사'를 내용으로 하는 '음주운전 사범 엄정 대처'를 지시하고, 10. 22. '국민청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검찰도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의 실현을 위해 음주운전 관련 범행에 엄정한 기준으로 신병처리, 구형, 적극적 항소 등으로 대처한 결과, '18. 10~11월 기간 동안 91명을 구속기소, 2,511명을 불구속기소하여 '17. 1월~'18. 9월 기간과 비교하여 구속기소율이 30%, 불구속기소율이 17% 증가하였다. 또한 검찰은 '19. 1. 4.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결과와 함께 관련 주요 수사사례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무관용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

**| 표 2-28 |** 관련 사건의 구속구공판율

| 통계산출 기간 | 음주운전 관련 사건 전체 피의자 수 | 구속기소한 피의자 수 | 구속구공판율 |
|---|---|---|---|
| '17. 1월~'18. 9월 | 279,636명 | 781명 | 0.27% |
| '18. 10~11월 | 26,160명 | 91명 | 0.36% |

**| 표 2-29 |** 음주운전 관련 사건의 불구속구공판율

| 통계산출 기간 | 음주운전 관련 사건 전체 피의자 수 | 불구속기소한 피의자 수 | 불구속구공판율 |
|---|---|---|---|
| '17. 1월~'18. 9월 | 279,636명 | 22,688명 | 8.1% |
| '18. 10~11월 | 26,160명 | 2,511명 | 9.5% |

### 2) 허위조작정보 제작·유포사범 엄정 대처

최근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그로 인해 사회 전반의 신뢰 저하 등의 폐해를 야기하자 2018. 10. 15.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허위조작정보 제작·유포 사범에 대한 엄정 대처'를 지시하고, 2018. 11. 14. 대검찰청은 각 일선청에 엄정 대처 지시와 함께 명예훼손 관련 주요 수사사례를 전파하였다.

현재 검찰은 「명예훼손 전담검사」를 중심으로 전담 수사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관련 사건에 대하여 사건 처리기준을 준수하여 철저히 수사하는 등 위법한 허위 조작정보 제작·유포사범에 대하여 엄정 대응 중이다.

## 라. 쾌적하고 안정된 국민경제생활의 확보

### 1) 5대 폭력 특별단속

조직폭력사범의 합법위장 기업형 진화 등 조직범죄의 지능화, 기업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18. 9월 조직, 마약 전담검사 화상회의 및 2018. 11월 전국 조직범죄전담 검사·수사관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조직폭력사범의 폭력단체등 구성·활동뿐만 아니라, M&A 과정의 불법행위 등 경제질서 교란행위, 불법사행업을 중점 단속하기로 결의하였다.

전통적인 조직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단계부터 간담회, 수사지휘 등 경찰과의 충실한 협업을 진행하여, 인천 '주안식구파', 전주 '나이트파·월드컵파', 광주 원정 '신양오비파' 보복폭행, '춘천식구파' 등에 대해 범죄단체 활동 등으로 피의자들을 검거하였다. 범죄단체 등 기소현황은 〈표 2-30〉과 같다.

**| 표 2-30 |** 범죄단체 등 기소현황

(단위 : 명, 괄호 안은 구속구공판 인원)

| 연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기소 | 239(103) | 237(82) | 332(94) | 363(87) | 278(119) | 278(107) |

### 2) 민생침해사범 엄단

사회 양극화로 인한 부작용의 심화, 청년실업·신용불량자 증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 편승하여 민생경제 침해범죄가 빈발함에 따라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민생침해사범을 척결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인식에 따라 2004년에 구성된 대검찰청의 「민생경제 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와 일선 검찰청의 「민생경제 침해사범 수사부(반)」를 중심으로 시·도, 경찰서, 기타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민생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2008. 5월 민생침해사범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하여 갈취, 폭력, 사행성 게임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강화되었고, 2008년 4/4분기에는 대검의 특별지시에 따라 전국 일선청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여 서민 생계를 침해하는 불법 사금융 및 청부폭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4배 이상인 3,704명을 입건하였다. 한편, 2008. 12월에는 유례없는 세계 경제위기 상황에서 서민을 괴롭히는 상가주변 보호비 갈취 등 민생침해 범죄, 불법 사금융·채권추심 행위, 신용훼손 등 경제불안 조성행위, 불법 다단계·유사수신 행위, 불법 사행행위 등을 「서민경제 5대 침해사범」으로 선정하여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였고, 2010년 민생침해사범 단속 관련 회의를 7차례 개최하여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2013. 3월부터 2017. 12월까지 대검찰청에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대검 형사부장)'를, 일선 지검 및 지청에 합동수사부, 전담수사반을 각 설치하여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다단계 등 서민생활 침해범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전개하였다. 합동수사본부가 종료된 이후에도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 지속으로 단속을 전개하고 있으며, 2018. 1. 1.부터 12. 31.까지 민생경제 침해범죄 단속실적은 〈표 2-31〉과 같다.

| 표 2-31 | 2018년 민생경제침해범죄 단속실적

| 구분 / 사범별 | 단속인원 | 구속인원 |
|---|---|---|
| 계 | 109,216 | 2,309 |
| 금융거래 질서 교란사범 | 24,977 | 716 |
| 취 업 사 기 사 범 | 865 | 43 |
| 기업형 조직폭력사범 | 62,479 | 1,388 |
| 유통질서 교란사범 | 2,354 | 11 |
| 사 행 성 도 박 사 범 | 2,601 | 112 |
| 교육 관련 불법행위 사범 | 546 | 0 |
| 국민건강 위해사범 | 11,105 | 36 |
| 부동산거래 교란사범 | 4,289 | 3 |

### 3) 가상통화 관련 민생침해사범 엄정 대처

최근 가상통화 거래가 과열·투기 양상을 보이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2017. 12월 정부는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긴급 대책을 수립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은 2017. 12월 일선 청에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가상통화 채굴을 빙자한 투자 사기,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위반,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불법거래 등 범죄에 대해 엄정 단속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2018. 3월 가상통화 열풍에 편승하여 유통가능성이 없는 가상통화를 매개로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편취한 6개 조직을 적발, 총 95명 입건, 10명을 구속하고, 2018. 6월 실체가 없는 가상통화 유통회사를 세워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유인, 2만여 명으로부터 109억 원 상당을 편취한 다단계 사기업체를 수사하여 31명 입건, 4명을 구속하였고, 향후에도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 4) 불법사행성 게임장 관련 범죄 집중 단속

검찰은 불법 사행행위사범은 지하경제, 서민생활침해범죄의 대표적 영역으로 간주 민생침해

수사본부와 강력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특히 불법 사행산업의 수익금은 상상을 초월하며 형사처벌만으로는 근원적 차단이 어렵다고 판단,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로 범죄동기 차단에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도박장소개설 범죄로만 수사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 국세청과 협업하여 경제적 이익을 박탈할 수 있는 조세포탈 범죄로도 수사를 전개하여 과세처분 및 환수절차를 통한 세금징수, 세금 미납시 경제적 활동의 제약, 조세포탈로 인한 고액 벌금 미납시 장기간 환형유치 등을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 근절뿐만 아니라 범죄수익 환수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더불어 기업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활동죄를 적극 의율하고, 불법 도박장 운영 및 상습·고액 참여자 집중 단속, 범죄수익 철저 환수로 도박에 관대한 사회분위기를 쇄신하는 한편, 청소년 등 도박금액이 크지 않고 형법상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도박중독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처분 제도를 도입·실시함으로써 선량한 국민의 전과자 양산방지 및 재범방지에도 노력하였다.

또한 도박 사이트 운영자 뿐만 아니라 공급원인 도박사이트 프로그램 개발자, 서버 임대자 등 관련자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불법 사행행위 근절에 노력하였다. 사행행위사범 단속 현황은 〈표 2-32〉와 같다.

**| 표 2-32 |** 사행행위사범 단속 현황

(단위 : 명)

| 죄명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도박 등 | 67,662 | 39,774 | 43,212 | 33,153 | 29,031 | 27,462 | 26,239 | 28,119 | 20,582 | 17,441 |
| 게임산업법 | 29,688 | 20,278 | 17,614 | 12,811 | 11,003 | 9,682 | 11,771 | 12,403 | 10,233 | 7,837 |
| 국민체육진흥법 | 62 | 30 | 369 | 815 | 1,391 | 4,032 | 4,742 | 15,467 | 8,342 | 4,757 |
| 사행행위규제법 | 10,113 | 6,714 | 5,214 | 3,738 | 2,559 | 2,082 | 1,815 | 1,321 | 757 | 493 |
| 한국마사회법 | 2,802 | 1,359 | 1,555 | 1,057 | 859 | 1,122 | 1,049 | 1,266 | 906 | 1,127 |
| 합계 | 110,327 | 68,155 | 67,964 | 51,574 | 44,843 | 44,380 | 45,616 | 58,576 | 40,820 | 31,655 |

### 5)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단속

최근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등 지식재산권 관계 법령 정비 및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고질적인 상표 도용, 서적·음반 컴퓨터프로그램 무단복제 등 지식재산권 침해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는 미국 등 주요 무역 상대국과 통상 마찰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기업의 신기술 개발·창작 의욕을 저해하여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유통 거래 질서에 혼란을 초래하는 등 그 폐해가 적지

않아 적극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미국, EU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정에서 국내 지식재산권보호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우리 국익 보호와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하고,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치하고서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 기반 구축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전국 28개 검찰청에 설치된 「지식재산권침해사범 전담수사반」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왔다.

나아가,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신속한 권리구제 및 분쟁해결 요청에 부응하고 검찰 수사역량을 전문화·집중화하는 차원에서 '15. 11월 대전지검을 「특허범죄 중점검찰청」, '17. 12월 수원지검을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으로 지정·운영하고, '18. 2월 대전지검에 「특허범죄조사부」를 신설하였으며, 전문검사, 전문수사관, 특허수사자문관 등 인적·물적 전문자원을 중점검찰청에 집중배치하여 전문수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특허수사자문관 제도를 도입하면서 특허범죄 사건에 대해 특허심판·소송 종결 시까지 시한부 기소중지가 가능하도록 한 기존 지침을 폐지하여 수사의 신속성을 제고하였고, '17. 10월 「특허기술변론절차」를 도입하여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특허·기술범죄 수사의 전문성·신속성을 강화하였으며, 전문수사체계 정비를 위해 '18년 하반기에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특허범죄 사건을 중점검찰청에서 이송받아 집중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그에 따른 사건처리기간 장기화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도입·시행하고, 수사검사의 중요 기술유출 범죄사건 직접 공소유지 제도를 시행하였다.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기술유출 범죄군의 양형기준 상향 의견'을 제시하고('18. 6월), 기술유출 범죄를 통한 범죄수익 몰수·추징을 위해 범죄수익은닉법상 중대범죄에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였고('18. 9월), 특허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영업비밀 침해사범에 대해 법정형을 상향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18. 12월), 현행법상 상표법·저작권법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첨단·지능화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정보교류 및 공조수사체계를 구축하여, '17. 3월 중점검찰청인 대전지검과 특허청 간 MOU 체결을 통해 지식재산권 분쟁해결 전문인력 지원 등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였고, MOU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에 특허청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전국 청의 검사·수사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식재산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여 중기부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논의하였고,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와도 긴밀한 실무협의를 통해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범죄첩보 이첩을 확대하는 등 협업을 강화하였다.

온라인상의 디지털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처벌강화 방안을 논의하였고, '18년에는 특사경 지휘를 통해 불법적

웹툰 사이트를 대대적으로 단속하여 사이트 운영자들을 검거하는 한편, 인터넷 저작권침해 사례를 수집하여 합의금 목적으로 다수인을 고소하는 저작권침해 남고소를 방지하기 위해 '18. 2월 「인터넷 저작권 침해사범 남고소에 따른 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각하 처분할 수 있도록 사건처리기준을 정립하는 등, 문화콘텐츠 산업의 건전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현황은 〈표 2-33〉과 같다.

**| 표 2-33 |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단속실적**

(단위 : 명)

| 죄명 / 연도 | 상표법,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저작권법위반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 게임산업진흥법위반, 영화및비디오진흥법위반, 음악산업진흥법위반 | 디자인보호법위반, 특허법위반, 실용신안법위반 | 계 |
|---|---|---|---|---|---|---|
| 2010 | 8,192<br>(192) | 29,644<br>(12) | 123<br>(0) | 41,655<br>(1,242) | 2,240<br>(0) | 81,854<br>(1,446) |
| 2011 | 6,293<br>(188) | 37,082<br>(8) | 38<br>(0) | 38,106<br>(1,137) | 1,447<br>(1) | 82,966<br>(1,334) |
| 2012 | 6,003<br>(106) | 46,707<br>(1) | 15<br>(0) | 29,550<br>(845) | 1,726<br>(1) | 84,001<br>(953) |
| 2013 | 6,316<br>(106) | 37,182<br>(4) | 3<br>(0) | 25,068<br>(641) | 1,827<br>(0) | 70,396<br>(751) |
| 2014 | 6,611<br>(110) | 41,900<br>(9) | 9<br>(0) | 21,935<br>(518) | 1,624<br>(0) | 72,079<br>(637) |
| 2015 | 7,398<br>(144) | 52,196<br>(4) | 2<br>(0) | 23,262<br>(586) | 1,390<br>(1) | 84,248<br>(735) |
| 2016 | 8,012<br>(104) | 33,808<br>(2) | 1<br>(0) | 24,598<br>(491) | 1,481<br>(0) | 67,900<br>(597) |
| 2017 | 6,293<br>(73) | 24,533<br>(4) | 1<br>(0) | 21,817<br>(322) | 1,513<br>(0) | 54,157<br>(399) |
| 2018 | 5,861<br>(47) | 18,638<br>(13) | 0<br>(0) | 16,805<br>(259) | 1,354<br>(0) | 42,658<br>(319) |

( )은 구속

## 마. 형집행 지휘·감독

### 1) 벌과금 집행

① 집행실적

2018년 세입예산액은 1조 8,460억 2백만 원이었고, 세입예산액의 70.56%인 1조 3,025억 3천 4백만 원을 집행하였다. 2018년 말 현재 전국의 벌과금집행 미제액은 총 27조 2,885억 3천 8백만 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전년 보다 1.17% 증가되었다.

2018년말 현재 벌과금집행 및 집행 미제현황은 〈제5장 통계 : 표 5-48〉과 같다.

② 벌과금집행 우수기관 등 포상

2018. 12. 31. 벌과금 집행실적이 우수한 청을 선정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등 6개 청을 집행유공기관으로 표창하였고, 집행유공공무원 18명에 대하여 법무부장관표창을 수여하였다.

집행유공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검찰청은 다음 〈표 2-34〉와 같다.

**| 표 2-34 |** 2018년도 벌과금 집행 유공 표창기관 현황

| 순위 | 1그룹 | 2그룹 | 3그룹 | 4그룹 | 5그룹 | 6그룹 |
|---|---|---|---|---|---|---|
| 1위 | 의정부지검 | 서울서부지검 | 전주지검 | 원주지청 | 밀양지청 | 영동지청 |

※ 실적산출 방법 : 현년도 집행률(40%) + 과년도 집행률(30%) + 목표집행률 달성도(10%) + 세입예산액 달성도(10%) + 강제집행실적(10%)

### 2) 사형 확정자 관리

2017년 말 현재 미집행 사형수는 총 57명(군형법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미집행자 제외)이며, 1997. 12. 30. 23명을 집행한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 3) 형 또는 구속집행정지자, 보석자 관리

형집행정지자 또는 구속집행정지자 및 보석자 관리에 대해 분기별로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다.

2018년 한 해 동안 형집행정지자 373명 중 82명에 대하여 잔형집행 등을 하였고, 구속집행정지자 712명 중 651명에 대하여 구속집행 등을 하였으며, 보석으로 석방된 2,038명 중 175명에 대하여 보석취소를 청구하여 구속집행 하였다.

# 4. 국민의 권익 보호

형사기획과 검사 한지혁

## 가. 개요

법무부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위하여 인권보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 제·개정 및 사회적 약자의 권익 향상,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등을 정책과제로 삼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법무부는 2003년부터 시행된 「인권보호수사준칙」이 국민의 변화된 인권의식에 미흡하다는 판단 하에 약 2년여 동안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2006. 6월 동 준칙을 전면 개정하여 2006. 7. 1.부터 시행 중에 있다. 또한 위 준칙에 따른 일선 검찰의 인권보호 실태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2007. 8월 검찰인권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07년부터 전국 검찰청에 대한 인권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청을 포상하고 있다.

## 나. 인권존중의 수사시스템 정착

법무부는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03. 1월 법무부 훈령으로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제정·시행하여 왔으나, 준칙의 내용에 구체성이 부족하여 실제 수사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준칙 시행 이후 제·개정된 법령이나 각종 제도개선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작업에 착수, 다양한 내·외부 의견수렴 절차 및 법무부 정책위원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006. 6. 26. 동 준칙을 전면 개정하였다.

동 준칙은 개정 전과 달리 준칙이 단순히 선언적인 규정에 그치지 않고 규범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검 지침 등을 참조하여 가급적 구체화하였으며, 그 내용에 따라 장·절을 세분화하였다. 그 결과, 개정 전에는 총 3장 35개 조문에 불과하였으나 개정 후 3장 8절 73개 조문으로 전면 개편되었다. 또한 일반 국민이 준칙의 인권보호적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제 및 조문내용을 수요자 관점으로 재구성하였다.

또한, 2018. 2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 권고에 따라, 2018. 4. 16. 출석요구 시 죄명 및 피의사실 사전고지, 조서 미작성시에도 변호인 참여 배제 불가, 피의자에게 메모 허용, 심야조사 시 심야조사 허가내역을 대검찰청 인권보호관에게 분기별 보고를 하게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여 발령·시행하였다. 이에 법무부장관은 2018. 7. 23.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이 공표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인권보호수사준칙」 및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철저준수 등을 지시하였다.

참고로 2018년 중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31,721명 중 18.5%에 해당하는 5,871명을 기각하였다.

또한 사법경찰관리에 의한 인권침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 구속 장소가 없는 수사관서를 포함하여 2018년에 모두 2,816회에 걸쳐 구속장소 감찰을 실시하였다.

## 다. 형사보상의 신속·적정 도모

구속 후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거나,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형사보상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동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신속한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구속 피의자·피고인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였다.

2018년 피고인 보상은 2,923건에 324억 1,308만원, 무죄비용 보상은 2,139건에 42억 9,130만 원이 지급되었고, 피의자 보상은 11건에 3,202만원이 지급된 바, 피고인 보상금 및 무죄비용 보상금 지급현황은 〈표 2-35〉와 같고, 피의자 보상금의 지급현황은 〈표 2-36〉과 같다.

**| 표 2-35 |** 2018년 피고인 보상금 및 무죄비용 보상금 지급현황

(단위 : 천 원)

| 구분 | 피고인 보상 | | | 무죄비용 보상 | 합계 |
|---|---|---|---|---|---|
| | 소계 | 구속사건 무죄 | 재심사건 무죄 (양벌규정 및 과거사 등) | | |
| 건수 | 2,923 | 432 | 2,491 | 2,139 | 5,062 |
| 금액 | 32,413,085 | 9,544,985 | 22,868,100 | 4,291,302 | 36,704,387 |

※ 피고인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 구금에 대한 보상

※ 무죄비용 보상(형사소송법 제194조의 2) : 재판에 소요되는 비용(변호사비용, 여비, 일당 등) 보상

**| 표 2-36 |** 2018년 피의자 보상금 지급현황

(단위 : 천 원)

| 구분 | 접 수 (신수+구수) | 처 리 | | | 처리중 (미결정) | 지급 |
|---|---|---|---|---|---|---|
| | | 인 용 | 기 각 | 계 | | |
| 건수 | 12 | 11 | 1 | 12 | 0 | 11 |
| 금액 | 32,268 | 32,028 | 240 | 32,268 | 0 | 32,028 |

※ 피의자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 : 구금에 대한 보상

# 5. 미래형 선진수사시스템 구축

형사기획과 검사 한지혁

## 가. 기본방향

고도의 산업화와 정보화로 특징지어지는 현 시대에서, 우리 사회는 과거와 달리 사이버범죄 등 다양한 신종 범죄가 급증하고, 범죄의 성격도 지능화·흉포화·조직화·광역화되어가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복잡하고 다양한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수사과정에서의 투명성·공정성 확보와 인권보장을 위해 조직·인원 정비, 시설 확충, 첨단 과학수사장비 도입 등 다각적으로 과학수사 운영체제를 확충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를 첨단화하는 등 검찰 수사업무의 과학화와 정보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 나. 과학수사 운영체제의 확충

검찰수사의 과학화는 1978. 3월 중앙수사부에서 거짓말탐지기 2대를 도입한 이래로 1984. 7월 중앙수사부 과학수사운영과 설치, 1991. 8월 과학수사지도과 설치, 1998. 2월 두 과를 통합한 과학수사과를 설치하여 과학수사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2004. 12. 31.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에 의해 기존의 과학수사과는 폐지되고, 2005. 4월 과학수사기획관 및 과학수사제1담당관, 과학수사제2담당관이 신설되어 과학수사 담당부서가 확대 개편된 후 2007. 3. 8. 과학수사제1담당관을 과학수사담당관으로, 과학수사제2담당관을 디지털수사담당관으로 변경하였고, 2010. 7. 26.「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10. 8. 4.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 디엔에이수사담당관이 추가 신설됨으로써 과학수사기획관 산하에 과학수사담당관, 디지털수사담당관, 디엔에이수사담당관 등 3담당관 체계로 전환되었다.

이후 2015. 2. 11. 종전 3담당관 체계로 운영되던 과학수사기획관 체제를 검사장 중심의 '과학수사부'로 승격시키면서 문서감정 등 범죄수사 관련 감정·감식을 담당하는 과학수사1과, DNA·법생물·법화학 감식 등을 담당하는 과학수사2과, 전자적 증거의 수집·분석을 담당하는 디지털수사과, 사이버범죄 수사지원을 담당하는 사이버수사과와 이를 총괄·관리하는 과학수사기획관 등 1기획관, 4과로 조직 체계를 확대·개편하였다.

특히, 과학수사기획관실이 각 과의 행정업무를 통합 관리·운영하는 구조로 개편됨으로써

일선 청에 대한 과학수사 지원이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2018. 2월 과학수사1과를 법과학분석과로, 과학수사2과를 디엔에이·화학분석과로 과명칭을 개정하여 담당업무가 명칭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1. 4월 부산고검에 마약감식팀을 신설하여 영남지방의 마약범죄 수사에 대한 현장 지원을 강화하였고, 디지털 포렌식 수사 지원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및 원거리 압수수색 지원에 따른 수사지원의 적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과 부산고검, 대구고검, 광주고검, 대전고검, 인천지검에 이어 2012년도에 수원지검, 2014년도에는 서울고검, 서울남부지검, 창원지검, 2017년도에 서울북부지검, 춘천지검에 디지털포렌식팀을 신설하였다.

또한 법 화학·마약·DNA·문서감정 분야는 2007. 10월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증을 받은 이래로 2011. 10월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을 갱신, 2013. 10월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 사후평가를 통과하였고, 2015. 10월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을 갱신, 2017. 11월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 사후평가를 통과하는 등 감정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 더욱 노력하고 있다.

2014. 2월경에는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및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은 성인 중심으로 성폭력 사건 진술분석 업무를 개선, 수사에 지원함으로써 해당 사건의 해결은 물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한 2014. 5월경에는 현대 범죄 수사에 있어서 CCTV 등 멀티미디어 증거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삭제 또는 손상된 멀티미디어 파일을 복구하여 제대로 재생될 수 있도록 하는 멀티미디어 복원 업무를 새롭게 도입하였고, 포렌식 오디오 신호 처리 장비, 음성 자동식별 시스템, 영상아카이빙 시스템 등 감정 장비와 수사지원장비 총 1,052점을 새롭게 도입, 배정하는 등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14. 12월부터는 급증하는 묻지마 살인, 아동학대, 존속살해, 사이비종교집단 살인 등의 강력사건에 대비하여 임상심리평가를 도입, 피의자들의 정신감정, 싸이코패스 판별, 범죄관련 성격특성 및 재비행 위험성을 평가하는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심리생리검사관 양성 교육의 국제 규격화 및 표준화를 통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미국 폴리그래프협회(APA)의 교육기관 인가를 추진, 2015. 9. 7. 대검찰청 심리분석실(Korean Supreme Prosecutor's Office Polygraph Academy)은 아시아 비영어권 최초로 APA 교육기관 인가를 취득하고, 2018. 4. 2. 인가를 갱신함으로써 국제 수준의 심리생리검사관 교육기관으로서 선도적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16. 11월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전화 사기 등 증거 녹음자료에 대한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인 표본 음성 데이터베이스 수집을 완료하였고, 2018. 11월 신원 미상 음성의 성, 연령, 지역을 추정하는 자동 화자 프로파일링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하였다.

그리고 차세대 표준 영상 코덱인 H.265 코덱의 보급이 증가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8. 11월 자체연구를 통해 H.265 영상 복원 기법을 개발하였다.

2018년도 감정처리실적은 법화학감정 28,408점(전년 대비 0.4% 증가), DNA감식 36,858점(전년 대비 3.6% 감소), 심리분석 4,417명(전국), 문서감정 7,910점, 음성분석 3,472점,

영상분석 4,160점, 멀티미디어 복원 1,652점으로 2017년 대비 0.1%가 감소하였다.

게다가 2016. 1월경부터는 성충동 억제약물 투여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약물치료 확인검사(호르몬 및 상쇄약물 검사)를, 2016. 5월경부터는 심리생리검사(PCSOT;Post Conviction Sex Offender Testing)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분야는 2010. 1월 디스크분석도구인 CFT 1.0을 개발하여 지속적인 고도화를 통해 현재 네트워크 공유 폴더 수집 기능, 윈도우 10메일 분석 기능, Virtual Box 가상 디스크 분석 기능 등을 반영하여 국세청·관세청·해양경찰청 등 17개 법집행기관에 배포된 CFT 3.7.1.을 운용중이고, 2012. 11월 이메일 전용 압수도구인 라이브 e-mail 압수도구를, 2015. 2월 손상파일 복구도구를 개발하였으며, 2015. 12월 급증하는 모바일 분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검에서 자체 개발한 모바일 포렌식 도구인 MFA를 전국청에 보급하였다. 또한 포렌식어카운팅 기반의 중·소기업 대상 회계데이터 수집·분석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2018. 5월에는 중견기업 회계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압수하고 118개의 부정적발 시나리오를 통해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는 FAAT 도구를 최종 검증하여 배포 하였고, 세계 최초로 개발 적용한 데이터베이스 삭제 레코드 복구 도구인 MSR, MYR을 지속적으로 안정화 하여 활발히 활용 중에 있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디지털 증거분석 시스템 개발·적용으로 2018년도에는 2,341건의 현장 압수수색과 8,883건의 증거분석을 지원하였다.

또한 2010. 7. 26.부터 시행된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인, 강도, 성폭력범 등 강력사범에 대한 DNA감식시료 채취·감식과 DNA-DB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강력미제사건 해결 및 범죄예방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2016. 5월 무학산 여성 등산객 살인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장갑 등에서 DNA형을 검출하고 DNA-DB검색을 통하여 피의자를 특정함으로써 6개월 이상 일선 경찰에서 밝히지 못하였던 진범을 밝히는 성과를 이루었고, 2018. 5월 국과수 감정결과 DNA 및 혈흔이 불검출된 범행도구 바벨봉에서, 대검찰청의 재감정을 통해 피의자 혈흔 및 DNA형을 검출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강도살인사건 피의자를 구속기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18. 10월 2003 ~ 2006년 사이에 광주 및 대전 일대에서 총 10회에 걸쳐 발생한 연쇄특수강도강간 피의자와 2001년 4세, 10세의 여아를 연속적으로 성폭행한 미제사건 피의자를 DNA데이터베이스 검색으로 특정하고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DNA·화학분석과에서는 검찰의 식·의약품 수사 및 다양한 수사영역의 지원을 위해 2015년부터 법생물 감정실 및 화학감정 파트를 신설하여 '가짜 백수오 사건' 과 같은 가공식품, 한약재, 식물성 마약 원료의 진위여부 판단 및 강력사건 현장의 비인체 유래물에 대한 종판별을 통해 인간 DNA 외에 다양한 대상들에 대한 증거분석으로 관련 범죄 수사를 적극 지원하였으며,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중국산 발암성 항생제 닭꼬치 사건', 불법 발기부전치료제, 체중감소제 등 건강기능식품에 불법적으로 첨가될 수 있는 식품관련 화학물질에 대한 감정 지원 및 환경사건과 관련하여 폭발성 휘발물질, 산·염기성 물질에 의한 토양·수질오염, 기름유출 사건과 가습기살균제 사건, 미술품 위작 사건, 성충동 억제약물 투여 대상자에 대한 확인검사(호르몬 및 상쇄약물

검사)를 실시하였고, 2018. 5월 허위 신기술 낙뢰보호기를 조달청 등에 납품하여 28억원 상당을 편취한 고발사건에 대한 화학감정을 지원함으로써 혐의 없음으로 처분된 사건을 해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한편, 2011. 10월 일선 검사 및 수사관의 과학수사 활용 증대와 과학수사 활성화를 통한 SMART 수사 구현을 위하여, 전국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과학수사책임관(부장검사급), 부책임관(검사), 책임수사관을 지정하여 과학수사 관련 교육과 자문을 담당하게 하는 '과학수사책임관' 제도를 시행하였고, 2015년부터 분기별(연4회)로 과학수사기법을 활용한 우수 수사사례를 발표하고, 대검·일선 청 소통을 통한 현장중심의 과학수사 지원을 위한 전국 청 과학수사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 다. 영상녹화시스템 구축

영상녹화제는 수사과정의 투명성과 인권보장을 위해 기존의 조서작성과 달리 수사과정을 영상녹화하여 CD로 제작하는 방식으로 1부는 원본으로 검찰청에 보관하고, 1부는 부본으로 재판 등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3. 6월 구성된 수사과학연구회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법무연수원의 건의를 받아들여 추진하게 된 것이며, 2004. 3월 수사과학화추진단의 녹음·녹화팀 구성으로 본격화되었다. 2004. 3 ~ 4월 영상녹화장비를 선정하고, 서울중앙지검 등 고검 소재지 5개청, 수도권 3개청(서울서부, 인천, 수원지검), 기타 2개청(청주, 울산지검)을 시범 실시청으로 지정하였다. 같은 해 5월 시범 실시청 담당 검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시범운영지침을 시달하여 2005. 6. 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시범실시 하였다. 같은 해 12월 시범실시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여 시범실시 성과 및 문제점 등을 토론·분석하여 영상녹화제를 확대 실시하기로 하였다.

2008. 1. 1.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비하여 기존 '영상녹화 업무처리지침'(대검 예규 제401호, 2006. 6. 20.)을 제정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대검 예규 제425호, 2007. 12. 11. 대검 예규 제519호, 2009. 11. 3. 대검 예규 제625호, 2012. 11. 3. 대검 예규 제651호, 2013. 6. 27. 대검 예규 제682호, 2013. 12. 11. 대검 예규 제711호, 2014. 3. 31. 대검 예규 제759호, 2014. 12. 29. 대검 예규 제798호 2015. 7. 25.)하여 전국 청에 시행하였으며, 일선 청 검사 및 수사관들의 영상녹화조사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7. 12월에 영상녹화조사업무 실무매뉴얼을 제작·배부하고, 2014년에는 영상녹화 활성화를 위한 T/F를 구성하여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피조사자의 인권을 고려한 영상녹화 조사기법 등을 연구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2014. 12월경 「영상녹화 실무 매뉴얼」을 전국청에 배포하였다.

또한 수사과정에서의 속기·녹취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속기사 운영준칙」(대검 예규 639호, 2013. 3. 11.제정, 대검 예규 제791호, 2015. 7. 16. 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위와 같이 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효율적인 영상녹화조사를 위해 모든 영상녹화조사실은 조사과정을 녹음·녹화한 후 즉시 CD로 제작하고, 조사실 밖에서는 조사 장면을 동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성·아동조사실은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조사를 받고 휴게실에서는 부모 등이 모니터로 편면경을 통해 조사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검사신문실은 법정에 준하는 외관을 갖추고 고소사건의 경우 민사사건처럼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변호인 참여하에 조사받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영상녹화조사실은 2004. 12월 서울중앙지검, 남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등 4개청을 시범실시청으로 지정하여 12실을 설치·운영한 이후 2018. 12. 31.까지 전국 64개청에 총 841실을 운용하고 있다. 조사실 설치현황은 다음 〈표 2-37〉과 같다.

**| 표 2-37 |** 조사실 설치현황 (2004 ~ 2018년)

| 종류 / 연도 | 계 | 검사 신문실 | 여성·아동 조사실 | 일반 조사실 | 일체형 | 분리형 |
|---|---|---|---|---|---|---|
| 2004 | 12 | 1 | 4 | 7 | - | - |
| 2005 | 42 | 4 | 9 | 29 | - | - |
| 2006 | 70 | 1 | 6 | 63 | - | - |
| 2007 | 242 | 9 | 7 | 226 | - | - |
| 2008 | 212 | 4 | 5 | 135 | 51 | 17 |
| 2009 | 77 | 2 | 2 | 35 | 26 | 12 |
| 2010 | 94 | - | 23 | 41 | - | 30 |
| 2011 | 38 | - | 1 | 24 | - | 13 |
| 2012 | 15 | - | 2 | 13 | - | - |
| 2013 | 10 | - | 2 | 8 | - | - |
| 2014 | 15 | - | 1 | 14 | - | - |
| 2015 | 0 | - | - | - | - | - |
| 2016 | 8 | - | - | 8 | - | - |
| 2017 | 73 | | 3 | 70 | - | - |
| 2018 | 3 | | | 3 | | |
| 계 | 911 | 21 | 65 | 676 | 77 | 72 |

※ 전국 수사검사(913명, 2018. 12. 31. 현재) 대비 92% 설치

※ 설치 누계는 911실이나 신청사 이전 등의 사유로 현재 총 841실 활용

## 라.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DNA감식 연구사업의 수행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집단의 시료를 사전에 채취하여 DNA형을 분석·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사건발생시 현장검증물과 비교·검색하여 범인을 조기에 검거할 수 있는 제도이다. 검찰은 2010. 1. 25. 공포되고 2010. 7. 26.부터 시행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인, 성폭력 등 11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자들의 DNA신원확인정보를 관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채취대상자로부터 시료를 채취하여 DNA인적관리시스템에 2018. 12. 31.기준 166,656명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였고, 그 중 156,402명에 대한 DNA분석결과를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였으며, DNA검색을 통해 살인, 성폭력, 강도 등 총 2,177건의 미제사건 용의자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수사 재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향후 강력사범에 대한 DNA데이터베이스 자료가 훨씬 더 축적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검거를 통해 범죄예방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관리하는 미제사건의 현장 증거물 DNA와의 원활한 상호검색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2018. 6월 경찰, 국과수, 국방부와 함께 DNA DB 연례운영보고서를 발간하여 법무부 등 유관기관 및 검·경등 실무부서에 배포하고,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업무 참고 및 국민들이 DNA-DB운영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DNA감식과 범죄자 DNA-DB에 사용되는 고가의 외국 상용분석키트를 대체하는 국산화 기술을 연구하고 외국에서 활발히 연구 중인 차세대 분석 기술을 국내에 조기 정착시켜 국내 DNA감식기술의 역량을 제고하고 선진화를 확립하기 위한 'DNA감식의 국산화 및 선진화 연구사업'이 3년 계획으로 2012년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대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용역의 형태이며 총 15개의 세부과제로 이루어져 서울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국내의 학계·연구 전문가 그룹이 수행하였다. 그 결과 국유 특허 12건, 저작권 2권을 등록하고, 이 중 3건을 관련 업계에 기술 이전하였다. 그리고 연구논문은 42편, 학술발표는 94건이 수행되어 관련 분야에 참고·활용되고 있다.

또한 2012. 11월, 2014. 2월, 2015. 3월, 2016. 7월, 서울대, 연세대 및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법과학 DNA 국제심포지움(ISFDL : International Symposium on Forensic DNA in Law)을 공동으로 개최하여 200여 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DNA-DB 및 선진 DNA감식 기술 등에 관하여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특히 2016. 7월 연세대와 공동으로 개최한 심포지움에는 2017. 8월 ISFG 서울총회 개최를 앞두고 ISFG 부회장 메키 프린츠 박사 등이 참석하였으며, 2017. 8. 28.~9. 2.까지 아시아 최초로 개최된 국제법유전총회(ISFG : International Society of Forensic Genetics)를 통해 법과학 관련 감정관 및 연구자 771명이 참석하는

큰 성과를 거두어 '수사의 과학화'를 지향하는 검찰 DNA감식 분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감식 기술 세계화의 기틀을 확고히 하였다.

2018. 4월에 개최된 제5회 법과학 DNA 국제심포지엄에는 DNA 감정관 및 경찰 과학수사직원 등 1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이태원 살인사건의 현장분석에도 참여한 범죄 전문가 David J Zeliff(미국)가 증거물 보관의 연속성을 주제로 하여 증거물채취 주의사항, 증거를 기반으로 한 사건현장의 재구성 등에 대한 특강을 하였다.

## 마.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

국민의 인권의식 향상에 따라 수사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중요성이 확대되고 피의자의 인권보장, 사건처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 증거취득 후 진술조사」로 검찰수사력의 전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2005. 4월 대검찰청에 과학수사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과학수사제2담당관실을 신설하였다.

2005. 5월 과학수사제2담당관실에서는 검찰의 과학수사 역량 제고를 위하여 디지털포렌식 전문 인력 증원, 디지털증거 수집·분석용 장비 및 시설 확충, 디지털증거 수집·분석센터 신축 등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증거 수집·분석 분야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2006. 3월 설계 발주를 거쳐 2006. 12월 공사를 착수하여, 2008. 10. 31. 대검찰청 부지에 지상6층 지하1층 (건물연면적 7,844.88제곱미터, 공사비 143억 8,200만원) 규모의 디지털포렌식센터가 준공되었다. 그 뒤 마약감정실을 제외한 과학수사기획관실 산하의 모든 감정·감식·분석실이 디지털포렌식센터로 집중되어 법화학 감정·문서감정, 심리·영상·음성분석 뿐만 아니라 화재수사·DNA 감식 등 명실공히 검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과학수사를 선도하는 과학수사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 후 2012. 11월 단순히 수사지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감정기법 연구기관으로서 기능을 확대하고 선도적 과학수사기관으로 발돋움하고자 명칭을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로 변경하였고, 2013. 8월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내 「디지털포렌식연구소」를 개소하여 디지털 포렌식 도구 및 수사기법에 대한 연구 등 개발에 집중하고 안티포렌식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는 전방위적인 감정·감식·분석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하나의 과학수사기관으로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는 결국, 변화하는 범죄에 대응하여 수사 증거물에 대한 신속·정확한 분석으로 일선 수사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보장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 바. 과학수사 업무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 1) 과학수사장비 관리 프로그램 개발

대검과 일선청에 분산 관리중인 과학수사장비의 체계적 관리 필요와 수사장비 관리업무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2006. 7월 프로그램 개발업체와 수사장비관리시스템 개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2006. 8월 수사장비 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였고, 2006. 9. 1. 시범운영을 시작하면서 각급 검찰청의 수사장비관리대장을 토대로 전국청 수사장비 데이터를 입력하였다. 또한 전국청 수사장비담당자를 대상으로 수사장비관리시스템 사용자교육을 실시하고, 대출·회수 등 업무처리 메뉴얼을 제작·배포 하였다.

이 시스템은 전국청의 수사장비 관련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한 것으로 권한이 허용된 대검 또는 일선청 장비관리 담당자가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실시간으로 장비보유현황을 조회할 수 있으며, 기존 수기 기재 장부를 통해 관리하던 수사장비 대출·회수업무를 바코드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처리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정확성을 높였으며, 대검의 메인관리자가 수사장비 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아울러, 수사장비관리시스템을 과학수사기획관실 홈페이지에 연동시켰으며, 기존 과학수사기획관실 홈페이지에 장비지원 게시판을 신설하여 일선청 장비지원 요청 및 문의에 즉각 응대할 수 있도록 하여 과학수사 활성화 및 수사장비 효율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0. 6월 수사장비관리시스템의 노후와 사용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수사장비 활용 커뮤니티 제공, 통계 및 조회, 관리 기능 강화 등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키고자 수사장비관리시스템의 고도화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010. 10월 성능 및 기능이 더욱 개선된 수사장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다.

### 2) 디지털포렌식 수사지원 시스템 구축

2006. 6월 디지털 압수수색 및 분석 지원요청, 디지털 관련 자료, 각종 공지사항, 통계 활용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수사정보지원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하여 실무에 적용하였다.

그러나, 디지털수사지원업무가 통합 관리되지 않고, 디지털증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비하고, 수사질의어프로그램이 분석관의 PC에서만 구동되어 대용량 파일 등에 대한 검색이 어렵다는 등의 서비스 불만이 초래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디지털포렌식 수사정보지원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을 포함시켜 「전국 디지털수사망 구축사업(D-NET)」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단계별로 시행하여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지역 거점청 디지털포렌식팀을 연계하였다.

이와 함께 대검, 각 거점별 디지털포렌식팀(서울중앙, 부산고검, 대구고검, 광주고검, 대전고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서울고검, 서울남부지검, 창원지검, 서울북부지검, 춘천지검)과 일선 수사팀 간의 효율적인 수사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통합지원업무관리, 연구개발관리, 디지털수사장비관리,

통계관리, 외부전문가 관리, 운용시스템 관리 등을 위한 「디지털 수사 통합 업무 관리시스템(DFIS II)」, 분석결과의 온라인 송부 및 검색, 이메일, 회계데이터, 전자결재 데이터, 계좌내역, 통화내역 등을 입체적으로 통합분석할 수 있는 「통합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IDEAS)」, 대검찰청과 각 지역 거점청의 디지털증거를 체계적으로 보관 및 폐기가 가능한 중앙집중형 「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디지털수사팀 간의 분석·협업을 위한 「디지털수사화상협업시스템」, 디지털포렌식 전문교육이 온라인상에서 가능한 「디지털포렌식 온라인교육시스템」, 위 시스템들의 체계적인 보안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수사망 인프라시스템」 등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2017년 8월 「디지털증거 확보(송치)체계(KD-NET) 구축사업」을 최종 완료하여, 1차 참여기관(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2차 참여기관[(경찰청(대전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3차 참여기관[(경찰청(서울청),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과 디지털증거데이터패키지 국가 표준(KS X 1220)을 활용한 디지털증거의 무결한 송치·수리 등, 처리 이력을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 증거의 확보체계를 구축하였다.

검찰·경찰 간 디지털증거 송치를 위하여 네트워크(초고속 국가망)를 연결하였고 검찰·특사경은 국가행정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디지털증거를 송치할 수 있게 되었다.

지역 디지털포렌식팀은 5개 고검(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및 5개 지검(서울중앙, 인천, 수원, 서울남부, 창원)에 설치하여 운영중이었으나, 폭발적인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분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7.12. 서울북부지검, 춘천지검에 추가 설치하여 현재 12개 지역에 디지털포렌식팀을 설치·운영중이다.

2018년에는 디지털증거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해 '국가형사사법기록관'에 디지털증거 백업 센터를 구축하여 천재지변 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2018년 중국 생산 스마트폰의 증가에 따라 "화웨이, 샤오미 스마트폰 백업 데이터 복호화"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기존 모바일 포렌식 도구에서 지원하지 않는 포렌식 기법 적용으로 급증하는 중국산 스마트폰 모바일 분석역량을 강화하였다.

또한 "시각지능을 이용한 사진 파일 분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수사기법 연구를 통해 수많은 스마트폰 이미지 파일에 대한 선별·분류가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에 적용 예정이다.

또한 급격하게 발전하는 IT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디지털증거분석 체계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대검 자체 개발 모바일분석도구(MFA)의 활성화 및 지속적인 기능 개선, 압수된 대용량 디지털증거에서 범죄 단서를 식별할 수 있는 범죄 프로파일링 기법, 회계부정 적발 시나리오 기반의 대용량 회계데이터 분석 기법 연구 및 시스템 구축을 수행하고 있다.

### 3) 감정정보관리시스템(LIMS)의 운영

법화학, 마약, DNA, 문서 감정분야에 있어서 감정물의 접수에서부터 감정결과에 대한 감정서 작성 및 발송까지의 세부사항을 전산으로 기록 관리하는 감정정보관리 시스템은 감정절차의 연속성 및 무결성(chain of custody)을 담보하는 시스템으로 2010년 개발을 거쳐 2011년부터 본격 사용되고 있다. 2018. 10. 29.에는 수사기관이 대검 과학수사부에 의뢰하는 감정물에 대한 접수를 일반 우편물과는 별도로 NDFC에 신설된 중앙감정물접수실에서 전담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수령하도록 절차를 개편하였으며, 이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는 「감정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을 2018. 11. 1. 개정하여 중앙감정물접수실의 운영 근거마련, 감정물 이동의 소급성을 관리하는 감정의뢰서 양식 개정, 감정물 채취 및 이동중 발생한 훼손된 감정물에 대한 반려 조항을 강화하는 등 감정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 사. 검찰업무 정보화

### 1) 검찰업무 정보화 시스템의 개선

검찰업무 정보화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하여 2000. 2월『검찰 정보화 장기발전계획(ISP)』을 수립하였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2000. 7월부터 단계별로 지식관리시스템(e-Pros), 검사실 수사정보 시스템 등을 구축하였고, 2007. 12월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에 대비하여 공판지원시스템과 영상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고, 2008년 영상물관리시스템 확대 구축과 전화통화녹음시스템 등 신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 검찰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9년 정보보호를 위해 대검 및 서울중앙지검의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망분리 사업을 시작하여, 2016년에는 대전고·지검 등 6개청, 2017년에는 서울고검 등 10개청이 망분리 되었으며, 2018년도에는 대구고검, 대구서부지청, 안동지청, 경주지청, 김천지청, 상주지청, 의성지청, 영덕지청, 원주지청, 인천지검, 춘천지검, 강릉지청, 원주지청 등 총 13개청에 망분리를 적용하였다.

2016년 기존 기계식 팩스의 자료 유실·훼손 방지와 팩스 관련 업무 경감을 위해 대검찰청 등 21개청에 전자팩스시스템을 도입하였고, 2017년 서울중앙지검 등 44개청으로 확대하여 전국 65개 검찰청에 전자팩스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18년에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팩스시스템을 이중화하여 도입사업을 완료하였다.

검찰 지식의 효율적인 축적과 협업 기반 강화를 위해 차세대 검찰 지식포털을 구축(2014년)하고, 검찰 지식 백과사전인 프로스피디아를 구축(2014년)하여 운영 중이며, 보다 효율적인 지식생산 및 활용을 위해 2018. 1월 e-PROS 내 지식저장고와 프로스피디아를 일원화하였다.

한편 전자결재시스템에서는 문서관리 기능을 도입(2010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검찰 메신저 시스템 또한 새롭게 구축(2013년)하여 검찰의 소통문화를 강화하였다. 검찰 메일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사용자 편의를 위해 메일용량을 증설(3GB)하였고, 모바일에서도 접근 가능한 검찰 모바일 메일시스템도 오픈(2016년)하였다.

또한, 2018. 4월『경조사 알림 등 지침』개정에 따라, 퇴직자의 혼례 및 상례를 게시할 수 있는 퇴직자 경조사 게시판을 신설하고, 2018. 6월 검찰 출입통제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개인정보의 침해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관리체계를 재점검하였으며, 2018. 6월 성추행·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고 창구로 작성자가 익명으로 게시글 등록이 가능하며 본인이 작성한 게시글만 볼 수 있는 '#WeTogether' 게시판을 신설하였다.

검찰청 홈페이지는 1996. 3월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으로, 전국 검찰청별 홈페이지 구축(2002년), 민원증명발급 서비스 제공(2005년),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웹접근성 개선(2007년, 2008년) 등 편리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검찰 내·외부 의사소통 채널 및 검찰 홍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찰 인터넷 방송국 홈페이지를 구축(2007년)하였고, 모바일 홈페이지도 구축(2011년)하여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체계를 더욱 강화하였다. 또한,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정보 공개를 위해 사전정보공표 대상 메뉴를 추가(2014년)하였다.

2018. 9월 대검찰청 검찰체험관 주말개방 조치와 관련하여 검찰청 홈페이지의 기능을 개선하여 홈페이지 상에서 평일 및 주말의 시간대별 방문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 2)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 사업 추진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를 활용하여 형사사법업무를 표준화·전자화하고, 형사사법정보를 공동 활용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국민중심의 e-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21세기형 e-형사절차 구현을 목표로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구축을 추진하였다.

본 사업을 통하여 수사 프로세스 348종, 재판 프로세스 260종, 집행 프로세스 380종 및 압수업무 등 기타 프로세스 34종 총 1,022종의 형사사법업무 프로세스를 수작업 기반 업무환경에서 전자적 업무 프로세스로 대체하고, 형사사법 문서 총 1,361종의 서식을 표준화하여 기존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형사사법기관이 사용하는 공통 코드 25종을 표준화하여 수사·재판·집행 등 형사사법업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형사사법정보를 관계기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기관의 약 74개 접점을 대상으로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약 48종의 민원 업무에 대하여 온라인 발급·처리가 가능하도록 구현하여 형사사건처리 진행상황조회 서비스, 재판서·통지서 조회, 벌과금 조회·납부 서비스 등 총 11종의 대국민 형사사법 통합 서비스를 2010. 7월부터 개시하였다.

2008. 12월 형사사법공통시스템사업의 쟁점에 대해 관계기관 간 합의를 도출하고, 법무부 장비 도입을 위한 4차 사업을 발주하였다. 주요 합의사항으로는 각 기관의 시스템은 각 기관이

운영하되, 대국민서비스시스템 등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통시스템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운영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였고,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2009. 2월 기관 간 정보공동활용의 범위와 방식 등에 대해 관계기관 간 합의를 도출하였고, 2009. 12. 29.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및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2건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010. 5. 1.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및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10. 7. 12. 전국 검찰청을 대상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운영 개시하였다. 이에 따라 음주·무면허 약식사건 전자화,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대국민 통합포털 신설 등으로 검찰 사건처리 업무 효율화와 국민 편의성이 대폭 개선되었다.

2011년부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안정성 및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사건조회 및 영장정보 조회 권한 부여에 대한 승인제 도입 등 권한관리 체계를 정비하였고, DB접근제어 도입 및 사건관계자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였다.

변화하는 수사 환경에 발맞추어 팀제 수사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공유 사건부 기능 개선, 직접경정 및 겸방 업무 시 검사실별 시스템 접속 방식 개선,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미제사건부 개선, 재기·이송시 기록목록 및 증거목록이 연계되도록 하고 사용자가 직접 기록목록 등 편집·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 개선, 영장집행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내 전자팩스 기능 향상, 공무원연금공단 연계를 통한 공무원 신분확인 자동화 기능 구현으로 공무원범죄에 대한 형사처분 결과 신속한 통지, KICS에 입력한 출국규제 정보를 출입국사무소와 연계하여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개선,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 및 체포·구속통지서 등 송달건수 다량 건 선정 우정사업본부와 연계하여 우편송달 업무를 전자화 처리, 적용법조 검색기능을 추가하여 보다 향상된 검색 결과를 기반으로 판결문·결정문 검색기능을 개선하여 맞춤형 정보제공 등 업무에 유용한 컨텐츠 제공으로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대국민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야간에도 벌금납부 사실을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신한은행과 납부내역 실시간 연계 시스템 구축,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납부한 벌과금 수납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수기 입력으로 인한 과오납등의 민원 및 사고 발생요소를 차단, 민원인의 민원서류 신청시 수기 작성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구술민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인의 편의성에 기여하였다.

2018년에는 의사결정과정 기록화 기능을 구현하여 사건처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에 기여하였고, 형사사건 및 강력범죄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지휘·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형사사건관리시스템' 및 '강력사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주요사범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대포통장 등 주요정보 통합검색 기능을 구축하여 수사력 향상을 도모하였고, 범죄피해자 권리강화를 위해 피해자지원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직관사건부를 신설하여 체계적인 직관사건 관리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시각장애 민원인의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민원발급서식 음성변환서비스를 구현하였고, 일선 통계, 우편송달 업무처리 개선을 위해 수기통계 4종 및 우편송달 업무 2종(노역자유치집행 및 형집행통지서)을 추가로 전자화하여 담당자의 업무를 경감시킬 수 있었고 업무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 3) 검찰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검찰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날로 지능화하는 DDoS 등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즉시 대응·조치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기초하고,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제291호, 2012. 1. 2.) 제10조의2(보안관제센터의 설치·운영)에 근거하여 2012. 12월 검찰사이버안전센터를 구축·완료하였고, 2013. 1월부터 본격적으로 대검찰청 및 63개 일선청에(현재 65개청) 대한 사이버위협 정보를 24시간 365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하여 체계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검찰업무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검찰정보시스템의 중요 업무자료 유출 예방을 위해 각종 정보보호시스템(백신, 방화벽, IPS, 유해사이트차단, 인터넷 자료저장방지, 스팸메일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킹메일의 유해성 분석·대응 및 네트워크와 전자우편을 통한 APT공격 차단시스템을 통해 악성코드 유입을 사전에 방지하여 사용자 PC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매년 정보보호 교육(알면 편한 보안상식 웹툰 제작·인트라넷 게시) 12회, 가상의 악성메일을 이용한 해킹메일 모의훈련 6회 실시 등으로 사용자 정보보안 의식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다.

2018년에는 '빅데이터 기반의 보안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용량의 로그정보 수집 및 다양한 상관분석으로 각종 사이버위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관리 능력을 강화하였으며, e-PROS게시판에 '보안뉴스레터', '보안권고문'의 정보보안 자료게시판을 오픈하여 사용자들에게 최근 보안이슈를 간편하고, 신속히 전달하여 상시 정보보안의식 고취 방법을 개선하였다.

또한, 랜섬웨어 등 악성행위탐지시스템을 도입하여, PC를 통해 전파될 수 있는 악성코드의 유입경로를 사전에 파악 및 차단하여 업무용 PC에 악성코드 감염을 방지하고 탐지 및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PC 해킹 차단, 악성코드 감염 방지, 보안취약점 진단 및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보안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각종 정보보호 규정 정비 등 노력을 통해 안전한 검찰사이버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아. 사이버범죄 대응역량 강화

사이버공격의 양상은 국가 주요 산업시설을 공격 대상으로 삼을 만큼 대담해지고 국민생활 안전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피싱, 스미싱, 파밍 등 사이버범죄 수법 역시 한층 진화하여, 금전적 이득을 노리는 사이버범죄자들이 급증하고 있고 국제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검찰은 사이버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된 업무와 기능을 추진·관리함으로써 사이버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11. 11. 1. 대검찰청에 사이버범죄수사단을 설치하였다.

사이버범죄수사단은 한수원 대상 사이버테러 사건을 계기로 2015. 2. 11. 과학수사부 출범과 함께 사이버수사과로 정식 직제화 되었고, 공공전산망 해킹, 악성코드 유포 등 주요 사이버범죄에 대한 전문적·조직적 대응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수사 필요분야 증가에 따른 일선청 수사역량 확대를 위하여 서울동부지검을 사이버범죄 수사 중점청으로 지정하여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였다.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대중화로 거의 모든 수사 영역에서 사이버 증거자료 수집·분석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수사과는 일선 검사·수사관에 대한 전문교육, 사이버범죄 수사기법 연구·개발, 일선 사이버 증거자료 수집 및 분석 지원을 통해 검찰 전체의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사이버범죄는 해외 서버를 경유하여 공격하는 수법을 보편적으로 사용하므로, 국가 간 신속한 공조가 수사 성공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사이버수사과는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 세계 80여개국이 가입하여 활동 중인 G7 24/7 Network의 한국 접촉점으로서 국내 수사기관을 대표하여 국제공조 창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G7 24/7 Network를 통해 회원국들은 실시간 정보교환 및 소멸되기 쉬운 사이버 증거보존 요청을 진행함으로써 국경을 넘나드는 사이버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사이버수사과는 급증하는 중국발 사이버범죄에 대한 공조 지연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의 어려움에 따른 장기·영구미제 심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반기별 「한·중 수사협의체 회의」에 참석, 지속적인 사이버현안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한편 중국 공안부 사이버안전보위국을 방문하는 등 지속적인 공조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미 법무부 컴퓨터범죄 및 지적재산권과(CCIPS)와 사이버수사 공조회의를 개최하여 공조활성화 및 사이버범죄협약(일명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관련 논의를 하였고, 주한 미 FBI 사이버수사관과 매월 협력회의 실시 등 사이버범죄정보 교환 및 공조현안 논의를 통해 미국과의 공조협력을 강화하였으며, 대내적으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보안원, 주요 보안업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가적 사이버테러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 및 분석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사이버수사과의 연구·개발로 구축된 악성코드시스템 THEMIS는 악성코드에 대한 추출, 분석, 범죄자 추적 등 일련의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2012년 구축 이후 매년 고도화를 거듭하며 악성코드 제작·배포 사범 단속을 위한 검찰수사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및 스미싱 범죄 등 모바일 환경에서의 사이버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다양한 신종 악성코드를 이용한 사이버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증거 분석을 위하여, 모바일 기반 악성코드 등 신종 악성코드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 환경을 순차적인 고도화 사업을 통하여 구축하였고, 2016년 상반기에는 일선 청에서 악성코드분석시스템에 접속하여 분석결과(관련 IP·도메인 등)를 손쉽게 활용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였다. 2017년에는 기존 악성코드분석 시스템의 데이터와 유관기관에서 제공받은 데이터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이버위협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하였다. 2018년에는 사이버위협자원의 정보 중 국내 위협정보를 선별하고, 정규화 등을 통해 수사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사이버수사과에서는 대검 홈페이지를 모방한 피싱사이트를 사전 탐지하여 채증 및 차단을 자동화한 시스템을 2013. 3월경에 자체 개발하여 2018. 12월까지 총 41,968건을 차단하였다.

위와 같은 노력으로 사이버수사과는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탁월한 전문 역량을 확보하고, 국가와 국민을 사이버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검찰상을 구현하고자 힘쓰고 있다.

## 자. 감정·분석기법 특허출원 및 등록

최근 들어 특허기술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과학수사부는 특허를 통해 과학수사 분야의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고 최신 감정·분석기법개발을 통해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법과학분석과 문서감정 분야는 분광법을 이용한 볼펜 서명 감식 방법(2011. 10월), 분광법을 이용한 인주 및 서명 감식 방법(2012. 5월), 음성분석 분야에서는 신원확인을 위한 발성유도 방법 및 장치(2011. 12월), 오디오 파일의 위변조 검출 장치(2014. 4월), 주파수대역의 분석을 통한 디지털오디오파일의 위변조 검출방법(2015. 10월), 녹음 인증 시스템 및 그것을 이용한 녹음 인증 방법(2016. 1월), 음질특성을 이용한 화자인식장치 및 방법(2017. 11월), 영상분석 분야에서는 렌즈 왜곡 보정에 사용된 보간 패턴 검출을 통한 촬영카메라 식별 방법 및 장치(2013. 1월), 멀티미디어 복원에서는 손상음성파일 복원 장치 및 그 방법(2014. 11월), 녹음 인증 시스템 및 그것을 이용한 녹음 인증 방법(2016. 1월), 타임스탬프를 이용한 이미지 정렬 장치 및 그 방법(2016. 11월), 손상된 멀티미디어 파일의 음성 복원 장치 및 그 방법(2017. 6월), 영상녹화분야에서는 영상 녹화 조사 시스템(2011. 10월)을 특허 등록하였다. 심리분석 분야에서는 심리생리검사 관리시스템(PMS: Polygraph Management System)(2015. 10월)을 저작권 등록하였고, 피검사자의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는 뇌파분석 방법 및 그 장치(2017. 11월)를

특허 등록하였다. 영상녹화분야에서는 화상 디자인이 표시된 컴퓨터 모니터(2010. 2월)와 컴팩트디스크용 라벨지(2010. 3월)를 디자인 등록하였다.

디엔에이·화학분석과 법화학감정 분야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암페타민 및 대마 유도체의 다성분 동시 분석방법(2008. 7월), 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디메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 유도체의 다성분 동시분석방법(2009. 6월), 기체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모발 중 암페타민 유도체 및 케타민 대사체의 다성분 동시분석법(2009. 11월), 기체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소변 중 60종 이상 마약성분의 다성분 동시분석법(2010. 12월), 대마 대사체 분석방법(2011. 4월), 기체크로마토그래프를 이용한 기체상 혼합물로부터 목적물질의 선택적 분취방법(2012. 2월) 메탐페타민의 신규한 제조경로 특정 불순물(2013. 1월), 면역 반응 측정법을 이용한 모발 중 마약 성분 신속 분석법(2014. 3월), 고온 기체상 크로마토그래프 분석법을 이용한 발기유발제의 고감도 신속 검출법(2014. 7월), 화학적 프로파일링에 기초한 메스암페타민의 분류기법(2014. 8월), 탄소수 6이하의 알코올류 다성분 동시분석법(2015. 7월), 혈액 중 성충동 억제약물 및 남성호르몬 다성분 동시분석법(2015. 8월), 하이드록시펜터민, 펜터민 및 메펜터민 동시 신속분석법(2017. 3월)을 특허 등록하였다. DNA-DB운영 및 DNA감정분야에서는 한국인 집단에서 변별력을 가진 에스티알 유전자들로 구성된 콰드루플렉스 피씨알시스템(Quadruplex PCR system) 및 이를 이용한 유전자 감식방법(2000. 10월), 한국인 집단에서 변별력을 가진 16개의 짧은 반복 단위 유전좌위들 및 성염색체 유전좌위를 포함하는 멀티플렉스 유전자 증폭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유전자 감식방법(2011. 1월), 체액식별용 키트 및 이를 이용한 체액 식별방법(2012. 12월), 멀티플렉스 유전자 증폭을 이용한 분석대상의 인간객체의 상염색체 분석방법(2014. 10월), miRNA를 이용한 체액 식별용 조성물·키트 및 체액 식별방법(2014. 10월), DNA메틸화 마커를 이용한 체액식별방법·체액 식별용 조성물 및 키트방법(2014. 11월), NGS기반 인간객체의 상염색체 분석방법(2015. 6월), 마약성 양귀비류의 판별방법(2015. 9월)을 특허등록 하였고,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을 이용한 인간객체의 확장 상염색체 STR분석방법 (2015. 10월), 인간객체 염색체 상의 STR분석방법 및 이를 이용한 분석키트(2015. 10월)를 특허 등록하였으며, STR 유전자와의 분별 선행 증폭을 통한 유전자감식 방법(2015. 7월)을 특허 출원하였다. 또한 법과학적 관점에서 새롭게 시도된 생물종 고유의 DNA바코드 정보를 DB로 구축하고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법생물 디엔에이 바코드 수사자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프로그램(2014. 6월)을 저작권 등록하였다. 2018. 8월에는 저명한 국제학술논문지인 Electrophoresis에 한국인에 대한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를 활용한 STR분석 결과가 게재 되었다.

디지털수사과는 암호분석 분야에서 다수의 암호설정 파일에 대하여 암호를 한번에 해제할 수 있는 '다수의 이기종 암호파일에 대한 자동화된 패스워드 해제시스템 및 방법'(2011. 12월), '착발신 소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 데이터를 이용하는 통화 내역 추출-추적 시스템 및 그 방법'(2013. 3월), '디지털 증거 분석시스템 및 그 방법'(2013. 7월), '디지털 증거 수집방법,

그리고 상기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기록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매체'(2013. 11월), 문서의 암호를 해독하는 'ASIC 칩을 이용한 암호 탐색 장치'(2016. 4월)를 발명하여 특허 등록, 디지털포렌식 분야에서는 '문서 파일의 포렌식 분석 방법 및 시스템'(2014. 3월), 이메일, 전자결재, 회계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손상된 레코드를 복원하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에 대한 범용 복원 기법'(2015. 8월)과 'DB2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복원하는 방법 및 장치'(2015. 12월)를 디지털증거의 무결성 확보를 위한 '디바이스에서 사용자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데이터 획득장치 및 방법'(2015. 10월)을, Mysql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 손상된 레코드를 복원하는 'Mysql MyISAM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에 대한 범용 복원 기법'(2016. 9월), 'Mysql INNODB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에 대한 범용 복원 기법'(2016. 10월), '모바일 기기에서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는 부분 데이터 획득 장치 및 방법'(2017. 10월)을 특허 등록하였다.

## 6. 테러 등 국가안보위해 세력 엄정대처 및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장

공안기획과 검사 홍희영

### 가. 추진배경

2018년 법무·검찰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를 엄단함으로써 헌법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나. 테러 범죄 엄정 대처

세계 주요 도시에서 테러가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불법체류자, 난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IS와 같은 국제 테러단체를 추종하는 내·외국인이 확인되는 등 테러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됨에 따라 '테러대응 도상훈련'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테러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IS 가입을 선동한 외국인을 적발한 후 최초로 테러방지법위반으로 의율, 구속 기소하였다.

### 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수사

한편 북한 보위성과 연계하여 충성자금을 상납하고 재입북을 준비한 탈북민을 적발하여 구속 기소하고, 북한 IT 조직이 개발한 보안프로그램을 자체 개발 상품인 것처럼 국내에 배포하며 군사기밀을 북한에 누설한 IT 사업가 2명을 적발하여 구속 기소하는 등 20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입건하고 그 중 4명을 구속 기소하였다.

### 라. 인권보장 철저

또한 안보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 심야조사 자제, 영상녹화 활용 등으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비진술증거의 확보시에도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였다. 나아가 경찰의 장기 내사 사건을 점검하여 입건 가능성이 낮은 사건들은 적극적으로 종결토록 지휘하는 등 실효성 있는 사건 위주로 안보수사 역량을 집중함과 동시에 내사 장기화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하였다. 이와 함께 유관 안보수사기관인 국정원, 군검찰, 기무사 수사관을 상대로 적법절차 및 증거법 준수 교육을 실시하여 인권친화적 수사방법을 전파하였다.

## 7. 과거사 사건 진실규명 및 침해된 인권 회복 노력

공안기획과 검사 홍희영

### 가. 추진배경

법무·검찰은 2017년부터 과거사 재심사건에 능동적으로 임하고, 인권침해 등 재심사유가 명백한 사건을 발굴하여 직권 재심을 지속적으로 청구하고 있다.

### 나. 지속적 직권재심 청구

2018년에도 긴급조치위반 사건과 5.18 민주화운동 및 부마민주항쟁 사건 관련자 등 161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하여 2017년 이후 총 364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하였다.

### 다. 진술규명 및 인권회복 노력

직권 재심 사건 외에 당사자 청구 재심 사건도 공소유지 중심에서 벗어나, 재심사유가 명백한 사건은 재심개시 의견을 개진하고 신속한 심리를 요청하며, 불법구금 등 적법절차 미준수 사건에 대하여는 무죄를 구형하고, 상소권 역시 적정하게 행사하는 등으로 진실규명과 침해된 인권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 8.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공안기획과 검사 신상우

### 가. 추진배경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치르는 전국단위 선거로 다당제 구도 하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까지 함께 실시되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었고 초기부터 과열 조짐을 보였다.

### 나.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노력

이에 전국 청에 '선거범죄 수사전담반'을 가동하는 등 중점처벌 대상 범죄인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여론조사 조작, 부정경선운동' 적발에 역량을 집중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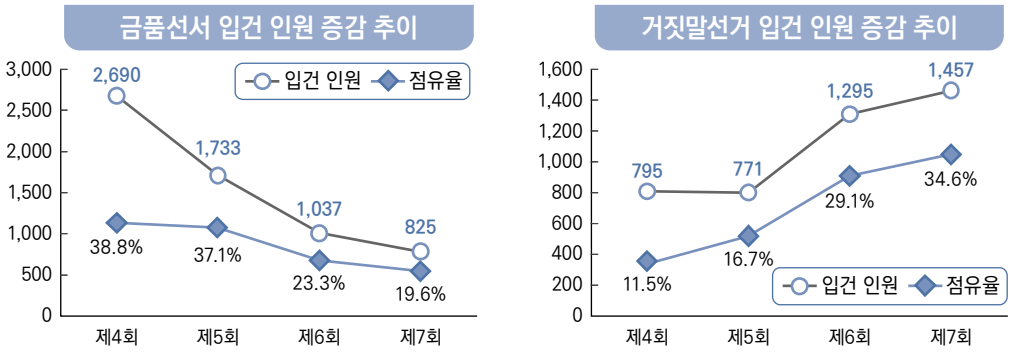
### 다. 수사성과 분석 및 선거범죄 적극 대처

제7회 지방선거는 제6회 지방선거와 비교하였을 때, 전체 입건인원은 5.5% 감소(제6회 4,450명 → 제7회 4,207명)하였고 구속인원도 64.3% 감소(제6회 157명 → 제7회 56명)하였는데, 이와 같은 구속인원 감소는 구속 요건에 대한 신중한 검토로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가 감소하고 구속 사범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금품선거사범 비율이 감소(제6회 23.3% → 제7회 19.6%)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품선거사범은 매회 감소 추세에 있으나 거짓말선거사범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법무·검찰은 유권자들의 민의를 왜곡하는 거짓말선거사범을 엄단하기 위해 전국 검찰청의 검사·수사관 총 124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하여 적극 대처하였다.

| 그림 2-76 | 금품선거 증감 추이




## 9. 노사 간 균형있고 공정한 법집행

공안기획과 검사 김종욱

### 가. 추진배경

법무·검찰은 2018년도에도 노사 간 균형있고 공정한 법집행을 위해 노력하였고 각종 산업재해 사건도 엄정하게 대응하였다.

### 나. 공정하고 엄격한 수사 성과

삼성전자서비스(주)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수사하여 前삼성전자 노무담당 임원 등 4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前삼성전자서비스(주)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는 등 관련자 32명과 2개 법인을 기소하였다.

부산 엘시티 공사현장에서 가설작업대 추락으로 근로자 4명이 사망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원청인 ㈜포스코건설 법인 및 소속 직원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포스코건설 등 관할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부산동부노동청장을 구속 기소하였다.

또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골리앗 크레인이 작업 중이던 지브크레인을 충돌하여 하청업체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상해를 입은 대형 산재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사고 책임자인 주신호수 1명을 구속 기소,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장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 다. 임금체불 엄정대응 및 전문성 제고 노력

아울러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불 삼진아웃제' 등 임금체불에 엄정히 대응하였고, 노동법 아카데미·노동법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노동업무 분야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 그림 2-77 | 노동법 아카데미·노동법 공동 학술대회 개최




노동법 아카데미




노동법 학술대회

## 10.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에 기여

공안기획과 검사 김종욱

### 가. 추진경과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처하였다.

## 나. 불법폭력집회·시위 건수 감소

최근 5년간 주요 집회·시위 건수는 연 1만건 내외로 일정한 반면, 불법·폭력 집회·시위건수는 2014년 35건에서 2018년 12건으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는 등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에 기여하였다.

**| 표 2-38 |** 불법·폭력 집회·시위 비율

(단위: 건)

| 구 분 \ 연 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주요 집회·시위 | 10,504 | 11,311 | 11,061 | 10,438 | 9,613 |
| 불법·폭력 집회·시위(비율) | 35 (0.33%) | 30 (0.26%) | 28 (0.25%) | 12 (0.11%) | 12 (0.12%) |

**| 표 2-39 |** 2018년 발생 주요사건 현황

| 구 분 | 주 요 사 건 | 비 고 |
|---|---|---|
| 안보사범 | • 北 보위성 연계 충성자금(쌀) 상납 사건 | 수원지검 |
| | • 북 IT조직 개발 보안프로그램 무단 유포 사건 | 서울중앙지검 |
| 선거사범 | • 함평군수 이○○의 매수 및 이해유도 사건 | 목포지청 |
| | • 경기지사 이○○의 허위사실공표 사건 | 성남지청 |
| | • 대구시장 권○○의 사전선거운동 등 사건 | 대구지검 |
| | • 제주지사 원○○의 사전선거운동 사건 | 제주지검 |
| | • 전북지사 송○○의 공무원선거개입 사건 | 전주지검 |
| | •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천안시갑 당선자 이○○의 기부행위 등 사건 | 천안지청 |
| 노동사범 | • 엘시티 근로자 추락 사망사건 | 부산지검, 부산동부지청 |
| | • 삼성전자서비스 부당노동행위 사건 | 서울중앙지검 |
| | •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충돌 사건 | 창원지검, 통영지청 |

# 11. 국제공조를 통한 사회·경제 질서의 엄정 확립

국제형사과 검사 박성진

## 가. 범죄인인도·형사사법공조·국제수형자이송 관련 국제협력강화

### 1) 개요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이른바 국외도피사범이 급증하고, 외국에서 죄를 범하고 국내로 잠입하는 경우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또한 테러, 마약밀매, 인신매매 등 국제조직범죄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범죄의 국제화 현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1991년 범죄인인도조약, 1993년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최초로 체결한 이래, 2011년 유럽평의회(49개국)의 범죄인인도조약 및 형사사법공조조약에 가입함에 따라 범죄인인도조약 체결국은 대폭 확대되었으며, 최근 2018. 11. 14. 키르키스탄과 범죄인인도조약 등을 체결함으로써 현재 범죄인인도조약은 79개국(발효 77개국), 형사사법공조조약은 75개국(발효 74개국), 수형자이송조약은 71개국(발효 70개국)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전 세계 주요국들과 해외도피 범죄인의 강제송환과 수사공조에 관한 협력 체계 구축 등 전반적인 국제사법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 범죄인인도

2018. 12. 31. 현재 우리나라는 79개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여 그 중 77개국과 발효된 상태이며, 75개국과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여 74개국이 발효된 상태이다. 법무부는 범죄인인도제도 시행 28년을 맞아, 그간 축적하여 온 제도적 기반과 경험을 집약하여 주요 해외도피사범에 대한 여권무효화 조치, 강제추방 등 국가별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송환방안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표 2-40 | 범죄인 송환 현황

| 연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인수 | 24명 | 41명 | 45명 | 48명 | 55명 | 74명 | 70명 |

### 3) 형사사법공조

형사사법공조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2018년 중 외국에 총 320건의 형사사법공조요청을 하였고, 외국으로부터 195건의 형사사법공조요청을 받아 처리하였다.

| 표 2-41 | 형사사법공조요청 현황

(단위: 건)

| 연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한국 요청 | 103 | 109 | 181 | 236 | 220 | 240 | 320 |
| 외국 요청 | 113 | 80 | 80 | 111 | 137 | 160 | 195 |

### 4) 국제수형자이송

2005. 11월 국내에서 발효된 유럽평의회 수형자이송협약에 의거하여, 2006년에는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등 국제수형자이송제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2018. 1월 심사대상자 10명 중 국내이송 신청자 2명, 국외이송 신청자 5명에 대하여 이송승인을 하였다. 한편 2012. 12. 18. 한-태국 수형자이송조약, 2014. 6. 13. 한-홍콩 수형자이송조약, 2015. 10. 22. 한-쿠웨이트 수형자이송조약이 각 발효되는 등 국제수형자이송조약의 효력이 발생한 나라는 70개국으로 확대되었다.

| 표 2-42 | 국제수형자 이송 현황

| | 국내이송 | 국외이송 |
|---|---|---|
| 2013 | 5명 | 4명 |
| 2014 | 12명 | 5명 |
| 2015 | 11명 | 1명 |
| 2016 | 3명 | 1명 |
| 2017 | 1명 | 4명 |
| 2018 | 2명 | 6명 |

## 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사건 엄정처리

### 1) 개요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이하 'SOFA')은 1966. 7월 체결되어 1967. 2월부터 시행되어 왔는바, 1991. 2월 합의 양해사항 중 일부를 개정한 이후, 2000. 8월 서울에서 SOFA 재개정 협상을 시작하고, 2000. 12. 28. 개정 문안에 최종 합의하였다. 개정된 협정은 2001. 2. 28. 국회 동의를 거쳐 2001. 4. 2.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다. 주한미군 지위협정 주요 개정 내용은 강간, 살인범에 대한 현행범이나, 살인, 강간 등 12개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조기 신병 확보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형사사법권 행사 범위가 확대되었고, 미군 등을 상대로 한 민사청구권의 실효적인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 2) 사건 처리 현황

SOFA 합의양해사항의 개정 이전에는 미군인에 대한 재판권 행사율이 1.0% 미만이었으나, 2002년 6.9%, 2003년 30.9%, 2004년 24.3%, 2005년 23.7%, 2006년 35.7%, 2007년 39.6%, 2008년 46.2%, 2009년 49.3%, 2010년 61.8%, 2011년 65.9%, 2012년 76.2%, 2013년 69.5%, 2014년 75.6%, 2015년 70.9%, 2016년 91.9%, 2017년 74.4%, 2018년 97.1%로 꾸준한 재판권 행사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사안이 중한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재판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00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미군인에 대한 재판권 행사 사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폭력사건이 53.7%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 사건에 대해서 내국인과 같은 처벌기준을 적용하여 재판권을 행사하고 있다. 한편, 미군범죄 발생 건수는 2010년 419건, 2011년 397건, 2012년 344건, 2013년 365건, 2014년 405건, 2015년 387건, 2016년 388건, 2017년 374건, 2018년 351건으로 2016년 이후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 표 2-43 |**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관련 통계

(단위 : 명)

| 구분 / 연도별 | | 발생 | | | | | | | 미군인 범죄에 대한 재판권행사 | 주한미군지위 협정사건 전체범죄에 대한행사 |
|---|---|---|---|---|---|---|---|---|---|---|
| | | 총계 | 미측 관할 제외 총계 | 미군인 | | | | 미군속 등 | | |
| | | | | 계 | 미측 관할 | 공소권 없음 | 미측관할 및 공소권 없음 제외 | | | |
| '10 | 건 | 419 | 399 | 316 | 20 | 131 | 165 | 103 | 102(61.8%) | 205 |
| | 명 | 491 | 471 | 380 | 20 | 148 | 212 | 111 | 111(52.4%) | 222 |
| '11 | 건 | 397 | 380 | 298 | 17 | 158 | 123 | 99 | 81(65.9%) | 180 |
| | 명 | 456 | 439 | 341 | 17 | 177 | 147 | 115 | 92(62.6%) | 207 |
| '12 | 건 | 344 | 322 | 264 | 22 | 158 | 84 | 80 | 64(76.2%) | 144 |
| | 명 | 379 | 357 | 294 | 22 | 175 | 97 | 85 | 70(72.2%) | 155 |
| '13 | 건 | 365 | 354 | 273 | 11 | 134 | 128 | 92 | 89(69.5%) | 181 |
| | 명 | 403 | 392 | 305 | 11 | 163 | 131 | 98 | 98(74.8%) | 196 |
| '14 | 건 | 405 | 388 | 286 | 17 | 146 | 123 | 119 | 93(75.6%) | 212 |
| | 명 | 433 | 416 | 300 | 17 | 152 | 131 | 133 | 97(74.0%) | 230 |
| '15 | 건 | 387 | 370 | 265 | 17 | 138 | 110 | 122 | 78(70.9%) | 200 |
| | 명 | 419 | 402 | 289 | 17 | 152 | 120 | 130 | 82(68.3%) | 212 |
| '16 | 건 | 388 | 339 | 293 | 49 | 170 | 74 | 95 | 68(91.9%) | 163 |
| | 명 | 426 | 377 | 326 | 49 | 198 | 79 | 100 | 71(89.9%) | 171 |
| '17 | 건 | 374 | 340 | 265 | 34 | 153 | 78 | 109 | 58(74.4%) | 167 |
| | 명 | 415 | 381 | 295 | 34 | 169 | 92 | 120 | 62(67.4%) | 182 |
| '18 | 건 | 351 | 312 | 296 | 39 | 186 | 71 | 55 | 69(97.1%) | 124 |
| | 명 | 378 | 339 | 319 | 39 | 202 | 78 | 59 | 70(89.7%) | 129 |

※ '공소권없음'은 미군인 범죄로 집계는 되었으나, 친고죄의 고소취소나 교통사고의 종합보험 가입의 사유로 재판관할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등임

※ 2003년부터는 재판권행사율 산정 시 '공소권없음'에 해당하는 사건은 분모에 산입하지 않음

## 다. 불법수익환수를 위한 노력

선진일류국가 진입에 장애가 되는 부패범죄·경제범죄의 근본적 척결을 위해서는 불법수익의 철저한 추적 박탈로 부패행위에 대한 동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2001. 9. 27.「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2001. 9. 27.부터 시행하였다. 2006. 5. 11.에는 대검 중수부에 「범죄수익 환수 전담반」을 설치하였고, 2010. 7월에

「범죄수익환수시스템」을 구축하고, 같은 해 9월에는 전국 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반」을 설치하여, 불법수익 환수 필요성과 규모가 큰 범죄에 대한 환수 노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범죄수익환수 실적 거양을 위해 2013. 5. 28. 개정에서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였고, 2014년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매년 상·하반기 2차례씩 일반인 및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범죄수익 환수 실효성 증대를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 2018. 2. 5. 대검 반부패·강력부 산하에 범죄수익환수과를,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를 신설하였다. 해외범죄수익환수와 관련하여, 법무부 국제형사과는 해외범죄수익환수를 위한 형사사법공조의 중앙기관으로서 2013. 8월 미국 측에 전두환 일가의 미국 내 도피재산 추적 및 몰수를 구하는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고, 미 법무부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2015. 3월 전두환의 차남 전재용의 미국 내 주택 매각대금 등을 몰수해 2015. 11월 약 12억 3천만원 상당을 국내로 환수한바 있고, 2016. 7월 미국에서 발생한 후 국내로 유입된 부패범죄 수익 1억 3천만원 상당을 미국과의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미국으로 반환하는 등, 전 세계의 형사사법공조 중앙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범죄수익 추적 및 환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그 일환으로 대검 국제협력단은 중국 공안부, 미국 국토안보부수사국(HSI) 등과의 MOU 체결 등을 통해 해외범죄수익 환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2012. 12월 몽골 검찰과 공조하여 몽골로 유출된 3억 6천만원의 범죄수익을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환수하여 해외범죄수익환수를 최초로 성공하였다. 한편, 2018. 6. 22. 해외에 숨겨진 불법자금을 찾아 국내로 환수하기 위해 검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이 포함된 범정부 차원의 조사단인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이 발족되어 운영되고 있다.

## 라. 국제협약의 적극적 이행

### 1) '국제형사재판소규정'의 이행

우리나라는 2002. 11월 '국제형사재판소규정'을 비준함으로써, 동 규정의 당사국이 되었다. 국제형사재판소규정에 의해 2003. 3월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는 최초의 상설 국제형사법원으로서 집단살해죄·인도에 반한 죄·전쟁범죄 등 반인륜범죄의 수사 및 소추와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제형사재판소규정의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회한 후 2004. 5월 입법예고, 같은 해 6월 공청회 개최 등 절차를 거쳐 2006. 12월 국회에 이행입법안인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출하였고, 2007. 12. 21. 동법률이 공포되었다.

### 2) 'UN초국가적조직범죄방지협약' 이행입법 및 비준 추진

초국가적조직범죄를 효율적으로 예방·처벌하기 위한 UN 초국가적조직범죄방지협약이

2003. 9월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2000. 12. 13. 위 협약 뿐 아니라 인신매매방지 의정서, 불법이민방지의정서에 서명하였고, 총기류자제의정서는 2001. 10. 4. 서명하였다. 법무부는 협약 비준을 위하여 2007. 9월 이행입법 T/F를 구성하고 2008. 12월 법무부 초안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검토를 진행하여, 2010. 11월 여권법, 출입국관리법 등 불법이민 관련된 범죄를 중대범죄에 포함시키는「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12. 1월 국회를 통과하여 2012. 1. 17. 공포, 2012. 4. 18. 시행되었다. 또한 2012. 8월 포괄적 인신매매죄 신설, 범죄단체조직죄 개선 관련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2013. 4. 5. 공포·시행되었다. 이러한 이행입법의 시행에 따라 2013. 10월 법무부는 외교부에 비준 추진을 의뢰하였고, 2014. 7월 외교부는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15. 5. 29. 국회를 통과하여 2015. 11. 5. UN에 대한민국 정부의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UN 초국가적조직범죄방지협약 당사국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이후 우리나라는 동협약의 이행입법으로 시행된 법률들을 충실히 시행함으로써 국내 법제도 운영에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 3) 'UN부패방지협약' 비준 및 이행 관련

'UN부패방지협약'은 공공·민간 부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포괄적 부패방지 국제협약으로서 동 협약의 제정으로 부패범죄와 관련된 국가 간 공조와 부패자산 환수를 위한 총체적인 국제규범이 마련되었다. 법무부는 2005. 11월 이 협약의 비준을 위해 설치된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국제범죄 분석기획단에 적극 참여하였고 2006. 10월 'UN반부패협약 이행입법 추진반'을 발족하였다. 이후 동 협약 이행입법안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안'을 마련하여 2007. 10월 국회에 제출하였고, 2008. 2월 위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8.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동협약은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2008. 4. 26. 비준·발효되었다. 이후 우리나라는 동협약의 이행을 위해 2012. 11. 20. 부패범죄피해자의 피해재산 복구절차를 구체화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공포·시행하였고, 매년 개최되는 당사국 총회에 참가하여 협약 이행의 의지를 피력하며 우리나라의 추진 제도 및 사례, 성과를 소개하고 있으며, 동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다른 당사국에 대한 동협약 이행점검을 실시하는 등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마. 국제협력성과



한·일 형사사법실무회의(2018.1.)



스리랑카대표단 방문(2018.7.)




우즈베키스탄 검찰총장 방문(2018.8.)




한미공정거래실무워크숍(2018.9.)




한·키르기즈 범죄인인도, 형사사법공조, 수형자이송 조약 체결(2018.11.)




한·일 법무협력회의(2018.12.)

# 12.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법령 제·개정 추진

형사법제과 검사 추창현

## 가. 권력 이용 성범죄 가중 처벌

### 1) 추진배경

최근 공직사회, 직장, 문화예술계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직 내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음에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제1항)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법정형이 낮아 범죄 예방 효과가 높지 않고 실효적 처벌이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2018.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엄벌하기 위해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 및 추행죄의 법정형 상향을 추진하였다.

### 2) 추진경과

2018. 5. 16. 의원입법 형태로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18. 10. 16.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되었다.

### 3) 주요내용과 성과

2018. 10. 16.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제303조제1항), 법률상 피구금자에 대한 간음죄의 법정형을 '7년 이하의 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제303조제2항)하는 내용으로 「형법」을 개정, 시행하였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법정형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제10조제1항), 법률상 피구금자에 대한 추행죄의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였다(제10조제2항).

### 4) 평가 및 발전방향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죄의 법정형 상향을 통해 고용이나 업무관계,

사제(師弟)·도제(徒弟) 관계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나.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 1) 추진배경

최근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위장한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곳곳에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그 수법 또한 상상을 초월할 만큼 다양해져, 여성들을 비롯한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한번 영상물이 유포되면 인터넷과 SNS를 통해 빠른 속도로 전파돼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낳게 되는 디지털 테러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법촬영 및 유포 행위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2017.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불법촬영 및 유포 범죄의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 2) 추진경과

2018. 4. 25. 의원입법 형태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18. 12. 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되었다.

### 3) 주요내용과 성과

2018. 12. 18.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불법촬영 행위', '불법촬영물 유포행위', '동의하에 촬영하였으나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행위'를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하였으며,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 벌금형을 삭제하여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 뿐만 아니라 그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유포한 경우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시행하였다.

### 4) 평가 및 발전방향

여성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일상 속에 가지고 있는 불안감과 공포를 없앨 수 있도록 불법촬영 및 유포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구성요건을 변경하여 처벌의 흠결을 보완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다. 스토킹 처벌법 제정 추진

### 1) 추진배경

정부는 젠더폭력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새롭게 대두된 젠더폭력의 처벌 및 보호 체계 마련”을 100대 국정과제로 포함시키고 심각한 피해가 사회 문제화된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데이트 폭력에 대한 피해방지 방안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지정하였다. 이에 법무부 주관으로 정부기관(법무부, 대검찰청, 여성가족부, 경찰청), 법원, 대한변협, 학계, 여성단체 등으로 구성된 스토킹처벌법 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였다.

### 2) 추진경과

2017. 8 ~ 12월 스토킹처벌법 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고, 2018. 2. 22.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한 후 스토킹처벌법 제정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2018. 5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가칭)’을 입법예고하였다.

### 3) 주요내용과 성과

입법예고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가칭)’에서는 스토킹 범죄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여 특정행동의 종류도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함으로써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또한, 스토킹 범죄를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행위자에게 접근금지, 통신금지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잠정조치 불이행 시에도 형사처벌하도록 하여 잠정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 4) 평가 및 발전방향

실무 회의체를 구성, 관계 부처 및 민간의 의견 수렴을 통해 스토킹 범죄의 정의, 처벌 및 보호처분 도입 범위 등에 관한 합의점을 모색함으로써 통과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 처벌법 제정안을 마련하였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을 정부안으로 발의할 예정으로,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새롭게 대두된 스토킹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림 2-78 |**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 추행죄 처벌강화 언론기사

'위력에 의한 간음' 징역 5년→7년 강화...미투운동 성과

법무부, 성폭력범죄특례법 일부개정안 공포




**| 그림 2-79 |** 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 언론기사

영리 목적 '불법촬영 유포' 하면 징역형으로만 처벌

'셀프 촬영'이라도 제삼자 원치않게 유포하면 처벌

성폭력특별법 개정안 시행...불법촬영 형량도 강화




**| 그림 2-80 |** 2018. 2. 22. 관계부처 합동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 발표

[문답]정부 "스토킹은 강력범죄 전조, 형사처벌 범주에 넣을 것"

여가부·법무부·경찰청 합동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 발표

머니투데이 권혜민 기자 | 입력 : 2018.02.22 13:31

기사 소셜댓글 기사공유 가 + −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22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 방지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스토킹 범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종합대책은 가해자 엄정처벌로 범죄동기 근절, 사건 대응력 제고로 피해자 신변보호, 실질적·체계적인 피해자 지원, 사회적 민감성 제고 및 인식개선 4대 추진 전략에 대해 법무부, 경찰청, 여가부가 14개 세부과제를 부처별로 추진하게 된다. 2018.2.22/사진=뉴스1

# 13.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형사법제과 검사 추창현

## 가.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강화

### 1) 추진배경

2018. 9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故) 윤창호씨 사건으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여 음주운전 가해자를 무겁게 처벌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급증하였다. 이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의 법정형 상향을 추진하였다.

### 2) 추진경과

국회에 제출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토대로, 국회 논의를 거쳐 2018. 12. 1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되었다.

### 3) 주요내용과 성과

2018. 12. 18. 음주·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었다.

### 4) 평가 및 발전방향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범죄이고, 범죄 특성상 재범률이 높으며,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법정형 상향을 통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림 2-81 |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강화 언론기사




## 나. 심신미약 감경 기준 개정

### 1) 추진배경

2018. 10월 발생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감경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100만 명을 돌파하였고, 일부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감형의 수단으로 악용하려 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났다. 이에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 2) 추진경과

국회에 제출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토대로, 국회 논의를 거쳐 2018. 12. 18. 「형법」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되었다.

### 3) 주요내용과 성과

2018. 12. 18.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형법」 제10조를 개정하였다.

### 4) 평가 및 발전방향

국민의 법감정에 맞게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개정하여 「형법」상 책임원칙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감형 여부는 법관의 재량과 사건의 경중 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일부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감형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림 2-82 |** 심신미약 감경 개정 언론기사



심신미약 감형 의무조항 폐지…개정안 국회 통과

이준범 | 기사입력 2018-11-29 16:31 | 최종수정 2018-11-29 16:35

심신미약 감형 국회

심신미약을 이유로 무조건 처벌을 감경하지 못하게 한 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 제5절 범죄예방업무

## 1. 보호관찰 내실화·전문화를 통한 실효성 제고

### 가.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업무시스템 개편

보호관찰과 보호사무관 성봉호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을 사회 내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도록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로, 1988. 12. 31. 제정·공포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따라 1989. 7. 1. 부터 범법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을 시작한 이래 「형법」개정을 통해 1997. 1월에는 성인범까지 전면 확대되었으며, 2004. 9. 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성매매 사범에까지 확대되었다.

2009. 11. 29.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개정으로 특별준수사항 부과 및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준수사항 추가·변경이 법제화되어 사범별 맞춤형 보호관찰이 가능해지면서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정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2016. 12월 개정 「치료감호법」 시행으로 주취 또는 정신장애 상태에서 경미한 폭력범죄 또는 비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치료명령제도가 실시되었다.

| 표 2-44 | 연도별 보호관찰 대상자

(단위 : 명)

| 연 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인 원 | 45,661 | 49,602 | 49,127 | 49,401 | 49,335 | 49,048 | 48,729 | 49,178 | 52,387 | 55,784 | 52,580 |

#### 2) 추진내용

2018. 1월 성인대상자에 대한 과학적 분류 및 재범위험성에 따른 지도감독 차별화를 통한 효과적인 재범방지를 위해 2011. 2월부터 사용하였던 성인 보호관찰대상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인 'KPRAI(Korean Probationer Risk Assessment Inventory)'를 동적성인재범위험성평가도구 'KPRAI-R (Korean Probationer Risk Assessment Inventory Revised)'로 개정·보완하여 재범예측 정확성, 위험요인 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향상시켰으며, 2018. 9월에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위험지수 및 유형별 지도감독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제시하여 직원간의 지도감독 편차를 줄이고, 지도감독의 수준을 상향평준화하여 재범방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재범위험평가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병역법을 위반한 가석방자에 대해 보호관찰 및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여 가석방기간 동안 일정부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재범방지에 집중하는 업무시스템으로 개편하였다.

그리고 가정폭력범죄 근절을 위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전담직원제 및 전문치료프로그램 도입 등 '가정폭력 대상자 지도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음주운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원하는 전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부응하고자 '음주운전 보호관찰대상자 관리강화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며, 보호관찰대상자의 전문상담·처우 프로그램 활성화 및 범죄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연구 수행, 전문처우프로그램 공동개발 등을 위해 '법무부와 숭실대학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예산 10억 원을 지원받아 알코올 중독 범죄자 치료를 위한 가상현실(VR)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11개 보호관찰소에서 총 4,068명의 알코올 관련 범죄자에게 체험형 가상현실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 그림 2-83 |** 가상현실 치료




VR 치료 프로그램(음주거절 훈련)



가상 음주운전 체험

보호관찰관과 대상자가 서로 마음을 열고 편안하게 면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독립면담실 설치를 추진하여 신축한 영덕, 남원 보호관찰소를 포함하여 광주, 울산, 부천 등 9개의 보호관찰소에 전용 면담실을 추가 설치하여 면담의 질을 높이고 직원의 업무 집중도를 향상시켰다.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업무편람 추가 배부(730부), 교통 및 아동학대 업무매뉴얼(각 500부)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위해 노후된 가스총(78정) 및 전자충격기(22정)를 교체 하였고, 음주 관련 대상자 등에 대한 특별준수사항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음주측정기(33대)를 추가로 보급하는 등 직원의 업무 편의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재범방지 대책을 추진한 결과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이 전년대비 0.6% 감소한 7.2%로 억제하여 최근 10년 동안 가장 낮은 재범률을 기록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 표 2-45 |**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 현황

(단위 : %)

| 연 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재범률 | 7.6 | 7.2 | 7.6 | 7.9 | 7.6 | 7.4 | 7.6 | 7.9 | 7.8 | 7.2 |

**| 그림 2-84 |** 보호관찰 실시현장



보호관찰 출석면담



보호관찰 현장지도

2019년 보호관찰 인력 129명이 추가로 배치될 경우 직원 1인당 업무량이 현재 151건에서 140건으로 감소되어 직원의 업무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신질환 대상자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 성인 대상자에 대한 분류처우 적정성 제고, 음주운전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 실시,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통한 면담역량 등을 적극 추진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울타리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나. 조사 업무

보호관찰과 보호사무관 김구회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판결전조사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명하기 위해 판결

전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요청함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범죄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의 제반사항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소년에 대해서만 실시하다가 2008. 12. 16.「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성인에 대해서도 실시하게 되었다.

법원결정전 조사는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 등 결정 전에 범죄를 저지른 자의 범죄원인, 성장배경, 생활환경 등 제반사항을 보호관찰소의 장이 조사하여 의뢰 법원에 회보하는 것으로 2007. 8. 3. 개정된「가정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2007. 12. 21. 개정된「소년법」,「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규정을 두었다.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에 대해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호관찰소의 장 등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밖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검사결정전조사는 2007. 12. 21.개정된「소년법」에 의해 시행되었다.

2014. 9. 29.「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검사결정전 조사가 시행되었고,「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성폭력, 유괴, 살인, 강도 등 특정범죄 피의자에 대해 검사의 요청으로 보호관찰관이 조사하는 청구전 조사와「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하기 전에 성충동약물치료명령 청구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도소, 소년원 등에 수용되어 있는 자와 보호감호 대상자에 대한 현재의 환경을 조사하여 교정 교육자료, 가석방·임시퇴원·가출소 등의 심사자료로 활용하는 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표 2-46 |** 조사현황

(단위 : 건)

| 연도 구분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계 |
|---|---|---|---|---|---|---|---|---|---|---|---|---|---|
| 판결전조사 | 3,631 | 4,273 | 3,597 | 1,598 | 1,526 | 2,385 | 2,159 | 2,257 | 2,166 | 1,901 | 2,003 | 2,053 | 29,549 |
| 법원 결정전 조사 | 3,186 | 3,311 | 4,234 | 6,398 | 9,242 | 12,719 | 12,141 | 12,399 | 17,678 | 16,931 | 16,606 | 19,662 | 134,507 |
| 검사 결정전 조사 | - | 1,415 | 3,670 | 4,524 | 3,906 | 5,547 | 5,084 | 5,855 | 3,805 | 4,379 | 3,626 | 1,678 | 43,489 |
| 청구전조사 | - | 92 | 304 | 1,376 | 1,933 | 1,696 | 2,497 | 2,511 | 2,352 | 2,619 | 1,783 | 1,600 | 18,763 |
| 소급청구전조사 | - | - | - | 2,251 | 7,772 | 354 | 247 | 192 | 119 | 79 | 86 | 39 | 11,139 |
| 환경조사 | 1,861 | 1,862 | 2,009 | 1,738 | 1,581 | 1,715 | 1,701 | 1,594 | 1,561 | 1,555 | 1,920 | 1,496 | 20,593 |

### 2) 평가 및 발전방향

조사업무는 제도 시행이후 매년 꾸준히 업무가 증가되는 추세이다. 특히 2018년도에는 법원결정전조사가 전년대비 약 20% 증가된 19,662건을 수행하였으며, 그동안의 축적된 신뢰도를 바탕으로 '18. 12월 PC방 아르바이트생 살인사건(서울 강서구), '18. 11월 폐지 줍던 노인 폭행 살인사건(거제)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는 등 대외적으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향후에도 조사업무는 보호관찰제도 영역 확대와 함께 활용도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조사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대외신뢰도 제고를 위해 2010. 8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여 조사관 인증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7개 교과목(100시간) 이수를 기본 요건으로 하고 객관식 필기시험, 조사서 작성능력 평가를 거쳐 인정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자격취득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조사업무의 전문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일반 조사관보다 심화된 상위 조사관 제도(조사관 슈퍼바이저)를 신설하여 조사 업무 전문성 제고와 조사서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사회봉사명령 집행

보호관찰과 보호사무관 김구회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확정된 범죄인을 교도소 등에 보내는 대신에 일정 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로, 1989년 소년법 대상자를 시작으로 1997년 성인범에게까지 확대되었다.

2009. 9월부터 「벌금미납자의사회봉사집행에관한특례법」이 시행되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생계곤란으로 납부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벌금미납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2010. 4월 법무부-농협중앙회 간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국 농촌지역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연평균 약 9만9천명, 총 89만여명을 투입, 영농철 일손돕기, 영세농가 환경개선, 태풍·폭설·폭우 등 피해복구, 이미용 봉사 등 다양한 농촌지원 활동을 전개하였고, 2013. 5월 도움이 필요한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 지원분야를 신청받아 대상자를 투입하여 지원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실시하여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집행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2018. 1월부터 벌금형 집행유예가 도입되어 벌금형을 받은 대상자에게도 사회봉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봉사는 이처럼 사회내 처우의 대표적 제도로서 범죄자 처벌과 사회에 대한 배상 및 속죄,

범죄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등 사회 재통합 기능을 수행하면서 형사정책적으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 표 2-47 |** 사회봉사 실시사건

(단위 : 건)

| 연 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사건수 | 47,654 | 53,569 | 54,427 | 47,658 | 45,842 | 46,179 | 51,058 | 55,581 | 58,287 | 63,050 | 60,286 |

**| 표 2-48 |**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실적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계 |
|---|---|---|---|---|---|---|---|---|---|---|
| 연인원 | 81,517 | 98,135 | 105,895 | 110,243 | 115,536 | 103,511 | 106,864 | 97,188 | 76,118 | 895,007 |

**| 표 2-49 |**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집행실적

(단위 : 건, 명)

| 구분 \ 연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계 |
|---|---|---|---|---|---|---|---|
| 건수 | 511 | 2,127 | 2,249 | 2,964 | 2,992 | 1,974 | 12,817 |
| 연인원 | 8,106 | 22,846 | 22,569 | 26,522 | 26,338 | 16,591 | 122,972 |

**| 표 2-50 |** 사회봉사 현황

(단위 : 건)

| 구분 |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봉사 | 접수 | 34,794 | 37,085 | 38,153 | 41,435 | 44,386 | 42,249 |
| | 실시 | 41,511 | 43,293 | 45,549 | 48,395 | 53,231 | 51,224 |
| 벌금대체 | 접수 | 4,059 | 6,758 | 8,554 | 8,530 | 8,282 | 7,624 |
| | 실시 | 4,668 | 7,765 | 10,032 | 9,892 | 9,819 | 9,062 |
| 계 | 접수 | 38,853 | 43,843 | 46,707 | 49,965 | 52,668 | 49,873 |
| | 실시 | 46,179 | 51,058 | 55,581 | 58,287 | 63,050 | 60,286 |

### 2) 평가 및 발전방향

'사회적 약자지원 사회봉사'는 중증장애인·고령자·저장강박증 가정의 청소·도배·장판교체 등 주거환경개선, 폭설·폭우·화재·지진 등 재해 피해지역 지원, 대상자의 특기를 활용하여

취약계층에게 진료·마사지·장수사진 촬영·이미용 봉사·학습봉사를 실시하는 특기집행 및 고독사 유류품 정리·민요공연·급식봉사·연탄배달 등 실질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하여 지원하는 제도로 법무부는 이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2018년도에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에 연인원 30,460명(3,775건), 영세·고령 농가 등 농촌일손 돕기에 연인원 76,118명 등 연인원 총 106,578명 투입 지원하여 국민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법무부 대표적 친서민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8년 5월에는 파주시 통일촌 마을의 사회봉사 농촌지원 정책현장에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방문하여 대상자를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이러한 업무추진결과 2018년 기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81.1% 사회봉사 집행완료 이후 자원봉사를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사회적 약자지원 사회봉사' 수혜자 만족도 조사결과 90.6%가 만족을 나타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8년 하반기부터 국회 및 언론에서 사회봉사 인력충원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법무부는 사회봉사 전담인력 확충을 추진하여 협력집행 감독을 강화하고 직접 집행을 내실화함은 물론 사회적 취약계층 집행 확대, 탄력집행 확대 등 국민에게 사랑받는 사회봉사 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도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을 통해 대상자는 땀흘려 일하는 보람을 느끼고,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은 희망을 갖게 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그림 2-85 |** 사회봉사 집행현장



장수사진 촬영 사회봉사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태풍피해 주거지 지원 사회봉사



태풍피해 영세농가지원 사회봉사

## 라. 수강명령 집행 전문성 강화

보호관찰과 보호사무관 김구회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수강명령은 법원에서 의존성·중독성 범죄로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시간 동안 강의, 체험학습, 심신훈련, 역할극 등 범죄성 개선을 위해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로 1989. 7월 보호관찰제도와 함께 도입되어 소년에게 시행하였고, 1997년 형법 개정에 따라 성인에게도 확대 실시하였다.

수강명령 집행의 효과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2009년 '성범죄자 상담치료 프로그램 매뉴얼', 2011. 8월 준법운전 수강명령 표준 프로그램과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한편, 직원들의 전문교육 이수 또는 전문자격증 취득 등을 도모하여 2010년 수강전문 직원 190명을 양성하였고, 심리학 박사학위 소지자,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 소지자 등을 특별채용 하였다.

또한 성폭력 등 전문분야 집행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수강집행센터를 2012년 수원에 시범 설치한 후, 2013년 광역단위 기관(서울, 대구, 광주), 2014년 인천, 대전, 부산, 2017년 서울남부, 의정부, 창원 등 총 10개 기관으로 확대하여 수강명령 대상자의 범죄원인 재인식 및 행동개선을 통한 재범방지와 정상적인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 표 2-51 | 수강명령 현황

(단위 : 건)

| 구 분 \ 연 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계 |
|---|---|---|---|---|---|---|---|
| 수강명령 | 28,054 | 30,281 | 33,513 | 38,857 | 45,459 | 41,884 | 218,048 |
| 이수명령 | 514 | 4,602 | 5,571 | 5,073 | 6,290 | 7,999 | 30,049 |
| 기소유예 등 | 17,522 | 16,268 | 19,155 | 36,889 | 27,564 | 20,897 | 138,295 |

### 2) 평가 및 발전방향

수강집행센터 운영시 전문성과 강의역량을 겸비하고 제도 이해가 높은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대상자의 범죄행동 수정에 무게를 두고 전문처우 프로그램을 집행함으로써, 외부 강사의 형사절차 이해 부족에 기인하는 운영상 단점을 보완하였다.

이 결과 2018년 기준 협력기관 집행 프로그램이수자의 재범률 20.7%에 비해 수강집행센터(수원)의 직접집행 프로그램 이수자의 재범률은 3.1%로 나타나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수강명령은 제도시행 이후 전문성과 대상자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성을 인정받아 제도 시행 이후 증가되는 추세이며, 특히 이수명령은 전년도보다 1,709건 증가된 7,999건을 집행하였으며 대상자에 대한 교육·치료가 강조되는 최근의 흐름을 고려할때 앞으로도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도에는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사업〉 예산 일부의 우리 부 이관으로 가정폭력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 집행 기반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인 기반도 확립하였다.

지속적인 수강명령 전문성 강화를 통해 대상자의 행동개선을 통한 재범방지와 정상적인 사회적응 지원을 지속적으로 도모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그림 2-86 | 수강명령 집행현장



소집단 수강 프로그램



성폭력 사범 심성개선 수강 프로그램

## 2. 성폭력 등 특정범죄자 관리·감독

### 가. 전자감독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특정범죄자관리과 보호사무관 민덕희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전자감독제도는 성폭력, 살인 등 특정 범죄자의 신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전자감독 대상자의 실시간 위치를 파악하고,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로 2008. 9. 1. 시행되었다. 시행 초기에는 부착대상이 성폭력으로 한정되었으나 2009년 미성년자유괴, 2010년 살인, 2014년 강도사건으로 확대되었고, 2012. 12월 헌법재판소의 성범죄자 소급부착 합헌 결정으로 대상자 수가 급증하였다.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 상시감독 및 긴급 상황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자감독

신속대응팀'(보호직과 무기계약직으로 구성, 24시간 교대 당직체제)을 기존 전국 42팀에서 43팀으로 확대 개편(2018. 7월)하였으며, 범죄유발 요인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한 개별심리치료를 10,620회 실시(전년 대비 14% 증가, 2017년 9,316회)하여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적응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

또한, 기존 휴대용추적장치의 위치추적 기능을 전자발찌 하나에 통합, 휴대용추적장치 유기로 인한 소재불명 상황을 원천 차단하고 훼손 방지 기능을 대폭 강화한 일체형 전자발찌를 개발하여 전국 보호관찰소에 보급하였다.(2018. 9월 보급 개시, 2019년 상반기 보급 완료예정)

**| 표 2-52 |** 연도말 전자감독 대상자 현재원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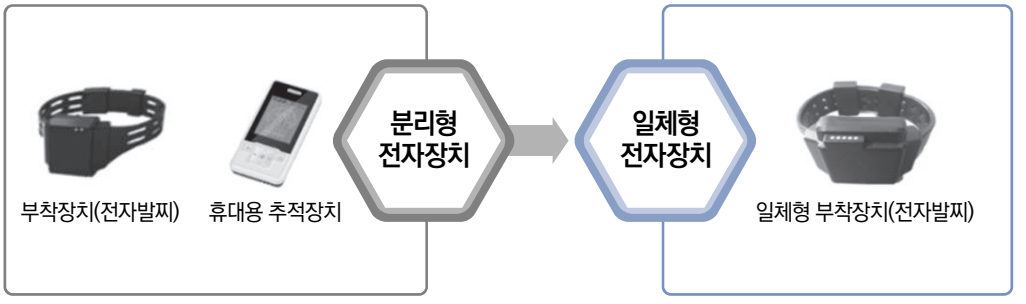
| 연 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현재원 | 151 | 127 | 393 | 932 | 1,032 | 1,703 | 2,219 | 2,313 | 2,696 | 2,981 | 3,126 |

※ 2008년 제도 시행 이후 대상자 20.7배 증가

### 2) 평가 및 발전방향

이러한 업무 추진 결과 성폭력, 살인, 강도, 정신질환 등 고위험 강력사범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98%를 재범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전자감독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강력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이다.

**| 그림 2-87 |** 전자발찌 개선



## 나. 성충동 약물치료 안정적 집행

특정범죄자관리과 서기관 김양곤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 대하여 성충동을 억제하는 약물(호르몬 치료제)을 주사하여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성범죄 증가와 조두순, 김수철 사건과 같은 충격적인 아동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2010. 7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2011. 7월 시행).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의 집행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한 약물투여, 정신건강 전문요원 등 전문가에 의한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전담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 지도감독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2011. 7월 제도 시행 이후 2018. 12월까지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에 대한 검사 청구가 55건 있었고, 이 중 23건이 법원에서 판결 확정되었다(기각 28건, 미결 4건). 가종료자 등에 대한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결정은 26건이다. 성충동 약물치료의 최초 집행은 2012. 5. 30. 시행(치료감호심의위원회 2012. 5. 21. 결정)되었고, 2018년도에는 10명이 개시되어 23명을 집행하였다. 제도시행 이후 2018년까지 재범한 사람은 없으며, 약물치료의 부작용으로는 땀이 나거나 미열, 두통, 경미한 손 떨림 등 경미한 사례 이외에 특이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18년 현재 전국 15개 종합병원이 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 표 2-53 |** 연도말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 집행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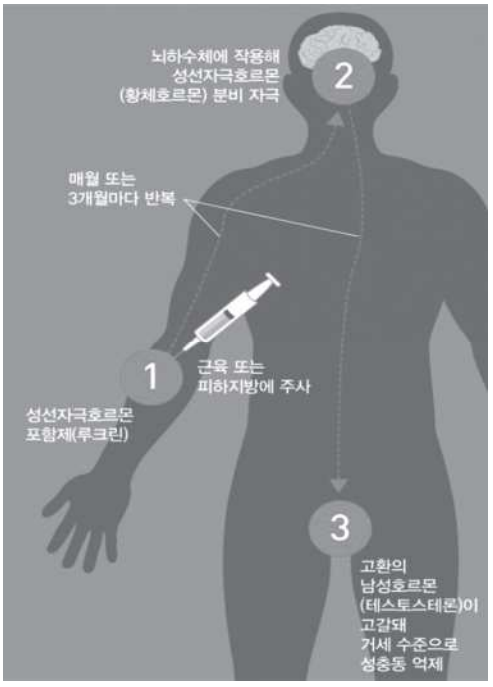
(단위 : 명)

| 연 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현재원 | 1 | 3 | 7 | 8 | 14 | 17 | 22 |

### 2) 평가 및 발전방향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는 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치료기관의 의사, 심리치료 전문가,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 검사관, 보호관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집행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향후 집행협의체를 통해 성충동 약물치료의 효과성과 부작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치료대상자의 안전과 치료의 효과성을 담보하는 전문적·통합적 처우 모델을 구축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 그림 2-88 | 성충동 약물치료 효과




## 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의 체계적 관리

특정범죄자관리과 사무관 강영욱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법원으로부터 공개명령을 선고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고, 등록정보 중 일부를 일반 국민과 지역사회에 공개·고지함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이다.

2011. 4월부터 성인 대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 업무가 확대되면서 법무부에서 성인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를 실시하였고, 2013.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신상정보 등록업무는 법무부, 공개·고지업무는 여성가족부로 운영주체를 각각 일원화하고 등록 대상 성범죄를 확대하였다.

법무부에서 등록·관리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공개·고지집행을 위해 여성가족부 시스템으로 전송되고 경찰전산망을 통해 전달되어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되고 있는데, 제도 시행

이후 2018년까지 71,012명의 신상정보를 등록(2011년 대비 254배 증가)하였으며 그 중 11,174명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9,358명의 신상정보를 고지하였다.

| 표 2-54 | 연도말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건수

(단위 : 건)

| 연 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등록건수 | 279 | 2,337 | 13,628 | 23,874 | 36,267 | 46,415 | 58,053 | 71,012 |

### 2) 평가 및 발전방향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지연 방지를 위해 신상정보 미제출자에 대한 직권 등록 기간을 단축(기존 35일 → 7일로 개선)하였고, 소재불명 대상자 또는 허위 정보 제출자 등에 대해서는 상시 자체 점검을 통해 경찰에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통보하여 등록정보 관리 강화에 업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신상정보등록 업무의 신속·정확한 집행을 위해 유관기관인 여성가족부·경찰청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를 상설 운영하고 '신상정보 관계기관 공동매뉴얼'을 제작(2018. 12월)하여 여성가족부·일선 경찰관서에 배포하였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 내 제도 홍보물 설치 및 KTV(한국정책방송), 전국 지하철 및 옥외전광판 등을 활용, 신상정보등록 제도에 대한 홍보영상을 송출함으로써 성범죄 예방 및 제도 홍보(2018년 연중) 활동을 강화하였다.

또한, 매년 1만 건 이상 증가하는 등록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8. 12월 신상정보관리센터를 확대 이전하는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등록 사건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신속·정확한 신상등록 정보의 관리를 위해 시스템 고도화 및 정보조회 분야 확대, 유관 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 등을 통해 성범죄 예방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 그림 2-89 | 신상정보등록제도 홍보






# 3. 감호제도 개선

## 가. 치료감호소 병실 소규모화 공사

치료처우과 사무관 김영배

### 1) 추진배경

치료감호소 전체 22개 병동 중 11개 병동이 완공된 지 21년 된 노후 시설이자 대형병실(정원 50명)로 대형병실 체제에서는 증상 정도에 따른 구분 수용이 어렵고, 치료 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어 10인 이하 병실로의 소규모화 및 현대화가 시급하였다.

### 2) 추진내용과 성과

2016 ~ 2018년까지 「병실 소규모화 3개년 계획」에 따라 2016년 2개, 2017년 4개, 2018년 5개 병동의 대형병실을 정원 10인 이하의 소규모 병실로 리모델링하여 치료 환경을 개선하였다.

| 그림 2-90 | 대형병실 소규모화 전후 비교



50인 이상 대형병실 | 10인 이하 소형병실

### 3) 평가 및 발전방향

정원 50명의 대형병실을 10인 이하의 소형 병실로 리모델링하여 「정신건강복지법」에서 규정한 입원실 정원(10인 이하) 기준을 충족하였고, 공사 완료 후 증상별, 범죄 경중별 분류수용과 치료를 통해 피치료감호자의 치료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나. 치료감호소 중증 환자 집중치료병동 신축

치료처우과 사무관 김영배

### 1) 추진배경

치료감호소는 수용인원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병동 부족 문제를 유휴병동 재운영 등을 통해 일부 해소해 왔으나 지속적인 수용인원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였다.

### 2) 추진내용과 성과

치료감호소 유휴부지에 400병상 규모의 중증 환자 집중치료 병동 신설을 추진하고, 선진국과 같은 1인실 위주의 소규모 병실에서 중증 환자를 집중치료하여 치료효과를 극대화하고 장기수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한편, 2018년도 예산에 중증 환자 집중치료병동 신축을 위한 설계비 예산(14.51억 원)을 확보하였다.

### 3) 향후 추진계획

2019. 11월 설계완료 후 2022년까지 병동신축을 추진하여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효과를 극대화하고 만성적인 과밀수용을 해소할 예정이다.

## 다. 정신건강 의료 전문인력 확충

치료처우과 사무관 김영배

### 1) 추진배경

치료감호소는 살인 등 중범죄 정신질환자 관리, 격오지, 낮은 보수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정신과  의사 결원율이 60%로 높아, 정신과 의사 1인당 환자 81명을 담당(국립병원은 20명 담당)하는 만큼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 2) 추진내용과 성과

의료 인력에 대한 직급 상향 등 처우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의협신문 등 채용홍보강화 조치로 2018년도에 의사 3명, 전공의 2명, 약사 3명을 확보하였다.

### 3) 향후 추진계획

의사채용 안정을 위한 의사 직급 상향, 수당 신설 등 처우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의협신문 등에 채용 홍보도 강화해 정신건강 전문 인력을 계속 확충할 예정이다.

## 라. 보호감호자 수용시설 일원화

치료처우과 검찰사무관 최수종

### 1) 추진 배경 및 추진 경과

보호감호는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산 3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특정범죄를 범한 때, 특정범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 보호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특정범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보호감호 선고를 통해 보호  감호시설에 수용하여 감호교화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근로를 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1980. 12. 18.「사회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시행된 보호감호제도는 사회질서 유지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2005. 8. 4.자로「사회보호법」 폐지 법률이 시행되면서 동법 부칙 제2조에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의 효력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집행은 구「사회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두었다. 보호감호자는 원래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만 관리하였으나, 보호감호자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으로 2010년부터 교정본부와 범죄예방정책국 간 협의로 천안교도소와 경북북부제3교도소로 이원화하여 관리하여 왔다.

보호감호 입소자 중 처우성과를 반영하여 자치 처우 대상자로 선정되면 천안교도소로 이감하여 자치 처우를 실시하였으나 수용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처우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8. 12월 천안교도소로 수용시설을 다시 일원화하여 2018. 12. 31. 현재 17명을 수용·관리 중에 있다.

| 그림 2-91 | 천안교도소 피보호감호자 생활복지관




생활관 입구 모습



생활관 내 독서실

| 표 2-55 | 피보호감호자 집행인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 연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집행인원 | 36 | 45 | 31 | 24 | 18 | 20 | 22 | 31 | 17 |

### 2) 평가 및 발전방향

독서실, 체력 단련실, 휴게실, 종교 집회실, 위탁 작업장 등 복지·종교·근로 시설이 갖춰진 독립된 수용동에서 자치생활을 하면서 피보호감호자의 처우 만족도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사전 적응력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마. 보호감호자의 사회적응력 배양

치료처우과 검찰사무관 최수종

### 1) 추진 배경 및 추진 경과

피보호감호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교도소 내 검정고시·학사고시 교과 과정을 설치하였고, 〈표 2-56〉과 같이 2010년 4명, 2014년과 2016년 각 1명, 2018년 2명의 검정고시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아울러 위생장갑 포장, 플라스틱 배관 조립 등 위탁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 표 2-56 | 피보호감호자 검정고시 합격 현황

(단위: 명)

| 구분 \ 연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계 | 4 | - | - | - | 1 | - | 1 | - | 2 |
| 중입자격 | - | - | - | - | - | - | - | - | - |
| 고입자격 | 3 | - | - | - | - | - | - | - | - |
| 고졸자격 | 1 | - | - | - | 1 | - | 1 | - | 2 |

| 그림 2-92 | 위탁 작업장




### 2) 평가 및 발전방향

중단된 학업을 지속함으로서 지적 자존감을 향상시켰고, 위탁 작업을 통하여 사회복귀를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보다 다양한 위탁 작업을 발굴하여 피보호감호자의 실질적 사회정착금 마련에 기틀을 다지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것이다.

## 바.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운영

치료처우과 검찰사무관 최수종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판사·검사·변호사·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의 위원으로 구성된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매월 1회 회의를 개최하여 치료감호, 보호감호 및 보호관찰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고 있다.

재범위험성이 낮아진 피치료감호자와 피보호감호자에게 치료감호 가종료 및 보호감호 가출소

결정을 통해 조기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스스로의 갱생 의지를 제고하는 한편,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가종료자·가출소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심사하여 가종료·가출소를 취소하고, 치료감호·보호감호를 다시 집행하게 함으로써 사회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2) 추진내용과 성과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의 위탁, 가종료·및 그 취소와 치료감호 종료 여부, 치료감호 기간만료 시 보호관찰 부과 여부에 관한 사항,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가출소 및 그 취소와 집행면제에 관한 사항,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부과 및 지시·감독과 그 위반 시의 제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결정하며, 결정현황은 〈제5장 통계 : 표 5-70, 표 5-71〉과 같다.

치료감호 가종료의 경우 치료경과가 양호하여 약물 또는 통원치료만으로도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판단될 때 병과된 징역형 등의 형기와 상관없이 가종료를 허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246명이 가종료되었다.

장기 피치료감호자의 가종료 시 사회보호시설 연계를 확대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위원들의 정신감정결과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심사에 반영토록 하고 있으며, 2018. 12. 1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판사·검사·변호사·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외에 보호처분 전문가인 법무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등 심사에 적정을 기하고 있다.

정신질환자는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발가능성이 상존하므로 가종료자 등의 현 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증상악화 등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아진 경우 가종료를 취소하여 치료감호를 다시 집행하도록 하는 등 가종료자의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한편, 보호감호 가출소 인원은 2005. 8. 4. 「사회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보호감호 수용자의 자연 감소와 잔류 강력사범에 대한 엄격한 심사 등으로 인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8년에는 23명이 가출소되었다.

### 3) 평가 및 발전방향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사회보호법」은 폐지되었으나, 보호감호를 집행 중이거나 집행대기 중인 자가 잔존하고 있어, 피치료감호자 및 피보호감호자의 인권보호와 사회보호를 위한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적정한 운영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 4. 정신질환 범죄자 관리 강화

## 가. 정신질환 소년원생 치료·관리 강화

치료처우과 사무관 김영배

### 1) 추진배경

정신질환을 가진 소년원생이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여 다른 학생들의 교육, 수용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정신질환 소년원생 치료·관리를 위한 근본적 환경 개선이 필요하였다.

### 2) 추진내용과 성과

정신과 전문의 정원 7명을 추가 확보(기존 5명)하여 전국 11개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에 배정하였고, 정신건강임상심리사도 15명 추가 채용하여 정신질환을 가진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집중 상담·관찰을 하고 있으며, 간호사 인력 4명을 증원하여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2018년도 예산에 의료소년원 신설을 위한 설계비 예산 3.25억 원을 확보하였다.

### 3) 향후 추진계획

정신과 전문의 직급 상향, 정신건강 간호사를 증원하는 등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우수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2020년 하반기까지 대전에 의료소년원을 신설하여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소년원생들을 집중 치료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근본적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나. 치료명령 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치료처우과 보호사무관 권은아

### 1) 추진 배경 및 추진 경과

2016. 12월 개정 「치료감호법」의 시행으로 경미한 강력 범죄를 저지른 주취·정신질환자 등에 대하여 사회 내 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치료명령제도가 도입되었다. 더불어 검사가 경미한 강력 범죄를 범한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과 상담·치료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지침」 대검예규 제873호를 제정하여 치료명령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다. 2016년 23명, 2017년 677명, 2018년 606명이 치료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들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 치료명령 협의체를 구축하였고, 서울대병원, 중앙대 병원 등 치료 기관을 지정하여 임상치료 및 인지행동 심리치료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 표 2-57 | 치료명령 사건 접수 현황

(단위: 명)

| 구분 \ 연도 | 2016 | 2017 | 2018 |
|---|---|---|---|
| 집행유예 | 11 | 480 | 476 |
| 선고유예 | 0 | 7 | 6 |
| 기소유예 | 12 | 190 | 124 |

### 2) 추진내용 및 성과

2017. 12월 「치료감호법」을 개정하여 주취·정신질환 이외 재범위험성이 높은 '마약중독'을 치료명령 대상에 추가하였고,(2018. 6월 시행) 대검찰청과 협의를 통하여 「마약류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지침」을 개정하여 마약류 사범에 대한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도입하는 등 치료명령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으로 구성된 치료명령 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실질적 치료의 효과를 높이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치료기관을 확대한 결과 현재는 전국 243개의 치료기관이 지정되었다.

### 3) 평가 및 발전방향

사회 내 사법적 치료제도의 도입을 통해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사회내 치료 및 관리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나,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므로 경미한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조기 개입을 보다 확대하여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받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중(重)범죄로의 전이를 차단하는 한편 치료명령의 실효성 제고와 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 다. 가종료 대상자 등 고위험 정신질환자 관리 강화

특정범죄자관리과 서기관 김양곤

#### 1) 추진배경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사건 증가와 관련하여 가종료 등 정신질환 대상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재범 억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였다.

#### 2) 추진내용과 성과

2018. 8월 가종료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감독 강화 세부 시행(안)을 일선에 시달하여 치료약물을 복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복약검사를 일부 고위험 대상자에서 모든 가종료 대상자로 확대 실시하였다. 정신질환 범죄자 중 약 복용 회피자, 인지능력 저하, 중증 정신질환자 등 약 복용이 여의치 않은 조현병 대상자들에게 1회 주사로 효과가 1~3개월 지속되는 장기지속형 주사제 치료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치료감호소에서 장기 지속형 주사제 치료를 받았던 대상자는 출소 후에도 연계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였다.

#### 3) 향후 추진계획

정신질환 대상자의 치료적 개입을 강화하여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복약검사 횟수를 상향하고 조현병 대상자에 대한 장기지속형 주사제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위험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등의 격리조치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복약검사 불응자, 복약 회피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가종료를 취소하고 위험한 대상자를 치료 시설에 재수용하는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5. 청소년 비행 예방 강화

### 가.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19~'23) 수립

소년범죄예방팀 사무관 이승원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017년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2018년 '서울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 등 날로

흉포화·집단화되는 청소년 강력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소년범죄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여론과 실효성 있는 소년범죄예방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법무부에서는 2018. 6월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10개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소년비행예방협의회」를 구축하고, 소년비행예방을 위한 정책연구,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2018. 12. 19.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였다.

| 그림 2-93 | 제1회 소년비행예방협의회




소년비행예방 협의회




자문위원 위촉장 전수

### 2) 주요내용 및 발전방향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은 비행 유입 단계부터 보호관찰, 소년원 등 비행 심화 단계까지 맞춤형 개입·처우를 실시함으로써 각 단계별로 비행 단절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소년범죄 피해자의 신체적·심리적 충격을 신속히 치유하고 피해경험의 부정적 전환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체계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은 〔예방〕, 〔교화〕, 〔보호〕, 〔협력〕 4대 핵심가치 아래 ① 위기청소년 비행유입 차단, ② 초기 비행소년 선도 및 진단 강화, ③ 소년범 재범방지 역량 강화, ④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개선, ⑤ 소년비행예방 협력체계 구축 등 5개 주요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법무부는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청소년 범죄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고, 청소년이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표 2-58 |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 비전 및 정책목표

| | | | | |
|---|---|---|---|---|
| 비전 |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 | | |
| 목표 | 청소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 | | |
| 핵심 가치 | 예방 | 교화 | 보호 | 협력 |
| 정책목표 | (01)<br>위기 청소년 비행유입 차단 | • 국민이 공감하는 합리적 법제 개선<br>• 가출 등 위기 청소년 개입 강화<br>• 비행예방교육 프로그램 전문화 | | |
| | (02)<br>초기 비행소년 선도 및 진단강화 | • 초기단계 비행소년 및 보호자 교육 강화<br>• 소년사건 단계별 선도 및 진단 강화 | | |
| | (03)<br>소년범 재범방지 역량 강화 | • 전문처우를 통한 보호관찰 지도·감독 강화<br>• 명예보호관찰관 등 사회자원 활용 활성화<br>• 정신질환 소년범 치료체계 구축<br>• 소년원 등 교화교육 내실화 및 처우 개선<br>• 국민이 함께하는 민영소년원 설립<br>• 지역사회와 연계한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 | | |
| | (04)<br>피해자 보호·지원체계 개선 | • 신속한 피해자 통합 지원체계 구축<br>• 피해자 재판참여 등 권리 확대 | | |
| | (05)<br>소년비행예방 협력체계 구축 | • 소년비행예방 정책기반 구축<br>• 소년비행예방 정책 실현을 위한 인프라 확충<br>• 부처 간 협력을 통한 비행예방체계 강화 | | |

## 나. 비행예방교육 프로그램 고도화

소년범죄예방팀 사무관 김현정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실효성 있는 비행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고 직원의 전문성 및 교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행예방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고도화 사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비행예방교육 프로그램 고도화는 전국 16개 청소년꿈키움센터(청소년비행예방센터) 기관별로 1개의 교육프로그램을 선정하여 프로그램 운영 담당직원,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한 T/F를 통해 프로그램 내용을 재구성하고, 기관만의 특별한 운영기법을 개발·적용하는 등의 프로그램 고도화 절차를 추진하여 그 결과를 '비행예방교육 프로그램 고도화 발표회'를 통해 다른 기관과 공유하였다.

**| 표 2-59 |** 연도별 비행예방교육 프로그램 고도화 현황

| 2013년(8종) | 2016년(6종) | 2017년(8종) | 2018년(4종) |
|---|---|---|---|
| ① 학교폭력예방<br>② 성비행예방 ③ 절도예방<br>④ 교통안전 ⑤ 법 교 육<br>⑥ 진로지도 ⑦ 회복프로그램<br>⑧ 분노조절 연극치료 | ① 학교폭력예방<br>② 성비행예방 ③ 절도예방<br>④ 교통안전 ⑤ 중독예방<br>⑥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특별교육 | ① 절도예방 ② 폭력예방<br>③ 사이버범죄예방<br>④ 교통안전 ⑤ 진로지도<br>⑥ 초범예방 ⑦ 성비행예방<br>⑧ 부모-자녀 동반프로그램 | ① 역 할 극<br>② 진로체험<br>③ 모의법정<br>④ 가족교실 |

2018년도에는 체험중심의 인성교육, 보호자교육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역할극, 진로체험, 모의법정, 가족교실' 등 총 4개 분야를 선정하여 비행예방교육 프로그램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 12월 13~14일 동안 전국 청소년꿈키움센터 직원 및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비행예방교육 프로그램 고도화' 발표회를 개최하여 프로그램의 구성, 교수기법, 시범운영 결과 등을 공유하였다.

**| 표 2-60 |** 2018년도 비행예방교육 프로그램 고도화 주요 내용

| 프로그램 | 고도화 주요 내용 |
|---|---|
| 역 할 극 | 역할극을 활용한 자기이해 및 타인공감, 문제행동에 대한 '자발적 해결모델'도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4차시)<br>① 여는마당(공감하기) ② 펼치는 마당(역할극 구성)<br>③ 다지는 마당(모의법정) ④ 나누는 마당(소감·다짐 나누기) |
| 진로체험 | 자유학기(년)제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토론, 모의 국무회의 시연 등을 포함하여 체험 위주 프로그램 구성(3차시)<br>① 기관 소개, 법퀴즈 ② 청소년 관련 최근 주제 등 토론 ③ 모의국무회의 체험 |
| 모의법정 | 대화형식의 모의법정 시나리오 제작, 유·무죄에 대한 토론형 진행 등으로 교육생의 참여도·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2차시)<br>① 재판 절차 및 의의 등 이해하기 ② 모의법정 체험 |
| 가족교실 | 부모-자녀가 동반참여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와 의사소통능력을 증진할 수 있는 활동형 프로그램 구성(4차시)<br>① 오리엔테이션 ② 우리가족 되돌아보기(활동지, 퀴즈 등)<br>③ 동물 가족화 그리기 ④ 발표 및 소감 나누기 |

**| 그림 2-94 |** 비행예방교육 프로그램 발표회





### 2) 평가 및 발전방향

법무부 청소년꿈키움센터의 비행예방교육 프로그램 고도화는 프로그램 전문성 강화는 물론 자체직원의 교수역량 향상에도 기여하여 청소년꿈키움센터가 명실공히 '비행예방교육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비행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직원의 전문성 및 교수역량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비행예방에 앞장설 계획이다.

## 다. 신규 비행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소년범죄예방팀 사무관 김현정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저연령화·흉포화·지능화 되고 있는 청소년 폭력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국가기관의 폭력예방 교육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2018년에 '청소년 폭력예방 통합 프로그램' 및 '가족문제 해결중심 보호자특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번에 개발한 프로그램은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예방 범정부 종합대책」(2017. 12. 22.) 법무부 과제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대내·외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활용 가능한 비행 단계별 폭력예방 프로그램과 가정의 보호력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활용에 목적을 두고 조선대 권해수 교수(청소년 폭력예방 통합프로그램), 숭실사이버대 손진희 교수(가족문제 해결중심 보호자 특별교육 프로그램)가 참여하였다.

**| 표 2-61 |** 2018년도 신규 개발 비행예방교육 프로그램 주요내용

| 청소년 폭력예방 통합 프로그램 | 가족문제 해결중심 보호자특별교육 프로그램 |
|---|---|
| - 구성 : 총 37회기 (핵심주제 10개 선정)<br>- 핵심주제 : ① 자기이해 및 동기 강화 ② 폭력이해 ③ 폭력과 관련된 왜곡된 인지신념 이해 ④ 폭력 인지 재구성 ⑤ 폭력 관련 정서 모니터링 ⑥ 분노조절 기술 훈련 ⑦ 친사회적 기술훈련1(비폭력대화) ⑧ 친사회적 기술훈련2(공감훈련) ⑨ 문제해결기술 훈련 ⑩ 마음챙김 명상<br>- 운영 : 8회기*5일(회기당 40분), 최소 4회기 이상 운영<br>- 특징 : 회기별 유기적 연계, 위험요인-보호요인 고려, 실무자가 융통성 있게 활용 가능 등 | - 구성 : 총 16회기 (5개 과정으로 구성)<br>- 과정 : ① 기초과정(5회기, 가족문제 발견)<br>② 전개과정(3회기, 관계개선)<br>③ 역 할 극(3회기, 갈등극복)<br>④ 심화과정(2회기, 가족화합)<br>⑤ 정리과정(3회기, 미래희망 준비)<br>- 운영 : 4~8회기 등 탄력적 구성·운영 (회기당 50분)<br>- 특징 : 부모-자녀 간 갈등 상황에서 양쪽 입장 모두 이해할 수 있고, 실제 문제해결을 위한 동기부여가 가능하도록 구성 등 |

| 그림 2-95 | 비행예방교육 프로그램




청소년 폭력예방 통합프로그램




가족문제 해결중심 보호자특별교육 프로그램

### 2) 평가 및 발전방향

'청소년 폭력예방 통합프로그램' 및 '가족문제 해결중심 보호자 특별교육 프로그램'은 국내·외 유사 프로그램 현황을 면밀히 분석한 후 프로그램 운영 실무자가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모듈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프로그램 진행자(교사·강사)를 위한 상세한 운영기법 소개 등을 통해 실무현장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완성도 및 활용도를 높였다.

신규 개발 프로그램의 현장적용을 확대하고자 2019년에는 보호기관 교육담당 직원 대상으로 워크숍을 운영하고, 법무연수원 교육과정에 편성할 계획이며, 청소년 관련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권역별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주관 연수과정을 개설·운영하여 프로그램 적용 확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라. 명예 보호관찰관 제도 활성화

소년범죄예방팀 박우근 사무관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명예 보호관찰관 제도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청소년 강력범죄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2017. 9월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2017. 11월 684명으로 시작한 명예 보호관찰관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재범위험성이 높은 보호관찰 청소년 지도에 전문적 역량을 보유한 청소년 상담 전문가, 심리·중독치료 전문가 등 지역사회

우수자원을 지속 발굴한 결과, 2018. 12월 기준 활동하는 명예보호관찰관이 1,246명(약 1.8배 증가)으로 확대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명예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상담, 심리치료, 원호 활동 등을 통해 정서적·심리적 지지자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보호관찰 청소년의 성행개선과 재범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본부에서는 명예 보호관찰관의 동기 부여를 위해 실비사례금 증액 추진, '올해의 명예 보호관찰관' 시상식 개최, 사례집 발간, 핸드북 제작, 적극적인 제도 홍보 등을 실시하였으며,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를 위해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서 명예 보호관찰관 선도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 그림 2-96 |** 명예 보호관찰관 발대식 등



명예 보호관찰관 발대식



선도역량 강화 교육

**| 표 2-62 |** 명예 보호관찰관 활동 미담 사례

| 제목 | 내용 |
|---|---|
| 심장이 아픈 아이 | • 임신 중인 보호관찰 청소년의 출생 예정인 태아가 선천적 희귀 심장질환을 지녀 출생 직후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나 미혼모인 보호관찰 청소년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술비 마련에 곤란을 겪고 있었음<br>• 이에 명예 보호관찰관이 부산대병원 의료사회사업실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요청하여 출산 예정인 태아의 수술비를 마련해준 사례 |
|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 • 조손가정에서 성장하여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업을 중단한 보호관찰 청소년이 명예 보호관찰관의 꾸준한 상담과 지원을 통해 검정고시 합격, 스킨스쿠버 자격증 취득, 진로적성교육 참가, 취업, 경찰서 선도프로그램 보조강사 활동 등 성공적인 사회적응을 보인 사례 |
| | • 부상으로 복싱을 그만 두고 방황하다 비행에 빠진 보호관찰 청소년이 '성우'라는 새로운 꿈을 갖고 지속적인 노력과 명예 보호관찰관의 지지·도움을 통해 방송국 스텝으로 취직하게 된 사례 |

### 2) 평가 및 발전방향

명예 보호관찰관 제도는 민·관 협력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의 선도와 지역사회 안전을 도모하는 모범적인 사례이며 규모 또한 1년 동안 약 2배 확대되었다. 향후에는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명예 보호관찰관의 관리 방안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전문화교육을 실시하고, 명예 보호관찰관 활동 평가 기준을 수립하여 포상, 해촉 등 체계적 관리에 기반한 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 마. 고위험군 전담제 시행

소년범죄예방팀 박우근 사무관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고위험군 전담제는 소년원 출원생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집중 관리와 전문적 처우 실시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일반적인 사례에 비해 4배 이상 밀착 집중 감독을 실시하는 것이 그 내용으로 2017. 11 ~ 12월 2개월간의 시범실시 후 2018. 1월 전국에 확대 시행하였다.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의 고위험군 전담직원은 재범위험성이 높은 보호관찰 청소년에 동적 재범위험성 평가, 심층 처우계획 수립, 상담형 면담 실시, 원호지원 종합시스템 활용 연계 등 다각적 접근을 통해 다양한 재범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 표 2-63 | 고위험군 관리 적용 대상 및 인원('18. 12월 기준)

| 분류 | 계 | 임시퇴원 | 초기 집중분류 | 소재추적 등 급외자 | 비고 |
|---|---|---|---|---|---|
| 인원 | 1,947 | 517 | 1,261 | 176 | 소년 현재원 대비 약 14.5% 수준 |

### 2) 평가 및 발전방향

고위험군 청소년에게는 일반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지도감독보다 4배 이상 집중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재범 요인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원호와 처우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고위험군 전담제는 소년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률을 감소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전년 대비 0.5% 감소), 향후 사범별 상담형 면담 프로그램 개발 및 소년 특화형 고위험군 관리 체계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 표 2-64 |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

| 연도 | 2016 | 2017 | 2018 |
|---|---|---|---|
| 재범률(소년) | 12.3% | 12.8% | 12.3% |

## 바. 부처간 협업 강화 및 사회자원 활용

소년범죄예방팀 박길수 사무관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교육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비행청소년의 심성순화, 성행개선, 재범방지를 위해 교사 멘토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연계, 숲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행청소년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하였다. 또한, 현대·기아차, KT&G, ㈜에듀윌 등 민간자원과 협업[15]하여 빈곤·소외계층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생계비, 교복비,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업도 추진하였다.

| 표 2-65 | 처우 프로그램 실시 현황

| 협업명 | 협력 부처 | '18년도 협력 규모 |
|---|---|---|
| 교사 멘토링 | 교육부 | 57개 기관 멘토링 1,181명 |
| 학교밖청소년 지원 | 여성가족부 | 57개 기관 936명 연계 |
| 숲체험 | 산림청 | 20개 기관 751명 참여 |

### 2) 평가 및 발전방향

부처 협력 프로그램 및 사회자원 활용 사업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관찰관이 실시하는 면담위주 지도감독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기여하였고, 빈곤·소외계층 청소년의 학업, 학교생활, 거주환경 개선은 실질적 사회정착 지원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처 협업과 사회자원 활용을 통해 비행청소년의 성행개선 및 사회정착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15) 2018년 현대·기아차(2억3천만원), KT&G(1억5천만원), 에듀윌(검정고시 수강권 330개, 약 3억3천만원) 등 민간 자원을 활용한 소외계층 보호관찰 청소년 지원 실시

| 그림 2-97 | 숲 체험 언론보도


방황하는 청춘, 숲에서 '방향'을 찾다

## 6. 소년재비행방지 역량 강화

### 가. '교육·수용 전담제' 도입 등 소년원 교정교육 전문성 강화

소년보호과 사무관 정 윤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소년원은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수용·보호하면서 교과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의료재활 등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고 안정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

1942년 처음 개원할 당시에는 교육보다 수용관리에 중점을 두었으나, 이후 꾸준히 교육기능을 강화하여 제과제빵, 헤어디자인, 자동차 외장관리 등 다양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고등학교 교과 교육과정 및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인성교육과 의료재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2018년에는 잇따른 청소년 폭행사건 발생으로 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범죄소년의 교정교육 내실화와 재범방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2018년 증원된 감호전담인력 38명을 활용하여 주간 교육전담팀과 야간·휴일 수용전담팀(4부제)을 별도 구성하여 운영하는 '교육·수용 전담제'를 시행하였다. 부산과 광주 2개 소년원에 우선 도입하여 전문화된 처우 제공 등으로 교정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였다.

**| 그림 2-98 |** 교육·수용 전담제 언론보도



법무부, 소년원 관리 직원 충원…교육·수용담당 분리

기사입력 2018/09/14 17:00 송고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법무부는 소년원 근무자의 만성적인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올해 수용관리 인력 38명을 충원해 교육 및 수용관리 체계를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인력 충원으로 부산, 광주 등 일부 소년원은 주간에 교정교육을 맡는 전담팀과 야간에 수용관리를 맡는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 직원들이 안정된 근무여건에서 교정교육 및 수용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교육 및 수용관리 전담직원을 분리하는 시스템을 다른 소년원으로도 확대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파이낸셜뉴스 글자크기 줄간격 인쇄하기 취소

**법무부, 소년원 관리 인력 38명 충원…교정교육·수용관리 전담팀 분리**

파이낸셜뉴스 | 입력 :2018.09.15 09:05 | 수정 : 2018.09.15 09:05




만성적인 소년원 근무자의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부가 올해 수용관리 인력을 충원해 교육 및 수용관리 체계를 개선했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소년원은 비행청소년의 교육기관인 동시에 수용기관으로, 24시간 감호근무가 필수적이나 그동안 인력부족으로 소년원 교사들이 교육과 수용관리 업무를 병행해 왔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 최근 2년간 소년원 직원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이 83.5시간에 달했으며, 30시간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장시간 근로시간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올해소년원 교대근무인력 38명을 충원했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부산, 광주 등 일부 소년원은 주간에 교정교육을 맡는 전담팀과 야간에 수용관리를 맡는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했다. 직원들이 안정된 근무여건에서 교정교육 및 수용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소년원 교사들의 안정된 근무여건 조성은 비행청소년 교육 효과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이 마련되어 비행청소년의 재범방지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교육 및 수용관리 전담직원을 분리하는 시스템을 다른 소년원으로도 확대해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는 9개 소년원의 직업훈련교사를 야간당직근무에서 제외하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교정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전국 소년원학교의 명칭 및 2018년 소년원 교육과정은 다음〈표 2-66〉과 같다.

**| 표 2-66 |** 전국 소년원학교의 명칭 및 2018년 소년원 교육과정

| 기 관(학교명) | 설립일 | 개교일 | 대상 | 교 육 과 정 |
|---|---|---|---|---|
| 서울소년원<br>(고봉중·고등학교) | 1942. 4. 20. | 2000. 8. 30. | 9호<br>10호 | • 중·고등학교 교과교육<br>• 직업능력개발훈련(제과제빵, 사진영상, 한식조리, 헤어디자인)<br>•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
| 부산소년원<br>(오륜정보산업학교) | 1947. 1. 18. | 2000. 8. 31. | 10호 | • 직업능력개발훈련(자동차정비, 용접, 제과제빵, 헤어디자인)<br>•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br>• 분류심사 |
| 대구소년원<br>(읍내정보통신학교) | 1945. 11. 21. | 2000. 8. 31. | 9호<br>10호 | • 직업능력개발훈련(제과제빵, 커피바리스타, 케이크디자인)<br>•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br>• 분류심사 |

| 기 관(학교명) | 설립일 | 개교일 | 대상 | 교 육 과 정 |
|---|---|---|---|---|
| 광주소년원<br>(고룡정보산업학교) | 1946. 11. 7. | 2000. 9. 6. | 9호<br>10호 | • 직업능력개발훈련(자동차정비, 용접, 건축환경설비, 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자동차외장관리·전기)<br>•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br>• 분류심사 |
| 전주소년원<br>(송천정보통신학교) | 1967. 3. 25. | 2000. 9. 6. | 9호<br>10호 | • 중학교 교과교육<br>• 직업능력개발훈련(헤어디자인, 공간디자인)<br>•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
| 대전소년원<br>(대산학교) | 1998. 7. 1. | 2002. 3. 4. | 7호<br>8호<br>9호<br>10호 | • 의료·재활교육, 8호(男) 교육<br>•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br>• 분류심사 |
| 청주소년원<br>(미평여자학교) | 1909. 7. 1. | 2010. 5. 4. | 9호<br>10호 | • 중학교 교과교육(女)<br>• 직업능력개발훈련(예술분장, 커피바리스타, 헤어디자인, 제과제빵)<br>•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
| 안양소년원<br>(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 | 1946. 10. 1. | 2000. 8. 30. | 8호<br>10호 | • 8호(女) 교육<br>• 직업능력개발훈련(헤어디자인, 피부미용, 제과제빵, 서비스마케팅)<br>•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
| 춘천소년원<br>(신촌정보통신학교) | 1963. 9. 9. | 2000. 9. 4. | 9호<br>10호 | • 직업능력개발훈련(헤어디자인, 가발전문, 스포츠마사지)<br>•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br>• 분류심사 |
| 제주소년원<br>(한길정보통신학교) | 1987. 11. 9. | 2000. 8. 30. | 8호<br>9호<br>10호 | • 8호(제주지역 男) 교육<br>• 직업능력개발훈련(제과제빵, 골프매니지먼트)<br>•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br>• 분류심사 |

### 2) 평가 및 발전방향

'교육·수용 전담제' 도입으로 안정된 근무여건 조성 등 소년원 교육 내실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가 필요 인력을 확보하여 순차적으로 '교육·수용 전담제'를 전국 소년원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2019년에는 여성소년원에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소년원생 선호도를 반영한 재미있고 배우고 싶은 직업훈련 교육과정으로 직업교육을 개편할 예정이다. 향후 소년원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재범방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나. 소년원생 수용환경 개선 등 인권처우 확대

소년보호과 사무관 정 윤

### 1) 추진배경 및 추진내용

소년원생들의 조화로운 성장을 유도하는 인권적 처우환경 조성을 위해 국제인권기준(수용소년의 인권보호와 개별처우를 위해 1인실 사용 권장)을 고려 10~15인 규모의 대형 집단생활실을 4인 이하 소규모 생활실로 전환하는 '소년원 시설 현대화 사업'을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생활실 내 화장실·세면실 설치, 개인별 침대·책상 제공 등 수용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현재 전국 11개 소년보호기관 중 4개 소년원(대구·광주·춘천·청주)이 사업 완료되었고, 2018년에는 전주소년원 생활관이 신축되었으며, 2019년 상반기에는 교육관이 완공될 예정이다.

| 그림 2-99 | 소년원 시설 현대화 사업



집단 생활실



4인 이하 소규모실



개방형 Hall식 생활관

이와 더불어 소년원생의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2018. 1. 19.~1. 26. 전국 소년보호기관의 의료처우 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시스템 전반을 개선하였다.

| 그림 2-100 | 법무부 장관, 소년원 의료처우 실태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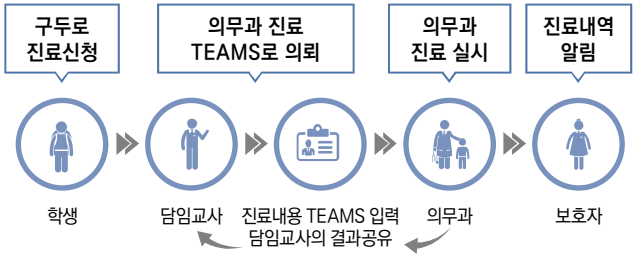




주요개선 내용으로는 전국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부속의원을 개설하고, 대한의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문의 재능기부를 활성화 하였다. 재능기부 의료인을 포함하여 기관별 '의료처우자문위원회'를 신설하였고, 지역사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신속한 진료 협조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생활관 순회 진료를 확대하고, 의료처우 내용을 보호자에게 문자로 제공하는 등 전문적·체계적인 의료시스템을 구축하여 향상된 의료처우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다.

**| 그림 2-101 |** 소년원 의료처우 개선




의료시스템 개선뿐만 아니라 소년원생의 조화로운 성장과 발달을 위해 올레길 하이킹, 국립공원 생태체험학습 등 다양한 체험학습 위주의 열린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박 2일 가족캠프 등 가족참여형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고 면회시간을 연장하여 부모와 자녀가 소통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 그림 2-102 |** 소년원 학생 외부 체험학습



### 2) 평가 및 발전방향

생활실을 4인 이하로 소규모화하여 인권보호와 개별처우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소년원생 정서적 안정과 비행학습 방지에 기여하였다.

이후에도 소년원 시설 현대화사업이 미완료된 6개 기관의 생활실 소규모화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365일 상시 온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편의성을 높인 생활형 교복을 지급하는 등 더 나은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해 수용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체육시간을 늘리고, 운동기구 구비 및 운동장·강당 시설환경 개선 등 인권적 처우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 다. 민영소년원 설립 추진

소년보호과 사무관 정 윤

### 1) 추진배경 및 추진주요내용

국내 최초의 민영 교정시설인 '소망교도소'가 2010. 12월 개소한 이후 종교계를 중심으로 민영소년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가 지속되어 정부차원에서도 민영소년원 설치·운영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기반한 개방형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정교육을 도입하여 보호소년에 대한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열린 소년보호정책을 위해 2018년에 민영소년원 설립을 추진하였다.

민영소년원 설립 근거 등 민간위탁 규정 마련을 위한 「민영소년원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018. 8. 21.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18. 8. 27. 국회에 제출되었다.

법무부에서는 민영소년원법 국회 제출 이후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안을 수정·검토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익성이 매우 강한 민영소년원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탁자를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 법무부의 감독 및 승인권을 강화하였으며, 보호소년의 개별적 특성 및 개방처우에 적합한 소규모시설로 명시하였다.

| 그림 2-103 | 민영소년원 관련 언론보도

[민영소년원법 주요 내용]

소년원 설치·운영 등 소년보호업무 민간 위탁 근거 마련, 법령 위반 등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업무 정지 또는 위탁계약 해지,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민영소년원 운영 경비 지급, 보호소년의 처우는 국영소년원과 동등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 등


서울경제

2018년 01월 12일 금요일 A26면 사회

"민영 소년원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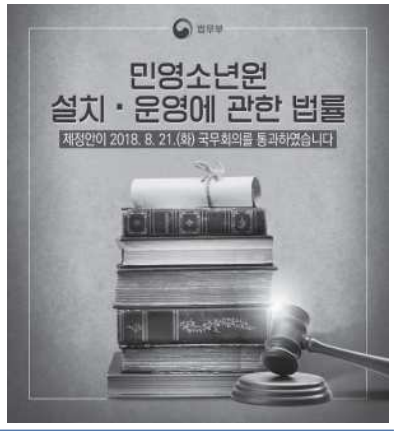
박상기 법무 기자간담

불고계서 복국적 존심 표명

관련 법률안 마련 주요 지시


법률신문

'민영소년원' 설립 추진… 2022년 출범 목표




## 2) 평가 및 발전방향

민영소년원 설립으로 처우프로그램의 다양성과 탄력성을 높여 교정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민간 부문의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유입을 통한 소년보호행정의 질적 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민영소년원법이 제정되면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절차를 통해 민간 운영자를 선정한 후 이르면 2023년에 민영소년원의 운영을 개시할 수 있다. 민영소년원의 성공적인 설립·운영으로 소년범에 대한 선도와 교육효과를 높여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7.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법교육 전개

보호정책과 사무관 이동준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국민의 법의식 개선과 실질적 법교육을 통한 불필요한 법적 분쟁 예방 및 학교폭력 등 청소년 비행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하여 체계적인 법교육을 실시하였다. 중점 사항은 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법교육위원회 회의 개최, 청소년 법교육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수요자별 맞춤형 법교재 개발, 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국 14개 법학전문대학원과 MOU를 체결하였고, 지역 법교육 인프라 확산을 위한 법교육 관련 유관단체 협력 및 민간 법교육 지원,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쉽고 재미있게 법과 질서의 소중함을 체득할 수 있도록 법체험 기관인 '솔로몬로파크'를 운영하였다.

## 2) 추진성과

### (1) 법교육 체계 구축

2005. 3월 법조계·학계·교육계·언론계 등 사회 각계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된 법교육 연구위원회를 발족하여 법교육 6대 연구과제를 선정한 후 2006년까지 총 7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2006년 7월 17인으로 구성된 법교육 자문위원단을 구성·운영하여 민·관 협력방안 등 법교육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얻었다.

2008. 6월「법교육지원법」시행 및 법교육위원회 구성을 통해 법교육 연구 및 추진 체계 구성을 마무리하였으며, 2009. 1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법교육위원회를 총 20차례 개최하여 법교육 프로그램 개선사항 및 발전방향에 대해 심의하였다.

| 표 2-67 | 법교육 6대 연구과제

| | |
|---|---|
| 법교육 6대 연구과제 | ① 국내·외 법교육 실태 점검 및 법교육 추진방향<br>② 법교육 관련 교육과정·교과서 분석<br>③ 법교육 프로그램 및 학습교재 개발방안<br>④ 교사 등 법교육 관련자 전문성 강화 지원방안<br>⑤ 법조계, 법과대학 등 법교육 지원방안<br>⑥ 평생교육, 시민교육으로서의 법교육 연계 방안 |

### (2) 수요자별 맞춤형 법교재 개발

2005. 9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일상생활과 법, 법의 기본원리와 가치, 경제생활과 소비자, 범죄와 형사절차, 직장 생활과 근로자, 가정생활과 가족, 국가와 국민 생활의 영역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의 법과 생활'을 시작으로, 2005. 12월 대학생 및 시민 대상 '한국인의 법과 생활', 2006. 1월 법교육 프로그램 강사·교사용 지도서 '법은 내 친구', 2006. 4월 어린이용 법교육 교재인 '나는야 법짱'을 발간하였으며, 이후 대상을 확대하여 2012년 3월에 다문화가정 대상 'Fun Fun 대한민국의 법'과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 '우리법 바로알기', 2018년에는 일반 시민 대상 '클릭, 안전한 사이버 세상으로(LAW)'를 발간·배포 하였다.

**| 표 2-68 |** 대상별 법교육 교재

| 대상 | 도서명(발간일) |
|---|---|
| 중·고교생 | 청소년의 법과 생활('05.12./'07.2./'08.1./'10.3./'11.3./'13.3./'14.2./'16.3./ '18.10.), 만화로 보는 우리나라 헌법의 역사('09.7.), 헌법재판소 판례로 사회 교과서 200% 활용하기('10.2.), 학교폭력 예방 소책자('12.6.), 알고보니 든든한 축구비법('12.10.), 장난과 범죄사이('13.) |
| 대학생·시민 | 한국인의 법과 생활('05.12./'07.2./'08.2./'09.2./'10.2./'11.3./'13.3./'15.9./'17.9./'18.10.), 불경기를 이겨내는 생활법률('09.2.), 아뿔싸! 알면서도 속는 사이버범죄('09.4.), 알면 힘이 되는 알짜배기 생활법률('10.6.), 축구 잘하는 법(法)('11.12.), 학교폭력 예방 소책자('12.6.), 어르신을 위한 알면 알수록 좋은 법('12.8.), 희망을 만드는 법('13.9.), 보배야 행복해지는 법을 알려줘(점자 및 음성도서)('13.9.), 클릭, 안전한 사이버 세상으로(LAW)('18.10) |
| 법교육 강사·교사 | Law Educator Ⅰ·Ⅱ, 법은 내 친구('06.1.), 학교폭력예방 가이드북('08.3.), 학생자치법정 가이드북('08.5.), 학교폭력 OUT('09.12.), 법사랑 사이버랜드를 활용한 수업지도안('12.11.),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강의안('12.6.), 강력범죄 예방 강의안(('13.3.) 및 가해방지 강의안('13.10.), (헌)법교육 종합 콘텐츠 DVD('13.10.), 쉽게 가르치는 우리헌법(중·고 사회용)('15.12.), 아동학대 예방 법교육 교재 및 리플릿('16.9.) |
| 어린이 | 나는야 법짱(06.4.), 손오공 무법소탕기Ⅰ·Ⅱ('06.9.) 및 Ⅲ('11.6.), 함께하는 법이야기('07.11.), 법에게 물어봐('08.4.), 만화로 배우는 우리나라 헌법('09.1.), 학교폭력 예방 소책자('12.6.), 홍비홍시와 함께하는 소중한 나와 우리('12.11.), 우리 공주의 나를 사랑하는 법('13.3.), 헌법아! 놀자Ⅰ·Ⅱ('13.9.), 손오공 무법소탕기 Ⅳ('13.11.), 나는야! 법짱('13.12.), 내친구 LAWⅠ·Ⅱ('15.2.), 조선은 법치국가다('15.5.), 우리 모두가 주인이에요 및 일곱 난쟁이 집에도 규칙이 필요해('15.12.), 우리곁엔 헌법('16.7.), 생각이 자라나는 솔로몬의 학생법정('16.8), 교과서 속 법이야기('17.11.) |
| 다문화·북한 이탈 청소년 | Fun Fun 대한민국의 법('12.3.), 우리법 바로알기('12.6.), 우리가 만드는 행복한 법세상 및 다문화 사회 청소년의 법과 생활('15.6.) |

### (3)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005년 직무연수를 통해 학교현장에서 법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법 관련 전문성을 함양하고, 법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한 '교사 법교육 직무연수'를 시작으로, 2005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2006년 '북한이탈 청소년 법교육', '법교육 출장강연', '학생자치법정', 2009년 '우리헌법 만들기 공모전', 2010년 '중학생 생활법 퀴즈대회', 2011년 스포츠 법교육, 2014년 '헌법토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일상생활 속 법교육 확대를 위해 2007년

'시민법률콘서트', 2013년 '시민로스쿨' 및 2013년 '법사랑학교', 2015년 12월부터 '유아법교육'을 실시하였고, 2016년 11월부터 '찾아가는 로파크' 버스를 도입해 법적 인프라가 부족한 도서산간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법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8년에는 독후 활동을 결합한 유아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법교육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 표 2-69 | 법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단위 : 명)

| 법교육 프로그램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모의재판 경연대회 | 217팀 | 153팀 | 98팀 | 319팀 | 279개팀 | 340팀 | 244팀 | 389팀 | 195팀 | 32팀 |
| 북한이탈 청소년 | 985 | 999 | 1,227 | 1,480 | 1,351 | 1,606 | 1,730 | 1,808 | 2,068 | 2,103 |
| 법교육 출장강연 | 165,345 | 146,131 | 475,913 | 455,847 | 574,034 | 347,180 | 480,170 | 777,239 | 1,175,705 | 507,341 |
| 학생자치법정 | 34개교 | 49개교 | 388개교 | 660개교 | 1,045개교 | 1,580개교 | 1,720개교 | 1,139개교 | 1,080개교 | 965개교 |
| 우리헌법 만들기 | 285편 | 1,105편 | 684편 | 274편 | 890편 | 1,588편 | 951편 | 971편 | 1,007편 | 1,040편 |
| 생활법 퀴즈대회 | - | 7,031 | 1,650 | 1,332 | 1,469 | 2,385 | 2,053 | 1,384 | 1,376 | 992 |
| 스포츠 법교육 | - | - | 122 | 155 | - | - | - | 13,535 | 6,224 | 4,228 |
| 헌법토론대회 | - | - | - | - | - | 1,785 | 1,939 | 1,716 | 1,144 | 400 |
| 시민법률콘서트 | 1,590 | 2,000 | 5,490 | 2,900 | 3,042 | 2,654 | 1,366 | 2,848 | 3,460 | 2,950 |
| 시민로스쿨 | - | - | - | - | 550 | 2,230 | 2,754 | 4,078 | 7,353 | 6,071 |
| 법사랑학교 | - | - | - | - | 50개교 | 460개교 | 797개교 | 282개교 | 165개교 | 152개교 |
| 유아법교육 | - | - | - | - | - | - | - | 429 | 733 | 1,347 |
| 찾아가는 로파크 | - | - | - | - | - | - | - | 181 | 15,271 | 20,966 |

### (4) 법교육 유관단체 협력 및 민간 법교육 지원

2006. 3월 법교육 수업모형 개발 등 청소년 법교육 사업 공동추진을 위해 서울대학교(사범대학)와 체결한 MOU를 시작으로, 서울시립대, 2007년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 여성 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이화여자대학교, 2009년 초등 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서울교육대학교, 준법풍토 조성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및 동아일보와 공동으로 MOU를 추진하였다.

또한 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국 14개 법학전문대학원과 MOU를 체결하고, 부산 솔로몬로파크 건립 및 지역 법교육 인프라 확산을 위해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과 MOU를 체결하였다.

| 표 2-70 | 연도별 MOU체결 현황

| 연도 | MOU체결 대상 |
|---|---|
| 2006년 | 서울대학교 사범대, 서울시립대학교(법정대학) |
| 2007년 | 교육인적자원부, 이화여자대학교 |
| 2009년 | 서울교육대학교, 대한변호사협회·동아일보, 법학전문대학원 6개교<br>(고려대, 부산대, 전북대, 경희대, 전남대, 성관관대) |
| 2010년 |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문화체육관광부, 법학전문대학원 3개교<br>(이화여대, 중앙대, 연세대) |
| 2011년 | 법학전문대학원 3개교(제주대, 경북대, 한양대) |
| 2012년 | 법학전문대학원 2개교(충남대, 동아대) |
| 2016년 | 한국프로농구연맹(KBL), 한국야구위원회(KBO) |

그 밖에 민간의 법교육 연구활동을 위해 약 30여명으로 구성된 '법교육학회' 창립을 지원하였고, 법교육의 확산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 부설 '한국법교육센터'의 설립을 지원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법무부는 「법교육지원법」 제5조에 따라 역량있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법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13년부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사법교육원, 한국법교육센터,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청소년희망재단, 청소년교육전략21,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서울준법지원센터를 비롯한 74개의 소속 기관 등 총 83개 기관을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하였다.

### (5) 법 체험기관 '솔로몬 로파크' 운영

2007년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쉽고 재미있게 법과 질서의 소중함을 체득할 수 있도록 대전에 솔로몬로파크를 설립하였다.

대전 솔로몬로파크는 법연수관(2008. 1월 개관)과 법체험관(2009. 3월 개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법연수관에서는 어린이 법탐험캠프, 중학생 법사랑캠프 등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과 교사,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법연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법체험관은 법역사관, 모의국회, 모의법정, 어린이 법짱마을 등으로 구성되어 생생한 법률 현장 체험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증가하는 법체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16년 부산 솔로몬로파크를 건립하였다. 대전과 달리 부산 솔로몬로파크는 헌법배움터, 선거체험관, 법놀이터 등으로 구성된 법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다.

충청권(대전 로파크), 영남권(부산 로파크)과의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고 호남권 법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호남지역 교통의 중심지인 광주에 솔로몬로파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설계를 시작하였고 2019년 공사 착공, 2022년에 준공 및 개소할 예정이다.

| 그림 2-104 | 대전·부산 솔로몬로파크 전경



대전 솔로몬로파크



부산 솔로몬로파크

### 3) 평가 및 발전방향

「법교육지원법」 제4조에 따라 법교육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심의를 위해 국가기관 및 학계·교육계 등 민·관 전문가 15명이 참여하는 법교육위원회 정기회의가 2018년 2회 개최되었으며, 2018년 주요 법교육 사업 실적을 공유하고 3개의 법문화진흥센터를 발굴하는 등 법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확대하여 보다 내실있는 법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법교육을 활성화하는 한편, 법문화진흥센터가 법교육 중심기관으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민·관 협력 모델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 교사, 어린이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법교육 교재를 개발하였다. 앞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 및 대처 방법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학습할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하는 데 앞장설 예정이다.

일반 시민 및 청소년들에게 법의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으며, 특히 소외지역 및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로파크' 버스를 활용한 체험형 법교육을 실시하여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었다. 다만 법교육 확산을 위해 각종 경연대회(생활법 퀴즈대회, 모의재판, 헌법토론대회 등)가 과도한 경쟁으로 본래 취지가 훼손되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향후에는 경연 방식을 지양하고 법의 가치를 깨닫고 체험하며 쉽게 법에 다가갈 수 있도록 법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솔로몬로파크는 매년 20만명 이상의 많은 체험객들이 방문하는 국내 유일의 법체험 테마파크로서 자리매김 하였으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법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선하여 왔다. 향후 대전솔로몬로파크는 노후화된 전시시설물 개선을 통하여 다양한 콘텐츠 및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가 진행중인 광주솔로몬로파크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테마로 호남권의 법교육 수요를 상당부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8.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질서 실천운동

보호정책과 사무관 정주호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일상생활 속에서의 범죄가 증가하고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범죄피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증대되었다. 범죄는 개인의 재산이나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삶의 질 저하는 물론 막대한 유·무형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이에 범죄취약지역의 범죄예방시설 확충을 통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일상생활에서 빈발하는 기초 법질서 위반 사례를 찾아서 개선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의 범죄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생활 속에서 법질서를 체감하게 할 수 있는 실천운동을 추진하게 되었다.

2014년을 기점으로 그동안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오던 활동들을 심화, 확대한 '법질서 실천운동'을 전개하였다. 2014년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기초 법질서 지키기', '안전법규 준수',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등 3개 분야를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 전국 지역공모를 거쳐 모두 30개 지역에서 특성에 맞는 법질서 실천운동을 추진하였다.

또한 시민참여 법질서 실천운동의 전형을 만들고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는 '법사랑 서포터스'를 조직하여 법질서준수 캠페인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지난 2008년 이후 2018년까지 약 2천 4백 명 이상의 시민이 '법사랑 서포터스'의 이름으로 활동하였다.

법질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전개하고 있는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은 2014년 14개 지역, 2015년 11개 지역에서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였다. 2016년에는 사업 규모 확장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유사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과 행정안전부의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과의 협업으로 진행하였다. 2017년에는 법무부의 색채를 가미한 범죄예방 환경개선(법사랑 타운)을 시작하였다. 범죄예방 환경개선과 더불어 주민공동체 교육을 지속적으로 병행하는 '법사랑 타운'사업을 경기 안성과 전남 광양에 시범 실시하는 등 모두 12개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하였다.

법질서 캠페인을 집중 홍보하기 위해 영향력이 큰 방송·언론·인터넷 매체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홍보 활동을 집중 전개하여 왔으며, 2011년부터 학교폭력예방, 사이버질서, 기초질서 등 법질서 바로세우기 관련 공익광고를 SBS TV, MBC드라마넷, YTN 등에 총 3,000회 이상 송출하는 등 방송매체를 활용한 법질서 캠페인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 2) 추진성과

### (1)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위한 '법질서 실천운동'

2018년에는 법사랑 자원봉사 40개 팀, 215명이 참여하여 실생활과 밀접하면서도 비교적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을 팀원회의를 거쳐 자발적으로 진행하였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디지털 성범죄 예방, 음주운전 예방, 학교폭력 예방 등의 주제로 63회의 거리 캠페인을 시행하였고 220건의 카드 뉴스를 제작, 온라인 홍보에 활용하였다.

한편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의 경우 2018년에는 경기 광명시, 부산 금정구 등 13곳에서 범죄예방 컨설팅과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모범사례를 전파하기 위하여 그중 3곳을 법사랑 타운으로 선정, 주민들과 함께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시행하고 지역별 10회 이상의 주민공동체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 그림 2-105 |** 법질서 실천운동 및 범죄예방 환경개선



법질서 캠페인




범죄예방 환경개선

### (2) 온라인 '법사랑 사이버랜드' 및 '법교육 전자도서관' 운영

시민들이 어디서든지 쉽게 접근하여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준법의식과 시민의식 확산 온라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시민들이 규범의식을 배워나갈 수 있는 각종 콘텐츠로 구성된 '법사랑 사이버랜드'를 구축하여 5개 테마로 준법 콘텐츠를 만들어 제공하였다.

**| 표 2-71 |** 법사랑 사이버랜드 구성

| 테마 | 주요 내용 |
|---|---|
| 유아놀이터 | 영상동화 등을 활용하여 법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구성 |
| 어린이세상 | 직접 게임을 체험하고, 영상시청을 통해 재밌게 법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구성 |
| 청소년로스쿨 | 영상과 캠페인송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지켜야할 중요한 가치를 일깨우도록 구성 |
| 법사랑학교 | 합리적 법의식과 건전한 민주 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 법무부가 개발한 학교폭력예방, 법교육,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정규 교과인 창의 활동 등의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구성 |
| 참여마당 |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소통의 플랫폼으로 유아부터 성인까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

'법교육 전자도서관'은 법교육 출간교재, 연재기사, 연구보고서, 멀티미디어 콘텐츠 등 법교육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용자가 쉽고 재미있게 법질서 및 민주 시민 의식을 배울 수 있도록 개발된 온라인 전자도서관 웹사이트로, 법교육 자료가 필요한 성인, 교사 등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법교육 자료를 열람,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 표 2-72 | 법교육 전자도서관 구성

| 테마 | 주요 내용 |
|---|---|
| 멀티미디어콘텐츠 | 영상동화 등을 활용하여 동영상, 읽어주는 만화, 카드뉴스, 연재기사, 스포츠와 법이야기 등으로 콘텐츠를 분류, 전자파일 형태로 제작, 누구나 편리하게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 법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 |
| 문서/전자책 | 법무부가 보유하고 있는 문서 기반의 법교육 자료(교재, 프로그램, 연구논문, 사업자료 등)를 PDF기반 전자문서 형태로 변환하여 제공 |
| 교사커뮤니티 | 일선 교육현장에서 효과적인 법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 및 수업지도안, 워크북 형태의 법교육자료를 구성하여 제공 |
| 자료검색기 | 교재, 프로그램, 연구논문, 사업자료 등 다양한 분류의 전자문서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여 문서를 열람하고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구성 |
| 전자문서 웹뷰어 | PC/모바일 등 다양한 기기에서 문서의 열람 및 시공간의 제약없이 법교육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

### (3) 생활 속의 범죄예방 인식 개선을 위한 법질서 홍보

2018년 8월, 법질서운동과 범죄예방정책에 동참하는 국민들의 활동을 그린 라디오광고를 제작하여 MBC와 TBS교통방송을 통하여 10월부터 2개월간 송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범죄예방 환경개선에 참여한 화가, 비행청소년을 지도하는 상담전문 명예보호관찰관, 기초질서캠페인에 자원한 봉사자 등의 이야기를 전하며 자연스럽게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또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하철역과 고속버스터미널을 선정하여 청소년 비행예방과 기초질서 준수 캠페인을 시행하였다. 특히 지하철 객차 내의 캠페인 광고는 서울·경기권 뿐만 아니라 지방 4개 광역시의 지하철에도 동시에 시행하는 등 생활 속의 범죄예방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 | 표 2-73 | 연도별 홍보 현황

| 연도 | 홍보 내용 |
|---|---|
| 2011년 | 법질서 바로세우기 관련 공익광고 제작 3,000회 이상 송출(SBS TV, CMB 등 전국 케이블방송사, MBC드라마넷, YTN 등), 스마트폰용 앱 출시('법률비타민', '동화 속 법률퀴즈', '스쿨존을 지켜라', '한국인의 법과 생활'), '나의 LQ테스트' 서비스 제공 및 카툰북(법아! 카툰과 놀자) 발간 |
| 2012년 | 공익광고('언어순화', '강력범죄예방-돌려주세요', '학교폭력예방-거품편') 제작 TV·라디오·지하철·영화관 등에 홍보, BGF리테일(구, 훼미리마트)과 연계하여 전국 7,000여 CU점포 계산대 및 수도권 지역 대형모니터 1,060개에 공익광고를 무료 송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송인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부활 김태원 작사·작곡)' 제작, EBS '폭력 없는 학교-법질서선진화과편' 방송('12.7.) |
| 2013년 | 4대악 근절을 주제로 TV, 라디오 공익광고, 다큐멘터리 각 1편을 제작하여, KBS, MBC, YTN, MBN, 서울·경기 전광판, 영화관 등에 홍보('13. 9. ~ 12.), 문화체육관광부 등 7개 부처와 협력하여 4대악 근절 공익광고 2편을 제작, KBS를 통해 송출('13. 9. ~ 12.), '폭력예방 포스터'를 제작하여 교육부, 전국 초·중·고등학교, 지자체, 민간단체 등에 총 2만 부를 배포 |
| 2014년 | SBS TV, 채널A, YTN, MBN, TV조선 등에 법질서 실천운동 공익광고 '행복 비법' 편을 방영, '법질서 실천송'(카라)을 제작·배포, 법질서 실천운동 로고와 슬로건 '법질서 실천, 나부터 릴레이' 포스터를 제작하여 유관기관 및 각 지자체, 민간기업 등에 총 1만부를 배포 |
| 2015년 | KBS 특집다큐 '당신의 집은 안전합니까?'와 KTV '100년의 행복, 희망 대한민국'이 방송, 채널A, YTN 등 TV·라디오에 '배려, 법질서 실천운동' 확산을 위한 공익광고가 총 332회 송출, '법의 날', '호국의 달', '광복절' 등 기념일을 주제로 한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여 법사랑사이버랜드, 유튜브 등에 게시, LGU+ 승강기 광고보드와 미디어라이프 광고보드(3,287대, 콘텐츠당 300여 회)에 송출, SNS 홍보를 위한 페이스북 페이지 '나부터릴레이' 개설('15.8.) |
| 2016년 | 페이스북에 법사랑서포터스가 제작한 '법무정책 카드뉴스' 및 '삼국지 웹툰' 등 300여개의 콘텐츠 게시 |
| 2017년 | 우리사회 나눔 문화 정착과 불우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재능나눔 프로젝트'를 집중 홍보(페이스북에 재능나눔을 주제로 한 웹툰과 카드뉴스를 제작·배포, 팟캐스트와 'SBS 이숙영의 파워FM'에 음성 광고를 실시, 스포츠동아, 매일경제에 우리사회 재능 나눔 문화 정착을 위한 기고, 연합뉴스 TV, 채널 A에 공익광고를 송출) |
| 2018년 | 범죄예방 및 기초법질서 준수 포스터 제작('나 이런 사람이야!', '관심이 곧 예방')하여 지하철 스크린도어·객차 및 고속버스터미널 전광판 등에 게시, 범죄예방 환경개선 및 명예보호관찰관 등을 소개하는 라디오광고를 제작·송출('MBC 굿모닝 FM김재동',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 | 그림 2-106 | 2018년 홍보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서울역




지하철 스크린도어

### 3) 평가 및 발전방향

2018년의 법질서 실천운동은 계획된 행사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형식에서 시민들이 모든 과정을 스스로 결정하여 추진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주었다. 자발성의 보장은 캠페인 횟수의 대폭 증가, 카드뉴스 제작 및 배포 등 온라인 활동의 활성화로 이어졌다.

한편 법무부와 타 중앙부처(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협업으로 진행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은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각종 법교육 제공으로 활력을 잃어가는 쇠퇴지역의 공동체 조성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시민들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법질서 실천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부처 간 협업사업인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도 제고와 국민 불안감 감소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이 쉽고 친근하게 법률지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한 대화창을 활용한 2세대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의 분야를 확대하고 청소년이 주된 대상이었던 법사랑 사이버랜드를 모든 연령층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과 생활', '생활 속의 법질서' 콘텐츠 등을 지속적으로 제작, 보급할 예정이다.

법질서 홍보에 있어서는 향후 매체의 '다양화' 보다는 '집중'에 방점을 두고 양적인 실적보다 국민이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질적인 효과를 기준으로 삼을 것이다. 홍보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과의 협업으로 사업의 질적인 효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생활 속에서 범죄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새롭고 창의성 높은 내용으로 국민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 9. 출소자 사회복귀 역량강화를 위한 갱생보호사업의 추진

보호정책과 사무관 홍성학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산하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통하여 2006년부터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지원센터와 연계한 「출소자 취업희망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그 결과로 2010년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출소자의 취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1 ~ 2014년까지 고용노동부의 「출소자 취업성공패키지」 위탁사업을 통해 총 16,071명의 출소자를 참여시켜 취업역량을 강화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는 55억여원의 국고를 지원받아 고용노동부 위탁사업이 아닌 법무부 직접사업으로 출소자 특화 취업지원사업인 「허그 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2018년까지 21,392명을 참여시켜 취업역량을 강화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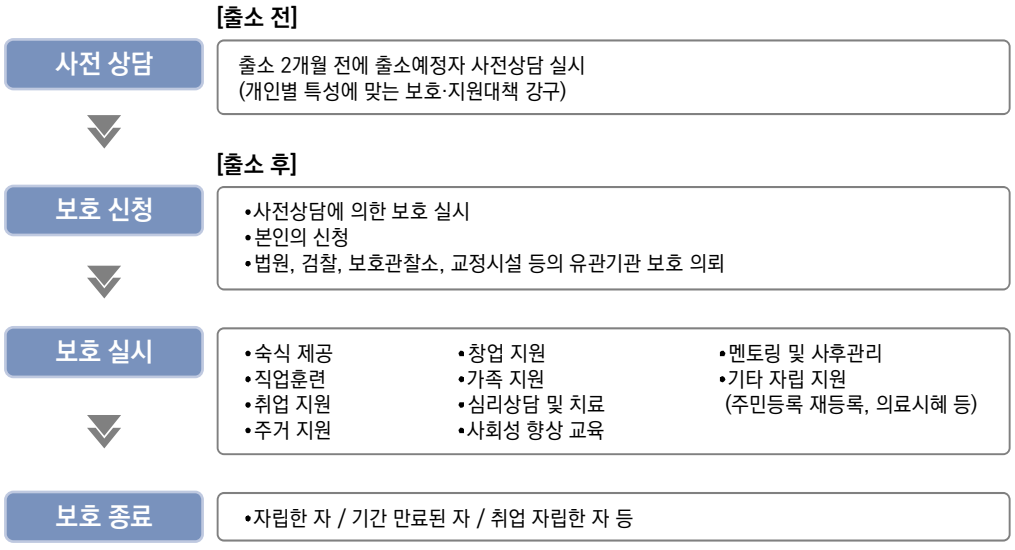
가정 해체 위기에 처해 있는 출소자의 가족관계 회복과 출소자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2014년 경기도 오산시에 건립된 가족희망센터를 중심으로 전문 상담인력을 배치하여 가족상담, 가족캠프, 자녀 학업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가족희망센터는 2014년 개청 이후 2018년까지 갱생보호대상자 833명에게 4,294건의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를 진행하였으며 대상자 가족 1,020명에게 42회에 걸쳐 가족캠프, 가족교육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또한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 참여를 높이고자 2006년부터 정계, 학계, 자원봉사자, 유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허그(HUG) 후원의 날'[16]을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전국 각 지역별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를 추천받아 공단 보호위원으로 위촉하고, '운영, 취업지원, 재정지원, 주거지원, 종교, 사전상담, 여성, 대학생' 등 기능에 따른 직능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기관별로 활동하고 있다.

16) 허그(HUG) 후원의 날 : 갱생보호사업 유공 자원봉사자 노고를 치하하고 대국민 홍보를 통해 갱생보호사업 활성화 추진

| 그림 2-107 | 법무보호사업 신청 절차




## 2) 추진성과

### (1) 사회복귀 조기 정착을 위한 일자리지원

출소자의 안정적 취업처 확보를 위해 2008. 6월 전국취업위원연합회를 구성하고 1기업 1출소자 고용운동 전개 및 고용협력기업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2,245개 업체를 발굴하였으며 2,710명이 채용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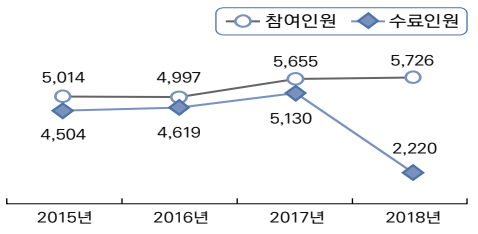
특히, 2009년부터 2018년까지 36개 '출소자 고용 우수기업체'를 사회공헌기업으로 선정하여 출입국 전용 심사대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출소자 고용에 대한 기업체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8년도에는 공단 출소자 고용 우수기업체가 신용보증기금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우대 기업 범위에 포함되어 출소자의 일자리 기반 마련 및 고용환경조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표 2-74 | 허그일자리지원사업 실적

(기준 : 2018. 12.31)

| 참여연도 | 참여인원(명) | 수료인원(명) | 수료자 취업현황 | |
|---|---|---|---|---|
| | | | 취업 인원(명) | 취업률(%) |
| 2015 | 5,014 | 4,504 | 2,727 | 60.5 |
| 2016 | 4,997 | 4,619 | 2,797 | 60.6 |
| 2017 | 5,655 | 5,130 | 3,005 | 58.6 |
| 2018 | 5,726 | 2,220 | 1,528 | 68.8 |
| 계 | 21,392 | 16,473 | 10,057 | 61.1 |

**| 그림 2-108 |** 일자리 지원사업




연도별 취업지원 사업 현황



고용협력기업 MOU 체결

공단은 2011년부터 용접 등 취업이 용이하고 지역산업에 부족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기술교육원을 설립하였다. 인천·울산(용접), 전주(영농), 창원(기계가공), 경기 화성(바리스타 등), 충남 홍성(자동차정비), 경북 예천(전기) 등에 위치한 7개 기술교육원은 출소자 등 보호대상자를 전문 기능인으로 양성하여 안정된 일자리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 표 2-75 |** 기술교육원 운영실적

(기준 : 2011. ~ 2018.)

| 구 분 | 입교(명) | 수 료 | | 취 업 | | 비 고 |
|---|---|---|---|---|---|---|
| | | 인원(명) | 비율(%) | 인원(명) | 비율(%) | |
| 울 산 | 710 | 599 | 84.4 | 351 | 58.6 | |
| 인 천 | 642 | 563 | 87.7 | 331 | 58.8 | |
| 경기남부 | 272 | 180 | 66.2 | 60 | 33.3 | |
| 충 남 | 131 | 108 | 82.4 | 39 | 36.1 | |
| 전 북 | 271 | 205 | 75.6 | 61 | 29.8 | |
| 경 남 | 308 | 227 | 73.7 | 80 | 35.2 | |
| 경 북 | 22 | 19 | 86.4 | 2 | 10.5 | |
| 계 | 2,356 | 1,901 | 80.7 | 924 | 48.6 | |

또한 매년 지역별 취업박람회를 통해 구직자에게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출소자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공단 창업지원은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금이 없어 창업에 곤란함을 겪는 출소자에게 서민금융진흥과 업무협약을 통해 1인당 5,000만원까지 임차 보증금을 최대 6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으로 09년부터 출소자 194명에게 77억 2,315만원을 지원, 출소자 자립 지원에 도움을 주고 있다.

| 그림 2-109 | 기술교육원 전경



예천 전기 기능 기술교육원 전경



예천 기술교육원 실습장

(2) 출소자 가족지원 사업 강화

가족지원사업은 2018년 220호 주거지원, 11,683회 심리상담, 467회 가족지원 등을 통해 보호대상자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2006년부터 국토교통부와 연계하여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출소자에게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을 실시하여, 2018년까지 총 2,048호의 임대주택을 지원, 2,752가구의 출소자 가족이 주거지원 수혜를 받았다.

2018년에는 공단·교정 T/F 과제인 수용자 가족에 대한 주거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재선정 주택의 심사권한을 일선기관으로 이양하여 신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갱생보호대상자의 주거복지가 향상되었다.

출소자를 대상으로 심리검사 및 상담을 통해 심리적 문제점을 진단·치료하고, 대인관계 개선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해 2012년부터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 26명을 채용하여 2018년까지 38,465명에게 64,375건의 전문 심리검사와 상담을 실시하였다. 특히 2017년부터 공단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허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취업역량 및 구직동기강화를 위한 집단 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 표 2-76 | 주거지원사업 관리주택현황

(기준 : 2006. ~ 2018.)

| 연번 | 기 관 명 | 관할지역 | 관리주택(호) |
|---|---|---|---|
| 1 | 서 울 지 부 | 서울 중앙, 남부, 동부 지역 | 196 |
| 2 | 인 천 지 부 | 인천, 부천 | 223 |
| 3 | 경 기 지 부 | 수원, 경기 남부(경기남부 관할 제외) | 250 |
| 4 | 경기남부지부 | 경기 남부(오산,평택,화성,안성) | 55 |
| 5 | 경기북부지부 | 경기 북부 | 145 |
| 6 | 강 원 지 부 | 강원 전지역 | 71 |
| 7 | 대 전 지 부 | 대전 | 146 |
| 8 | 충 남 지 부 | 충남 전지역 | 21 |
| 9 | 충 북 지 부 | 충북 전지역 | 60 |
| 10 | 대 구 지 부 | 대구, 경주, 포항 | 184 |
| 11 | 경 북 지 부 | 경북 전지역(경주, 포항제외) | 10 |
| 12 | 부 산 지 부 | 부산 | 112 |
| 13 | 울 산 지 부 | 울산 | 87 |
| 14 | 경 남 지 부 | 경남 전지역(부산·울산 제외) | 112 |
| 15 | 광주전남지부 | 광주·전남 전 지역 | 151 |
| 16 | 전 북 지 부 | 전북 전지역 | 89 |
| 17 | 제 주 지 부 | 제주 | 28 |
| 18 | 서울북부지소 | 서울 북부지역 | 108 |
| 합계 | | | 2,048 |

### | 그림 2-110 | 가족희망센터 활동



가족교육




부부캠프

### (3) 지원 인프라 확대 및 홍보 강화

2018. 11월 과천시민회관에서 법무부장관, 자원봉사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름다운 동행, 따뜻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2018 허그(HUG) 후원의 날을 개최하여, 자원봉사자의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 표 2-77 |** 허그후원의 날 추진경과

| 일시 | 장소 | 내 용 | 참석인원 |
|---|---|---|---|
| 2006. 10. 26. | 전국거점도시 | • 발대식, 헌혈운동, 가두캠페인 | 2,800여명 |
| 2007. 06. 14. | 라비돌리조트 | • 전진대회, 노란리본, 가두캠페인 | 3,000여명 |
| 2008. 08. 29. | 백범기념관 | • 전진대회, 노란리본, 청계천 가두캠페인 | 4,000여명 |
| 2009. 09. 02. | 올림픽홀 | • 바자회, 콘서트, 사회적비용 컨퍼런스 | 4,000여명 |
| 2010. 09. 10. | 장충체육관 | • 바자회, 콘서트, 취업박람회(교정기관 합동) | 3,000여명 |
| 2011. 10. 31. | 코엑스 | • 전진대회, 바자회, 축하공연 (난타, 샌드 애니메이션) | 1,500여명 |
| 2012. 10. 30. | 국립중앙박물관 | • 전진대회, 바자회, 성과경진대회(영상물 상영 등) | 1,000여명 |
| 2013. 10. 30. | 안양아트센터 | • 전진대회, 바자회, 노란리본기 | 1,000여명 |
| 2014. 10. 29. | 안양아트센터 | • 전진대회, 기업홍보 축하공연(타악, 대학생 & 보호청소년) | 1,000여명 |
| 2015. 11. 18. | 과천정부청사 | • 전진대회, 사료전시, 축하공연(국악, 대학생 & 청춘합창단) | 1,000여명 |
| 2016. 11. 16. | 과천정부청사 | • 전진대회, 사진전, 축하공연(음악축제 수상자(합창,난타)) | 1,000여명 |
| 2017. 11. 16. | 과천시민회관 | • 자원봉사자 포상, 역사관 개관 기념 기록물 전시, 축하공연(홍보대사) | 1,000여명 |

아울러, 2013년부터 갱생보호사업·기술교육원별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법무부 보라미 방송을 통해 각 교정기관에 송출하고, 2016년부터는 일터나눔 허그(HUG)기업 수기집 「희망으로 다시 시작하다」를 제작·발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에 배포하였다.

또한 2016년부터는 모바일을 통해 공단 동향과 소식을 알리는 「월간 뉴스레터」와 자원봉사자 미담사례, 출소자 성공스토리 등을 담은 소식지 「아름다운 동행」을 활용하여 공단 사업을 홍보함으로써 출소자 포용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다.

70여년에 이르는 우리나라 갱생보호사업의 역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2017년 법무보호가족교육원 내에 역사관을 설치하고 공단에서 보관 중인 시대별 사료를 정리하여 전시함으로써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 그림 2-111 | 2018 허그(HUG) 후원의 날






(4) 전국 자원봉사 조직 활성화 추진

자원봉사조직의 단합과 체계적 운영 지원을 위해 전국보호위원연합회, 전국취업위원연합회, 전국대학생보호위원연합회, 가정복원위원회 등 연합 자원봉사자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 현재 자원봉사조직 293개, 위원 6,198명이 생활관 대상자 위문(3,100회), 원호지원(6,139명), 취업알선(404명), 합동결혼 지원(99쌍), 자녀학업 지원(3,889명), 사전상담 참여(1,355명) 등 다방면으로 갱생보호사업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 표 2-78 | 공단 자원봉사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 합계 | 운영위원 | 취업지원 | 직업훈련 | 사전상담 | 주거지원 | 사회성향상 | 재정지원 | 여성 | 종교교화 | 대학생 | 홍보 | 지역 | 자문 | 기타 |
|---|---|---|---|---|---|---|---|---|---|---|---|---|---|---|---|
| 위원회수 | 293 | 13 | 33 | 11 | 23 | 14 | 22 | 22 | 20 | 20 | 29 | 7 | 28 | 6 | 45 |
| 인원 | 6,198 | 304 | 727 | 165 | 481 | 406 | 410 | 527 | 459 | 184 | 993 | 111 | 738 | 82 | 611 |

### 3) 평가 및 발전방향

일자리지원 사업은 출소자들의 구직기회 및 고용협력기업 인프라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에 기여하였으며, 출소자 고용 우수사례 등의 관련 모바일뉴스레터, SNS 등을 통해 국민 친화적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출소자 인식개선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2022년까지 참여자 1만명을 목표로 사업을 확대하고 출소자 고용을 희망하는 지역사회 내 협력기업을 지속 발굴,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등 출소자의 일자리 창출 기반 확충에 주력할 예정이다. 그리고 공단 일자리사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강릉, 목포, 서울동부(여성) 등에 보호시설을 확충하여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가족지원사업은 주거지원, 심리상담, 가족지원 등을 통해 보호대상자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긍정심리프로그램 심리상담 의무적 실시 및 내실 있는 주거지원 운영으로 사업 효과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교정기관과 협력하여 출소 전 수형자 가족까지 수혜를 확대하고 부모의 수용생활로 인하여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녀에게도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신문(531회), 방송(53회), 인터넷매체(1,384회), 온라인매체(20,897회) 등에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앞으로 출소자 우수사례 수기집 제작 및 유관기관 배포, 전국 자원봉사자 행사(허그 나눔축제, 허그후원의 날 등) 통합 추진 등을 통해 홍보 역량을 집중하고 교정본부의 협조를 통해 보라미 방송에 송출하던 취업지원 관련 홍보 영상 외에도 수형자 가족지원 사업 홍보 영상을 추가로 제작하여 송출할 계획이다.

자원봉사조직은 향후 법사랑위원 조직 개편[17]에 따른 자원봉사 조직 통합 관리 및 교육, 수용자 가족지원사업과 연계한 대학생 보호위원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보호위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할 계획이다.

17) 법사랑위원 조직 개편 : 법사랑위원과 보호위원으로 이원화되어 운영하던 조직을 법무보호위원으로 일원화하여 효율적 조직 운영 및 갱생보호 사업 지원 활성화 도모

# 제6절 감찰·감사업무

## 1. 감찰업무

감찰담당관실 검찰사무관 김봉석

### 가. 개요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공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사전 예방적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적극 전개하되, 특히 비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부패와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비위행위자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사·조치함으로써 유사 비위 차단에 주력하였다.

특히, 직장 내 성 관련 비위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신설 운영하여 감찰업무를 통한 직장 내 인권 증진을 도모하였다. 또한, 대검찰청 감찰본부 및 각 고등검찰청 감찰부서에 대하여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 효과적인 내부 감찰을 수행하도록 감독하는 한편, 새로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감찰위원회를 개최하여 감찰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 나. 감찰 업무를 통한 법무부 내 인권 증진 도모

#### 1)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신설 운영

2018년 8월 법무부 내 갑질 피해 신고에 대한 접수 및 처리와 신고(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신설하여 갑질 피해자 구제, 갑질 피해 신고로 인한 불이익 등 2차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2차 피해 모니터링, 갑질 신고사건 종결 이후 갑질 신고(피해)자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는 피드백 시스템 등을 운영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조직 내 인권 증진을 도모하였다.

#### 2) 직장 내 성 관련 비위행위 엄정 대응

2011년부터 현재까지 검찰을 포함한 법무부 내 성 비위 사건기록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법무부 내 성 비위 사건들이 적절하게 조사·조치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였고, 법무부 홈페이지에

개설된 익명 신고센터를 통해 직장 내 성 관련 비위행위 신고를 활성화하여 성 관련 비위를 입수하는 즉시 신속하게 사실 확인 및 감찰 조사를 실시하여 엄정 조치하였다.

## 다. 엄정하고 효율적인 감찰 활동 전개

### 1) 비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

비위행위자, 감독자의 과오 유무를 철저히 조사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소속기관의 온정적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비위행위에 대한 조치 결과를 상시 모니터링 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법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확보에 기여하였다.

### 2) 비위 발생 예방에 중점을 둔 예방적 감찰 활동 적극 전개

취약 분야, 과오 다발 분야, 중점 점검 대상자, 다수 민원을 야기한 직원에 대한 비노출 관찰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단순히 비위나 과오를 적발하는데 그치지 않고 업무 개선을 통해 비위 재발 방지에 기여하는 감찰 활동을 추진하고, 감찰활동 우수 직원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 추천을 하였다.

### 3) 감찰과 감사의 협업을 통한 감찰 활동의 효율성 제고

사안 성격상 감찰과 감사가 모두 필요하거나 비위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감찰관실 내 감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이 협업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특히, 2018년 10월 감찰과 감사가 협업하여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에 대한 심층 업무진단을 실시하여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한 결과, 단기간에 민영교도소의 운영상 문제점을 밝혀내고 개선책을 마련하여 교도소 운영을 정상화 시키는 등 감찰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 라. 감찰 업무의 객관성 제고

### 1) 검찰의 감찰업무 효과적인 지휘·감독

대검찰청 감찰본부 및 전국 5개 고등검찰청의 감찰부서 업무에 대한 정기 사무감사를 2018년 6회 실시하였고, 대검찰청 감찰본부로부터 감찰 착수·진행·결과 등 감찰과정 전반에 대해 보고받음으로써 법무부 감찰관실을 통한 검찰의 감찰업무에 대한 효과적인 지휘·감독 체제를 유지하였다.

### 2) 법무부 감찰위원회 신규 감찰위원 위촉 및 감찰위원회 개최

감찰기능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 감찰위원 10명 중 9명을 외부인사로 구성한 감찰위원회를 5회 개최하여 감찰 결과에 대한 검증 및 감찰사건 처리방향 등을 심의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징계 권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2018년에는 외부인사 위원 중 임기가 만료된 4명을 해촉하고 동시에 신규 위촉(여성 위원 2명 포함)하기도 하였다.

## 2. 감사업무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조시형

### 가. 자체감사업무의 충실한 이행으로 조직 내 반부패 및 청렴성 제고

2018년도에는 「청렴한 법무부, 행복한 국민」을 자체감사의 목표로 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 법무정책의 안정적 집행 지원, 국민생활 불편 사항 발굴·개선 등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추진하였다. 감사주기와 감사대상기관의 규모를 고려하여 72개 소속기관과 42개 산하공공기관(출장소·지소 포함)을 대상으로 종합 감사, 설·추석 명절, 연말연시,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등 근무기강 취약시기에 맞춰 전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특별 복무감사를 실시하였고 성희롱·성폭력 실태 점검, 내부 비위 제보 조사(청렴감사), 재외공관 사증 발급업무, 법무시설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322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하여 관련자 419명에게 징계·경고 등 신분상 조치, 30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1억 3,914만 원 회수 등 재정상 조치를 취하였다.

| 표 2-79 | 실시현황

| 구 분 | 감사 횟수 | 실시기관 수 |
|---|---|---|
| 종합감사 | 9 | 114 |
| 특정감사 | 12 | 21 |
| 복무감사 | 8 | 전 소속기관·산하공공기관 |

| 표 2-80 | 조치내역

(단위 : 건, 명, 천원)

| 조치결과 / 종별 | 신분·행정상 조치 | | | | | | | | 재정상 조치 | | | | | |
|---|---|---|---|---|---|---|---|---|---|---|---|---|---|---|
| | 계 | | 징계 | | 경고 | | 주의 등 | | 계 | | 회수 | | 감액 등 | |
| | 건 | 인원 | 건 | 인원 | 건 | 인원 | 건 | 인원 | 건 | 금액 | 건 | 금액 | 건 | 금액 |
| **계** | **322** | **419** | **6** | **6** | **41** | **67** | **275** | **346** | **30** | **139,141** | **26** | **30,412** | **4** | **108,729** |
| 종합감사 | 259 | 333 | 6 | 6 | 40 | 67 | 213 | 260 | 26 | 30,412 | 26 | 30,412 | - | - |
| 특정감사 | 5 | - | - | - | - | - | 5 | - | 4 | 108,729 | - | - | 4 | 108,729 |
| 복무감사 | 58 | 86 | - | - | 1 | - | 57 | 86 | - | - | - | - | - | - |

## 나. 조직내 청렴 공직문화 확립으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향상

자체감사 수행과 더불어 조직 내 반부패 및 청렴도 제고 업무는 감사담당관실의 주요한 핵심 업무로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2018년도에는 어느 때보다도 교육 등을 통한 조직 내의 청렴한 공직문화 전파·확산에 초점을 두고 「청렴 법무부 공직문화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부서내 반부패·청렴팀 운영으로 청렴정책 개발,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소속기관 과장급 이상 간부 대상 청렴토론회 개최, 징계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도입, 부패취약분야 담당자 워크숍, 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대상 확대(5급 이상 기관장에서 소속기관 부서장까지) 등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평가에서 역대 최고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 표 2-81 | 연도별 청렴도 추이 및 실적

| 구 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 등급(점수) | 4등급(7.27) | 3등급(7.30) | 4등급(7.07) | 3등급(7.43) | **2등급(8.1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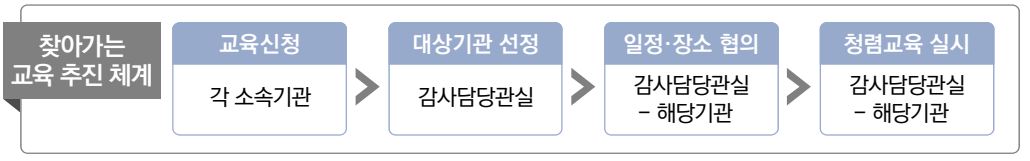
## 다. 주요 청렴제고정책 추진 -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 1) 추진배경

전문교육기관 집합교육 참석이 어려운 소속기관 현장근무자, 대민(對民) 접촉이 많아 장기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민원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감사담당관이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였다.

### 2) 추진경과 및 성과

소속기관의 교육 신청을 받아 감사담당관을 강사로 하는 사례중심의 반부패·청렴교육, 청탁금지법·행동강령 교육, 청렴업무 추진 관련 애로사항 청취 및 건의사항 수렴 등을 통하여 소속 직원의 청렴도를 제고하였으며, 수도권에 비해 우수강사 섭외가 어렵고, 현업 등으로 인해 전문교육기관 교육 참석 기회가 어려운 소속기관 직원들의 불편 해소, 교육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기관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로 직원들의 청렴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청렴도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 그림 2-112 | 2018. 9. 14. 진주교도소 찾아가는 청렴교육



# 제7절 인권업무

## 1. 국가인권정책 총괄·선도

### 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인권정책과 사무관 김경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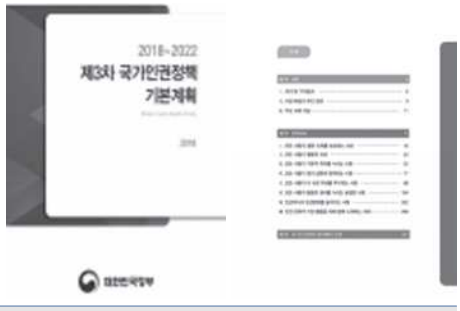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보편적 인권 신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술발전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등 새로운 인권 수요의 반영을 통하여 인권 수준의 전반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범국가적 종합계획으로써 제1차 계획('07. ~ '11.) 및 제2차 계획('12. ~ '16.)에 이어 2018년 8월 7일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18. ~ '22.)을 수립하였다.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2017년 5월 출범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인권정책기조를 반영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관계부처 정책담당자 등이 참여한 2차례의 공청회와 18회의 분야별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 그림 2-113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2) 평가 및 발전방향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인권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하는 새 정부 인권 정책의 청사진이 마련되었으며 분야별 추진 과제의 적극적 이행과 매년도 이행 상황에 대하여 점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내·외적 인권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 근거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인권 증진의 법률적 근거 마련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세부 추진과제 이행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권기본법의 제정과 이에 근거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 표 2-82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개요

| 정 책 과 제 | 구 성 | 세부추진과제 |
|---|---|---|
| 1. 모든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사회 | 생명권, 신체의 자유, 안전권 | 25 |
| ※ 주요 신규과제 : 자살유해정보 모니터링 및 차단,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단계적 도입,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등 | | |
| 2.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 | 차별금지 | 12 |
| ※ 주요 신규과제 : 차별·비하 정보 모니터링, 성별임금격차 해소, 가사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적정임금 확보를 통한 일자리의 질 향상 등 | | |
| 3. 모든 사람이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사회 |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인격권 | 23 |
| ※ 주요 신규과제 : ICT 환경 변화에 따른 웹·앱 접근성 개선,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 법집행의 책임성 제고, 녹음 및 촬영기기의 기술혁신과 가격하락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보편적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 등 | | |
| 4. 모든 사람이 정의 실현에 참여하는 사회 | 권익피해 구제를 위한 권리, 참정권 | 8 |
| ※ 주요 신규과제 : 집단민원에 대한 조정 활성화 및 민원처리 역량 강화, 병영문화 개선, 공직 내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계획 수립·추진 등 | | |
| 5. 모든 사람이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사회 | 노동권,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건강권 및 보건·환경에 대한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문화·예술 및 과학의 진보를 향유할 권리,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 93 |
| ※ 주요 신규과제 : 청년 맞춤형 근로 지원,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범부처 종합 과제,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 급여 지속 확대, 공공보건의료 지원기반 확충 및 서비스 제고, 특목고·자사고·일반고의 균형적 발전 추진, 문화의 지역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 등 | | |
| 6.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사회 | 여성분야, 아동·청소년 분야, 장애인 분야, 노인 분야, 이주민 | 69 |
| ※ 주요 신규과제 : 디지털 성범죄피해방지 종합대책, 학생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범부처 합동 대책 마련, 정신병원 강제입원 및 장기입원제도 개선, 저소득 노인대상 의료비 지원 확대, 국내·외 재외동포의 인권상황 파악 및 개선 등 | | |
| 7. 인권의식과 인권문화를 높여가는 사회 | 국제인권규범의 수용 촉진, 인권교육 및 인식 개선 | 32 |
| ※ 주요 신규과제 : 국제인권규범 교육 강화, 인권에 기반한 공적개발협력 추진,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과 유관기관 협조체제 마련 등 | | |
| 8. 인권 친화적 기업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 | 기업과 인권 | 10 |
| ※ 주요 신규과제 :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에 대한 정부의 기대 표명 및 교육·홍보, 해외진출기업 현지노동자 인권침해 방지 및 예방 노력,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운영 등 | | |

## 나. 국제인권기구 대응 업무 강화

인권정책과 사무관 신유정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018년에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위원회의 우리나라 제8차 이행보고서 심의(2월),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위원회의 우리나라 제17·18·19차 이행보고서 심의(12월)가 있었으며, 우리나라 인권상황에 대한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의 방문조사(5월)가 있었다. 법무부 소관 조약과 관련해서는 유엔 고문방지협약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후속조치보고서 제출(9월) 및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권고에 대한 후속조치보고서(3월) 제출이 있었다. 또한 나아가 시민사회의 국제인권 매커니즘 활용 빈도 증가에 따라 유엔 인권기구에 대한 개인진정 사건 및 정보 요청 서한이 다수 접수되었다. 법무부는 이에 따른 우리나라 보고서·답변서의 내용을 충실화하여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 인권정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유엔 전문가의 주제별 보고서 작성에 자료를 제공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하여 세계적 인권증진에 기여하였다.

### 2) 평가 및 발전방향

2019년에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위원회의 심의(하반기 중) 및 유엔 자유권규약이행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 제출(11월)이 예정되어 있다. 한편 국제사회의 우리 정부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다수의 유엔 인권 특별절차가 대한민국 방문조사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며, 시민사회가 국내 현안을 유엔에 진정하는 빈도 역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국제인권업무 담당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시민사회·인권위·관련 전문가와 소통 및 협력하여 국제인권기구 대응업무를 내실화하고, 국제인권기구의 권고가 국내 인권정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다. 국제인권기준에 발맞춘 인권정책 발전 방안 모색

인권정책과 사무관 신유정

### 1) 추진경과

법무부는 국가인권정책 수립·총괄·조정 부처로서의 적극적 기능을 회복하고,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과제에 부응하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중요 이슈에 대한 관계기관·시민사회의 공론장을 마련하고, 신규 정책 도입방안을 적극 연구·검토하였다. 대표적으로 '기업과

인권' 규범 제도화를 추진하기 위해 경제계·학계·법조계 주요 인사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효과적 인권보호 방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국제인권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또한 법무행정 전 영역에서 인권의 주류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으며, 미가입 핵심 국제인권조약 비준을 위한 연구·검토를 실시하였다.

**| 그림 2-114 |** 국제인권심포지엄 및 기업인권경영 관련 간담회 개최




제4회 국제인권심포지엄




기업인권경영 표준안 도입을 위한 간담회

### 2) 발전방향

법무부는 앞으로도 시민사회·전문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정책 수립 및 새로운 인권문제 대응에 힘 쓸 예정이다. 특히 이제까지의 연구 및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 등 미가입 인권규약 비준을 추진하고,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인권경영에 대한 국제기준을 보급하는 등 국제인권규범과 국내인권정책의 연계 강화를 위한 실질적 정책을 수립 및 집행할 예정이다.

## 라. 제55회 법의 날 기념식 개최

인권정책과 사무관 박광수

### 1) 추진경과

2018. 4. 25.(수) 10:00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55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법을 통한 정의실현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유관 기관과 단체의 성과를 알리고, 법률문화 발전에 공헌한 사람을 포상하여 국민과 함께 '법의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 2) 추진내용

이번 기념식에서는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변론과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공헌한 이석태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변호사)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총 13명이 포상을 수상하였으며,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공정한 법치', '인권이 존중받는 사람 중심의 법치',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여는 희망의 법치'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법무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하여 정의로운 사회는 법의 지배가 바로 서 있을 때 가능함을 강조하면서, 법무부는 정의와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정의가 회복되는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하였다.

| 그림 2-115 | 제55회 법의 날 기념식




법무부장관 기념사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여

## 2. 범죄피해자보호·지원 강화

### 가.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인권구조과 사무관 윤지원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범죄피해구조금은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장해·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1987년 범죄피해자구조법 제정 이래 구조금 지급을 시작하여 2010년 범죄피해자보호법 통합이후 지속적으로 그 지급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왔다. '18. 12월 적법체류 결혼이민자를 구조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하고 구조금 분할지급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2018년 한 해 동안 총 248건, 101억원의 구조금을 지급하여 범죄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 평가 및 발전방향

범죄피해구조금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거나 범죄피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범죄피해자와 유가족들의 회복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 향후에도 구조금 지급대상 확대, 구조금 지급 방법 다양화 등 개선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범죄피해자 우선의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나. 범죄피해자 심리적 지원 강화

인권구조과 주무관 손장혁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스마일센터는 강력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임시거처 등을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 기관이다. 2010. 7월 서울 송파구에 설치한 서울동부 스마일센터를 시작으로 2018. 12월 청주·울산 스마일센터까지 전국 13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8년에는 스마일센터 총괄지원단을 설치하여 전국 센터의 심리치료 서비스 전문성 강화, 표준 프로그램 개발, 행정·교육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스마일센터에서는 2018년까지 12,304명의 강력범죄피해자에게 200,963건의 심리치료와 17,527건의 임시주거 제공, 9,544건의 사회적 지원과 13,026건의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 그림 2-116 |** 2018년 신규 개소(청주·울산) 스마일센터






### 2) 향후 추진계획

스마일센터 지원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약 30만명에 이르는 강력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여전히 센터가 부족한 실정이며, 이에 법무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스마일센터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 표 2-83 | 스마일센터 설치현황 및 지원실적

(단위 : 건)

| 연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설치지역 | 동부 | - | 부산 | 인천·광주 | 대구·대전 | 춘천·전주 | 서부·수원 | 의정부 | 청주·울산 |
| 지원실적 | 518 | 2,087 | 3,599 | 6,772 | 17,064 | 28,931 | 43,750 | 61,698 | 76,641 |

## 다.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인권구조과 사무관 윤지원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 지원은 범죄피해자의 주거 환경개선 및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임대주택,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로서 '10. 8월부터 시행되었다. '18. 3월 주거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 가능한 범죄피해자의 범위를 살인·강도·강간·방화 등에서 보복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아동학대 피해, 장애인·아동·청소년·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피해, 실화 피해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주거지원 신청기간의 예외를 인정해 가해자 소재발견 또는 출소 등 보복의 우려가 현저해 신변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청기간[18]과 관계없이 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 표 2-84 | 주거지원 대상 확대(2018. 3월)

| 종 전 | 개 선 |
|---|---|
| 1. 사망, 장해, 5주 이상의 상해 | 좌동 |
| 2. 상해 정도와 무관하게 주거지원 필요성 인정시 지원<br>- 살인, 강도, 방화, 강간, 친족간 성폭력, 약취·유인, 체포·감금 피해자 | 좌동<br><br>※ 상해 정도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한 피해자 범위 확대<br>- 보복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 아동학대<br>- 장애인·아동·청소년·업무상위력 강제추행<br>- 실화로 인해 주거를 상실한 경우 |

18)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10년

### 2) 평가 및 발전방향

주거지원은 범죄로 주거를 상실하거나 보복위험 우려, 친족 간의 범죄 등으로 새로운 보금자리가 필요한 범죄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2018년에도 총 55가구가 주거지원을 받았으며, 향후에도 주거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더 많은 범죄피해자들이 따뜻한 보금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각지대 해소 – 스마일공익신탁

인권구조과 사무관 윤지원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국가의 재정적·제도적 한계로 지원받지 못하는 범죄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부 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2016. 4월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을 설립하였다. 법무부 장관과 직원 일동이 제1호 위탁자로 참여하여 3,000만 원을 기탁하였으며, 이후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로 모아진 기탁금으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2018년에는 학교폭력 피해자 및 학대 피해 아동 등 12명에게 총 6,900만 원을 지급하여, 2016년 출범 이후 총 56명에게 2억 4,980만 원의 생계비와 학자금을 지원하였다.

### 2) 평가 및 발전방향

스마일공익신탁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함으로써 피해 회복과 생계유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법무부 직원들이 직접 모아준 천사공익신탁에서 스마일공익신탁으로 매년 재원을 출연해 그 의미가 더욱 깊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스마일공익신탁을 통해 제도적 한계로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들에게 생계비·학자금 등의 도움을 줄 예정이다.

## 마.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립 및 활동 지원

인권구조과 주무관 윤형식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민간 자원봉사단체로서 2003. 9월 김천구미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시작으로 2017. 9월 부산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되면서 전국 지방검찰청 및 지청 단위별로 60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포함)가 활동 중이다.

이들 센터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 센터별 활동실적에 따라 2018년도 총 31억 997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각 센터에서는 피해자 상담 76,173건, 경제·의료 지원 15,817건, 신변보호 538건, 기타 15,243건 등 총 107,771건의 각종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을 전개하였다.

### 2) 평가 및 발전방향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범죄피해자들과 가장 밀접하게 활동하면서 경제적 지원 이외에도 자조모임, 자체 프로그램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심리적 치유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통합지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해당 지역사회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수사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총괄적인 범죄피해자 지원에 앞장서고 있으며, 향후에도 통합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범죄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림 2-117 |**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피해자 지원제도



**'범죄피해 지원에 대해 종합적으로 알아보고 지원받고 싶어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알려 주고 지원도 해 줘요.

–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피해자 지원 제도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가 조속히 고통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59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운영 중에 있으며, 피해자 긴급구호, 상담,
간병비 및 취업 지원비 지원, 수사기관·법정 동행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내용

✓ 지원 대상 및 요건

• 살인, 강도, 방화, 성폭행, 상해 등 강력범죄로 인하여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며,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 지원 절차

• 범죄피해자 긴급구호전화(☎1577-1295)로 연락하면 해당 지역에서 가장 근접한 센터로 연결되며, 전화나 방문상담을 통해 필요한 정보와 지원 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 지원 내용

| 종류 | 지원 내용 |
|---|---|
| 긴급구호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근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범죄현장에서 상담, 피해자 보호,<br>병원후송, 가족 등 보호자 연락, 범죄현장정리(청소), 청소지원 등 피해 초기에 신속한<br>긴급구호 실시 |
| 신변보호 | 보복 범죄 대비 위치추적장치 지급, 법정 동행 및 수사기관 동행, 임시 주거시설 연계 |
| 주거 지원 | 임대차보증금 담보·저리대출 지원, 임대주택 연계지원 |
| 치료비 | 범죄피해로 인해 지출한 신체적·정신적 치료 관련 의료비 지원 |
| 심리치료비 | 피해자가 임상심리상담사 등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실비 지원 |
| 간병비 등 | 간병비 : 피해자가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간병할 가족이 없거나 생계 등의 사유로 가족이 간병하기 어려운 경우, 간병 비용 지원<br>기타 부대 비용 : 의료보조기구가 필요하거나, 원거리 치료 시설 이용이 필요하여 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지출한 경우 비용 지원 |
| 생계비 등 | 달리 부양을 제공할 친족 등이 없는 피해자가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비용 지원 |
| 현장정리비 등 | 피해자가 주거, 관리하는 정주 가능한 건조물이 범죄피해로 오염·훼손되어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비 지원 |
| 취업지원비 | 피해자 본인이 신체·정신 피해를 입은 후 구직하고자 하거나, 가족 등 기타 범죄피해자가 새롭게 생계를 떠맡게 되어 구직하여야 할 때 그 훈련비 및 부대 비용 지원 |
| 기타 | 범죄피해자 상담(심리,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피해자 구조 제도 안내 등), 법정 모니터링 |

※ 지원 내용은 범죄피해자센터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대국민 홍보 강화

인권구조과 주무관 윤형식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은 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고통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무관심과 보호·지원의 소홀로 말미암아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신변위협 등 심각한 2차적 피해를 입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2018년 한 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제고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행사를 개최하였다. 2018. 6. 16.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범죄피해자의 울타리가 되어주자는 의미의 기부 캠페인인 '제5회 다링안심 캠페인'을 개최하였다.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삼성에스원이 공동 주최하고 법무부가 후원하는 본 행사는 2014년에 처음 시작되었고 범죄피해자와 가족,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와 일반 시민 2,500여 명이 참석하는 범국민적 행사이다. 행사는 희망벽화 그리기, 범죄피해자 트라우마 전문치유기관인 '스마일센터' 프로그램 체험, 피해자 피해 극복 수기 청취 및 학교 폭력 피해 아동들로 구성된 밴드의 문화공연과 함께 주 행사인 나눔걷기 등 범죄피해자의 아픔을 시민들과 함께 공감하고 위로하며 행복을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 그림 2-118 | 제5회 다링안심캠페인




2018. 7. 16. 서울시청 시민 홀에서 '제1회 범죄피해자 작품전시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피해자를 도운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직원 및 자원봉사자의 공예품, 원예, 미술작품을 전시하여 모두가 함께 하는 '어울림의 장(場)'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을 대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과 제도에 대해 찾아가는 홍보의 자리를 마련하였고, 많은 시민들의 공감대와 호응을 이끌어 내었다.

**| 그림 2-119 |** 제1회 범죄피해자 작품전시회






2018. 11. 14. 코엑스 오디토리움 홀에서 제11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개최하였다. 2008년에 처음 개최하여 제11회째를 맞은 본 행사는 기존 행사의 틀을 탈피하여 피해자 중심의 행사로 마련하였다.

피해자 및 현장에서 직접 피해자를 위해 봉사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도록 토크콘서트를 마련하였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담은 '아름다운 동행' 공익영상을 제작하여 상영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아픔을 직접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향후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의 강화 필요성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피해자와 가족, 행사에 참여한 각계 각층의 인사, 법무부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가 범죄피해자를 위한 응원 세레모니를 펼치기도 하였으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와 피해를 극복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한 자원봉사자 등에게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유공 정부포상 및 법무부장관표창을 수여함으로써 그 간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향후,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의 인권이 존중 받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의미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행사를 확대함으로써 대국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 그림 2-120 |** 제11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정부포상식




토크콘서트

## 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운영

인권구조과 주무관 차동선

우리 헌법은 제30조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재원의 부족으로 인해 범죄피해자를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적 보호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2010. 5월 연간 1조 5천억 원이 넘는 벌금의 4%를 주요재원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안정적이고 탄력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제정(2011. 1월)하였다. 이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을 개정(2013. 1월)하여 집행된 벌금의 5%를 기금에 납입하도록 하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개정(2015. 1월)하여 벌금의 6%를 기금에 납입하도록 하는 등 안정적인 기금재원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18년도 기금 편성현황은 〈표 2-85〉와 같다.

**| 표 2-85 |** 2018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 원)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사업액 | 총액 |
|---|---|---|---|
| 강력범죄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 21,189 | 36,806 |
| | 형사조정활성화 | 4,531 | |
| | 범죄피해자구조금 | 10,000 | |
| |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 1,086 | |
|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 675 | 31,896 |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 27,018 | |
|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 4,203 | |
|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 19,302 | 19,302 |
| 총 계 | 3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 | 88,004 | |

※ 여유자금 및 기금관리비 제외

# 3.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구조 강화

## 가. 소외계층에 대한 능동적 법률구조 지향

인권구조과 사무관 최현태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 심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 발생,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 사건 증가와 법률구조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인한 격차 발생 등에 따라 법률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적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2) 추진내용과 성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정부정책에 따른 법률보호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차원에서 무료법률구조 대상자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법률서비스 문턱이 높아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층 및 농·어촌지역 서민의 법률구조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무변촌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총 72개 지역에 공단 지소를 설치하였다.

2018년 공단은 민사 무료법률구조 사업을 확대·강화하여 무료법률구조 대상자 범위를 차상위계층과 경찰·소방공무원으로 확대하고, 국가유공자, 범죄피해자, 소액임차인 등에 대한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구체적 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2-86 |** 2018년도 민사 무료법률구조 대상자 확대·강화 추진 실적

| 지원대상자 및 대상사건 | 실시 시기 | 법률구조사업 실적 |
|---|---|---|
| 차상위계층 무료법률구조 지원 | 2018. 1. 1. | 5,948건, 156,877백만 원 |
| 경찰·소방공무원 무료법률구조 지원 | 2018. 9. 1. | 10건, 652백만 원 |
| 국가유공자 소송비용 면제 | 2018. 7. 1. | 558건, 14,427백만 원 |
|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br>- 범죄피해회복, 2차 피해방지 사건 추가지원<br>- 재산범죄 범죄피해자 소송비용 부담 면제 | 2018. 9. 1. | (신체범죄) 2,274건, 26,189백만 원<br>(재산범죄) 1,358건, 25,598백만 원 |
| 소액임차인 소송비용 부담 면제 | 2018. 9. 1. | 998건, 25,048백만 원 |
| 행정심판 국선대리사건 추가 | 2018. 11.1. | - |

### 3) 평가 및 발전방향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규범개정과 업무협약 등을 통한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대 및 법률보호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차상위계층과 저소득층 및 농·어촌지역 서민,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 등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법률보호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증진과 인권보호에 힘쓰고 있다.

## 나. 개인회생·파산신청사건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 강화

인권구조과 사무관 최현태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개인회생·파산신청사건에 대한 법률구조를 활성화하여 금융소외자의 부채형 빈곤추락을 예방하고 신속한 신용회복 지원을 위하여 2005년 대한법률구조공단 7개 지부에 전담팀을 구성하여 신속하고 전문화된 법률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였다.

### 2) 추진내용과 성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위와 같은 전담팀 구성 후 각 7개 지부에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노동부, 신용회복위원회, 국민연금공단 등과 연계하여 법률구조, 신용회복, 취업지원, 재무설계 등 맞춤형 One- Stop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지원체계를 구축였으며, 그 추진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2-87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설치 추진실적

| 지원확대 내용 | 시기 | 추진 실적 |
|---|---|---|
| 서울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설치 | 2009. 1. 21. | 센터 개소 이후 개인회생·파산사건 실적<br>(법률구조) 99,662건<br>(법률상담) 834,573건 |
| 대구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설치 | 2010. 6. 1. | |
| 부산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설치 | 2011. 5. 27. | |
| 광주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설치 | 2012. 8. 27. | |
| 대전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설치 | 2013. 7. 23. | |
| 수원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설치 | 2014. 6. 5. | |
| 울산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설치 | 2014. 6. 12. | |

한편, 공단은 법원 등과의 융합행정 구현을 통해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패스트트랙[19](Fast-Track) 제도를 실시(2014.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 시범 운영)하여 이용실적이 점차 확대되로 있으며, 2017년 대비 2018년 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2-88 | 패스트 트랙 이용실적 증대 현황

| 구 분 | '17년 | | '18년 | | 증 감 률 | |
|---|---|---|---|---|---|---|
| | 개인회생(건) | 파산(건) | 개인회생(건) | 파산(건) | 개인회생(건) | 파산(건) |
| 실 적 | 253 | 1,844 | 303 | 2,198 | 19.7% | 19.1% |

### 3) 평가 및 발전방향

공단은 2013. 5. 15. 법원, 채무조정 관련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공단이 진행하는 사건의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보다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패스트 트랙 제도를 서울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에 적용 후 2017. 6월까지 순차적으로 전국 9개 지부로 확대하여 시행중이다. 패스트 트랙을 통한 소요기간 단축으로 금융소외자의 조속한 사회복귀 및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 결과 2017년 공단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한 고객 1,0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종합만족도가 94.1점으로 평가되는 등 이용자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 다. 체불임금피해 근로자 무료법률구조 활성화

인권구조과 사무관 최현태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05. 7월부터 고용노동부와의 협약에 따라 체불임금 피해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시작하였고 2017. 4월부터는 다부처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개시로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임금체불 근로자의 신속한 법률구조를 위한 맞춤형 법률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다.

19) 패스트트랙 : 법원·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통한 법원 신청 절차의 간소화

### 2) 추진내용과 성과

공단의 체불임금피해 근로자에 대한 최근 5년간의 무료법률구조사업 추진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2-89 | 체불임금피해 근로자 무료법률구조사업 추진실적

| 연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 인원(명) | 125,992 | 122,386 | 144,303 | 143,095 | 150,447 |
| 건수(건) | 67,338 | 73,244 | 89,759 | 90,151 | 95,137 |
| 금액(천원) | 840,757,309 | 867,223,870 | 935,710,540 | 965,727,546 | 983,438,918 |

| 표 2-90 | 체불임금피해 근로자 무료법률구조 현황

(단위 : 건)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사건수 | 61,869 | 59,703 | 59,002 | 64,425 | 66,706 | 67,338 | 73,244 | 89,759 | 90,151 | 95,137 |

2018년의 경우 소액체당금 관련 근로복지공단 전산연계 실시(2018. 7월) 및 체불임금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와 제도개선 업무협의(2018. 11월)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강화를 통해 체불임금피해 근로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활성화하였으며, 2017년 대비 실적 증감률은 구조인원 대비 5.1%, 구조건수 대비 5.5%, 구조금액 대비 1.8% 각 증가한 실적을 보였다.

### 3) 평가 및 발전방향

공단은 유관기관(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공단 지부 등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체불근로자들에 대하여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는 임금체불근로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이면 신속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체류의 적법성을 불문하고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의 무료법률구조 혜택을 부여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에도 기여하고 있다.

## 라. 소외지역 및 수용시설 등에 대한 출장 상담 실시 등

인권구조과 사무관 최현태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및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농어촌 지역의 거주자나 수용시설의 수용자들은 법률문제가 발생해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 이에 공단에서는 2001년도부터 공단 지부나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44개 농어촌 지역을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직접 방문하여 강연 및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2003년도부터는 교도소, 구치소, 외국인보호소 등의 수용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출장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그 밖에 서신, 인터넷, 전화 등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법률상담과 홈페이지에서의 법률정보 제공을 통하여 장애, 질병, 원거리 등의 사유로 공단에 직접 찾아오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법적 지원을 하고 있다.

### 2) 추진내용과 성과

공단의 최근 5년간 소외지역 및 수용시설 등에 대한 출장상담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2-91 | 소외지역 및 수용시설 등에 대한 출장상담 현황

| 연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 횟수 | 549 | 540 | 415 | 303 | 287 |
| 건수 | 1,862 | 2,228 | 1,739 | 1,251 | 1,151 |

## 마. 이동법률상담차량 가동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10. 7월부터 이동법률상담 버스를 운영하여 장애인 보호시설, 산간벽지 등 공단 방문이 어려운 지역의 국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법률상담 및 조사, 사건접수까지 One-Stop으로 이루어지는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그림 2-121 | 이동법률상담





## 2) 추진내용과 성과

이동법률상담버스 가동 이후 총 1,284개 지역을 방문하여 법률상담 14,547건, 법률구조 598건, 강연 305회를 실시함으로써 법률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외지역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3년 간 연도별 사업 추진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2-92 | 이동법률상담버스 연도별 사업실적

| 연 도 | 방문지역 | 법률상담(건) | 소송대리 등(건) | 강연(회) | 수강인원(명) |
|---|---|---|---|---|---|
| 2016 | 193 | 1,813 | 29 | 56 | 5,631 |
| 2017 | 212 | 1,938 | 38 | 37 | 4,034 |
| 2018 | 220 | 1,999 | 47 | 25 | 2,414 |

2018년의 경우 이동법률상담차량을 확대 운영하여 무변촌 지역, 산업단지 지역, 농·어촌 지역, 산간벽지, 도서 지역 등 법률보호 소외지대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를 강화하고, One-Stop 서비스 제공을 보다 활성화하여 2017년 대비, 방문지역은 3.7%, 상담건수는 3.1%, 접수건수는 23.6% 각 증가하는 실적을 보였다.

## 3) 평가 및 발전방향

법률구조서비스 수요자 편의를 위해 공단은 2014. 11월이동법률상담차량을 기존 1대에서 2대로 확대 운영하여 무변촌 지역, 산업단지 지역, 농·어촌 지역, 산간벽지, 도서 지역 등 법률보호 소외지역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를 강화하였고 상담과정에서 소송 등의 구조가 필요한 경우 바로 법률구조와 연계함으로써 법률구조 수요자의 공단 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여 공단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 바. 다문화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법문화교육 실시

인권구조과 사무관 최현태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 등,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주여성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교육 필요성을 인식, 2011. 7월 김천시에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법문화교육센터를 개소하여 대한민국의 기본 법질서, 국적, 혼인과 상속, 기초질서 등에 관한 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2) 추진내용과 성과

법문화교육센터 개소 이후 최근 5년간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청소년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법문화교육 추진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2-93 |**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법문화교육 추진실적

| 연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 인원(명) | 2,744 | 2,780 | 3,567 | 3,193 | 3,361 |

2018년의 경우, 다문화아동과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에 대한 법교육을 확대하여 2017년 대비 실적 증감율은 각 120.5%, 33.7%, 19.2% 증가한 실적을 보였고, 법교육 대상자를 다변화하여 노인·청각언어 장애인·농업인(여성)·축산인·재소자 등 법교육 기회가 부족한 사회적 약자에게 찾아가는 법교육을 추진하여 취약계층 시민의 권리보호 및 법교육 대상자 다변화를 모색하였으며 2018년 추진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2-94 |** 법교육대상자 다변화 추진실적

| 구 분 | 노인 | 청각언어장애인 | 여성농업인 | 축산인 | 재소자 |
|---|---|---|---|---|---|
| 추진노력 대상 | 노인복지대학 | 한국농아인협회 | 농협여성대학 | 새농민회 | 김천교도소 |
| 추진실적 | 70명 | 40명 | 335명 | 100명 | 69명 |

### 3) 평가 및 발전방향

다문화가족 및 취약계층에 대한 법문화교육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우리 사회 조기 정착 및 준법의식 제고,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준법의식과 협동정신 제고 등 사회통합에 기여하였다.

## 사. 성폭력범죄·아동학대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인권구조과 사무관 최현태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형사절차 등에서 자기주장과 방어능력이 취약하여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한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조력을 위해 2012. 3월부터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사법률구조를 시행하였고, 2013. 6월 형사법률구조 대상자를 모든 성폭력범죄 피해자로 확대하였다.

또한 2013. 7월 성폭력범죄 피해자 조력업무를 전담하는 성폭력범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6명을 채용하여 6개 지부에 배치하였고, 2014년에는 성폭력범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9명을 증원하였다. 2015. 1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아동 학대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까지 국선변호 업무를 확대 실시하고, 2015. 4월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16. 1월 국선 전담변호사를 2명 증원하여 2018. 12월 현재 전국 17명의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가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

### 2) 추진내용과 성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법률구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2012. 3월부터 2018. 12월까지 총 47,363건의 피해자 국선변호사건을 수행하였고 연도별 추진실적은 〈표 2-95〉와 같다.

| 표 2-95 | 성폭력범죄·아동학대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실적

| 연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 구조건수 | 3,842 | 3,902 | 4,496 | 4,054 | 4,394 |

또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여 2018년 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의 처리절차 및 변호사 윤리에 관한 교육을 전국 5개 권역(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 총 6회(서울 2회) 총 424명에 대해 실시하였다.

### 3) 평가 및 발전방향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성폭력범죄·아동학대범죄 피해자 보호제도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률지원과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하였다.

나아가 원스톱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피해아동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강화하고, 피해자 특성에 맞는 상담을 위해 전담자를 지정 운영하는 한편,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신속하게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아.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인권구조과 사무관 최현태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효율적 해결 및 국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위원회를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이 정하는 서울중앙지부(2017. 5. 30.), 수원·대전·대구· 부산·광주 지부(2017. 7. 1.) 등 총 6개 지부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2) 추진내용과 성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정착을 위해 공단은 2017년부터 다음 〈표 2-96〉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2017년 및 2018년 업무추진실적은 다음 〈표 2-97〉과 같으며, 2018년 조정개시 후 조정성립 비율은 64.3%를 달성하여 서민주거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 표 2-96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정착 사업추진 실적

| 추 진 내 용 | 추진시기 |
|---|---|
| • 2017년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예산 및 설치지부 확정 | 2016. 12월 |
| • 개소를 위한 소관부서별 준비절차 이행<br>→ 제 규범 정비, 상임위원 및 사무국 인력채용, 교육훈련, 홍보 등 | 2017. 3~6월 |
|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직원 워크샵 개최 | 2017. 11월 |
|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국회 간담회 개최<br>• 주택임대차분쟁조정 관련 규범 재정비 | 2017. 12월 |
| •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사례』책자 발간<br>•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법무부장관 방문 현장 간담회 | 2018. 5월 |
| •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업무 프로그램 및 홈페이지 개설 | 2018. 6월 |
|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홍보 강화<br>→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안내문구 삽입<br>→ 시내버스 외벽 광고, 지하철 역사 내 포스터 게시 등 | 2018. 7~12월 |
|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2회 개최 | 2018. 6월, 2018. 12월 |

| 표 2-97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업무추진 실적

| 구 분 | 2017년 | | | 2018년 | | | 증 감 률 | | |
|---|---|---|---|---|---|---|---|---|---|
| | 접수 | 조정개시 | 조정성립 | 접수 | 조정개시 | 조정성립 | 접수 | 조정개시 | 조정성립 |
| 실 적(건수) | 1,088 | 439 | 266 | 2,515 | 885 | 569 | 131.1% | 101.5% | 113.9% |

### 3) 평가 및 발전방향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법원의 소송 또는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했던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적인 조정을 통해 보다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게 되었다.

## 자. 취약계층의 법률지원을 위한 법률홈닥터 사업 확대

인권구조과 주무관 이용환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변호사 수의 양적 확대와 다양한 법률구조제도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중심의 법률서비스 체계, 법률복지를 위한 전달체계 미비, 소송구조에 집중된 운영 등 기존 법률구조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하여한 법률주치의 개념의 '법률홈닥터'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법률홈닥터 사업은 2011년 시범사업 실시 후, 2012년 20명의 변호사를 채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하였으며, 2014년 40명, 2017년 60명, 2018년 65명으로 확대하여 무변촌 등에 집중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그동안 소외되었던 지역 주민들과 취약 계층에게 한걸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다.

| 표 2-98 | 법률홈닥터 배치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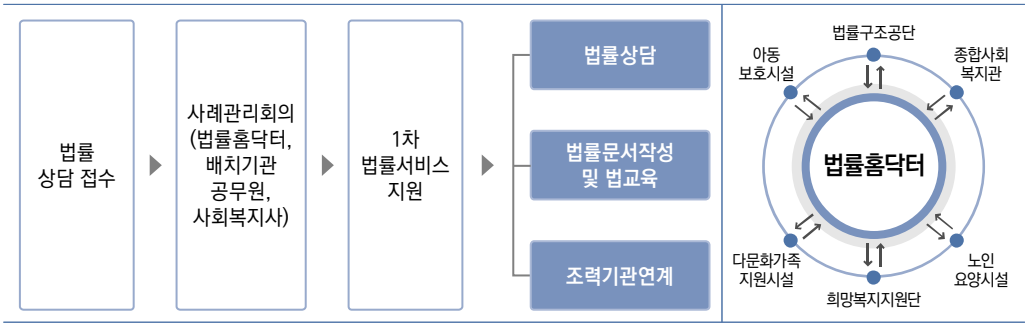
| 권역 | 배치기관(65개) |
|---|---|
| 서울 | 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노원구, 도봉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양천구, 은평구, 종로구, 중랑구,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13) |
| 인천·경기 | 인천 강화군, 인천 미추홀구, 인천 서구,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 고양시 덕양구, 광명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성남시, 안산시, 안성시, 오산시, 이천시, 광주시,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 (15) |
| 강원 | 강원사회복지협의회(춘천), 삼척시, 속초시, 원주시 (4) |
| 충북 | 충북사회복지협의회(청주), 충주시 (2) |

| 권역 | 배치기관(65개) |
|---|---|
| 대전·충남 | 대전광역시, 대전 동구, 논산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6) |
| 전북 | 익산시, 전주시, 전북사회복지협의회(전주) (3) |
| 광주·전남 | 광주 광산구, 광주 남구, 광주 서구, 순천시, 전남사회복지협의회(무안) (5) |
| 대구·경북 | 대구 달서구, 대구 동구, 대구 북구, 대구 수성구, 경산시, 영주시, 포항시 (7) |
| 부산·울산·경남 | 부산광역시, 부산 남구, 부산 사상구, 부산 수영구, 부산 해운대구, 울산광역시, 김해시사회복지협의회, 창원시, 진주시 (9) |
| 제주 |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1) |

### 2) 추진내용과 성과

법률홈닥터는 소송 이전의 1차적 무료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기존의 법률구조 인프라와 사회복지 네트워크를 연계하여 서민들 가까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조력기관과 연계함으로써 법률보호에 있어 모세관과 같은 효율적 네트워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그림 2-122 | 법률홈닥터 업무 처리절차 및 조력기관 연계구조




2018년 2월 법률홈닥터 홈페이지(www.lawhomedoctor.moj.go.kr)를 개설하여 법률홈닥터 사업을 안내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하철 광고, 포스터, 리플렛, 홍보 동영상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정책 인지도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였다.

| 그림 2-123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 화면




| 그림 2-124 | 법률홈닥터 홍보 포스터 및 지하철 광고




또한 5월에는 세계인의 날을 맞아 이민자 가정 등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해 법률홈닥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마을변호사 '합동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장 법률상담을 하는 등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였다.

그 결과 2018년 한 해 동안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법률문서 작성, 법교육 등 59,201건의 법률서비스를 서민들에게 제공하였으며, 법률홈닥터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100점 기준 90.37점으로 나타나 '매우만족'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표 2-99 | 법률홈닥터 지원실적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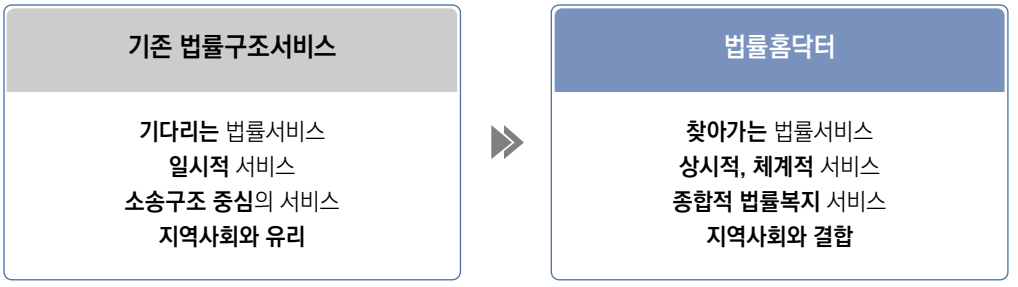
| 연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 지원실적 | 11,792 | 17,611 | 28,563 | 37,663 | 39,361 | 55,439 | 59,201 |

* 지원실적 :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 3) 평가 및 발전방향

그동안 법률홈닥터는 취약 계층 가까이에서 실생활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서민들의 든든한 법률주치의로 그 역할을 수행하였고, 법률홈닥터 이용자들의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나 이제는 지역사회의 법률복지 발전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그림 2-125 | 법률홈닥터 도입 성과




## 4. 자체 인권보호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민의 인권보호 강화

인권조사과 검사 허용준

### 가. 인권침해사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한 화상조사시스템 강화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원거리 구금·보호시설 수용자의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0년부터 화상조사시스템을 도입하여 전국 구금·보호시설에 화상조사시스템을 설치하였고, 2018년에 총 8개 구금·보호시설에 화상조사시스템을 추가 설치하여 현재 총 40개 구금·보호시설에 화상조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그림 2-126 | 화상조사시스템 활용장면



### 2) 평가 및 향후 추진계획

화상조사시스템을 통해 조사관은 기존에 서면으로 수용자의 진정내용을 파악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신속하게 화상면담을 실시하여 직접 수용자와 마주 보고 수용자의 목소리를 통해 진정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수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

| 표 2-100 | 연도별 화상조사 실적

(단위 : 건)

| 연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실적 | 98 | 137 | 125 | 189 | 358 | 355 | 462 | 508 | 526 |

2019년에는 7개 구금·보호시설에 화상조사시스템을 추가 설치하는 한편, 법무부 인권국에도 기존 1대만 설치되어 있던 화상조사시스템을 1대 더 추가 설치하여 더욱 신속하게 수용자와 면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나. 충실하고 적정한 인권침해사건 처리

2018년 인권침해사건은 총 2,939건으로, 그 중 진정사건은 2,878건(전화 19건, 우편 2,180건, 인터넷 93건, 팩스 584건, 방문 2건), 인지사건은 61건이다. 이 중 4건은 접수 전 상담종결하고 2,935건을 접수하여 그 중 2,623건을 처리(인용 및 구제 71건, 이첩 887건, 각하 1,476건, 기각 189건) 하였다.

## 다.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구금·보호시설 감독

사전 감독을 통해 법무행정 과정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2006년부터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인 교도소·구치소, 외국인보호소, 검찰청 구치감, 소년원 등의 인권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영월교도소 등 총 36개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에 대해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직접적인 인권실태 점검을 통해 구금·보호시설의 인권실태 등을 파악하고, 수용자(피보호자 포함, 이하 같음) 설문조사(2018년 3,013명), 개별면담(2018년 457명) 등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인권침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표 2-101 |** 2018년 인권실태 점검현황

(단위 : 회)

| 점검기관 | 교정시설 | 검찰청 구치감 | 외국인 보호시설 | 소년보호시설 | 합계 |
|---|---|---|---|---|---|
| 횟수 | 14 | 9 | 7 | 6 | 36 |

## 라. 법무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법무행정 공무원들이 인권교육에 흥미를 가지고 인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왔는데, 2018년에는 법무행정 공무원들의 인권마인드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내부 강사가 진행하는 인권감수성 향상 훈련 22회, 외부 강사에 의한 기관방문 교육 58회, 인권조사과 강사진의 인권교육 16회, 내부강사 통합 워크숍 1회, 검사 및 검찰수사관 상대 1:1 맞춤형·체험형 인권프로그램 24회, 찾아가는 인권교육 16회 등 총 137회에 걸쳐 6,129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검찰의 조사를 인권친화적으로 변모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검사 상대로만 실시하던 1:1 맞춤형·체험형 인권프로그램을 2018년에는 검찰수사관까지 확대 실시하여 12회에 걸쳐 173명의 검찰수사관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 표 2-102 |** 2018년 인권교육 현황

| 교육명 | 인권감수성 향상 훈련 | 외부강사 방문교육 | 인권조사과 강사 교육 | 찾아가는 인권교육 | 검사 1:1 인권교육 | 수사관 1:1 인권교육 | 워크샵 | 합계 |
|---|---|---|---|---|---|---|---|---|
| 횟수 | 22회 | 58회 | 16회 | 16회 | 12회 | 12회 | 1회 | 137회 |
| 교육인원 | 570명 | 3,327명 | 1,042명 | 815명 | 170명 | 173명 | 32명 | 6,129명 |

### 마. 인권보호 평가 및 우수 인권공무원 포상

2007. 8월부터 인권보호수사준칙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 검찰청에 대한 인권평가를 실시하였고, 2011년 하반기부터 인권보호와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내 교정본부, 범죄예방정책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기관에 대해서도 의료·보건, 급식, 사회복귀, 직업훈련, 단속·보호절차, 인권교육 등에 관한 인권보호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18년에는 2017년 하반기와 2018년 상반기 인권보호 평가를 실시하여 검찰 8개 기관, 교정 8개 기관, 범죄예방 10개 기관, 출입국 4개 기관 등 총 30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여 포상하였다.

그리고 2013년부터 업무과정에서 정성과 배려를 다한 법무부 소속 공무원을 격려하고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세계인권선언 기념일(12. 10.)에 즈음하여 우수인권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다. 2018년에는 검찰 6명, 교정 4명, 범죄예방 2명, 출입국 2명 등 총 14명을 우수인권공무원으로 선정하여 포상하였다.

또한, 2018년에 인권침해사건 처리와 실태조사를 통해 인권신장에 기여한 공이 큰 조사관과 충실하고 성실한 인권감수성 교육을 통해 인권증진의 공이 큰 내부강사를 격려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표창을 신설하여 우수 공무원 2명(조사관 1명, 인권내부강사 1명)을 선정하고 표창하였다.

## 5. 여성·아동의 권익 보호 강화

### 가. 사회적 취약계층인 여성·아동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상 지원 강화

여성아동인권과 사무관 이진선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는 2012년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도입하여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가 낯선 형사사법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조력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3년부터는 진술조력인을 양성하여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중 아동, 장애인과 수사기관, 법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조력하고 있다.

### 2) 추진내용과 성과

특히 2018년에는 미투 운동이 확산되어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가 크게 늘었다. 이에 피해자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예산을 약 17억 원 증액하였다. 그 결과 2018년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전년 대비 14.3% 증가한 22,755건을 지원하였고, 진술조력인은 전년 대비 24.7% 증가한 1,722건을 지원하였다.

| 표 2-103 |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지원 현황

(단위 : 건)

| 구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피해자 국선변호사 | 2,908 | 8,084 | 13,363 | 16,106 | 19,336 | 19,903 | 22,755 |
| 진술조력인 | - | - | 386 | 727 | 1,203 | 1,381 | 1,722 |
| 합계 | 2,908 | 8,084 | 13,749 | 16,833 | 20,539 | 21,284 | 24,477 |

### 3) 평가 및 발전방향

지방의 피해자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전담 인력인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와 상근 진술조력인을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추가 배치할 예정[20]이다. 또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피해자와 수사기관, 유관기관 대상 제도 활용에 대한 홍보를 지속할 예정이며,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더불어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 나. 아동학대 예방 홍보 및 교육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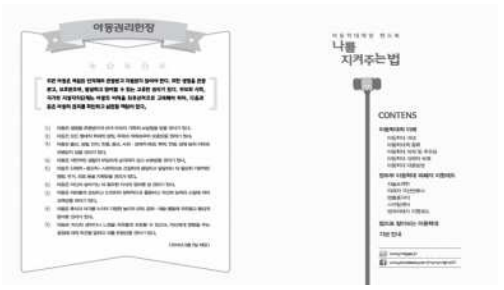
여성아동인권과 서기관 이정국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아동학대에 대한 기존 형사처벌은 사후적 대응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전적·예방적 대응을 보완하였다. 아동학대 조기예방의 일환으로 2018. 3월부터 신고의무제 홍보동영상을 제작, 배포[21]하였다. 그리고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현장출동, 응급조치 등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형사사법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8. 6월 법교육(61명 참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법무부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홍보물을 다이어리 형식으로 제작하여 아동학대 예방 법교육 출장 강연시 학생들에게 배포하여 아동학대 방지교육 및 예방효과를 강화하였다.

20) 2019년 전국 권역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4명, 상근 진술조력인 4명 추가 배치 예정
21) SBS, 국회방송, 불교방송, 전국 정부 광고 전광판, 법무부 홈페이지 등

| 그림 2-127 | 아동학대 예방 홍보물




아동학대 예방 법교육 출장강연 보조교재




아동학대 신고의무제 홍보 동영상

| 그림 2-128 |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 법교육






### 2) 향후 추진 계획

앞으로도 법무부는 아동학대의 심각성, 이에 대한 예방책과 피해 아동 보호·지원 방안 등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며 이러한 노력은 아동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형사사법 역량이 필요한 유관기관에 법무부의 형사사법에 대한 전문성을 전파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현장 대응역량 및 지역별 아동보호시스템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다. 국내출생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추진

여성아동인권과 서기관 이정국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아동은 출생시 국내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신고(등록)을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외국인 아동 등은 출생신고(등록)할 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미등록 아동은 그 규모조차 파악이 되지 않으며, 학대, 매매, 착취 등 사회적 위험성에 노출되거나 범죄 등 사회적 위험성을 야기할 가능성도 크므로 사회적 보호망 속에 포용하여 보호하기 위해, 국내출생 외국인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제 도입을 추진하였다.[22)]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출생등록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2018. 11. 21.)하였고, 변호사, 교수 등 8명으로 구성된 이행추진자문단을 구성(2018. 12. 27.)하여 매월 2회 이상 정기 회의를 개최하는 등 외국인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제 법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 그림 2-129 | 출생등록제 도입방안에 대한 토론회






### 2) 평가 및 발전방향

앞으로 법무부는 관계부처 및 민간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출생등록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가의 보호망을 인권 사각지대에 지속적으로 침투시킬 예정이다. 이로서 법무부는 기존의 인권 침해를 해소하는 역할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인권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확고히 할 예정이다.

22) UN아동권리협약 제7조 제1항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하며, 가능한 한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 받아야 한다.'

# 6.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 운영

여성아동인권과 사무관 김유호

##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18. 1월 검찰 내 성희롱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와 소속기관의 성희롱·성범죄 실태 점검 및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함)를 발족하여 약 6개월간 운영(’18. 2. 13. ~ 8. 12.)하였다.

대책위원회는 권인숙 위원장(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등 외부위원 12명과 각 직렬을 대표하는 내부위원 4명을 포함하여 총 16명으로 구성하였다.

대책위원회에서는 정기적으로 전체회의를 총 17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법무·검찰내 여성검사를 비롯한 여성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14회 실시, 남성검사를 비롯한 남성공무원과의 간담회도 4회에 걸쳐 실시, 성폭력전담검사 워크샵을 1회 실시하는 등 여성과 남성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수렴하였다.

또한 법무·검찰내 여성직원 전체 8,000여명을 대상으로 법무·검찰 성희롱·성범죄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90%에 이르는 7,400여명이 응답하였고, 핫라인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대책위원회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등 활동을 통하여 6차에 걸쳐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를 실시하였다.

| 그림 2-130 |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 활동모습




발족식 모습




성폭력전담검사 워크샵 모습

## 나. 평가 및 발전방향

대책위원회의 권고사항의 추진사항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방지관련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개정('18. 5. 16.)하여 시행중이며, 양성평등전담부서 신설을 위하여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실시('18. 10~11월)하였으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였고('19. 2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을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책위원회의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하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팀장으로 성평등 조직문화개선 TF를 구성('18. 9. 10.)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권고안 추진사항을 자체점검하여 법무·검찰 조직내 성희롱·성폭력을 위해 노력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향후 조직내 양성평등 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조직문화 개선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7.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사무관 차현지

## 가.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인권법」(2016. 9. 4. 시행, 2016. 3. 3. 제정)에 따라 2016. 10. 11. 개소하여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수집하고 기록한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 조사·연구에 관한 자료 등을 3개월마다 이관 받아 보존·관리하고 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로부터 2017. 4월을 시작으로 기록관련 자료 812건을 이관받았다. 이관받은 자료는 분석하여 사건카드를 작성하고 인권침해 가해자를 특정하여 북한인권기록보존관리시스템(DB)에 저장·관리하고 있다. 또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통일연구원 교수 등 북한 전문가들로부터 북한의 실태와 인권 상황을 청취하는 '북한인권 사랑방 좌담회' 개최 및 각종 북한인권 관련 연구용역 발주 등을 통하여 북한인권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표 2-104 |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자료 이관 현황

| 이관시기 | 2017.04. | 2017.07. | 2017.10. | 2018.01. | 2018.04. | 2018.07. | 2018.10. | 합계 |
|---|---|---|---|---|---|---|---|---|
| 건 수 | 105 | 140 | 110 | 73 | 92 | 129 | 163 | 812 |

### 2) 평가 및 발전방향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북한인권기록보존시스템(2017.12월 개발·구축 완료)을 활용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 파악, 다양한 통계 추출 등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하여 연구활동을 지속하며 국내외의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 제8절 교정업무

## 1. 인권을 존중하는 교정행정 구현

### 가. 수용자 인권보호를 위한 교정장비 개선

보안과 교정관 황진석

#### 1) 추진배경 및 경과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서 사용 중인 '포승'은 사용방법이 복잡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시각적인 거부감 및 먼지발생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새로운 형태의 포승 장비를 추가로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14. 1월부터 교정본부 및 제작업체, 일선 교정시설 담당자들의 회의를 통해 '벨트형 포승'을 개발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2018. 5월부터 전면 보급·시행하였다.

| 그림 2-131 | 일반포승 착용 사진



일반포승 착용, 앞



일반포승 착용, 뒤

| 그림 2-132 | 벨트형포승 착용 사진



벨트형포승 착용, 앞



벨트형포승 착용, 뒤

### 2) 평가 및 발전방향

벨트형 포승은 기존 일반포승의 5개 매듭을 1개의 잠금장치로 대체하여 사용시간을 약 1/3 정도 단축했다. 또한 출정·이송 등 수용자 호송 시 교도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폴리프로필렌 재질을 사용하여 먼지 발생을 없앰으로써 환경개선에 일조하였으며 기존 면사포승에서 오는 시각적 거부감을 최소화하여 수용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하였다. 이처럼 법무부에서는 앞으로도 수용자 인권 친화적이고 교도관의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교정장비 개발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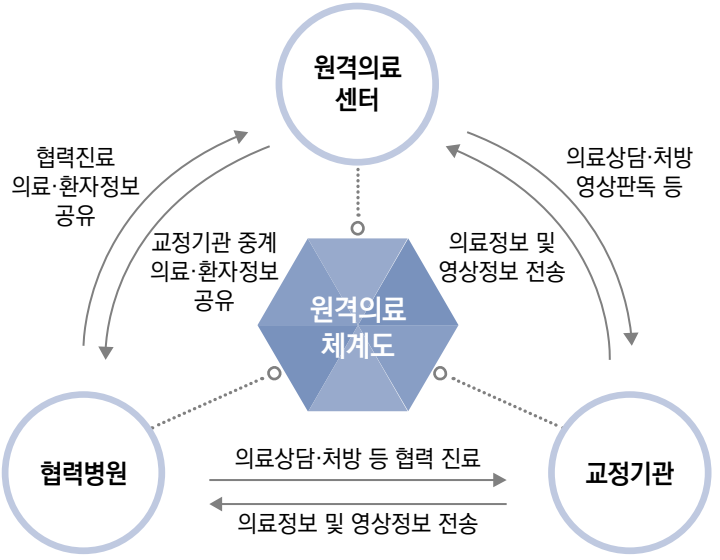
## 나. 원격의료센터 신설·운영

의료과 교감 박병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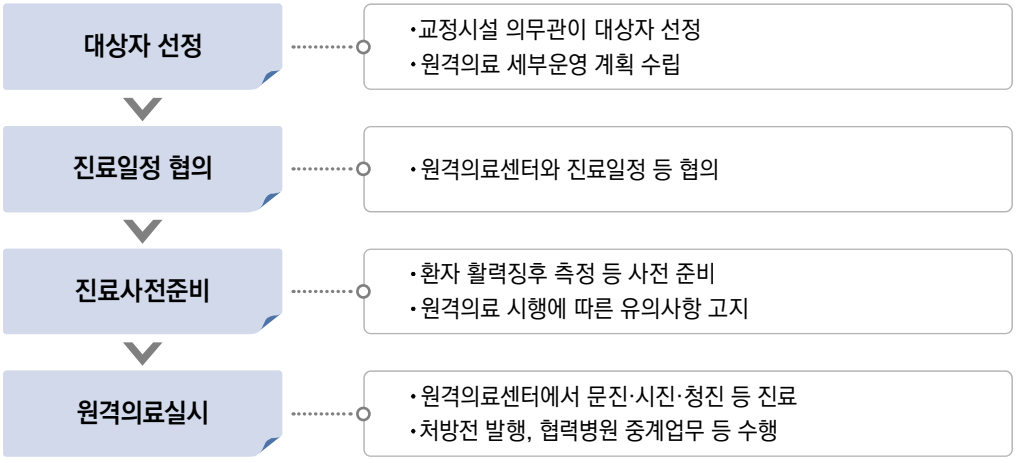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교정시설 수용자의 전문의 진료기회 확대 등 의료처우 향상을 위해 2018. 1월에 서울동부구치소에 원격의료센터를 신설하였다.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등 전문의가 센터에 상주하여 전국 교정시설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실시하고, 의무관이 없거나 오지 등 의료취약 지역의 교정시설을 출장·방문 진료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원격의료는 2005년 안양교도소를 시작으로 매년 대상 기관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고 2018년에는 3개 기관을 추가로 설치하여 37개 교정기관에서 서울대병원 등 외부 협력병원, 원격의료센터 전문의의 다양한 과목의 진료기회를 제공받고 있다.

| 그림 2-133 | 원격의료 체계도




| 그림 2-134 | 원격의료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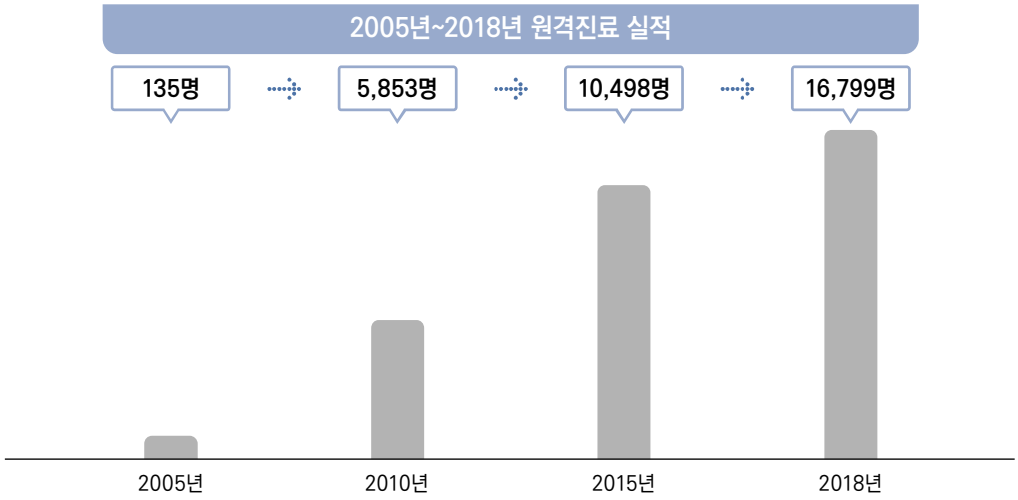



### 2) 추진내용 및 성과

외부의료시설 이송 진료의 부담을 줄이고 전문의 진료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동부 구치소에 원격의료센터를 설치하고 정신건강의학과·피부과·가정의학과 전문의를 의무관으로 채용하여 전국 교정기관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실시[23]하였다.

23) 원격의료센터 진료인원(2018. 12월) : 1,809명(정신건강의학과 1,306명, 피부과 249명, 가정의학과 254명)

| 그림 2-135 | 원격진료 누적 실적




또한 의무관이 공석인 정읍교도소,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와 외부의료시설 이용이 곤란한 의료취약지인 경북북부제1·3교도소에 원격의료센터의 의무관이 방문하여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원격의료센터와 취약지역 의료인 간 협력진료(대면진료와 원격의료 병행)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다.[24)]

향후에도 원격의료센터에 영상의학과, 신경과 등 전문의를 추가 채용하여 진료과목 및 인원을 확대하고 의료취약 기관에 대한 지원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그림 2-136 | 원격의료센터 영상진료 및 취약지역 출장 방문 진료



원격의료센터 진료



정읍교도소 출장 방문 진료

24) 2018년 원격의료센터 방문진료 : 정읍교도소 등 4개 기관, 148명

### 3) 평가 및 기대효과

외부의료시설 이송진료 증가에 따른 예산 증가, 직원 계호부담 등을 경감하고, 피부과 등 전문의 진료가 어려운 교정시설 환자의 의료처우 향상을 위해 원격의료센터에 다양한 과목의 전문의 채용을 추진하여 진료기회를 확대하고, 37개 교정기관에서 운영 중인 원격의료를 매년 추가 설치하여 전 교정기관에서 전문의의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원격의료센터 전문의의 충분한 진료시간 확보와 책임감 있는 진료 실시를 통해 원격의료의 만족도를 높이고 진료의 다양성 및 전문성 확보 등 다자간 진료체계 구축으로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 및 교정행정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교정시설 신·증축

복지과 시설주사 최명근

### 1) 추진배경

2012년 이후 급격한 수용인원 증가와 과밀수용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출소자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 확인' 심판사건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함에 따라 과밀수용 해소가 필요한 실정이다.

| | |
|---|---|
| 【2013헌마142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 2016. 12. 29 결정 - | 국가는 수형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교정시설 내 수형자 1인당 적어도 2.58㎡이상의 수용면적을 확보 하여야 한다. 다만, 현실적 어려움을 참작하여 늦어도 5년 내지 7년 내에 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을 촉구한다. |

### 2) 추진내용과 성과

2018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546억 원을 편성하여 대구교도소 이전신축(47%), 속초교도소 신축(37%), 거창구치소 신축(4%) 및 기타 원주·전주·창원(교) 설계를 진행하였으며, 김천소년교도소 수용동 증축과 여주교도소 미사용 독거수용실 개보수 및 의정부교도소 공장동을 수용동으로 용도변경하는 사업, 부산구치소 유휴시설을 수용거실로 전환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 그림 2-137 | 교정시설 신·증축 현황



대구교도소 이전신축(47%)



속초교도소 신축(37%)



거창구치소 신축(4%)



김천소년교도소 증축(90%)



의정부교도소 공장 리모델링



여주교도소 독거수용실 리모델링

### 3) 향후 추진계획

현재 수도권과 대도시 및 여성 수용시설을 중심으로 수용과밀이 지속되고 있어 경기북부권 과밀해소를 위한 경기북부구치소 신축(수용정원 1,200명), 여성수용자의 특성에 맞는 수용처우와 직업훈련 강화를 위한 여자교도소 신축(수용정원 500명), 호남지역 구치기능 강화를 위한 광주구치소 신축(900명) , 대전교도소 이전 신축사업과 병행하여 대전지역 구치소 신축(수용정원 1,200명)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대구·대전·창원·원주·전주· 부산·안양(교), 부산(구) 등 사업과 대용감방 해소를 위한 남원교정시설, 속초교도소 신축을 지속 추진예정이다. 특히 2019년도에는 소규모 교정시설 증축을 통한 과밀수용 해소를 위하여 천안·목포·진주·정읍·홍성·천안개방·군산(교) 등 교정시설 조성에 반대민원이 없는 기관에 수용동을 증설하는 사업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예산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라. 모범 수형자 등에 대한 가석방 확대 및 조기 사회정착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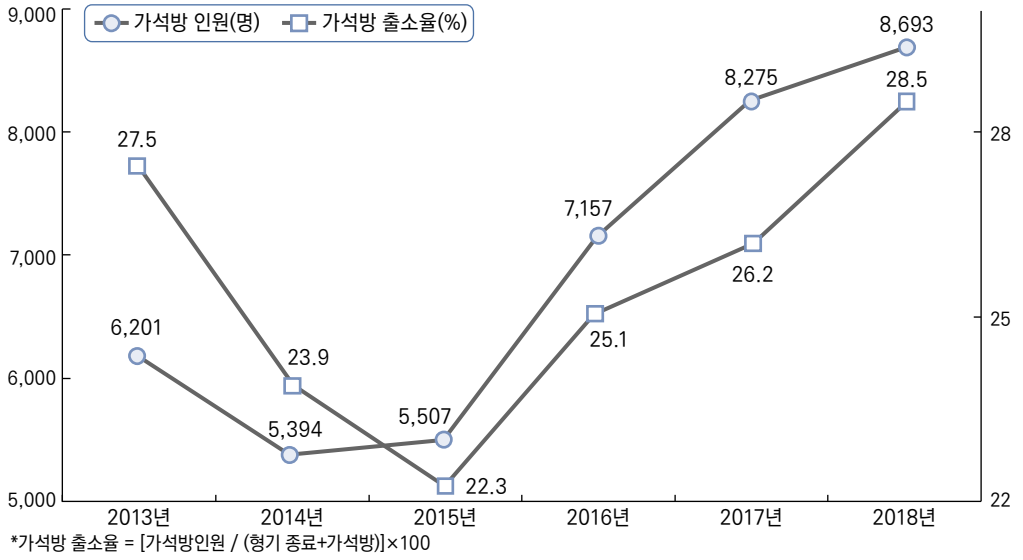
분류심사과 서기관 윤순풍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국회와 언론 등에서 교정시설 과밀화가 심각한 수준이며, 수용자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과밀수용 해소방안 중 하나로 가석방 확대를 제안하였고, 2016년 이후 재범위험성이 없는 수형자에

대하여 가석방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2018년에는 모범수형자·사회적 약자(환자, 장애인, 고령자, 외국인 등) 및 생계형 범죄자에 대해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기준을 완화하고 양심적 병역거부 수형자 가석방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등 가석방을 확대 시행하였다.

**| 그림 2-138 |** 연도별 가석방 인원 및 출소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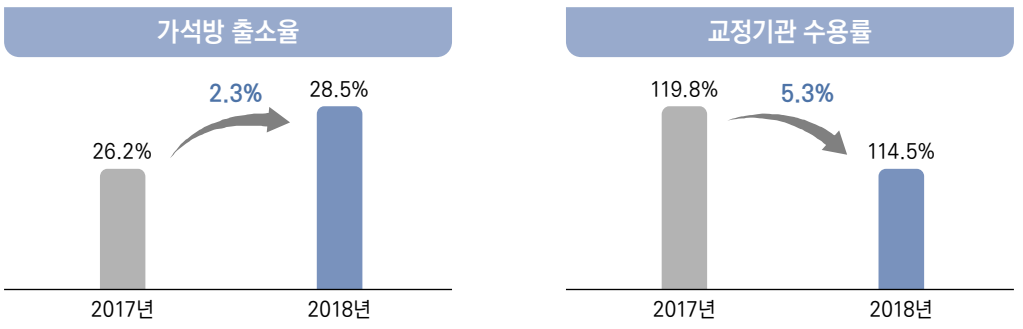



*가석방 출소율 = [가석방인원 / (형기 종료+가석방)]×100

## 2) 평가 및 발전방향

국정과제인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위하여 법무부는 가석방 출소율을 30%대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모범수형자와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가석방 확대는 수형자의 조기 사회복귀를 통한 가족관계 회복 및 사회통합 기능과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라는 두가지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국민의 법 감정과 사회안전망 확보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그림 2-139 |** 가석방 출소율과 교정기관 수용률



# 2. 국민 중심 교정행정 서비스 제공

## 가. 수용(출소)증명서 인터넷 발급서비스 도입

보안과 교정관 조진호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민원인이 수용(출소)증명서 발급을 위한 교정기관 방문 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등 인터넷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교정행정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수용사실 조회 증가에 따른 직원들의 업무과중 및 행정력 낭비도 적지 않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에 2018. 12월 수용(출소)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였고, 수용(출소)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민원인이 교정기관 방문없이 PC를 이용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용(출소)증명서 인터넷 발급서비스' 제도가 2019. 1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 표 2-105 | 수용(출소)증명서 발급현황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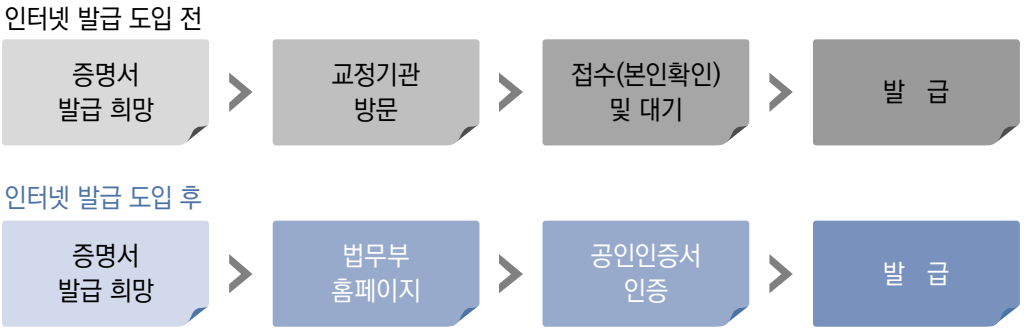
| 연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 발급 건수 | 100,350건 | 106,205건 | 117,328건 | 128,684건 | 128,203건 |

※ 최근 수용인원 증가 등으로 지속적으로 발급 건수 증가

### 2) 추진내용

형사사법포털(KICS) 홈페이지에 '수용(출소)증명서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신설하여 본인이 출소증명서 발급 희망 시 본인인증 절차 완료 후 즉시 발급하고 가족, 지인 등이 수용증명서 발급을 원할 시에는 수용자가 입소 시 동의한 사람에 한하여 본인인증 절차 완료 후 즉시 발급토록 하였다. 한편 형사사법포털에는 증명서 위·변조방지솔루션 및 워터마크 기능이 이미 구축되어 있어 별도의 예산은 불필요하며 민원인이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에서 수용(출소)증명서 발급을 클릭하면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된다.

| 표 2-106 | 수용(출소)증명서 발급절차




### 3) 평가 및 발전방향

"수용(출소)증명서 인터넷 발급 서비스"는 민원응대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민원인의 교정시설 방문으로 인한 교통비, 이동시간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민원인이 수용(출소)증명서 발급을 위해 매번 교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측면이 있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정행정" 구현과 함께 교정본부의 정책목표인 "더불어 공감하는 교정"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나.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 구축

사회복귀과 교정관 송진수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2011년 가족접견 시범실시 이후 교정시설에 가족접견실을 구축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일환으로 신규 구축되는 가족접견실을 아동친화형으로 구축하고 있다.

기존의 가족접견은 사무실 느낌의 딱딱한 가족접견실 또는 대용시설에서 이루어졌으나 어린이집과 유사한 인테리어로 꾸민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 도입을 통해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가 교정시설에서 느낄 수 있는 위압감을 최소화함으로써 편안한 가족접견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 그림 2-140 | 가족접견실 대용시설과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 비교



가족접견실 대용시설, 개선 전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 개선 후

### 2) 추진 성과

2018년에는 안양교도소 등 8개 기관에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이 설치되었고 2018년 한 해 동안 전국 52개 교정기관에서 이루어진 가족접견은 4,144회로 해마다 가족접견실의 이용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

| 표 2-107 | 가족접견 실시현황

| 연 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 실시 인원 | 353명 | 432명 | 858명 | 2,001명 | 4,144명 |

| 표 2-108 |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 현황

| 연 도 | 설치 기관 |
|---|---|
| 2017년 | 인천구치소, 경북북부제1교도소, 여주교도소, 서울남부교도소, 김천소년교도소, 밀양구치소, 정읍교도소(7개) |
| 2018년 | 안양교도소, 부산구치소, 전주교도소, 의정부교도소,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통영구치소, 해남교도소(8개) |

### 3) 평가 및 향후계획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의 도입은 형을 집행하는 시설로만 여겨지던 교정시설을 수용자와 가족에 대한 배려가 있는 행정기관으로의 이미지개선 효과를 가져 오고 있으며 방문한 민원인과 이용 수용자들로부터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018. 12월 현재 전국 52개 기관 중 33개 기관에 가족접견실이 구축되어 있고 이중 15개 가족접견실이 아동친화형이다. 법무부는 매년 2~3억 원의 예산확보를 통하여 전국 교정시설에 가족접견실을 구축할 예정이며 52개 교정시설 전체에 가족접견실 구축이 완료된 후에는 19개의 일반가족접견실도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 표 2-109 | 교정시설 내 가족접견실 현황

| 구분 | 기관 | 아동친화형 | 기존형 | 미설치 |
|---|---|---|---|---|
| 서울지방교정청 | 15 | 5 | 5 | 5 |
| 대구지방교정청 | 18 | 6 | 5 | 7 |
| 대전지방교정청[25] | 10 | 1 | 4 | 6 |
| 광주지방교정청 | 9 | 3 | 5 | 1 |
| 합계 | 52 | 15 | 19 | 19 |

## 다. 교정교화를 위한 교정작품전시회 개최

직업훈련과 교정관 허만혁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교정작품전시회는 수형자가 교도작업·직업훈련 과정에서 터득한 기술 및 창작 활동을 통하여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희망의 의지를 국민들에게 선보이는 자리이다. 1962년 덕수궁 전시실에서 제1회 교정작품전시회를 시작으로 세종문화회관, 국립공보관 등에서 개최하였으며 당시 국무총리 및 故 김수환 추기경 등이 개막식에 참석하여 교정작품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후 제5공화국때 중앙과 지방에서 격년제로 개최하다가 2012년부터 서울지방교정청 주관으로 과천시민회관에서 개최하고 있다.

| 그림 2-141 | 역대 교정작품전시회




1963년 덕수궁 전시회




1972년 국립공보관 전시회

25) 청주여자교도소는 기존형(1개)과 아동친화형(1개) 가족접견실을 구비하고 있음

## 2) 추진 성과

2018년도부터 연2회 개최로 확대하여 상반기에는 광주지방교정청 주관으로 조선대 교정에서 지방교정작품전시회를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는 제47회 전국교정작품전시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제47회 교정작품전시회는 관람인원 확대와 보다 수준 높은 전시회 개최를 위해 전시작품 수준 향상 및 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부대행사로 국화전시회, 교정도시락 무료 배부, 기념엽서 작성, 교도작업 제품 시식코너(어묵, 닭훈제, 제과제빵 등)를 운영하여 관람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 그림 2-142 |** 제47회 교정작품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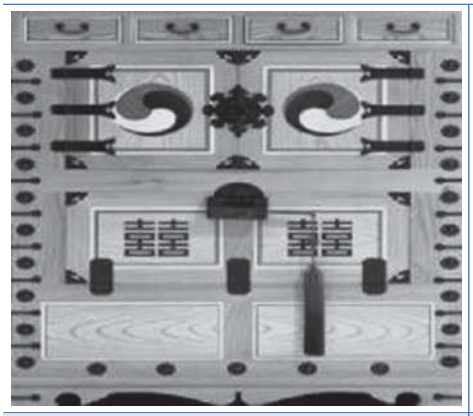

교정작품전시회 개관식



전시실 내부

이번 교정작품전시회는 총 525점이 출품되어 공예작품 분야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품한 전주태극이층장이, 문예작품 분야는 부산교도소에서 출품한 금강경병풍이 대상의 영예를 누렸다. 전주태극이층장은 전주장 특유의 전통미를 살려 느티나무에 삼태극(天地人)의 문양과 쌍 "희(喜)"자 두 가지 문양을 상감기법으로 잘 표현하는 등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높았으며, 금강경병풍은 불경인 마하반야바라밀경 5천여자의 방대한 글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마음과 자세를 유지하며 한 획도 흐트러지지 않는 결구를 완성하여 심사위원의 극찬을 받았다. 이외에도 목공예 작품, 도자기, 서예 등의 수준 높은 작품이 다수 출품되어 교정작품전시회의 위상을 한껏 드높였다.

| 그림 2-143 | 제47회 교정작품전시회 대상 작품



공예부문 대상, 전주태극이층장, 화성직훈(교)



문예부문 대상, 금강경병풍, 부산(교)

### 3) 평가 및 발전방향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의지를 작품을 통해 알리고자 출발한 교정작품전시회는 56년이라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교정본부의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회(回)를 거듭할수록 출품작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으며 관람객의 방문도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교정본부는 더 많은 국민들이 교정작품전시회를 접할 수 있도록 개최 장소의 다변화 및 역대 교정작품 수상 작품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e-book 제작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제 교정시설 참관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국민에게 다가서는 교정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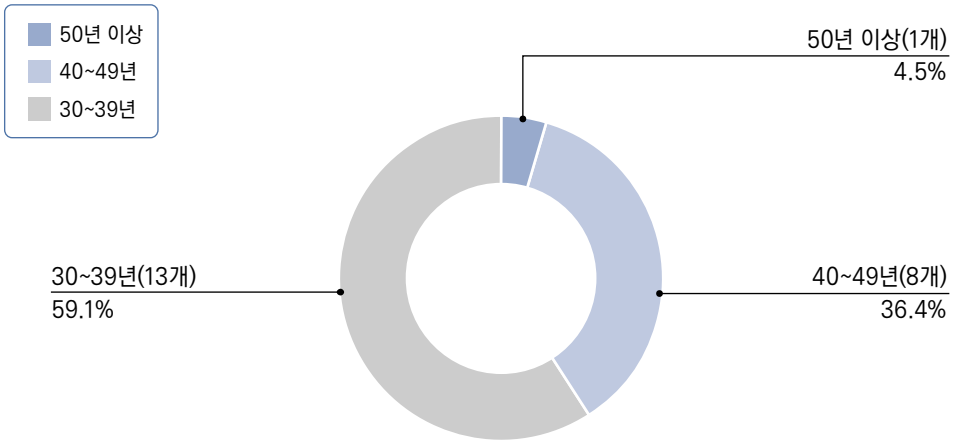
## 라. 교정시설 설계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교정기획과 교감 김종원

### 1) 추진배경

전국 53개 교정시설 중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교정시설의 비율은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사용수명 도과, 계속되는 노후화로 인하여 매년 평균 1 ~ 2건의 건축수요 발생이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 교정시설 건축시장의 협소로 인하여 민간기업과 학계의 연구가 부족하고 그에 따른 전문가도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정시설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전문인력 양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 그림 2-144 | 노후 교정시설 사용연수 현황




### 2) 추진경과

공모전은 2018. 6. 5. ~ 8. 31. 까지 진행하였으며, 총 264팀 467명의 학생들이 참가 신청을 하였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일반인과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교정시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작품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참관을 실시하였다. 출품작 심사는 2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우수한 작품들 가운데 총 15편의 최종 수상작품이 선정되었다. 대상을 비롯한 본상 6팀에게는 총 상금 940만원과 법무부장관상이, 입선 9팀에게는 서울지방교정청장상이 수여되었다.

### 3) 성과 및 기대효과

2018년에 처음으로 개최한 공모전은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의 참여와 호응이 있었다. 교정시설은 그 동안 보안 등을 이유로 외부에 잘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공모전은 미래 건축가들이 교정시설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경험해 보고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공모전 수상작들은 작품집으로 발간하여 전국 국공립도서관 및 178개 대학교에 배포하였고 작품집은 추후 건축학도들의 참고자료 또는 교정시설 건축에 중요한 연구자료로써 사용될 것이다. 또한 실제 신축 교정시설 설계 시 대학생들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교정시설과 아이디어에 대하여 참고함으로써 정체된 교정시설에서 발전하는 교정시설로 설계될 것이다. 앞으로도 2차, 3차 공모전 개최를 통하여 다양한 건축 아이디어를 교정시설 건축 콘텐츠로 활용하고 교정시설에 대한 건축가들의 관심도를 높임으로써 교정시설 전문인력 확보의 기본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림 2-145 |** 공모전 진행과정




교정시설 참관



1차 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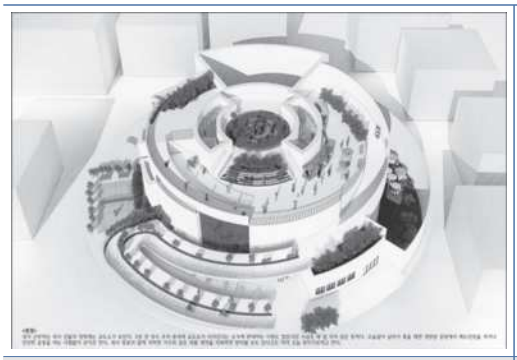


2차 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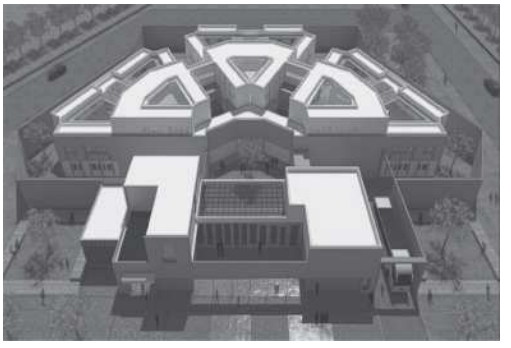



공모수상작 시상식

**| 그림 2-146 |** 공모전 수상작



대상-PAN EPIDIXI



우수상-YOU TURN

# 3.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교정현장 활력 제고

## 가. 공정하고 믿음직한 교정공무원상 확립을 위한 근무복 개선

복지과 교감 박순채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변화하는 교정현장의 흐름을 반영하고, 교정공무원의 정체성 부각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제복류에 대한 기능, 소재 및 디자인 개선이 요구되어 2017. 3월 교정공무원 6,221명을 대상으로 제복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상시 착용하는 근무복에 대한 개선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조직 구성원의 긍지와 사기를 높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정공무원 근무복 개선을 추진하였다. 우선 교정행정 및 교정공무원의 정체성, 직무의 특수성 및 교정복제의 역사성에 바탕을 두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의상전문 학술·연구기관인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미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16개국과 국내 경찰, 소방 복장 등을 비교 연구하였으며 교정행정의 긍정적인 이미지 부각과 교정공무원의 정체성을 담아 근무복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여기에 내부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제품을 제작하였다.

또한 전국 52개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순회 디자인 품평회를 실시하고 개선 근무복 시범 착용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8. 10월 교정공무원 근무복 개선안을 확정하였다. 개선된 근무복중 겨울 근무복은 2018. 10. 28.부터 착용을 실시하였으며 여름 근무복은 2019년 하절기부터 착용될 예정이다.

### 2) 평가 및 발전방향

개선된 근무복은 형태면에서는 18년, 색상면에서는 9년 만에 개선한 것으로 소재면에서 상의는 최첨단 기능성 소재를 사용하여 착용감과 활동성을 높였다. 또한 하의는 폴리에스터와 폴리우레탄 섬유를 혼용하여 신축성을 크게 보완하였다. 이에 따라 근무복의 기능성과 활동성이 향상되었으며 교정공무원의 공정하고 믿음직한 이미지 고양과 교정공무원의 자긍심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앞으로 현장 직원의 복제 관련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개선된 근무복 착용 영상을 유튜브와 법무부 소셜미디어 채널 등을 통해 배포하여 일반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교정관련 드라마, 영화 등의 제작에도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 그림 2-147 |** 개선 근무복



남자 겨울근무복 상하의
(타이 미착용)



여자 겨울근무복 상하의
(타이 미착용)



남자 겨울근무복 상하의
(타이 착용)



여자 겨울근무복 상하의
(타이 착용)

## 나. 직원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심리치료과 교감 이용혁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은 수준의 직무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교정공무원 심리상담(마음나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외부 상담 전문기관과 '직원 지원 프로그램(Employee Assistance Program)' 계약을 체결하여 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찾아가는 심신 케어 프로그램,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 정신건강 자가진단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스트레스 집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무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하는 등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그림 2-148 |**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찾아가는 심신케어 프로그램




스트레스 집중치유 프로그램

### 2) 추진성과

2017년부터 시작된 '교정공무원 심리상담(마음나래) 프로그램'은 크게 외부 전문상담, 찾아가는 심신케어, 스트레스 집중치유 등 3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 대비 2018년에 모든 방면에서 운영 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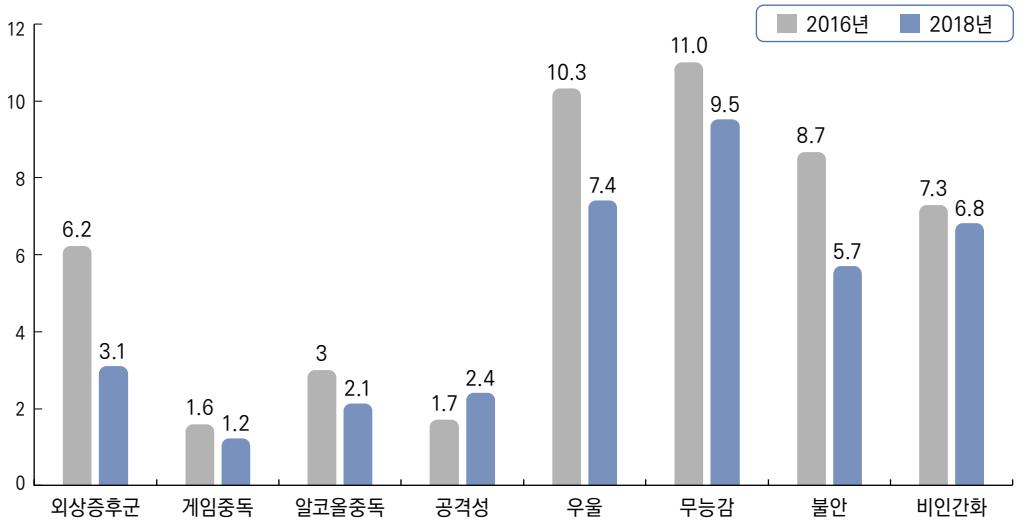
**| 표 2-110 |** 마음나래 프로그램 운영 실적

| 구 분 | | 외부 전문상담 | 찾아가는 심신케어 | 스트레스 집중치유 |
|---|---|---|---|---|
| 2017년 | 횟 수 | 1,139회 | 16회 | 7회 |
| | 인 원 | 217명 | 939명 | 250명 |
| 2018년 | 횟 수 | 1,644회 | 18회 | 7회 |
| | 인 원 | 260명 | 1,073명 | 270명 |

### 3) 평가 및 발전방향

교정공무원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이러한 노력으로 2018. 12월 실시한 교정공무원 심리검사 결과 2016년에 비해 문제 호소 수준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교정공무원 개개인의 정신건강을 증진함을 물론 건강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나아가 대국민 안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림 2-149 | 정신건강 8요인 위험군 감소 비율




출처 : 법무부 교정공무원 심리검사를 통한 정신건강 실태분석,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지웰니스, 2018. 12월

## 다. 교정공무원의 응급처치 역량 강화

의료과 교감 장재훈

### 1) 추진 배경

교정현장에서 응급처치에 대한 교정공무원의 관심제고와 응급상황 대응능력 향상을 통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수용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정공무원의 응급처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 2) 추진 성과

### (1) 전국 교도관 응급처치 경연대회 개최

#### ① 추진내용 및 성과

교도관의 응급처치 역량 강화를 위하여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52개 교정기관이 지방교정청별 예선대회를 거쳐 총 10개 기관이 경연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이 경연대회에서는 심정지 상황별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심정지 환자발생에 대한 출동·조치·이송 등 참가자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숙련도 및 임무교대의 협동성과 신속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또한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응급의학 및 응급구조 관련 전문가 3명(응급의학 전문의, 교수, 소방공무원)이 심사를 맡고 있다. 2018년 제6회 응급처치 경연대회의 최우수상은 경주교도소가 수상하였고 그 외에 9개 기관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 그림 2-150 | 응급처치 경연대회






#### ② 수범사례

2018. 4월 천식 기왕력이 있는 수용자 김○○이 점심식사 전 갑자기 본인 거실에서 의식이 저하되어 쓰러지는 것을 담당근무자가 발견하고 즉시 상황을 전파하고 출동한 의료과 교도 박○○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며 청색증이 나타남을 확인하고 제세동기를 이용하여 심장에 전기충격을 1회 실시하고 산소포화도를 75%로 측정됨을 확인하던 차 직후 도착한 기동순찰팀(CRPT) 직원 3명과 의료과 남○○이 이동용 침대를 이용하여 바로 구급차에 태우고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으로 이송을 하였다. 병원으로 이송 중에 응급구조사인 교위 남○○과 교위 김○○이 앰부백(인공호흡을 도와주는 백)과 산소를 투여하며 지속적인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고 응급실 도착 후 전문의의 응급처치를 받고 소생되었다.

### (2) 하트세이버 선정

#### ① 추진내용 및 성과

심장정지 또는 호흡정지 수용자(직원 포함)에 대한 적절하고 신속한 응급조치로 인명을 소생시킴과 동시에 사망사고 방지에 기여한 직원을 하트세이버로 선정하고 있으며 이는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트세이버의 선정요건은 심장정지(심실세동 등 포함) 또는 호흡정지로 죽음의 위험에 놓인 환자를 심폐소생술 또는 제세동기 등을 활용하여 소생시킨 직원으로 외부의료시설 도착 전에 환자의 심전도와 의식이 회복되어야 한다. 하트세이버는 각 교정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직원에 대해 해당 지방교정청의 사전조사와 하트세이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2018년 하트세이버는 상반기 2명과 하반기 12명이 선정된 바 있다.

#### ② 수범사례

2018. 11월 심장질환자인 수용자 김○○이 접견을 다녀오면서 어지럼증을 호소하여 동행 진료를 위하여 의자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것을 담당근무자가 발견하고 즉시 상황을 전파한 후 출동한 교위 허○○ 등 기동순찰팀(CRPT) 직원 3명과 이동용 침대를 이용하여 의료과로 이동하였고 의료과 도착 후 환자상태를 확인한 바 의식과 호흡이 없고 안면 청색증이 확인되어 교도 이○○이 즉시 이동용 침대에 올라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며 동시에 의무관 등이 산소포화도가 80%대로 떨어지는 환자에게 앰부백(인공호흡을 도와주는 백)을 이용하여 산소를 공급하고 교사 서○○와 교도 우○○는 제세동기 패드를 환자에게 부착하고 1차 심장충격을 실시하였으나 심장리듬이 불안정하여 교도 김○○와 교대로 심폐소생술을 계속 시행하였으며 외부의료시설 이송 중 구급차 내에서 교도 김○○와 교위 허○○가 교대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외부의료시설 도착 전 호흡이 회복되게 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소생시켰다.

**| 그림 2-151 |** 응급상황 시 대응



응급상황 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구급차로 이동

# 4. 수용자 교정·교화 실효성 향상을 위한 교정정책 추진

## 가. 심리치료센터 치료적 역할 강화

심리치료과 교감 이원섭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최근 약물·알코올에 취한 상태에서 정신질환으로 뚜렷한 이유 없이 방화·살인을 저지르거나 잔혹한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우리가 가장 안심하고 살아가야할 주변 생활환경에서 이러한 특정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된다.

교정본부는 이러한 특정 범죄자 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재범 고위험군의 안정적 사회정착 및 재범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심리치료 특성화 기관인 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하여 왔으며, 원활한 심리치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16년 법무부 교정본부에 심리치료과를 신설하였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2018년 안양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 심리치료센터를 추가 신설하여 현재 12개 심리치료센터에서 보다 많은 재범 고위험군 수형자를 대상으로 심리치료를 실시하게 되었다.

| 그림 2-152 | 안양·목포 심리치료센터 개소식



안양 심리치료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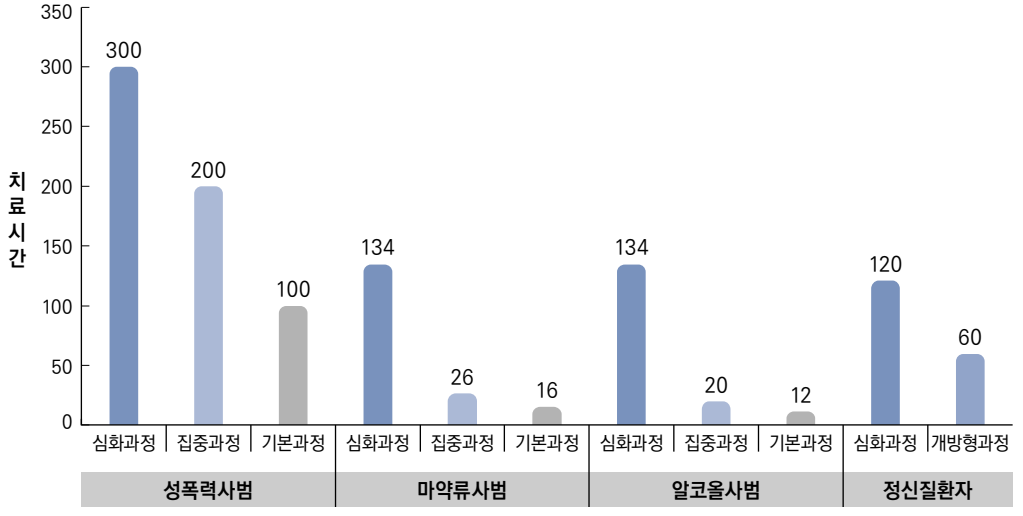

목포 심리치료센터

### 2) 추진내용과 성과

성폭력사범, 알코올관련사범, 정신질환자, 아동학대사범 및 동기없는 범죄자 등 재범 고위험군에 대한 보다 체계적·전문적 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심리치료센터의 치료적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등 전문인력이 근무하고 있는 심리치료센터는 재범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형자를 대상으로 범죄성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존 교육은 강사가 일방적으로 성왜곡, 약물 오·남용 등에 대해 설명하는 주입식 방식으로 수용자의 참여가 전혀 없는 강사 위주의 교육방식이었다. 전문인력(상담심리사·임상심리사 등)에 의한 상담이나 집단치료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치료프로그램은 모든 수형자가 아닌 성폭력, 마약, 아동학대 등 치료대상 유형군을 분류하고 이들에 대한 맞춤형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심리치료센터는 중독 및 재범위험성이 가장 높은 중독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과 전문의,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등 전문직원과 1:1 심리치료 상담 및 집단형태 심리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최대 300시간 이상의 심리치료를 받게 된다.

**| 그림 2-153 |** 심리치료센터 주요 업무현황




**| 표 2-111 |** 주요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실적

(단위: 건)

| 구분 | 성폭력 | 아동학대 | 마약류 | 알코올 | 정신질환 | 동기없는범죄 |
|---|---|---|---|---|---|---|
| 2016 | 1,947 | 21 | 4,248 | 699 | 222 | - |
| 2017 | 2,229 | 45 | 694 | 975 | 310 | 24 |
| 2018 | 2,226 | 48 | 788 | 1,101 | 610 | 34 |

### 3) 평가 및 발전방향

법무부 교정본부의 새로운 시도(치료적 개입)는 완전치유는 아니지만 수용생활태도 등에서 주목할 만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첫째, 교정기관의 지속적인 치료노력은 중독수용자의 수용생활태도 등에 있어 변화를 이끌어 내고 이러한 삶에 대한 태도변화는 중독수용자에게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해 줄 수 있다.

둘째, 치료프로그램을 통해 중독수용자는 스스로 재활에 대한 타고난 동기(Intrinsic motivation)를 찾고 출소 후에도 동기를 유지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

셋째, 치료프로그램 내 다양한 활동과 상담은 수형자의 스트레스(구금에서 오는 심리적 위축 등)를 감소시킴으로써 수용생활 안정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특정범죄자에 대한 전문화된 치료적 개입은 범죄성 완화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수용동에서 중독수용자를 대면하고 관리하는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상담기법 및 중독증상 이해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치료프로그램을 통한 범죄성 완화 및 생활태도 변화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나. 대전지방교정청 분류센터 업무 개시

분류심사과 교감 우치동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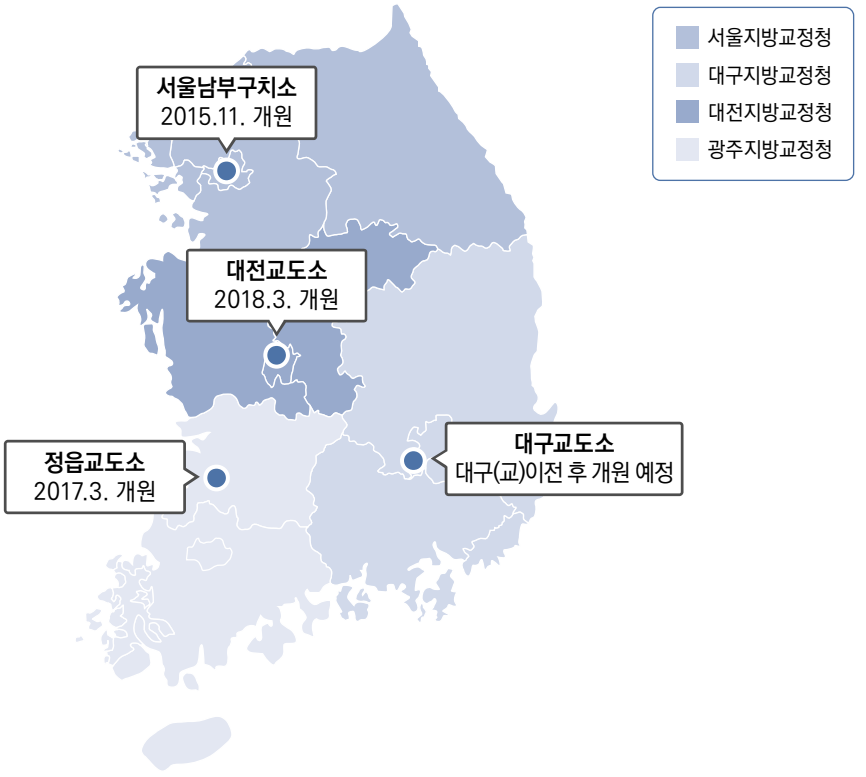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범죄의 위험성과 재범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범죄 행위의 원인, 동기, 방법에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상대적으로 높은 범죄를 고위험 범죄라고 정의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고위험 범죄를 저질러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고위험군 수형자)의 정밀 분류심사와 심층상담을 통한 위험성 평가, 위험성 완화를 위한 처우방안 등의 제시를 위해 분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분류센터는 아동 성폭력, 연쇄 성폭력 등 성폭력 관련 범죄, 상습폭력·상해 등 폭력 관련 범죄, 존속살해, 연쇄살해 등 살인 관련 범죄, 연쇄방화 등 방화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형이 확정된 수형자 등에 대한 정밀 분류심사를 전담하고 있다.

법무부는 2015년 최초로 서울지방교정청(서울남부구치소)에 분류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광주지방교정청(정읍교도소)에 분류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해 왔다. 대전지방교정청(대전교도소) 분류센터는 2017년에 업무시설 리모델링과 분류센터 전담직원 배치 및 관련 직무교육 등을 완료하고 2018. 3월부터 정상적인 업무를 개시하여 고위험군 수형자에 대한 정밀 분류심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 그림 2-154 | 권역별 분류센터 지정기관




| 그림 2-155 | 분류센터



대전지방교정청 분류센터 전경



투사적 기법 활용 심층 심리검사 모습

### 2) 평가 및 발전방향

대전지방교정청 분류센터의 운영으로 서울·대전·광주 권역의 고위험군 수형자에 대한 정밀 분류심사와 고위험군 수형자를 대상으로 수립되는 집중개별처우계획 등의 정상적 이행 여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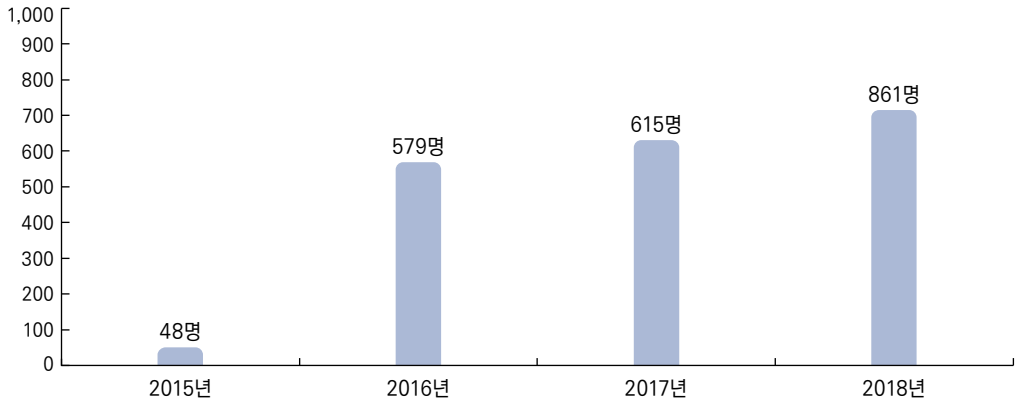
점검·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2018. 6월 서울지방교정청 분류센터가 행정안전부의 신설기구 성과평가를 통과하여 정식 법무부 직제로 반영됨에 따라 분류센터 전담직원의 보다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향후 2019년 이후 대구교도소의 이전이 완료되면 대구지방교정청 분류센터가 대구교도소에 설치될 예정이며 대구지방교정청 분류센터가 정상적인 운영을 시작하면 고위험군 수형자에 대한 권역별 통합관리로 보다 체계적인 정밀 분류심사 및 심층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구·대전·광주지방교정청 분류센터가 정상적인 운영을 시작하면 고위험군 수형자에 대한 정밀 분류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심리치료프로그램 과정 제시와 해당 프로그램의 연계를 통해 고위험군 수형자의 재범위험성을 감소시키고 그 결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림 2-156 |** 고위험군 수형자 정밀 분류심사 현황




**| 표 2-112 |** 고위험군 수형자 심리치료프로그램 과정 제시 현황

(단위 : 명)

| 연도 | 2015 | 2016 | 2017 | 2018 |
|---|---|---|---|---|
| 성폭력심리치료 | 24 | 355 | 409 | 568 |
| 상습폭력심리치료 | 2 | 13 | 15 | 6 |
| 알코올심리치료 | 8 | 133 | 304 | 409 |
| 정신질환심리치료 | 0 | 4 | 3 | 9 |
| 동기 없는 수용자 심리치료 | 0 | 2 | 7 | 2 |
| 도박심리치료 | 0 | 7 | 8 | 3 |
| 도벽심리치료 | 0 | 4 | 8 | 9 |
| 아동학대심리치료 | 0 | 2 | 8 | 9 |

## 다. 교정실무 교재 개발·편찬

교정기획과 교위 권명호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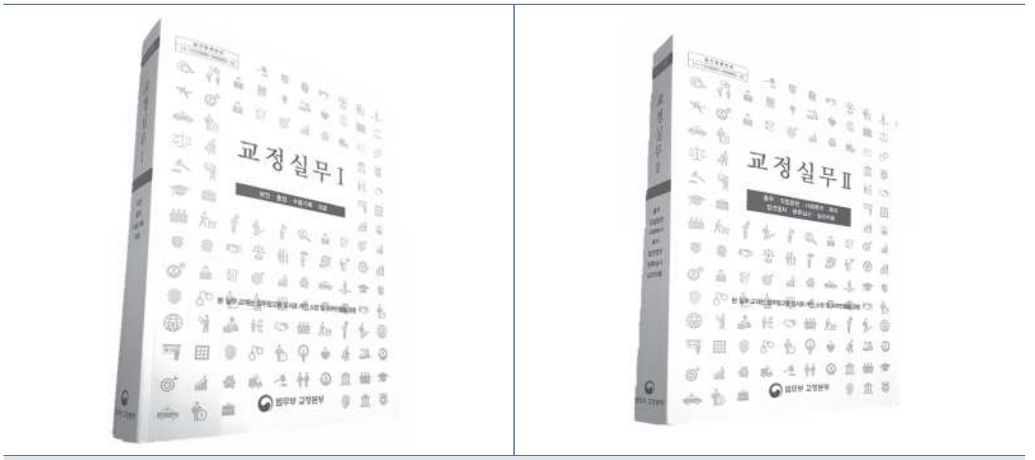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라는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원들의 직무역량을 향상시키고 전문화하며 통일적인 업무수행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였다. 기존에도 『교정업무편람』의 형태로 교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정리한 책자가 발간된 적은 있었으나 법령 위주의 단순하고 형식적 기술로 인해 교정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였다. 이에 교정 관계 법령,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및 각급 법원 판례, 각종 실무 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교정실무』 교재를 개발, 편찬하게 되었다.

『교정실무』 교재는 2017. 5월 개발에 착수하여 같은 해 11월에 초안을 마련하고 수차례에 걸친 검토 및 감수 작업을 거쳐 2018. 6월 발간, 배부하였다.

### 2) 교재 구성 및 내용

『교정실무』 교재는 교정실무Ⅰ,Ⅱ 총 2권으로 교정실무Ⅰ에는 보안실무, 출정실무, 수용기록실무, 의료실무가 수록되어 있으며 교정실무Ⅱ에는 총무실무, 직업훈련실무, 사회복귀실무, 복지실무, 접견영치실무, 분류심사실무, 심리치료실무가 수록되어 있다.

| 그림 2-157 | 교정실무 책자




교정실무 책자

### 3) 평가 및 기대효과

『교정실무』는 교정행정의 복잡하고 다양한 분야에 관해 업무담당자의 업무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관련 판례, 참고자료 등을 수록하고 있어 교정 현장에서 수용자를 처우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교정공무원들의 직무 역량을 향상시키고 전국 교정기관 업무의 통일성을 확보함으로써 엄정한 형 집행과 공정한 수용자 처우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라. 취업수형자 작업장려금 인상

◉ 직업훈련과 교감 한성률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작업장려금이란 교정기관의 장이 취업수형자(교도작업 등에 취업 중인 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의 종류, 작업성적, 교정성적,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이 아니라, 국가가 석방 후 생활안정에 활용하도록 정책적으로 지급하는 은혜적 급부이기에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지급 시기도 석방 시 지급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가족생활 부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석방 전이라도 지급이 가능하다.

비록 작업장려금이 노동에 따른 대가는 아니지만 출소 후 생활 정착에 필요한 자금으로 쓰기에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여 재정건전성 범위 내에서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 2) 추진 성과

작업장려금은 국고 지원 없이 교도작업의 판매수익금으로만 운영되는 교도작업특별회계 특성상 세입금의 증가 없이는 수형자의 작업장려금을 인상 할 수 없는 실정이며 수입금의 대부분을 작업장 신축, 재료구입비, 직업훈련 경비 등에 지출하고 있어 작업장려금 인상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교정본부는 기획재정부와 교도작업특별회계 예산 증액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작업장려금 인상에 필요한 예산 934백만원을 '19년 예산(안)에 반영하였으며 재정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향후 3년간 매년 5%씩 작업장려금 인상을 추진 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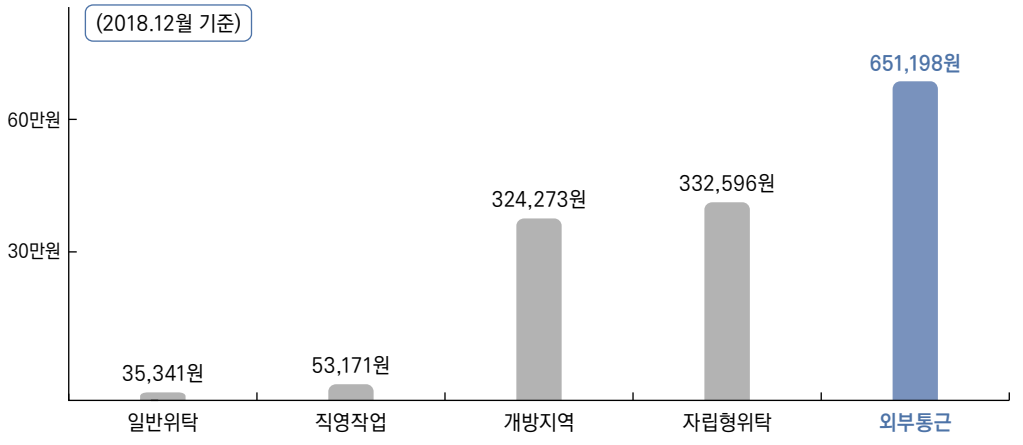
**| 표 2-113 |** 작업장려금 지급기준 변경(안)

(단위 : 원)

| 구 분 | 등급 | 지 급 액 | | 인상액 |
|---|---|---|---|---|
| | | 변경전 | 변경후 | |
| 직업훈련 | 상 | 900 | 1,100 | 200 |
| | 중 | 800 | 1,000 | 〃 |
| | 하 | 700 | 900 | 〃 |
| 운영지원작업 (취사장 제외) | 상 | 1,200 | 1,400 | 200 |
| | 중 | 1,100 | 1,300 | 〃 |
| | 하 | 1,000 | 1,200 | 〃 |
| 일반생산작업 (위탁) | 상 | 2,500 | 2,800 | 300 |
| | 중 | 2,000 | 2,300 | 〃 |
| | 하 | 1,600 | 1,900 | 〃 |

또한 일부 직종에 편중된 작업장려금의 편차를 줄이고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은 직업훈련, 운영지원작업, 위탁작업 취업수형자의 작업장려금을 인상하여 균형 있는 교도작업 운영과 근로의욕 고취를 통해 작업 생산성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특히 교정시설 밖 외부기업체에 취업하는 외부기업통근 작업자는 대부분이 출소 예정자임을 감안하여 사업체에서 수납한 세입액의 60%를 지급하던 것을 80%로 대폭 확대하여 실질적인 사회정착금 마련에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그림 2-158 |** 직종별 월 평균 작업장려금 지급 현황



### 3) 평가 및 향후 추진계획

작업장려금은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럼에도 사회 정착에 필요한 자금으로 쓰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면이 없지 않다. 또한 교도작업은 형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정역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혜적으로 급부하는 작업장려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앞으로 교정본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향후 3년간 매년 5%씩 연차적으로 인상을 추진 중이며 상향된 작업장려금 지급 기준을 2019. 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취업수형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함은 물론 수형자의 출소 후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어 사회에 올바른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 제 9 절 출입국·외국인정책업무

## 1. 편리하고 안전한 고품격 출입국행정서비스 제공

### 가.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대상 확대 및 절차 간소화 시행

출입국심사과 사무관 손흥기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자동출입국심사는 사전에 지문과 얼굴사진을 등록하고, 본인이 여권과 지문을 자동출입국심사대에 인식시켜 간편하고 신속하게 출입국심사를 종료하는 출입국심사 제도이다. 2008년 6월 인천공항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처음 제도를 시행한 이래 국민의 사전등록절차 생략, 등록외국인 이용 허용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이용자가 증가하였다. 다만, 등록외국인의 경우 별도의 사전등록 절차가 필요하고 관광 목적 단기체류외국인은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자동심사대 이용활성화의 제약요인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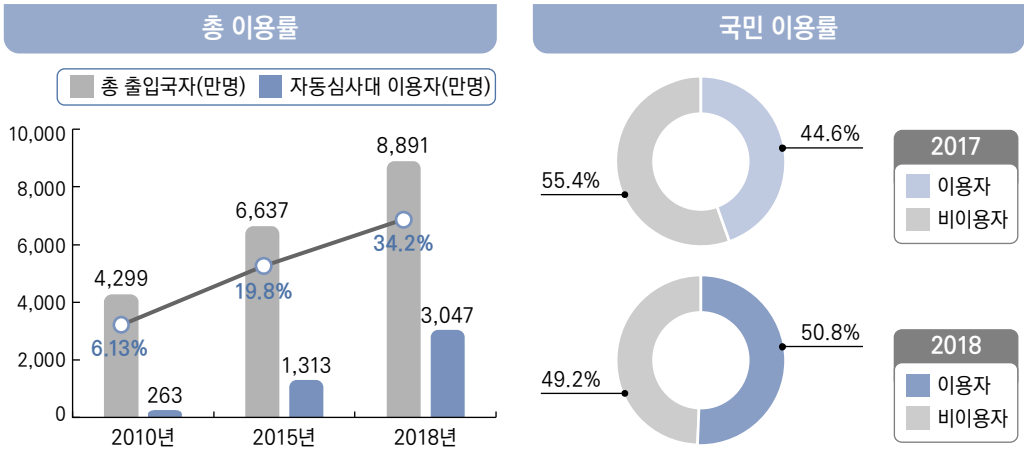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2018년 10월 1일부터 등록외국인은 번거로운 사전등록절차 없이 바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한편, 단기체류외국인의 경우에는 입국 시 취득한 지문 및 얼굴정보를 활용하여 출국 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2018년 12월 17일부터 인천공항(3번 출국장)에서 시범운영 중에 있다.

**| 표 2-114 |** 자동출입국심사대 운영현황

(기준: 2018. 12월, 단위 : 대)

| 구분 | 합계 | 인천 공항 | 김해 공항 | 김포 공항 | 제주 공항 | 청주 공항 | 대구 공항 | 인천항 | 부산항 |
|---|---|---|---|---|---|---|---|---|---|
| 설치 대수 | 193 | 148 | 15 | 6 | 4 | 4 | 4 | 7 | 5 |

| 그림 2-159 |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현황




## 2) 평가 및 발전방향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입국자가 증가하고,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가 높아지면서 전년대비 출입국자는 850만명 증가하였다. 이러한 출입국자 증가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출입국심사관의 증원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고품질의 출입국심사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활성화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다. 특히,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는 등록외국인에 대한 사전등록절차 생략, 단기체류외국인 출국 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개선은 외국인의 출입국 편의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지원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혁신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단기체류 후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전면 허용, 자동출입국심사대 증설 등을 통하여 승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그림 2-160 | 추진경과




## 나. 국가 간 자동출입국심사

출입국심사과 사무관 손흥기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국가 간 협정 등을 통하여 상대방 국가에서 자국국민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출입국 편의 제공을 통한 양국 국민의 우호증진 및 인적교류 확대에 기여하였다.

우리나라와 경제·사회·문화분야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미국과 2012년 6월 처음으로 국가 간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을 시행한 이래로 홍콩('13. 12월), 마카오('16. 12월), 2018년에는 대만('18. 6월), 독일('18. 12월)과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을 시행하여 양국 국민이 등록만 하면 해당국가에서 편리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 그림 2-161 |** 추진경과

| | | |
|---|---|---|
| 2011 4. 21. | ·한-미국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추진에 관한 공동선언문 채택 | |
| 2013 12. 12. | ·한-홍콩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에 관한 MOU 체결 | 한-미국 자동출입국심사 상호 이용 시행 ('12. 6. 13.) |
| 2016 9. 23./12. 20. | ·한-마카오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에 관한 구상서 교환 | 한-홍콩 자동출입국심사 상호 이용 시행 ('13. 12. 12.) |
| 2018 6. 20. | ·대한민국 법무부와 독일연방공화국 내무부 간 협력약정 체결 | 한-마카오 자동출입국심사 상호 이용 시행 ('16. 12. 28.) |
| 2018 6. 27. | ·대한민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대만 이민서 간 MOU 체결 | 한-대만 자동출입국심사 상호 이용 시행 ('18. 6. 27.) |
| | | 한-독일 자동출입국심사 상호 이용 시행 ('18. 12. 1.) |

**| 그림 2-162 |**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체결




한-대만 양측 대표부간 MOU 체결



한-독 자동출입국 상호이용 체결

### 2) 평가 및 발전방향

국가 간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을 통해 양국 국민의 방문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고 상호이용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국경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출입국심사서비스의 글로벌화를 구현하는데 기여하였다.

앞으로도 자동출입국심사대 증설 등 출입국심사 인프라를 확충하고, 현재 5개국인 우리나라와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 이용 국가를 확대하여 양국 국민 모두가 상호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

## 다. 출국금지제도 운영개선

출입국심사과 주무관 신하균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최근 국민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이 증가하면서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되어야 할 출국금지 제도가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출국금지 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의 원칙에 기반하여 제도를 개선하라"는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약 9개월간의 내부 검토 및 검찰·경찰·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민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출국금지·정지 및 연장 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앞서 그 적정성을 심의할 수 있도록 2018년 7월 1일부터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신설·운영하였다.

출국금지심의위원회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출입국정책단장(부위원장), 출입국심사과장, 형사기획과장, 인권조사과장 등 내부위원 4명으로 구성하였다. 출국금지 또는 출국금지 기간연장 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무부에 제출한 이의신청 중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 출국금지 또는 출국금지 연장의 타당성 및 필요성 여부를 심의하며, 이외에도 출국금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있다.

**| 표 2-115 |** 출국금지 현황

(단위 : 명)

| 구 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계 | 9,745 | 27,493 | 14,714 | 14,886 | 15,092 |
| 검 찰 | 6,243 | 6,591 | 6,919 | 6,137 | 5,569 |
| 경 찰 | 1,753 | 1,810 | 2,283 | 2,107 | 2,325 |
| 관세청 | 51 | 86 | 37 | 73 | 66 |
| 국세청 | 1,102 | 1,611 | 4,421 | 5,670 | 6,503 |
| 병무청 | 353 | 319 | 439 | 391 | 253 |
| 기 타 | 243 | 17,076 | 615 | 508 | 376 |

* 2015년 기타 출국금지자 중 16,576명은 메르스 관련자임

### 2) 평가 및 발전방향

제1회 출국금지심의위원회('18. 8. 10.)에서는 이의신청 5건을 심의하여 2건을 인용하였고, 제2회 출국금지심의위원회('18. 9. 3.)에서는 이의신청 4건을 심의하여 1건을 인용하였다. 인용된 사람 모두 국세체납을 사유로 출국금지 되었으나 보유 재산이 없고 재산 은닉의 구체적인 정황과 재산의 해외도피 가능성이 없어 출국금지를 해제하였다. 또한, 법무부는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운영('18. 7. 1.) 이후 국민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위원회 회부 전 자체 심의하여 별도로 12건의 이의신청에 대해 인용하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출국금지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출국금지 제도가 공익과 인권의 조화 속에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 라. 외국인 관광객 유치지원을 위한 출입국 제도개선

출입국심사과 사무관 이호원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평창 동계올림픽대회('18. 2. 9. ~ 2. 25.) 참가자에 대한 출입국편의 제공, 올림픽 관람 목적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제한적 무사증 입국 허용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지원으로 올림픽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다. 다만, 동 제도 시행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중국인으로 편중된다는 일부 지적이 있어 동남아 국가 국민 등으로의 외국인 관광객 다변화가 요구되었다.

한편,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의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찍고 입국일자 및 체류기간을 적거나 일부인을 날인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 방식은 입국심사 시간 지연, 입국심사장 혼잡 발생 그리고 출입국심사관의 업무과중에 따른 피로도 증가로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에 장애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과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출입국심사서비스에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였다.

### 2) 평가 및 발전방향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시행했던 중국인에 대한 제한적 무사증 입국제도를 개선하여 재외공관 지정 현지 전담여행사를 통해 양양공항으로 입국하는 5인 이상 동남아(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단체관광객에 대하여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여 양양공항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동 제도는 2018. 1. 22.부터 2018. 4. 30. 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강원도의 적극적인 제도 연장 요청을 수용하여 2018. 12. 31. 까지 연장하였다.

종전의 '입국심사인 날인 방식'을 '입국심사 확인증' 교부방식으로 전면적으로 변경할 경우, 미처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2018년 1월부터 인천공항에서 시범실시 중에 있으며, 2018년 5월부터는 김포공항으로 시범실시 시행기관을 확대하였다. 향후 동 제도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편의성이 입증된다면 '입국심사 확인증' 제도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 그림 2-163 |** 입국심사 확인증 견본(시행 전·후)

| 현행 | 변경(안) |
|---|---|
|  |  |



## 마. 탑승자 사전확인제도의 안정적 운영

출입국심사과 사무관 이호원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14년 3월에 발생한 말레이시아 항공기 실종사건의 원인으로 도난·분실여권소지자에 의한 테러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출발지 공항에서부터 위험승객의 항공기 탑승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탑승자 사전확인제도(IPC)"를 시행하게 되었다. 2015년 2월 16일 일본 나고야 공항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국적항공기를 대상으로 처음 시범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2017년 4월 1일부터는 국내에 취항하는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전면 시행하였고, 2018년 12월 말 현재 46개국 90개 항공사, 176개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사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 2) 평가 및 발전방향

2018년 한 해 항공사가 전송한 승객 정보 46,500,848건에 대한 탑승가능 여부를 응답, 인터폴 수배자 정보 12건, 분실 또는 무효 처분된 여권 정보 9,920건 등을 포함한 총 19,055건에 대하여 탑승불가를 통보하여 위험인물의 대한민국 입국을 원천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탑승자 사전확인제도의 안정적 운영으로 테러위험으로부터 탑승자와 항공기의 안전과

국경보안을 강화하게 되었으며, 2018년 국가적 행사였던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안전개최에도 크게 기여하는 기반이 되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스템개선 등을 통하여 탑승자 사전확인제도가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국제행사의 성공개최를 지원하고, 안전한 국경을 관리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바. 출입국우대카드 전담추진체계 마련

출입국심사과 사무관 손흥기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사회 공헌자, 기업인, 우수관광객 등에게 보다 나은 출입국 우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전담 부서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출입국우대카드의 심사, 발급 및 관리 등 업무를 일원화·전문화하여 효율성을 증대하였다.

〈우대 관련 카드 제도 현황〉

**가) 출입국우대카드(Immigration VIP Card)** : 국가·사회발전 공헌자에게 사회적 예우를 다하고 교통약자 배려 및 국제교류 증진을 위해 출입국심사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카드 소지자는 출입국 시 동반 3인까지 전용 보안검색대 및 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반성장위원회 등 추천기관에 신청을 하면 법무부의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 카드 발급대상자가 선정된다. 2013년 12월 시행 후 2018년 12월 말 현재 16,232명에게 출입국우대카드가 발급되었다.

**나) 한국방문우대카드 (Korea Priority Card)** : 관광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우수 외국인 관광객에게 사증 발급 등 출입국절차를 우대하고 관광 위락시설·면세점 등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카드 소지자에게는 출입국 우대 서비스뿐만 아니라 단기방문 복수사증 발급, 자동심사대 이용 및 의료, 통역 등 각종서비스가 제공된다. 2018년 12월말 현재 2,886명에게 카드를 발급하였다.

**다) 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 : 1996년 11월 APEC경제장관회의에서 제도시행 선언 후 한국, 호주, 필리핀 회원국 간 합의에 의해 1997년 5월 최초 시작되었다. 이 제도는 현재 19개국의 APEC 회원국 기업인에 대해 입국비자 대신 동 카드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역내 무역 및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카드소지자는 대한민국 뿐 아니라 회원국 입국 시 비자면제 및 전용통로를 통한 신속한 출입국심사를 제공 받는다. 2018년 12월 말 현재 19개국 총 카드 발급 수는 303,109개이며 이 중 한국인은 49,029개로 회원국 중 1위이다.

### 2) 평가 및 발전방향

출입국 우대카드 전담추진체계 구축으로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전문화하여 사회공헌자 및 기업인 등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기업인, 우수 관광객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여 국제교류 증진 및 관광, 투자, 무역활동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그림 2-164 | 출입국우대카드 전담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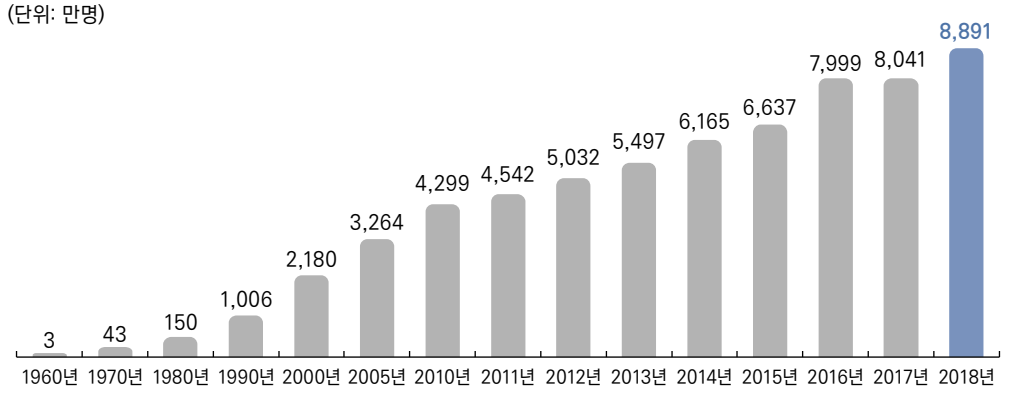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글로벌인재비자센터

## 사. 출입국자 현황

출입국심사과 주무관 송방혁

2018년도 전체 출입국자는 전년도의 80,407,702명 보다 10.6% 증가한 88,908,422명을 기록하였다. 국민은 57,859,670명으로 전년도 53,445,030명에 비해 8.3% 증가하였고 외국인은 31,048,752명으로 전년도 26,962,672명에 비해 15.2% 증가하였다.

| 그림 2-165 | 출입국자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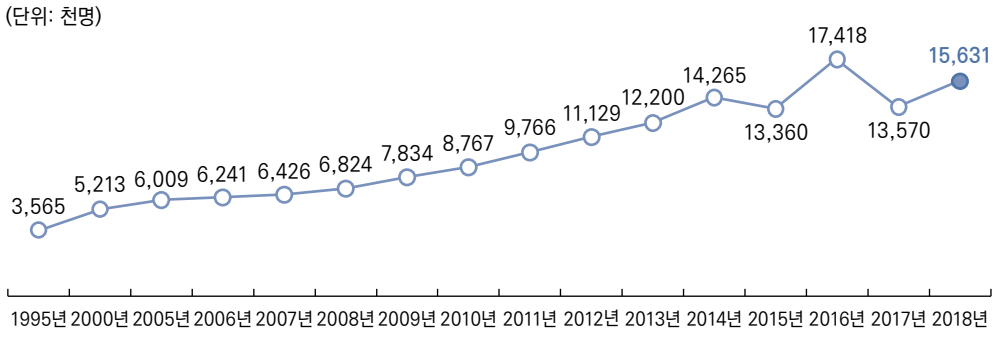
### 1) 외국인 입국자

2018년도 외국인 총 입국자는 15,630,522명으로 전년도 13,569,509명에 비해 15.2% 증가하였다.

국적별 입국자 수는 중국 503만명(32.2%), 일본 298만명(19%), 대만 115만명(7.3%), 미국 107만명(6.8%) 순이다. 중국 국적자는 전년대비 638,970명(14.5%)이 증가하여 가장 많은 인원이 증가하였고 다음으로 일본 국적자가 638,856명(27.3%) 증가하였다.

입국목적별로 살펴보면, 관광 및 방문이 1,241만명(79.4%)로 가장 많았고, 재외동포 57만명(3.6%), 방문취업 26만명(1.7%)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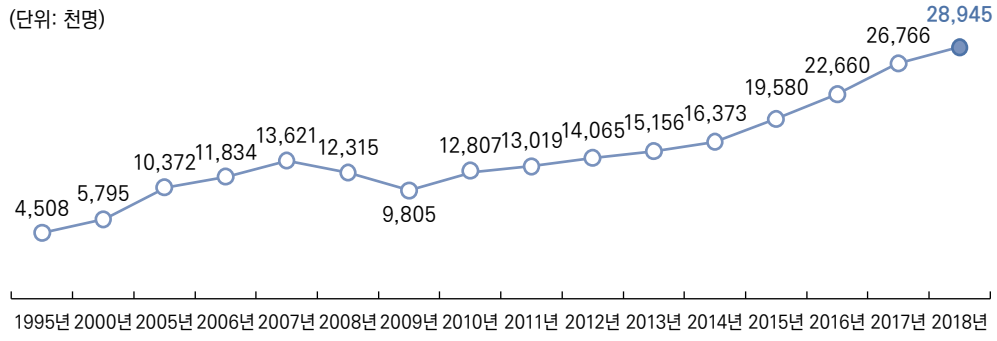
| 그림 2-166 | 외국인 입국자 증감 추이




### 2) 국민 출국자

국민 출국자는 28,945,447명으로 전년도 26,765,503명 대비 8.1% 증가하였다. 2007년 이후 감소하던 국민 출국자가 2010년 국내 경기회복 및 환율안정 등으로 대폭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2018년에도 2017년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 가고 있다.

| 그림 2-167 | 국민 출국자 증감 추이



# 2.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비자정책 추진

## 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한 농어가 일손부족 지원

체류관리과 사무관 주지정 / 주무관 김택균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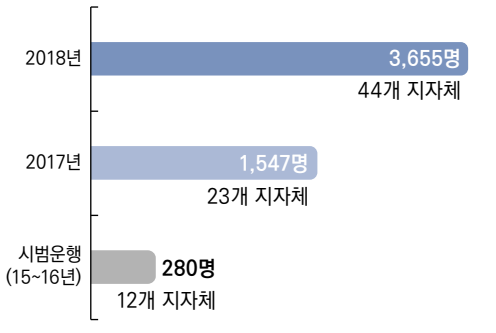
그간 일부 지자체와 농가에서는 계절적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고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 도입을 건의해왔다. 이에 법무부는 2014년 9~11월 충북 괴산군 등 일부 지자체와 함께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계절근로자 시범사업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추진과정에서 타 부처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정책목표를 공유하고 추진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협업을 토대로, 법무부는 2015년 9월부터 충북 괴산군·보은군, 강원도 양구군에서 첫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다. 충북 괴산군은 김장용 절임배추를 대량 생산하는 지역으로, 김장철에는 일시적 인력수요가 급증하는 특성이 있다. 이에 법무부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중국 길림성의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해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시범사업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농가는 필요한 일손을 제 때 구해서 좋고, 중국 농부들은 농한기 과외소득을 올릴 수 있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사업모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우려했던 불법체류, 임금체불, 인권침해 등의 부작용은 전혀 없었으며 사업 참여 지자체, 외국인근로자 및 농가의 대부분이 사업 재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제 농촌뿐만 아니라 많은 어촌에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도입을 희망하고 있다.

### 2) 추진내용과 성과

시범운영 기간 동안(2015년 10월~2016년 12월) 12개 지자체에 280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하였다. 2017년에는 23개 지자체에 계절근로자 1,547명을 배정(농업 1,175명, 어업 372명)하였고, 2018년에는 44개 지자체에 3,655명(농업 2,936명, 어업 719명)을 배정하는 등 그 사업 규모 및 근로자 규모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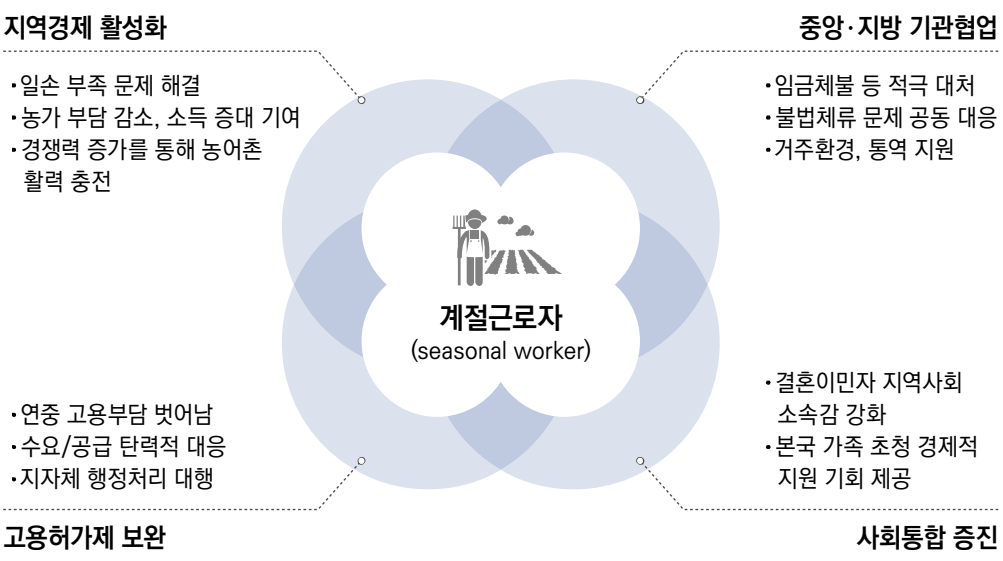
| 그림 2-168 |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



### 3) 평가 및 발전방향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법무부와 지자체의 안정적인 지원으로 공급자(농어민)·소비자(일반 국민)·근로자(계절근로자 및 결혼이민자 등)가 모두 만족하는 성공적인 외국인근로자 도입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 제도를 통해 국가가 외국인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 브로커들의 개입을 차단하며, 숙박시설·근로·임금지불 등 계약이 잘 지켜지는지, 인권침해는 있지 않은지를 관계기관 합동 실사점검을 통해 철저히 확인하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경우 친족들과 함께 일하며 유대감을 높일 수 있어 결혼이민자의 가족 복지와 사회통합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림 2-169 | 기대효과




법무부는 앞으로도 동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자체와 농어가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건의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계절근로자 배정을 확대·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 등을 관리하는 기본 법령인 출입국관리법령에 제도 시행절차, 도입 업종과 규모 등의 법적근거를 보완하여 계절근로자의 지위 향상과 노동권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 나. 세금·공과금 체납외국인의 비자연장 제한을 통한 국가재정 누수 방지

체류관리과 사무관 김명훈 / 주무관 송지훈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015년도 초부터 각종 언론 등을 통해 외국인 세금체납의 심각성과 이로 인한 정부·지자체의 재정 악화 문제가 빈번하게 제기되었지만, 외국인의 경우 재산의 상당부분을 본국에 두는 경우가 많고, 소재 파악에도 어려움이 있어 국세청, 관세청, 지자체 등 징세기관에서는 납부독촉, 가산세 등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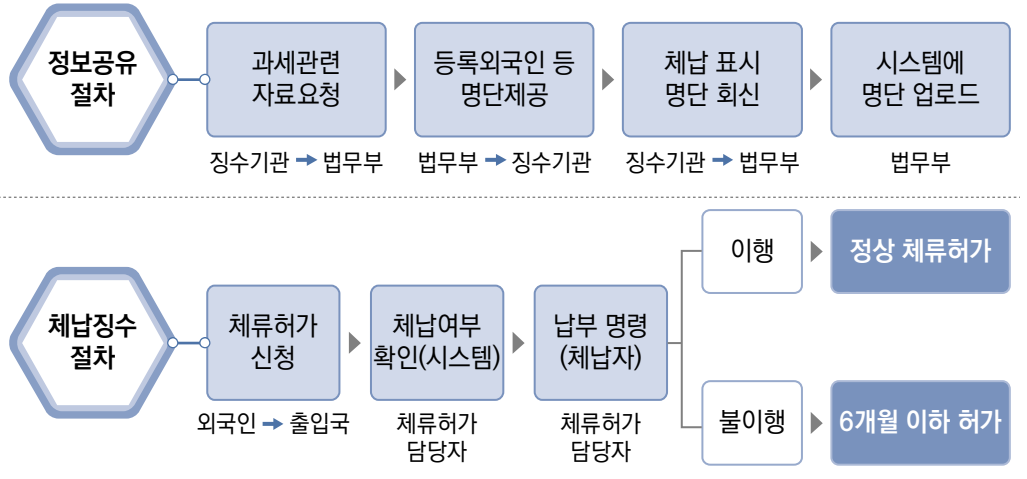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체납외국인에게 비자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각 징세기관이 보유한 외국인의 세금 체납정보 공유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2015년 12월 관계부처 간 지속적인 협의 끝에 행정안전부·국세청·관세청이 사업 추진에 합의하였고, '외국인의 준법의식 제고를 통한 세수 정상화'라는 공동목표 아래 공동 TF를 구성하여 외국인등록정보 및 세금체납정보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법령을 마련하였다.

### 2) 추진내용과 성과

2016년 5월부터 안산·시흥시에서 실시한 시범사업을 2017년 5월 주요 16개 출입국·외국인관서로 확대 시행하였고, 2018년 1월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2017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이 제도를 통해 약 329억 원(징수 35억, 자진납부 294억)의 세금체납액을 감소시켰으며, 이로 인해 국가 세수 정상화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상습 체납외국인에게 납세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그림 2-170 | 외국인 조세체납 확인제도 절차 개요



### 3) 평가 및 발전방향

본 제도는 법무부의 비자연장 허가와 외국인의 세금 체납정보를 연계하여 외국인의 세금 체납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전략을 통해 '국가세수 확충' 이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한 혁신적인 협업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분야로 확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법무부는 조세분야에 한해 시행 중인 현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건강보험료 체납 분야까지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등과 협업[26]을 진행 중이며, 2019년 상반기에 수도권 지역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19년 하반기에는 전국으로 확대시행 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비자연장 제한은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향상, 외국인의 건전한 시민의식 및 체류질서 준수의식 고취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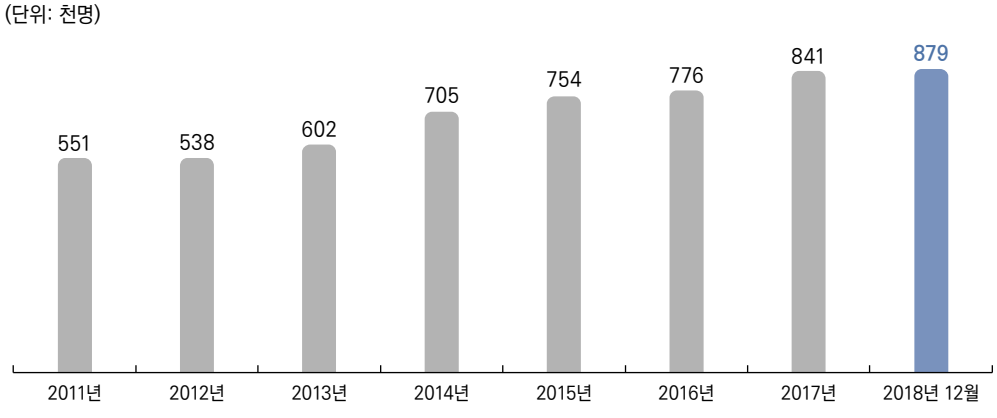
## 다. 재외동포 포용정책 추진

체류관리과 사무관 김종복 / 주무관 조기철

### 1) 추진배경 및 추진내용

1999년 재외동포법 시행 후 거주국 동포 간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취업제(H-2) 도입 및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점진적 확대를 통해 중국·구소련지역 등의 국내 체류 재외동포들이 계속 증가하여, 2018년 12월말 현재 국내 체류 재외동포는 약 87만9천명으로 전체 체류외국인 237만명의 37%에 이르렀다.

| 그림 2-171 | 외국국적동포 연도별 체류 현황




26) 제4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2018. 6. 7.)에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보건복지부 등과 합동 보도자료 배포

2018년 6월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방문취업(H-2) 비자취득 가능 연령요건을 기존 만 25세에서 18세로 낮추어 동포들의 모국 방문 및 취업기회를 확대하였고, 지침 개정을 통해 내국인 기피업종인 뿌리산업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동포에 대하여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2018년 9월에는 「외국국적동포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재외동포(F-4) 자격자와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동포가 영주(F-5)자격을 신청할 경우 생계유지능력 입증 요건을 완화하여 동포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국내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2) 평가 및 발전방향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동포들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취업·체류가 가능한 자격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조기 사회통합 가능성 증진 및 한국 사회에의 기여 가능성 증가 등 긍정적 정책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도 동포이주의 역사적 특수성 및 1999년 「재외동포법」 시행 후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외동포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지원할 예정이며, 정부의 재외동포정책 추진방향에 따라 중국·구소련지역 동포와 선진국 동포와의 차별해소와 국내 체류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 라. 외국인 투자활성화 지원

체류관리과 사무관 이승현 / 주무관 박창두

### 1)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국내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자격을 부여한 후, 5년간 투자 유지 시 영주(F-5)자격으로 변경을 허가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2013년 5월 27일 도입하였다.

투자유형 및 방식은 한국산업은행에서 운용하는 원금보장·무이자형 공익펀드와 법무부장관이 정한 낙후지역 개발사업자에 의한 손익발생형 지역개발사업으로 구분되며, 투자기준금액은 일반 투자이민이 5억 원 이상, 55세 이상 은퇴이민자는 3억 원 이상으로 구분된다.

제도 도입 당해 연도인 2013년의 투자유치 실적은 13억 원으로 극히 저조하였으나, 이후 글로벌인재비자센터 운영을 통한 투자유치 홍보 강화와 투자금 송금 전담은행 지정, 해외설명회 개최 등 지속적인 투자유치확대 노력으로 2018년 말 기준 공익사업 투자유치 실적은 1,483억 원으로 제도 도입 초기 대비 11,307%로 급격히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였다.

특히, 유치된 투자금액은 한국산업은행을 통해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확대 사업에 중점 지원함으로써 내국인 일자리 창출과 국내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2) 부동산 투자이민제

외국인 간접투자 유치 확대를 위하여 2010년 2월부터 휴양목적 체류시설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 자격을 부여하는 '부동산투자 이민제도'를 제주도 지역에 도입하여 제도 시행 당해 연도인 2010년에는 976억 원의 투자 유치실적을 달성하였다.

이후 부동산투자 이민제도 적용지역을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2011년 강원도 평창알펜시아지구(2. 14.), 전남 여수 경도지역(8. 19.), 인천경제자유구역(11. 1.), 2013년 부산 해운대리조트 및 동부산관광단지(5. 20.), 2015년 경기 파주 통일동산(11. 1.), 2016년 강원 강릉 정동진지구(2. 1.) 및 전남 여수 화양지구(7. 11.)를 투자 대상지역에 추가 포함시켰다.

그 결과 2018년 말 기준 부동산 투자유치 실적은 1조 4,454억 원으로 제도 시행 초기 대비 1,380.9% 증가하여 해당 지역 리조트 건설 등 관광 휴양시설 관련 건설경기 부양과 이에 따른 내국인 일자리 창출 등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 3)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 및 창업지원 강화

2018년 2월부터 인천공항 내에 기존에 설치된 '투자이민상담센터'를 '글로벌인재비자센터'로 확대 개편하였고, 글로벌인재비자센터에서는 전문 상담사가 3개 언어(한국어/영어/중국어)로 외국인 투자자와 해외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투자 관련 홍보·통역·상담·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비자발급 및 체류허가 관련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 결과 2018년 투자상담 실적은 3,958건으로 전년대비 143% 증가하였고, 투자유치실적은 1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85% 증가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 표 2-116 |** 연도별 투자상담 및 투자유치 실적

| 연도 | 2014 (2월 개소) | | 2015 | | 2016 | | 2017 | | 2018 | |
|---|---|---|---|---|---|---|---|---|---|---|
| 구분 | 상담 | 투자유치 | 상담 | 투자유치 | 상담 | 투자유치 | 상담 | 투자유치 | 상담 | 투자유치 |
| 실적 | 982건 | 18억 원 | 1,400건 | 32억2천 원 | 1,308건 | 105억 원 | 1,626건 | 93억 원 | 3,958건 | 172억 원 |

또한, 2018년 6월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주무부처에서 추천한 우수 기술력 보유 외국인에 대한 학력요건을 폐지하는 등 기술창업 비자(D-8-4) 취득요건을 완화하였고, '기술창업지원프로그램(OASIS)[27]'의 지식재산권 소양 기초교육 및 심화교육 과정을 창업에

27) 법무부와 중기부에서 공동 지정한 '글로벌창업이민센터(한국발명진흥회 등 7개 기관)'에서 운영 중인 창업교육 프로그램

필요한 실습위주로 재편성하여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외국인 기술창업자가 '18년 기준 45명으로 전년 27명 대비 66.67% 늘어나 창업 유도를 통한 내국인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 그림 2-172 |** 2018 외국인 취업박람회 비자상담





아울러 2018년 3월에는 외국인 무역업자들이 초창기에 겪는 애로사항과 무역비자 제도[28]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여 ▲무역실적 입증 방식의 다양화 ▲'무역비자 기간연장 추천' 제도 도입 ▲'무역 심화교육 과정' 신설 등을 주요골자로 무역비자 제도를 개선하였다.

그 결과 외국인 무역업자가 '18년 기준 102명으로 전년 70명 대비 45.7% 늘어나 국산품 수출 등 국내 경기활성화에 기여하였다.

## 마. 글로벌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행정편의 제공 확대

체류관리과 사무관 이승현 / 주무관 용창식

### 1) 해외 석학 등에 대한 단기취업 전자비자 발급 시행 및 강연활동 인정범위 확대

해외 석학들이 국내 연구기관이나 대학초청 강의를 위해 방문할 경우 해외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하여 단기취업 비자를 받아 입국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2018년 4월부터 정부·공공기관에서 초청하는 과학자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제도를 도입하여 해외 유명 석학들의 초청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다.

28) 무역실적, 무역전문 교육과정 이수 여부, 국내 유학경험 및 체류기간 등을 점수화하여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무역비자 부여

또한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국내 정부출연기관·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각종 강연 및 연구자문 목적으로 외국 유명 교수, 전문가를 활발히 초청하고 있으나, 기존 규정은 단기 강연 등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액의 강연료 등을 받을 경우에도 반드시 취업비자(C-4) 발급을 요구하고 있어 해외 석학 등이 국내 연구기관의 초청을 꺼리는 등 불편이 있었다.

이에 2018년 8월 1일부터 정부·정부출연기관·대학 등 비영리기관에서 학술 또는 공익목적으로 초청한 외국인이 세미나 등에서 강의·강연을 하거나 자문활동을 하는 경우에 단기취업비자(C-4)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단기방문(C-3, B-1, B-2) 자격으로 활동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비자제도 불편 해소를 통한 인적교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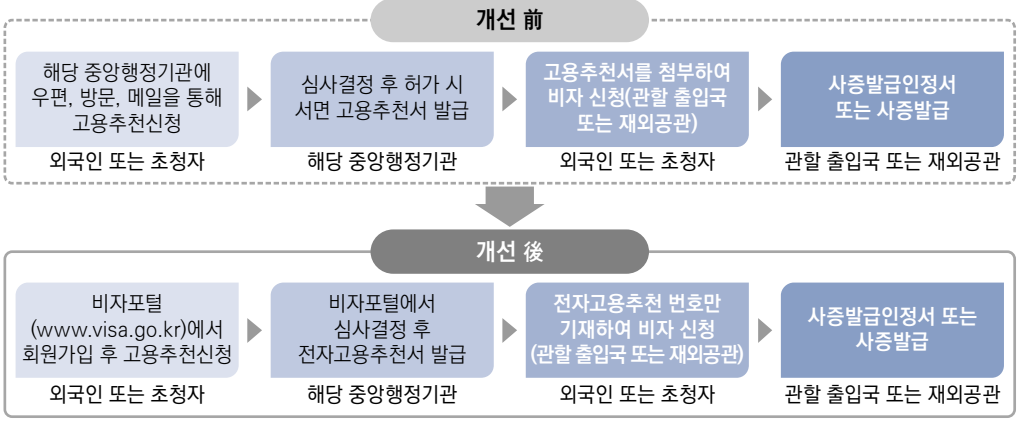
### 2) 전문인력 전자고용추천제 도입

첨단과학기술/문화체육/보건의료 분야 등 해외 전문인력[29] 초청과 관련된 비자신청 과정에서의 불편 해소를 위해 2018년 7월부터 온라인을 통한 전자고용추천제를 시행하였다.

고용추천제는 해외 우수인재의 취업비자 심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용을 추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추천대상은 전문인력에 해당하는(C-4, E-1 ~ E-7) 체류자격 중 80여개 직종이며, 추천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14개 부·처·청이 해당된다.

그동안은 해당 외국인 또는 초청자가 어느 기관에서 고용추천서를 받아야 할지 몰라 행정기관을 수차례 방문하는 불편을 겪는 등 비자신청 절차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는데, 전자고용추천제 시행으로 비자신청 과정에서 불편이 해소되어 우수인재 유치에 기여하고 있다.

**| 그림 2-173 |** 고용추천 절차 개선 전·후 비교




29)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단기취업(C-4) 자격, 교수(E-1) 자격부터 특정활동(E-7) 자격이 해당

### 3) 구직비자 점수제(D-10) 시행

해외인재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벤처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10월 1일부터 '외국인 점수제 구직비자(D-10) 제도'를 도입·시행하였다.

구직(D-10)비자는 국내 전문 직종에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 우수인재에게 일정기간 구직활동을 허용하는 제도로서 그동안은 세계 500대 기업 근무 경력자, 세계 200대 대학 졸업자, 국내 대학(전문대학 포함) 이상 졸업자 등으로 신청자격이 한정되어 다양한 우수인재를 포섭하기에는 너무 경직되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점수제 구직비자 제도를 도입하여 연령, 학력, 국내외 근무경력, 유학경험, 한국어 능력 등의 항목을 점수로 계량화하는 방식으로 구직비자 취득 요건에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으로써 해외 우수인재 유입 촉진 및 중소·벤처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 4) 新산업 분야 직종 도입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新산업 분야 등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분야[30]에 대해 2018년 5월 1일부터 특정활동(E-7) 비자 중 외국인 취업허용 가능 직종에 포함시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유도하였다.

그동안 경제의 글로벌화 및 공유경제 확산 등에 따라 외국인이 필요한 새로운 사업 형태가 나타났으나, 외국 인력 취업 허용 비자제도의 경직성으로 新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비자 직종 신설 과정에서 민원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 관계자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였고, 한편으로는 무분별한 외국인 고용으로 인한 국민 일자리 침해 방지를 위해 허용 직종에 대한 급여조건 등을 동일 사업장내의 내국인 평균임금 이상으로 정하는 등 국민 일자리 보호도 강화하였다.

### 5)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확대 운영

뿌리산업·중소 제조업·농림축산어업 등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 분야의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 제도를 2018년 1월 2일부터 본격 시행하였다.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는 국내에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5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이 숙련도 등 분야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E-7-4)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17년 하반기 시범 시행결과, 쿼터(300명)가 한 달 반 만에 소진되는 등 산업계의 호응이 좋았으나, 뒤늦게 신청 자격을 갖춘 근로자 및 사업장이 소외되는 선착순 접수 방식의 문제, 소규모 제조업체(내국인 근로자가 10인 미만·뿌리산업 5인 미만) 배제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드러났다.

30) ① 로봇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②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③ 고객상담 사무원(국제용역 분야 한정)

이에 법무부는 관계부처 및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선착순 접수방식'에서 '고득점자 선발방식'으로 변경 및 ▲기본 쿼터를 300명에서 400명으로 확대하였고 국민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전년도 대비 내국인 생산직 근로자 10% 이상 증가)이나 고득점 숙련기능 인력(75점 이상 고득점자)에게는 별도 쿼터(200명)를 배정하였으며 ▲신청대상 사업장을 내국인 근로자가 10인 미만(뿌리산업 5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체에도 외국인 1명을 고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등 취약산업 분야의 숙련기능 확보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 바.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체류관리과 사무관 이승현 / 주무관 용창식

### 1) 추진배경 및 추진내용

해외 우수인재 유치와 유학생 교육 내실화를 위해 2018년 3월 1일부터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된 비자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였다.

주요내용은 ▲일-학습 연계 유학비자 대상 확대 ▲유학생의 자격외 활동허가 특례 신설 ▲어학연수생의 학교 간 이동 제한 ▲재정능력 관련 입증 방식 다양화 ▲한국어 능력에 따른 시간제 취업 혜택 차등 부여 ▲체류기간 연장 시 어학연수생 출석률 반영 등이다.

이번 개선에서는 해외 우수인재의 지속적인 발굴, 과학기술분야 우수 연구 인력 활용범위 확대, 대학 등이 제기한 유학생 비자제도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각 대학교 유학생 관계자들의 의견 청취를 통해 그동안 유학생들이 생활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불편한 점도 고려하였다.

또한, 2018년 1월과 11월에 걸쳐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재로 국내 체류 중인 유학생들의 애로사항 청취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유학생 불법체류자 문제 및 학습능력 부진 등에 따른 내국인 학생들의 피해 문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 및 대학 측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 자리에서 대학교 관계자들은 법무부에서 마련한 과정별 한국어 능력 강화 등 유학제도 개선안과 관련하여 외국인 유학제도의 내실화를 위해서 한국어 능력 강화는 바람직하나, 일률적으로 강화할 경우 유학생 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특히 한국어를 배우러 오는 어학연수생에게까지 한국어능력 기준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할 경우 유학생 유치에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정부의 유학생 유치 정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 그림 2-174 | 외국인 유학생 및 대학교 관계자 간담회




각 국가 외국인 유학생 초청 간담회 (1.31.)




대학교 유학 담당자 간담회 (11.19.)

### 2) 평가 및 발전방향

지속적인 유학비자 제도 개선으로 2018년말 유학생(어학연수생 포함) 수는 160,670명으로 전년 135,086명 대비 19% 증가하는 등 정부의 유학생 유치 20만 명 목표에 이바지 하였고, 한편으로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와 국내 유학 중인 고급 연구인력들의 활용을 통한 과학기술분야 발전 및 유학생들의 학업 능력 향상 등 유학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교육부와 협력하여 유학생 관리 우수대학에 대해서는 비자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는 등 혜택의 폭을 넓히고 불법체류 다수 발생 등 유학생 관리 부실 대학에 대하여는 비자 심사 강화 등 유학생 비자 제도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 사. 영주자격 관련 제도 정비

체류관리과 사무관 주지정 / 주무관 김택균

### 1) 추진배경 및 추진내용

2018년 9월 21일부터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일반체류자격과 영주자격으로 구분, 일반체류자격을 다시 단기체류자격과 장기체류자격으로 분류하였고, 영주자격의 취득요건으로 생계유지능력, 한국어능력, 한국사회 및 문화에 대한 이해 등 기본소양을 규정하고 영주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은 형법상 범죄를 범하는 등 일정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자격이 취소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영주자격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를 위해 영주증 갱신제도를 도입하였다. 종전에는 영주자격을 취득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갱신의무가 없었으나, 2018년 9월 21일부터 영주자격(F-5)을 보유한 외국인은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영주자격 취득일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주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기간 내에 영주증을 (재)발급받지 않은 외국인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그간 영주자격 신청의 적체로 인해 심사기간이 4~5개월 정도 걸려, 영주자격을 신속히 부여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도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2018년 10월 8일부터 이러한 절차를 개선하여 국익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 고액투자자, 우수인재, 특별공로자 등에 대해서는 신청 후 2주 이내에 신속하게 영주(F-5)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 아. 체류민원 서비스 개선

체류관리과 사무관 김명훈 / 주무관 송지훈

### 1) 추진배경

체류외국인 230만 명 시대를 맞아 법무부는 이민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향상과 고품질 체류관리 체계를 갖추기 위해 다각도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법무부는 위탁운영 중인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상담서비스를 개선하였고,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에 따르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온라인 서비스 등을 확충하였다.

### 2) 추진내용과 성과

지난 2008년 3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출범한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이하 '1345콜센터')가 개소 10주년(2018년 3월 31일)을 맞아, 3월 23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목동 1345콜센터에서 개소 10주년 축하 기념식을 가졌다.

1345콜센터는 출입국·체류관련 민원 상담 및 각종 행정·생활정보 안내서비스를 영어·중국어를 포함한 20개국의 언어로 제공하고 있다. 104명의 상담사(외국어 46, 한국어 45, 기타 13)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인당 일평균 103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간 총 상담건수는 약 170만 건에 이를 정도로 국내 체류외국인의 든든한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기념행사 축사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정확하고 친절한 서비스로 220만 재한외국인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모든 직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외국인의 고충상담은 물론 성폭력 피해 지원 등에 더욱 힘써 인권보호에 앞장서는 콜센터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 그림 2-175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콜센터)



법무부 장관, 1345 콜센터 전화상담 실황 청취




1345 콜센터 10주년 행사 후 기념촬영

특히 2018년 6월부터 경찰청 상황실(112)과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외국인 범죄피해자가 1345 콜센터로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1345콜센터는 3자 통화시스템을 통해 '112상황실 ↔ 외국인 신고자' 간 통화연결 및 3자 통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외국인이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피해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9월에는 온라인 근무처변경허가 서비스를 구축 개시하였다. 지금까지 23만 명에 달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는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고용주와 함께 방문하여 고용허가서, 근로계약서 등을 발급받고 다시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여야 하는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와 같이 사무소 방문에 따르는 경제적 비용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온라인으로 처리(고용노동부와의 전산연계로 제출서류 자동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령을 정비하여 온라인 이용 시 수수료도 감경(20%)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였다.

10월에는 일부 외국인에 대한 동거가족사항 기재를 시행하였다. 외국인의 경우 자녀가 유치원·초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입학하거나, 이동통신 가족 공동 가입에 따른 할인 혜택 등을 받기 위해 가족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에 대한 현지 공증을 거쳐야 하거나, 가족관계 증명서류의 발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법무부는 이러한 외국인의 불편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체류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비자를 받거나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일부 외국인들의 동반가족 관계를 시스템에 관리하도록 '등록외국인 동반가족 관리지침'을 마련하였고, 해당 외국인들의 동반가족 관계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 나타나도록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외국인들의 체류편의가 제고되는 동시에 체계적인 관리시스템도 갖추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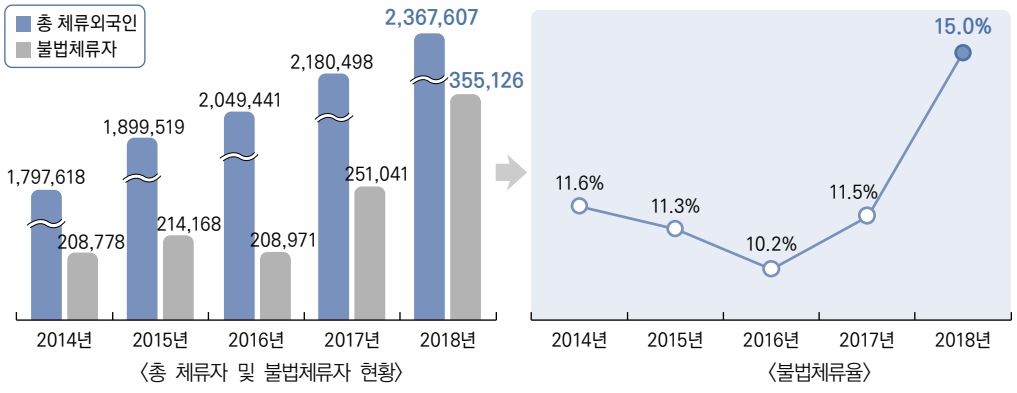
# 3.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이민조사과 주무관 안재필

2018년도에는 태국, 카자흐스탄 등 사증면제협정국가 국민 및 단기방문 자격소지자의 불법체류 영향으로 법무부의 다양한 감축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자 수가 급증하였다.

| 그림 2-176 | 총체류자 및 불법체류자 현황




이에 법무부는 정부합동단속·연중 상시단속·건설현장 테마단속·전국 34개 특별단속지역 지정 운영 등을 통해 단속활동을 강화하였고, 이민특수조사대를 비롯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청) 별 기획조사 전담반을 상시운영하여 불법체류의 원인이 되는 불법브로커 등을 지속적으로 적발하였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에 대한 범정부 차원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법무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벤처기업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10개 부처 담당자로 구성된 '불법체류외국인 대책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효과적인 정부합동단속방안 등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대책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또한, 외국인 밀집지역에는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환경적 요소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불법고용 방지 계도를 실시하였으며,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본국에 귀환할 수 있도록 특별자진출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 및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프라면에서도 단속인력(90명) 증원, 광역단속팀 확대 개편[31] 등을

추진하였다.

불법체류 외국인 발생 및 불법고용 억제 환경 조성,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인터넷, SNS 등 온라인 홍보, 공익광고 전광판, 현수막 등을 이용한 홍보와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정책을 적극 홍보하였다.

한편,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불법체류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취업을 목적으로 불법입국하는 수법이 더욱 다양·교묘해짐에 따라,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등의 적발을 통해 불법체류 유발 환경을 차단할 필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출입국 관련 사건에 대한 기획조사 능력이 특화된 서울·부산 출입국·외국인청 소속 이민특수조사대의 활동을 강화하고, 각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마다 기획조사 전담반을 구성해 운영하였다. 또한, 기획조사 기법 연구 발표 및 공유 등을 통해 동향조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와 지방 경찰청 간 핫라인을 구축하여 우범지역 및 외국인밀집지역 순찰, 출입국사범 단속 등 업무 수행 시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토록 하는 등 조직화·지능화 되어가는 출입국 사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였다.

2018년에 처리한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는 176,835명으로, 이 중 강제퇴거 31,811명(17.9%), 출국명령 46,504명(26.3%), 출국권고 3,273명(1.9%)이었고, 고발된 사람은 3,482명(2%)이며, 그 외에 통고처분 30,397명(17.2%), 과태료 15,546명(8.8%), 처분면제 등 기타 45,822명(25.9%) 이었다.

**| 표 2-117 |**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처리 현황

(단위 : 명, 천 원)

| 연도 | 총계 | 강제 퇴거 | 출국 명령 | 출국 권고 | 통고처분 | | 고발 | 과태료 | | 기타 |
|---|---|---|---|---|---|---|---|---|---|---|
| | | | | | 건 | 금액 | | 건 | 금액 | |
| 2017 | 146,924 | 26,694 | 6,282 | 3,366 | 29,838 | 40,094,280 | 2,851 | 15,205 | 2,165,600 | 62,688 |
| 2018 | 176,835 | 31,811 | 46,504 | 3,273 | 30,397 | 49,461,520 | 3,482 | 15,546 | 2,079,740 | 45,822 |

※ 기타 : 처분면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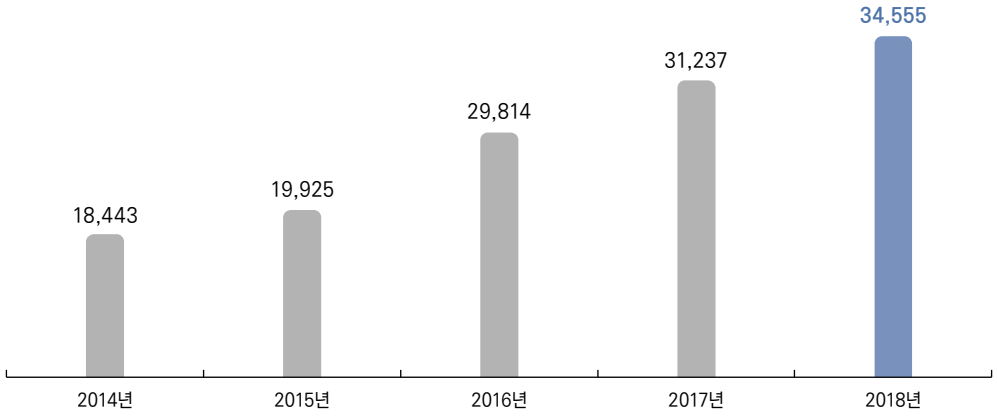
## 나. 추진내용 및 성과

### 1) 불법체류외국인 감축 노력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상시적 단속체제를 통한 단속, 6개 권역 광역단속팀을 중심으로 한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 간 합동단속 및 상·하반기 불법체류자 정부합동단속 등을 실시하여 '18년 불법체류 외국인 등 34,555명을 적발하여 본국으로 강제 송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31) 4개 권역(수도권·중부권·영남권·호남권) → 6개 권역(수도권 북부·경북권 추가)으로 확대 개편(2018. 9. 17.)

**| 그림 2-177 |** 불법체류 외국인 적발 현황




상반기 정부합동단속은 2월 26일부터 5월 11일까지 11주 동안 총 400명, 하반기 정부합동단속은 9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11주 동안 총 430명이 참여하여 국민 일자리 잠식이 심한 대규모 건설현장,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상습적으로 불법고용하는 혐의가 있는 사업장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16,218명, 불법고용주 2,835명 등 총 19,053명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표 2-118 |** 정부합동 불법체류 단속 현황

(단위 : 명)

| 연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기 간 | • 5.12. ~ 25.<br>• 6.9. ~ 29.<br>• 10.13. ~ 11.9. | • 3.9. ~ 5.1.<br>• 9.1. ~ 11.8. | • 3.7. ~ 5.13.<br>• 9.5. ~ 11.11. | • 3.6. ~ 5.12.<br>• 9.4. ~ 11.17. | • 2.26. ~ 5.11.<br>• 9.3. ~ 11.16. |
| 참 여 인 원 | 406 | 520 | 638 | 658 | 830 |
| 불법체류 외국인 | 4,373 | 8,736 | 13,426 | 13,255 | 16,218 |
| 불 법 고 용 주 | 1,257 | 2,393 | 2,625 | 2,549 | 2,835 |

2018년 10월 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특별자진출국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 프로그램 시행을 앞두고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을 촉진하기 위해 2018년 9월 14일 서울시 남구로역 인근 새벽인력시장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 및 불법고용·취업 방지"를 위한 계도활동을 실시하였다.

| 그림 2-178 | 새벽 인력시장 계도활동




새벽 인력시장 계도



새벽 인력시장 계도

또한, 2018년 11월 19일 ~ 12월 18일(1개월) 유흥 및 마사지 업소, 직업소개소, 제조업체,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대하여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및 자진출국 집중계도 기간을 지정·운영하였다.

그리고, 태국·러시아·카자흐스탄 등 주요 불법체류 발생 국가의 주한공관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12회 개최하고 불법체류 중인 자국민을 대상으로 자진출국을 촉진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였다.

| 표 2-119 | 자진출국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7 대비 2018 실적 |
|---|---|---|---|---|---|---|
| 자진출국자 | 29,425 | 35,856 | 52,431 | 39,513 | 64,814 | 25,301↑ (64%↑) |

※ 자진출국프로그램 시행 전인 2018. 9월말 자진출국자 누계는 43,182명(월 평균 4,798명)이고, 시행 후인 2018. 10 ~ 12월 자진출국자 누계는 21,632명(월 평균 7,211명)

이와 같이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및 자진출국 유도를 위한 계도 등 불법체류자 감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큰 폭으로 증가하던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 2) 기획조사 및 동향조사 강화

이민조사과 주무관 김영필

2018년도에 기획조사를 추진한 결과, 허위초청 알선자 등 7,390명(812건)을 적발하여 그 중 49명을 구속, 288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5,356명의 외국인을 강제퇴거 조치하였다.

외국인 여성의 인권침해 예방 및 미풍양속 저해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유흥업소·마사지업종

불법취업자 및 알선브로커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취업 외국인 등 1,954명, 불법고용주 525명, 알선브로커 3명을 적발하였다. 또한, 불법체류 발생 주요 요인인 '불법입국·취업알선 브로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알선브로커 58명, 불법취업 외국인 등 979명을 적발하였고, '신분세탁 혐의 외국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35명을 적발하였으며, 불법고용을 억제하기 위해 '직업소개소 등 불법취업 알선브로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취업 알선브로커 40명, 불법고용주 38명, 불법취업 외국인 646명 등 총 724명 적발하였다. 그 밖에도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위반 외국인유학생 및 알선자'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불법고용 알선브로커 2명, 불법취업 외국인유학생 등 168명, 불법 고용주 42명 등 총 212명을 적발하였다.

**| 그림 2-179 |** 알선브로커 적발 언론보도


news1 뉴스

불법체류자 취업알선 말레시이아인 브로커 구속

말레이시아인들이 관광객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 일자리를 구해 불법체류자로 머무르는 숫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말레이시아 현지 브로커와 국내 브로커, 직업소개소가 은밀히 거래하고 있었다.


한국일보

2018.10.18.(목)

"모델 시켜줄게"... 외국인 불법 입국시켜 유흥업소 넘겨

국내에서 브리핑서 광고모델로 일하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을 불법 입국시켜 일부를 유흥업소에 넘긴 일당이 출입국 당국에 붙잡혔다.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36)씨를 구속하고 공범 B(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캐나다, 필리핀, 호주 등 22개국 외국인 66명을 불법으로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기획조사 활성화 및 효율적인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조사과장 회의를 2회 개최하고, 체류외국인 동향조사 추진실적 평가보고회, 동향조사·사범·보호 기법연구 발표회, 권역별 동향조사요원 정례회합을 통한 동향조사 기법 및 관련 정보 공유에도 힘쓰는 등 불법체류 유발 환경 차단 및 이를 통한 국민 불안 요인 해소와 안전한 사회 구현에도 노력하였다.

**| 표 2-120 |** 기획조사 추진 실적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계 | | 위변조 여권 | | 위장결혼 | | 불법취업 | | 기타 | |
|---|---|---|---|---|---|---|---|---|---|---|
| | 건 | 인원 | 건 | 인원 | 건 | 인원 | 건 | 인원 | 건 | 인원 |
| 2017년 | 733 | 6,460 | 84 | 196 | 7 | 11 | 169 | 2,415 | 473 | 3,838 |
| 2018년 | 812 | 7,390 | 48 | 90 | 16 | 24 | 186 | 2,666 | 562 | 4,610 |
| 전년대비(%) | 110.8 | 114.4 | 57.1 | 45.9 | 228.6 | 218.2 | 110.1 | 110.4 | 118.8 | 120.1 |

### 3) 적법절차 준수, 안전사고 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이민조사과 주무관 남명우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활동 시 적법절차 준수, 안전사고 및 인권침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관련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였다.

2018년 1월 31일 중국어, 태국어, 몽골어 등 20개 언어로 제작된 '미란다원칙 등 고지 음성파일'을 배포하여 단속현장에서 활용하게 하였고, 단속·보호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간 5명의 직원을 국군의무사령부의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에 위탁교육을 받게 하는 등 외국인의 인권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2018년 8월 23~31일 화성·청주 외국인보호소,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방문조사, 2018년 4~11월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7개 산하기관에 대한 법무부 인권국 실태조사, 2018. 11. 13.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실태점검 등에 성실히 임하였고, 조사 및 점검 결과가 통보되면 관련 개선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별로 관할 소방서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소방훈련 및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기관별 실정에 따라 소방·전기시설 및 장비를 자체 또는 위탁 점검하였다. 또한 9월 7일을 "출입국 안전의 날"로 지정하여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고양하고 외국인보호소와의 화상회의를 통해 시설안전 및 안전한 보호외국인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였다.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및 외국인보호소에 보호외국인 고충상담관을 지정·운영하여 강제퇴거를 앞둔 보호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최대한 권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들의 체불임금 5,775건(약 73억원), 의료구호 1,325건 등 10,526건의 고충을 처리하였다.

## 다. 향후 추진계획

불법체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대표적 풍속저해 업종인 마사지·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에 노력할 것이다.

# 4. 이민자 사회통합지원 강화

## 가.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이민통합과 사무관 주태길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구제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 권익증진협의회 민간위원 신규위촉 및 당연직 위원 재정비 등 협의회 운영을 개선하고 분기별 정례 개최를 추진하였다

이에 2018년 2월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협의회 구성과 운영방식을 정비하였다.

| 그림 2-180 | 제1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 2) 평가 및 발전방향

2018년 2월 26일 제1차 중앙권익증진협의회 및 민간위원 위촉식을 시작으로 분기별 회의 총 4회 개최, 15개 안건을 심의하여 실질적인 권리구제 시스템으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 자문과 개인고충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제4차 권익증진협의회에서 2017년 2월 경북 군위군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에서 90대 독거 할머니를 구조한 스리랑카 의인 '니말'에게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영주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여 국민과 외국인이 공존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 그림 2-181 | 스리랑카 의인 '니말' 영주증 수여식







## 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이민통합과 사무관 유성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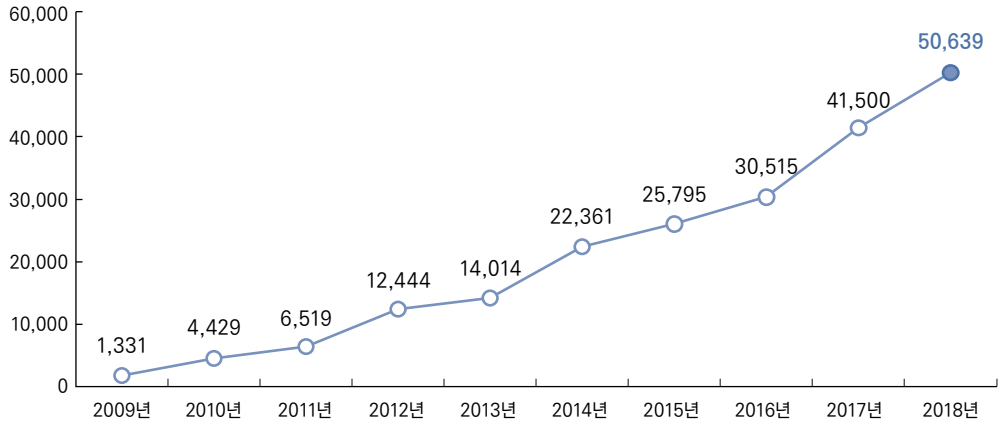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009년부터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 및 헌법적 가치 등의 기본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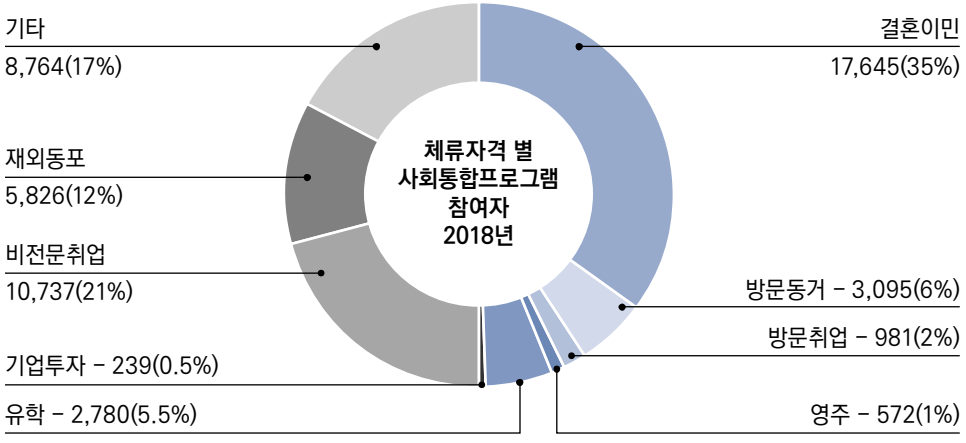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처음 시행하였던 2009년에는 참여자가 1,331명이었으나, 2010년에는 4,429명, 2011년에는 6,519명, 2012년 12,444명, 2013년에는 14,014명이었으며, 2014년에는 22,361명, 2015년에는 25,795명, 2016년에는 30,515명, 2017년에는 41,500명, 2018년에는 50,639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참여자 수 급증에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도 2009년 20개에서, 2010년 77개, 2011년 150개, 2012년 271개, 2013년 278개, 2014년 304개, 2015년 308개, 2016년 300개, 2017년 및 2018년 309개로 크게 늘어왔다.

늘어나는 재한외국인에 대해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 등에 대한 교육 필요성이 강조되고 수요가 늘어남에 따른 내실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해졌다.

| 그림 2-182 | 연도별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수




| 그림 2-183 | 체류자격 별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2018년)




## 2) 평가 및 발전방향

① 사회통합프로그램 국적·영주 연계

2018년 3월부터 귀화필기시험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일원화함으로써 국적취득 예정자에 대해 국민 기본소양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18년 9월 개정「출입국관리법령」시행으로 영주자격 취득 시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등 기본소양 요건을 명확하게 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영주용 종합평가로 이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시민교육 실시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우리나라와 다른 법령 체계 등으로 한국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민자를 위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생활법률특강, 금융·경제교육, 범죄예방교육, 소비자교육 등을 실시, 2018년 총 3,080명이 이수하였다.

또한, 올바른 소비자생활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2018년 12월 법무부-한국소비자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 주요내용은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에 소비자교육 과정 개설,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를 소비자교육 강사로 양성하는 등 외국인 소비자권리 향상에 관한 사항이다.

| 그림 2-184 | 법무부-한국소비자원 간 업무협약식







③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접근성 제고

이민자 교육환경에 따른 수요를 고려하여 임신, 출산, 장애, 취업, 격오지 거주 등으로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이민자를 위하여 1명의 강사가 9명의 이민자와 컴퓨터 화상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교육하는 '온라인 화상교육'을 2018년 10월 기존 평일반 운영에서 주말반을 확대 개설하여 참여자 편의를 제고하였다.(2018년 총 1,256명 화상교육 참여)

또한,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을 동영상으로 개발하여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복습, 보충학습 등 학습의 기회를 공간의 제약 없이 제공하였으며 외국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쉬운 언어로 강의를 진행하고 베트남어·중국어·캄보디아어·러시아어·필리핀어 등 5개 언어로 자막 처리하여 이해도를 높였다.

## 다.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실시

이민통합과 사무관 임동규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결혼이민자, 외국국적동포, 중도입국 외국인 자녀, 외국인유학생 등 장기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조기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기초법·제도 안내 및 사회적응정보를 제공하는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시행해오고 있다.

### 2) 평가 및 발전방향

이민자의 다양한 체류유형에 맞게 일반적인 사회적응정보 외에 미래진로, 부부교육, 인권보호, 대한민국 구성원 되기 등 특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8년 조기적응프로그램 참여자 수는 79,656명이다.

| 그림 2-185 |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 과정





## 라.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운영

이민통합과 사무관 주태길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체류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체류 및 생활 관련 법률수요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법무부는 언어장벽, 정보부족, 변호사 비용 부담 등 어려움으로 인해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외국인들의 법률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내 생활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2) 평가 및 발전방향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콜센터)'를 통해 임금체불, 이혼, 범죄피해 등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마을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2018년 1,030건의 상담이 제공되었고 주요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2018년 1월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상담사례집을 발간·배포하였다.

| 그림 2-186 |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법률상담




## 마. 이민자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이민통합과 주무관 최연준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이민자들의 자발적인 사회관계망 형성을 통한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고, 이민자 상호간 한국생활 정보교류 등을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민자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2) 평가 및 발전방향

이민자 네트워크는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민원실, 사랑방 등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통·번역, 민원안내 도우미 등으로 적극 참여하였다. 그리고 법무부는 2018년 6월 이민자 네트워크 대표 간담회를 개최하여 네트워크 활동상을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이민자 네트워크 활동사례를 언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여 활동상을 널리 알렸다.

| 그림 2-187 | 이민자 네트워크 대표 간담회







## 바. 제8회 한마음 걷기축제 및 정부합동 고충상담 개최

이민통합과 사무관 주태길

2018년 10월 28일 서울상암월드컵공원에서는 재한외국인의 우리 사회 적응지원과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한 '제8회 한마음 걷기축제 및 정부합동 고충상담'이 개최되었다.

이번 고충상담에는 교육부·고용노동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부처와 기관이 참가하였으며,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유관단체도 참여하였다.

(사)건강사회운동본부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국민과 재한외국인 등 3,0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평화광장, 하늘공원둘레길(3.8km) 걷기행사와 함께 외국인의 고충을 해결하는 정부합동고충상담이 진행되었고, 한국국제의료보건재단 등 보건의료단체가 운영하는 건강캠프를 실시하여 참가한 재한외국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고충상담과 함께 실시된 한마음 걷기축제에는 다양한 프로그램 덕분에 가족단위의 참가자가 많았으며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 그림 2-188 | 제8회 한마음 걷기축제 및 정부합동고충상담






## 사. 제11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이민통합과 사무관 주태길

2018년 5월 18일 서울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41개국 외교사절 50여명, 재한외국인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기념사에서 "세계인의 날은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서로 어우러져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열린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날이며, 국민이 공감하면서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이날 기념식에서 (사)고려인마을 종합지원센터 신조야 대표가 대통령표창인 '올해의 이민자상'을 수상하였다. 신조야 대표는 2006년부터 고려인 동포들을 대상으로 지원활동을 해왔으며 고려인동포 자녀를 위한 청소년문화센터를 개소하여 청소년 탈선 예방사업을 해왔고 2016년 고려인마을방송 '고려FM방송'을 통해 고려인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한민족 정체성 확립에 노력하는 등 국내 고려인을 비롯한 내·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밖에 (사)이주민사회통합지원센터 서광석 센터장과 (사)부천이주민지원센터 손인환 대표가 대통령표창을, 안산다문화지원본부, 희망의료 봉사단 등 2개 단체와 국제이주기구 박미형 소장, 천주교 수원교구 광주이주목사센터 지오지아니 마우리지오 센터장, 천주교 대구교구 가톨릭근로자회관 이관홍 관장, (사)국제과학기술자협력단 임봉수 단장, (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홍성직 대표 등 5명은 국무총리 표창을, 이화여자대학교 다문화연구소 김설경 실장 등 5명과 부산외국어대학교 등 2개 단체는 이민자 사회통합에 기여한 공로로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세계인의 날 유공자에 대한 포상 수여 행사 외에도, 재한외국인이 국내 정착과정에서 겪은 다양한 사연 등의 생생한 현장 체험을 바탕으로 한 '재한외국인 생활체험 수기 공모전',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가치나 상징을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을 주제로 한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그림 2-189 | 제11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식(5.18.) 및 관련 공모전 개최(3.9 ~ 3.30)










## 아. 국제결혼 피해방지 및 건전한 국제결혼가정 형성 지원

이민통합과 주무관 최연준

### 1)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인권교육 추가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결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2010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중국·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몽골·우즈베키스탄·태국 등 7개 국가 국민과 결혼을 희망하는 한국인 배우자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만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다.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은 현지 국가의 제도·문화·예절 등의 소개, 결혼사증 발급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부정책 소개, 시민단체의 결혼이민자 상담·피해사례 및 국제결혼 이민자나 한국인 배우자의 경험담 소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18년 3월 결혼이민자의 인권증진과 성공적인 국내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에 부부간 인권존중 및 갈등해소, 가정폭력 방지 등 내용의 인권교육 과정을 추가하였다.

### 2) 결혼이민자 가족 체류제도 개선

법무부는 2011년부터 결혼이민자의 출산 및 육아지원을 위해 친정 부모 등 가족의 장기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2018년 2월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에서 결혼이민자 육아지원을 위한 부모 등 가족 체류요건 완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결혼이민자 가정의 육아 현실과 어린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고려하여 친정부모 체류요건을 다소 완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 2018년 4월 2일부터 결혼이민자 부모 등 가족의 체류요건을 자녀 연령이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허용(1회 체류상한은 4년 10개월)하기로 하였다.

또한 결혼이민자가 혼자 아이를 키우거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연령에 관계없이 체류를 허용하도록 하여 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 빨리 안정적으로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어린 자녀들이 외조부모 등의 보살핌 속에서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5. 귀화자의 국민정체성 함양 및 국적 신청자 처우 개선

### 가. 추진배경

기존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 또는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며, 귀화 또는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허가 사실에 대한 통지서만을 받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국적취득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게 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고, 귀화신청자가 생계유지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본인 소유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는 경우, 그 가치를 '공시지가'만으로 평가함에 따라 재산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귀화자로 하여금 국민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서는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였다.

## 나. 추진내용 및 성과

### 1) 귀화자의 국민정체성 함양

국적과 주무관 박민수 / 주무관 김창환

귀화자 및 국적회복자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 또는 국적회복증서를 수여받을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이 개정(법률 제15249호, 2017. 12. 19. 공포, 2018. 12. 20. 시행)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 또는 국적회복증서를 수여하는 절차, 국민선서의 내용과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 또는 국적회복증서를 수여하는 업무와 국민선서의 면제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국적법 시행령」개정안이 2018년 12월 18일 공포되었다.

2018년 11월 26일 및 27일 양 일간 전국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국적증서 수여식을 시범 실시하였는데, 시범 수여식에는 귀화·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총 163명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을 방문하여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수여받았다.

또한, 광복 73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독립유공자의 희생을 고귀하게 여기는 국가적 분위기 조성을 통해 국적취득자가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후손 31명을 대상으로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고, 독립유공자 후손 배우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면접 면제, 생계능력 인정범위 확대 등 귀화절차를 완화하여 국적취득을 지원하고 최초로 7명의 독립유공자 후손 배우자를 선정하여 2018년 4월 9일 국적증서를 수여하였다.

| 그림 2-190 |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



한편, 우리 주변의 귀화자 중 역경을 극복하고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등 타의 귀감이 되는 사례의 적극 발굴·홍보를 통하여 이민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19일 최초로 모범귀화자 4명을 선정하여 기념패를 수여하고 격려하는 행사를 가지기도 하였다.

| 그림 2-191 | 모범귀화자 기념패 수여식




## 2) 국적취득 신청자의 처우 개선

국적과 주무관 김창환

종전에는 귀화신청자가 생계유지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본인 소유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는 경우, 그 가치를 '공시지가'만으로 평가함에 따라 재산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재산의 실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지가뿐만 아니라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에 의해서도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외국인의 일반귀화를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이 종전에는 국회의원·변호사·5급 이상 공무원 등 특정 직역·직위로 한정되어, 귀화신청하려는 외국인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 등 추천인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일반귀화 추천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적 직역·지위와 관계없이 직장동료, 이웃사람, 통장·이장 등 귀화신청자를 잘 알고 있는 국민 2명 이상의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귀화심사가 되도록 하였다.

### 3) 국적업무 처리 현황

국적과 사무관 배창준 / 주무관 이은주

귀화자를 허가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8년 전체 귀화자 중 국민과 혼인한 결혼이민자에 의한 혼인귀화가 67%(7,689명)를 차지하며, 특별 귀화자는 18%(2,064명)이다. 특히, 우수인재 선정을 위한 국적심의위원회를 2018년 말까지 총 28회 개최(2018년 4회) 하여 과학·인문 등 학술분야 86명, 체육분야 28명, 첨단기술분야 11명, 경영·무역분야 5명, 문화·예술분야 8명 등 총 138명을 우수인재로 인정하여 우리 국적을 부여하였다.

국적회복자는 2011년 1월 1일 제10차 개정 「국적법」의 본격적인 시행 이후 65세 이상 고령동포가 영주할 목적으로 국적회복 시 복수국적 보유가 가능해짐에 따라, 동 「국적법」 개정 전인 2010년까지 연평균 491명에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2,255명으로 급증하였다.

이는 미국, 캐나다 등 북미권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며, 최근의 국적회복자 추이가 2014년 2,886명, 2015년 2,610명, 2016년 2,303명, 2017년 2,775명, 2018년 2,698명으로 국적회복을 희망하는 우리 동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제10차 개정 「국적법」이 공포된 2010년 5월부터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우리 국적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하였다. 1998년 6월 제4차 개정 「국적법」 시행으로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적선택신고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 사람이 2009년까지 연평균 52명에 불과하였으나 2014년 1,448명, 2015년 1,234명, 2016년 1,513명, 2017년 1,329명, 2018년 1,618명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적법」이 개정된 효과라 할 수 있으며 향후 인구 순유출 현상을 개선하여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며 우수인재를 확보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표 2-121 |** 국적업무 처리 현황

(단위 : 명)

| 연도별 \ 유형별 | 합계 | 귀화 | 국적회복 | 국적상실 | 국적선택 | 국적이탈 | 기타 |
|---|---|---|---|---|---|---|---|
| 2014 | 35,632 | 11,314 | 2,886 | 18,150 | 1,448 | 1,322 | 512 |
| 2015 | 32,837 | 10,924 | 2,610 | 16,595 | 1,234 | 934 | 540 |
| 2016 | 50,957 | 10,108 | 2,303 | 35,257 | 1,513 | 1,147 | 629 |
| 2017 | 35,978 | 10,086 | 2,775 | 19,364 | 1,329 | 1,905 | 519 |
| 2018 | 50,004 | 11,556 | 2,698 | 26,608 | 1,618 | 6,986 | 538 |

※ '18년 국적상실 현황은 제7회 지방선거 지원을 위해 기존에 접수된 신고를 집중 처리하여 증가하였고, '18년 국적이탈 현황은 개정 재외동포법 시행('18. 5. 1.)에 따른 영향과 이전에 접수된 신고 건을 집중 처리하여 증가함

| 표 2-122 | 유형별 귀화자 현황

(단위 : 명)

| 유형별 / 연도별 | 합계 | 일반귀화 | 간이귀화 | | 특별귀화 | 수반취득 |
|---|---|---|---|---|---|---|
| | | | 혼인귀화 | 기타 | | |
| 2014 | 11,314 | 298 | 7,607 | 475 | 2,717 | 217 |
| 2015 | 10,924 | 323 | 6,966 | 618 | 2,778 | 239 |
| 2016 | 10,108 | 566 | 6,375 | 413 | 2,382 | 372 |
| 2017 | 10,086 | 715 | 6,438 | 304 | 2,238 | 391 |
| 2018 | 11,556 | 1,037 | 7,689 | 264 | 2,064 | 502 |

### 다. 향후 추진계획

앞으로도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식 지속 실시 및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되는 모범귀화자를 꾸준히 발굴, 격려하는 행사를 매년 추진하여 귀화자에 대한 국민정체성을 함양하고, 국적 신청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 6. 효율적 난민심사제도 구축 및 난민신청자 등의 처우 개선

### 가. 추진배경 및 경과

2013년 아시아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을 시행하여 난민인권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됨과 동시에, 시리아 및 예멘 내전의 장기화, 종교분쟁 등으로 국제정세가 악화됨에 따라 매년 국내로 유입되는 난민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제한된 심사인력으로 인해 심사처리 실적은 그에 미치지 못하여 난민심사 적체가 가중되었다.

| 표 2-123 | 난민신청 및 심사 현황

(단위 : 명)

| 구분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난민신청 | | 2,896 | 5,711 | 7,541 | 9,942 | 16,173 |
| 적체 | 1차 | 2,145 | 3,301 | 3,715 | 7,209 | 17,159 |
| | 이의신청 | 963 | 2,141 | 3,146 | 2,364 | 2,772 |

이에 법무부에서는 난민심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난민심사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효율적인 난민심사제도를 구축하였다.

2013년 7월부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운영해 오던 10개 난민심사 거점기관 및 2015년 9월부터 운영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난민과 내 난민심사전담팀을 2018년에도 계속 유지하였다.

또한 직제 개정을 통해 난민심사 인력도 2017년 10명에 이어 2018년 8명 증원하였으며, 난민전담공무원 특정직위 추가 지정, 통역인 제도 개선 등 난민심사 적체를 해소하고 난민전담공무원과 통역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자구책을 시행하였다.

## 나. 추진내용

### 1) 난민심사관의 전문성 강화

난민과 사무관 이정미

난민심사는 난민심사관의 난민신청자 출신국 국가정황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난민신청자 진술의 사실관계와 국가정황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절차로 법무부는 난민심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법무연수원에서는 난민심사관을 대상으로 난민심사실무에 관한 사이버 교육뿐만 아니라 집합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난민법」 시행에 따른 새로운 심사 절차 및 난민심사의 이론과 실무경험에 대한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소속기관 난민업무 담당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서로 공유하였고, 국제적 수준의 난민심사 기법을 배우기 위해 2018년 1월 유엔난민기구(UNHCR)와 공동 교육프로그램(면접기법, 해외사례 및 국가정황 등)을 개발하였으며, 2018년간 총 6차례 해외 난민전문가 및 국내 인권 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 2) 통역인 제도 개선

난민과 사무관 이정미

난민신청자의 국적과 언어가 다양해짐에 따라 다양한 언어에 대한 통역 수요도 함께 증가하였다. 법무부는 다양한 언어권에 대한 통역지원을 위해 2012년부터 난민전문 통역인 풀(Pool)을 구축하였고, 2018. 12월 현재 24개 언어 173명의 난민전문 통역인이 난민면접 과정에서 통역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난민통역 품질관리를 위해 매년 난민전문 통역인에게 난민의 개념, 난민인정절차, 통역인

윤리 및 통역 실습 등이 포함된 통역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통역인 풀(Pool) 확충을 위해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 등의 추천을 받아 수시로 난민전문 통역인을 위촉할 수 있도록 난민전문 통역인 제도를 개선하였는 바, 원활한 통역지원을 위하여 불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 통역 수요가 많은 언어 중심으로 난민전문 통역인 직접 고용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 3)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비 지급

난민과 사무관 김종무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난민법」 제40조(생계비 등 지원)에 따라, 본국의 박해로부터 피난하여 우리나라에 보호를 신청한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긴급복지지원에 상당하는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난민 지위를 신청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생계비 신청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자의 소득·자산, 주거, 자녀동반 또는 임신여부, 중대한 질병 유무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결정하되, 난민신청일로부터 최장 6개월까지 지급하고 있다.

2018년 한 해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로 지급된 비용은 총 8억1천7백만 원이며, 가구당 1회 생계비 지원금액의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2-124 |** 2018년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금액

(단위 : 원)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 센터 비(非) 입주자 | 432,900 | 737,200 | 953,900 | 1,170,400 | 1,386,900 |
| 센터 입주자 | 216,450 | 368,600 | 476,950 | 585,200 | 693,450 |

2018년 한해 전체 난민신청자 16,173명 중 1,765명이 생계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며, 이중 624명에게 생계비를 지원하였다.

### 4)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의 운영

난민과 사무관 김종무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난민법」 제45조(난민지원시설의 운영) 규정에 따라 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자의 숙식·의료 등 기초생계를 지원하고, 한국어 및 사회적응 교육 등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이다.

지원센터에서는 난민 등의 초기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수준별 한국어교육, 기초 법질서 교육 등과 영·유아에 대한 보육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관내 아동대상 외국어 교실 운영, 체육 시설 개방, 관내 외국인 대상 이동출입국사무소 운영,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지역주민 우선 선발 등 지역사회와 상생·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그림 2-192 | 지역사회 소통 프로그램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



보라매아동센터 기부물품 전달

2018년 지원센터 이용신청을 한 사람은 총 165명이며, 이중 155명이 입소허가를 받았다. 동 기간 동안 지원센터를 퇴소한 인원은 164명이고, 일평균 이용 인원은 66명이다.

### 5) 재정착난민 수용

난민과 사무관 김종무

재정착난민제도는「난민법」제24조(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에 따라 해외 난민캠프 등에 거주하고 있는 난민 중 한국으로 재정착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 심사를 거쳐 수용하는 제도이다. 이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역할분담과 난민 인권보호를 통해 인권국가 대열에 합류하고 아시아지역 난민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2015년 도입되어 현재 시범 시행 중 이다. 재정착난민 제도는 미국, 호주, 캐나다 등 37개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 국가 중에서는 일본과 한국이 재정착난민 수용에 참여하고 있다.

#### (1) 1차 시범사업

2014년 국민,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을 하였고 현지 실태조사 및 해외사례 연구 등을 거쳤으며 2015년 제16회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으로 태국 또는 말레이시아에 일시 체류하고 있는 미얀마 난민을 연 1회 가족단위로 약 30명 범위 내에서 수용하는 재정착난민 수용계획(안)이 심의·확정되었다.

2015 ~ 2017년 시범사업 기간 동안 국내로 입국한 재정착 난민은 총86명(11가족)이다. 재정착난민들은 유엔난민기구로부터 추천을 받은 난민 중 서류심사, 현지면접조사 등 심사를 통해 선발되었고, 건강검진 및 출발 전 사전교육을 거쳐 국내로 입국하여 지원센터에서 한국어 및 한국사회 교육 등 초기정착 지원을 받은 후 모두 지역사회로 정착하였다.

재정착난민 시범사업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 아시아 지역에서 두 번째로 재정착난민을 수용하는 국가가 되었고, 난민에 대한 인도적 구제실천을 통해 국가 위상 제고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 지지와 호평을 받았다.

(2) 2차 시범사업

1차 시범사업의 성공적 수행과 호평에도 불구, 재정착난민의 지역사회 정착 기간이 정착 여부를 평가하기에는 다소 이른 점과 사업 수행국이 태국에서 말레이시아로 변경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18년 6월 개최된 제22회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는 재정착난민수용 시범사업을 2019년까지 연장하는 제2차 재정착난민 수용시범사업 실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2018년 재정착 난민으로 국내에 입국한 난민은 총 26명(8가족)으로 이들은 현재 지역사회 정착을 준비하며 외국인·지원센터에서 초기정착 지원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1차 시범사업 재정착 난민의 정착 실태를 점검하고, 재정착난민 정착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8년 「재정착난민 정착 실태 점검을 위한 사례조사 연구」를 실시하였다.

향후 재정착난민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초기 정착 지원 단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 및 한국 사회 체험 학습, 직업 체험 등에 보다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그간 편중되었던 정착지를 다각화하기 위해 재정착난민을 수용하고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발굴하고,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주축으로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보다 강화하여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6) 난민업무 처리 현황

난민과 사무관 이정미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후 2018년 말까지 총 48,906명이 난민 인정을 신청하였으며, 이 중 936명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고 1,988명에게 인도적 체류허가를 하였다.

1994년부터 2010년까지는 난민신청자가 연간 1,000명에도 미치지 않았으나, 2013년 7월 1일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신청자는 2013년 1,574명, 2014년 2,896명, 2015년 5,711명,

2016년 7,541명, 2017년 9,942명, 2018년 16,173명으로 폭증하였다.

난민인정자 또한 꾸준히 증가하여 최근 5년간 난민인정자는 561명으로, 전체 난민인정자 936명의 약 60%에 이르고 있다.

2018년에는 144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고, 난민인정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장기간의 내전 등 자국 내 인권상황 등으로 귀국할 수 없는 514명의 신청자가 인도적 체류지위를 부여받았다.

## 다. 향후 추진계획

난민심사제도 개선 및 인력 증원 등으로 난민심사 처리 실적이 증가하였으나, 2017년 11월 난민불인정취소소송에서 '난민면접 부실 등 절차적 하자' 사유로 국가가 패소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018년 7월 '난민면접 시 녹음·녹화 전면 시행', '16세 미만 미성년인 경우에도 난민면접 실시' 등 시행에 따라 2018년도에는 심사 실적이 감소하였다. 하지만 2019년에 전문임기제 20명을 포함하여 총 52명의 난민심사 인력이 확충될 예정으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통한 전문성 제고를 통하여 신속한 심사를 진행하고, 국내 체류 연장 또는 취업 목적으로 난민신청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 방지 및 진정한 난민은 신속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 제주 예멘 난민사태 해결 노력

## 1. 예멘 난민신청자 유입배경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끝에 있는 예멘은 종파 갈등으로 2015년 시작된 내전이 4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국가다. 내전을 피해 예멘을 떠난 난민들 중 일부는 비자 없이 90일간 체류가 가능한 말레이시아로 탈출하여 2018년에 많은 예멘인이 말레이시아(UNHCR 발표 자료)에 머물고 있다.

2017년 12월 제주와 쿠알라룸푸르 간 직항편이 신규로 취항된 이후, 말레이시아에서 거주 중이던 예멘인들이 제주 무사증제도를 이용하여 대규모로 제주도에 입국하여 난민인정을 신청하였다. 2018년 예멘 출신 난민신청자 602명 중 549명이 제주 무사증제도를 통해 입국하였다.

**| 표 2-125 |** 연도별 예멘(Yemen)인 난민신청자 수

(단위 : 명)

| 구분 | 합계 | 1994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전체 난민신청자 | 1,032 | 38 | 130 | 39 | 92 | 131 | 602 |
| 제주무사증 입국 후 난민신청자 | 598 | - | - | - | 7 | 42 | 549 |

## 2. 난민수용에 대한 국민여론 찬반 논란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짧은 기간에 549명의 예멘인들이 제주도로 입국하여 난민신청하면서 이들의 난민수용 여부를 두고 전 국민적 논쟁이 일었다.

6월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제주도 불법 난민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은 청원 마감일(7. 13.)까지 총 714,875명의 국민이 청원에 동의하였고, 8월 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70만 이상의 동의를 얻은 “제주도 불법 난민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에 대해 답변하였다.

2018년 6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제주, 대구,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난민 수용 반대 집회가 총 21차례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난민 수용 찬성 집회도 4 ~ 5차례 개최되었다.

| 그림 2-193 | 난민수용 찬반 집회




난민수용 반대 집회(연합뉴스, 2018. 6. 30.)




난민수용 찬성 집회(한겨레, 2018. 6. 30.)

## 3. 정부의 대응

법무부는 제주 무사증제도를 통해 입국한 예멘인의 난민신청 급증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제주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대책을 마련·시행하였다.

4월 30일 예멘인을 포함하여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한 모든 난민신청자의 체류지를 제주도로 제한(출도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였고, 5월 2일 외교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6월 1일 예멘을 제주도 무사증불허국가로 지정하였다.

제주 예멘 난민신청과 관련하여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6월 29일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를 긴급히 개최하였고, 7월 10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제주도를 직접 방문하여 난민심사 진행 상황 점검 및 난민심사관들을 격려하며 「난민법」과 난민협약에 따라 난민심사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 그림 2-194 | 법무부차관, 제주도 방문





이후 9월 14일, 10월 17일, 12월 14일 등 총 3차례에 걸쳐 출도 제한된 484명에 대하여 난민인정 2명, 인도적 체류 412명, 불인정 56명, 난민심사 절차 직권 종료(출국 또는 자진 철회) 14명 등 심사를 완료하였다.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는 이들에 대해 사회통합프로그램[32]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시민단체 등과 멘토링 시스템(73명 멘토 위촉)을 구축하여 2018년 하반기 중에 총 129회의 멘토링을 실시하는 등 국내 정착과 취업을 지원하였다.

한편, 출도제한 조치와 더불어 거주지가 제주도로 제한된 예멘 난민신청자들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는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취업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2차례 취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취업을 지원하면서도, 국민 일자리를 잠식할 우려가 있는 건설업 등에는 취업을 제한하였다.

**| 그림 2-195 |** 제주 예멘 난민 취업설명회 및 한국 사회문화 교육



취업설명회(뉴시스, 2018. 6. 18.)



취업 현장





한국 사회문화 및 법질서 교육

32) 국내 이민자가 한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적응,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한국어 및 한국사회이해)

## 4. 향후 계획

법무부는 예멘 난민에 대해 체류 상황 및 국내 생활 적응 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특화된 우리사회 적응교육을 강화하여, 이들이 우리와 함께 살면서 법질서 및 사회적 가치와 문화 등을 준수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난민법을 개정하여 제주 예멘 난민 사태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킴과 동시에 진정한 난민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7. 미래지향적 외국인정책 추진 및 국제협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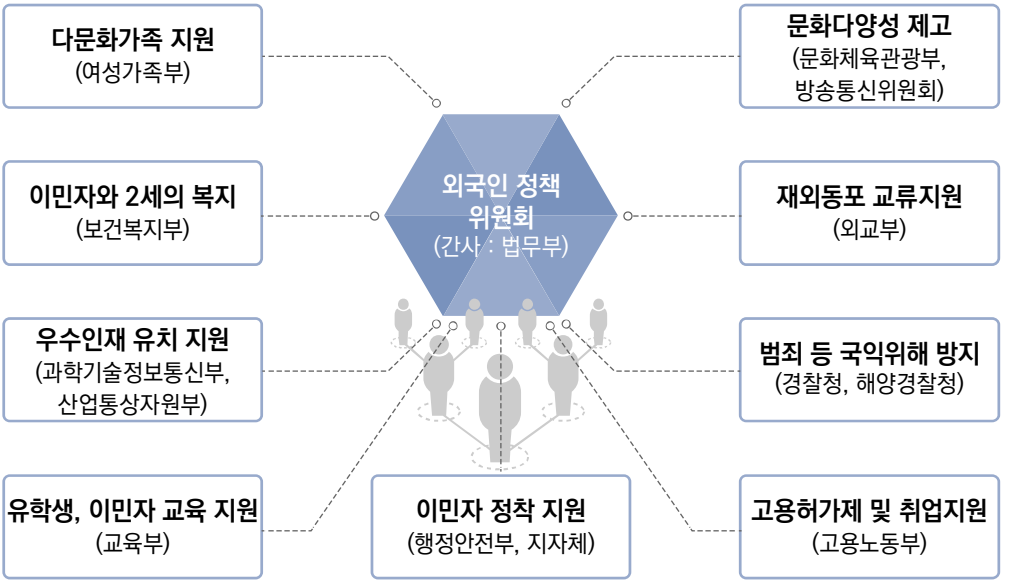
## 가.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18~'22) 수립

외국인정책과 주무관 이동용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외국인정책은 그 특성상 관련분야가 많고 정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므로, 소관부처별 개별적인 정책추진보다는 국가차원에서 중장기 정책 방향을 미리 설정하고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5조에 따라 관계부처의 기본계획(안)을 종합하고, 2018년 2월 12일 "제21회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한민국 이민정책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국가계획이자, 정책지침서이며, 향후 5년간의 정책추진에 관한 기본 설계도인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18~'22)」을 수립하였다.

| 그림 2-196 | 외국인정책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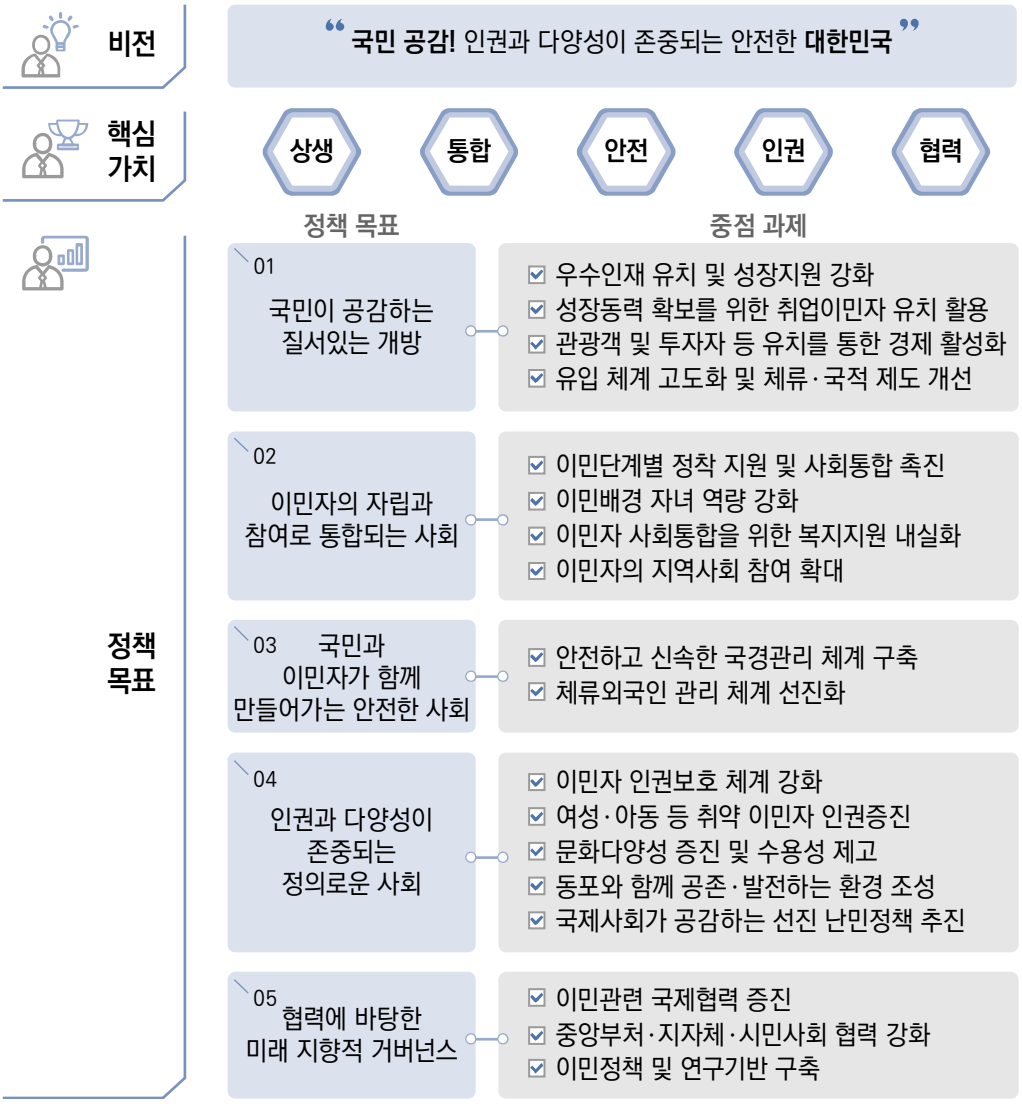

### 2) 평가 및 발전방향

국내 체류외국인은 2007년 100만명에 도달한 후, 9년 만인 2016년 20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에는

보다 개방적인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저임금 이민자 증가 등에 따른 치안·환경 악화 및 일자리 침해 우려, 일부 이민자에 대한 시혜적 지원으로 인한 국민 역차별 논란 등도 발생하고 있다.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5년)」은 이민자의 유입이 국민 일자리, 사회안전 등을 침해하지 않고 국가경제와 문화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환경을 조성하며, 우수하고 발전가능성 있는 이민자를 유입함으로써 미래의 사회통합 부담을 최소화 하는 등 선순환적 이민환경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림 2-197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비전 및 정책목표



## 나. 2018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외국인정책과 주무관 이동용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18~'22)」이 수립됨에 따라 2018년 6월 27일부터 6월 29일까지 '제22회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 거쳐 '우수인재 유치 및 성장지원 강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취업이민자 유치·활용', '이민단계별 정착 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 '안전하고 신속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 '체류외국인 관리 체계 선진화', '이민자 인권보호 체계 강화',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선진 난민정책 추진', '이민관련 국제협력 증진' 등을 중점 과제로 하는 「2018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 2) 주요 내용

「2018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은 5년 단위의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5개 정책목표(개방, 통합, 안전, 인권, 협력)를 중심으로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협업으로 수립한 총 1,201개의 외국인정책 관련 과제(소요예산 약 4,731억여 원)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개방

- 인재유치 해외조직망 및 인재유치포털 운영을 통한 우수인재 유치 지원, 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를 통한 국내기업의 글로벌 인재 채용수요 지원
-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외국인이 학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주무 중앙부처의 장이 인정하여 추천하는 경우 창업비자를 발급하여 창업이민 활성화
- 귀화자 및 국적회복자의 소속감 및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 선서와 귀화증서 수여제도 도입

②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 다누리콜센터(1577-1366) 생활정보 제공 기능 확대 및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인권 보호 기능 강화
- 집합교육 외 동영상 강의 등 온라인 교육과 지자체 문화·역사 탐방 등 현장학습 및 생활교육 활성화 및 이민자의 배우자, 가족 등 다양한 계층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 마련
- 다문화학생의 이중 언어 재능을 조기에 발굴·육성하기 위한 전국 이중 언어 말하기 대회 개최 및 이중 언어 교재 9종[33] 보급

33)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태국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 인도네시아어 등

③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 자동출입국심사대 증설 및 단기방문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확대, 협정 체결을 통한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대상 국가 확대
- 테러방지 등을 위해 탑승불가 통보자에 대한 운수업자의 탑승방지의무를 규정하는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 운영 및 빅데이터 분석 기법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한 바이오정보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바이오 정보 활용 체계 강화
- 경찰·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실태조사 및 순찰 강화, 외국인 주민단체 등과의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한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 및 외국인 체류허가 전 세금·건강보험부당이득금, 범칙금 및 과태료 등 납부 유도

④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 재한외국인 지원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외국인업무 관련 고충 처리 및 인권보호를 위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강화
-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에 최소 기준 설정, 비닐하우스 숙소 제공 사업장 신규인력 배정 중단, 숙소 항목별 최소 기준 미충족 사업장 신규인력 배정 시 감점 부과 등 외국인노동자 권익 보호
- '동포체류지원센터'를 통한 기초법·제도 교육 강화 및 조기적응 지원, 성공한 동포 모범사례 발굴, 동포 인식개선 전문가 양성, 지자체·공공기관 대상 동포인식개선 교육 추진
- 난민 심사 인력 및 조직 확충, 난민담당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주기적 직무교육 실시, 국가정황조사 전문인력 확보, 국가정황 정보 DB 구축 등 난민심사 인프라 확충

⑤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 체류외국인의 지속가능한 자발적 귀환 유도를 위한 현지 개발 협력 지원을 통해 귀환이민자의 경제적·사회적 자립능력 향상 도모
- 국제이주기구, 유엔난민기구 등 이민관련 국제기구 회의 및 워크숍 참석, 교류 활성화를 통한 국제기구 협력 증진, 주요국 이민당국과의 인적 교류 및 정보 교환, 핫라인 구축 등 양자 협력 강화
- 외국인·다문화관련 위원회 연석회의 개최, 정책방향 및 과제 등에 대한 부처 간 논의 활성화, 외국인·다문화관련 국가 기본계획 간의 상호 연계성 증진을 위한 위원회 협력 증진

## 다. 2018년 출입국·이민실무 정책발표회 개최

외국인정책과 주무관 옥효재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018년 11월 2일 외국인정책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출입국행정의 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직원이 참여하는 정책발표회를 개최하였다. 2007년 이래로 매년 출입국·이민실무 정책발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일선에서 출입국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정책에 대하여 연구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2) 평가 및 발전방향

2018년 정책발표회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44개 과제를 제출할 정도로 직원들이 적극 참여하였으며, 내부 심사를 거쳐 10개 과제가 본선에 진출하였다. 2018년 11월 2일 개최된 정책발표회에서 '보이는 ARS와 FRMS를 연계한 효율적인 단속신고 접수 방안'이 최우수상을, '차세대 이민행정시스템과 연계된 사범업무 디지털화 방안'과 '가상현실을 이용한 출입국심사 교육방안'이 우수상을, '보호외국인 관리 전산화 방안'과 '여성공무원 단속전담팀 신설 방안', '단기체류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이용 확대방안'이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림 2-198 |** 제21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정책발표회






## 라. 2018년 이민정책포럼 개최

외국인정책과 주무관 옥효재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직원들의 이민정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소양을 함양하기 위하여 2007년 8월 29일부터 수요정책포럼이 시작되었다. 2016년 3월 24일 이민정책포럼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주제 및 발표방식 등 운영방식을 개선하였고, 2017년 9월부터 외부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청취 및 수렴을 위하여 제도를 확대 운영하였으며, 2018년부터 e나라도움 화상회의를 활용하여 일선 기관 직원들이 포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 주요 내용 및 평가

2018년 이민정책포럼을 통해 학자, 언론인, 주한대사관 주재관, 각국 이민국 중견관리자, NGO임직원, 관계부처, 정책담당자 등 외국인정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수렴하였고,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미국 이민정책과 다문화 한국', '중국동포 이주 역사 및 상생의 비전', '빅데이터가 여는 세상', '육로 출입국 심사방안', '지능형 영상감시 및 홍채인식 시스템', '2018년 중동정세' 등을 주제로 초청 강사의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민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이민정책 환경과 세계적 이민정책 동향을 각계 각층의 다양한 전문가로부터 듣고 토론을 함으로써 정책추진 역량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 및 대안을 모색하는 등 외국인정책 추진 방향 등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그림 2-199 | 이민정책포럼





## 마. 국제협력 강화

출입국기획과 주무관 공동원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국제이주 시대를 맞이하여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이동이 과거보다 더욱 가속화 되어 2018년 기준 대한민국 출입국자 수는 8,890만 명을 넘었고, 국내 체류 외국인 수도 약 237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로 인해 이민 당국 간 국제이민 협력체계의 확립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국제 환경 변화와 흐름에 부응하여, 국제테러, 불법이주 문제 등 초국가적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APEC 고위관리회의 산하 BGM 회의, OECD 이주정책 전문가회의, IMO 국제해사기구회의 참석, 제109차 국제이주기구(IOM) 총회, UN 인종차별철폐협약 회의 등에 참석하여 전 세계적인 이민의 흐름을 파악하고 인권보호에 노력하는 한편, ICAO의 여행자 신원확인 프로그램 지역세미나(생체정보를 활용한 자동출입국심사, 사전승객정보 활용)의 각국 운영사례와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이주와 개발에 관한 국제포럼(GFMD) 등 국제협의체를 통하여 파트너쉽 강화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인적·재정적 비용 절감을 위한 협력방안, 개발요인으로서의 이주, 이주와 이동분야 현안 관련 국제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하였으며, 2015년 이후 UN 개발의제를 위한 이주의 틀 논의 등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을 위해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출입국 관련 현안이 있는 일본, 호주, 몽골 등 이민 당국과 회의를 개최하여 양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한공관원을 초청하여 출입국 정책을 소개하는 이민정책포럼(Immigration Policy Forum), 주요국의 이민전문가를 초청하여 토론하는 차세대 이민정책전문가회의(FILC, Future Immigration Leaders' Conference), 직원 상호 교환연수, 정책연수 등 실무자간 인적 교류사업을 통하여 해외 정책사례를 수집하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 2) 주요 내용 및 평가

#### 가) 다자간 협의체를 통한 국제이민협력

안전하고 효율적인 국경관리를 위해 이민에 대한 각국 운영사례와 개선방안 논의를 목적으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적극 동참하여 국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를 위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18년 다양한 이주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대한민국의 이민정책을 세계 각국에 소개하는 한편, 해외 이민당국의 초국가적 범죄대처방안 등 정책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① IMO 국제해사기구회의 ② OECD 이주작업반 회의 ③ 2018 APEC 고위관리회의 산하 BGM 회의 ④ IGC(국가간이민정책협의체) 워킹그룹 회의 ⑤ 제11차 GFMD 회의 ⑥유엔난민기구(UNHCR)

제69차 집행이사회 참가 ⑦ UN인종차별철폐협약 정부대표단 참가 ⑧ 제109차 국제이주기구(IOM) 총회 등 각종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 나) 양자협력 강화 및 교류 다양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해외 이민당국과 실질적인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재외동포 다수 거주 국가, 국내 불법체류자 다발국가, 인력 송출국가, 이민행정 선진국가 등 우리나라와 이주 관련 현안이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이민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재외국민의 출입국·체류 편의를 지원하고 이민당국 간 현안에 관하여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상시적 공식채널을 만드는데 정책적 중점을 두었다.

2018년에는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상응하여 한·일 고위급 양자회담을 가졌고, 하반기 호주, 몽골 등과의 고위급 회담을 실시하여 출입국 관리분야의 상호 협력 체계 구축 관련 동의를 얻어냈다.

**| 그림 2-200 |** 고위급 회담



한·일 고위급 회담



한·호주 고위급 회담

2018년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IOM, WORLD BANK 등 국제기구 및 아시아, 미주, 유럽지역 14개국의 미래이민정책결정자 20명을 국내로 초청하여 차세대이민정책전문가회의(FILC : Future Immigration Leaders' Conference)를 개최하였다. 차세대이민정책전문가회의를 통해 전 세계 이민국 직원들이 각국의 이민제도를 소개하고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민행정선진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위 회의에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이민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국제기구(IOM, WORLD BANK)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출입국관리분야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한층 깊은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고, 최근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우리 출입국관리 시스템의 우수성 홍보, 각국의 주요현안 및 출입국정책 정보공유, 해외 이민당국과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차세대이민정책전문가회의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젊은 해외 이민국 우수인재들을

초청하여 친한 인사로 양성하고, 이를 통해 20~30년 후 양자 간 이민협력의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한 국제협력 사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 그림 2-201 |** 차세대이민정책전문가회의(FILC)






한편,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글로벌시대에 부응하고, 국제적인 마인드를 지닐 수 있도록 정책연수 및 직원교환연수를 연중 시행하였으며, 선진 이민정책 벤치마킹을 통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정책역량 제고에 노력을 기울였다.

2018년 호주, 캐나다, 러시아,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14개 과정에 직원 52명을 대상으로 정책연수를 실시하여 양국 이민당국 실무자급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해당국가의 이민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 제10절 검찰 과거사 진상 규명 업무

## 1. 검찰과거사위원회 설치 배경 및 운영 경과

정책기획단 검사 정지영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017. 9. 29.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사례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통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독립성이 보장되는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2017. 12. 12. 9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검찰과거사위원회'를 발족하였고, 대검찰청은 2018. 2. 6.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진상조사 대상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을 설치하였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①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이 남용되었다고 의혹이 제기된 개별 조사사건 15건과 포괄적 조사사건을 대상 사건으로 선정하고, ②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통하여 진상을 규명하며, ③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사항을 권고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위원회 업무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2.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 대상 사건 조사현황 및 향후 계획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 대상 사건으로 개별적 조사사건 15건과 포괄적 조사사건을 선정하고 이 중 '형제복지원 사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조사·심의결과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PD수첩 사건' 등 조사가 상당부분 진행된 7건에 대한 조사·심의결과를 2019. 1월 중으로 순차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5건에 대해서는 2019. 2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3월 말까지 심의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안에 대하여 유사사례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제도화된 개혁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조사현황은 〈표 2-125〉와 같다.

**| 표 2-126 |**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 현황

| 구 분 | | 대 상 사 건 | 비고 |
|---|---|---|---|
| 조사 완료 | | 형제복지원 사건 | 2018. 10. 10. 발표 |
| | | 김근태 고문 은폐 사건 | 2018. 10. 11. 발표 |
| |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 |
| |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 2018. 11. 21. 발표 |
| 조사 진행 중 | 2019. 1월 중 심의결과 발표예정 |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 | 최종 조사결과보고서 수정·보완/ 위원회 심의 중 |
| | | PD수첩 사건 | |
| | | KBS 정연주 배임 사건 | |
| | |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 | |
| | | 삼례 나라슈퍼 사건 | |
| | | 약촌오거리 사건 | |
| | |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 | |
| | 2019. 2월 중 조사완료 예정 | 장자연 리스트 사건 | |
| | | 용산지역 철거 사건 | |
| | |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 |
| | | 김학의 차관 사건 | |

# 法務年鑑

# 03



# 법령정비

제1절 개관
제2절 법률
제3절 대통령령
제4절 총리령 및 법무부령

# 제1절 개관

| 구분 / 연도 | 계 | 제정 | | | | 개정 | | | | 폐지 |
|---|---|---|---|---|---|---|---|---|---|---|
| | | 소계 |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부령 | 소계 |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부령 | 법률 |
| 2008 | 88 | 16 | 3 | 7 | 6 | 61 | 15 | 22 | 24 | 11 |
| 2009 | 73 | 15 | 6 | 6 | 3 | 56 | 15 | 19 | 22 | 2 |
| 2010 | 72 | 16 | 9 | 4 | 3 | 56 | 19 | 12 | 25 | - |
| 2011 | 67 | 9 | 1 | 3 | 5 | 58 | 11 | 21 | 26 | - |
| 2012 | 58 | 7 | 2 | 3 | 2 | 51 | 10 | 24 | 17 | - |
| 2013 | 59 | 3 | 1 | 1 | 1 | 56 | 14 | 14 | 28 | - |
| 2014 | 83 | 8 | 1 | 4 | 3 | 75 | 27 | 26 | 22 | - |
| 2015 | 59 | 4 | 1 | 2 | 1 | 55 | 10 | 19 | 26 | - |
| 2016 | 80 | 5 | 3 | 1 | 1 | 75 | 24 | 26 | 25 | - |
| 2017 | 70 | 3 | - | 2 | 1 | 67 | 23 | 20 | 24 | - |
| 2018 | 58 | 1 | - | 1 | - | 57 | 19 | 23 | 15 | |

# 제2절 법률

## Ⅰ. 개정법률

###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가. 추진배경

○ 기존법은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임차인이 영업을 안정적으로 계속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 또한 임대인이 준수하여야 하는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있었고, 2015년 개정된 기존법은 일반상가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했지만 대다수의 영세상인이 영업하고 있는 대규모 점포인 전통시장은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있었음

○ 한편 기존법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제도는 도입되지 않아 이를 도입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나. 추진경과

2016. 5. 30. ~ 2018. 8. 6. 의원 발의(12건)
2018. 9. 20. 법사위 대안 의결
2018. 9. 20. 국회통과
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공포·시행

## 다. 주요내용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
-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

○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기간 확대
-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기간을 기존 계약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 시에서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로 연장하였음

○ 권리금 보호대상 확대
- 기존에는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권리금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는 바, '대규모 점포인 전통시장'의 상가임차인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시킴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설
-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 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

#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가. 추진배경

○ 과태료의 결손처분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1. 12월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결손처분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과태료의 결손처분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황임. 이에 과태료 징수 업무의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과태료의 결손처분은 불가피하므로 기존의 「국세징수법」 제86조 조항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 결손처분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규율함으로써 명확한 결손처분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나. 추진경과

2018. 4. 5. 의원 발의
2018. 11. 29. 국회 통과
2018. 12. 18. 법률 제15979호로 공포·시행

## 다. 주요내용

○ 과태료 결손처분에 대한 근거 마련
- 과태료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어서 과태료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행정청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직접 마련함
- 행정청이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적인 과태료징수가 이루어지도록 함

# 3. 변호사법

## 가. 추진배경

○ 법무부 법무실장을 검사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도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 또는 예비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예비위원의 해임·해촉 규정 및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하여 변호사징계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나. 추진경과

2018. 3. 23. 국회제출
2018. 11. 29. 국회통과
2018. 12. 18. 법률 제15974호로 공포·시행

## 다. 주요내용

○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 법무실장을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28225호, 2017. 8. 1. 공포·시행)에 맞추어 종전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 또는 예비위원 중 각 2명을 검사로 임명하던 것을 검사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도 위원 또는 예비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함

○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 및 예비위원 공무원 의제 등
-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예비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예비위원을 지명철회 또는 해촉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예비위원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함

# 4. 정부법무공단법

## 가. 추진배경

○ 비밀누설금지 의무위반에 대한 벌금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징역형과 벌금형의 균형을 맞추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나. 추진경과

2018. 6. 29. 국회제출(박광온 의원)
2018. 11. 29. 국회통과
2018. 12. 18. 법률 제15978호로 공포
2019. 3. 19. 시행

## 다. 주요내용

○ 비밀누설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액 상향
- 정부법무공단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액을 상향

# 5. 변호사시험법

## 가. 추진배경

○ 종전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3개월 이내에 석사학위취득 예정자는 그 예정기간 내에 시행된 변호사시험일부터 5년 내에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그 이행 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석사학위취득 예정자가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도 그 이행 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변호사시험 응시자 사이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

○ 법무부 법무실장을 검사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나. 추진경과

2018. 4. 12. 국회제출
2018. 11. 29. 국회의결(수정가결)
2018. 12. 18. 법률 제15975호로 공포·시행

## 다. 주요내용

○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뿐만 아니라,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 신분'으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후 '석사학위를 취득 전'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그 이행기간이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개정함

○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 중 2명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로 위촉하던 규정에서 그 중 최대 1명을 변호사시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함

# 6.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가. 추진배경

○ 형사보상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기한을 6개월로 정하여 형사보상결정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형사보상금 지급기한을 법률에 명시하며, 보상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기한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여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나. 추진경과

2018. 2. 28. 법사위 대안 제출
2018. 2. 28. 국회의결
2018. 3. 20. 법률 제15496호로 공포·시행

## 다. 주요내용

○ 법원은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재심에서 무죄가 된 실질적 이유를 고려하도록 함(제5조 제2항 제4호 신설)
○ 보상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결정을 하도록 함(제14조 제3항 신설)
○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검찰청은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기한 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민법」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제21조의 2 신설)

# 7. 형 법

## 가. 추진배경

○ 최근 공직사회, 문화예술계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직 내 권력형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 제1항)의 징역형이 5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바, 간음죄임에도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징역형(10년 이하)에 비하여 형량이 낮아 범죄 예방 효과가 높지 않음

○ 이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형량을 상향조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현행법체계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보다 무거운 피감호자 간음죄의 법정형도 함께 상향조정하여 형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임

## 나. 추진경과

2018. 5. 16. 국회 제출
2018. 9. 20. 국회의결(법사위 대안 가결)
2018. 10. 16. 법률 제15793호로 공포·시행

## 다. 주요내용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형량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고, 피감호자 간음죄의 법정형도 현행 7년 이하의 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함께 상향조정함

#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가. 추진배경

○ 최근 조직 또는 직장 내에서 가해자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대하여 죄질에 비해 낮은 형량이 내려져 조직 내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에 대하여 형량을 상향 조정하고,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도 형량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 나. 추진경과

2018. 5. 16. 국회제출
2018. 9. 20. 국회의결(법사위 대안 가결)
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공포·시행

## 다. 주요내용

○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에 대하여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 조정함

#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가. 추진배경

○ 현행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등으로 처벌하고 있음

○ 그러나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을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촬영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법 제14조로 처벌할 수 없고 그보다 형이 낮은 음화반포죄 등으로만 처벌이 가능하여 죄질이나 불법의 중대성 등에 비하여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벌금형을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유포의 객체에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외에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추가하며,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이상 촬영에 대한 동의 유무가 그 피해에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으므로,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여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되는 경우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하고자 함

○ 한편,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법정형에서 벌금형을 삭제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 나. 추진경과

2018. 4. 25. 국회 제출
2018. 11. 29. 국회의결(법사위 대안 가결)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공포·시행

## 다. 주요내용

○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촬영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에서 '사람의 신체'로 개정하고, '불법촬영 행위', '불법촬영물

유포행위', '동의하에 촬영하였으나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행위'를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하였으며,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 벌금형을 삭제하여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함. 또한,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 뿐만 아니라 그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유포한 경우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유포 금지 대상을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로 개정함

## 1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가. 추진배경

○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故) 윤창호씨 사건으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여 음주운전 가해자를 무겁게 처벌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급증하였다. 이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 나. 추진경과

2018. 11. 28. 법사위 대안 제출
2018. 11. 29. 국회의결
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공포·시행

### 다. 주요내용

○ 음주·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을 상향함

# 11. 형 법

## 가. 추진배경

○ 최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감경에 반대하는 국민적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고, 일부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감형의 수단으로 악용하려 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있음

○ 이에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개정하여 「형법」상 책임원칙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감형 여부는 법관의 재량과 사건의 경중 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나. 추진경과

2018. 11. 28. 법사위 대안 제출
2018. 11. 29. 국회의결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공포·시행

## 다. 주요내용

○ 심신미약자에 대한 감경규정인 제10조제2항 중 "형을 감경한다"를 "형을 감경할 수 있다"로 개정함

# 1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가. 추진배경

○ 2017. 8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으로 범죄예방정책국장을 검사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인 범죄예방정책국장도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할 필요

## 나. 추진경과

2018. 7. 2. 국회제출
2018. 11. 29. 국회통과
2018. 12. 18. 법률 제15980호로 공포·시행

## 다. 주요내용

○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외에 법무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도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규정

# 13.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 가. 추진배경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의 판결조항은 치료명령 선고를 피고사건 선고와 동시에 하도록 규정하여 장기형이 선고되는 경우 치료명령 선고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치료자가 집행시점에 치료의 필요성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불필요한 치료를 막을 수 있는 절차를 두지 아니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2013헌가9, 2015. 12. 23. 결정)을 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위헌성을 해소하는 한편, 「형법」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강도강간미수죄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나. 추진경과

2017. 7. 26. 국회제출
2017. 12. 1. 국회통과
2017. 12. 19. 법률 제15254호로 공포
2018. 1. 1. 시행

## 다. 주요내용

○ 약물치료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치상죄,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 강도강간미수죄, 해상강도강간미수죄를 추가
○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절차 마련
○ 치료기간 연장사유 및 기산점 정비

# 14.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가. 추진배경

○ 현행법은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아 출국하는 경우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연장 사유로 명시되어 있으나, 출국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을 도과하여 미귀국한 행위는 연장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또한, 전자장치 부착 상태를 전제로 전자장치를 신체로부터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등 전자장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도록 효용을 해한 경우는 부착기간 불산입 사유에 해당하나 전자장치가 출국허가, 폐쇄병동 입원 등 사유로 적법하게 분리된 후 재부착을 위한 소환에 불응하여 부착의무를 불이행한 경우는 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이에 피부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국허가 기간을 도과하여 미귀국한 행위를 부착기간 연장 사유로 명시하고, 전자장치를 일시 분리한 후 재부착을 위한 소환에 불응하는 등 전자장치 부착의무를 불이행한 기간도 부착기간 불산입 사유에 추가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나. 추진경과

2017. 6. 29. 국회제출
2018. 2. 28. 국회통과
2018. 3. 20. 법률 제15494호로 공포·시행

## 다. 주요내용

○ 부착기간 연장사유에 미귀국 행위 추가

○ 부착기간 불산입 사유에 전자장치 일시분리 후 재부착을 위한 소환에 불응한 행위 추가

# 15.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가. 추진배경

○ 전자장치 소급 부착명령의 시효에 정지 규정이 없어 '장기'형을 선고받은 소급 부착명령 대상자의 경우 형 집행 중 부착명령의 시효(5년)가 도과될 수 있어 전자장치 소급 부착명령의 도입취지 및 사회방위에 배치될 우려가 있고,

○ 또한, 전자장치 소급 부착명령은 '판결'이 아닌 '결정'으로 결정에 대하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항고가 가능하므로 일률적으로 확정일을 특정할 수 없는데, 전자장치 소급 부착명령의 시효 기산일이 부착명령의 '확정일'로 되어 있어, 부착명령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시효 기산일을 특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 나. 추진경과

2017. 12. 20. 국회제출
2018. 8. 30. 국회통과
2018. 9. 18. 법률 제15759호로 공포·시행

## 다. 주요내용

○ 전자장치 소급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 사건의 형·치료감호·보호감호 기간 및 그에 계속하여 집행되는 다른 범죄 사건의 형·치료감호·보호감호 기간에는 부착명령의 시효가 정지

○ 전자장치 소급 부착명령의 시효 기산일을 부착명령의 집행 가능시점인 '고지일'로 개정

# 16.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가. 추진배경

○ 현행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남자', '여자'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으나, 「양성평등기본법」등 다수의 입법례에서 '남자', '여자'가 아닌 '남성', '여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법률간 용어의 통일성 확보 필요

○ 한편, 2015년 국회 법제실은 같거나 비슷한 표현인 경우에 법문 표현의 통일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성', '여성'으로 표준화하도록 권장하고 있어 '남성',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의 기본가치와 법문 표현의 통일성 제고

## 나. 추진경과

2018. 1. 18. 전재수 의원 발의
2018. 8. 30. 국회의결
2018. 9. 18. 법률 제15754호로 공포

## 다. 주요내용

○ '남자와 여자'를 '남성과 여성'으로 변경

# 17. 출입국관리법

## 가. 추진배경

- ○ 체류외국인 200만 시대에 맞게 외국인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대한 기본사항 및 영주자격 외국인에 대한 권리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
- ○ 외국인 범죄 피의자의 국외 도주 방지를 위한 긴급출국정지에 관한 법적근거 필요
- ○ 보호된 외국인의 권리구제 및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보호 일시해제에 대한 직권심사제도 도입 필요

## 나. 추진경과

2017. 7. 18. 국회제출
2018. 2. 28. 국회의결
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공포
2018. 9. 21. 시행

## 다. 주요내용

- ○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체계화하고, 영주자격 취득요건 등을 법률에 규정
- ○ 외국인의 '긴급 출국정지 제도' 신설
- ○ 영주자격 소지자는 '영주증'을 10년마다 재발급 받도록 갱신제도 도입
- ○ 외국인의 보호 일시해제에 대한 직권심사 제도 도입

# 18. 국적법

## 가. 추진배경

○ 현재 국적업무와 관련된 수수료 징수의 근거는 법률이 아닌 현행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나, 수수료 징수가 국민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침익적 행정행위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국적업무와 관련된 각종 허가신청, 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 징수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 나. 추진경과

2018. 9. 18. 법률 제15752호로 공포·시행

## 다. 주요내용

○ 국적업무와 관련된 발급에 관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제21조의 2)
- 허가신청, 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 19.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가. 추진배경

○ 병역을 마치지 않거나 면제처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사람의 경우 41세부터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신청하면 반드시 부여해야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부여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하는지 불명확하여 해석상 논란을 방지

## 나. 추진경과

2017. 11. 27. 제안
2018. 8. 30. 국회의결
2018. 9. 18. 법률 제15758호로 공포
2018. 9. 18. 시행

## 다. 주요내용

○ 현행법은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41세 이상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 하지만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41세 이상이면 무조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부여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 이에 대상자의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를 법무부 장관이 검토하여 부여 여부를 판단하도록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함

# 제3절 대통령령

## Ⅰ. 대통령령[제정]

### 1. 검사인사규정

#### 가. 추진배경

○ 검사 인사원칙, 검사 신규임용과 전보의 기준 및 절차,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사유·필요성 및 기준 등을 법제화 하여 인사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공개된 규범에 따른 인사로 검찰의 중립성 및 공정성 제고 필요

#### 나. 추진경과

2018. 11. 5. 「검사인사규정」 제개정 절차 착수 보도자료 배표
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71호로 공포·시행

#### 다. 주요내용

○ 검사인사의 기본 원칙 천명
- 성별 등의 차별 없이 근무성적, 업무능력, 리더십 및 청렴성 등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고 적재적소에 임용

○ 검사 신규임용 기준 마련
- 법적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균형있는 사고능력 등을 참작하고 검사 정·현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용 여부를 결정

○ 일반검사의 전보 원칙 마련
- 근무성적 결과, 희망근무지, 인력의 균형 배치, 양성평등, 일·가정의 양립, 검찰청별 인력 현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실시

○ 파견 및 직무대리 원칙 마련
- 검사 직무와의 관련성, 협업의 필요성, 검사정원법상 검사의 정원 대비 파견 검사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견 필요성을 엄격하게 심사

○ 심신상의 장애로 인한 퇴직명령
-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법」 제39조의 2에 따른 퇴직명령 발령을 제청하기에 앞서 퇴직명령 사유의 존부에 관한 심의를 검찰인사위원회에 요청 할 수 있음

# Ⅱ. 대통령령[개정]

##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가. 추진배경

○ 일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바, 그 보증금액을 지역에 따라 상향함으로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연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 한도를 하향 조정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 나. 추진경과

2018. 1. 26. 대통령령 제28611호로 공포·시행

### 다. 주요내용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확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보증금액을 서울특별시는 4억 원 이하에서 6억1천만 원 이하로, 과밀억제권역은 3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등은 2억4천만 원 이하에서 3억9천만 원 이하로, 그 밖의 지역은 1억8천만 원 이하에서 2억7천만 원 이하로 각각 증액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대함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 한도 인하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 한도를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 이하에서 100분의 5 이하로 인하함

## 2.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가. 추진배경

○ 주택임차인의 소액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고, 최근 전세가 상승 등 주택임대차 시장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넓히고, 보증금 수준이 크게 상승한 지역의 지역군을 조정하였으며, 최우선변제금을 증액하여 주택임대차 법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 나. 추진경과

2018. 9. 18. 대통령령 제29162호로 공포·시행

### 다. 주요내용

○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범위 확대
- 보증금의 일부를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을 서울특별시는 보증금 1억 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보증금 1억1천만 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과밀억제권역 등은 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보증금 1억 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각각 증액함

○ 최우선변제금 증액

- 임차인이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 중 일정액의 상한을 서울특별시의 경우 3천400만원에서 3천700만원으로, 과밀억제권역 등의 경우 2천700만원에서 3천400만원으로 각각 증액함

## 3. 공증인법 시행령

### 가. 추진배경

○ 지정공증인이 일정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증인법」이 개정(법률 제15150호, 2017. 12. 12. 공포, 2018. 6. 20.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의 인증을 하기 위한 인터넷 화상장치의 기준 및 본인확인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결사항의 성질상 분쟁발생 가능성이 낮아 공증인의 인증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법인의사록의 범위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려는 것임

### 나. 추진경과

2018. 1. 9. ~ 2. 19. 입법예고
2018. 6. 12. 국무회의 통과
2018. 6. 19. 대통령령 제28976호로 공포
2018. 6. 20. 시행

### 다. 주요내용

○ 법인의사록의 인증 제외대상인 경미한 사항

- 의결사항의 성질상 분쟁발생 가능성이 낮아 공증인의 인증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법인의사록의 범위를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및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정함

○ 전자문서의 인증에 필요한 인터넷 화상장치의 기준
- 전자문서의 인증에 필요한 인터넷 화상장치의 기준으로 해상도, 운영체제 등을 정하고, 그 세부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 인증 시의 본인확인 절차
-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 시 지정공증인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고,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 인증 등의 방법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함

○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 인증 시의 대리촉탁 방법
-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한 전자문서의 인증을 대리인이 촉탁하는 경우, 지정공증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우편 송부 등의 방법으로 제시하게 하거나 전자공증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 거부 및 이유 설명
- 지정공증인은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전자문서의 인증을 거부할 수 있되, 그 거부 이유를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알리도록 함

## 4. 상법 시행령

### 가. 추진배경

○ 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시 요구되는 타인의 서면 동의 방식에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등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법률 제14969호, 2017. 10. 31. 공포, 2018. 11. 1. 시행)됨에 따라, 위 개정 법률은 서면동의를 갈음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그 위임 사항을 정하기 위함

### 나. 추진경과

2018. 10. 18. 제42회 차관회의 통과
2018. 10. 23. 제45회 국무회의 통과
2018. 10. 30. 법률 제29259호로 공포
2018. 11. 1. 시행

### 다. 주요내용

○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액 등이 적혀 있고, 전자서명 전에 전자서명을 할 사람을 직접 만나서 그 사람이 보험계약에 동의하는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 등을 거쳐 작성되며,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의 위조·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를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 시 타인의 동의를 나타내는 서면이 될 수 있는 전자문서로 정함

## 5. 검사정원법 시행령

### 가. 추진배경

○ 「검사정원법」의 개정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검사 70명이 증원됨에 따라, 증원되는 검사 70명을 각급 검찰청에 배정

### 나. 추진경과

2018. 2. 5. 대통령령 제28621호로 공포·시행

### 다. 주요내용

○ 증원되는 검사 70명 중 1명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차장검사로, 3명은 고등검찰청 검사 및 지방검찰청 부장검사로, 나머지 66명 중 65명은 지방검찰청 및 지청 검사로, 1명은 대검찰청 연구관으로 각 배정

## 6.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 가. 추진배경

○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효율적·전문적 대응, 범죄로 인한 수익의 보전·환수 및 형사사건 처리의 신속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직 신설 필요

### 나. 추진경과

2018. 2. 5. 대통령령 제28622호로 공포·시행

### 다. 주요내용

○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 신설
○ 서울중앙지검에 제4차장검사, 범죄수익환수부, 공정거래조사부 및 형사제9부 각 신설
○ 대전지검에 특허범죄조사부 신설
○ 서울동부·서울남부·서울북부·서울서부·인천·수원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각 신설
○ 고양·부천·원주지청에 각 형사부 증설

# 7.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 가. 추진배경

○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검사정원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증원하는 내용으로 「검사정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8년도에 증원되는 검사 70명을 보조하기 위하여 수사 및 공판 참여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이 개장됨에 따라 마약류 사범 검거 및 마약류 밀수입 차단에 필요한 수사 인력 등 증원 필요

## 나. 추진경과

2018. 3. 30. 대통령령 제28757호로 공포·시행

## 다. 주요내용

○ 검사 70명 증원에 따른 검사보조인력 84명(6급 24명, 7급 29명, 8급 17명, 9급 14명) 증원
○ 인천공항 2터미널 마약류 차단 및 마약사범 검거 인력 8명(6급 4명, 7급 3명, 8급 1명) 증원
○ 서울중앙지검 별정직 6급(1명, 퇴직)을 검찰직으로 전환
○ 대검 기조부 분장 사무 중, ‘정부 3.0’을 ‘정부혁신’으로 변경

## 8.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가. 추진배경

○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8594호, 2018. 1. 18. 공포·시행) 개정으로 공무원 봉급 등이 인상·조정(총 보수 대비 2.6% 인상)되어 이를 검사의 보수 지급 반영 필요

### 나. 추진경과

2018. 4. 24. 대통령령 제28812호로 공포·시행

### 다. 주요내용

○ 검찰총장 및 검사의 보수에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인상분 반영
-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여 검찰총장 및 검사의 봉급액을 인상·조정('18. 1. 1.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
- 단, 3호봉 이상의 검사의 경우에는 별표2(검사의 봉급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부칙 규정에 의해 봉급을 지급

## 9.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 가. 추진배경

○ 대검찰청에 형사·재판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연구하기 위한 특수기록관 개관에 따른 운영 인력 증원 및 퇴직한 관리운영직군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한편 검찰 내 후생·복지업무 담당 부서 확대에 따른 조직개편 필요

### 나. 추진경과

2018. 5. 29. 대통령령 제28922호로 공포·시행

### 다. 주요내용

- ○ 대검 운영지원과 업무분장에 특수기록관 운영·관리업무 추가 운영인력 15명(4·5급 1명, 5급·연구관 1명, 6급 이하 9명, 연구사 4명) 증원
- ○ 대검 내 분장사무 이관, 업무중요도 등 감안, 부서 명칭을 '관리과'에서 '복지후생과'로 변경
- ○ 기술관리운영직군(2명)·사무운영관리직군(15명) 정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
- ○ '별표1' 정원표의 연구관 직렬에 '심리·학예연구관' 추가

## 10.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 가. 추진배경

- ○ 인권옹호기간으로서의 역할을 강화 및 반부패범죄와 강력범죄의 경계가 모호해 지는 추세에 맞춰 대검찰청 내 부서 개편 검토
- ○ 악성코드 유포, 사이버 성범죄·피싱 등 민생침해 사이버범죄에 대한 전문적·효율적인 대응
- ○ 검찰의 수사기능 개편에 따른 일부 검찰청 특수수사 기능 축소

### 나. 추진경과

2018. 7. 23. 대통령령 제29055호로 공포·시행

### 다. 주요내용

○ 대검찰청에 인권부 신설(산하에 인권기획과, 인권감독과 각 신설)
○ 반부패범죄와 강력범죄의 경계가 모호해 지는 추세에 맞춰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강력부를 통합하여 '반부패·강력부'로 개편
○ 사이버범죄에 대한 전문적·효율적 대응을 위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사이버 수사 역량을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로 결집
○ 검찰의 특수수사 총량 축소를 위해 울산지검·창원지검 특별수사부를 형사부로 변경

## 11. 검사정원법 시행령

### 가. 추진배경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제1부'」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이전함에 따라 이에 따른 정원 조정 필요

### 나. 추진경과

2018. 7. 23. 대통령령 제29056호로 공포·시행

### 다. 주요내용

○ 「검사정원법 시행령」별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부장검사 1명'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이체

# 1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가. 추진배경

○ 2017. 12. 1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처우 기준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하위법령 마련

## 나. 추진경과

2018. 6. 12. 대통령령 제28951호로 공포
2018. 6. 13. 시행

## 다. 주요내용

○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성별, 심신장애의 정도 등 필요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생활실을 구분하는 등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처우 기준 마련
○ 피치료감호자등에 대한 신체적 제한의 방법을 격리, 보호복 또는 억제대를 이용한 보호조치로 한정하고 보호조치 기간을 격리 15일, 보호복 또는 억제대 24시간 이내로 정하는 등 신체적 제한 방법 등 마련
○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추가·변경 또는 삭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의 취지 등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도록 하는 등 관련 기준 마련
○ 보호관찰대상자를 구인하기 위해서는 구인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도록 하는 등 보호관찰대상자의 구인 및 유치, 유치 후 가종료 신청 등 관련 기준 마련
○ 치료비용 국가부담 신청 시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별도 제출하지 않고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제출 서류 간소화

# 13.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가. 추진배경

○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선고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음을 고려하여 법원과 치료감호위원회가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집행시점의 약물치료 필요성을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약물치료명령 집행 면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254호, 2017. 12. 19.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집행 면제를 신청할 때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 하는 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보호관찰관은 약물치료명령 집행 시 약물치료명령 면제에 관한 결정문 등본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약물치료명령 면제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나. 추진경과

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19호로 공포
2018. 1. 1. 시행

## 다. 주요내용

○ 약물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신청하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

○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약물치료명령 집행 면제 결정, 보호관찰소의 장의 약물치료명령 집행 면제 관련 조사에 관한 사무를 각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14.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가. 추진배경

○ 기존의 휴대용 추적장치와 부착장치의 기능을 통합한 새로운 형태의 부착장치가 개발됨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집행할 때 부착장치에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휴대용 추적장치를 따로 교부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 나. 추진경과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51호로 공포·시행

## 다. 주요내용

○ 기존 분리형 전자장치와 병행 사용에 따른 혼선 방지를 위해 기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되, 일체형 전자장치를 포함시키도록 각 장치의 '정의 규정'을 정비

○ 필요에 따라 기존 전자장치와 일체형 장치 중 하나를 택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 방법 개정

# 15.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가. 추진배경

○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하여 얻은 수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여 추적·검거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161호, 2017. 12. 12. 공포, 2018. 6. 13. 시행)됨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수신자료를 제공한 경우 수신자료 사용 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대장을 비치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나. 추진경과

2018. 6. 12. 대통령령 제28950호로 공포
2018. 6. 13. 시행

## 다. 주요내용

○ 수신자료 사용 대장 작성 사유를 추가
○ 전자감독이 개시된 대상자가 서면 신고 시 게재하는 정보의 내용을 구체화

# 16.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가. 추진배경

○ 보호관찰법 상 갱생보호사업의 효율적 추전을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갱생보호회에 대한 동일 및 유사명칭 사용을 금주하고 있고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2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과태료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 구체적 부과기준이 없어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나. 추진경과

2018. 7. 3. 대통령령 제29017호로 공포
2018. 7. 3. 시행

## 다.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징수의 절차는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규정할 실익이 없고, 각 위반행위 및 위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회의 동일명칭 사용금지 위반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1회(100만원), 2회(150만원), 3회(200만원)
○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여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 여부 등을 고려,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의 경우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가중

## 17. 수형자 등 호송 규정

### 가. 추진배경

○ 검찰이 지명 수배하여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 등에 대해서는 검찰청 직원이 호송·인치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호송공무원의 종류에 검찰청 직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 나. 추진경과

2018. 2. 20. 대통령령 제28660호로 공포·시행

### 다. 주요내용

○ 종래의 교도관, 경찰관 외에 호송공무원으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청 직원을 추가함

## 18.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 가. 추진배경

○ 현행 규정은 5급 교정직 공무원으로의 승진 방법으로 시험에 의한 승진만을 실시하고 있는데, 조직의 활력 제고를 위하여 심사에 의한 승진도 병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

○ 6급 교정직 공무원이 교정사고 방지나 교정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경우에도 승진할 수 있도록 특별승진 대상 직급을 7급 이하에서 6급 이하로 확대 하려는 것임

### 나. 추진경과

2018. 10. 2. 대통령령 제29205호로 공포
2018. 10. 3. 시행

### 다. 주요내용

○ 6급 교정직공무원에서 5급 교정직공무원으로의 승진 방법에 시험에 의한 승진과 심사에 의한 승진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함
○ 6급 교정직공무원이 교정사고를 예방하거나 교정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5급으로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1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가. 추진배경

○ 판사 또는 검사가 교정시설을 시찰하는 경우 시찰 기록을 남기기 위하여 시찰자가 서명·날인하고 교도소장이 그 시찰 시간 등을 기록하는 시찰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현재 교정시설에서는 정보관리시스템으로 출입기록 등을 관리하고 있어 시찰부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므로, 시찰부 작성 관련 규정을 정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나. 추진경과

2018. 12. 24. 대통령령 제29398호로 공포·시행

### 다. 주요내용

○ 판사 또는 검사가 교정시설을 시찰하는 경우 작성하던 시찰부를 폐지함

## 20.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가. 추진배경

○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기업투자 자격 요건 정비 및 외국국적동포의 방문·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연령요건 완화 필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나. 추진경과

2018. 6. 12. 대통령령 제28952호로 공포·시행

### 다. 주요내용

○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에게는 학력과 관계없이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외국국적동포의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중 연령기준을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완화

## 2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가. 추진배경

○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이전신고를 한 경우 종전의 거소를 관할하는 기관이 국내거소신고 서류를 정리하던 것을 새로운 거소를 관할하는 기관이 관련 서류를 정리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 사유에 위조방지 등을 위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을 한꺼번에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추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나. 추진경과

2018. 6. 12. 대통령령 제28953호로 공포·시행

### 다. 주요내용

○ 국내거소신고표 또는 국내거소신고 원부와 관련 서류를 이송받은 신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사무소장 및 출장소장 포함)은 국내거소신고 원부를, 시·군·구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은 국내거소신고표와 국내거소신고인명부를 각각 정리하도록 함

○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요건에 맞추어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사무소장 및 출장소장 포함)은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국내거소신고증의 위조방지 등을 위하여 한꺼번에 국내거소신고증을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할 수 있도록 함.

## 2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가. 추진배경

○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492호, 2018. 3. 20. 공포, 9.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단체전자사증의 발급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나. 추진경과

2018. 9. 21. 대통령령 제29163호로 공포·시행

### 다. 주요내용

○ 「출입국관리법」에서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일반체류자격과 영주자격으로 구분하고, 일반체류자격을 장기체류자격과 단기체류자격으로 구분함에 따라 각 체류자격의 세부적인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분

○ 외국인 단체여행객의 입국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수 이상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여행객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단체 전자사증 발급의 근거를 신설함.

## 23. 국적법 시행령

### 가. 추진배경

○ 귀화자 및 국적회복자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 후 귀화증서 또는 국적회복증서를 수여받았을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적법」이 개정(법률 제15249호, 2017. 12. 19. 공포, 2018. 12. 20. 시행)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 또는 국적회복증서를 수여하는 절차, 국민선서의 내용과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 또는 국적회복증서를 수여하는 업무와 국민선서의 면제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나. 추진경과

2018. 12. 20. 대통령령 제29372호로 공포·시행

## 다. 주요내용

○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절차 등(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신설)

-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기 위한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여 그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할 것을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를 받은 사람이 질병이나 사고 등의 사유로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불참 사유와 참석 가능 일정을 적은 서면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새로 일시와 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선서의 내용을 정함.
-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는 사람은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민선서 당시 15세 미만인 사람, 뇌병변장애인·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함.

○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국적회복증서 수여 절차 등(제9조의2 신설)

-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을 위하여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받는 절차, 국민선서의 내용과 국민선서가 면제될 수 있는 사람, 국민선서를 받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하는 업무와 국민선서의 면제 업무 대행에 관하여는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제4절 총리령 및 법무부령

## Ⅰ. 규칙[개정]

### 1.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 가. 추진배경

○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한 사람이 확정일자부여기관에 내야 하는 수수료를 면제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 나. 추진경과

2018. 10. 26. 법무부령 제939호로 공포·시행

#### 다. 주요내용

○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 면제

-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한 사람의 경우 확정일자부여기관에 내야 하는 수수료를 면제함

# 2. 재산형등에관한검찰집행사무규칙

## 가. 추진배경

○ ’18. 1. 8. ‘벌과금등’을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이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필요
○ 관련 서식에 벌과금등 신용카드 납부에 관한 안내 문구를 삽입하고,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등으로 개정

## 나. 추진경과

2018. 1. 2. 법무부령 제915호로 시행·공포

## 다. 주요내용

○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6항이 시행(’16. 1. 6. 신설, ’18. 1. 7. 시행)됨에 따라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등으로 벌과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및 절차 마련
○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남용을 방지하고자, 벌과금납부명령서 등 5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벌과금납부명령서 및 독촉서 등 3개 서식에 ‘신용카드 납부 안내’ 및 ‘분납(납부연기) 안내’ 문구를 추가 기재

# 3. 검찰사건사무규칙

## 가. 추진배경

○ 피의자의 방어권 강화를 위해 신문 중 기록 허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필요
○ 피의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구속통지서 서식 등 4종의 별지 서식에 대한 개선·보완 필요

## 나. 추진경과

2018. 10. 4. 법무부령 제937호로 시행·공포

## 다. 주요내용

○ 피의자의 방어권 강화, 충실한 진술 등을 위해 신문 중 피의자의 기억 환기를 위한 간략한 수기(手記) 기록(메모)을 허용
○ 별지 서식(4종) 개선·보완 및 삭제
- '체포·구속통지서' 서식 개선
- '피의자접견 등 금지결정' 서식 개선
- '재기수사명령사건 불기소처분·이송 승인 요청' 서식 개선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2조 개정으로 인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별지 제152호 서식 삭제

# 4. 검사복무평정규칙

## 가. 추진배경

○ 상당 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정상 불이익을 제도상 방지할 필요
○ 평정회의 개최 의무화를 통한 실질 평정 강화, 다면평가 관련 근거 규정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나. 추진경과

2018. 11. 30. 법무부령 제940호로 시행·공포

## 다. 주요내용

○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복무평정상 특례 확대
○ 차장검사 산하 평정회의 개최 의무화 등 실질평정 강화
○ 다면평가제 근거 규정 신설 및 확대
○ 검사복무평정 요지 고지제도 도입

# 5.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 가. 추진배경

○ 고용노동부는 '02년부터 특별사법경찰사무 관련 장부·서류를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집무규칙에는 전자적 관리의 근거규정이 없고, 검사장 간인을 받아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전자적으로 작성된 범죄사건부를 별도로 인쇄하여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중복작성의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서에서 관리하는 범죄사건부를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차별적·권위적 일부 용어를 쉬운 법령용어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나. 추진경과

2018. 1. 30. 법무부령 제917호로 공포·시행

### 다. 주요내용

- ○ 특별사법경찰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범죄사건부를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제71조의2 신설)
- ○ “수진”을 “진료”로 정비(제33조제1항 등)

## 6.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가. 추진배경

- ○ 2017. 12. 1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처우 기준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하위법령 마련

### 나. 추진경과

2018. 6. 12. 법무부령 제931호로 공포
2018. 6. 13. 시행

### 다. 주요내용

○ 개정 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한 피치료감호자등 보호원부, 경고장 및 준수사항의 추가·변경·삭제 서식 신설

○ 보호관찰대상자의 구인 및 유치 관련 개정 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한 구인장신청서, 유치허가신청서 등 구인 및 유치 관련 서식 신설

## 7.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가.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선고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음을 고려하여 법원과 치료감호위원회가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집행시점의 약물치료 필요성을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약물치료명령 집행 면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254호, 2017. 12. 19. 공포, 2018. 1. 1.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519호, 2017. 12. 29.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약물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 나. 추진경과

2017. 12. 29. 법무부령 제914호로 공포
2018. 1. 1. 시행

### 다. 주요내용

○ 약물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서(별지 제4호의2) 서식 신설

# 8.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가.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 받은 사람이 미결구금 중 판결 확정 전에 석방된 후 부착명령 판결 확정 시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이미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피부착명령자를 소환하거나 구인할 수 있도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부착명령 집행장 서식에 법률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나. 추진경과

2018. 2. 2. 법무부령 제918호로 공포·시행

## 다. 주요내용

○ 부착명령 집행장 신청 근거 조항 추가
○ 부착명령 집행장 신청 서식 정비

#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가. 추진배경

○ 보호장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개인포승은 실제 거의 사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보호장비에서 제외함
○ 일반포승의 사용방법과 재질을 개선한 벨트형 포승을 새롭게 보호장비로 도입함
○ 머리보호장비의 재질을 변경하고 환기구멍의 크기를 변경하여 환기성을 높임으로써 수용자 인권보호에 기여

## 나. 추진경과

2018. 5. 2. 법무부령 제923호로 공포·시행

## 다. 주요내용

○ 보호장비의 종류에서 개인포승을 삭제하고 벨트형 포승을 도입함
○ 머리보호장비의 재질을 폴리우레탄으로 변경하고 환기구멍의 크기를 3센티미터로 변경하여 머리보호장비의 환기성을 높임

# 10.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 가. 추진배경

○ 다양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교정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활동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정공무원이 착용하는 근무복의 기능성과 디자인을 개선하고, 기능성 근무복 및 근무화 등의 종류를 추가함

○ 교정시설 수용자의 교정교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정제복 외의 업무용 복장과 사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나. 추진경과

2018. 7. 13. 법무부령 제935호로 공포·시행

## 다. 주요내용

○ 종전에는 교정직렬 공무원만을 제복 착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교정시설에서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공무원을 제복 착용대상으로 확대함

○ 기후, 근무장소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능성 근무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임

○ 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교정제복 외의 업무용 복장이나 사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함

# 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가. 추진배경

○ 현행 징벌제도는 교정시설 내 규율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주로 조사하여 징벌을 부과하고 있어 규율위반자의 심리상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규율위반자에 대한 심리상담을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징벌부과 시 반영하도록 함

○ 징벌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심리상담을 하도록 하여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징벌대상행위의 재발방지에 기여하게 하려는 것임

## 나. 추진경과

2018. 12. 28. 법무부령 제943호로 공포
2019. 6. 29. 시행

## 다. 주요내용

○ 규율위반자에 대하여 교도관이 심리상담을 실시하도록 함

○ 징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리상담을 한 교도관에게 심리상담 결과를 제출하게 하거나 징벌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결과를 진술할 수 있도록 함

○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에 대해 교도관이 심리상담을 실시하도록 함

# 12. 출입국·외국인청 등 설치에 따른 국적법·난민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

## 가. 추진배경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편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 중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등 6개의 출입국관리사무소(인천공항·서울·부산·인천·수원 및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가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등 13개의 출입국관리사무소(서울남부·김해공항·대구·대전·여수·양주·울산·김포공항·광주·창원·전주·춘천 및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가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국적법」·「난민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외국인보호규칙」 등 5건의 법무부령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 나. 추진경과

2018. 5. 15. 법무부령 제927호로 공포·시행

## 다. 주요내용

○ 인천공항·서울·부산·인천·수원 및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 6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서울남부·김해공항·대구·대전·여수·양주·울산·김포공항·광주·창원·전주·춘천 및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 13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명칭 변경

# 1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가. 추진배경

○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하여 성폭력 범죄경력이 있는 고용주가 초청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증발급을 제한하는 한편, 출입국 관련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온라인 민원신청 시 수수료 감경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나. 추진경과

2018. 6. 12. 법무부령 제930호로 공포·시행

## 다. 주요내용

○ 성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자의 강제해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고용주가 초청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제한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근무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의 10분의 2를 감경

# 1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가. 추진배경

○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492호, 2018. 3. 20. 공포, 9.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무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강제퇴거대상자 등을 발견하더라도 그 사실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통보의무의 면제 범위를 이 규칙에서 명확하게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나. 추진경과

2018. 9. 21. 법무부령 제936호로 공포·시행

## 다. 주요내용

○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일정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이거나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던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후 7년이 경과된 사람 등으로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 또는 가계 자산이 중위수준 이상의 소득 또는 자산 등을 갖추고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춘 사람으로 정함.

○ 공무원이 「형법」상 중대범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수사 또는 인권침해 조사·구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강제퇴거대상자 등을 발견하였더라도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통보의무 면제의 범위를 정하여 외국인의 기본적인 권리 보호를 명확히 함.

# 15. 국적법 시행규칙

## 가. 추진배경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외국인의 국적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적법」이 개정(법률 제15249호, 2017. 12. 19. 공포, 2018. 12.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귀화요건인 품행 단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한 경우 등으로 정하고, 그 밖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으려면 제출해야 하는 생계 유지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중 부동산에 관한 서류의 경우 종전에는 공시지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만을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산의 실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에 따라 평가한 기준 금액 이상의 부동산 소유 증명 서류도 인정하고, 대한민국과 혈연·지연적 유대가 미약한 외국인이 일반귀화허가를 받으려면 제출해야 하는 추천서의 경우 종전에는 국회의원 등 특정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추천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직장 동료·이웃사람·통장·이장 등 귀화신청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추천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나. 추진경과

2018. 12. 20. 법무부령 제942호로 공포·시행

## 다. 주요내용

○ 귀화신청자의 생계유지능력 평가기준 현실화(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

- 부동산 관련 서류의 경우 종전에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만을 인정하던 것을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에 따라 평가한 기준 금액 이상의 부동산 소유 증명 서류도 인정함

○ 일반귀화 추천인 범위 확대(시행규칙 제3조 제5항)

- 일반귀화 시 추천서의 경우 국회의원 등 특정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만 작성할 수 있었던 것을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함

○ 귀화 신청자가 갖추어야 할 품행단정 요건 구체화(시행규칙 제5조의2)

- 법률에서 위임한 귀화요건인 품행 단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한 경우 등으로 정함

# 法務年鑑

# 04



# 국회업무

제1절 국회업무

# 제1절 국회업무

## 가. 정기회 및 임시회

기획재정담당관실 주무관 지상균

2018년도에는 총 8회(356회 ~ 365회)에 걸쳐 정기회 및 임시회가 개최되었다.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국가와 국민 보호,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개혁입법 추진, 청소년·여성·아동 보호, 국민안전을 위한 선진국형 범죄예방 시스템 마련,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 강화, 법무부 탈검찰화 등 주요정책과 관련한 법안이 통과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법」, 「형법」, 「변호사법」, 「출입국관리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공탁법」, 「통신비밀보호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국적법」, 「상업등기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안들이 통과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 외에 법사위 국정감사와 업무보고, 현안보고를 통해 우리 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과 현안 과제의 추진상황을 알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 표 4-1 |** 회차별 국회활동 개관

| 구분 | 회기 | 국회 활동 개관 |
|---|---|---|
| 제356회 | '18. 1. 30. ~ 28.<br>(30일간) | 【본회의】<br>• 총 9차례 개의<br>• 교섭단체 대표연설(더불어민주당, '18. 1. 31.)<br>• 교섭단체 대표연설(자유한국당, '18. 2. 1.)<br>• 교섭단체 대표연설(국민의당, '18. 2. 2.)<br>•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18. 2. 5.)<br>• 교육문화사회분야 대정부질문('18. 2. 7.)<br>• 통과법안('18. 2. 28.)<br>–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원)<br>–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br>–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br>–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br>–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 구분 | 회기 | 국회 활동 개관 |
|---|---|---|
| | | 【법제사법위원회】<br>• 총 10차례 개회(전체회의 7, 제1소위 2, 제2소위 1)<br>• 업무현황 보고('18. 2. 21.)<br>– 주요현안 보고<br>·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운영 현황<br>· 검찰개혁위원회 운영 현황<br>·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br>· 경제정의·민생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br>·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br>· 소년원생 의료처우 개선 추진<br>· 바이오정보(얼굴사진·지문) 분석 위험인물 입국 차단<br>【사법개혁특별위원회】<br>• 총 1차례 개회(전체회의 1) |
| 제357회 | '18. 3. 5.<br>(1일간) | 【본회의】<br>• 총 1차례 개의<br>【법제사법위원회】<br>• 총 1차례 개회(전체회의 1)<br>【사법개혁특별위원회】<br>• 총 1차례 개회(전체회의 1) |
| 제358회 | '18. 3. 12. ~ 30.<br>(19일간) | 【본회의】<br>• 총 1차례 개의<br>【법제사법위원회】<br>• 총 1차례 개회(전체회의 1)<br>【사법개혁특별위원회】<br>• 총 3차례 개회(전체회의 3) |
| 제360회 | '18. 5. 2. ~ 31.<br>(30일간) | 【본회의】<br>• 총 5차례 개의<br>•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18. 5. 15.)<br>• 통과법안('18. 5. 21.)<br>–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br>• 국회의원(홍문종, 염동열) 체포동의안('18. 5. 21.)<br>• 大韓民國憲法 개정안(대통령 제출)('18. 5. 24.)<br>【법제사법위원회】<br>• 총 3차례 개회(전체회의 2, 제1소위 1) |

| 구분 | 회기 | 국회 활동 개관 |
|---|---|---|
| 제362회 | '18. 7. 13. ~ 26.<br>(14일간) | 【본회의】<br>• 총 3차례 개의<br>• 하반기 국회의장단 선거('18. 7. 13.)<br>• 하반기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18. 7. 16.)<br>【법제사법위원회】<br>• 총 5차례 개회(전체회의 5)<br>• 업무현황 보고('18. 7. 19.)<br>– 주요현안 보고<br>· 「난민법」 개정 및 난민심사 인프라 구축<br>· 젠더 폭력 대응 현황<br>· 청소년 강력범죄 관련 대책<br>· 검·경 수사권 조정 추진 현황<b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추진 현황<br>· 법무부 탈검찰화 추진 현황<br>· 검찰 과거사위원회 운영 현황<br>· ISDS 사건 대응<br>· 국정농단 및 적폐청산 수사 경과<br>·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건 수사<br>·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 |
| 제363회 | '18. 8. 16. ~ 31.<br>(16일간) | 【본회의】<br>• 총 1차례 개의<br>• 통과법안('18. 8. 30.)<br>–「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원)<br>–「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원)<br>–「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원)<br>–「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br>–「沒收金品等處理에關한臨時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의원)<br>–「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br>–「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br>–「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br>【법제사법위원회】<br>• 총 5차례 개회<br>(전체회의 2, 예결심사소위 1, 제1소위 1, 제2소위 1)<br>【예산결산특별위원회】<br>•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종합정책질의<br>('18. 8. 22. ~ 8. 23.)<br>•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비경제부처 부별심사('18. 8. 29. ~ 8. 30.) |

| 구분 | 회기 | 국회 활동 개관 |
|---|---|---|
| 제364회 | '18. 9. 3. ~ 12. 9.<br>(100일간) | 【본회의】<br>• 총 16차례 개의<br>• 정기회 개회식('18. 9. 3.)<br>• 교섭단체 대표연설(더불어민주당, '18. 9. 4.)<br>• 교섭단체 대표연설(자유한국당, '18. 9. 5.)<br>• 교섭단체 대표연설(바른정당, '18. 9. 6.)<br>• 정치분야 대정부질문('18. 9. 13.)<br>• 통과법안('18. 9. 20.)<br>–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br>–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b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br>•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18. 10. 4.)<br>•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18. 11. 1.)<br>• 통과법안('18. 11. 29.)<br>–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br>–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br>–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원)<br>–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br>–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원)<br>–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br>–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br>– 「沒收金品等處理에關한臨時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의원)<br>–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br>–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br>–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br>–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br>•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18. 12. 9.)<br>•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결('18. 12. 9.)<br><br>【법제사법위원회】<br>• 총 18차례 개회<br>(전체회의 10, 예결심사소위 2, 제1소위 4, 제2소위 2)<br>• 국정감사('18. 10. 10. ~ 10. 29.)<br>– 법무부('18. 10. 12.), 대검찰청('18. 10. 25.),<br>종합감사('18. 10. 29.) 실시<br>•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18. 11. 5. , '18. 11. 12.)<br><br>【사법개혁특별위원회】<br>• 총 14차례 개회<br>(전체회의 8, 검경소위 2, 법원법조소위 2)<br>• 업무현황 보고('18. 11. 8.) |

| 구분 | 회기 | 국회 활동 개관 |
|---|---|---|
| | | – 주요현안 보고<b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br>· 검·경 수사권 조정<br>· 법무부 탈검찰화 추진 현황<br>· 검찰 인사·복무제도 개선<br>·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 추진 경과<br>·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후속 조치 현황<br>· 국정농단 수사 등 적폐청산 진행 현황<br><br>【예산결산특별위원회】<br>•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정책질의('18. 11. 5., 11. 6.)<br>•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비경제부처 부별심사 ('18. 11. 9., 11. 12.) |
| 제365회 | '18. 12. 17. ~ '19. 1. 15. (30일간) | 【본회의】<br>• 총 1차례 개의<br><br>【법제사법위원회】<br>• 총 4차례 개회(전체회의 2, 제2소위 2)<br><br>【사법개혁특별위원회】<br>• 총 3차례 개회(검경소위 2, 법원법조소위 1) |

## 나. 당정협의 및 간담회

당정 협의·간담회에서는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방지 종합 대책,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디지털성범죄 근절 대책 추진 현황 및 입법 계획, 공정경제 법안 관련 회의,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논의 등 현안에 대하여 당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대처방안 마련 등을 논의하였다.

**| 표 4-2 |** 당정협의 및 간담회

| 구 분 | 일시 | 논의 안건 | 참석자 |
|---|---|---|---|
| 당정 협의 | '18. 2. 20. | •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방지 종합 대책 | • **〈당 측〉**<br>– 남인순, 정춘숙, 금태섭, 박경미, 이재정, 고용진, 표창원 의원 등<br>• **〈정부 측〉**<br>– 법무부 차관, 여성가족부 차관, 경찰청 차장 등 |
| 당정 협의 | '18. 8. 22. |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 • **〈당 측〉**<br>–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수석부의장,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홍의락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등<br>• **〈정부 측〉**<br>–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법무부 차관, 기획재정부 1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등 |
| 당정 협의 | '18. 8. 31. | • 정기국회 대비 여당 워트숍 참석 | • **〈당 측〉**<br>–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등<br>• **〈정부 측〉**<br>– 법무부 장관, 기획조정실장, 정책보좌관 |
| 당정 협의 | '18. 9. 1. | • 당·정·청 전원회의 | • **〈당 측〉**<br>– 당 대표, 최고위원,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 110여명<br>• **〈정부 측〉**<br>– 국무총리, 장관 전원, 장관급, 대통령 직속 위원회 위원장 등<br>• **〈청 측〉**<br>–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 및 수석·보좌관 전원, 관련 비서관 등 |
| 당정 협의 | '18. 9. 4. | •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 및 주요현안 논의 | • **〈당 측〉**<br>– 송기헌 간사, 김종민, 백혜련, 이춘석, 조응천, 표창원 의원<br>• **〈정부 측〉**<br>–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인권국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 당정 협의 | '18. 9. 20. | •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논의 | • **〈당 측〉**<br>– 송기헌 간사, 금태섭, 김종민, 박주민, 백혜련, 이춘석, 조응천, 표창원 의원<br>• **〈정부 측〉**<br>–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기획조정실장, 검찰국장<br>• **〈청 측〉**<br>– 민정수석, 민정비서관, 법무비서관 |

| 구 분 | 일시 | 논의 안건 | 참석자 |
|---|---|---|---|
| 당정 협의 | ’18. 10. 4. | • 사법개혁 관련 국정과제 현황 점검 및 추진 계획 논의 | • **〈당 측〉**<br>– 박영선 사개특위원장, 백혜련, 금태섭, 박주민, 윤일규, 송기헌, 표창원 의원 등<br>• **〈정부 측〉**<br>–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기획조정실장, 검찰국장 등<br>• **〈청 측〉**<br>– 민정수석, 민정비서관, 법무비서관 등 |
| 당정 협의 | ’18. 11. 1. | • 공정경제 법안 관련 회의 | • **〈당 측〉**<br>– 홍영표 원내대표, 송기헌·금태섭·김종민·박주민·백혜련·이춘석·조응천·표창원 의원 등<br>• **〈정부 측〉**<br>– 법무부 장관·기획조정실장·법무실장 등<br>• **〈청 측〉**<br>– 민정수석, 민정비서관, 법무비서관 등 |
| 당정 협의 | ’18. 11. 16. | • 디지털성범죄 근절 대책 추진 현황 및 입법 계획 | • **〈당 측〉**<br>– 홍영표 원내대표, 전혜숙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춘숙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송기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성수 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등<br>• **〈정부 측〉**<br>– 법무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
| 당정 협의 | ’18. 12. 19. | •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 제3차 정책토론회 | • **〈당 측〉**<br>– 강창일 위원장, 홍익표 부위원장, 이종걸, 인재근, 소병훈, 박재호, 송갑석, 이재정 의원 등<br>• **〈정부 측〉**<br>– 법무부 차관, 국무조정실 1차장, 행안부 차관, 외교부 차관, 여가부 차관 등 |
| 당정 협의 | ’18. 12. 21. | •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개특위 현안 논의 | • **〈당 측〉**<br>– 홍영표 원내대표, 박영선 사개특위위원장, 백혜련, 박범계, 박주민, 송기헌, 안호영, 이종걸, 표창원 의원 등<br>• **〈정부 측〉**<br>–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기획조정실장, 검찰국장 등<br>• **〈청 측〉**<br>– 민정수석, 민정비서관, 법무비서관 등 |

# 法務年鑑

# 05



# 통 계

제1절 법무업무 통계
제2절 검찰업무 통계
제3절 범죄예방업무 통계
제4절 인권업무 통계
제5절 교정업무 통계
제6절 출입국·외국인정책업무 통계

# 제1절 법무업무 통계

## 1. 법무업무

| 표 5-1 | 법령자문

(단위 : 건)

| 부처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계 | 3,530 | 3,365 | 4,072 | 3,740 | 5,096 | 4,458 | 4,811 | 5,089 | 6,039 | 6,541 |
| 기획재정부 | 107 | 109 | 136 | 122 | 149 | 153 | 171 | 169 | 174 | 314 |
| 교육부 | - | - | - | - | 185 | 222 | 217 | 287 | 303 | 234 |
| 미래창조과학부 | - | - | - | - | 107 | 149 | 192 | 78 | 92 | - |
| 교육과학기술부 | 197 | 216 | 280 | 289 | 41 | - | - | - | 99 | - |
| 과학기술부 | - | - | - | - | - | - | - | - |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 - | - | - | - | - | - | - |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 | - | - | - | - | - | - | - | 348 |
| 외교부 | 16 | 28 | 27 | 38 | 27 | 26 | 23 | 32 | 33 | 18 |
| 통일부 | - | 35 | 11 | 10 | 153 | 16 | 28 | 44 | 41 | 57 |
| 법무부 | 501 | 452 | 398 | 330 | 480 | 263 | 438 | 272 | 570 | 710 |
| 국방부 | 95 | 93 | 104 | 99 | 121 | 118 | 138 | 101 | 142 | 118 |
| 행정자치부 | - | - | - | - | - | 19 | 313 | 418 | 247 | - |
| 안전행정부 | 247 | 291 | 444 | 410 | 625 | 412 | - | - | 187 | - |
| 행정안전부 | - | - | - | - | - | - | - | - | 187 | 509 |
| 문화체육관광부 | 123 | 78 | 133 | 152 | 192 | 224 | 225 | 210 | 240 | 249 |
| 농림축산식품부 | 201 | 187 | 338 | 280 | 281 | 238 | 287 | 310 | 279 | 309 |
| 산업통상자원부 | 110 | 99 | 300 | 111 | 316 | 252 | 324 | 370 | 248 | 314 |
| 보건복지부 | 527 | 424 | 422 | 356 | 432 | 346 | 430 | 469 | 609 | 530 |
| 환경부 | 201 | 136 | 149 | 174 | 210 | 164 | 196 | 220 | 250 | 310 |
| 고용노동부 | 145 | 127 | 141 | 114 | 194 | 145 | 172 | 200 | 261 | 229 |
| 여성가족부 | - | 72 | 96 | 84 | 118 | 125 | 121 | 77 | 108 | 122 |
| 국토교통부 | 533 | 392 | 472 | 418 | 553 | 571 | 578 | 559 | 687 | 706 |
| 해양수산부 | - | - | - | - | 120 | 194 | 196 | 179 | 176 | 203 |
| 중소벤처기업부 | - | - | - | - | - | - | - | - | - | 156 |
| 국민안전처 | - | - | - | - | - | 2 | 150 | 139 | 103 | - |
| 방송통신위원회 | 75 | 71 | 66 | 62 | 38 | 35 | 47 | 70 | 67 | 91 |
| 국무조정실 | 13 | 22 | 9 | 18 | 25 | 21 | 10 | 25 | 31 | 28 |
| 공정거래위원회 | 63 | 56 | 62 | 46 | 51 | 33 | 34 | 74 | 132 | 88 |
| 금융위원회 | 96 | 66 | 123 | 99 | 192 | 169 | 94 | 198 | 186 | 231 |
| 국민권익위원회 | 16 | 12 | 12 | 9 | 14 | 10 | 9 | 11 | 25 | 26 |
| 인사혁신처 | - | - | - | - | - | 1 | 50 | 57 | 65 | 91 |

| 부처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법제처 | 5 | 10 | 8 | 14 | 15 | 10 | 5 | 8 | 11 | 12 |
| 국가보훈처 | 45 | 69 | 49 | 46 | 64 | 55 | 60 | 66 | 86 | 81 |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 | – | – | 91 | 103 | 103 | 106 | 131 | 119 |
| 기타 | 214 | 320 | 292 | 459 | 302 | 382 | 200 | 340 | 456 | 338 |

## | 표 5-2 | 법령해석

(단위 : 건)

| 부처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계 | 2 | 3 | 11 | 14 | 10 | 168 | 185 | 188 | 171 | 178 |
| 기획재정부 | – | – | 1 | – | 1 | 2 | – | 2 | – | 1 |
| 교육부 | – | – | 1 | – | – | 7 | 6 | 1 | 2 | |
| 미래창조과학부 | – | – | – | – | – | 1 | 1 | – |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 | – | – | – | – | – | – | – | 2 |
| 외교부 | – | – | – | – | – | – | – | 2 | 4 | 1 |
| 통일부 | – | – | – | – | – | 1 | – | – | – | – |
| 법무부 | – | – | – | – | 1 | – | 8 | 17 | 12 | 10 |
| 국방부 | – | – | – | – | – | – | 1 | 2 | 1 | 3 |
| 행정자치부 | – | – | – | – | – | – | 6 | 6 | 2 | – |
| 안전행정부 | – | – | – | – | – | 5 | – | – | – | – |
| 행정안전부 | – | – | – | – | – | – | – | – | – | 9 |
| 문화체육관광부 | – | – | – | – | 2 | 1 | – | – | – | 1 |
| 농림축산식품부 | – | – | – | – | – | 2 | – | – | 1 | – |
| 산업통상자원부 | – | 1 | – | 2 | 2 | 2 | – | 1 | 1 | – |
| 보건복지부 | – | – | – | – | 1 | 1 | 5 | 2 | 2 | 2 |
| 환경부 | – | – | 2 | – | – | 3 | – | – | 1 | – |
| 고용노동부 | – | – | 1 | 1 | – | 3 | – | – | 1 | 2 |
| 여성가족부 | – | – | – | – | – | 4 | 3 | 1 | – | – |
| 국토교통부 | – | – | 1 | 1 | – | 4 | 5 | 7 | 4 | 5 |
| 해양수산부 | – | – | – | – | – | – | – | – | 1 | 4 |
| 국민안전처 | – | – | – | – | – | – | 1 | 1 | 4 | – |
| 방송통신위원회 | – | – | – | – | – | – | – | – | – | 1 |
| 국무조정실 | – | – | – | – | – | – | – | – | – | – |
| 공정거래위원회 | – | – | 1 | – | – | – | – | – | – | 1 |
| 금융위원회 | – | – | – | – | – | 1 | 1 | 1 | 1 | 3 |
| 국민권익위원회 | – | – | – | – | – | – | – | 3 | – | – |
| 인사혁신처 | – | – | – | – | – | – | – | – | 1 | – |
| 국가보훈처 | – | – | – | – | – | – | – | 4 | – | – |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 | – | – | – | 2 | – | – | – | 3 |
| 기타 | 2 | 2 | 4 | 10 | 3 | 129 | 148 | 138 | 133 | 130 |

### | 표 5-3 | 법령 제정·개정(정부발의안 기준)

(단위 : 건)

| 분류 \ 연도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계 | | 73 | 75 | 68 | 61 | 59 | 74 | 55 | 67 | 66 | 55 |
| 제 정 | 소 계 | 15 | 17 | 8 | 7 | 4 | 7 | 3 | 5 | 2 | 1 |
| | 법 률 | 6 | 5 | – | 2 | 1 | 1 | – | 3 | – | – |
| | 대통령령 | 6 | 4 | 3 | 3 | 1 | 4 | 2 | 1 | 2 | 1 |
| | 총리·부령 | 3 | 8 | 5 | 2 | 2 | 2 | 1 | 1 | – | – |
| 개 정 | 소 계 | 56 | 56 | 58 | 51 | 54 | 67 | 52 | 62 | 64 | 52 |
| | 법 률 | 15 | 8 | 11 | 10 | 13 | 22 | 7 | 18 | 15 | 5 |
| | 대통령령 | 19 | 15 | 21 | 24 | 14 | 23 | 19 | 20 | 20 | 18 |
| | 총리·부령 | 22 | 33 | 26 | 17 | 27 | 22 | 26 | 24 | 29 | 29 |
| 폐 지 | 법 령 | 2 | 2 | 2 | 3 | 1 | – | – | – | – | 2 |

### | 표 5-4 | 법무자료 발간

(단위 : 건)

| 연 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발간횟수 | 4 | 9 | 4 | 10 | 8 | 22 | 18 | 17 | 18 | 11 |

## 2. 국제법무활동

### | 표 5-5 | 통상관계 법률자문 및 조약 등 국제협약의 법률문제 검토

(단위 : 건)

| 연 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횟 수 | 79 | 75 | 43 | 38 | 40 | 56 | 28 | 14 | 9 | 14 |

### | 표 5-6 | 법률관련 인사 국제 교류

(단위 : 건)

| 연 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횟 수 | 3 | 2 | 7 | 11 | 5 | 7 | 7 | 12 | 7 | 9 |

### | 표 5-7 | 법무에 관한 국제회의 참가

(단위 : 건, 명)

| 연 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횟 수 | 32 | 28 | 30 | 26 | 39 | 48 | 27 | 29 | 11 | 18 |
| 인 원 | 46 | 35 | 44 | 34 | 73 | 82 | 55 | 42 | 20 | 38 |

# 3. 변호사·공증



## | 표 5-8 | 변호사 인원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등록인원 | 11,016 | 11,802 | 12,607 | 14,534 | 16,547 | 18,708 | 20,531 | 22,318 | 24,015 | 25,838 |
| 개 업 | 9,612 | 10,263 | 10,976 | 12,532 | 14,242 | 15,954 | 17,424 | 18,849 | 20,182 | 21,573 |
| 비 개 업 | 1,404 | 1,539 | 1,631 | 2,002 | 2,305 | 2,754 | 3,107 | 3,469 | 3,833 | 4,265 |

## | 표 5-9 | 공증인 인원

(단위 : 명, 개)

| 구분 \ 연도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임명공증인 | | 33 | 38 | 42 | 48 | 59 | 66 | 73 | 77 | 75 | 78 |
| 법무법인 | 사무소 | 309 | 307 | 291 | 280 | 268 | 261 | 245 | 241 | 239 | 238 |
| | 구성원 | 2,209 | 1,420 | 1,322 | 1,211 | 1,183 | 1,170 | 1,029 | 1,000 | 981 | 946 |
| 합동법률사무소 | 사무소 | 62 | 52 | 46 | 36 | 31 | 29 | 27 | 25 | 23 | 20 |
| | 구성원 | 260 | 215 | 188 | 127 | 121 | 115 | 109 | 93 | 86 | 85 |
| 대 행 청 | | 13 | 14 | 14 | 13 | 12 | 12 | 12 | 12 | 13 | 13 |

## | 표 5-10 | 공증사무 처리 건수

(단위 : 건, 원)

| 구분 \ 연도 | 사건처리건수 | 가 액 |
|---|---|---|
| 2009 | 3,698,260 | 51,431,095,953,031 |
| 2010 | 3,872,079 | 54,138,827,021,658 |
| 2011 | 4,802,467 | 45,122,981,413,573 |
| 2012 | 4,027,514 | 47,911,345,357,891 |
| 2013 | 4,030,468 | 51,669,105,779,697 |
| 2014 | 3,825,991 | 38,138,696,634,463 |
| 2015 | 3,758,294 | 40,822,996,285,880 |
| 2016 | 3,745,816 | 384,323,860,343,243 |
| 2017 | 3,374,216 | 539,264,973,132,869 |
| 2018 | 3,037,952 | 40,961,942,337,822 |

# 4. 국가소송

## | 표 5-11 | 전체 국가소송 사건

(단위 : 건)

| 구분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접수 | 계 | 10,624 | 9,929 | 10,086 | 10,887 | 11,891 | 13,412 | 14,874 | 10,390 | 9,982 | 10,116 |
| | 구 수 | 6,035 | 5,548 | 5,786 | 6,018 | 7,171 | 8,025 | 9,350 | 5,841 | 5,192 | 5,227 |
| | 신 수 | 4,589 | 4,381 | 4,300 | 4,869 | 4,720 | 5,387 | 5,524 | 4,549 | 4,790 | 4,889 |
| 처리 | 계 | 4,994 | 4,138 | 3,637 | 3,120 | 3,373 | 3,560 | 4,485 | 5,293 | 4,530 | 4,526 |
| | 승 소 | 1,813 | 1,534 | 1,440 | 1,360 | 1,477 | 1,623 | 1,882 | 1,822 | 1,746 | 1,806 |
| | 패 소 | 910 | 634 | 565 | 514 | 522 | 586 | 606 | 568 | 546 | 485 |
| | 기 타 | 2,271 | 1,970 | 1,632 | 1,246 | 1,374 | 1,351 | 1,997 | 2.903 | 2,238 | 2,235 |
| 미 제 | | 5,630 | 5,791 | 6,449 | 7,767 | 8,518 | 9,852 | 10,389 | 5,097 | 5,452 | 5,590 |

## | 표 5-12 | 국가소송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 연 도 | 접 수 | 처 리 | | | | 미 제 |
|---|---|---|---|---|---|---|
| | | 계 | 승 소 | 패 소 | 기 타 | |
| 2009 | 10,624 (4,589) | 4,994 | 1,813 | 910 | 2,271 | 5,630 |
| 2010 | 9,929 (4,381) | 4,138 | 1,534 | 634 | 1,970 | 5,791 |
| 2011 | 10,086 (4,300) | 3,637 | 1,440 | 565 | 1,632 | 6,449 |
| 2012 | 10,887 (4,869) | 3,120 | 1,360 | 514 | 1,246 | 7,767 |
| 2013 | 11,891 (4,720) | 3,373 | 1,477 | 522 | 1,374 | 8,518 |
| 2014 | 13,412 (5,387) | 3,560 | 1,623 | 586 | 1,351 | 9,852 |
| 2015 | 14,874 (5,524) | 4,485 | 1,882 | 606 | 1,997 | 10,389 |
| 2016 | 10,390 (4,549) | 5,293 | 1,822 | 568 | 2,903 | 5,097 |
| 2017 | 9,982 (4,790) | 4,530 | 1,746 | 546 | 2,238 | 5,452 |
| 2018 | 10,116 (4,889) | 4,526 | 1,806 | 485 | 2,235 | 5,590 |

* 접수란 중 ( )는 신수

### | 표 5-13 | 유형별 국가소송 사건

(단위 : 건)

| 구분 \ 연도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총 계 | | 10,624 | 9,929 | 10,074 | 10,875 | 11,879 | 13,398 | 14,860 | 10,377 | 9,966 | 10,096 |
| 국가원고 | 계 | 1,391 | 1,335 | 1,413 | 1,469 | 1,663 | 2,936 | 4,213 | 2,328 | 2,212 | 2,181 |
| | 부동산 | 249 | 271 | 316 | 346 | 351 | 265 | 314 | 343 | 419 | 376 |
| | 손해배상 | 32 | 15 | 24 | 26 | 26 | 30 | 26 | 17 | 15 | 14 |
| | 기 타 | 1,110 | 1,049 | 1,073 | 1,097 | 1,286 | 2,641 | 3,873 | 1,968 | 1,778 | 1,791 |
| 국가피고 | 계 | 9,233 | 8,594 | 8,661 | 9,406 | 10,216 | 10,462 | 10,647 | 8,049 | 7,754 | 7,915 |
| | 부동산 | 4,391 | 3,644 | 3,179 | 2,986 | 2,942 | 2,951 | 2,942 | 2,649 | 2,638 | 2,617 |
| | 손해배상 | 2,136 | 2,127 | 2,342 | 2,980 | 3,668 | 3,786 | 3,536 | 2,017 | 1,793 | 1,749 |
| | 기 타 | 2,706 | 2,823 | 3,140 | 3,440 | 3,606 | 3,725 | 4,169 | 3,383 | 3,323 | 3,549 |

### | 표 5-14 | 민사신청 사건

(단위 : 건)

| 구분 \ 연도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접수 | 계 | 1,866 | 2,692 | 3,207 | 3,753 | 4,231 | 7,113 | 5,731 | 6,220 | 6,983 | 8,134 |
| | 구 수 | 414 | 1,048 | 1,552 | 2,206 | 2,111 | 4,328 | 3,373 | 3,584 | 4,288 | 5,047 |
| | 신 수 | 1,452 | 1,644 | 1,655 | 1,547 | 2,120 | 2,785 | 2,358 | 2,636 | 2,695 | 3,087 |
| 처리 | 계 | 820 | 1,105 | 998 | 1,398 | 1,543 | 3,718 | 1,785 | 2,020 | 1,977 | 2,596 |
| | 종 결 | 631 | 870 | 805 | 1,220 | 1,318 | 1,234 | 1,394 | 1,512 | 1,336 | 1,762 |
| | 본안이송 | 92 | 118 | 87 | 77 | 95 | 2,325 | 222 | 255 | 355 | 348 |
| | 취 하 | 69 | 96 | 62 | 66 | 87 | 86 | 116 | 137 | 149 | 159 |
| | 각 하 | 3 | 8 | 10 | 17 | 14 | 30 | 15 | 17 | 29 | 36 |
| | 기 타 | 25 | 13 | 34 | 18 | 29 | 43 | 38 | 99 | 108 | 291 |
| 미 제 | | 1,046 | 1,587 | 2,209 | 2,355 | 2,688 | 3,395 | 3,946 | 4,200 | 5,006 | 5,538 |

# 5. 행정소송

## | 표 5-15 | 전체 행정소송 사건

(단위 : 건)

| 구분 \ 연도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접수 | 계 | 32,088 | 33,424 | 34,847 | 36,854 | 36,444 | 38,182 | 38,882 | 36,799 | 36,969 | 37,130 |
| | 구 수 | 16,608 | 16,920 | 19,400 | 21,346 | 20,289 | 22,317 | 22,775 | 19,239 | 18,246 | 18,326 |
| | 신 수 | 15,480 | 16,504 | 15,447 | 15,508 | 16,155 | 15,865 | 16,107 | 17,560 | 18,723 | 18,804 |
| 처리 | 계 | 15,055 | 13,875 | 13,118 | 16,071 | 13,091 | 14,592 | 13,285 | 18,664 | 18,800 | 18,560 |
| | 승 소 | 7,640 | 6,692 | 6,635 | 7,867 | 6,371 | 7,132 | 6,290 | 9,392 | 10,250 | 10,064 |
| | 패 소 | 1,514 | 1,607 | 1,601 | 2,047 | 1,865 | 1,702 | 1,740 | 2,056 | 1,814 | 1,811 |
| | 취하등 | 5,901 | 5,576 | 4,882 | 6,157 | 4,855 | 5,758 | 5,255 | 7,216 | 6,736 | 6,685 |
| 미 제 | | 17,033 | 19,549 | 21,729 | 20,783 | 23,353 | 23,590 | 25,597 | 18,135 | 18,169 | 18,570 |

## | 표 5-16 | 행정소송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 연 도 | 접 수 | 처 리 | | | | 미 제 |
|---|---|---|---|---|---|---|
| | | 계 | 승 소 | 패 소 | 기 타 | |
| 2009 | 32,088 (15,480) | 15,055 | 7,640 | 1,514 | 5,901 | 17,033 |
| 2010 | 33,424 (16,504) | 13,875 | 6,692 | 1,607 | 5,576 | 19,549 |
| 2011 | 34,847 (15,447) | 13,118 | 6,635 | 1,601 | 4,882 | 21,729 |
| 2012 | 36,854 (15,508) | 16,071 | 7,867 | 2,047 | 6,157 | 20,783 |
| 2013 | 36,444(16,155) | 13,091 | 6,371 | 1,865 | 4,855 | 23,353 |
| 2014 | 38,182 (15,865) | 14,592 | 7,132 | 1,702 | 5,758 | 23,590 |
| 2015 | 38,882 (16,107) | 13,285 | 6,290 | 1,740 | 5,255 | 25,597 |
| 2016 | 36,799 (17,560) | 18,664 | 9,392 | 2,056 | 7,216 | 18,135 |
| 2017 | 36,969 (18,723) | 18,800 | 10,250 | 1,814 | 6,736 | 18,169 |
| 2018 | 37,130 (18,804) | 18,560 | 10,064 | 1,811 | 6,685 | 18,570 |

* 접수란 중 ( )는 신수

| 표 5-17 | 유형별 행정소송 사건

(단위 : 건)

| 유형별 \ 연 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계 | 32,088 | 33,424 | 34,847 | 36,854 | 36,444 | 38,182 | 38,882 | 36,799 | 36,969 | 37,130 |
| 조 세 관 계 | 4,490 | 4,206 | 4,698 | 4,810 | 5,644 | 6,849 | 7,379 | 6,089 | 5,246 | 4,849 |
| 공 무 원 신 분 | 2,264 | 1,742 | 1,611 | 1,623 | 1,681 | 1,582 | 1,645 | 1,515 | 1,611 | 1,635 |
| 국 토 도 시 계 획 | 3,208 | 3,916 | 3,625 | 3,473 | 3,129 | 3,141 | 2,846 | 2,642 | 2,477 | 2,632 |
| 영업허가취소·정지 | 3,132 | 3,271 | 2,828 | 3,190 | 3,534 | 3,934 | 3,389 | 2,283 | 2,414 | 2,424 |
| 자격·면허·등록·인가 | 2,876 | 2,919 | 3,116 | 2,754 | 2,678 | 2,810 | 2,231 | 1,889 | 2,062 | 2,802 |
| 기 타 | 16,118 | 17,370 | 18,969 | 21,004 | 19,778 | 19,866 | 21,392 | 22,381 | 23,159 | 22,788 |

## 6. 지구심의회 국가배상 신청사건

| 표 5-18 | 전체 국가배상 신청사건(협정배상 신청사건 포함)

(단위 : 건)

| 구 분 \ 연 도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접수 | 계 | 1,075 | 1,590 | 2,983 | 3,011 | 4,517 | 3,976 | 4,149 | 4,738 | 4,558 | 6,064 |
| | 구 수 | 267 | 229 | 443 | 938 | 885 | 1,130 | 1,057 | 1,059 | 1,140 | 1,629 |
| | 신 수 | 808 | 1,361 | 2,540 | 2,073 | 3,632 | 2,846 | 3,092 | 3,679 | 3,418 | 4,435 |
| 처리 | 계 | 927 | 1,162 | 2,058 | 2,127 | 3,299 | 2,915 | 3,047 | 3,598 | 2,921 | 4,054 |
| | 인 용 | 635 | 637 | 736 | 1,063 | 1,767 | 1,177 | 1,057 | 1,154 | 801 | 1,129 |
| | 기 각 | 236 | 426 | 1,222 | 944 | 1,424 | 1,627 | 1,896 | 2,249 | 2,008 | 2,777 |
| | 기 타 | 56 | 99 | 100 | 120 | 108 | 111 | 94 | 195 | 112 | 148 |
| 미 제 | | 148 | 428 | 925 | 884 | 1,218 | 1,061 | 1,102 | 1,140 | 1,637 | 2.010 |

## | 표 5-19 | 국가배상 신청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협정배상 신청사건 포함)

(단위 : 건)

| 연 도 | 접 수 | 처 리 | | | | 미 제 |
|---|---|---|---|---|---|---|
| | | 계 | 인 용 | 기 각 | 기 타 | |
| 2009 | 1,075 (808) | 927 | 635 | 236 | 56 | 148 |
| 2010 | 1,590 (1,361) | 1,162 | 637 | 426 | 99 | 428 |
| 2011 | 2,983 (2,540) | 2,058 | 736 | 1,222 | 100 | 925 |
| 2012 | 3,011 (2,073) | 2,127 | 1,063 | 944 | 120 | 884 |
| 2013 | 4,517 (3,632) | 3,299 | 1,767 | 1,424 | 108 | 1,218 |
| 2014 | 3,976 (2,846) | 2,915 | 1,177 | 1,627 | 111 | 1,061 |
| 2015 | 4,149 (3,092) | 3,047 | 1,057 | 1,896 | 94 | 1,102 |
| 2016 | 4,738 (3,679) | 3,598 | 1,154 | 2,249 | 195 | 1,140 |
| 2017 | 4,558 (3,418) | 2,921 | 801 | 2,008 | 112 | 1,637 |
| 2018 | 6,064 (4,435) | 4,054 | 1,129 | 2,777 | 148 | 2.010 |

* 접수란 중 ( )는 신수

## | 표 5-20 | 한·미주둔군지위협정 배상 신청사건

(단위 : 건)

| 구분 \ 연도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접수 | 계 | 178 | 139 | 177 | 190 | 167 | 168 | 174 | 196 | 175 | 185 |
| | 구 수 | 70 | 40 | 57 | 61 | 53 | 56 | 58 | 50 | 70 | 58 |
| | 신 수 | 108 | 99 | 120 | 129 | 114 | 112 | 116 | 146 | 105 | 127 |
| 처리 | 계 | 144 | 78 | 114 | 137 | 111 | 109 | 124 | 126 | 109 | 88 |
| | 인 용 | 125 | 67 | 93 | 116 | 91 | 84 | 110 | 112 | 101 | 78 |
| | 기 각 | 11 | 6 | 15 | 16 | 19 | 20 | 12 | 14 | 7 | 9 |
| | 기 타 | 8 | 5 | 6 | 5 | 1 | 5 | 2 | 0 | 1 | 1 |
| 미 제 | | 34 | 61 | 63 | 53 | 56 | 59 | 50 | 70 | 66 | 97 |

| 표 5-21 | 한·미주둔군지위협정 배상 신청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 연 도 | 접 수 | 처 리 | | | | 미 제 |
|---|---|---|---|---|---|---|
| | | 계 | 인 용 | 기 각 | 기 타 | |
| 2009 | 178 (108) | 144 | 125 | 11 | 8 | 34 |
| 2010 | 139 ( 99) | 78 | 67 | 6 | 5 | 61 |
| 2011 | 177 (120) | 114 | 93 | 15 | 6 | 63 |
| 2012 | 190 (129) | 137 | 116 | 16 | 5 | 53 |
| 2013 | 167 (114) | 111 | 91 | 19 | 1 | 56 |
| 2014 | 168 (112) | 109 | 84 | 20 | 5 | 59 |
| 2015 | 174 (116) | 124 | 110 | 12 | 2 | 50 |
| 2016 | 196 (146) | 126 | 112 | 14 | 0 | 70 |
| 2017 | 175 (105) | 109 | 101 | 7 | 1 | 66 |
| 2018 | 185 (127) | 88 | 78 | 9 | 1 | 97 |

* 접수란 중 ( )는 신수

## 7. 국가배상금 지급 현황

| 표 5-22 | 국가배상금 지급 현황

(단위 : 건/백만 원)

| 구분 / 연도 | 지급총액 | 배 상 결 정 | 판 결 | 소송비용확정액 |
|---|---|---|---|---|
| 2009 | 449 / 63,375 | 280 / 1,438 | 169 / 61,937 | - / - |
| 2010 | 316 / 18,989 | 139 / 284 | 177 / 18,705 | - / - |
| 2011 | 489 / 80,765 | 140 / 434 | 185 / 79,382 | 164 / 949 |
| 2012 | 659 / 133,869 | 120 / 398 | 198 / 127,483 | 341 / 5,988 |
| 2013 | 409 / 57,389 | 119 / 273 | 290 / 57,116 | - / - |
| 2014 | 745 / 203,013 | 85 / 180 | 385 / 198,872 | 275 / 3,961 |
| 2015 | 1,005 / 300,722 | 122 / 438 | 461 / 293,615 | 422 / 6,669 |
| 2016 | 960 / 236,223 | 91 / 275 | 371 / 228,695 | 498 / 7,253 |
| 2017 | 861 / 354,386 | 121 / 599 | 369 / 349,084 | 371 / 4,703 |
| 2018 | 821 / 770,075 | 107 / 793 | 319 / 762,218 | 395 / 7,064 |

# 8. 헌법재판 현황

| 표 5-23 | 헌법재판 현황

| 연도 | 구분 | 접수 (신·구수) | 처리 | | | | | | | | | | | 미제 |
|---|---|---|---|---|---|---|---|---|---|---|---|---|---|---|
| | | | 합계 | 위헌 | | | | | 합헌 | | | | 각하 등 | |
| | | | | 소계 | 위헌 | 한정위헌 | 헌법불합치 | 인용 | 소계 | 합헌 | 한정합헌 | 기각 | | |
| 2010 | 계 | 2,330 | 1,670 | 101 | 69 | – | 7 | 25 | 267 | 135 | – | 132 | 1,302 | 660 |
| | 위헌법률 | 148 | 113 | 67 | 62 | – | 5 | – | 14 | 14 | – | – | 32 | 35 |
| | 권한쟁의 | 21 | 12 | 4 | – | – | – | 4 | 2 | – | – | 2 | 6 | 9 |
| | 헌법소원 | 2,161 | 1,545 | 30 | 7 | – | 2 | 21 | 251 | 121 | – | 130 | 1,264 | 616 |
| 2011 | 계 | 2,226 | 1,428 | 68 | 29 | 7 | 5 | 27 | 283 | 168 | – | 115 | 1,077 | 798 |
| | 위헌법률 | 77 | 46 | 24 | 22 | – | 2 | – | 15 | 15 | – | – | 7 | 31 |
| | 권한쟁의 | 12 | 7 | 1 | – | – | – | 1 | 3 | – | – | 3 | 3 | 5 |
| | 헌법소원 | 2,137 | 1,375 | 43 | 7 | 7 | 3 | 26 | 265 | 153 | – | 112 | 1,067 | 762 |
| 2012 | 계 | 2,509 | 1,661 | 74 | 15 | 7 | 5 | 47 | 337 | 140 | – | 197 | 1,250 | 848 |
| | 위헌법률 | 53 | 21 | 9 | 9 | – | – | – | 7 | 7 | – | – | 5 | 32 |
| | 권한쟁의 | 9 | 3 | – | – | – | – | – | 2 | – | – | 2 | 1 | 6 |
| | 헌법소원 | 2,447 | 1,637 | 65 | 6 | 7 | 5 | 47 | 328 | 133 | – | 195 | 1,244 | 810 |
| 2013 | 계 | 2,328 | 1,585 | 71 | 25 | – | 3 | 43 | 372 | 147 | – | 225 | 1,142 | 743 |
| | 위헌법률 | 60 | 22 | 8 | 7 | – | 1 | – | 14 | 14 | – | – | – | 38 |
| | 정당해산 | 1 | – | – | – | – | – | – | – | – | – | – | – | 1 |
| | 권한쟁의 | 9 | 5 | – | – | – | – | – | 1 | – | – | 1 | 4 | 4 |
| | 헌법소원 | 2,258 | 1,558 | 63 | 18 | – | 2 | 43 | 357 | 133 | – | 224 | 1,138 | 700 |
| 2014 | 계 | 2,712 | 1,888 | 60 | 11 | 3 | 15 | 31 | 255 | 104 | – | 151 | 1,573 | 824 |
| | 위헌법률 | 64 | 14 | 7 | 3 | 3 | 1 | – | 6 | 6 | – | – | 1 | 50 |
| | 정당해산 | 1 | 1 | 1 | – | – | – | 1 | – | – | – | – | – | – |
| | 권한쟁의 | 5 | 2 | – | – | – | – | – | – | – | – | – | 2 | 3 |
| | 헌법소원 | 2,642 | 1,871 | 52 | 8 | – | 14 | 30 | 249 | 98 | – | 151 | 1,570 | 771 |
| 2015 | 계 | 2,683 | 1,937 | 110 | 47 | – | 15 | 48 | 379 | 176 | – | 203 | 1,448 | 746 |
| | 위헌법률 | 87 | 44 | 22 | 21 | – | 1 | – | 20 | 20 | – | – | 2 | 43 |
| | 정당해산 | 1 | – | – | – | – | – | – | – | – | – | – | – | 1 |
| | 권한쟁의 | 11 | 2 | 1 | – | – | – | 1 | – | – | – | – | 1 | 9 |
| | 헌법소원 | 2,584 | 1,891 | 87 | 26 | – | 14 | 47 | 359 | 156 | – | 203 | 1,445 | 693 |

| 연도 | 구분 | 접수 (신·구수) | 처리 | | | | | | | | | | | 미제 |
|---|---|---|---|---|---|---|---|---|---|---|---|---|---|---|
| | | | 합계 | 위헌 | | | | | 합헌 | | | | 각하 등 | |
| | | | | 소계 | 위헌 | 한정위헌 | 헌법불합치 | 인용 | 소계 | 합헌 | 한정합헌 | 기각 | | |
| 2016 | 계 | 2,697 | 1,976 | 101 | 33 | 1 | 9 | 58 | 393 | 179 | - | 214 | 1,482 | 721 |
| | 위헌법률 | 63 | 27 | 14 | 12 | - | 2 | - | 4 | 4 | - | - | 9 | 36 |
| | 탄핵 | 1 | - | - | - | - | - | - | - | - | - | - | - | 1 |
| | 정당해산 | 1 | 1 | - | - | - | - | - | - | - | - | - | 1 | - |
| | 권한쟁의 | 18 | 5 | - | - | - | - | - | - | - | - | - | 5 | 13 |
| | 헌법소원 | 2,614 | 1,943 | 87 | 21 | 1 | 7 | 58 | 389 | 175 | - | 214 | 1,467 | 671 |
| 2017 | 계 | 3,347 | 2,425 | 43 | 4 | - | 1 | 38 | 293 | 116 | - | 177 | 2,089 | 922 |
| | 위헌법률 | 71 | 11 | 1 | 1 | - | - | - | 10 | 10 | - | - | - | 60 |
| | 탄핵 | 1 | 1 | 1 | - | - | - | 1 | - | - | - | - | - | - |
| | 권한쟁의 | 15 | 2 | - | - | - | - | - | - | - | - | - | 2 | 13 |
| | 헌법소원 | 3,260 | 2,411 | 41 | 3 | - | 1 | 37 | 283 | 106 | - | 177 | 2,087 | 849 |
| 2018 | 계 | 3,349 | 2,447 | 168 | 57 | - | 59 | 52 | 379 | 108 | - | 271 | 1,900 | 902 |
| | 위헌법률 | 77 | 39 | 26 | 8 | - | 18 | - | 10 | 10 | - | - | 3 | 38 |
| | 권한쟁의 | 15 | 5 | - | - | - | - | - | - | - | - | - | 5 | 10 |
| | 헌법소원 | 3,257 | 2,403 | 142 | 49 | - | 41 | 52 | 369 | 98 | - | 271 | 1,892 | 854 |

# 9. 제7회 변호사시험 관련 통계

## 가. 출원 현황

**| 표 5-24 |** 연도별 응시원서 접수 현황

(단위 : 명)

| 연 도 | 시험구분 | 총 계 | 남 자 | 여 자 |
|---|---|---|---|---|
| 2018 | 변호사시험 | 3,490 | 1,985 | 1,505 |
| 2017 | 변호사시험 | 3,306 | 1,839 | 1,467 |
| 2016 | 변호사시험 | 3,115 | 1,816 | 1,299 |
| 2015 | 변호사시험 | 2,704 | 1,567 | 1,137 |
| 2014 | 변호사시험 | 2,432 | 1,387 | 1,045 |

### | 표 5-25 | 연령별 출원 현황

(단위 : 명)

| 연령 / 시험구분 | 25세 미만 | 25세 이상 ~ 30세 미만 | 30세 이상 ~ 35세 미만 | 35세 이상 ~ 40세 미만 | 40세 이상 ~ 45세 미만 | 45세 이상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 변호사시험 (비율) | 3 (0.09%) | 1,036 (29.68%) | 1,496 (42.87%) | 686 (19.66%) | 198 (5.67%) | 56 (1.60%) | 15 (0.43%) |

### | 표 5-26 | 법학전공별 출원 현황

(단위 : 명)

| 법학전공 / 시험구분 | 총 계 | 전 공 | 비 전 공 |
|---|---|---|---|
| 변 호 사 시 험 (비 율) | 3,490 | 1,792 (54.20%) | 1,514 (45.80%) |

## 나. 합격자 현황

### | 표 5-27 | 연도별 합격자 현황

(단위 : 명, %)

| 연 도 | 시험구분 | 총 계 | | | 남 자 | | | 여 자 | | |
|---|---|---|---|---|---|---|---|---|---|---|
| | | 응시자 | 합격자 | 합격률 | 응시자 | 합격자 | 합격률 | 응시자 | 합격자 | 합격률 |
| 2018 | 변호사시험 | 3,240 | 1,599 | 49.35 | 1,843 | 906 | 49.16 | 1,397 | 693 | 49.61 |
| 2017 | 변호사시험 | 3,110 | 1,593(기준) | 51.22 | 1,720 | 870 | 50.58 | 1,390 | 723 | 52.01 |
| | | | 1,600(기준) | 51.45 | 1,720 | 876 | 50.93 | 1,390 | 724 | 52.09 |
| 2016 | 변호사시험 | 2,864 | 1,581 | 55.20 | 1,668 | 939 | 56.29 | 1,196 | 642 | 53.68 |
| 2015 | 변호사시험 | 2,561 | 1,565 | 61.10 | 1,471 | 893 | 60.70 | 1,090 | 672 | 61.65 |
| 2014 | 변호사시험 | 2,292 | 1,550 | 67.62 | 1,298 | 869 | 66.94 | 994 | 681 | 68.51 |

### | 표 5-28 | 법학전공별 시험 합격 현황

(단위 : 명)

| 법학전공 / 시험구분 | 총 계 | 전 공 | 비 전 공 |
|---|---|---|---|
| 변 호 사 시 험 (비율) | 1,599 | 787 (49.22%) | 812 (50.78%) |

# 제2절 검찰업무 통계

## 1. 검사 수사 사건

### 가. 전체 사건

| 표 5-29 |

(단위 : 명)

| 구분 |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접수 | | 계 | 2,891,156 | 2,464,720 | 2,333,951 | 2,401,107 | 2,474,033 | 2,463,524 | 2,580,756 | 2,672,784 | 2,506,404 | 2,401,898 |
| | | 구수 | 61,599 | 71,007 | 65,803 | 74,547 | 84,196 | 83,944 | 88,432 | 83,473 | 90,535 | 99,297 |
| | | 신수 | 2,829,557 | 2,393,713 | 2,268,148 | 2,326,560 | 2,389,837 | 2,379,580 | 2,492,324 | 2,589,311 | 2,415,869 | 2,302,601 |
| 처리 | | 계 | 2,820,395 | 2,398,984 | 2,259,500 | 2,316,969 | 2,389,660 | 2,374,370 | 2,495,255 | 2,581,748 | 2,407,061 | 2,290,052 |
| | 기소 | 소계 | 1,196,776 | 1,014,849 | 917,335 | 902,552 | 910,158 | 870,320 | 852,314 | 894,616 | 809,882 | 719,980 |
| | | 구공판 | 172,353 | 160,407 | 182,436 | 196,484 | 182,322 | 191,080 | 187,402 | 209,734 | 202,649 | 196,821 |
| | | 구약식 | 1,024,423 | 854,442 | 734,899 | 706,068 | 727,836 | 679,240 | 664,912 | 684,882 | 607,233 | 523,159 |
| | 불기소 | 소계 | 1,478,448 | 1,253,203 | 1,203,587 | 1,257,938 | 1,297,033 | 1,344,779 | 1,460,294 | 1,458,816 | 1,367,742 | 1,320,937 |
| | | 무혐의 | 316,341 | 288,355 | 280,482 | 304,120 | 315,513 | 334,419 | 361,070 | 371,611 | 333,716 | 314,565 |
| | | 기소유예 | 471,680 | 374,420 | 359,305 | 357,854 | 338,628 | 338,350 | 378,723 | 376,137 | 338,971 | 274,936 |
| | | 기소중지 | 159,481 | 129,813 | 123,232 | 147,858 | 185,052 | 208,340 | 218,047 | 213,833 | 209,989 | 237,460 |
| | | 참고인중지 | 22,698 | 18,578 | 17,740 | 17,710 | 17,582 | 15,694 | 12,542 | 10,008 | 8,411 | 7,150 |
| | | 각하 | 86,126 | 71,665 | 67,423 | 83,974 | 87,987 | 95,974 | 112,931 | 104,710 | 116,518 | 138,712 |
| | | 기타 | 422,122 | 370,372 | 355,405 | 346,422 | 352,271 | 352,002 | 376,981 | 382,517 | 360,137 | 348,114 |
| | 이송 | 소년보호 | 33,951 | 32,274 | 33,233 | 37,253 | 29,992 | 25,226 | 25,027 | 25,192 | 24,948 | 23,478 |
| | | 가정보호 | 4,585 | 3,222 | 3,039 | 3,753 | 6,414 | 9,449 | 20,036 | 22,264 | 18,829 | 19,539 |
| | | 타관 | 106,032 | 95,189 | 102,087 | 115,214 | 145,830 | 124,378 | 137,197 | 179,522 | 182,140 | 202,896 |
| | | 성매매보호 | 603 | 247 | 219 | 259 | 233 | 218 | 387 | 1,338 | 956 | 465 |
| | | 아동보호 | - | - | - | - | - | - | - | - | 2,564 | 2,757 |
| 미제 | | | 70,761 | 65,736 | 74,451 | 84,138 | 84,373 | 89,154 | 85,501 | 91,036 | 99,343 | 111,846 |

## 나. 청별 사건

| 표 5-30 |

(단위 : 명)

| 검찰청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계 | 2,829,557 | 2,393,713 | 2,268,148 | 2,326,560 | 2,389,837 | 2,379,580 | 2,492,321 | 2,589,311 | 2,415,869 | 2,302,596 |
| 서울중앙 | 243,434 | 199,361 | 190,118 | 184,574 | 183,105 | 175,052 | 175,798 | 181,844 | 171,076 | 165,305 |
| 서울동부 | 103,420 | 82,924 | 75,844 | 77,063 | 78,169 | 76,497 | 76,287 | 73,148 | 71,256 | 73,250 |
| 서울남부 | 126,277 | 102,752 | 103,816 | 103,313 | 100,572 | 99,170 | 103,045 | 100,839 | 97,922 | 96,437 |
| 서울북부 | 107,823 | 89,070 | 87,418 | 80,196 | 86,491 | 90,907 | 91,109 | 94,269 | 88,617 | 84,968 |
| 서울서부 | 86,776 | 67,893 | 65,026 | 64,295 | 69,321 | 68,703 | 67,255 | 70,706 | 65,081 | 64,015 |
| 의정부 | 103,047 | 83,470 | 77,549 | 82,393 | 87,021 | 87,175 | 93,587 | 98,927 | 92,808 | 91,082 |
| 고양 | 65,131 | 51,317 | 49,437 | 52,782 | 56,961 | 59,494 | 62,921 | 67,051 | 63,366 | 58,324 |
| 인천 | 165,670 | 137,107 | 123,444 | 133,871 | 139,475 | 141,832 | 143,257 | 155,534 | 144,821 | 139,518 |
| 부천 | 61,919 | 50,931 | 49,460 | 52,915 | 53,972 | 55,792 | 60,109 | 64,154 | 58,583 | 58,422 |
| 수원 | 148,537 | 107,479 | 106,624 | 114,135 | 119,807 | 123,235 | 136,617 | 152,098 | 142,413 | 131,605 |
| 성남 | 73,512 | 56,297 | 53,956 | 56,576 | 60,269 | 60,984 | 64,293 | 74,402 | 65,256 | 62,303 |
| 여주 | 22,747 | 19,553 | 17,497 | 17,600 | 19,137 | 19,216 | 20,627 | 22,661 | 22,466 | 21,753 |
| 평택 | 32,577 | 29,541 | 30,922 | 30,888 | 31,973 | 34,926 | 38,080 | 43,750 | 41,843 | 39,415 |
| 안산 | 82,611 | 66,551 | 68,829 | 67,886 | 70,573 | 69,766 | 82,751 | 94,682 | 81,275 | 73,865 |
| 안양 | 41,122 | 37,494 | 38,528 | 40,836 | 41,395 | 40,557 | 43,780 | 48,460 | 42,634 | 40,669 |
| 춘천 | 21,721 | 19,643 | 19,264 | 19,895 | 22,126 | 20,227 | 20,663 | 21,007 | 19,579 | 17,631 |
| 강릉 | 22,740 | 19,620 | 17,384 | 17,794 | 17,736 | 18,166 | 17,941 | 18,893 | 18,226 | 15,779 |
| 원주 | 19,860 | 18,781 | 18,604 | 20,927 | 19,976 | 18,948 | 19,907 | 21,182 | 20,387 | 17,241 |
| 속초 | 7,908 | 7,312 | 6,778 | 7,308 | 7,518 | 7,157 | 7,472 | 7,362 | 7,423 | 6,798 |
| 영월 | 9,367 | 8,017 | 8,289 | 9,010 | 8,299 | 7,790 | 8,403 | 8,745 | 7,315 | 6,916 |
| 대전 | 77,299 | 73,220 | 62,516 | 64,623 | 67,572 | 68,139 | 71,061 | 77,084 | 77,375 | 75,308 |
| 홍성 | 17,200 | 15,894 | 13,074 | 12,971 | 13,773 | 13,732 | 15,991 | 16,407 | 14,722 | 14,584 |
| 공주 | 6,410 | 6,001 | 5,222 | 5,456 | 5,772 | 5,878 | 5,788 | 5,806 | 5,473 | 5,994 |
| 논산 | 9,476 | 8,383 | 7,836 | 7,971 | 8,728 | 8,193 | 8,707 | 8,193 | 8,146 | 7,770 |
| 서산 | 17,926 | 17,264 | 14,443 | 16,433 | 17,688 | 17,597 | 17,529 | 18,782 | 17,920 | 18,197 |
| 천안 | 38,269 | 33,532 | 34,386 | 36,999 | 38,163 | 43,292 | 46,263 | 48,295 | 43,913 | 44,222 |
| 청주 | 49,035 | 43,014 | 36,870 | 39,015 | 40,919 | 41,656 | 44,964 | 51,021 | 46,298 | 45,767 |

| 검찰청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충주 | 16,626 | 15,256 | 13,100 | 14,128 | 13,489 | 13,769 | 15,577 | 17,104 | 14,260 | 13,905 |
| 제천 | 8,629 | 7,796 | 7,466 | 6,886 | 7,691 | 7,158 | 7,086 | 6,787 | 6,390 | 5,986 |
| 영동 | 4,032 | 3,595 | 3,220 | 3,414 | 3,316 | 3,302 | 3,623 | 3,259 | 3,020 | 2,673 |
| 대구 | 117,099 | 100,286 | 100,006 | 101,075 | 94,367 | 95,746 | 98,787 | 98,506 | 89,621 | 85,753 |
| 안동 | 14,794 | 13,298 | 12,044 | 13,404 | 12,745 | 12,985 | 13,244 | 12,416 | 11,806 | 10,944 |
| 경주 | 14,934 | 12,700 | 12,201 | 13,256 | 14,377 | 12,774 | 13,362 | 12,974 | 12,393 | 10,855 |
| 포항 | 27,872 | 29,027 | 22,593 | 23,231 | 25,424 | 22,382 | 23,637 | 22,937 | 22,055 | 21,277 |
| 김천 | 25,315 | 26,007 | 24,177 | 25,732 | 27,104 | 25,438 | 26,971 | 27,520 | 25,274 | 22,493 |
| 상주 | 8,638 | 7,826 | 7,686 | 7,634 | 7,724 | 7,276 | 7,496 | 7,277 | 7,139 | 7,576 |
| 의성 | 5,036 | 4,756 | 3,897 | 3,796 | 4,056 | 3,687 | 3,846 | 4,415 | 3,944 | 4,058 |
| 영덕 | 4,651 | 4,071 | 3,307 | 3,726 | 3,913 | 3,959 | 4,239 | 4,244 | 4,376 | 4,313 |
| 대구서부 | 58,867 | 51,043 | 47,390 | 47,703 | 47,116 | 48,041 | 50,597 | 47,113 | 43,776 | 40,931 |
| 부산 | 170,938 | 133,659 | 122,481 | 133,132 | 135,847 | 138,579 | 138,971 | 134,094 | 90,312 | 78,056 |
| 부산동부 | 53,642 | 41,329 | 40,509 | 43,464 | 44,037 | 42,094 | 46,398 | 44,792 | 42,596 | 40,629 |
| 부산서부 | - | - | - | - | - | - | - | - | 37,240 | 42,841 |
| 울산 | 71,193 | 63,233 | 58,498 | 60,683 | 67,016 | 64,205 | 69,837 | 69,618 | 63,190 | 59,769 |
| 창원 | 92,414 | 80,675 | 71,063 | 48,574 | 54,548 | 49,294 | 52,880 | 54,616 | 51,915 | 48,384 |
| 진주 | 30,482 | 26,566 | 24,216 | 22,829 | 22,730 | 22,036 | 23,244 | 23,191 | 21,133 | 19,591 |
| 통영 | 25,522 | 23,874 | 21,727 | 22,008 | 22,604 | 22,667 | 24,614 | 26,793 | 24,519 | 20,754 |
| 밀양 | 7,241 | 6,608 | 6,583 | 6,782 | 6,341 | 6,753 | 7,009 | 6,918 | 6,836 | 6,478 |
| 거창 | 6,637 | 5,322 | 4,915 | 5,091 | 5,046 | 4,975 | 5,422 | 5,610 | 4,901 | 4,432 |
| 마산 | - | - | 9,394 | 19,111 | 19,963 | 20,829 | 22,187 | 21,268 | 18,875 | 17,839 |
| 광주 | 95,628 | 91,213 | 90,173 | 94,790 | 97,246 | 94,977 | 93,188 | 89,002 | 83,088 | 78,863 |
| 목포 | 28,537 | 26,106 | 23,022 | 23,895 | 25,656 | 24,568 | 25,137 | 25,152 | 22,224 | 21,125 |
| 장흥 | 3,680 | 3,516 | 3,529 | 3,187 | 3,233 | 3,120 | 3,264 | 3,502 | 3,264 | 3,179 |
| 순천 | 46,214 | 42,613 | 39,803 | 40,558 | 39,768 | 38,272 | 42,618 | 42,724 | 37,967 | 35,909 |
| 해남 | 8,017 | 7,014 | 6,884 | 6,879 | 7,263 | 6,619 | 7,106 | 7,081 | 6,992 | 6,490 |
| 전주 | 42,197 | 38,626 | 35,704 | 40,733 | 37,598 | 36,633 | 38,139 | 39,814 | 36,768 | 36,669 |
| 군산 | 32,348 | 30,284 | 28,424 | 30,632 | 27,495 | 26,272 | 26,145 | 26,631 | 26,545 | 24,709 |
| 정읍 | 9,658 | 9,223 | 8,868 | 8,632 | 8,624 | 8,389 | 8,902 | 8,865 | 9,267 | 8,242 |
| 남원 | 5,391 | 5,221 | 4,832 | 5,077 | 4,643 | 4,566 | 5,053 | 4,737 | 4,893 | 4,027 |
| 제주 | 31,511 | 30,549 | 27,302 | 28,793 | 32,346 | 34,134 | 39,537 | 45,049 | 43,096 | 36,708 |

## 다. 고소·고발 사건

| 표 5-31 |

(단위 : 명)

| 구분 | |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접수 | 계 | | | 843,993 | 711,513 | 664,971 | 724,116 | 758,785 | 743,223 | 768,579 | 744,960 | 729,229 | 782,251 |
| | 구수 | | | 36,754 | 43,031 | 41,621 | 47,077 | 58,920 | 58,821 | 62,890 | 59,659 | 60,869 | 68,140 |
| | 신수 | | | 807,239 | 668,482 | 623,350 | 677,039 | 699,865 | 684,402 | 705,689 | 685,301 | 668,360 | 714,111 |
| 처리 | 계 | | | 801,239 | 670,158 | 618,034 | 665,687 | 699,795 | 680,782 | 708,905 | 683,655 | 661,220 | 704,080 |
| | 기소 | 소계 | | 198,025 | 169,257 | 140,388 | 149,723 | 158,071 | 152,955 | 147,111 | 144,331 | 135,601 | 135,340 |
| | | 구공판 | | 42,613 | 39,089 | 36,428 | 38,088 | 43,723 | 46,110 | 43,211 | 45,478 | 43,122 | 44,932 |
| | | 구약식 | | 155,412 | 130,168 | 103,960 | 111,635 | 114,348 | 106,845 | 103,890 | 98,853 | 92,479 | 90,408 |
| | 불기소 | 소계 | | 544,881 | 445,577 | 418,441 | 449,344 | 461,758 | 465,207 | 497,561 | 464,421 | 452,450 | 488,050 |
| | | 무혐의 | | 191,184 | 170,879 | 161,287 | 167,592 | 167,470 | 169,636 | 175,930 | 174,599 | 166,589 | 179,861 |
| | | 기소유예 | | 72,981 | 50,770 | 40,195 | 44,070 | 41,160 | 40,706 | 46,201 | 36,880 | 33,939 | 31,958 |
| | | 기소중지 | | 74,009 | 62,639 | 64,215 | 73,812 | 84,669 | 84,952 | 87,672 | 84,139 | 80,201 | 82,678 |
| | | 기타 | | 206,707 | 161,289 | 152,744 | 163,870 | 168,459 | 169,913 | 187,758 | 168,803 | 171,721 | 193,553 |
| | 이송 | 소년보호 | | 1,788 | 1,991 | 2,232 | 2,199 | 1,573 | 1,441 | 1,241 | 1,614 | 2,040 | 2,354 |
| | | 가정보호 | | 644 | 574 | 503 | 549 | 626 | 867 | 973 | 909 | 895 | 995 |
| | | 타관 | | 55,901 | 52,758 | 56,470 | 63,872 | 77,767 | 60,309 | 62,018 | 72,378 | 69,855 | 76,961 |
| | | 성매매보호 | | - | 1 | - | - | - | 3 | 1 | 2 | 3 | 1 |
| | | 아동보호 | | - | - | - | - | - | - | - | - | 376 | 379 |
| 미제 | | | | 42,754 | 41,355 | 46,937 | 58,429 | 58,990 | 62,441 | 59,674 | 61,305 | 68,009 | 78,171 |

## 라. 주요범죄유형별 사범

| 표 5-32 | 병역사범

(단위 : 명)

| 구분 |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접수 | 계 | | 30,496 | 24,989 | 23,426 | 26,034 | 33,626 | 25,824 | 23,301 | 19,397 | 11,352 | 8,392 |
| | 구수 | | 152 | 210 | 58 | 81 | 155 | 160 | 99 | 76 | 80 | 78 |
| | 신수 | | 30,344 | 24,779 | 23,368 | 25,953 | 33,471 | 25,664 | 23,202 | 19,321 | 11,272 | 8,314 |

| 구분 | |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처리 | 계 | | | 30,292 | 24,882 | 23,345 | 25,888 | 33,461 | 25,729 | 23,229 | 19,318 | 11,272 | 8,274 |
| | 기소 | 소계 | | 17,855 | 14,441 | 13,781 | 15,764 | 20,003 | 16,604 | 16,359 | 13,852 | 7,680 | 5,201 |
| | | 구공판 | | 1,741 | 1,633 | 1,675 | 1,627 | 1,834 | 1,899 | 1,786 | 1,623 | 1,293 | 963 |
| | | 구약식 | | 16,114 | 12,808 | 12,106 | 14,137 | 18,169 | 14,705 | 14,573 | 12,229 | 6,387 | 4,238 |
| | 불기소 | 소계 | | 11,297 | 9,588 | 8,789 | 9,129 | 11,973 | 8,682 | 6,443 | 5,091 | 3,348 | 2,785 |
| | | 무혐의 | | 408 | 692 | 383 | 367 | 405 | 393 | 432 | 407 | 242 | 277 |
| | | 기소유예 | | 1,115 | 1,204 | 1,096 | 1,309 | 1,493 | 1,187 | 1,207 | 1,026 | 969 | 1,190 |
| | | 기소중지 | | 7,454 | 6,277 | 6,596 | 6,968 | 6,823 | 5,870 | 3,903 | 2,591 | 1,240 | 828 |
| | | 기타 | | 2,320 | 1,415 | 714 | 485 | 3,252 | 1,232 | 901 | 1,067 | 897 | 490 |
| | 이송 | 소년보호 | | - | - | - | - | - | - | - | - | - | - |
| | | 타관 | | 1,140 | 853 | 775 | 995 | 1,485 | 443 | 427 | 375 | 244 | 288 |
| | | 성매매송치 | | - | - | - | - | - | - | - | - | - | - |
| 미제 | | | | 204 | 107 | 81 | 146 | 165 | 95 | 72 | 79 | 80 | 118 |

## | 표 5-33 | 경제사범

(단위 : 명)

| 구분 | |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접수 | 계 | | | 191,296 | 117,265 | 116,642 | 129,450 | 124,139 | 125,015 | 134,123 | 118,507 | 115,754 | 103,541 |
| | 구수 | | | 7,008 | 8,068 | 6,117 | 9,117 | 11,246 | 10,474 | 10,138 | 9,562 | 10,451 | 11,593 |
| | 신수 | | | 184,288 | 109,197 | 110,525 | 120,333 | 112,893 | 114,541 | 123,985 | 108,945 | 105,303 | 91,948 |
| 처리 | 계 | | | 183,779 | 110,300 | 108,529 | 119,048 | 114,372 | 114,950 | 125,059 | 108,785 | 104,756 | 92,204 |
| | 기소 | 소계 | | 36,536 | 31,558 | 28,269 | 27,697 | 26,896 | 26,097 | 26,878 | 27,418 | 27,639 | 23,072 |
| | | 구공판 | | 10,844 | 9,581 | 9,090 | 8,277 | 8,479 | 9,146 | 9,208 | 9,114 | 8,897 | 8,667 |
| | | 구약식 | | 25,692 | 21,977 | 19,179 | 19,420 | 18,417 | 16,951 | 17,670 | 18,304 | 18,742 | 14,405 |
| | 불기소 | 소계 | | 135,661 | 68,121 | 68,975 | 77,534 | 72,154 | 76,958 | 86,499 | 66,829 | 60,151 | 53,329 |
| | | 무혐의 | | 20,470 | 17,879 | 15,370 | 16,788 | 17,072 | 16,885 | 17,335 | 17,295 | 17,419 | 17,045 |
| | | 기소유예 | | 33,553 | 13,292 | 13,808 | 16,240 | 15,578 | 17,135 | 19,042 | 12,547 | 11,420 | 9,204 |
| | | 기소중지 | | 9,110 | 6,433 | 6,531 | 7,787 | 7,834 | 8,701 | 8,201 | 6,835 | 6,570 | 7,270 |
| | | 기타 | | 72,528 | 30,517 | 33,266 | 36,719 | 31,670 | 34,237 | 41,921 | 30,152 | 24,742 | 19,810 |
| | 이송 | 소년보호 | | 492 | 558 | 808 | 759 | 833 | 680 | 700 | 664 | 534 | 454 |
| | | 가정보호 | | - | - | - | | - | - | - | - | 1 | - |
| | | 타관 | | 11,090 | 10,063 | 10,477 | 13,058 | 14,489 | 11,215 | 10,982 | 13,874 | 16,431 | 15,349 |
| | | 성매매 | | - | - | - | | - | - | - | - | - | - |
| 미제 | | | | 7,517 | 6,965 | 8,113 | 10,402 | 9,767 | 10,065 | 9,064 | 9,722 | 10,998 | 11,337 |

## | 표 5-34 | 폭력사범

(단위 : 명)

| 구분 | |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접수 | 계 | | | 466,893 | 412,888 | 408,396 | 427,029 | 407,284 | 404,955 | 431,618 | 450,413 | 437,983 | 419,272 |
| | 구수 | | | 7,805 | 8,622 | 8,408 | 8,811 | 8,963 | 6,775 | 6,863 | 6,754 | 7,481 | 8,272 |
| | 신수 | | | 459,088 | 404,266 | 399,988 | 418,218 | 398,321 | 398,180 | 424,755 | 443,659 | 430,502 | 411,000 |
| 처리 | 계 | | | 458,671 | 404,573 | 400,235 | 418,265 | 399,869 | 397,142 | 424,815 | 443,141 | 429,923 | 410,157 |
| | 기소 | 소계 | | 144,890 | 126,628 | 123,839 | 125,433 | 114,961 | 105,712 | 98,166 | 98,581 | 93,055 | 91,871 |
| | | 구공판 | | 23,360 | 20,677 | 19,726 | 22,496 | 25,799 | 30,006 | 28,631 | 32,339 | 30,206 | 28,878 |
| | | 구약식 | | 121,530 | 105,951 | 104,113 | 102,937 | 89,162 | 75,706 | 69,535 | 66,242 | 62,849 | 62,993 |
| | 불기소 | 소계 | | 293,347 | 260,498 | 257,627 | 269,504 | 263,823 | 269,267 | 293,812 | 308,410 | 302,149 | 284,118 |
| | | 무혐의 | | 35,686 | 33,835 | 32,836 | 35,343 | 34,033 | 33,672 | 33,511 | 32,274 | 31,211 | 32,250 |
| | | 기소유예 | | 111,749 | 91,686 | 83,729 | 83,948 | 70,644 | 61,757 | 58,882 | 51,859 | 47,175 | 40,459 |
| | | 기소중지 | | 5,897 | 5,285 | 5,528 | 10,401 | 20,157 | 33,711 | 45,534 | 53,443 | 57,892 | 55,328 |
| | | 기타 | | 140,015 | 129,692 | 135,534 | 139,812 | 138,989 | 140,127 | 155,885 | 170,834 | 165,871 | 156,081 |
| | 이송 | 소년보호 | | 10,974 | 9,569 | 10,150 | 12,473 | 7,593 | 6,476 | 6,072 | 6,329 | 7,291 | 6,914 |
| | | 가정보호 | | 4,384 | 3,067 | 2,897 | 3,605 | 6,170 | 9,069 | 19,127 | 20,989 | 17,701 | 18,247 |
| | | 타관 | | 5,074 | 4,811 | 5,722 | 7,250 | 7,322 | 6,618 | 7,638 | 8,832 | 9,471 | 8,756 |
| | | 성매매 | | – | – | – | – | – | – | – | – | – | – |
| 미제 | | | | 8,222 | 8,315 | 8,161 | 8,764 | 7,415 | 7,813 | 6,802 | 7,272 | 8,060 | 9,115 |

## | 표 5-35 | 흉악사범

(단위 : 명)

| 구분 | |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접수 | 계 | | | 19,822 | 16,071 | 15,079 | 19,798 | 18,855 | 18,125 | 17,655 | 16,041 | 17,713 | 17,271 |
| | 구수 | | | 747 | 828 | 653 | 1,010 | 993 | 926 | 1,196 | 838 | 1,299 | 1,213 |
| | 신수 | | | 19,075 | 15,248 | 14,426 | 18,788 | 17,862 | 17,199 | 16,459 | 15,203 | 16,414 | 16,058 |
| 처리 | 계 | | | 18,899 | 15,336 | 14,433 | 18,789 | 17,391 | 16,826 | 16,763 | 14,726 | 16,449 | 15,965 |
| | 기소 | 소계 | | 6,905 | 5,337 | 4,745 | 7,178 | 6,681 | 6,450 | 5,912 | 5,260 | 4,671 | 4,787 |
| | | 구공판 | | 6,860 | 5,319 | 4,739 | 6,926 | 6,403 | 5,796 | 5,158 | 4,810 | 4,382 | 4,514 |
| | | 구약식 | | 45 | 18 | 6 | 252 | 278 | 654 | 754 | 450 | 289 | 273 |
| | 불기소 | 소계 | | 9,391 | 8,114 | 8,041 | 9,199 | 8,714 | 8,466 | 9,099 | 7,694 | 10,335 | 9,630 |
| | | 무혐의 | | 3,664 | 3,044 | 2,359 | 3,347 | 3,482 | 3,775 | 3,869 | 3,866 | 3,964 | 4,094 |
| | | 기소유예 | | 1,069 | 763 | 720 | 1,006 | 936 | 1,096 | 1,196 | 978 | 785 | 682 |
| | | 기소중지 | | 760 | 509 | 532 | 819 | 962 | 1,058 | 1,042 | 1,234 | 1,246 | 1,116 |
| | | 기타 | | 3,898 | 3,925 | 4,430 | 4,027 | 3,334 | 2,537 | 2,992 | 1,616 | 4,340 | 3,738 |

| 구분 \ 연도 |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 이송 | 소년보호 | 1,152 | 683 | 574 | 1,145 | 673 | 593 | 379 | 384 | 347 | 284 |
| | | 가정보호 | 14 | 8 | 5 | 22 | 24 | 25 | 49 | 29 | 26 | 33 |
| | | 타 관 | 1,437 | 1,067 | 1,068 | 1,245 | 1,299 | 1,292 | 1,324 | 1,359 | 1,066 | 1,224 |
| | | 성 매 매 | - | - | - | - | - | - | - | - | - | - |
| 미 제 | | | 923 | 735 | 646 | 1,009 | 1,464 | 1,299 | 892 | 1,315 | 1,264 | 1,306 |

## | 표 5-36 | 교통사범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접수 | 계 | | 848,990 | 745,161 | 629,998 | 650,966 | 654,364 | 644,397 | 663,726 | 688,128 | 581,769 | 471,945 |
| | 구 수 | | 2,210 | 2,606 | 1,281 | 2,689 | 1,960 | 1,870 | 2,528 | 2,456 | 2,941 | 3,317 |
| | 신 수 | | 846,780 | 742,555 | 628,717 | 648,277 | 652,404 | 642,527 | 661,198 | 685,672 | 578,828 | 468,628 |
| 처리 | 계 | | 846,383 | 742,704 | 627,311 | 648,985 | 652,063 | 641,732 | 661,340 | 685,327 | 578,550 | 468,775 |
| | 기소 | 소 계 | 553,305 | 477,521 | 407,817 | 394,315 | 388,961 | 361,137 | 351,980 | 358,119 | 310,143 | 249,514 |
| | | 구 공 판 | 36,260 | 42,565 | 69,436 | 82,244 | 51,890 | 41,637 | 36,105 | 42,152 | 42,485 | 38,084 |
| | | 구 약 식 | 517,045 | 434,956 | 338,381 | 312,071 | 337,071 | 319,500 | 315,875 | 315,967 | 267,658 | 211,430 |
| | 불기소 | 소 계 | 281,683 | 254,676 | 208,819 | 243,731 | 253,597 | 270,987 | 299,463 | 314,563 | 255,695 | 208,095 |
| | | 무 혐 의 | 39,045 | 31,683 | 19,386 | 44,250 | 53,248 | 59,968 | 67,463 | 76,786 | 50,160 | 24,020 |
| | | 기소유예 | 74,004 | 64,894 | 42,239 | 54,666 | 55,688 | 58,600 | 70,892 | 75,315 | 51,319 | 25,329 |
| | | 기소중지 | 15,718 | 11,126 | 8,511 | 9,992 | 11,857 | 14,304 | 14,575 | 15,120 | 14,454 | 16,565 |
| | | 기 타 | 152,916 | 146,973 | 138,683 | 134,823 | 132,804 | 138,115 | 146,533 | 147,342 | 139,762 | 142,181 |
| | 이송 | 소년보호 | 8,046 | 7,622 | 7,130 | 7,258 | 5,813 | 5,042 | 4,731 | 4,901 | 5,073 | 4,231 |
| | | 가정보호 | 2 | - | 1 | 3 | - | - | 1 | 1 | 1 | - |
| | | 타 관 | 3,347 | 2,885 | 3,544 | 3,678 | 3,692 | 4,566 | 5,165 | 7,743 | 7,638 | 6,935 |
| | | 성 매 매 | - | - | - | - | - | - | - | - | - | - |
| 미 제 | | | 2,607 | 2,457 | 2,687 | 1,981 | 2,301 | 2,665 | 2,386 | 2,801 | 3,219 | 3,170 |

## 마. 주요신분별 사건

### | 표 5-37 | 소년사범

(단위 : 명)

| 구분 | |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접수 | 계 | | | 135,081 | 106,096 | 105,225 | 120,191 | 102,454 | 91,100 | 91,723 | 88,226 | 85,178 | 76,642 |
| | 구수 | | | 926 | 1,063 | 1,117 | 1,069 | 1,563 | 1,018 | 921 | 823 | 1,062 | 1,276 |
| | 신수 | | | 134,155 | 105,033 | 104,108 | 119,122 | 100,891 | 90,082 | 90,802 | 87,403 | 84,116 | 75,366 |
| 처리 | 계 | | | 134,053 | 104,998 | 104,201 | 118,714 | 101,421 | 90,158 | 90,890 | 87,277 | 84,026 | 75,150 |
| | 기소 | 소계 | | 7,936 | 6,855 | 7,262 | 8,475 | 8,086 | 6,764 | 6,618 | 6,238 | 5,648 | 5,945 |
| | | 구공판 | | 4,295 | 3,572 | 4,150 | 5,315 | 5,197 | 4,284 | 4,437 | 4,010 | 3,531 | 3,944 |
| | | 구약식 | | 3,641 | 3,283 | 3,112 | 3,160 | 2,889 | 2,480 | 2,181 | 2,228 | 2,117 | 2,001 |
| | 불기소 | 소계 | | 88,343 | 61,948 | 59,317 | 66,766 | 55,541 | 50,897 | 51,086 | 47,718 | 46,166 | 37,873 |
| | | 무혐의 | | 4,522 | 5,060 | 4,865 | 6,174 | 5,702 | 5,260 | 6,201 | 5,964 | 5,532 | 5,280 |
| | | 기소유예 | | 57,951 | 45,313 | 41,720 | 44,349 | 35,132 | 31,036 | 30,371 | 26,558 | 25,416 | 20,237 |
| | | 기소중지 | | 1,564 | 1,562 | 1,816 | 2,537 | 5,349 | 6,490 | 5,322 | 6,707 | 6,566 | 5,031 |
| | | 기타 | | 24,306 | 10,013 | 10,916 | 13,706 | 9,358 | 8,111 | 9,192 | 8,489 | 8,652 | 7,325 |
| | 이송 | 소년보호 | | 33,871 | 32,227 | 33,186 | 37,193 | 29,937 | 25,191 | 24,999 | 25,159 | 24,935 | 23,478 |
| | | 가정보호 | | 32 | 10 | 14 | 19 | 36 | 49 | 156 | 180 | 183 | 169 |
| | | 아동보호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9 |
| | | 타관 | | 3,855 | 3,948 | 4,412 | 6,257 | 7,820 | 7,253 | 8,023 | 7,972 | 7,067 | 7,666 |
| | | 성매매 | | 16 | 10 | 10 | 4 | 1 | 4 | 8 | 10 | 27 | 10 |
| 미제 | | | | 1,028 | 1,098 | 1,024 | 1,477 | 1,033 | 942 | 833 | 949 | 1,152 | 1,492 |

※ 소년범 : 20세 미만 범죄 (2008. 6. 22.시행 개정소년법 나이〈19세 미만〉 미반영)

### | 표 5-38 | 학생사범

(단위 : 명)

| 구분 |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접수 | 계 | | 82,680 | 39,811 | 1,142 | 2,194 | 5,536 | 6,047 | 4,947 | 2,972 | 2,264 | 1,061 |
| | 구수 | | 647 | 652 | 35 | 26 | 137 | 74 | 76 | 35 | 17 | 27 |
| | 신수 | | 82,033 | 39,159 | 1,107 | 2,168 | 5,399 | 5,973 | 4,871 | 2,937 | 2,247 | 1,034 |

| 구분 |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처리 | 계 | | 82,060 | 39,776 | 1,118 | 2,077 | 5,460 | 5,970 | 4,912 | 2,957 | 2,242 | 1,024 |
| | 기소 | 소계 | 7,305 | 5,012 | 69 | 152 | 215 | 363 | 274 | 244 | 148 | 40 |
| | | 구공판 | 1,418 | 825 | 13 | 69 | 147 | 177 | 95 | 85 | 86 | 16 |
| | | 구약식 | 5,887 | 4,187 | 56 | 83 | 68 | 186 | 179 | 159 | 62 | 24 |
| | 불기소 | 소계 | 58,853 | 26,382 | 736 | 1,307 | 3,435 | 3,645 | 3,046 | 1,809 | 1,417 | 534 |
| | | 무혐의 | 3,479 | 2,315 | 45 | 142 | 344 | 415 | 463 | 247 | 163 | 55 |
| | | 기소유예 | 40,271 | 19,487 | 580 | 841 | 2,431 | 2,353 | 1,829 | 1,007 | 863 | 288 |
| | | 기소중지 | 262 | 160 | 8 | 71 | 125 | 179 | 245 | 211 | 210 | 90 |
| | | 기타 | 14,841 | 4,420 | 103 | 253 | 535 | 698 | 509 | 344 | 181 | 101 |
| | 이송 | 소년보호 | 14,284 | 7,463 | 279 | 529 | 1,473 | 1,520 | 1,089 | 670 | 495 | 336 |
| | | 가정보호 | 18 | 4 | - | - | 2 | 2 | 4 | 4 | 2 | 3 |
| | | 타관 | 1,597 | 914 | 34 | 89 | 335 | 439 | 496 | 229 | 180 | 111 |
| | | 성매매 | 3 | 1 | - | - | - | 1 | 3 | 1 | 0 | 0 |
| 미제 | | | 620 | 35 | 24 | 117 | 76 | 77 | 35 | 15 | 22 | 37 |

## | 표 5-39 |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

(단위 : 명)

| 구분 |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접수 | 계 | | 8,126 | 10,852 | 6,669 | 6,636 | 9,182 | 7,778 | 7,942 | 9,480 | 13,466 | 18,458 |
| | 구수 | | 527 | 766 | 870 | 720 | 822 | 884 | 1,085 | 960 | 1,233 | 1,634 |
| | 신수 | | 7,599 | 10,086 | 5,799 | 5,916 | 8,360 | 6,894 | 6,857 | 8,520 | 12,233 | 16,824 |
| 처리 | 계 | | 7,685 | 10,040 | 6,140 | 6,148 | 8,288 | 7,044 | 7,314 | 8,553 | 12,041 | 17,083 |
| | 기소 | 소계 | 525 | 792 | 528 | 423 | 332 | 415 | 293 | 303 | 345 | 190 |
| | | 구공판 | 402 | 595 | 392 | 375 | 280 | 354 | 256 | 274 | 301 | 147 |
| | | 구약식 | 123 | 197 | 136 | 48 | 52 | 61 | 37 | 29 | 44 | 43 |
| | 불기소 | 소계 | 6,835 | 8,818 | 5,310 | 5,376 | 7,524 | 6,278 | 6,755 | 7,831 | 11,157 | 16,227 |
| | | 무혐의 | 2,052 | 2,547 | 2,128 | 2,349 | 2,561 | 2,560 | 2,443 | 2,481 | 2,894 | 2,920 |
| | | 기소유예 | 175 | 986 | 394 | 165 | 133 | 121 | 99 | 104 | 171 | 95 |
| | | 기소중지 | 28 | 36 | 12 | 24 | 58 | 91 | 71 | 45 | 79 | 74 |
| | | 기타 | 4,580 | 5,249 | 2,776 | 2,838 | 4,772 | 3,506 | 4,142 | 5,201 | 8,013 | 13,138 |
| | 이송 | 소년보호 | - | - | - | - | - | - | - | - | - | |
| | | 가정보호 | - | - | - | - | - | - | - | - | - | |
| | | 타관 | 325 | 430 | 302 | 349 | 432 | 351 | 266 | 419 | 539 | 666 |
| | | 성매매 | - | - | - | - | - | - | - | - | - | |
| 미제 | | | 441 | 812 | 529 | 488 | 894 | 734 | 628 | 927 | 1,425 | 1,375 |

## | 표 5-40 | 외국인 사건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접수 | 계 | | 39,871 | 34,635 | 37,143 | 33,121 | 35,281 | 38,674 | 48,277 | 54,200 | 46,928 | 45,068 |
| | 구 수 | | 885 | 1,049 | 690 | 757 | 821 | 775 | 1,283 | 1,049 | 1,257 | 1,145 |
| | 신 수 | | 38,986 | 33,586 | 36,453 | 32,364 | 34,460 | 37,899 | 46,994 | 53,151 | 45,671 | 43,923 |
| 처리 | 계 | | 38,870 | 33,976 | 36,436 | 32,365 | 34,561 | 37,615 | 47,280 | 53,001 | 45,867 | 43,671 |
| | 기소 | 소 계 | 14,495 | 11,846 | 13,999 | 12,584 | 13,965 | 13,863 | 16,535 | 18,332 | 14,944 | 13,789 |
| | | 구공판 | 3,353 | 2,066 | 2,160 | 2,208 | 2,451 | 2,894 | 3,979 | 3,985 | 3,974 | 4,162 |
| | | 구약식 | 11,142 | 9,780 | 11,839 | 10,376 | 11,514 | 10,969 | 12,556 | 14,347 | 10,970 | 9,627 |
| | 불기소 | 소 계 | 22,464 | 20,583 | 20,895 | 18,441 | 19,093 | 22,100 | 28,377 | 31,609 | 28,173 | 27,097 |
| | | 무혐의 | 3,053 | 2,823 | 3,003 | 3,040 | 3,410 | 4,138 | 5,981 | 6,832 | 5,840 | 5,175 |
| | | 기소유예 | 12,339 | 8,848 | 10,035 | 7,950 | 7,227 | 8,308 | 10,246 | 11,788 | 9,960 | 9,130 |
| | | 기소중지 | 3,210 | 4,721 | 3,163 | 3,026 | 3,405 | 4,191 | 5,642 | 5,863 | 5,325 | 5,385 |
| | | 기 타 | 3,862 | 4,191 | 4,694 | 4,425 | 5,051 | 5,463 | 6,508 | 7,126 | 7,048 | 7,407 |
| | 이송 | 소년보호 | 10 | 21 | 25 | 29 | 38 | 31 | 45 | 48 | 57 | 61 |
| | | 가정보호 | 50 | 22 | 41 | 39 | 96 | 145 | 314 | 350 | 303 | 365 |
| | | 타 관 | 1,838 | 1,499 | 1,471 | 1,266 | 1,366 | 1,468 | 2,004 | 2,649 | 2,386 | 2,320 |
| | | 성매매 | 13 | 5 | 5 | 6 | 3 | 8 | 5 | 13 | 4 | 6 |
| 미제 | | | 1,001 | 659 | 707 | 756 | 720 | 1,059 | 997 | 1,199 | 1,061 | 1,397 |

## | 표 5-41 |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형사사건

(단위 : 명)

| 연도별 \ 구분 | | 발생 | | | | | | | 미군인 범죄에 대한 재판권행사 | 주한미군 지위협정사건 전체범죄에 대한행사 |
|---|---|---|---|---|---|---|---|---|---|---|
| | | 총계 | 미측 관할 제외 총계 | 미군인 | | | | 미군속 등 | | |
| | | | | 계 | 미측 관할 | 공소권 없음 | 미측관할 및 공소권 없음 제외 | | | |
| '09 | 건 | 364 | 336 | 258 | 28 | 82 | 148 | 106 | 73(49.3%) | 179 |
| | 명 | 455 | 427 | 325 | 28 | 103 | 194 | 130 | 79(40.7%) | 209 |
| '10 | 건 | 419 | 399 | 316 | 20 | 131 | 165 | 103 | 102(61.8%) | 205 |
| | 명 | 491 | 471 | 380 | 20 | 148 | 212 | 111 | 111(52.4%) | 222 |
| '11 | 건 | 397 | 380 | 298 | 17 | 158 | 123 | 99 | 81(65.9%) | 180 |
| | 명 | 456 | 439 | 341 | 17 | 177 | 147 | 115 | 92(62.6%) | 207 |
| '12 | 건 | 344 | 322 | 264 | 22 | 158 | 84 | 80 | 64(76.2%) | 144 |
| | 명 | 379 | 357 | 294 | 22 | 175 | 97 | 85 | 70(72.2%) | 155 |
| '13 | 건 | 365 | 354 | 273 | 11 | 134 | 128 | 92 | 89(69.5%) | 181 |
| | 명 | 403 | 392 | 305 | 11 | 163 | 131 | 98 | 98(74.8%) | 196 |
| '14 | 건 | 405 | 388 | 286 | 17 | 146 | 123 | 119 | 93(75.6%) | 212 |
| | 명 | 433 | 416 | 300 | 17 | 152 | 131 | 133 | 97(74.0%) | 230 |
| '15 | 건 | 387 | 370 | 265 | 17 | 138 | 110 | 122 | 78(70.9%) | 200 |
| | 명 | 419 | 402 | 289 | 17 | 152 | 120 | 130 | 82(68.3%) | 212 |
| '16 | 건 | 388 | 339 | 293 | 49 | 170 | 74 | 95 | 68(91.9%) | 163 |
| | 명 | 426 | 377 | 326 | 49 | 198 | 79 | 100 | 71(89.9%) | 171 |
| '17 | 건 | 374 | 340 | 265 | 34 | 153 | 78 | 109 | 58(74.4%) | 167 |
| | 명 | 415 | 381 | 295 | 34 | 169 | 92 | 120 | 62 (67.4) | 182 |
| '18 | 건 | 351 | 312 | 296 | 39 | 186 | 71 | 55 | 69(97.1%) | 124 |
| | 명 | 378 | 339 | 319 | 39 | 202 | 78 | 59 | 70(89.7%) | 129 |

※ '공소권없음'은 미군인 범죄로 집계는 되었으나, 친고죄의 고소취소나 교통사고의 종합보험 가입의 사유로 재판관할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등임

※ 2003년부터는 재판권행사율 산정 시 '공소권없음'에 해당하는 사건은 분모에 산입하지 않음

# 2. 구속영장 발부 등

## | 표 5-42 | 구속영장 발부 및 처리

(단위 : 명)

| 연도 | 구분 | 구속영장 발부 현황 | | | | | 구속인원 처리현황 | | | | | | | | | |
|---|---|---|---|---|---|---|---|---|---|---|---|---|---|---|---|---|
| | | 청구 및 신청 | 기각 | | 발부 | 미집행 | 계 | 기소 | | | 소년(가정) 보호사건 송치 | 불기소 | | | | |
| | | | 검사 | 판사 | | | | 소계 | 구공판 | 구약식 | | 소계 | 기소유예 | 기소중지 | 혐의없음 | 기타 |
| '09 | 계 | 65,903 | 8,835 | 14,159 | 42,727 | 49 | 42,181 | 40,895 | 40,675 | 220 | 728 | 514 | 112 | 14 | 155 | 233 |
| | 검사 | 6,573 | - | 1,521 | 5,014 | - | 4,686 | 4,657 | 4,651 | 6 | 6 | 20 | 11 | 2 | 1 | 6 |
| | 사경 | 59,330 | 8,835 | 12,638 | 37,713 | 49 | 37,495 | 36,238 | 36,024 | 214 | 722 | 494 | 101 | 12 | 154 | 227 |
| '10 | 계 | 50,396 | 7,032 | 10,332 | 32,516 | 13 | 31,078 | 30,093 | 29,941 | 152 | 560 | 425 | 66 | 19 | 137 | 203 |
| | 검사 | 6,670 | - | 1,610 | 4,728 | - | 4,539 | 4,506 | 4,498 | 8 | 8 | 25 | 6 | 5 | 6 | 8 |
| | 사경 | 43,726 | 7,032 | 8,722 | 27,788 | 13 | 26,539 | 25,587 | 25,443 | 144 | 552 | 400 | 60 | 14 | 131 | 195 |
| '11 | 계 | 44,125 | 5,562 | 8,970 | 28,814 | - | 28,831 | 28,134 | 28,016 | 118 | 313 | 384 | 40 | 27 | 90 | 227 |
| | 검사 | 6,944 | - | 1,693 | 4,505 | - | 4,413 | 4,373 | 4,362 | 11 | 3 | 37 | 11 | 8 | 3 | 15 |
| | 사경 | 37,181 | 5,562 | 7,277 | 24,309 | - | 24,418 | 23,761 | 23,654 | 107 | 310 | 347 | 29 | 19 | 87 | 212 |
| '12 | 계 | 41,270 | 6,202 | 7,195 | 27,327 | - | 27,948 | 27,429 | 27,333 | 96 | 258 | 261 | 38 | 31 | 87 | 105 |
| | 검사 | 6,873 | - | 1,711 | 4,618 | - | 4,421 | 4,398 | 4,381 | 17 | 1 | 22 | 4 | 14 | 1 | 3 |
| | 사경 | 34,397 | 6,202 | 5,484 | 22,709 | - | 23,527 | 23,031 | 22,952 | 79 | 257 | 239 | 34 | 17 | 86 | 102 |
| '13 | 계 | 38,766 | 5,655 | 5,914 | 26,716 | - | 28,298 | 28,040 | 27,953 | 87 | 118 | 140 | 33 | 42 | 65 | 82 |
| | 검사 | 7,327 | - | 1,769 | 5,075 | - | 5,476 | 5,440 | 5,424 | 16 | - | 36 | 1 | 32 | 3 | 5 |
| | 사경 | 31,439 | 5,655 | 4,145 | 21,641 | - | 22,822 | 22,600 | 22,529 | 71 | 118 | 104 | 32 | 10 | 62 | 77 |
| '14 | 계 | 41,637 | 5,310 | 7,303 | 28,580 | - | 30,547 | 30,269 | 30,207 | 62 | 79 | 199 | 16 | 39 | 64 | 80 |
| | 검사 | 8,134 | - | 1,903 | 5,835 | - | 6,786 | 6,750 | 6,731 | 19 | - | 36 | 3 | 31 | 1 | 1 |
| | 사경 | 33,503 | 5,310 | 5,400 | 22,745 | - | 23,761 | 23,519 | 23,476 | 43 | 79 | 163 | 13 | 8 | 63 | 79 |
| '15 | 계 | 44,110 | 5,695 | 6,831 | 31,153 | - | 33,946 | 33,731 | 33,655 | 76 | 67 | 148 | 21 | 37 | 47 | 43 |
| | 검사 | 7,013 | - | 1,528 | 5,142 | - | 6,181 | 6,147 | 6,115 | 32 | - | 34 | 3 | 27 | 1 | 3 |
| | 사경 | 37,097 | 5,695 | 5,303 | 26,011 | - | 27,765 | 27,584 | 27,540 | 44 | 67 | 114 | 18 | 10 | 46 | 40 |
| '16 | 계 | 46,198 | 6,088 | 7,187 | 32,369 | - | 35,154 | 35,010 | 34,948 | 62 | 25 | 119 | 6 | 36 | 34 | 43 |
| | 검사 | 8,165 | - | 1,812 | 5,889 | - | 7,015 | 6,995 | 6,974 | 21 | - | 20 | - | 19 | - | 1 |
| | 사경 | 38,033 | 6,088 | 5,375 | 26,480 | - | 28,139 | 28,015 | 27,974 | 41 | 25 | 99 | 6 | 17 | 34 | 42 |
| '17 | 계 | 41,701 | 6,574 | 6,682 | 28,340 | - | 31,355 | 31,185 | 31,126 | 59 | 19 | 151 | 6 | 39 | 40 | 66 |
| | 검사 | 5,919 | - | 1,485 | 4,414 | - | 5,706 | 5,670 | 5,658 | 12 | 0 | 36 | 0 | 30 | 3 | 3 |
| | 사경 | 35,782 | 6,574 | 5,197 | 23,926 | - | 25,649 | 25,515 | 25,468 | 47 | 19 | 115 | 6 | 9 | 37 | 63 |
| '18 | 계 | 35,946 | 5,871 | 5,585 | 24,438 | - | 27,525 | 27,388 | 27,332 | 56 | 20 | 117 | 6 | 20 | 32 | 59 |
| | 검사 | 4,225 | - | 1,118 | 3,095 | - | 4,584 | 4,559 | 4,534 | 25 | 1 | 24 | 2 | 18 | 1 | 3 |
| | 사경 | 31,721 | 5,871 | 4,467 | 21,343 | - | 22,941 | 22,829 | 22,798 | 31 | 19 | 93 | 4 | 2 | 31 | 56 |

## 3. 구속적부심사

| 표 5-43 |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접수 | 계 | 3,469 | 2,643 | 2,293 | 2,052 | 1,746 | 2,127 | 2,117 | 2,353 | 2,125 | 1,994 |
| | 구 수 | - | - | - | - | - | - | - | - | - | - |
| | 신 수 | 3,469 | 2,643 | 2,293 | 2,052 | 1,746 | 2,127 | 2,117 | 2,353 | 2,125 | 1,994 |
| 처리 | 계 | 3,469 | 2,643 | 2,293 | 2,052 | 1,717 | 2,127 | 2,117 | 2,353 | 2,125 | 1,993 |
| | 석 방 | 1,230 | 831 | 609 | 439 | 304 | 441 | 344 | 355 | 301 | 240 |
| | 기 각 | 2,192 | 1,778 | 1,652 | 1,573 | 1,379 | 1,656 | 1,748 | 1,972 | 1,795 | 1,730 |
| | 취 하 | 47 | 34 | 32 | 40 | 34 | 30 | 25 | 26 | 29 | 23 |
| 심사중 | | - | - | - | - | - | - | - | - | - | 1 |

## 4.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표 5-44 | 항 고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접수 | 계 | 37,693 | 41,505 | 39,890 | 24,365 | 48,642 | 51,995 | 55,140 | 53,168 | 57,306 | 65,456 |
| | 구 수 | 2,463 | 3,312 | 3,419 | 1,804 | 3,447 | 3,327 | 4,386 | 4,505 | 4,825 | 5,435 |
| | 신 수 | 35,230 | 38.193 | 36,471 | 22,561 | 45,195 | 48,668 | 50,754 | 48,663 | 52,481 | 60,021 |
| 처리 | 계 | 34,024 | 38,094 | 36,554 | 22,574 | 45,312 | 47,602 | 50,632 | 48,341 | 51,886 | 57,524 |
| | 기소명령 | 20 | 74 | 98 | 292 | 176 | 201 | 121 | 117 | 96 | 50 |
| | 재기수사명령 | 3,211 | 2,562 | 2,671 | 1,795 | 3,060 | 3,606 | 3,436 | 3,067 | 3,646 | 4,402 |
| | 주문변경명령 | 32 | 65 | 96 | 118 | 103 | 114 | 90 | 255 | 240 | 140 |
| | 항고기각 | 25,989 | 31,713 | 30,284 | 19,178 | 37,736 | 39,618 | 42,984 | 40,305 | 42,247 | 43,628 |
| | 각 하 | 4,772 | 3,680 | 3,405 | 1,191 | 4,237 | 4,063 | 4,001 | 4,597 | 5,648 | 9,304 |
| 미제 | | 3,669 | 3,411 | 3,336 | 1,791 | 3,330 | 4,393 | 4,508 | 4,827 | 5,440 | 7,932 |

## | 표 5-45 | 재항고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접수 | 계 | 5,415 | 4,828 | 4,867 | 2,244 | 2,651 | 2,936 | 3,110 | 2,669 | 3,754 | 4,300 |
| | 구 수 | 1,126 | 1,499 | 1,062 | 602 | 1,110 | 919 | 461 | 348 | 465 | 523 |
| | 신 수 | 4,289 | 3,329 | 3,805 | 1,642 | 1,541 | 2,017 | 2,649 | 2,321 | 3,289 | 3,777 |
| 처리 | 계 | 3,916 | 3,766 | 3,184 | 1,737 | 1,732 | 2,476 | 2,762 | 2,204 | 3,231 | 3,392 |
| | 기소명령 | 1 | - | - | - | - | - | - | - | - | - |
| | 재기수사명령 | 137 | 120 | 161 | 122 | 72 | 52 | 72 | 59 | 61 | 56 |
| | 주문변경명령 | - | - | - | - | - | - | 1 | - | - | - |
| | 항고기각 | 525 | 742 | 703 | 307 | 928 | 1,501 | 1,722 | 1,655 | 2,170 | 2,247 |
| | 각 하 | 3,253 | 2,904 | 2,320 | 1,308 | 732 | 923 | 967 | 490 | 1,000 | 1,089 |
| 미제 | | 1,499 | 1,062 | 1,683 | 507 | 919 | 460 | 348 | 465 | 523 | 908 |

## | 표 5-46 | 재정신청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심사중 | | 4,076 | 5,061 | 7,168 | 2,652 | 14,688 | 16,037 | 19,377 | 22,165 | 25,061 | 29,406 |
| 접수 | 계 | 12,146 | 14,861 | 14,129 | 7,740 | 18,884 | 20,771 | 21,043 | 19,393 | 21,285 | 24,212 |
| | 공소제기명령 | - | 4 | - | - | - | - | - | - | - | - |
| | 고법송부 | 12,142 | 14,854 | 14,129 | 7,739 | 18,884 | 20,771 | 21,043 | 19,393 | 21,285 | 24,209 |
| | 신청취소 | 4 | 3 | - | 1 | - | - | - | - | - | 3 |
| 처리 | 계 | 10,499 | 13,843 | 12,048 | 7,080 | 14,419 | 18,007 | 19,461 | 16,605 | 18,389 | 19,864 |
| | 신청기각 | 10,293 | 13,507 | 11,810 | 6,911 | 14,231 | 17,738 | 19,184 | 16,392 | 18,014 | 19,586 |
| | 공소제기결정 | 116 | 216 | 133 | 105 | 118 | 150 | 160 | 86 | 171 | 106 |
| | 신청취소 | 90 | 120 | 105 | 64 | 70 | 119 | 117 | 127 | 204 | 172 |

# 5. 형의 집행

### | 표 5-47 | 사형집행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계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03 ~ '07 | 2008 | '09 ~ '16 | 2017 | 2018 |
|---|---|---|---|---|---|---|---|---|---|---|---|
| 집행인원 | - | - | - | - | - | - | - | - | - | - | - |
| 기 타 (사면·감형 등) | 19 | 2 | 5 | 2 | - | 4 | - | 6 | - | - | - |

### | 표 5-48 | 벌과금 집행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 조정금액 | 처분금액 | | | | 집행미제액 |
|---|---|---|---|---|---|---|
| | | 현금집행 | 유치집행 | 기타처분 금액 | 계 | |
| 2009 | 31,246,323,901 | 1,565,687,001 | 3,522,154,830 | 278,036,413 | 5,365,878,244 | 25,880,445,656 |
| 2010 | 31,517,871,678 | 1,407,365,718 | 3,766,487,989 | 342,982,267 | 5,516,835,974 | 26,001,035,705 |
| 2011 | 31,073,627,198 | 1,361,572,755 | 3,360,866,184 | 229,632,610 | 4,952,071,549 | 26,121,555,647 |
| 2012 | 30,812,230,452 | 1,411,087,487 | 2,937,264,777 | 302,088,236 | 4,650,440,500 | 26,161,789,951 |
| 2013 | 30,255,449,022 | 1,478,847,909 | 2,500,582,716 | 238,671,053 | 4,218,101,678 | 26,037,347,344 |
| 2014 | 30,338,793,001 | 1,515,336,230 | 2,437,519,838 | 212,084,718 | 4,164,940,786 | 26,173,852,215 |
| 2015 | 30,427,117,765 | 1,485,721,253 | 2,172,718,742 | 285,497,041 | 3,943,937,036 | 26,483,180,729 |
| 2016 | 30,973,951,033 | 1,477,985,331 | 2,702,019,260 | 180,568,827 | 4,360,573,419 | 26,613,377,614 |
| 2017 | 31,479,966,569 | 1,440,018,684 | 2,920,347,012 | 148,669,665 | 4,509,035,361 | 26,970,931,208 |
| 2018 | 32,367,440,507 | 1,302,533,747 | 3,123,518,750 | 652,849,501 | 5,078,901,998 | 27,288,538,509 |

※ 조정금액은 당해년도 벌과금 조정총액에서 촉탁금액을 감액한 실조정금액
※ 기타 처분금액은 사회봉사 집행, 집행불능 결정, 공제(미결구금일수 통산)금액의 합계액
※ 집행미제액은 사회봉사집행 중, 집행정지, 순미제 금액의 합계액

# 6. 사 면

| 표 5-49 | 사면

(단위 : 명)

| 구 분 / 실시일자 | 일반사면 | 특별사면 | 일반감형 | 특별감형 | 일반복권 | 특별복권 |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비 고 |
|---|---|---|---|---|---|---|---|---|
| '82. 1. 1. | - | 11 | - | - | - | - | - | 징계변호사 |
| '82. 3. 3. | - | 1,419 (488) | - | 545 (248) | - | 238 (233) | - | 12대 대통령취임 1주년 |
| '83. 3. 15. | - | | - | 2 | - | - | - | 미문화원 방화사건 |
| '83. 8. 12. | - | 77 (1) | - | 10 | - | 551 (257) | - | 광복절 |
| '83. 12. 23. | - | 36 | - | - | - | 142 (66) | - | 성탄절 |
| '84. 8. 14. | - | 43 | - | 2 | - | 307 (71) | 364 (50) | 광복절 |
| '84. 10. 2. | - | - | - | 177 (40) | - | - | - | 개천절 |
| '85. 3. 2. | - | 1,615 (393) | - | 512 (186) | - | - | - | 대통령취임 4주년 |
| '85. 8. 15. | - | - | - | 4 | - | - | - | 40주년 광복절(국가유공자등) |
| '87. 7. 10. | - | 1,819 (7) | - | - | - | 401 (21) | 115 (43) | 7·1대통령담화관련 |
| '88. 2. 27. | - | 4,214 (788) | - | 835 (185) | - | 992 (665) | 334 (19) | 제13대 대통령취임 |
| '88. 12. 21. | - | 1,113 (20) | - | 96 (5) | - | 365 (31) | 155 (6) | 11·26 대통령특별 담화관련 |
| '90. 4. 12. | - | 1 | - | - | - | - | - | 김현희 |
| '91. 2. 25. | - | 914 (187) | - | 565 (187) | - | - | - | 대통령취임 3주년 |
| '91. 5. 25. | - | - | - | 30 (9) | - | - | - | |
| '91. 12. 24. | - | 1 | - | - | - | 1 | - | |
| '92. 12. 24. | - | 9 | - | 1 | - | 12 | 2 | |
| '93. 3. 6. | - | 34,147 (590) | - | 1,076 (167) | - | 2,987 (81) | 2,703 (66) | 제14대 대통령취임 |
| '93. 5. 28. | - | 81 (75) | - | - | - | - | - | 광주민주화운동관련 |

| 구 분 / 실시일자 | 일반사면 | 특별사면 | 일반감형 | 특별감형 | 일반복권 | 특별복권 |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비 고 |
|---|---|---|---|---|---|---|---|---|
| '93. 12. 24. | - | 137 | - | - | - | 24 | 26 | 전교조 관련 |
| '95. 8. 15. | - | 1,269 (103) | - | 426 (46) | - | 528 (29) | 318 (23) | 8·15 광복절 |
| '95. 12. 2. | 일반사면(대통령령 제14818호) | | | | | | | 경미한 행정법규위반자 및 징계공무원 |
| '96. 2. 25. | - | 1 | - | - | - | - | 22 | 대통령취임 3주년 |
| '96. 8. 15. | - | - | - | - | - | 5 | 6 | 광복 51주년 경축 |
| '97. 10. 3. | - | 1 | - | - | - | 8 | 14 | 개천절기념 |
| '97. 12. 22. | - | 17 | - | - | - | - | 8 | 전직대통령 등 |
| '98. 3. 13. | - | 2,058 (231) | - | 1,258 (61) | - | 806 | 30,681 | 제15대 대통령 취임 기념 |
| '98. 8. 15. | - | 18 (3) | - | 13 | - | 1,402 (5) | 3,406 (12) | 건국 50주년 경축 |
| '99. 2. 25. | - | 2,707 (2) | - | 12 | - | 1,088 (28) | 3,501 (50) |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
| '99. 8. 15. | - | 40 (1) | - | 7 | - | 256 (9) | 788 (16) | 광복 54주년 경축 |
| '00. 8. 15. | - | 3,881 (58) | - | 810 (8) | - | 525 (3) | 23,148 (163) | 광복 55주년 경축 |
| '02. 7. 10. | 월드컵 경축 | - | - | - | - | - | - | 운전면허벌점 등 감면 4,810,000명 |
| '02. 12. 31. | - | 54 | - | 4 | - | 25 | 39 | 복역중인 외국인 51명 잔형집행 면제포함 |
| '03. 4. 30. | - | 38 (1) | - | - | - | 431 | 955 (5) | 제16대 대통령 취임(공안사범 사면) |
| '03. 8. 15. | - | 2,363 (502) | - | 675 (10) | - | 170 | 21,417 | 광복 58주년 경축 |
| '04. 5. 26. | - | 1 | - | - | - | 6 | 62 | 부처님 오신 날 경축 |
| '05. 8. 15. | - | 2,528 (62) | - | 567 (20) | - | 1,483 (1) | 9,515 (19) | 광복 60주년경축(운전면허 벌점 등 감면 4,207,152명) |
| '06. 8. 15. | - | 46 | - | 19 | - | 27 | 50 | 광복 61주년경축(건설업체 벌점 삭제 등 4,390명) |
| '07. 2. 12. | - | 28 | - | 12 | - | 276 | 118 |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 |
| '08. 1. 1. | - | 8 | - | 14 | - | 18 | 35 | |
| '08. 6. 4. | - | 119 | - | 31 | - | - | - | 새 정부 출범 100일 기념(운전면허 벌점 등 감면 2,828,917명) |

| 구 분 / 실시일자 | 일반사면 | 특별사면 | 일반감형 | 특별감형 | 일반복권 | 특별복권 |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비 고 |
|---|---|---|---|---|---|---|---|---|
| '08. 8. 15. | - | 1,401 (8) | - | 178 | - | 1,951 | 8,797 (16) | 광복 63주년, 건국 60주년 경축 (징계사면 328,335명, 소형선박 조종사면허취득결격기간 해제 500명) |
| '09. 8. 15. | - | 1,947 (6) | - | 375 | - | - | 7,145 (2) | 제64주년 광복절, 건국 61주년 경축 |
| '09. 12. 31. | - | 1 | - | - | - | - | - | |
| '10. 8. 15. | - | 25 | - | 15 | - | 2,406 | 47 | 제65주년 광복절 기념 (징계사면 5,685) |
| '12. 1. 12. | - | 595 | - | 185 | - | - | 165 | |
| '13. 1. 31. | - | 16 | - | 3 | - | 18 | 18 | |
| '14. 1. 29. | - | 516 (1) | - | 113 | - | - | 5,296 (1) |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2,887,601명 등 행정제재 감면 총 2,896,499명 |
| '15. 8. 15. | - | 877 (5) | - | 246 | - | 1 | 5,403 (5) | 제70주년 광복절 기념(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2,200,925명 등 행정제재 감면 총 2,206,924명) |
| '16. 8. 15. | - | 858 (6) | | 261 | | 3 | 3,754 (6) | 제71주년 광복절 기념(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1,420,049명 등 행정제재 감면 총 1,422,493명) |
| '17. 12. 30. | - | 6,182 (4) | - | 245 | - | 17 | 6,444 (4) |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1,650,975명<br>어업면허·허가 행정제재 감면 1,716명 |

※ ( )는 국방부 소관

# 7. 형사보상금 지급

| 표 5-50 |

(단위 : 천원, 명)

| 구분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예산액 | 4,213,780 | 3,961,348 | 4,080,000 | 7,972,000 | 11,000,000 | 14,000,000 | 20,000,000 | 24,000,000 | 27,500,000 | 33,213,000 |
| 보상인원 | 342 | 5,155 | 15,116 | 39,519 | 29,015 | 34,363 | 14,546 | 8,713 | 7,374 | 5,073 |
| 지급금액 | 10,610,675 | 17,362,009 | 22,565,518 | 53,178,959 | 57,671,711 | 88,165,833 | 52,974,617 | 31,768,637 | 36,038,809 | 36,736,416 |

※ 형사보상금 = 피고인 보상금 + 피의자 보상금 + 무죄비용 보상금 + 기타

# 8. 마약보상금 지급

| 표 5-51 |

(단위 : 천원)

| 종 류 \ 구 분 | 민간인 보상금 | 공무원 보상금 | 계 |
|---|---|---|---|
| 예 산 액 | 120,000 | 180,388 | 300,388 |
| 2018 | 120,000<br>(115) | 180,388<br>(1,413) | 300,388 |

※ ( )는 인원

# 9. 해외연수

## 가. 검사 장기 해외연수

| 표 5-52 |

(단위 : 명)

| 연도 \ 지역 | 계 | 미국 | 영국 | 독일 | 프랑스 | 일본 | 중국 | 스페인 | 러시아 | 캐나다 | 호주 | 오스트리아 | 이집트 | 네덜란드 | 벨기에 | 싱가포르 | 칠레 | 이탈리아 | 인도 | 터키 | 스웨덴 | 아랍에미레이트 | 스위스 |
|---|---|---|---|---|---|---|---|---|---|---|---|---|---|---|---|---|---|---|---|---|---|---|---|
| 2005 | 28 | 14 | 1 | 2 | 1 | 2 | 2 | 1 | - | 1 | 1 | 1 | 1 | 1 | - | - | - | - | - | - | - | - | - |
| 2006 | 50 | 25 | 2 | 5 | 2 | 3 | 3 | 1 | - | 2 | 1 | 1 | 1 | 1 | 1 | 1 | 1 | - | - | - | - | - | - |
| 2007 | 53 | 26 | 3 | 4 | 2 | 3 | 3 | 1 | - | 3 | 2 | 1 | - | 1 | 1 | - | 1 | 1 | 1 | - | - | - | - |
| 2008 | 54 | 21 | 4 | 5 | 2 | 3 | 4 | 2 | 1 | 4 | 2 | 1 | - | 2 | 1 | - | 1 | 1 | 1 | - | - | - | - |
| 2009 | 53 | 21 | 4 | 5 | 3 | 3 | 4 | 2 | - | 3 | 1 | 1 | - | 2 | 1 | - | 1 | 2 | - | - | - | - | - |
| 2010 | 54 | 24 | 4 | 5 | 2 | 3 | 3 | 3 | - | 3 | 2 | 1 | 1 | 1 | 1 | - | - | 1 | - | - | - | - | - |
| 2011 | 54 | 20 | 2 | 5 | 2 | 5 | 6 | 3 | - | 6 | 2 | 1 | - | 1 | - | - | - | - | - | 1 | - | - | - |
| 2012 | 54 | 23 | 3 | 5 | 3 | 3 | 5 | 2 | - | 4 | 3 | 1 | - | 1 | - | - | - | 1 | - | - | - | - | - |
| 2013 | 54 | 25 | 3 | 4 | 3 | 2 | 3 | 4 | - | 4 | 3 | 1 | - | 1 | - | - | - | 1 | - | - | - | - | - |
| 2014 | 52 | 23 | 2 | 5 | 3 | 2 | 5 | 3 | - | 5 | 2 | 1 | - | 1 | - | - | - | - | - | - | - | - | - |
| 2015 | 52 | 24 | 3 | 5 | 3 | 2 | 3 | 4 | - | 4 | 2 | 1 | - | 1 | - | - | - | - | - | - | - | - | - |
| 2016 | 52 | 20 | 3 | 5 | 3 | 4 | 3 | 2 | - | 4 | 2 | 1 | - | 1 | 1 | 1 | - | - | - | - | 1 | 1 | - |
| 2017 | 57 | 26 | 3 | 2 | 3 | 2 | 5 | 2 | - | 4 | 1 | 1 | - | 2 | 1 | 1 | 1 | - | - | - | 2 | - | 1 |
| 2018 | 57 | 37 | 1 | 6 | 1 | 2 | 2 | 1 | - | 3 | 1 | 1 | - | 1 | - | 1 | - | - | - | - | - | - | - |

※ 타부처 주관 포함

## 나. 검사 외 검찰공무원 장기 해외연수

| 표 5-53 |

(단위 : 명)

| 지역 / 연도 | 계 | 미국 | 영국 | 호주 | 독일 | 일본 | 중국 | 캐나다 | 태국 | 스페인 | 체코 | 멕시코 | 몽골 | 네덜란드 |
|---|---|---|---|---|---|---|---|---|---|---|---|---|---|---|
| 2005 | 4 | 1 | 1 | - | - | - | - | - | - | 1 | 1 | - | - | - |
| 2006 | 4 | 1 | - | - | - | - | 1 | 2 | - | - | - | - | - | - |
| 2007 | 8 | 2 | - | - | - | 2 | 1 | 1 | 1 | 1 | - | - | - | - |
| 2008 | 7 | 3 | - | - | - | 1 | 1 | 1 | - | 1 | - | - | - | - |
| 2009 | 5 | 2 | 1 | - | - | - | 1 | 1 | - | - | - | - | - | - |
| 2010 | 6 | 3 | - | - | - | 1 | 1 | 1 | - | - | - | - | - | - |
| 2011 | 6 | 3 | 1 | - | - | - | 1 | - | - | - | - | 1 | - | - |
| 2012 | 5 | 3 | - | - | - | - | 1 | 1 | - | - | - | - | - | - |
| 2013 | 7 | 3 | - | 1 | - | 1 | 1 | - | - | - | - | - | 1 | - |
| 2014 | 7 | 3 | - | - | 1 | - | 2 | 1 | - | - | - | - | - | - |
| 2015 | 6 | 3 | - | - | - | - | 2 | 1 | - | - | - | - | - | - |
| 2016 | 4 | 3 | - | - | - | - | - | 1 | - | - | - | - | - | - |
| 2017 | 5 | 3 | - | - | - | 1 | - | 1 | - | - | - | - | - | - |
| 2018 | 7 | 3 | 1 | - | - | - | 2 | - | - | - | - | - | - | 1 |

※ 타부처 주관 포함

# 제3절 범죄예방업무 통계

## 1. 감호처분

### 가. 감호청구

| 표 5-54 | 감호종류별 청구인원

| 구 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계 | 389 | 332 | 290 | 244 | 254 | 156 | 155 | 118 | 99 | 77 |
| 보호감호 | - | - | - | - | - | - | - | - | - | - |
| 치료감호 | 389 | 332 | 290 | 244 | 254 | 156 | 155 | 118 | 99 | 77 |

| 표 5-55 | 죄명별 청구인원

| 연도 / 죄명 | 2009 | | 2010 | | 2011 | | 2012 | | 2013 | | 2014 | | 2015 | | 2016 | | 2017 | | 2018 | |
|---|---|---|---|---|---|---|---|---|---|---|---|---|---|---|---|---|---|---|---|---|
| | 보호감호 | 치료감호 | 보호감호 | 치료감호 | 보호감호 | 치료감호 | 보호감호 | 치료감호 | 보호감호 | 치료감호 | 보호감호 | 치료감호 | 보호감호 | 치료감호 | 보호감호 | 치료감호 | 보호감호 | 치료감호 | 보호감호 | 치료감호 |
| 계 | - | 389 | - | 332 | - | 290 | - | 244 | - | 254 | - | 156 | - | 155 | - | 118 | - | 99 | - | 77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 | 23 | - | 27 | - | 1 | - | 7 | - | 5 | - | 1 | - | - | - | 1 | - | - | - | -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34 | - | 76 | - | 36 | - | 42 | - | 36 | - | 27 | - | 18 | - | 1 | - | - | - | - |
| 절도 | - | 11 | - | 9 | - | 30 | - | 14 | - | 7 | - | 11 | - | 5 | - | 10 | - | 8 | - | 2 |
| 강도 | - | 22 | - | 6 | - | 8 | - | 4 | - | 5 | - | 4 | - | 2 | - | 2 | - | 2 | - | - |
| 살인 | - | 68 | - | 47 | - | 10 | - | 27 | - | 40 | - | 22 | - | 29 | - | 17 | - | 9 | - | 9 |
| 강간 | - | 47 | - | 42 | - | 12 | - | 16 | - | 13 | - | 6 | - | 4 | - | 4 | - | 1 | - | 2 |
| 사기 | - | 10 | - | 5 | - | 40 | - | 10 | - | 10 | - | 4 | - | 3 | - | 0 | - | 2 | - | -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 - | 1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해·폭행 | - | 9 | - | 6 | - | 11 | - | 16 | - | 14 | - | 16 | - | 15 | - | 16 | - | 12 | - | 8 |
| 방화·실화 | - | 14 | - | 17 | - | 23 | - | 10 | - | 14 | - | 11 | - | 11 | - | 6 | - | 14 | - | 7 |
| 상해(폭행)치사 | - | 4 | - | 6 | - | 2 | - | - | - | - | - | 2 | - | 3 | - | 1 | - | - | - | 2 |
| 무고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146 | - | 90 | - | 115 | - | 98 | - | 110 | - | 52 | - | 65 | - | 60 | - | 51 | - | 47 |

## 나. 피보호감호자 수용

### | 표 5-56 | 죄명별 수용인원

| 죄명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계 | 84 | 101 | 120 | 135 | 119 | 104 | 100 | 62 | 31 | 17 |
| 강도 | 37 | 52 | 43 | 43 | 33 | 32 | 32 | 18 | 8 | 5 |
| 절도 | 5 | 17 | 18 | 23 | 23 | 19 | 16 | 10 | 3 | 3 |
| 폭력 | 2 | 5 | 5 | 4 | 4 | 2 | 2 | 0 | - | 1 |
| 성폭력 | - | - | 53 | 64 | 59 | 48 | 47 | 32 | 20 | 8 |
| 기타 | 40 | 27 | 1 | 1 | - | 3 | 3 | 2 | - | - |

### | 표 5-57 | 전과별 수용인원

| 전과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계 | 84 | 101 | 120 | 135 | 119 | 104 | 100 | 62 | 31 | 17 |
| 초범 | 9 | 7 | 10 | 8 | 7 | 6 | 7 | 3 | 3 | - |
| 2~3범 | 18 | 22 | 27 | 32 | 28 | 22 | 18 | 11 | 5 | 4 |
| 4~5범 | 30 | 38 | 41 | 47 | 39 | 31 | 32 | 20 | 10 | 4 |
| 6~7범 | 14 | 18 | 30 | 34 | 33 | 31 | 29 | 20 | 7 | 6 |
| 8~9범 | 6 | 9 | 7 | 8 | 7 | 8 | 7 | 4 | 3 | 2 |
| 10범 이상 | 7 | 7 | 5 | 6 | 5 | 6 | 7 | 4 | 3 | 1 |

### | 표 5-58 | 동기별 수용인원

| 동기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계 | 84 | 101 | 120 | 135 | 119 | 104 | 100 | 62 | 31 | 17 |
| 이욕(利慾)(생활비, 유흥비, 허영) | 80 | 90 | 108 | 120 | 105 | 101 | 98 | 62 | 31 | 17 |
| 원한·분노 | 2 | - | - | - | - | - | - | - | - | - |
| 취중 | 1 | 2 | 1 | 2 | 4 | 3 | 2 | - | - | - |
| 우연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1 | 9 | 11 | 13 | 10 | - | - | - | - | - |

### | 표 5-59 | 학력별 수용인원

| 학력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계 | 84 | 101 | 120 | 135 | 119 | 104 | 100 | 62 | 31 | 17 |
| 무 학 | 6 | 2 | 2 | 2 | 9 | 15 | 11 | 14 | - | - |
| 초 졸 | 28 | 23 | 27 | 34 | 40 | 31 | 36 | 14 | 7 | 8 |
| 중 졸 | 20 | 34 | 42 | 45 | 21 | 19 | 17 | 12 | 11 | 2 |
| 고 졸 | 26 | 39 | 47 | 52 | 47 | 38 | 35 | 22 | 13 | 7 |
| 대 졸 | 4 | 3 | 2 | 2 | 2 | 1 | 1 | - | - | - |

### | 표 5-60 | 직업별 수용인원

| 직업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계 | 84 | 101 | 120 | 135 | 119 | 104 | 100 | 62 | 31 | 17 |
| 노 동 | 13 | 29 | 38 | 45 | 22 | 29 | 30 | 12 | 1 | 3 |
| 종 업 원 | 8 | 40 | 42 | 53 | 32 | 16 | 14 | 6 | 1 | 1 |
| 농 업 | 2 | 3 | 3 | 3 | 1 | - | 1 | - | - | - |
| 상 업 | 9 | 25 | 29 | 27 | 13 | 10 | 9 | 8 | 3 | 1 |
| 기 타 | 52 | 4 | 8 | 7 | 51 | 49 | 46 | 36 | 26 | 12 |

### | 표 5-61 | 감호집행 기간별 수용인원

| 집행기간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계 | 84 | 101 | 120 | 135 | 119 | 104 | 100 | 62 | 31 | 17 |
| 1년 미만 | 16 | 18 | 25 | 17 | 10 | 5 | 4 | 7 | 3 | 3 |
| 1년 이상 ~ 2년 미만 | 22 | 17 | 24 | 28 | 20 | 13 | 11 | 7 | 4 | 7 |
| 2년 이상 ~ 3년 미만 | 21 | 22 | 22 | 30 | 30 | 23 | 12 | 10 | 7 | 1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25 | 20 | 18 | 27 | 27 | 24 | 22 | 7 | 1 |
| 4년 이상 | 17 | 19 | 29 | 42 | 32 | 36 | 49 | 16 | 10 | 5 |

## 다. 피치료감호자 수용

### | 표 5-62 | 죄명별 수용인원

| 죄명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계 | 824 | 887 | 948 | 1,021 | 1,122 | 1,149 | 1,180 | 1,093 | 1,096 | 1,038 |
| 살인 | 289 | 297 | 297 | 318 | 334 | 340 | 372 | 343 | 338 | 328 |
| 상해(폭행)치사 | 38 | 37 | 33 | 35 | 37 | 37 | 36 | 34 | 38 | 30 |
| 폭력 | 117 | 127 | 149 | 163 | 180 | 195 | 161 | 137 | 156 | 149 |
| 절도 | 70 | 80 | 70 | 66 | 64 | 58 | 68 | 60 | 59 | 58 |
| 방화 | 51 | 54 | 62 | 62 | 63 | 71 | 80 | 75 | 80 | 76 |
| 강도 | 55 | 53 | 50 | 40 | 45 | 54 | 57 | 52 | 48 | 48 |
| 성폭력 | 100 | 131 | 170 | 209 | 247 | 263 | 279 | 272 | 242 | 208 |
| 기타 | 104 | 108 | 117 | 128 | 152 | 131 | 127 | 120 | 135 | 141 |

### | 표 5-63 | 전과별 수용인원

| 전과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계 | 824 | 887 | 948 | 1,021 | 1,122 | 1,149 | 1,180 | 1,093 | 1,096 | 1,038 |
| 초범 | 537 | 566 | 596 | 664 | 721 | 759 | 769 | 728 | 721 | 671 |
| 2범 | 80 | 93 | 95 | 112 | 130 | 121 | 132 | 133 | 129 | 126 |
| 3범 | 44 | 46 | 58 | 63 | 63 | 70 | 77 | 61 | 65 | 57 |
| 4범 | 40 | 45 | 41 | 38 | 44 | 42 | 40 | 45 | 35 | 38 |
| 5범 이상 | 123 | 137 | 158 | 144 | 164 | 157 | 162 | 126 | 146 | 146 |

### | 표 5-64 | 병명별 수용인원

| 병명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계 | 824 | 887 | 948 | 1,021 | 1,122 | 1,149 | 1,180 | 1,093 | 1,096 | 1,038 |
| 조현병 | 428 | 355 | 382 | 450 | 480 | 509 | 533 | 507 | 519 | 528 |
| 정신지체 | 72 | 100 | 82 | 86 | 89 | 104 | 102 | 97 | 93 | 84 |
| 조울증 | 58 | 64 | 42 | 54 | 57 | 72 | 81 | 85 | 84 | 71 |
| 성격(인격)장애 | 17 | 52 | 33 | 38 | 44 | 38 | 35 | 27 | 27 | 23 |
| 간질 | 12 | 25 | 25 | 28 | 26 | 20 | 14 | 12 | 10 | 10 |
| 약물중독 | 56 | 68 | 50 | 71 | 85 | 176 | 175 | 130 | 35 | 46 |
| 기타 | 181 | 223 | 334 | 294 | 341 | 230 | 240 | 235 | 328 | 276 |

### | 표 5-65 | 학력별 수용인원

| 학력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계 | 824 | 887 | 948 | 1,021 | 1,122 | 1,149 | 1,180 | 1,093 | 1,096 | 1,038 |
| 무 학 | 38 | 42 | 55 | 59 | 42 | 41 | 48 | 44 | 73 | 70 |
| 초 졸 | 128 | 130 | 131 | 129 | 138 | 143 | 141 | 139 | 189 | 163 |
| 중 졸 | 165 | 194 | 212 | 202 | 222 | 230 | 227 | 202 | 186 | 173 |
| 고 졸 | 347 | 377 | 389 | 444 | 497 | 494 | 512 | 475 | 478 | 475 |
| 대 졸 | 146 | 144 | 161 | 187 | 223 | 241 | 252 | 233 | 170 | 157 |

### | 표 5-66 | 직업별 수용인원

| 직업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계 | 824 | 887 | 948 | 1,021 | 1,122 | 1,149 | 1,180 | 1,093 | 1,096 | 1,038 |
| 노 동 | 55 | 81 | 83 | 89 | 103 | 104 | 102 | 85 | 94 | 93 |
| 종 업 원 | 32 | 33 | 26 | 35 | 43 | 94 | 67 | 53 | 46 | 40 |
| 농 업 | 30 | 37 | 33 | 32 | 29 | 28 | 28 | 27 | 27 | 31 |
| 상 업 | 13 | 9 | 7 | 11 | 10 | 41 | 7 | 40 | 22 | 17 |
| 무 직 | 547 | 589 | 629 | 669 | 732 | 759 | 745 | 695 | 693 | 658 |
| 기 타 | 147 | 138 | 170 | 185 | 205 | 123 | 231 | 193 | 214 | 199 |

### | 표 5-67 | 감호집행 기간별 수용인원

| 집행기간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계 | 824 | 887 | 948 | 1,021 | 1,122 | 1,149 | 1,180 | 1,093 | 1,096 | 1,038 |
| 1년 미만 | 313 | 313 | 320 | 293 | 434 | 548 | 279 | 283 | 220 | 195 |
| 1년 이상~2년 미만 | 172 | 198 | 195 | 225 | 188 | 126 | 199 | 181 | 230 | 167 |
| 2년 이상~3년 미만 | 106 | 107 | 129 | 135 | 126 | 115 | 173 | 133 | 156 | 178 |
| 3년 이상~4년 미만 | 58 | 81 | 81 | 104 | 110 | 99 | 126 | 115 | 103 | 116 |
| 4년 이상 | 175 | 188 | 223 | 264 | 264 | 261 | 403 | 381 | 387 | 382 |

## 라. 피보호감호자 교육훈련 및 기능자격취득

### | 표 5-68 | 교육훈련 인원

| 구분 \ 연도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계 | | 4 | 9 | 11 | 11 | 17 | 14 | 7 | 7 | – | 2 |
| 학과교육 | 소 계 | – | – | – | 2 | 4 | 12 | 7 | 6 | – | 2 |
| | 초 등 반 | – | – | – | – | – | – | – | – | – | – |
| | 중 등 반 | – | – | – | – | – | – | – | – | – | – |
| | 고 등 반 | – | – | – | 1 | – | 2 | – | – | – | – |
| | 학사고시반 | – | – | – | 1 | 4 | 10 | 7 | 6 | – | 2 |
| 직업훈련 | 소 계 | 4 | 9 | 11 | 9 | 13 | 2 | – | 1 | – | – |
| | 목 공 | – | – | – | – | – | – | – | – | – | – |
| | 미 (도) 장 | – | – | – | – | – | – | – | – | – | – |
| | 조 적 | – | – | – | – | – | – | – | – | – | – |
| | 타 일 | – | – | – | – | – | – | – | – | – | – |
| | 배 관 | – | – | – | – | – | – | – | – | – | – |
| | 전 기 | – | – | – | – | – | – | – | – | – | – |
| | 보일러시공 | – | – | – | – | 12 | – | – | – | – | – |
| | 이·미 용 | – | – | – | – | – | – | – | – | – | – |
| | 원 예 | – | – | – | – | – | – | – | – | – | – |
| | 양 재 | – | – | – | – | – | – | – | – | – | – |
| | 정 비 | – | – | – | – | 1 | 1 | – | – | – | – |
| | 정보기기 | 2 | – | – | – | – | – | – | – | – | – |
| | 기 타 | 2 | 9 | 11 | 9 | – | 1 | – | 1 | – | – |

### | 표 5-69 | 기능자격취득 인원

| 구분 \ 연도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계 | | 4 | 9 | 11 | 9 | 13 | 2 | – | 1 | – | 1 |
| 천안교도소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1·2기능사 | – | – | – | – | – | – | – | – | – | 1 |
| | 기능사보 | – | – | – | – | – | – | – | – | – | – |
| | 면 허 | – | – | – | – | – | – | – | – | – | – |
| 경북북부제3교도소 | 소 계 | 4 | 9 | 11 | 9 | 13 | 2 | – | 1 | – | – |
| | 1·2기능사 | 4 | 9 | 11 | 9 | 13 | 2 | – | 1 | – | – |
| | 기능사보 | – | – | – | – | – | – | – | – | – | – |
| | 면 허 | – | – | – | – | – | – | – | – | – | – |

## 마.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운영

| 표 5-70 | 피보호감호자 결정 인원

| 구분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계 | 42 | 24 | 39 | 25 | 38 | 33 | 39 | 59 | 53 | 31 |
| 가 출 소 | 15 | 17 | 19 | 17 | 37 | 33 | 23 | 53 | 43 | 23 |
| 가출소취소 | 27 | 7 | 7 | 8 | 1 | - | 16 | 6 | 10 | 8 |
| 집 행 면 제 | - | - | 13 | - | - | - | - | - | - | - |

| 표 5-71 | 피치료감호자 결정 인원

| 구분 \ 연도 | 293 | 271 | 295 | 265 | 268 | 330 | 354 | 456 | 320 | 326 |
|---|---|---|---|---|---|---|---|---|---|---|
| 계 | 3 | 3 | - | - | 2 | 1 | 4 | 2 | 3 | - |
| 종 료 | 283 | 260 | 275 | 255 | 247 | 275 | 266 | 394 | 226 | 246 |
| 가 종 료 | 7 | 8 | 20 | 10 | 19 | 54 | 84 | 60 | 91 | 80 |
| 가종료취소 | 8 | 7 | 8 | 20 | 10 | 19 | 54 | 84 | 60 | 91 |

## 바. 보호감호 가출소

| 표 5-72 | 감호집행 기간별 가출소 인원

| 구분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계 | 15 | 17 | 19 | 15 | 37 | 33 | 23 | 53 | 43 | 26 |
| 3년 미만 | 15 | 5 | 3 | 1 | 5 | - | - | 3 | 1 | 8 |
| 3년이상~4년 미만 | - | 3 | 8 | 4 | 6 | 5 | 5 | 6 | 6 | 6 |
| 4년이상~5년 미만 | - | 1 | 2 | 4 | 3 | 8 | 5 | 12 | 23 | 6 |
| 5년 이상 | - | 8 | 6 | 6 | 23 | 20 | 13 | 32 | 13 | 6 |

| 표 5-73 | 죄명별 가출소 인원

| 구분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계 | 15 | 17 | 19 | 15 | 37 | 33 | 23 | 53 | 43 | 26 |
| 절 도 | 2 | 2 | 4 | 3 | 7 | 9 | 9 | 10 | 12 | 3 |
| 강 도 | 10 | 10 | 8 | 7 | 13 | 9 | 5 | 20 | 11 | 10 |
| 폭력행위등 | - | - | 2 | 3 | 3 | 2 | - | 4 | 1 | - |
| 성 폭 력 | - | - | 5 | 2 | 14 | 13 | 9 | 19 | 17 | 13 |
| 기 타 | 3 | 5 | - | - | - | - | - | - | 2 | - |

| 표 5-74 | 전과별 가출소 인원

| 전과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계 | 15 | 17 | 19 | 15 | 37 | 33 | 23 | 53 | 43 | 26 |
| 초 범 | 4 | 2 | - | 3 | 2 | 2 | - | 4 | 2 | - |
| 2~3 범 | 4 | 5 | 2 | 3 | 6 | 10 | 6 | 9 | 8 | - |
| 4~5 범 | 4 | 4 | 7 | 3 | 14 | 11 | 5 | 14 | 13 | 6 |
| 6~7 범 | 2 | 4 | 6 | 3 | 11 | 8 | 7 | 17 | 14 | 10 |
| 8~9 범 | 1 | 1 | 4 | 1 | 1 | 1 | 4 | 5 | 3 | 4 |
| 10범 이상 | - | 1 | - | 2 | 3 | 1 | 1 | 4 | 3 | 6 |

## 사. 치료감호 종료·가종료

| 표 5-75 | 치료감호 기간별 종료·가종료 인원

| 기간 \ 연도 | 2009 | | 2010 | | 2011 | | 2012 | | 2013 | | 2014 | | 2015 | | 2016 | | 2017 | | 2018 | |
|---|---|---|---|---|---|---|---|---|---|---|---|---|---|---|---|---|---|---|---|---|
| | 종료 | 가종료 | 종료 | 가종료 | 종료 | 가종료 | 종료 | 가종료 | 종료 | 가종료 | 종료 | 가종료 | 종료 | 가종료 | 종료 | 가종료 | 종료 | 가종료 | 종료 | 가종료 |
| 계 | 3 | 283 | 3 | 260 | - | 275 | - | 255 | 2 | 247 | 1 | 275 | 4 | 266 | 2 | 393 | 3 | 226 | - | 252 |
| 1년 미만 | - | 117 | 3 | 60 | - | 55 | - | 48 | - | 47 | 1 | 65 | 2 | 59 | 1 | 68 | - | 11 | - | 40 |
| 1년 이상 2년 미만 | - | 67 | - | 108 | - | 126 | - | 107 | 1 | 94 | - | 94 | 2 | 72 | - | 80 | 2 | 51 | - | 39 |
| 2년 이상 3년 미만 | 1 | 40 | - | 40 | - | 39 | - | 47 | 1 | 43 | - | 36 | - | 41 | - | 62 | 1 | 26 | - | 41 |
| 3년 이상 | 2 | 59 | - | 52 | - | 55 | - | 53 | - | 63 | - | 80 | - | 94 | 1 | 183 | - | 138 | - | 132 |

## | 표 5-76 | 죄명별 종료·가종료 인원

| 죄명 \ 연도 | 2009 | | 2010 | | 2011 | | 2012 | | 2013 | | 2014 | | 2015 | | 2016 | | 2017 | | 2018 | |
|---|---|---|---|---|---|---|---|---|---|---|---|---|---|---|---|---|---|---|---|---|
| | 종료 | 가종료 | 종료 | 가종료 | 종료 | 가종료 | 종료 | 가종료 | 종료 | 가종료 | 종료 | 가종료 | 종료 | 가종료 | 종료 | 가종료 | 종료 | 가종료 | 종료 | 가종료 |
| 계 | 3 | 283 | 3 | 260 | - | 275 | - | 255 | 2 | 247 | 1 | 275 | 4 | 266 | 2 | 393 | 3 | 226 | - | 252 |
| 살인 | - | 32 | 1 | 19 | - | 23 | - | 33 | - | 33 | - | 42 | - | 27 | - | 77 | - | 48 | - | 35 |
| 상해(폭행)치사 | 1 | 25 | 1 | 7 | - | 3 | - | 2 | - | 3 | - | 5 | - | 6 | - | 10 | - | 2 | - | 8 |
| 폭력행위등 | - | 31 | 1 | 28 | - | 28 | - | 39 | - | 48 | - | 39 | 2 | 81 | - | 78 | 2 | 26 | - | 38 |
| 강간 | - | 20 | - | 5 | - | 3 | - | 7 | 1 | 9 | - | 31 | 1 | 16 | 1 | 50 | - | 56 | - | 54 |
| 강도 | - | 12 | - | 16 | - | 12 | - | 21 | - | 9 | - | 6 | - | 13 | 1 | 17 | - | 12 | - | 7 |
| 절도 | 2 | 21 | - | 27 | - | 38 | - | 26 | - | 23 | - | 24 | 1 | 13 | - | 26 | - | 16 | - | 19 |
| 방화,실화 | - | 18 | - | 19 | - | 15 | - | 18 | 1 | 17 | - | 10 | - | 10 | - | 32 | - | 11 | - | 19 |
| 기타 | - | 124 | - | 139 | - | 153 | - | 109 | - | 105 | 1 | 118 | - | 100 | - | 103 | 1 | 55 | - | 72 |

## | 표 5-77 | 전과별 종료·가종료 인원

| 죄명 \ 연도 | 2009 | | 2010 | | 2011 | | 2012 | | 2013 | | 2014 | | 2015 | | 2016 | | 2017 | | 2018 | |
|---|---|---|---|---|---|---|---|---|---|---|---|---|---|---|---|---|---|---|---|---|
| | 종료 | 가종료 | 종료 | 가종료 | 종료 | 가종료 | 종료 | 가종료 | 종료 | 가종료 | 종료 | 가종료 | 종료 | 가종료 | 종료 | 가종료 | 종료 | 가종료 | 종료 | 가종료 |
| 계 | 3 | 283 | 3 | 260 | - | 275 | - | 255 | 2 | 247 | 1 | 275 | 4 | 266 | 2 | 393 | 3 | 226 | - | 252 |
| 초범 | - | 100 | 1 | 122 | - | 120 | - | 90 | - | 102 | - | 114 | 1 | 119 | - | 209 | - | 124 | - | 131 |
| 2범 | 1 | 42 | 1 | 30 | - | 33 | - | 28 | 1 | 29 | 1 | 37 | 2 | 33 | 1 | 43 | 3 | 25 | - | 29 |
| 3범 | - | 13 | 1 | 10 | - | 14 | - | 14 | - | 16 | - | 15 | - | 17 | 1 | 31 | - | 13 | - | 20 |
| 4범 | - | 15 | - | 14 | - | 16 | - | 16 | - | 14 | - | 14 | 1 | 9 | - | 10 | - | 15 | - | 12 |
| 5범 이상 | 2 | 113 | - | 84 | - | 92 | - | 107 | 1 | 86 | - | 95 | - | 88 | - | 100 | - | 49 | - | 60 |

**| 표 5-78 |** 병명별 종료·가종료 인원

| 연도 / 죄명 | 2009 | | 2010 | | 2011 | | 2012 | | 2013 | | 2014 | | 2015 | | 2016 | | 2017 | | 2018 | |
|---|---|---|---|---|---|---|---|---|---|---|---|---|---|---|---|---|---|---|---|---|
| | 종료 | 가종료 | 종료 | 가종료 | 종료 | 가종료 | 종료 | 가종료 | 종료 | 가종료 | 종료 | 가종료 | 종료 | 가종료 | 종료 | 가종료 | 종료 | 가종료 | 종료 | 가종료 |
| 계 | 3 | 283 | 3 | 260 | - | 275 | - | 255 | 2 | 247 | 1 | 275 | 4 | 266 | 2 | 393 | 3 | 226 | - | 252 |
| 조현병 | - | 35 | 3 | 42 | - | 52 | - | 66 | - | 71 | - | 65 | 2 | 83 | 1 | 139 | 2 | 80 | - | 84 |
| 정신지체 | 1 | 47 | - | 44 | - | 25 | - | 17 | 1 | 17 | - | 11 | - | 16 | - | 27 | - | 19 | - | 16 |
| 조울증 | - | 12 | - | 16 | - | 29 | - | 13 | - | 14 | - | 11 | - | 15 | - | 24 | - | 14 | - | 23 |
| 성격(인격)장애 | 2 | 21 | - | 27 | - | 22 | - | 8 | - | 8 | - | 8 | - | 9 | 1 | 8 | 1 | 1 | - | 5 |
| 간질 | - | 4 | - | 11 | - | 3 | - | 3 | - | 4 | - | 7 | - | 7 | - | 4 | - | 2 | - | 0 |
| 약물중독 | - | 133 | - | 81 | - | 82 | - | 76 | 1 | 107 | 1 | 143 | - | 105 | - | 138 | - | 37 | - | 35 |
| 기타 | - | 31 | - | 39 | - | 62 | - | 72 | - | 26 | - | 30 | 2 | 31 | - | 53 | - | 73 | - | 89 |

# 2. 보호관찰

## 가. 보호관찰심사위원회 결정

| 표 5-79 |

(2018년)

| 구분 \ 심사위원회 | 계 | 서 울 | 부 산 | 대 구 | 광 주 | 대 전 |
|---|---|---|---|---|---|---|
| 계 | 4,780 | 2,167 | 656 | 526 | 957 | 474 |
| 가 석 방 | 31 | 5 | 0 | 10 | 2 | 14 |
| 임 시 퇴 원 | 1817 | 813 | 189 | 245 | 506 | 64 |
| 기 타 (임시퇴원취소, 임시해제, 가해제) | 2,932 | 1,349 | 467 | 271 | 449 | 396 |

## 나. 처분종류별 실시사건 현황

| 표 5-80 |

(2018년)

| 대상 \ 구분 | 총 실 시 인 원 | | | 종 료 | 현 원 |
|---|---|---|---|---|---|
| | 계 | 구 수 | 신 수 | | |
| 계 | 227,733 | 78,451 | 149,282 | 152,768 | 74,965 |
| 선 고 유 예 | 60 | 30 | 30 | 39 | 21 |
| 집 행 유 예 | 124,788 | 47,003 | 77,785 | 80,694 | 44,094 |
| 보 호 처 분 | 38,145 | 14,469 | 23,676 | 24,221 | 13,924 |
| 가 석 방 | 9,252 | 2,104 | 7,148 | 6,787 | 2,465 |
| 임 시 퇴 원 | 1,963 | 667 | 1,296 | 1,233 | 730 |
| 가 출 소 | 170 | 106 | 64 | 68 | 102 |
| 가 종 료 | 1,221 | 786 | 435 | 469 | 752 |
| 감 호 가 석 방 | - | - | - | - | - |
| 가 정 보 호 | 993 | 412 | 581 | 249 | 744 |
| 치 료 명 령 | 17 | - | 17 | 3 | 14 |
| 치료감호기간만료 | 10,465 | 2,611 | 7,854 | 7,699 | 2,766 |
| 성 매 매 | 873 | 352 | 521 | 702 | 171 |
| 아 동 학 대 | 1,872 | 616 | 1,256 | 1,281 | 591 |
| 선 도 위 탁 | 13,688 | 3,396 | 10,292 | 10,952 | 2,736 |
| 성구매자 교육 | 3,947 | 708 | 3,239 | 3,269 | 678 |
| 형 기 종 료 | 3,218 | 2,329 | 889 | 837 | 2,381 |
| 벌 금 대 체 | 9,062 | 1,438 | 7,624 | 7,707 | 1,355 |
| 이 수 명 령 | 7,999 | 1424 | 6,575 | 6,558 | 1441 |

## 다. 근거법률별 접수현황

| 표 5-81 |

| 구분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계 | | 161,877 | 132,429 | 121,188 | 116,860 | 112,878 | 121,517 | 134,364 | 159,636 | 162,360 | 149,282 |
| 형법 | 소계 | 68,592 | 61,021 | 56,395 | 56,437 | 57,485 | 60,190 | 63,746 | 76,366 | 81,808 | 85,217 |
| | 선고유예 | 10 | 7 | 15 | 17 | 13 | 9 | 22 | 23 | 16 | 22 |
| | 집행유예 | 62,218 | 54,984 | 50,911 | 51,677 | 52,803 | 55,992 | 59,568 | 70,670 | 74,996 | 78,057 |
| | 가석방 | 6,364 | 6,030 | 5,469 | 4,743 | 4,669 | 4,189 | 4,156 | 5,673 | 6,796 | 7,138 |
| 소년법 | 소계 | 41,295 | 39,858 | 41,253 | 41,440 | 34,932 | 27,765 | 26,517 | 24,718 | 25,511 | 24,972 |
| | 단기보호관찰 | 21,976 | 19,907 | 21,252 | 20,599 | 16,010 | 12,214 | 12,974 | 11,240 | 11,815 | 11,319 |
| | 장기보호관찰 | 12,930 | 12,916 | 12,948 | 13,018 | 13,692 | 10,956 | 9,570 | 9,538 | 9,594 | 9,224 |
| | 단독명령 | 5,233 | 5,858 | 5,964 | 6,400 | 3,910 | 3,238 | 2,889 | 2,707 | 2,910 | 3,133 |
| | 임시퇴원 | 1,156 | 1,177 | 1,089 | 1,423 | 1,320 | 1,357 | 1,084 | 1,233 | 1,192 | 1,296 |
| 치료보호법 | 소계 | 466 | 506 | 535 | 482 | 510 | 531 | 481 | 690 | 986 | 1,097 |
| | 가출소 | 34 | 39 | 45 | 22 | 61 | 61 | 40 | 87 | 78 | 64 |
| | 감호가석방 | - | - | - | - | - | - | - | - | - | 0 |
| | 가종료 | 432 | 467 | 490 | 460 | 449 | 470 | 441 | 603 | 434 | 488 |
| | 치료명령 | - | - | - | - | - | - | - | - | 474 | 528 |
| 성폭력특별법 | 소계 | 989 | 915 | 1,114 | 1,132 | 716 | 3,144 | 4,389 | 5,533 | 10,957 | 17 |
| | 선고유예 | 1 | - | - | - | 3 | 1 | 5 | 11 | 16 | 12,544 |
| | 벌금(이수명령) | - | - | - | - | - | - | - | - | 5,074 | 6 |
| | 집행유예 | 988 | 915 | 1,114 | 1,132 | 713 | 3,143 | 4,384 | 5,522 | 5,867 | 6,223 |
| 가정폭력특별법 | 소계 | 3,115 | 2,380 | 1,708 | 1,995 | 3,176 | 5,596 | 7,823 | 8,608 | 9,126 | 6,315 |
| | 보호처분 | 3,115 | 2,380 | 1,708 | 1,995 | 3,176 | 5,596 | 7,823 | 8,608 | 9,126 | 7,875 |
| 성매매처벌법 | 소계 | 1,303 | 1,090 | 572 | 646 | 760 | 910 | 1,619 | 2,274 | 2,835 | 7,875 |
| | 보호처분 | 665 | 531 | 215 | 273 | 335 | 239 | 390 | 1,050 | 1,443 | 1,274 |
| | 집행유예 | 638 | 559 | 357 | 373 | 425 | 671 | 1,229 | 1,224 | 1,392 | 521 |
| 선도위탁(기소유예) | 소계 | 3,770 | 4,885 | 5,002 | 5,090 | 5,899 | 7,859 | 11,425 | 14,859 | 13,126 | 753 |
| | 1급 | 123 | 124 | 277 | 130 | 199 | 106 | 190 | 103 | 96 | 2,301 |
| | 2급 | 3,647 | 4,761 | 4,725 | 4,960 | 5,700 | 7,753 | 4,096 | 3,810 | 3,553 | 148 |
| | 선도교육 | - | - | - | - | - | - | 7,139 | 10,946 | 9,477 | 2,153 |
| 성구매자교육 | 소계 | 37,679 | 13,413 | 8,366 | 4,807 | 3,058 | 2,658 | 2,847 | 11,763 | 5,817 | 7,213 |
| | 기소유예 | 37,679 | 13,413 | 8,366 | 4,807 | 3,058 | 2,658 | 2,847 | 11,763 | 5,817 | 3,239 |
| 형기종료 | 소계 | 1 | 226 | 468 | 311 | 996 | 971 | 833 | 870 | 795 | 3,239 |
| | 형기종료 | 1 | 226 | 468 | 311 | 996 | 971 | 833 | 870 | 795 | 891 |
| 벌금대체사회봉사 | 소계 | 4,667 | 7,971 | 4,856 | 3,465 | 4,059 | 6,718 | 8,554 | 8,530 | 8,282 | 891 |
| | 벌금대체 | 4,667 | 7,971 | 4,856 | 3,465 | 4,059 | 6,718 | 8,554 | 8,530 | 8,282 | 7,624 |
| 아동청소년법 | 소계 | - | 164 | 919 | 1,055 | 1,287 | 5,175 | 5,608 | 4,444 | 1,609 | 7,624 |
| | 선고유예 | - | - | - | - | - | - | - | 1 | 1 | 1,219 |
| | 벌금(이수명령) | - | 13 | 129 | 274 | 414 | 4,454 | 4,356 | 3,219 | 257 | 0 |
| | 집행유예 | - | 151 | 790 | 781 | 873 | 721 | 1,252 | 1,224 | 1,351 | 0 |
| 아동학대처벌법 | 소계 | - | - | - | - | - | - | 522 | 981 | 1508 | 1,219 |
| | 벌금(이수명령) | - | - | - | - | - | - | 149 | 20 | 31 | 1,029 |
| | 보호처분 | - | - | - | - | - | - | 301 | 839 | 1235 | 0 |
| | 집행유예 | - | - | - | - | - | - | 72 | 122 | 242 | 784 |

※ 접수사건 : 전년도 이월사건을 제외한 당해연도 순수접수건

## 라. 기관별 보호관찰 등 대상자 접수현황

| 표 5-82 |

| 기관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계 | 161,877 | 132,429 | 121,188 | 116,860 | 112,878 | 121,517 | 134,364 | 159,636 | 162,360 | 149,282 |
| 서울 | 10,790 | 8,300 | 6,223 | 5,766 | 5,924 | 7,052 | 7,875 | 8,645 | 8,438 | 7,153 |
| 서울동부 | 4,475 | 3,676 | 2,764 | 3,065 | 3,167 | 3,191 | 3,626 | 3,964 | 3,718 | 3,397 |
| 서울남부 | 6,691 | 5,247 | 4,292 | 4,169 | 4,099 | 4,298 | 4,758 | 5,436 | 5,880 | 5,361 |
| 의정부 | 5,014 | 5,252 | 4,554 | 4,962 | 4,527 | 4,338 | 4,670 | 6,561 | 6,175 | 6,050 |
| 인천 | 11,963 | 7,354 | 5,729 | 4,640 | 4,414 | 5,315 | 6,092 | 7,633 | 7,895 | 6,856 |
| 수원 | 6,598 | 5,251 | 4,391 | 5,421 | 5,799 | 5,966 | 6,687 | 8,784 | 8,857 | 7,992 |
| 춘천 | 1,110 | 1,280 | 1,383 | 1,642 | 1,353 | 1,335 | 1,340 | 1,478 | 1,717 | 1,596 |
| 대전 | 6,272 | 4,651 | 4,461 | 4,322 | 4,382 | 4,255 | 4,541 | 4,895 | 5,753 | 5,804 |
| 청주 | 3,610 | 2,842 | 2,736 | 2,200 | 2,151 | 2,348 | 2,631 | 2,654 | 3,155 | 3,346 |
| 대구 | 5,921 | 4,809 | 4,518 | 4,612 | 4,164 | 4,056 | 5,975 | 6,351 | 5,843 | 5,204 |
| 부산 | 7,246 | 7,501 | 6,063 | 5,144 | 4,866 | 5,370 | 5,413 | 7,460 | 6,634 | 4,479 |
| 울산 | 3,944 | 3,616 | 4,096 | 3,234 | 2,961 | 4,110 | 3,552 | 3,178 | 4,964 | 4,097 |
| 창원 | 5,553 | 3,709 | 4,076 | 4,043 | 3,333 | 3,963 | 3,818 | 4,843 | 4,961 | 3,976 |
| 광주 | 5,184 | 4,352 | 4,925 | 5,504 | 5,270 | 5,159 | 5,577 | 5,355 | 7,899 | 6,872 |
| 전주 | 2,159 | 2,282 | 2,487 | 2,141 | 1,747 | 2,041 | 2,104 | 2,888 | 3,191 | 3,005 |
| 제주 | 1,709 | 1,464 | 1,475 | 1,451 | 1,528 | 1,797 | 1,699 | 2,493 | 3,103 | 2,839 |
| 서울서부 | 4,446 | 3,432 | 2,593 | 2,491 | 2,276 | 2,662 | 2,988 | 3,330 | 3,247 | 3,132 |
| 서울북부 | 4,331 | 3,187 | 2,606 | 2,364 | 2,439 | 2,294 | 2,898 | 3,152 | 3,014 | 3,328 |
| 고양 | 4,250 | 2,961 | 2,926 | 2,816 | 2,810 | 2,942 | 4,070 | 4,401 | 4,155 | 3,539 |
| 부천 | 3,608 | 2,759 | 2,663 | 2,358 | 2,619 | 2,837 | 2,991 | 3,548 | 4,351 | 4,172 |
| 성남 | 3,544 | 3,515 | 2,572 | 2,877 | 2,899 | 3,302 | 3,344 | 4,440 | 4,676 | 4,026 |
| 여주 | 832 | 1,260 | 1,345 | 1,507 | 1,277 | 1,109 | 1,172 | 1,422 | 1,588 | 1,321 |
| 안산 | 8,244 | 4,655 | 4,453 | 3,652 | 4,375 | 4,253 | 5,301 | 6,515 | 5,177 | 4,856 |
| 평택 | 1,960 | 1,636 | 1,437 | 1,669 | 1,679 | 1,802 | 2,286 | 3,063 | 2,580 | 2,128 |
| 안양 | 3,319 | 2,263 | 2,227 | 2,028 | 1,653 | 1,828 | 2,156 | 2,606 | 2,378 | 2,305 |
| 강릉 | 1,148 | 959 | 1,056 | 811 | 887 | 1,259 | 1,192 | 1,366 | 1,355 | 1,209 |
| 원주 | 1,180 | 883 | 958 | 1,583 | 1,194 | 1,214 | 1,562 | 1,780 | 1,561 | 1,499 |

| 기관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속초 | 590 | 576 | 437 | 437 | 548 | 548 | 474 | 630 | 396 | 497 |
| 영월 | 785 | 524 | 482 | 534 | 438 | 445 | 501 | 487 | 489 | 433 |
| 홍성 | 1,142 | 932 | 1,020 | 856 | 914 | 843 | 1,128 | 992 | 900 | 943 |
| 공주 | 723 | 421 | 454 | 431 | 376 | 421 | 429 | 547 | 505 | 478 |
| 논산 | 903 | 626 | 651 | 608 | 769 | 805 | 778 | 891 | 890 | 657 |
| 서산 | 1,245 | 963 | 916 | 813 | 914 | 1,191 | 1,205 | 1,079 | 988 | 926 |
| 천안 | 2,831 | 2,167 | 2,149 | 2,288 | 2,007 | 2,034 | 2,283 | 3,304 | 3,059 | 2,784 |
| 충주 | 1,423 | 908 | 1,244 | 912 | 1,042 | 904 | 1,048 | 1,182 | 1,130 | 915 |
| 제천 | 586 | 446 | 497 | 559 | 557 | 723 | 746 | 629 | 623 | 506 |
| 대구서부 | 3,816 | 3,179 | 2,862 | 2,568 | 2,422 | 2,389 | 3,147 | 3,790 | 3,011 | 3,023 |
| 안동 | 1,240 | 1,198 | 1,028 | 1,304 | 863 | 971 | 948 | 1,296 | 958 | 1031 |
| 경주 | 605 | 587 | 573 | 521 | 556 | 703 | 685 | 789 | 724 | 621 |
| 포항 | 1,790 | 1,230 | 1,425 | 923 | 1,039 | 1,193 | 1,584 | 2,178 | 2,317 | 1,754 |
| 구미 | 2,211 | 1,673 | 1,462 | 1,555 | 1,545 | 1,611 | 1,533 | 1,974 | 1,978 | 1,913 |
| 상주 | 826 | 563 | 667 | 536 | 533 | 510 | 608 | 612 | 657 | 470 |
| 영덕 | 251 | 312 | 385 | 353 | 260 | 209 | 308 | 388 | 336 | 298 |
| 부산동부 | 3,372 | 4,183 | 3,080 | 2,943 | 2,524 | 2,870 | 2,918 | 4,196 | 3,708 | 3,436 |
| 부산서부 | | | | | | | | | | 3,580 |
| 진주 | 1,714 | 1,437 | 1,317 | 966 | 1,006 | 1,156 | 1,170 | 1,478 | 1,659 | 1,595 |
| 통영 | 1,767 | 1,724 | 1,549 | 1,615 | 1,294 | 1,513 | 1,499 | 2,015 | 2,025 | 1,627 |
| 밀양 | 474 | 343 | 362 | 335 | 418 | 421 | 482 | 544 | 464 | 473 |
| 거창 | 537 | 385 | 310 | 331 | 335 | 351 | 361 | 503 | 448 | 440 |
| 목포 | 1,754 | 1,408 | 1,218 | 1,567 | 1,560 | 1,603 | 1,755 | 1,932 | 2,366 | 1,772 |
| 순천 | 2,770 | 2,476 | 2,176 | 1,761 | 1,974 | 2,036 | 2,431 | 2,955 | 3,319 | 2,848 |
| 해남 | 772 | 596 | 627 | 683 | 654 | 738 | 783 | 788 | 866 | 851 |
| 군산 | 1,682 | 1,582 | 1,416 | 1,409 | 1,379 | 1,438 | 1,482 | 1,778 | 1,469 | 1,612 |
| 정읍 | 698 | 809 | 825 | 865 | 691 | 700 | 608 | 782 | 851 | 839 |
| 남원 | 269 | 431 | 410 | 407 | 351 | 320 | 335 | 348 | 324 | 325 |
| 인천서부 | - | 1,489 | 2,185 | 1,882 | 1,847 | 2,426 | 2,577 | 3,057 | 3,417 | 2,850 |
| 영동 | - | 165 | 452 | 426 | 269 | 349 | 240 | 251 | 218 | 243 |

## 마. 소년·성인별 실시사건 현황

| 표 5-83 |

| 구 분 | |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총 계 | | | | 184,362 | 199,713 | 227,141 | 240,073 | 227,733 |
| 소년 | 계 | | | 57,064 | 51,978 | 49,687 | 47,493 | 45,364 |
| | 형법 | 소계 | | 1,053 | 823 | 745 | 727 | 684 |
| | | 선고유예 | | - | 1 | 2 | 5 | 6 |
| | | 집행유예 | 보호관찰부 | 976 | 764 | 698 | 657 | 606 |
| | | | 단독명령 | 49 | 37 | 33 | 52 | 60 |
| | | 가석방 | | 28 | 21 | 12 | 13 | 12 |
| | 소년법 | 소계 | | 47,874 | 44,050 | 40,693 | 40,482 | 5 |
| | | 보호처분 | 단기보호관찰 | 20,502 | 19,952 | 18,637 | 18,465 | 5 |
| | | | 장기보호관찰 | 21,453 | 18,912 | 17,103 | 16,721 | 40,108 |
| | | | 단독명령 | 3,876 | 3,454 | 3,227 | 3,489 | 18,189 |
| | | 임시퇴원 | | 2,043 | 1,732 | 1,726 | 1,807 | 16,271 |
| | 치료감호법 | 소계 | | - | - | - | 3 | 3,685 |
| | | 치료명령 | | - | - | - | 3 | 1,963 |
| | 성폭력법 | 소계 | | 145 | 118 | 105 | 107 | 104 |
| | | 선고유예 | | 1 | 2 | - | 2 | 2 |
| | | 집행유예 | 보호관찰부 | 119 | 94 | 85 | 83 | 71 |
| | | | 단독명령 | 25 | 22 | 20 | 22 | 31 |
| | 가정폭력법 | 소계 | | 28 | 31 | 61 | 55 | 40 |
| | | 보호처분 | 보호관찰부 | 21 | 24 | 48 | 34 | 30 |
| | | | 단독명령 | 7 | 7 | 13 | 21 | 10 |
| | 성매매법 | 소계 | | 5 | 7 | 8 | 12 | 12 |
| | | 보호처분 | 보호관찰부 | 4 | 6 | 5 | 9 | 9 |
| | | | 단독명령 | 1 | 1 | 3 | 3 | 3 |
| | | 소계 | | - | - | - | - | 1 |
| | | 집행유예 | 보호관찰부 | - | - | - | - | 1 |
| | | | 단독명령 | - | - | - | - | - |
| | 선도위탁 | 소계 | | 7,774 | 6,714 | 7,864 | 5,894 | 4,173 |
| | | 기소유예 | | 7,774 | 6,714 | 7,864 | 5,894 | 4,173 |
| | 성구매자교육 | 소계 | | 3 | 2 | 17 | 11 | 5 |
| | | 기소유예 | | 3 | 2 | 17 | 11 | 5 |
| | 벌금대체 | 소계 | | 85 | 91 | 67 | 68 | 56 |
| | | 벌금대체 | | 85 | 91 | 67 | 68 | 56 |

| 구 분 |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 아동청소년법 | 소계 | 97 | 142 | 122 | 129 | 173 |
| | | 선고유예 | | | - | 1 | 1 |
| | |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 79 | 108 | 85 | 110 | 136 |
| | | 집행유예 단독명령 | 15 | 32 | 33 | 13 | 35 |
| | | 이수명령 | 3 | 2 | 4 | 5 | 1 |
| | 아동학대처벌법 | 소계 | - | - | 5 | 5 | 3 |
| | | 보호처분 보호관찰부 | - | - | 4 | 5 | 3 |
| | | 보호처분 단독명령 | - | - | 1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 - | - | - | - | - |
| | | 집행유예 단독명령 | - | - | - | - | - |
| | | 이수명령 | - | - | - | - | - |
| 성인 | 계 | | 127,298 | 147,735 | 177,454 | 192,580 | 182,369 |
| | 형법 | 소계 | 91,603 | 96,954 | 109,973 | 122,762 | 120,652 |
| | | 선고유예 | 21 | 29 | 40 | 26 | 31 |
| | |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 52,873 | 54,952 | 62,588 | 67,840 | 65,058 |
| | | 집행유예 단독명령 | 33,211 | 36,638 | 40,582 | 46,524 | 46,323 |
| | | 가석방 | 5,498 | 5,335 | 6,763 | 8,372 | 9,240 |
| | 치료감호법 | 소계 | 1,179 | 1,147 | 1,380 | 1,854 | 2,396 |
| | | 가출소 | 120 | 112 | 157 | 169 | 170 |
| | | 감호가석방 | - | - | - | - | - |
| | | 가종료 | 1,059 | 1,035 | 1,223 | 1,208 | 1,221 |
| | | 치료명령 | - | - | - | 477 | 988 |
| | | 치료감호기간만료 | - | - | - | - | 17 |
| | 성폭력법 | 소계 | 4,122 | 11,256 | 12,186 | 14,342 | 16,245 |
| | | 선고유예 | 1 | 4 | 15 | 24 | 18 |
| | |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 2,087 | 2,741 | 3,254 | 3,575 | 3,690 |
| | | 집행유예 단독명령 | 2,034 | 8,511 | 8,917 | 4,797 | 4,943 |
| | | 이수명령 | - | - | - | 5,946 | 7,594 |
| | 가정폭력법 | 소계 | 7,155 | 9,662 | 10,098 | 12,186 | 10,425 |
| | | 보호처분 보호관찰부 | 4,985 | 7,735 | 6,644 | 7,849 | 6,820 |
| | | 보호처분 단독명령 | 2,170 | 1,927 | 3,454 | 4,337 | 3,605 |
| | 성매매법 | 소계 | 312 | 493 | 1,192 | 1,909 | 861 |
| | | 보호처분 보호관찰부 | 253 | 418 | 732 | 1319 | 691 |
| | | 보호처분 단독명령 | 59 | 75 | 460 | 590 | 170 |
| | | 소계 | 993 | 1,657 | 1,938 | 2,232 | 1,723 |
| | |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 727 | 1,189 | 1,360 | 1,661 | 1,318 |
| | | 집행유예 단독명령 | 266 | 468 | 578 | 571 | 405 |

| 구 분 |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선도위탁 | 소계 | | 2,679 | 8,055 | 12,324 | 11,132 | 9,515 |
| | 기소유예 | | 2,679 | 8,055 | 12,324 | 11,132 | 9,515 |
| 성구매자교육 | 소계 | | 3,220 | 3,462 | 12,493 | 9,226 | 3,942 |
| | 기소유예 | | 3,220 | 3,462 | 12,493 | 9,226 | 3,942 |
| 형기종료 | 소계 | | 2,228 | 2,532 | 2,844 | 2,907 | 3,218 |
| | 형기종료 | | 2,228 | 2,532 | 2,844 | 2,907 | 3,218 |
| 벌금대체 | 소계 | | 7,680 | 9,941 | 9,825 | 9,751 | 9,006 |
| | 벌금대체 | | 7,680 | 9,941 | 9,825 | 9,751 | 9,006 |
| 아동청소년법 | 소계 | | 6,127 | 2,049 | 1,930 | 2,211 | 2,076 |
| | 선고유예 | | | | 2 | - | 2 |
| | 집행유예 | 보호관찰부 | 809 | 859 | 793 | 828 | 800 |
| | | 단독명령 | 719 | 872 | 912 | 1085 | 939 |
| | 이수명령 | | 4,599 | 318 | 223 | 298 | 335 |
| 아동학대처벌법 | 소계 | | - | 453 | 1,080 | 1,690 | 1,869 |
| | 보호처분 | 보호관찰부 | - | 392 | 894 | 1,306 | 1,425 |
| | | 단독명령 | - | 61 | 186 | 384 | 444 |
| | 소계 | | - | 74 | 191 | 378 | 441 |
| | 집행유예 | 보호관찰부 | - | 43 | 100 | 183 | 206 |
| | | 단독명령 | - | 31 | 64 | 150 | 166 |
| | 이수명령 | | - | - | 27 | 45 | 69 |

## 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실시사건 현황

| 표 5-84 |

| 구 분 | |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총 계 | | | | 184,362 | 199,713 | 227,141 | 240,073 | 227,733 |
| 보호관찰 | 계 | | | 95,198 | 96,419 | 100,995 | 105,705 | 104,850 |
| | 형법 | 소계 | | 44,653 | 45,608 | 50,743 | 55,951 | 56,842 |
| | | 선고유예 | | 21 | 30 | 42 | 31 | 37 |
| | | 집행유예 | | 39,106 | 40,222 | 43,926 | 47,535 | 47,553 |
| | | 가석방 | | 5,526 | 5,356 | 6,775 | 8,385 | 9,252 |
| | 소년법 | 소계 | | 33,639 | 31,090 | 28,809 | 27,520 | 27,600 |
| | | 보호처분 | 단기보호관찰 | 14,690 | 14,180 | 13,761 | 12,940 | 12,842 |
| | | | 장기보호관찰 | 16,906 | 15,178 | 13,322 | 12,773 | 12,795 |
| | | 임시퇴원 | | 2,043 | 1,732 | 1,726 | 1,807 | 1,963 |
| | 치료감호법 | 소계 | | 1,179 | 1,147 | 1,380 | 1,814 | 2,336 |
| | | 가출소 | | 120 | 112 | 157 | 169 | 170 |
| | | 감호가석방 | | - | - | - | - | - |
| | | 가종료 | | 1,059 | 1,035 | 1,223 | 1,208 | 1,221 |
| | | 치료명령 | | - | - | - | 437 | 928 |
| | | 치료감호기간만료 | | - | - | - | - | 17 |
| | 성폭력법 | 소계 | | 1,362 | 1,733 | 2,092 | 2,323 | 2,430 |
| | | 선고유예 | | 2 | 6 | 15 | 26 | 20 |
| | | 집행유예 | | 1,360 | 1,727 | 2,077 | 2,297 | 2,410 |
| | 가정폭력법 | 소계 | | 3,629 | 5,724 | 6,361 | 5,956 | 5,155 |
| | | 보호처분 | | 3,629 | 5,724 | 6,361 | 5,956 | 5,155 |
| | 성매매법 | 소계 | | 702 | 1,082 | 1,508 | 2,112 | 1,615 |
| | | 보호처분 | | 171 | 278 | 476 | 820 | 496 |
| | | 집행유예 | | 531 | 804 | 1,032 | 1,292 | 1,119 |
| | 선도위탁 | 소계 | | 7,253 | 6,587 | 5,875 | 5,340 | 3,740 |
| | | 기소유예 | | 7,253 | 6,587 | 5,875 | 5,340 | 3,740 |
| | 형기종료 | 소계 | | 2,228 | 2,532 | 2,844 | 2,907 | 3,220 |
| | | 형기종료 | | 2,228 | 2,532 | 2,844 | 2,907 | 3,220 |
| | 아동청소년법 | 소계 | | 553 | 613 | 588 | 596 | 596 |
| | | 선고유예 | | - | - | 2 | 1 | 1 |
| | | 집행유예 | | 553 | 613 | 586 | 595 | 595 |
| | 아동학대처벌법 | 소계 | | - | 303 | 795 | 1,186 | 1,316 |
| | | 보호처분 | | - | 283 | 738 | 1,076 | 1,180 |
| | | 집행유예 | | - | 20 | 57 | 110 | 136 |

| 구 분 |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사회봉사명령 | 계 | | 43,293 | 45,549 | 48,395 | 53,231 | 51,224 |
| | 형법 | 소 계 | 32,116 | 34,247 | 37,624 | 41,054 | 40,088 |
| | | 보호관찰부 | 9,799 | 9,957 | 12,055 | 12,755 | 11,402 |
| | | 단독명령 | 22,317 | 24,290 | 25,569 | 28,299 | 28,686 |
| | 소년법 | 소 계 | 7,212 | 7,170 | 6,432 | 6,981 | 6,714 |
| | | 단기보호관찰 | 2,733 | 2,997 | 2,456 | 2,804 | 2,643 |
| | | 장기보호관찰 | 2,741 | 2,342 | 2,276 | 2,311 | 2,113 |
| | | 단독명령 | 1,738 | 1,831 | 1,700 | 1,866 | 1,958 |
| | 치료감호법 | | | | | 43 | 65 |
| | 성폭력법 | 소 계 | 583 | 885 | 1,184 | 1,406 | 1,572 |
| | | 보호관찰부 | 226 | 271 | 307 | 361 | 374 |
| | | 단독명령 | 357 | 614 | 877 | 1,045 | 1,198 |
| | 가정폭력법 | 소 계 | 590 | 634 | 795 | 820 | 610 |
| | | 보호관찰부 | 296 | 332 | 322 | 275 | 273 |
| | | 단독명령 | 294 | 302 | 473 | 545 | 337 |
| 사회봉사명령 | 성매매법 | 소 계 | 411 | 772 | 849 | 1,076 | 528 |
| | | 보호관찰부 | 169 | 338 | 300 | 442 | 205 |
| | | 단독명령 | 242 | 434 | 549 | 634 | 323 |
| | 선도위탁 | 소 계 | 2,135 | 1,515 | 1,140 | 1,354 | 1,181 |
| | | 기소유예 | 2,135 | 1,515 | 1,140 | 1,354 | 1,181 |
| | 아동청소년법 | 소 계 | 246 | 292 | 299 | 348 | 307 |
| | | 보호관찰부 | 101 | 94 | 86 | 97 | 105 |
| | | 단독명령 | 145 | 198 | 213 | 251 | 202 |
| | 아동학대처벌법 | 소 계 | - | 34 | 72 | 149 | 159 |
| | | 보호관찰부 | - | 15 | 30 | 51 | 56 |
| | | 단독명령 | - | 19 | 42 | 98 | 103 |
| 수강명령 | 계 | | 30,281 | 33,513 | 38,857 | 45,459 | 41,884 |
| | 형법 | 소 계 | 15,887 | 17,933 | 22,358 | 26,488 | 24,406 |
| | | 보호관찰부 | 4,944 | 5,537 | 7,312 | 8,211 | 6,709 |
| | | 단독명령 | 10,943 | 12,396 | 15,046 | 18,277 | 17,697 |
| | 소년법 | 소 계 | 7,023 | 5,790 | 5,452 | 5,981 | 5,794 |
| | | 단기보호관찰 | 3,079 | 2,775 | 2,420 | 2,721 | 2,704 |
| | | 장기보호관찰 | 1,806 | 1,392 | 1,505 | 1,637 | 1,363 |
| | | 단독명령 | 2,138 | 1,623 | 1,527 | 1,623 | 1,727 |
| | 성폭력법 | 소 계 | 2,322 | 3,496 | 4,169 | 4,774 | 4,753 |
| | | 보호관찰부 | 620 | 837 | 955 | 1,000 | 977 |
| | | 단독명령 | 1,702 | 2,659 | 3,214 | 3,774 | 3,776 |

| 구 분 |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 가정폭력법 | 소 계 | 2,964 | 3,335 | 4,777 | 5,465 | 4,700 |
| | | 보호관찰부 | 1,081 | 1,703 | 1,783 | 1,652 | 1,422 |
| | | 단독명령 | 1,883 | 1,632 | 2,994 | 3,813 | 3,278 |
| | 성매매법 | 소 계 | 197 | 303 | 781 | 965 | 454 |
| | | 보호관찰부 | 113 | 193 | 289 | 435 | 199 |
| | | 단독명령 | 84 | 110 | 492 | 530 | 255 |
| | 선도위탁 | 소 계 | 1,065 | 1,510 | - | - | - |
| | | 기소유예 | 1,065 | 1,510 | - | - | - |
| | 아동청소년법 | 소 계 | 823 | 956 | 938 | 1,093 | 1,008 |
| | | 보호관찰부 | 234 | 250 | 206 | 246 | 236 |
| | | 단독명령 | 589 | 706 | 732 | 847 | 772 |
| | 아동학대처벌법 | 소 계 | - | 190 | 382 | 693 | 769 |
| | | 보호관찰부 | - | 117 | 173 | 257 | 262 |
| | | 단독명령 | - | 73 | 209 | 436 | 507 |
| 성구매자교육 | 계 | | 3,223 | 3,464 | 12,510 | 9,237 | 3,947 |
| | 기소유예 | | 3,223 | 3,464 | 12,510 | 9,237 | 3,947 |
| 벌금대체사회봉사 | 계 | | 7,765 | 10,032 | 9,892 | 9,819 | 9,062 |
| | 벌금대체사회봉사 | | 7,765 | 10,032 | 9,892 | 9,819 | 9,062 |
| 이수명령 | 계 | | 4,602 | 5,571 | 5,073 | 6,290 | 7,999 |
| | 이수명령 | | 4,602 | 5,571 | 5,073 | 6,290 | 7,999 |
| 선도교육 | 계 | | - | 5,165 | 11,419 | 10,332 | 8,767 |
| | 기소유예 | | - | 5,165 | 11,419 | 10,332 | 8,767 |

## 사. 성적양호자에 대한 조치 현황

| 표 5-85 |

| 구분 / 연도 | 총 계 | 임시해제 | 부정기형종료 | 집행면제 | 가종료 집행종료 | 가정보호 처분종료 |
|---|---|---|---|---|---|---|
| 2014 | 2,574 | 2,564 | - | 6 | - | 4 |
| 2015 | 5,343 | 5,320 | 1 | - | 7 | 15 |
| 2016 | 2,618 | 2,602 | 1 | - | 2 | 13 |
| 2017 | 2,840 | 2,811 | - | - | 7 | 22 |
| 2018 | 2,184 | 2,165 | - | - | 3 | 16 |

## 아. 성적불량자에 대한 조치 현황

| 표 5-86 |

| 구분 / 연도 | 구인 | 긴급 구인 | 유치 | 제재조치 | | | | | | | |
|---|---|---|---|---|---|---|---|---|---|---|---|
| | | | | 경고 | 집행 유예 취소 | 보호 처분 변경 | 임시 퇴원 취소 | 가석방 취 소 | 기간 연장 | 보호 관찰 정지 | 가정 보호 등 취소 |
| 2014 | 2,128 | 43 | 1,976 | 36,307 | 657 | 1,821 | 148 | 23 | 72 | 75 | 42 |
| 2015 | 1,980 | 40 | 1,800 | 35,514 | 744 | 1,812 | 126 | 11 | 79 | 71 | 128 |
| 2016 | 1,796 | 31 | 1,695 | 36,129 | 726 | 1,780 | 109 | 11 | 40 | 58 | 149 |
| 2017 | 1,713 | 24 | 1,594 | 38,752 | 791 | 1,576 | 118 | 7 | 49 | 70 | 194 |
| 2018 | 1,417 | 14 | 1,350 | 35,479 | 749 | 1,217 | 128 | 14 | 35 | 76 | 219 |

## 자. 구인·유치대상자의 단계별 처리 현황

| 표 5-87 |

| 구분 / 연도 | 긴급구인 | 구인장 신청 | | | | 구인장 집행 | 구인장 반환 | 구인후석방 | 유치허가신청 | | | 유치 | 취소·변경신청 | | | | |
|---|---|---|---|---|---|---|---|---|---|---|---|---|---|---|---|---|---|
| | | 검찰 | | 법원 | | | | | 검찰 | 법원 | | | 검찰 | 법원 | | 심사 위원회 | |
| | | 기각 | 청구 | 기각 | 인용 | | | | 기각 | 기각 | 인용 | | 기각 | 기각 | 인용 | 기각 | 인용 |
| 2014 | 43 | 16 | 3,161 | 14 | 3,147 | 2,128 | 1,036 | 135 | 5 | 3 | 1,925 | 1,925 | 8 | 298 | 1,526 | 3 | 154 |
| 2015 | 40 | 16 | 2,934 | 8 | 2,926 | 1,980 | 1,037 | 140 | 12 | 18 | 1,850 | 1,850 | 6 | 275 | 1,381 | 1 | 129 |
| 2016 | 31 | 29 | 2,663 | 5 | 2,658 | 1,796 | 791 | 87 | 10 | 4 | 1,695 | 1,695 | 5 | 293 | 1,264 | 3 | 111 |
| 2017 | 24 | 32 | 2,613 | 15 | 2,598 | 1,713 | 806 | 85 | 14 | 11 | 1,594 | 1,594 | 4 | 300 | 1,160 | - | 121 |
| 2018 | 14 | 30 | 2,265 | 23 | 2,242 | 1,417 | 829 | 51 | 16 | 24 | 1,302 | 1,343 | 6 | 241 | 942 | 2 | 132 |

## 차. 사회봉사명령 접수 및 집행현황

| 표 5-88 |

| 구분 / 연도 | 개시 | 종료계 | 집행 | | 이송 | 집행불능 |
|---|---|---|---|---|---|---|
| | | | 완전집행 | 부분집행 | | |
| 2014 | 43,293 | 35,882 | 33,279 | 526 | 1,475 | 602 |
| 2015 | 45,549 | 38,554 | 35,677 | 562 | 1,625 | 690 |
| 2016 | 48,395 | 39,532 | 36,426 | 572 | 1,825 | 709 |
| 2017 | 53,213 | 44,157 | 40,653 | 644 | 2,061 | 799 |
| 2018 | 51,224 | 41,853 | 38,447 | 609 | 2,023 | 774 |

※ 집행불능 : 형집행, 사망, 집행유예취소 등의 사유로 명령받은 시간 중 단 1시간도 집행하지 못하고 종료한 사건

## 카. 사회봉사명령 근거법률별 실시 및 접수사건 추이

| 표 5-89 |

| 구분 / 연도 | 총 계 | | 형 법 | | 소년법 | | 치료감호법 | | 성폭력법 | | 가정폭력법 | | 성매매법 | | 선도위탁 | | 아동청소년법 | | 아동학대처벌법 | |
|---|---|---|---|---|---|---|---|---|---|---|---|---|---|---|---|---|---|---|---|---|
| | 실시사건 | 접수사건 | 실시사건 | 접수사건 | 실시사건 | 접수사건 | 실시사건 | 접수사건 | 실시사건 | 접수사건 | 실시사건 | 접수사건 | 실시사건 | 접수사건 | 실시사건 | 접수사건 | 실시사건 | 접수사건 | 실시사건 | 접수사건 |
| 2014 | 43,293 | 37,085 | 32,116 | 27,298 | 7,212 | 6,107 | - | - | 583 | 530 | 590 | 532 | 411 | 384 | 2,135 | 2,016 | 246 | 218 | - | - |
| 2015 | 45,549 | 38,153 | 34,247 | 28,420 | 7,170 | 6,128 | - | - | 885 | 775 | 634 | 548 | 772 | 690 | 1,515 | 1,304 | 292 | 255 | 34 | 33 |
| 2016 | 48,395 | 41,435 | 37,624 | 32,117 | 6,432 | 5,459 | - | - | 1,184 | 1,036 | 795 | 698 | 849 | 729 | 1,140 | 1,071 | 299 | 259 | 72 | 66 |
| 2017 | 53,231 | 44,386 | 41,054 | 33,914 | 6,981 | 5,923 | 43 | 42 | 1,406 | 1,188 | 820 | 708 | 1,076 | 945 | 1,354 | 1,237 | 348 | 293 | 149 | 136 |
| 2018 | 51,224 | 42,249 | 40,088 | 32,911 | 6,714 | 5,650 | 65 | 53 | 1,572 | 1,326 | 610 | 530 | 528 | 404 | 1,181 | 973 | 307 | 261 | 159 | 141 |

※ 실시사건 = 전년이월사건 + 당해연도접수사건

## 타. 사회봉사명령 부과 형태 추이

| 표 5-90 |

| 구분 / 연도 | 총 계 | | | 소 년 | | | 성 인 | | |
|---|---|---|---|---|---|---|---|---|---|
| | 계 | 보호관찰부 | 단독명령부 | 소 계 | 보호관찰부 | 단독명령부 | 소 계 | 보호관찰부 | 단독명령부 |
| 2014 | 43,293 | 16,468 | 26,825 | 9,442 | 6,017 | 3,425 | 33,851 | 10,451 | 23,400 |
| 2015 | 45,549 | 16,569 | 28,980 | 8,677 | 5,641 | 3,036 | 36,872 | 10,928 | 25,944 |
| 2016 | 48,395 | 17,969 | 30,426 | 7,616 | 4,973 | 2,643 | 40,779 | 12,996 | 27,783 |
| 2017 | 53,231 | 19,351 | 33,880 | 8,321 | 5,465 | 2,856 | 44,910 | 13,886 | 31,024 |
| 2018 | 51,224 | 17,405 | 33,819 | 7,845 | 5,111 | 2,734 | 43,379 | 12,294 | 31,085 |

※ 실시사건 기준(선도위탁도 단독명령이 가능해 2013년부터 포함하여 산정)

## 파. 집행분야의 연도별 추이

| 표 5-91 |

| 구분 / 연도 | 총 계 | 직접 집행 | 협력집행(분야별 성격) | | | | | |
|---|---|---|---|---|---|---|---|---|
| | | | 소계 | 자연보호 | 복지분야 | 공공시설 | 대민지원 | 기타 |
| 2014 | 33,805 | 9,131 | 24,674 | 24 | 22,519 | 505 | 1,247 | 379 |
| 2015 | 36,239 | 8,966 | 27,273 | 56 | 24,990 | 658 | 1,433 | 136 |
| 2016 | 36,998 | 9,236 | 27,762 | 88 | 25,457 | 681 | 1,346 | 190 |
| 2017 | 41,297 | 8,538 | 32,759 | 79 | 30,747 | 952 | 734 | 247 |
| 2018 | 39,007 | 6,521 | 32,486 | 48 | 30,325 | 1,089 | 770 | 254 |

## 하. 수강명령 접수 및 집행현황

| 표 5-92 |

| 구분 / 연도 | 개시 | 종료계 | 집 행 | | 이송 | 집행불능 |
|---|---|---|---|---|---|---|
| | | | 완전집행 | 부분집행 | | |
| 2014 | 30,281 | 24,309 | 22,493 | 249 | 958 | 609 |
| 2015 | 33,513 | 25,850 | 23,751 | 252 | 1,035 | 812 |
| 2016 | 38,857 | 30,038 | 27,674 | 284 | 1,261 | 819 |
| 2017 | 45,459 | 36,859 | 34,100 | 311 | 1,452 | 996 |
| 2018 | 41,884 | 34,046 | 31,353 | 293 | 1,439 | 961 |

※ 집행불능 : 형집행, 사망, 집행유예취소 등의 사유로 명령받은 시간 중 단 1시간도 집행하지 못하고 종료한 사건

## 거. 수강명령 근거법률별 실시 및 접수사건 추이

| 표 5-93 |

| 구분 / 연도 | 총 계 | | 형 법 | | 소년법 | | 성폭력법 | | 가정폭력법 | | 성매매법 | | 선도위탁 | | 아동 청소년법 | | 아동학대 처벌법 | |
|---|---|---|---|---|---|---|---|---|---|---|---|---|---|---|---|---|---|---|
| | 실시 사건 | 접수 사건 | 실시 사건 | 접수 사건 | 실시 사건 | 접수 사건 | 실시 사건 | 접수 사건 | 실시 사건 | 접수 사건 | 실시 사건 | 접수 사건 | 실시 사건 | 접수 사건 | 실시 사건 | 접수 사건 | 실시 사건 | 접수 사건 |
| 2014 | 30,281 | 24,879 | 15,887 | 13,203 | 7,023 | 5,491 | 2,322 | 2,006 | 2,964 | 2,460 | 197 | 150 | 1,065 | 906 | 823 | 663 | - | - |
| 2015 | 33,513 | 27,588 | 17,933 | 14,916 | 5,790 | 4,544 | 3,496 | 2,704 | 3,335 | 2,911 | 303 | 255 | 1,510 | 1,342 | 956 | 729 | 190 | 187 |
| 2016 | 38,857 | 31,971 | 22,358 | 18,532 | 5,452 | 4,367 | 4,169 | 3,320 | 4,777 | 3,980 | 781 | 699 | - | - | 938 | 745 | 382 | 328 |
| 2017 | 45,459 | 36,657 | 26,488 | 21,508 | 5,981 | 4,775 | 4,774 | 3,781 | 5,465 | 4,488 | 965 | 698 | - | - | 1,093 | 834 | 693 | 573 |
| 2018 | 41,884 | 33,309 | 24,406 | 19,607 | 5,794 | 4,510 | 4,753 | 3,703 | 4,700 | 3,801 | 454 | 331 | - | - | 1,008 | 737 | 769 | 620 |

※ 실시사건 = 전년이월사건 + 당해연도접수사건

## 너. 수강명령 부과 형태 추이

| 표 5-94 |

| 구분 \ 연도 | 총 계 | | | 소 년 | | | 성 인 | | |
|---|---|---|---|---|---|---|---|---|---|
| | 계 | 보 호 관찰부 | 단 독 명령부 | 소계 | 보 호 관찰부 | 단 독 명령부 | 소계 | 보 호 관찰부 | 단 독 명령부 |
| 2014 | 30,281 | 11,913 | 18,368 | 7,297 | 4,991 | 2,306 | 22,984 | 6,922 | 16,062 |
| 2015 | 33,513 | 14,460 | 19,053 | 6,056 | 4,250 | 1,806 | 27,457 | 10,210 | 17,247 |
| 2016 | 38,857 | 14,643 | 24,214 | 5,587 | 3,999 | 1,588 | 33,270 | 10,644 | 22,626 |
| 2017 | 45,459 | 16,159 | 29,300 | 6,139 | 4,446 | 1,693 | 39,320 | 11,713 | 27,607 |
| 2018 | 41,884 | 13,872 | 28,012 | 5,952 | 4,151 | 1,801 | 35,932 | 9,721 | 26,211 |

※ 실시사건 기준(선도위탁도 단독명령이 가능해 2013년부터 포함하여 산정)

## 더. 집행분야의 연도별 추이

| 표 5-95 |

| 구분 \ 연도 | 총 계 | 직접 집행 | 협 력 집 행 | | | | | | |
|---|---|---|---|---|---|---|---|---|---|
| | | | 소계 | 약물 | 준법운전 | 심리치료 | 가정폭력 | 성폭력 | 기타 |
| 2014 | 22,742 | 21,446 | 1,296 | 37 | 4 | 103 | 218 | 137 | 797 |
| 2015 | 24,003 | 23,521 | 482 | 23 | 2 | 27 | 180 | 67 | 183 |
| 2016 | 27,958 | 27,386 | 572 | 26 | - | 27 | 275 | 51 | 193 |
| 2017 | 34,411 | 33,845 | 566 | 1 | - | 5 | 244 | 22 | 294 |
| 2018 | 31,646 | 30,800 | 846 | 6 | 64 | 53 | 140 | 34 | 549 |

## 러. 환경조사 및 환경개선

| 표 5-96 |

| 구분 \ 연도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환경조사 | 소 계 | 2,009 | 1,742 | 1,616 | 1,740 | 1,701 | 1,594 | 1,561 | 1,555 | 1,921 | 1,502 |
| | 소 년 원 | 1,668 | 1,454 | 1,380 | 1,500 | 1,555 | 1,395 | 1,432 | 1,419 | 1,693 | 1,373 |
| | 교 도 소 | 274 | 224 | 173 | 146 | 43 | 106 | 59 | 60 | 167 | 104 |
| | 감 호 소 | 67 | 60 | 28 | 69 | 103 | 93 | 70 | 76 | 60 | 19 |
| 환 경 개 선 | | - | 4 | 35 | 25 | - | - | - | - | 1 | 6 |

## 머. 조사

| 표 5-97 |

| 구분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판 결 전 조 사 | 3,597 | 1,598 | 1,526 | 2,385 | 2,159 | 2,257 | 2,166 | 1,901 | 2,003 | 2,053 |
| 결 정 전 조 사 | 4,234 | 6,398 | 9,242 | 12,719 | 12,141 | 12,399 | 17,678 | 16,931 | 16,606 | 19,662 |
| 검사결정전조사 | 3,670 | 4,524 | 3,906 | 5,547 | 5,084 | 5,855 | 3,805 | 4,379 | 3,626 | 1,678 |
| 청 구 전 조 사 | 304 | 1,376 | 1,933 | 1,696 | 2,497 | 2,511 | 2,352 | 2,619 | 1,783 | 1,600 |
| 소급청구전조사 | - | 2,251 | 772 | 354 | 247 | 192 | 119 | 79 | 86 | 39 |

## 버. 지명수배 의뢰 및 해제 현황

| 표 5-98 |

| 구분 \ 연도 | 계 | | | | 소 년 | | | | 성 인 | | | |
|---|---|---|---|---|---|---|---|---|---|---|---|---|
| | 수배 의뢰 | 수배해제 | | | 수배 의뢰 | 수배해제 | | | 수배 의뢰 | 수배해제 | | |
| | | 계 | 검거 | 기타 | | 계 | 검거 | 기타 | | 계 | 검거 | 기타 |
| 2014 | 3,835 | 2,821 | 2,083 | 738 | 2,110 | 1,721 | 1,429 | 292 | 1,725 | 1,100 | 654 | 446 |
| 2015 | 3,566 | 2,753 | 2,005 | 748 | 1,924 | 1,604 | 1,297 | 307 | 1,642 | 1,149 | 708 | 441 |
| 2016 | 3,288 | 2,396 | 1,817 | 579 | 1,666 | 1,344 | 1,133 | 211 | 1,622 | 1,052 | 684 | 368 |
| 2017 | 3,196 | 2,315 | 1,682 | 633 | 1,479 | 1,181 | 997 | 184 | 1,717 | 1,134 | 685 | 449 |
| 2018 | 2,887 | 2,089 | 1,430 | 659 | 1,267 | 1,018 | 828 | 190 | 1,620 | 1,071 | 602 | 469 |

※ 수배해제 사유 중 기타는 기간만료, 사망 등의 사유가 포함됨.

## 서. 보호관찰 사안조사

| 표 5-99 |

| 구분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건 수 | 9,393 | 8,705 | 6,766 | 6,144 | 6,658 | 6,297 | 6,252 | 7,895 | 8,821 | 9,434 |

### 어. 보호관찰 불요결정

| 표 5-100 |

| 구분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접 수 | 8,257 | 8,093 | 7,067 | 6,502 | 6,150 | 5,503 | 5,716 | 7,221 | 8,248 | 8,575 |
| 필 요 | 5,459 | 5,493 | 4,779 | 4,246 | 4,174 | 3,734 | 3,816 | 5,127 | 6,205 | 6,394 |
| 불 요 | 2,798 | 2,600 | 2,288 | 2,256 | 1,976 | 1,769 | 1,900 | 2,094 | 2,043 | 2,181 |
| 허 가 | 2,798 | 2,600 | 2,288 | 2,256 | 1,976 | 1,769 | 1,900 | 2,094 | 2,043 | 2,181 |

## 3. 갱생보호

### 가. 갱생보호 실적

| 표 5-101 |

| 구분 | 총계 | 숙식 제공 | 직업 훈련 | 취업 지원 | 주거 지원 | 긴급 원호 | 사후 관리 | 사전 상담 | 창업 지원 | 사회성 향상 | 가족 희망 | 심리 상담 | 기타 지원 |
|---|---|---|---|---|---|---|---|---|---|---|---|---|---|
| 인원 | 108,197 | 2,256 | 3,676 | 9,510 | 231 | 6,424 | 15,429 | 34,348 | 6 | 7,332 | 1,747 | 12,927 | 14,410 |

### 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사업실적

| 표 5-102 |

| 구분 | 계 | 숙식 제공 | 직업 훈련 | 취업 지원 | 주거 지원 | 긴급 원호 | 사후 관리 | 사전 상담 | 창업 지원 | 사회성 향상 | 가족 희망 | 심리 상담 | 기타 지원 |
|---|---|---|---|---|---|---|---|---|---|---|---|---|---|
| 인원 | 97,432 | 1,846 | 3,602 | 9,413 | 220 | 6,139 | 15,144 | 30,630 | 3 | 3,671 | 1,747 | 11,759 | 13,258 |

### 다. 민간갱생보호법인 사업실적

| 표 5-103 |

| 구분 | 계 | 숙식 제공 | 직업 훈련 | 취업 지원 | 주거 지원 | 긴급 원호 | 사후 관리 | 사전 상담 | 창업 지원 | 사회성 향상 | 심리 상담 | 기타 지원 |
|---|---|---|---|---|---|---|---|---|---|---|---|---|
| 인원 | 10,765 | 410 | 74 | 97 | 11 | 285 | 186 | 3,718 | 3 | 3,661 | 1,168 | 1,152 |

# 4. 소년보호 및 분류심사

## 가. 보호소년 수용

| 표 5-104 | 입·출원 인원

| 입·출원 | | 성별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입원 | 계 | 남 | 3,257 | 3,382 | 3,848 | 4,314 | 3,863 | 3,223 | 2,884 | 2,763 | 2,974 | 2,770 |
| | | 여 | 641 | 631 | 706 | 665 | 572 | 484 | 504 | 476 | 510 | 539 |
| | 전년도 이월 | 남 | 920 | 978 | 1,217 | 1,202 | 1,197 | 1,175 | 945 | 928 | 858 | 924 |
| | | 여 | 203 | 213 | 224 | 195 | 201 | 169 | 155 | 215 | 176 | 186 |
| | 송치 | 남 | 2,249 | 2,265 | 2,534 | 2,995 | 2,548 | 1,933 | 1,858 | 1,754 | 2,022 | 1,729 |
| | | 여 | 398 | 396 | 426 | 435 | 341 | 295 | 321 | 241 | 308 | 333 |
| | 임시퇴원 취소 | 남 | 88 | 139 | 97 | 117 | 118 | 115 | 81 | 81 | 94 | 117 |
| | | 여 | 40 | 22 | 56 | 35 | 30 | 20 | 28 | 20 | 26 | 20 |
| | 이탈학생 재수용 | 남 | - | - | - | -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 | |
| 출원 | 계 | 남 | 2,291 | 2,381 | 2,360 | 2,954 | 2,685 | 2,275 | 1,961 | 1,900 | 2,029 | 2,064 |
| | | 여 | 438 | 439 | 401 | 446 | 401 | 333 | 281 | 316 | 320 | 352 |
| | 퇴원 | 남 | 1,495 | 1,595 | 1,555 | 1,873 | 1,676 | 1,254 | 1,119 | 1,045 | 1,135 | 1,049 |
| | | 여 | 227 | 226 | 235 | 278 | 243 | 188 | 164 | 147 | 194 | 210 |
| | 임시퇴원 | 남 | 753 | 735 | 768 | 1,036 | 941 | 952 | 786 | 788 | 832 | 946 |
| | | 여 | 197 | 199 | 158 | 159 | 145 | 137 | 103 | 158 | 114 | 123 |
| | 처분변경·취소 | 남 | 35 | 31 | 25 | 29 | 48 | 46 | 43 | 41 | 36 | 50 |
| | | 여 | 12 | 13 | 8 | 9 | 12 | 8 | 13 | 10 | 8 | 18 |
| | 사망 | 남 | - | - | - | - | - | - | - | - | - | - |
| | | 여 | - | - | - | - | 1 | - | - | - | - | - |
| | 이탈 | 남 | - | - | - | 1 |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남 | 8 | 20 | 12 | 15 | 20 | 23 | 13 | 26 | 26 | 19 |
| | | 여 | 2 | 1 | - | - | - | - | 1 | 1 | 4 | 1 |

주) 1. 송치 :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9호(구,6호) 및 10호(구,7호) 인원)
2. 이탈 : 이탈 후 당해연도에 재수용 되지 않은 인원
3. 기타 : 유죄판결 등
4. 입원인원 중 "송치+임시퇴원 취소=신수용인원"

## | 표 5-105 | 1일 평균 수용인원

| 기관 \ 연도 / 성별 | 성별 | 2009 | 2010 | 기관 | 성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계 | 남 | 962 | 963 | 계 | 남 | 1,063 | 1,188 | 1,207 | 1,056 | 921 | 932 | 981 | 869 |
| | 여 | 230 | 200 | | 여 | 201 | 202 | 173 | 181 | 192 | 199 | 185 | 209 |
| 서 울 | 남 | 222 | 208 | 서 울 | 남 | 254 | 270 | 295 | 270 | 236 | 234 | 246 | 204 |
| | 여 | - | - | | 여 | - | - | - | - | - | - | - | - |
| 부 산 | 남 | 123 | 127 | 부 산 | 남 | 140 | 161 | 175 | 132 | 118 | 138 | 124 | 111 |
| | 여 | 1 | 1 | | 여 | - | 1 | 1 | 1 | 1 | 1 | 1 | - |
| 대 구 | 남 | 111 | 130 | 대 구 | 남 | 127 | 143 | 128 | 137 | 130 | 141 | 137 | 114 |
| | 여 | 1 | - | | 여 | - | - | - | - | - | - | - | - |
| 광 주 | 남 | 110 | 99 | 광 주 | 남 | 142 | 165 | 161 | 129 | 94 | 104 | 134 | 107 |
| | 여 | - | - | | 여 | - | - | - | 1 | - | - | - | - |
| 전 주 | 남 | 118 | 112 | 전 주 | 남 | 110 | 126 | 128 | 123 | 108 | 92 | 81 | 91 |
| | 여 | - | - | | 여 | - | - | - | - | - | - | - | - |
| 대 덕 | 남 | 140 | 142 | 대 전 | 남 | 146 | 165 | 139 | 112 | 111 | 92 | 109 | 106 |
| | 여 | 9 | 9 | | 여 | 16 | 14 | 9 | 10 | 5 | 6 | 12 | 15 |
| 청 주 | 남 | - | - | 청 주 | 남 | - | - | - | - | - | - | - | - |
| | 여 | 18 | 54 | | 여 | 48 | 60 | 54 | 46 | 45 | 45 | 45 | 85 |
| 안 양 | 남 | - | - | 안 양 | 남 | - | - | - | - | - | - | - | - |
| | 여 | 201 | 136 | | 여 | 137 | 127 | 109 | 123 | 141 | 147 | 127 | 109 |
| 춘 천 | 남 | 99 | 106 | 춘 천 | 남 | 112 | 128 | 151 | 117 | 93 | 89 | 107 | 103 |
| | 여 | - | - | | 여 | - | - | - | - | - | - | - | - |
| 제 주 | 남 | 38 | 39 | 제 주 | 남 | 32 | 30 | 30 | 36 | 31 | 42 | 43 | 33 |
| | 여 | - | - | | 여 | - | - | - | - | - | - | - | - |
| 대 전 | 남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창 원 | 남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안 산 | 남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대 전 의 료 | 남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07. 7. 23. 기관폐지

주) 2011. 5. 4. '대덕소년원'이 '대전소년원'으로 기관명칭 변경

## | 표 5-106 | 기관별 신수용 인원

| 기관 \ 연도 / 성별 | | 2009 | 2010 | 기관 | 성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계 | 남 | 2,337 | 2,404 | 계 | 남 | 2,534 | 2,994 | 2,666 | 2,048 | 1,939 | 1,835 | 2,116 | 1,846 |
| | 여 | 438 | 418 | | 여 | 426 | 435 | 371 | 315 | 349 | 261 | 334 | 353 |
| 서 울 | 남 | 278 | 344 | 서 울 | 남 | 521 | 552 | 635 | 489 | 474 | 442 | 524 | 482 |
| | 여 | - | - | | 여 | - | - | - | - | - | - | - | - |
| 부 산 | 남 | 287 | 381 | 부 산 | 남 | 322 | 337 | 351 | 267 | 281 | 213 | 265 | 208 |
| | 여 | 11 | 60 | | 여 | 31 | 46 | 44 | 44 | 44 | 54 | 48 | 38 |
| 대 구 | 남 | 212 | 174 | 대 구 | 남 | 138 | 129 | 88 | 110 | 143 | 176 | 162 | 78 |
| | 여 | 7 | 38 | | 여 | 25 | 16 | 21 | 15 | 25 | 16 | 13 | 5 |
| 광 주 | 남 | 94 | 79 | 광 주 | 남 | 97 | 116 | 146 | 154 | 122 | 90 | 137 | 139 |
| | 여 | 1 | 17 | | 여 | 27 | 19 | 40 | 28 | 36 | 9 | 28 | 20 |
| 전 주 | 남 | 81 | 48 | 전 주 | 남 | 69 | 109 | 69 | 16 | 5 | - | 5 | 3 |
| | 여 | 1 | 12 | | 여 | 22 | 15 | 3 | - | - | - | - | - |
| 대 덕 | 남 | 1,228 | 1,285 | 대 전 | 남 | 1279 | 1,540 | 1,242 | 921 | 828 | 849 | 943 | 876 |
| | 여 | 12 | 21 | | 여 | 22 | 10 | 9 | 4 | 3 | 15 | 21 | 8 |
| 청 주 | 남 | - | - | 청 주 | 남 | - | - | - | - | - | - | - | - |
| | 여 | 27 | 168 | | 여 | 181 | 228 | 137 | 106 | 110 | 71 | 102 | 31 |
| 안 양 | 남 | - | - | 안 양 | 남 | - | - | - | - | - | - | - | - |
| | 여 | 379 | 90 | | 여 | 105 | 90 | 113 | 108 | 122 | 87 | 114 | 233 |
| 춘 천 | 남 | 130 | 54 | 춘 천 | 남 | 74 | 146 | 90 | 53 | 66 | 38 | 39 | 30 |
| | 여 | - | 4 | | 여 | 4 | 3 | - | 6 | 1 | 3 | 1 | 9 |
| 제 주 | 남 | 27 | 39 | 제 주 | 남 | 34 | 65 | 45 | 38 | 20 | 27 | 41 | 30 |
| | 여 | - | 8 | | 여 | 9 | 8 | 4 | 4 | 8 | 6 | 7 | 9 |
| 대 전 | 남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창 원 | 남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안 산 | 남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대 전 의 료 | 남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07. 7. 23. 기관폐지

주) 2011. 5. 4. '대덕소년원'이 '대전소년원'으로 기관명칭 변경

| 표 5-107 | 수용기간별 인원

| 기간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계 | 2,672 | 2,755 | 2,716 | 3,399 | 3,005 | 2,531 | 2,171 | 2,138 | 2,275 | 2,328 |
| 1월 미만 | 1,221 | 1,356 | 1,370 | 1,680 | 1,348 | 969 | 883 | 773 | 902 | 830 |
| 3월 미만 | 98 | 86 | 76 | 125 | 96 | 80 | 62 | 62 | 47 | 64 |
| 6월 미만 | 590 | 653 | 649 | 796 | 894 | 769 | 670 | 676 | 777 | 773 |
| 6월 이상 | 110 | 100 | 76 | 115 | 149 | 108 | 91 | 126 | 115 | 131 |
| 7월 이상 | 14 | 5 | 4 | 16 | 20 | 19 | 15 | 13 | 8 | 12 |
| 8월 이상 | 16 | 15 | 14 | 28 | 15 | 19 | 28 | 13 | 20 | 8 |
| 9월 이상 | 34 | 20 | 32 | 26 | 26 | 29 | 16 | 14 | 16 | 25 |
| 10월 이상 | 43 | 24 | 23 | 14 | 11 | 13 | 16 | 11 | 12 | 18 |
| 11월 이상 | 45 | 13 | 11 | 10 | 11 | 20 | 15 | 12 | 8 | 20 |
| 12월 이상 | 100 | 86 | 32 | 39 | 25 | 30 | 30 | 47 | 19 | 49 |
| 13월 이상 | 177 | 156 | 91 | 139 | 81 | 77 | 43 | 71 | 46 | 85 |
| 14월 이상 | 107 | 134 | 161 | 181 | 114 | 91 | 86 | 83 | 90 | 99 |
| 15월 이상 | 79 | 69 | 117 | 138 | 82 | 132 | 84 | 75 | 71 | 87 |
| 16월 이상 | 25 | 31 | 38 | 53 | 72 | 80 | 58 | 73 | 59 | 53 |
| 17월 이상 | 4 | 4 | 14 | 23 | 30 | 37 | 30 | 37 | 49 | 37 |
| 18월 이상 | 8 | 1 | 3 | 8 | 21 | 35 | 26 | 21 | 23 | 24 |
| 19월 이상 | - | - | 4 | 4 | 7 | 19 | 11 | 11 | 10 | 7 |
| 20월 이상 | 1 | 2 | 1 | 4 | 3 | 4 | 7 | 20 | 3 | 6 |
| 평균수용기간(월) | 5.71 | 4.61 | 4.66 | 4.66 | 4.9 | 5.18 | 4.8 | 5.35 | 4.85 | 5.1 |

※ 대상 : 퇴원 및 임시퇴원

## 나. 보호소년 분류처우

**| 표 5-108 |** 처우과정 분류인원

| 기간 \ 연도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계 | | 2,775 | 2,822 | 2,960 | 3,429 | 3,037 | 2,363 | 2,288 | 2,096 | 2,450 | 2,199 |
| 7호 | 소계 | 66 | 51 | 104 | 111 | 94 | 108 | 109 | 83 | 132 | 141 |
| | 기타 | 66 | 51 | 104 | 111 | 94 | 108 | 109 | 83 | 132 | 141 |
| 8호 | 소계 | 1,269 | 1,334 | 1,328 | 1,680 | 1,296 | 925 | 802 | 762 | 880 | 801 |
| | 기타 | 1,269 | 1,334 | 1,328 | 1,680 | 1,296 | 925 | 802 | 762 | 880 | 801 |
| 9호 | 소계 | 793 | 782 | 780 | 975 | 960 | 768 | 766 | 713 | 857 | 741 |
| | 교과 | 80 | 54 | 57 | 132 | 111 | 125 | 168 | 161 | 95 | 87 |
| | 직업 | 62 | - | - | - | 77 | 70 | 102 | 72 | 243 | 219 |
| | 특성화 | 53 | 189 | 178 | 244 | 188 | 134 | 178 | 136 | 132 | 74 |
| | 기타 | 598 | 539 | 545 | 599 | 584 | 439 | 318 | 344 | 387 | 361 |
| 10호 | 소계 | 647 | 655 | 748 | 663 | 687 | 562 | 611 | 538 | 581 | 516 |
| | 교과 | 110 | 118 | 227 | 174 | 196 | 118 | 53 | 31 | 45 | 34 |
| | 직업 | 328 | 297 | 244 | 295 | 279 | 294 | 408 | 332 | 374 | 314 |
| | 특성화 | 57 | 47 | 62 | 50 | 36 | 27 | 13 | 12 | 8 | 1 |
| | 기타 | 152 | 193 | 215 | 144 | 176 | 123 | 137 | 163 | 154 | 167 |

※ 대상 : 신수용인원

## 다. 보호소년 교육

**| 표 5-109 |** 교과교육 수료인원

| 기간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계 | 384 | 286 | 287 | 389 | 228 | 139 | 135 | 154 | 187 | 208 |
| 초등학교 | - | - | - | - | - | - | - | - | - | - |
| 중 학 교 | 266 | 206 | 198 | 210 | 101 | 49 | 32 | 25 | 26 | 18 |
| 고등학교 | 118 | 80 | 89 | 179 | 127 | 90 | 103 | 129 | 161 | 190 |

**| 표 5-110 |** 검정고시 합격인원

| 기간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계 | 425 | 394 | 497 | 688 | 619 | 670 | 600 | 676 | 617 | 447 |
| 중입자격 | 2 | 4 | 5 | 3 | 4 | 3 | 1 | - | - | - |
| 고입자격 | 207 | 228 | 254 | 283 | 246 | 224 | 190 | 152 | 141 | 76 |
| 고졸학력 | 216 | 162 | 238 | 402 | 369 | 443 | 409 | 524 | 476 | 371 |

### | 표 5-111 | 직업훈련 수료인원

| 기간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직 업 훈 련 | 449 | 386 | 374 | 523 | 472 | 497 | 500 | 640 | 552 | 633 |

### | 표 5-112 | 기능자격 취득 인원

| 기간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계 | 2,674 | 2,644 | 2,980 | 3,125 | 2,687 | 3,301 | 3,106 | 3,681 | 4,710 | 4,762 |
| 일 반 기 능 | 584 | 634 | 670 | 900 | 774 | 947 | 992 | 1,238 | 1,524 | 1,634 |
| 컴 퓨 터 관 련 | 1,389 | 1,387 | 1,642 | 1,581 | 1,292 | 1,590 | 1,288 | 1,415 | 1,524 | 1,341 |
| 외 국 어 관 련 | 74 | 45 | 41 | 48 | - | - | - | - | - | |
| 기 타 | 627 | 578 | 627 | 596 | 621 | 764 | 826 | 1,028 | 1,662 | 1,787 |

### | 표 5-113 | 학생 사회봉사활동 현황

(단위 : 명)

| 기간 \ 연도 | 이웃사랑 실천 봉사활동 | | | | 정보화교육 봉사활동 | | | |
|---|---|---|---|---|---|---|---|---|
| | 소 계 | PC등 수리 | 복지 시설 방문 | 농촌 일손 돕기 | 지역 행사 지원 등 | 소 계 | 지역 주민 | 장애인 |
| 계 | | | | | | | | |
| 2009 | 2,344 | 13 | 915 | 53 | 1,363 | 16 | - | 16 |
| 2010 | 2,759 | 4 | 935 | 74 | 1,746 | 28 | - | 28 |
| 2011 | 2,246 | 7 | 800 | 71 | 1,368 | 8 | - | 8 |
| 2012 | 2,546 | - | 837 | 72 | 1,637 | 2 | - | 2 |
| 2013 | 1,220 | - | 511 | 16 | 693 | - | - | - |
| 2014 | 1,477 | - | 480 | 18 | 979 | - | - | - |
| 2015 | 1,035 | - | 356 | 56 | 623 | - | - | - |
| 2016 | 1,399 | - | 345 | 9 | 1,045 | - | - | - |
| 2017 | 1,050 | - | 294 | 18 | 738 | - | - | - |
| 2018 | 1,011 | - | 348 | 6 | 657 | - | - | - |

### | 표 5-114 | 취업 현황

(단위 : 명)

| 연 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취업인원 | 335 | 328 | 261 | 313 | 273 | 327 | 234 | 423 | 417 | 352 |

| 표 5-115 | 상급학교 진학 현황

(단위 : 명)

| 기간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계 | 166 | 108 | 111 | 137 | 115 | 134 | 154 | 159 | 167 | 165 |
| 대 학 교 | 52 | 38 | 22 | 45 | 45 | 71 | 91 | 93 | 88 | 86 |
| 고등학교 | 114 | 70 | 89 | 92 | 70 | 63 | 63 | 66 | 79 | 79 |

## 라. 위탁소년 수용·분류심사

| 표 5-116 | 입·출원 인원

| 구분 | 성별 \ 연도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입원 | 계 | 남 | 5,343 | 5,486 | 5,691 | 5,746 | 5,888 | 5,230 | 5,508 | 4,778 | 4,931 | 4,745 |
| | | 여 | 1,220 | 1,277 | 1,445 | 1,307 | 1,228 | 1,095 | 1,104 | 1,051 | 1,372 | 1,398 |
| | 이월인원 | 남 | 388 | 387 | 366 | 392 | 336 | 341 | 364 | 348 | 333 | 338 |
| | | 여 | 110 | 81 | 88 | 77 | 69 | 75 | 68 | 73 | 61 | 102 |
| | 신수용인원 | 남 | 4,955 | 5,099 | 5,325 | 5,354 | 5,552 | 4,889 | 5,144 | 4,430 | 4,598 | 4,407 |
| | | 여 | 1,110 | 1,196 | 1,357 | 1,230 | 1,159 | 1,020 | 1,036 | 978 | 1,311 | 1,296 |
| | 이탈자 재수용 | 남 | - | - | - | - |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 | - |
| 출원 | 계 | 남 | 4,975 | 4,942 | 5,359 | 5,351 | 5,547 | 4,866 | 5,159 | 4,446 | 4,593 | 4,439 |
| | | 여 | 1,138 | 1,185 | 1,348 | 1,240 | 1,153 | 1,027 | 1,030 | 992 | 1,270 | 1,300 |
| | 보호자 위탁 | 남 | 15 | 22 | 13 | 14 | 8 | 10 | 29 | 16 | 14 | 19 |
| | | 여 | 11 | 15 | 8 | 6 | 9 | 4 | 8 | - | 6 | 10 |
| | 보호시설 위탁 | 남 | 450 | 460 | 435 | 440 | 492 | 429 | 474 | 430 | 456 | 438 |
| | | 여 | 97 | 145 | 195 | 189 | 197 | 181 | 163 | 201 | 241 | 281 |
| | 소년원 송치 | 남 | 1,882 | 1,797 | 2,049 | 2,243 | 2,090 | 1,684 | 1,709 | 1,507 | 1,689 | 1,455 |
| | | 여 | 388 | 340 | 321 | 312 | 301 | 270 | 319 | 243 | 288 | 305 |
| | 보호관찰부 보호자위탁 | 남 | 2,354 | 2,321 | 2,483 | 2,262 | 2,603 | 2,318 | 2,472 | 2,121 | 2,138 | 2,139 |
| | | 여 | 585 | 592 | 697 | 599 | 555 | 494 | 418 | 461 | 630 | 591 |
| | 위탁변경 | 남 | 135 | 130 | 107 | 111 | 112 | 114 | 112 | 92 | 72 | 65 |
| | | 여 | 25 | 12 | 24 | 40 | 26 | 25 | 21 | 18 | 17 | 14 |
| | 심리 불개시 | 남 | 1 | - | - | 1 | - | - | - | - | - | - |
| | | 여 | - | 1 | - | - | - | - | - | - | - | - |
| | 불처분 | 남 | 12 | 20 | 5 | 15 | 16 | 10 | 9 | 8 | 5 | 8 |
| | | 여 | 2 | 2 | - | - | 2 | 2 | 2 | 2 | 1 | - |
| | 이탈 | 남 | - | - | - | - |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남 | 126 | 192 | 267 | 265 | 226 | 301 | 354 | 272 | 219 | 315 |
| | | 여 | 30 | 78 | 103 | 94 | 63 | 51 | 99 | 67 | 87 | 99 |
| 연말현재인원 | | 남 | 272 | 371 | 337 | 336 | 341 | 364 | 348 | 333 | 338 | 307 |
| | | 여 | 52 | 70 | 79 | 69 | 75 | 68 | 73 | 61 | 101 | 98 |

**| 표 5-117 |** 1일 평균 수용인원

| 기관 \ 연도 \ 성별 | | 2009 | 2010 | 기 관 | 성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계 | 남 | 327 | 341 | 계 | 남 | 367 | 379 | 391 | 391 | 364 | 327 | 348 | 334 |
| | 여 | 72 | 77 | | 여 | 89 | 85 | 80 | 80 | 72 | 71 | 95 | 97 |
| 부 산 (부산심) | 남 | 54 | 63 | 부 산 (부산심) | 남 | 83 | 78 | 74 | 73 | 78 | 70 | 70 | 66 |
| | 여 | 10 | 12 | | 여 | 17 | 17 | 11 | 11 | 16 | 17 | 18 | 16 |
| 대 구 (대구심) | 남 | 29 | 27 | 대 구 (대구심) | 남 | 27 | 25 | 28 | 28 | 28 | 32 | 30 | 25 |
| | 여 | 7 | 8 | | 여 | 7 | 5 | 7 | 7 | 5 | 6 | 6 | 6 |
| 광 주 (광주심) | 남 | 32 | 40 | 광 주 (광주심) | 남 | 34 | 35 | 41 | 41 | 37 | 35 | 43 | 36 |
| | 여 | 6 | 9 | | 여 | 8 | 8 | 8 | 8 | 8 | 6 | 10 | 9 |
| 전 주 | 남 | 9 | 15 | 전 주 | 남 | 14 | 11 | 7 | 7 | - | - | - | - |
| | 여 | 3 | 4 | | 여 | 4 | 2 | 2 | 2 | - | - | - | - |
| 대 덕 | 남 | 39 | 36 | 대 전 | 남 | 28 | 20 | 24 | 24 | 26 | 35 | 28 | 33 |
| | 여 | 8 | 6 | | 여 | 6 | 4 | 5 | 5 | 5 | 7 | 11 | 11 |
| 춘 천 | 남 | 6 | 10 | 춘 천 | 남 | 12 | 14 | 11 | 12 | 9 | 9 | 15 | 11 |
| | 여 | 2 | 4 | | 여 | 4 | 4 | 2 | 2 | 1 | 1 | 2 | 2 |
| 제 주 | 남 | 2 | 2 | 제 주 | 남 | 1 | 1 | 3 | 3 | 3 | 2 | 2 | 3 |
| | 여 | - | 1 | | 여 | - | - | 1 | 1 | 1 | 1 | 1 | 0 |
| 서울심 | 남 | 156 | 148 | 서울심 | 남 | 168 | 195 | 203 | 203 | 183 | 144 | 160 | 160 |
| | 여 | 36 | 33 | | 여 | 43 | 45 | 44 | 44 | 36 | 34 | 47 | 53 |

※ 2007. 7. 23. 기관통폐합에 따라 ( )의 심사원기능은 소년원에서 수행

※ 2011. 5. 4. '대덕소년원'이 '대전소년원'으로 기관명칭 변경

※ 2014. 1. 9. 전주소년원 위탁(유치) 업무 광주소년원 이전

## | 표 5-118 | 기관별 위탁 인원

| 기관 \ 연도 / 성별 | | 2009 | 2010 | 기 관 | 성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계 | 남 | 4,954 | 5,099 | 계 | 남 | 5,325 | 5,352 | 5,552 | 4,889 | 5,142 | 4,430 | 4,598 | 4,407 |
| | 여 | 1,110 | 1,196 | | 여 | 1,357 | 1,230 | 1,159 | 1,020 | 1,036 | 979 | 1,311 | 1,296 |
| 부 산 (부산심) | 남 | 861 | 966 | 부 산 (부산심) | 남 | 1,257 | 1,208 | 1,074 | 1,059 | 1,055 | 893 | 901 | 771 |
| | 여 | 160 | 207 | | 여 | 271 | 250 | 167 | 195 | 213 | 211 | 249 | 186 |
| 대 구 (대구심) | 남 | 344 | 363 | 대 구 (대구심) | 남 | 342 | 327 | 336 | 367 | 368 | 395 | 344 | 297 |
| | 여 | 96 | 113 | | 여 | 103 | 66 | 89 | 71 | 68 | 73 | 75 | 71 |
| 광 주 (광주심) | 남 | 488 | 559 | 광 주 (광주심) | 남 | 426 | 422 | 495 | 403 | 463 | 413 | 513 | 452 |
| | 여 | 94 | 124 | | 여 | 110 | 99 | 105 | 97 | 110 | 73 | 110 | 120 |
| 전 주 | 남 | 133 | 170 | 전 주 | 남 | 181 | 144 | 111 | 1 | - | - | - | - |
| | 여 | 41 | 49 | | 여 | 50 | 32 | 28 | 1 | - | - | - | - |
| 대 덕 | 남 | 671 | 620 | 대 전 (대전의료) | 남 | 454 | 299 | 355 | 305 | 387 | 450 | 363 | 422 |
| | 여 | 126 | 114 | | 여 | 101 | 56 | 75 | 57 | 81 | 102 | 150 | 140 |
| 춘 천 | 남 | 114 | 135 | 춘 천 | 남 | 176 | 207 | 161 | 176 | 139 | 144 | 215 | 182 |
| | 여 | 35 | 54 | | 여 | 61 | 54 | 33 | 31 | 18 | 19 | 34 | 31 |
| 제 주 | 남 | 36 | 50 | 제 주 | 남 | 22 | 30 | 38 | 44 | 44 | 27 | 26 | 36 |
| | 여 | 5 | 16 | | 여 | 15 | 8 | 14 | 21 | 16 | 8 | 11 | 7 |
| 서울심 | 남 | 2,307 | 2,236 | 서울심 | 남 | 2,467 | 2,715 | 2,982 | 2,534 | 2,686 | 2,108 | 2,236 | 2,247 |
| | 여 | 553 | 519 | | 여 | 646 | 665 | 648 | 547 | 530 | 493 | 682 | 741 |

※ 2007. 7. 23. 기관통폐합에 따라 ( )의 심사원기능은 소년원에서 수행
※ 2011. 5. 4. '대덕소년원'이 '대전소년원'으로 기관명칭 변경
※ 2014. 1. 9. 전주소년원 위탁(유치) 업무 광주소년원 이전

## | 표 5-119 | 위탁기간별 인원

| 기간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총출원 인 원 | 6,113 | 6,164 | 6,707 | 6,589 | 6,700 | 5,893 | 6,187 | 5,438 | 5,863 | 5,739 |
| 계 | 6,113 | 6,164 | 6,707 | 6,589 | 6,700 | 5,893 | 6,187 | 5,437 | 5,863 | 5,739 |
| 10일 미만 | 137 | 164 | 159 | 158 | 124 | 154 | 166 | 106 | 124 | 144 |
| 10 ~ 20일 | 1,651 | 1,491 | 1,182 | 1,053 | 949 | 754 | 950 | 679 | 562 | 616 |
| 21 ~ 30일 | 3,424 | 3,578 | 4,367 | 4,200 | 4,392 | 3,874 | 3,850 | 3,326 | 3,851 | 3,573 |
| 31 ~ 40일 | 727 | 784 | 851 | 916 | 1,026 | 877 | 1,014 | 1,018 | 1,032 | 1,001 |
| 41 ~ 50일 | 154 | 113 | 128 | 198 | 145 | 191 | 160 | 250 | 238 | 291 |
| 51 ~ 60일 | 20 | 34 | 20 | 64 | 64 | 43 | 47 | 58 | 56 | 114 |

※ ( )는 위탁변경, 불처분, 심리불개시 등 인원

### | 표 5-120 | 비행원인진단 실시인원

| 구분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분 류 심 사 | 5,627 | 5,723 | 6,007 | 5,435 | 6,357 | 5,543 | 5,804 | 5,116 | 5,614 | 5,385 |
| 상 담 조 사 | 5,106 | 5,301 | 5,296 | 5,148 | 4,382 | 4,261 | 4,119 | 3,993 | 4,179 | 3,136 |
| 검사결정전조사 | 295 | 397 | 126 | 7 | - | - | - | 25 | 1,429 | - |

### | 표 5-121 | 비행예방프로그램 실시인원

| 구분 \ 연도 |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계 | | 20,087 | 55,680 | 76,577 | 82,942 | 89,342 | 154,934 | 196,798 | 267,979 | 371,625 | 408,850 |
| 대안교육 | 소 계 | 6,410 | 7,348 | 12,862 | 23,382 | 30,122 | 23,013 | 23,630 | 36,638 | 49,317 | 54,019 |
| | 일반학생 | 4,683 | 5,629 | 11,396 | 21,280 | 26,814 | 19,739 | 18,359 | 31,298 | 43,305 | 48,410 |
| | 기소유예 | 1,516 | 1,425 | 1,124 | 1,191 | 2,034 | 2,767 | 4,993 | 5,123 | 5,757 | 5,416 |
| | 보호처분 | 211 | 294 | 342 | 911 | 1,274 | 507 | 278 | 217 | 255 | 193 |
| 청소년심리상담 | | 5,481 | 5,256 | 6,438 | 7,973 | 9,445 | 9,377 | 10,020 | 11,046 | 12,473 | 12,933 |
| 보 호 자 교 육 | | 3,511 | 5,465 | 6,626 | 7,498 | 8,101 | 8,246 | 9,192 | 8,964 | 9,465 | 13,314 |
| 법 교 육 | | 4,685 | 37,611 | 50,651 | 44,089 | 41,674 | 114,298 | 153,956 | 211,331 | 300,370 | 328,584 |

※ 보호자교육 :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 소년보호기관 통합 실적임

### | 표 5-122 | 법원 보호처분결정별 인원

| 판정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계 | 6,113 | 6,164 | 6,707 | 6,591 | 6,700 | 5,893 | 6,189 | 5,438 | 5,863 | 5,739 |
| 1호 | 26 | 37 | 21 | 20 | 17 | 14 | 37 | 16 | 20 | 29 |
| 2호 | 19 | 39 | 54 | 47 | 59 | 31 | 42 | 46 | 47 | 80 |
| 3호 | 24 | 34 | 50 | 35 | 65 | 69 | 55 | 33 | 29 | 88 |
| 4호 | 1,035 | 1,214 | 1,287 | 1,088 | 1,132 | 1,153 | 1,464 | 1,118 | 1,169 | 1,323 |
| 5호 | 1,919 | 1,663 | 1,893 | 1,773 | 2,026 | 1,659 | 1,426 | 1,464 | 1,599 | 1,407 |
| 6호 | 547 | 605 | 643 | 650 | 689 | 610 | 637 | 631 | 697 | 719 |
| 7호 | 50 | 50 | 79 | 87 | 69 | 88 | 74 | 63 | 99 | 116 |
| 8호(1개월) | 876 | 941 | 1,035 | 1,164 | 860 | 682 | 672 | 525 | 593 | 531 |
| 9호(단기) | 669 | 621 | 618 | 754 | 837 | 684 | 714 | 670 | 774 | 658 |
| 10호(장기) | 537 | 525 | 638 | 627 | 622 | 501 | 568 | 492 | 511 | 455 |
| 기타 | 411 | 435 | 389 | 346 | 324 | 402 | 500 | 380 | 325 | 333 |

주) 소년법 개정(2007. 12. 21. 2008. 6. 22. 시행)
1호처분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
2호처분 : 수강명령
3호처분 : 사회봉사명령
4호처분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처분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처분 :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7호처분 : 병원, 요양소 등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호처분 : 1개월이내 소년원 송치
9호처분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처분 : 장기 소년원 송치
기 타 : 불처분

# 제4절 인권업무 통계

### | 표 5-123 |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실적

| 구분 / 연도 | 민·가사 법률구조(건) | | | 형사구조(건) | 법률상담(건) |
|---|---|---|---|---|---|
| | 계 | 소송전구조 | 소송구조 | | |
| 2007 | 77,653 | 271 | 77,382 | 22,494 | 1,085,712 |
| 2008 | 99,043 | 190 | 98,853 | 25,952 | 1,194,603 |
| 2009 | 108,654 | 120 | 108,534 | 24,619 | 1,260,401 |
| 2010 | 113,092 | 115 | 112,977 | 19,579 | 1,281,792 |
| 2011 | 122,057 | 133 | 121,924 | 13,888 | 1,242,783 |
| 2012 | 126,898 | 123 | 126,775 | 13,612 | 1,409,916 |
| 2013 | 136,747 | 116 | 136,631 | 16,257 | 1,482,762 |
| 2014 | 143,853 | 98 | 143,755 | 21,546 | 1,505,699 |
| 2015 | 148,161 | 112 | 148,049 | 21,759 | 1,486,795 |
| 2016 | 150,088 | 64 | 150,024 | 21,468 | 1,481,186 |
| 2017 | 149,446 | 104 | 149,342 | 17,791 | 1,373,195 |
| 2018 | 154,585 | 187 | 154,398 | 16,770 | 1,320,476 |

### | 표 5-124 | 범죄피해자 지원활동(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실적

(단위 : 건)

| 구분 / 연도 | 총 계 | 상담 | 경제·의료 지원 | 신변보호 | 기 타 |
|---|---|---|---|---|---|
| 2013 | 57,240 | 41,748 | 10,140 | 1,641 | 3,711 |
| 2014 | 78,977 | 57,071 | 11,867 | 1,082 | 8,957 |
| 2015 | 89,699 | 66,876 | 11,773 | 512 | 10,538 |
| 2016 | 109,484 | 80,763 | 12,247 | 407 | 16,067 |
| 2017 | 159,728 | 121,223 | 14,655 | 503 | 23,347 |
| 2018 | 184,412 | 139,294 | 15,817 | 538 | 28,763 |

### | 표 5-125 |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단위 : 천 원, 명)

| 구분 \ 예산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예산액 | 1,878,000 | 2,246,220 | 3,268,220 | 9,305,000 | 9,584,000 | 7,929,000 | 7,728,000 | 9,773,000 | 9,712,000 | 9,870,000 | 9,870,000 |
| 보상인원 | 152 | 205 | 209 | 287 | 291 | 312 | 331 | 382 | 279 | 264 | 248 |
| 지급금액 | 1,411,000 | 2,204,833 | 3,416,782 | 5,410,033 | 6,250,686 | 7,912,273 | 7,070,624 | 9,770,720 | 9,257,269 | 9,289,429 | 10,175,047 |

### | 표 5-126 | 인권침해사건 접수현황

| 구분 \ 연도 | 합 계 | 수 사 | 교 정 | 출입국 | 범죄예방 | 기타 |
|---|---|---|---|---|---|---|
| 2014 | 1,755 | 54 | 1,369 | 56 | 147 | 129 |
| 2015 | 1,809 | 26 | 1,545 | 30 | 125 | 83 |
| 2016 | 2,620 | 62 | 2,252 | 26 | 124 | 156 |
| 2017 | 2,782 | 73 | 2,355 | 26 | 129 | 199 |
| 2018 | 2,935 | 50 | 2,520 | 30 | 150 | 185 |

### | 표 5-127 | 인권침해사건 처리현황(신수기준)

| 구분 \ 연도 | 합 계 | 각 하 | 이 첩 | 기 각 | 인용·구제 (인용·구제율) |
|---|---|---|---|---|---|
| 2014 | 1,715 | 921 | 495 | 217 | 82(4.7%) |
| 2015 | 1,780 | 930 | 543 | 223 | 84(4.6%) |
| 2016 | 2,513 | 1,289 | 846 | 293 | 85(3.2%) |
| 2017 | 2,533 | 1,326 | 891 | 236 | 80(2.9%) |
| 2018 | 2,623 | 1,476 | 887 | 189 | 71(2.4%) |

# 제5절 교정업무 통계

## 1. 수용자 수용 현황

### 가. 수용현황

| 표 5-128 |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수용정원 | | | 44,430 | 45,930 | 45,690 | 45,690 | 45,690 | 46,430 | 46,600 | 46,600 | 47,820 | 47,820 |
| 1일평균수용인원 | | | 49,467 | 47,471 | 45,845 | 45,488 | 47,924 | 50,128 | 53,892 | 56,495 | 57,298 | 54,744 |
| 수용내용 | 기결구금자 | 소 계 | 33,179 | 32,652 | 31,644 | 31,302 | 32,278 | 32,751 | 34,625 | 35,618 | 37,006 | 35,877 |
| | | 수형자 | 30,749 | 30,607 | 29,820 | 29,448 | 30,181 | 30,727 | 32,649 | 33,791 | 35,382 | 34,380 |
| | | 노역수 | 2,430 | 2,045 | 1,824 | 1,854 | 2,097 | 2,024 | 1,976 | 1,827 | 1,624 | 1,497 |
| | 미결구금자 | 소 계 | 16,288 | 14,819 | 14,201 | 14,186 | 15,646 | 17,377 | 19,267 | 20,877 | 20,292 | 18,867 |
| | | 피의자 | 1,008 | 786 | 724 | 703 | 712 | 747 | 847 | 864 | 753 | 643 |
| | | 피고인 | 15,280 | 14,033 | 13,477 | 13,483 | 14,934 | 16,630 | 18,420 | 20,013 | 19,539 | 18,224 |

| 표 5-129 | 인구대비 수용인원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인 구 | 1일 평균 수용인원 | 인구대비 1일 평균수용인원(%) | 교도관 정원 | 교도관 대비 평균수용인원 |
|---|---|---|---|---|---|
| 2009 | 48,746,693 | 49,467 | 0.101 | 14,521 | 3.4 |
| 2010 | 48,874,539 | 47,471 | 0.097 | 15,221 | 3.1 |
| 2011 | 49,779,000 | 45,845 | 0.092 | 15,478 | 3.0 |
| 2012 | 50,004,441 | 45,488 | 0.091 | 15,757 | 2.9 |
| 2013 | 51,141,463 | 47,924 | 0.094 | 15,476 | 3.1 |
| 2014 | 51,327,916 | 50,128 | 0.098 | 15,934 | 3.1 |
| 2015 | 51,529,338 | 53,892 | 0.105 | 15,887 | 3.4 |
| 2016 | 51,696,216 | 56,495 | 0.109 | 15,892 | 3.6 |
| 2017 | 51,779,148 | 57,298 | 0.111 | 15,871 | 3.6 |
| 2018 | 51,824,477 | 54,744 | 0.106 | 15,999 | 3.4 |

### | 표 5-130 | 수용자 성별 인원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계 | | 48,228 | 45,681 | 45,038 | 46,708 | 48,824 | 51,760 | 54,667 | 57,675 | 55,198 | 54,169 |
| 수형자 | 소 계 | 32,297 | 31,981 | 31,198 | 31,434 | 32,137 | 33,444 | 35,098 | 36,479 | 36,167 | 35,271 |
| | 남 | 30,759 | 30,534 | 29,694 | 29,863 | 30,525 | 31,661 | 33,122 | 34,281 | 33,905 | 32,932 |
| | 여 | 1,538 | 1,447 | 1,504 | 1,571 | 1,612 | 1,783 | 1,976 | 2,198 | 2,262 | 2,339 |
| | 총수에 대한 여자비율(%) | 4.8 | 4.5 | 4.8 | 5.0 | 5.0 | 5.3 | 5.6 | 6.0 | 6.3 | 6.6 |
| 미결수용자 | 소 계 | 15,931 | 13,700 | 13,840 | 15,274 | 16,687 | 18,316 | 19,569 | 21,196 | 19,031 | 18,898 |
| | 남 | 14,866 | 12,772 | 12,915 | 14,263 | 15,376 | 17,008 | 18,026 | 19,488 | 17,520 | 17,340 |
| | 여 | 1,065 | 928 | 925 | 1,011 | 1,311 | 1,308 | 1,543 | 1,708 | 1,511 | 1,558 |
| | 총수에 대한 여자비율(%) | 6.7 | 6.8 | 6.7 | 6.6 | 7.9 | 7.1 | 7.9 | 8.1 | 7.9 | 8.2 |

### | 표 5-131 | 수형자 연령별 인원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계 | 32,297 | 31,981 | 31,198 | 31,434 | 32,137 | 33,444 | 35,098 | 36,479 | 36,167 | 35,271 |
| 16세 미만 | 2 | 1 | 2 | 16 | 6 | 3 | 0 | 2 | 4 | 1 |
| 18세 미만 | 73 | 46 | 49 | 70 | 55 | 50 | 47 | 46 | 45 | 35 |
| 20세 미만 | 273 | 304 | 231 | 251 | 280 | 270 | 262 | 290 | 244 | 248 |
| 25세 미만 | 2,471 | 2,457 | 2,153 | 2,147 | 2,327 | 2,514 | 2,609 | 2,642 | 2,484 | 2,335 |
| 25세 이상 | 3,697 | 3,295 | 2,899 | 2,539 | 2,366 | 2,247 | 2,244 | 2,450 | 2,562 | 2,779 |
| 30세 이상 | 8,733 | 8,436 | 8,018 | 7,681 | 7,677 | 7,584 | 7,678 | 7,678 | 7,543 | 7,059 |
| 40세 이상 | 10,166 | 9,925 | 9,708 | 9,714 | 9,714 | 9,986 | 10,310 | 10,275 | 9,712 | 9,307 |
| 50세 이상 | 5,387 | 5,876 | 6,344 | 6,866 | 7,362 | 7,989 | 8,624 | 9,255 | 9,330 | 9,067 |
| 60세 이상 | 1,495 | 1,641 | 1,794 | 2,150 | 2,350 | 2,801 | 3,324 | 3,841 | 4,243 | 4,440 |

## | 표 5-132 | 외국인 수용인원(국적별 인원)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계 | | 1,611 | 1,250 | 1,198 | 1,132 | 1,222 | 1,271 | 1,884 | 1,997 | 2,096 | 2,079 |
| 소계 | 기 결 | 1,155 | 911 | 848 | 769 | 773 | 770 | 1,123 | 1,232 | 1,320 | 1,338 |
| | 미 결 | 456 | 339 | 350 | 363 | 449 | 501 | 761 | 765 | 776 | 741 |
| 중국 | 기 결 | 761 | 510 | 488 | 482 | 488 | 492 | 800 | 852 | 903 | 805 |
| | 미 결 | 217 | 169 | 206 | 223 | 269 | 340 | 500 | 477 | 431 | 343 |
| 일본 | 기 결 | 14 | 17 | 14 | 4 | 3 | 4 | 6 | 8 | 8 | 7 |
| | 미 결 | 5 | - | 2 | 2 | 1 | 3 | 1 | 1 | 4 | 4 |
| 미국 | 기 결 | 23 | 22 | 24 | 30 | 30 | 34 | 35 | 37 | 35 | 37 |
| | 미 결 | 12 | 19 | 12 | 20 | 20 | 24 | 29 | 28 | 26 | 28 |
| 기타 | 기 결 | 357 | 362 | 322 | 253 | 252 | 240 | 282 | 335 | 374 | 489 |
| | 미 결 | 222 | 151 | 130 | 118 | 159 | 134 | 231 | 259 | 315 | 366 |

## | 표 5-133 | 수형자 죄명별 인원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계 | 32,297 | 31,981 | 31,198 | 31,434 | 32,137 | 33,444 | 35,098 | 36,479 | 36,167 | 35,271 |
| 절 도 | 5,805 | 5,898 | 5,315 | 4,752 | 4,650 | 4,599 | 4,420 | 4,061 | 3,858 | 3,678 |
| 폭력행위등 처벌법 | 2,625 | 2,430 | 2,343 | 2,396 | 2,582 | 2,748 | 2,863 | 2,815 | 2,624 | 2,547 |
| 사기 및 횡령 | 4,076 | 3,897 | 3,951 | 4,150 | 5,024 | 5,911 | 6,834 | 7,699 | 7,630 | 8,029 |
| 성 폭 력 | 4,031 | 4,394 | 4,877 | 5,215 | 5,845 | 6,284 | 6,272 | 5,953 | 5,480 | 5,711 |
| 마 약 류 | 1,348 | 1,336 | 1,339 | 1,295 | 1,380 | 1,344 | 1,553 | 1,890 | 2,133 | 2,002 |
| 과 실 범 | 1,294 | 1,175 | 1,123 | 1,257 | 1,315 | 1,463 | 1,423 | 1,691 | 1,722 | 1,896 |
| 강 도 | 3,909 | 3,882 | 3,623 | 3,506 | 3,276 | 3,014 | 2,821 | 2,552 | 2,333 | 2,038 |
| 살 인 | 3,769 | 3,785 | 3,729 | 3,711 | 3,675 | 3,750 | 3,728 | 3,584 | 3,484 | 3,291 |
| 기 타 | 5,440 | 5,184 | 4,898 | 5,152 | 4,390 | 4,331 | 5,184 | 6,234 | 6,903 | 6,279 |

### | 표 5-134 | 수형자 형명, 형기별 인원

(단위 : 명)

| 형명·형기 \ 연도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계 | | 32,297 | 31,981 | 31,198 | 31,434 | 32,137 | 33,444 | 35,098 | 36,479 | 36,167 | 35,271 |
| 징역 | 소 계 | 31,070 | 30,683 | 29,889 | 30,082 | 30,796 | 32,064 | 33,694 | 35,048 | 34,736 | 33,847 |
| | 1년 미만 | 6,379 | 5,430 | 5,421 | 5,322 | 5,078 | 5,312 | 5,724 | 6,362 | 6,050 | 6,169 |
| | 1년 이상 | 10,861 | 10,673 | 9,666 | 9,829 | 10,344 | 10,898 | 12,001 | 13,010 | 13,208 | 12,591 |
| | 3년 이상 | 5,980 | 6,458 | 6,610 | 6,493 | 6,613 | 6,866 | 6,870 | 6,747 | 6,727 | 6,589 |
| | 5년 이상 | 3,953 | 4,197 | 4,335 | 4,601 | 4,912 | 5,088 | 5,216 | 5,195 | 5,029 | 4,886 |
| | 10년 이상 | 3,347 | 3,396 | 3,344 | 3,317 | 3,299 | 3,335 | 3,283 | 3,127 | 3,071 | 2,927 |
| | 20년 이상 | 550 | 529 | 513 | 520 | 550 | 565 | 600 | 607 | 651 | 685 |
| 금고 | 소 계 | 47 | 72 | 45 | 84 | 53 | 60 | 67 | 86 | 73 | 87 |
| | 6월 미만 | 2 | 4 | 2 | 2 | 1 | 4 | 5 | 8 | 1 | 1 |
| | 6월 이상 | 23 | 35 | 23 | 51 | 32 | 33 | 37 | 39 | 31 | 29 |
| | 1년 이상 | 18 | 29 | 15 | 26 | 16 | 19 | 17 | 28 | 28 | 41 |
| | 3년 이상 | 4 | 4 | 5 | 5 | 4 | 4 | 8 | 11 | 13 | 16 |
| 무기징역 | | 1,180 | 1,226 | 1,264 | 1,268 | 1,288 | 1,320 | 1,337 | 1,345 | 1,358 | 1,337 |

### | 표 5-135 | 수형자 입소 경력별 인원

(단위 : 명)

| 사유 \ 연도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계 | | 32,297 | 31,981 | 31,198 | 31,434 | 32,137 | 33,444 | 35,098 | 36,479 | 36,167 | 35,271 |
| 무경험자 | | 15,456 | 15,384 | 15,225 | 16,676 | 17,483 | 18,604 | 19,794 | 20,649 | 20,055 | 19,558 |
| 유경력자 | 소 계 | 16,841 | 16,597 | 15,973 | 14,758 | 14,654 | 14,840 | 15,304 | 15,830 | 16,112 | 15,713 |
| | 1 회 | 5,955 | 5,835 | 5,373 | 5,308 | 5,292 | 5,552 | 5,987 | 6,437 | 6,979 | 6,741 |
| | 2 회 | 2,947 | 2,850 | 2,622 | 2,540 | 2,515 | 2,531 | 2,506 | 2,665 | 2,728 | 2,668 |
| | 3 회 | 2,138 | 2,066 | 1,993 | 1,889 | 1,833 | 1,790 | 1,742 | 1,685 | 1,615 | 1,623 |
| | 4회이상 | 5,801 | 5,846 | 5,985 | 5,021 | 5,014 | 4,967 | 5,069 | 5,043 | 4,790 | 4,681 |

### | 표 5-136 | 수형자 입·출소 사유별 인원

(단위 : 명)

| 구분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입소자 | 계 | 73,073 | 62,862 | 55,046 | 53,689 | 55,479 | 56,044 | 62,395 | 64,541 | 62,624 | 57,562 |
| | 신 입 소 | 41,236 | 32,817 | 27,253 | 26,145 | 27,333 | 26,573 | 29,357 | 28,330 | 24,851 | 22,421 |
| | 형 확 정 | 26,704 | 25,380 | 23,163 | 22,931 | 23,267 | 24,281 | 27,206 | 30,269 | 31,500 | 29,477 |
| | 기 타 | 5,133 | 4,665 | 4,630 | 4,613 | 4,879 | 5,190 | 5,832 | 5,942 | 6,273 | 5,664 |
| 출소자 | 계 | 72,510 | 63,228 | 55,436 | 53,202 | 54,297 | 54,203 | 60,414 | 62,979 | 62,819 | 58,303 |
| | 형기종료 | 17,607 | 17,468 | 16,551 | 15,742 | 16,374 | 17,191 | 19,187 | 21,357 | 23,324 | 21,759 |
| | 가 석 방 | 8,392 | 8,083 | 7,129 | 6,500 | 6,201 | 5,394 | 5,507 | 7,157 | 8,275 | 8,693 |
| | 사 면 | 625 | 12 | 0 | 374 | 13 | 282 | 559 | 479 | 309 | 0 |
| | 기 타 | 26,299 | 21,105 | 17,367 | 16,857 | 17,501 | 16,173 | 15,927 | 14,184 | 12,559 | 11,031 |
| | 노역종료 | 19,587 | 16,560 | 14,389 | 13,729 | 14,208 | 15,163 | 19,234 | 19,802 | 18,352 | 16,820 |
| 연도말 인원 | | 32,297 | 31,981 | 31,198 | 31,434 | 32,137 | 33,444 | 35,098 | 36,479 | 36,167 | 35,271 |

## 나. 미결구금자

### | 표 5-137 | 미결구금자 입소사유별 인원

(단위 : 명)

| 구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계 | 58,076 | 48,335 | 44,300 | 43,152 | 44,274 | 48,265 | 52,129 | 55,240 | 51,863 | 47,986 |
| 신 입 소 | 54,013 | 44,276 | 40,084 | 39,029 | 39,604 | 43,171 | 46,585 | 49,405 | 45,976 | 42,461 |
| 기 타 (보석취소 등) | 4,063 | 4,059 | 4,216 | 4,123 | 4,670 | 5,094 | 5,544 | 5,835 | 5,887 | 5,525 |

### | 표 5-138 | 미결구금자 출소사유별 인원

(단위 : 명)

| 구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계 | 70,008 | 61,815 | 43,987 | 41,433 | 42,651 | 46,272 | 50,654 | 53,470 | 53,890 | 47,913 |
| 구속취소 | 1,888 | 1,893 | 1,465 | 1,355 | 1,400 | 1,669 | 2,056 | 2,452 | 2,761 | 2,538 |
| 벌 금 | 2,156 | 1,574 | 1,235 | 947 | 1,078 | 1,224 | 1,306 | 1,310 | 1,218 | 976 |
| 집행유예 | 17,052 | 13,074 | 11,030 | 9,941 | 10,100 | 11,777 | 12,914 | 12,447 | 11,227 | 8,985 |
| 보 석 | 4,709 | 3,885 | 3,376 | 2,662 | 2,882 | 3,167 | 3,069 | 2,678 | 2,555 | 2,127 |
| 형 확 정 | 25,804 | 24,351 | 21,955 | 21,660 | 22,017 | 23,155 | 25,985 | 29,019 | 30,173 | 28,216 |
| 기 타 | 18,399 | 17,038 | 4,926 | 4,868 | 5,174 | 5,280 | 5,324 | 5,564 | 5,956 | 5,071 |
| 연도말인원 | 15,931 | 13,700 | 13,840 | 15,274 | 16,687 | 18,317 | 19,569 | 21,196 | 19,031 | 18,898 |

※ 2011년 통계부터 교정기관간 이송·이입 인원은 제외함

## 다. 소년수형자

### | 표 5-139 | 소년수형자 죄명별 인원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계 | 169 | 146 | 114 | 170 | 152 | 131 | 130 | 150 | 128 | 105 |
| 절 도 | 62 | 45 | 26 | 42 | 43 | 34 | 26 | 23 | 24 | 17 |
| 사기·횡령 | 3 | 3 | - | 2 | 1 | 2 | 10 | 2 | 12 | 12 |
| 폭력·상해 | 3 | 1 | 5 | 17 | 17 | 5 | 10 | 27 | 4 | 3 |
| 강 간 등 | 44 | 32 | 33 | 54 | 46 | 34 | 27 | 35 | 44 | 24 |
| 강 도 등 | 32 | 33 | 18 | 24 | 16 | 11 | 14 | 19 | 8 | 5 |
| 살 인 | 6 | 11 | 10 | 11 | 7 | 6 | 5 | 5 | 4 | 4 |
| 과 실 범 | 2 | 3 | 1 | 2 | - | 2 | 2 | 2 | - | 1 |
| 기 타 | 17 | 18 | 21 | 18 | 22 | 37 | 36 | 37 | 32 | 39 |

### | 표 5-140 | 소년수형자 형명·형기별 인원

(단위 : 명)

| 형명형기 \ 연도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계 | | 169 | 146 | 114 | 170 | 152 | 131 | 130 | 150 | 128 | 105 |
| 징역형 | 무 기 | - | - | - | - | - | - | - | - | - | - |
| | 20년 이상 | - | - | 1 | 2 | 4 | 1 | - | - | - | 1 |
| | 10년 이상 | 3 | 5 | 4 | 5 | 4 | 3 | 2 | 2 | - | - |
| | 5년 이상 | 15 | 15 | 12 | 13 | 10 | 11 | 12 | 13 | 9 | 13 |
| | 3년 이상 | 42 | 45 | 38 | 44 | 39 | 42 | 48 | 56 | 47 | 33 |
| | 1년 이상 | 89 | 58 | 48 | 94 | 87 | 67 | 56 | 69 | 64 | 55 |
| | 1년 미만 | 19 | 23 | 10 | 12 | 8 | 7 | 11 | 8 | 8 | 2 |
| | 6월 미만 | 1 | - | 1 | - | - | - | 1 | 1 | - | 1 |
| 금고형 | 3년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1년 미만 | - | - | - | - | - | - | - | 1 | - | - |

### | 표 5-141 | 소년수형자 석방사유별 인원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계 | 101 | 114 | 69 | 86 | 101 | 103 | 74 | 94 | 83 | 67 |
| 가 석 방 | 17 | 21 | 10 | 17 | 10 | 12 | 8 | 9 | 10 | 5 |
| 부정기형집행 종료결정 | - | - | - | - | - | - | - | - | - | - |
| 형 기 종 료 | 59 | 75 | 45 | 45 | 68 | 78 | 53 | 64 | 38 | 43 |
| 기 타 | 25 | 18 | 14 | 24 | 23 | 13 | 13 | 21 | 35 | 19 |

## 라. 외부교통권

### | 표 5-142 | 수용자 원격화상접견 실적

(단위 : 건)

| 연 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건 수 | 163,585 | 159,144 | 163,186 | 178,762 | 198,458 | 214,205 | 246,045 | 279,423 | 223,143 | 294,150 |

### | 표 5-143 | 수용자 전화사용 실적

(단위 : 건)

| 연 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건 수 | 454,842 | 490,903 | 463,230 | 487,228 | 488,153 | 501,483 | 569,562 | 576,357 | 555,883 | 594,835 |

### | 표 5-144 | 수용자 접견예약 실적

(단위 : 건)

| 연 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건 수 | 349,230 | 345,762 | 374,780 | 410,980 | 479,481 | 533,348 | 579,852 | 657,241 | 751,207 | 969,264 |

### | 표 5-145 | 수용자 접견 실적

(단위 : 건)

| 연 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건 수 | 2,218,193 | 2,030,847 | 1,964,389 | 1,979,015 | 2,159,672 | 2,425,321 | 2,576,186 | 2,807,596 | 2,737,767 | 2,504,718 |

## 마. 재복역률 및 가석방

### | 표 5-146 | 2014년 출소자의 누적 재복역률

| 재복역 기간 | '14년 출소자의 누적 재복역률 (출소자 22,484명) | |
|---|---|---|
| | 재복역 인원 | 비 율 |
| 3월 이내 | 46 | 0.2% |
| 6월 이내 | 295 | 1.3% |
| 1년 이내 | 1,578 | 7.0% |
| 2년 이내 | 4,125 | 18.3% |
| 3년 이내 | 5,780 | 25.7% |

※ 조사대상인원 : 22,484명
※ 출소자 재복역률 개념
출소자 재복역률이란, 금고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로서 '14년에 형기종료, 가석방·사면 등의 사유로 출소한 자 중, 출소 후 범한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위해 3년 이내에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

### | 표 5-147 | 출소사유별·재복역기간별·성별 재복역률

| 출소사유 | 총출소 인원 | | 재복역 인원 | | 재복역기간 | | | | | | | | | |
|---|---|---|---|---|---|---|---|---|---|---|---|---|---|---|
| | | | | | 3월 미만 | | 3월 이상 6월 미만 | | 6월 이상 1년 미만 | | 1년 이상 2년 미만 | | 2년 이상 3년 미만 | |
| | 전체 | 여자 | 전체 | 여자 | 전체 | 여자 | 전체 | 여자 | 전체 | 여자 | 전체 | 여자 | 전체 | 여자 |
| 총 계 | 22,484 | 1,557 | 5,780 | 200 | 46 | 1 | 249 | 8 | 1,283 | 37 | 2,547 | 87 | 1,655 | 67 |
| 형기종료 | 16,801 | 850 | 5,389 | 170 | 40 | 1 | 234 | 7 | 1,232 | 33 | 2,404 | 77 | 1,479 | 52 |
| 가석방 | 5,394 | 643 | 363 | 26 | 6 | - | 15 | 1 | 52 | 3 | 129 | 7 | 163 | 15 |
| 감호기간종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출소 | 10 | - | 2 | - | - | - | - | - | - | - | 2 | - | - | - |
| 사 면 | 281 | 64 | 26 | 4 | - | - | - | - | 1 | 1 | 12 | 3 | 13 | - |

※ 출소사유별 재복역률 : 형기종료 32.1%, 가석방 6.7%, 감호기간 종료 0.0%, 가출소 20.0%, 사면 9.3%
※ 재복역기간별 누적 재복역률 : 3월 이내 0.2%, 6월 이내 1.3%, 1년 이내 7.0%, 2년 이내 18.3%, 3년 이내 25.7%
※ 재복역기간별 인원 : 3월이내 46명(0.8%), 3월이상 6월이내 249명(4.3%), 6월이상 1년이내 1,283명(22.2%), 1년이상 2년이내 2,547명(44.1%), 2년이상 3년이내 1,655명(28.6%)
※ 성별 재복역률 : 남자 26.7%, 여자 12.9%

## | 표 5-148 | 출소자 범수별 재복역률

| 출소사유 | 구분 | 총출소인원 | 재복역자 범수 | | | | |
|---|---|---|---|---|---|---|---|
| | | | 1범 | 2범 | 3범 | 4범 | 5범 이상 |
| 총계 | 출소인원 | 22,484 | 12,455 | 3,853 | 1,770 | 1,122 | 3,284 |
| | 재복역인원 | 5,780 | 1,460 | 1,078 | 720 | 526 | 1,996 |
| | 재복역률 | 25.7 | 11.7 | 28.0 | 40.7 | 46.9 | 60.8 |
| 형기종료 | 출소인원 | 16,801 | 7,609 | 3,073 | 1,724 | 1,119 | 3,276 |
| | 재복역인원 | 5,389 | 1,193 | 963 | 713 | 525 | 1,995 |
| | 재복역률 | 32.1 | 15.7 | 31.3 | 41.4 | 46.9 | 60.9 |
| 가석방 | 출소인원 | 5,394 | 4,571 | 774 | 43 | - | 6 |
| | 재복역인원 | 363 | 242 | 115 | 6 | - | - |
| | 재복역률 | 6.7 | 5.3 | 14.9 | 14.6 | - | - |
| 감호기간종료 | 출소인원 | - | - | - | - | - | - |
| | 재복역인원 | - | - | - | - | - | - |
| | 재복역률 | - | - | - | - | - | - |
| 가출소 | 출소인원 | 10 | 4 | - | 3 | 3 | - |
| | 재복역인원 | 2 | - | - | 1 | 1 | - |
| | 재복역률 | 20.0 | - | - | 33.3 | 33.3 | - |
| 사면 | 출소인원 | 281 | 271 | 6 | 2 | - | 2 |
| | 재복역인원 | 26 | 25 | - | - | - | 1 |
| | 재복역률 | 9.3 | 9.2 | - | - | - | 50.0 |

※ 범수별 재복역률 : 초범 11.7%, 2범 28.0%, 3범 40.7%, 4범 46.9%, 5범 이상 60.8%

※ 출소사유별 범수별 재복역률 : 형기종료 5범(60.9%), 가석방 2범(14.9%), 가출소 3·4범(33.3%), 사면 5범(100.0%)의 재복역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 표 5-149 | 출소자 연령별 재복역률

| 출소사유 | 구분 | 총출소인원 | 재복역자 연령 | | | | | |
|---|---|---|---|---|---|---|---|---|
| | | | 20세 미만 | 20세 ~ 29세 | 30세 ~ 39세 | 40세 ~ 49세 | 50세 ~ 59세 | 60세 이상 |
| 계 | 출소인원 | 22,484 | 187 | 3,264 | 4,963 | 6,734 | 5,581 | 1,755 |
| | 재복역인원 | 5,780 | 79 | 935 | 1,344 | 1,812 | 1,329 | 281 |
| | 재복역률 | 25.7 | 42.3 | 28.7 | 27.1 | 26.9 | 23.8 | 16.0 |
| 형기종료 | 출소인원 | 16,801 | 153 | 2,065 | 3,833 | 5,151 | 4,302 | 1,297 |
| | 재복역인원 | 5,389 | 65 | 802 | 1,266 | 1,720 | 1,269 | 267 |
| | 재복역률 | 32.1 | 42.5 | 38.8 | 33.0 | 33.4 | 29.5 | 20.6 |
| 가석방 | 출소인원 | 5,394 | 30 | 1,167 | 1,069 | 1,497 | 1,205 | 426 |
| | 재복역인원 | 363 | 13 | 125 | 72 | 85 | 54 | 14 |
| | 재복역률 | 6.7 | 43.3 | 10.7 | 6.7 | 5.7 | 4.5 | 3.3 |
| 감호기간종료 | 출소인원 | - | - | - | - | - | - | - |
| | 재복역인원 | - | - | - | - | - | - | - |
| | 재복역률 | - | - | - | - | - | - | - |
| 가출소 | 출소인원 | 10 | - | - | 2 | 5 | 3 | - |
| | 재복역인원 | 2 | - | - | - | 2 | - | - |
| | 재복역률 | 20.0 | - | - | - | 40.0 | - | - |
| 사면 | 출소인원 | 281 | 4 | 32 | 59 | 83 | 71 | 32 |
| | 재복역인원 | 26 | 1 | 8 | 6 | 5 | 6 | - |
| | 재복역률 | 9.3 | 25.0 | 25.0 | 10.2 | 6.0 | 8.5 | - |

※ 연령별 재복역률
20세 이내 42.3%, 20대 28.7%, 30대 27.1%, 40대 26.9%, 50대 23.8%, 60대 이상 16.0%
※ 출소사유별 연령별 재복역률
형기종료(42.5%), 가석방(43.3%)은 20세 미만의 재복역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 표 5-150 | 출소자 죄명별 재복역률

| 출소사유 | 구분 | 총출소 인원 | 재복역자 죄명 | | | | | | | | |
|---|---|---|---|---|---|---|---|---|---|---|---|
| | | | 살인 | 강도 | 성폭력 | 폭력행위 | 절도 | 사기·횡령 | 마약류 | 과실범 | 기타 |
| 계 | 출소인원 | 22,484 | 530 | 737 | 1,442 | 2,836 | 3,665 | 7,066 | 1,641 | 1,719 | 2,848 |
| | 재복역인원 | 5,780 | 49 | 184 | 263 | 978 | 1,714 | 1,068 | 794 | 317 | 413 |
| | 재복역률 | 25.7 | 9.3 | 25.0 | 18.2 | 34.5 | 46.8 | 15.1 | 48.4 | 18.4 | 14.5 |
| 형기종료 | 출소인원 | 16,801 | 228 | 474 | 1,439 | 2,506 | 3,225 | 4,295 | 1,640 | 1,205 | 1,789 |
| | 재복역인원 | 5,389 | 35 | 157 | 263 | 947 | 1,601 | 940 | 794 | 260 | 392 |
| | 재복역률 | 32.1 | 15.4 | 33.1 | 18.3 | 37.8 | 49.6 | 21.9 | 48.4 | 21.6 | 21.9 |
| 가석방 | 출소인원 | 5,394 | 300 | 260 | 1 | 317 | 415 | 2,568 | 1 | 483 | 1,049 |
| | 재복역인원 | 363 | 14 | 26 | - | 29 | 105 | 118 | - | 53 | 18 |
| | 재복역률 | 6.7 | 4.7 | 10.0 | - | 9.2 | 25.4 | 4.6 | - | 11.0 | 1.7 |
| 감호기간종료 | 출소인원 | - | - | - | - | - | - | - | - | - | - |
| | 재복역인원 | - | - | - | - | - | - | - | - | - | - |
| | 재복역률 | - | - | - | - | - | - | - | - | - | - |
| 가출소 | 출소인원 | 10 | - | 3 | 2 | 2 | 3 | - | - | - | - |
| | 재복역인원 | 2 | - | 1 | - | - | 1 | - | - | - | - |
| | 재복역률 | 20.0 | - | 33.3 | - | - | 33.3 | - | - | - | - |
| 사면 | 출소인원 | 281 | 2 | - | - | 11 | 24 | 203 | - | 31 | 10 |
| | 재복역인원 | 26 | - | - | - | 2 | 7 | 10 | - | 4 | 3 |
| | 재복역률 | 9.3 | - | - | - | 18.2 | 29.2 | 4.9 | - | 12.9 | 30.0 |

※ 죄명별 재복역률
살인(9.3%), 강도(25.0%), 성폭력(18.2%), 폭력(34.5%), 절도(46.8%), 사기·횡령(15.1%), 마약류(48.4%), 과실범(18.4%)
※ 출소사유별 죄명별 재복역률
형기종료(49.6%) 및 가석방(25.4%)·사면(29.2%)은 절도가, 가출소는 강도 및 절도(33.3%)가 재복역률이 높게 나타남

### | 표 5-151 | 출소자 형기별 재복역률

| 출소사유 | 구분 | 총출소인원 | 재복역자 형기 | | | | | | | | |
|---|---|---|---|---|---|---|---|---|---|---|---|
| | | | 6월 미만 | 6월 이상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7년 미만 | 7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15년 미만 | 15년 이상 20년 미만 | 20년 이상 |
| 계 | 출소인원 | 22,484 | 880 | 6,601 | 10,673 | 2,558 | 621 | 399 | 343 | 175 | 234 |
| | 재복역인원 | 5,780 | 221 | 1,639 | 2,894 | 636 | 130 | 93 | 68 | 45 | 54 |
| | 재복역률 | 25.7 | 25.1 | 24.8 | 27.1 | 24.9 | 20.9 | 23.3 | 19.8 | 25.7 | 23.1 |
| 형기종료 | 출소인원 | 16,801 | 860 | 5,578 | 7,255 | 1,830 | 438 | 276 | 245 | 125 | 194 |
| | 재복역인원 | 5,389 | 220 | 1,586 | 2,643 | 590 | 116 | 83 | 61 | 41 | 49 |
| | 재복역률 | 32.1 | 25.6 | 28.4 | 36.4 | 32.2 | 26.5 | 30.1 | 24.9 | 32.8 | 25.3 |
| 가석방 | 출소인원 | 5,394 | 16 | 902 | 3,269 | 727 | 177 | 118 | 96 | 49 | 40 |
| | 재복역인원 | 363 | 1 | 40 | 238 | 46 | 14 | 8 | 7 | 4 | 5 |
| | 재복역률 | 6.7 | 6.3 | 4.4 | 7.3 | 6.3 | 7.9 | 6.8 | 7.3 | 8.2 | 12.5 |
| 감호기간종료 | 출소인원 | - | - | - | - | - | - | - | - | - | - |
| | 재복역인원 | - | - | - | - | - | - | - | - | - | - |
| | 재복역률 | - | - | - | - | - | - | - | - | - | - |
| 가출소 | 출소인원 | 10 | - | - | 2 | - | 3 | 2 | 2 | 1 | - |
| | 재복역인원 | 2 | - | - | 1 | - | - | 1 | - | - | - |
| | 재복역률 | 20.0 | - | - | 50.0 | - | - | 50.0 | - | - | - |
| 사면 | 출소인원 | 281 | 4 | 121 | 149 | 1 | 3 | 3 | - | - | - |
| | 재복역인원 | 26 | - | 13 | 12 | - | - | 1 | - | - | - |
| | 재복역률 | 9.3 | - | 10.7 | 8.1 | - | - | 33.3 | - | - | - |

※ 형기별 재복역률
6월 미만(25.1%), 6월 이상 1년 미만(24.8%), 1년 이상 3년 미만(27.1%), 3년 이상 5년 미만(24.9%), 5년 이상 7년 미만(20.9%), 7년 이상 10년 미만(23.3%), 10년 이상 15년 미만(19.8%), 15년 이상 20년 미만(25.7%), 20년 이상(23.1%)
※ 출소사유별 형기별 재복역률
형기종료는 1년 이상 3년 미만이 36.4%, 가석방은 20년 이상이 12.5%로 재복역률이 높게 나타남

### | 표 5-152 | 수형자 가석방 현황

(단위 : 명)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인원 | 8,392 | 8,083 | 7,129 | 6,500 | 6,201 | 5,394 | 5,507 | 7,157 | 8,275 | 8,693 |

# 2. 수용자 교육·교화 현황

## 가. 학과교육, 프로그램, 입상 등

### | 표 5-153 | 검정고시 교육인원

| 구분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계 | 890 | 874 | 873 | 761 | 785 | 720 | 609 | 556 | 616 | 639 |
| 고졸 검정 | 465 | 536 | 569 | 485 | 510 | 498 | 428 | 411 | 444 | 473 |
| 중졸 검정 | 305 | 260 | 238 | 207 | 228 | 188 | 147 | 126 | 150 | 155 |
| 초졸 검정 | 120 | 78 | 66 | 69 | 47 | 34 | 34 | 19 | 22 | 11 |

### | 표 5-154 | 검정고시 합격인원

| 구분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계 | 572 | 481 | 514 | 558 | 571 | 565 | 575 | 533 | 508 | 492 |
| 고졸 검정 | 330 | 291 | 325 | 390 | 370 | 390 | 394 | 383 | 371 | 364 |
| 중졸 검정 | 205 | 169 | 162 | 130 | 187 | 163 | 147 | 133 | 125 | 120 |
| 초졸 검정 | 37 | 21 | 27 | 38 | 14 | 12 | 34 | 17 | 12 | 8 |

### | 표 5-155 |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인원

(단위 : 명)

| 소 별 \ 연 도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계 | 교육인원 | 40 | 40 | 40 | 30 | 30 | 30 | 30 | 30 | 21 | 22 |
| | 졸업인원 | 6 | 13 | 10 | 5 | 9 | 6 | 7 | 6 | 5 | 7 |
| 천안 | 교육인원 | 폐지 | - | - | - | - | - | - | - | - | - |
| | 졸업인원 | - | - | - | - | - | - | - | - | - | - |
| 김천 | 교육인원 | 40 | 40 | 40 | 30 | 30 | 30 | 30 | 30 | 21 | 22 |
| | 졸업인원 | 6 | 13 | 10 | 5 | 9 | 6 | 7 | 6 | 5 | 7 |

| 표 5-156 | 수형자 문화프로그램 시행 현황

| 연 도 | 기 관 | 횟 수 | 인 원(명) | 비 고 |
|---|---|---|---|---|
| 2009 | 46 | 362 | 37,403 | |
| 2010 | 50 | 401 | 53,639 | |
| 2011 | 51 | 457 | 68,162 | |
| 2012 | 51 | 503 | 78,826 | |
| 2013 | 51 | 535 | 68,786 | |
| 2014 | 51 | 654 | 58,412 | |
| 2015 | 52 | 846 | 55,468 | |
| 2016 | 52 | 1,285 | 61,110 | |
| 2017 | 52 | 1,428 | 63,671 | |
| 2018 | 38 | 1,322 | 50,873 | |

| 표 5-157 | 일반수형자 정신교육 및 인성교육 실적

(단위 : 명)

| 연 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집중인성) | 2016 (집중인성) | 2017 (집중인성) | 2018 (집중인성) |
|---|---|---|---|---|---|---|---|---|---|---|
| 실시인원 | 9,118 | 9,245 | 8,744 | 6,789 | 6,202 | 5,763 | 8,604 | 10,066 | 10,525 | 9,909 |

| 표 5-158 | 수형자 문예작품 입상 현황

(2018. 12. 31. 현재, 단위 : 건)

| 구 분 | 계 | 서 예 | 한국화 | 서양화 | 시 화 | 공 예 |
|---|---|---|---|---|---|---|
| 출 품 | 157 | 88 | 37 | 22 | - | 10 |
| 입 상 | 85 | 41 | 24 | 17 | - | 3 |

## 나. 귀휴 등 사회적 처우

| 표 5-159 | 귀휴 인원

(단위 : 명)

| 연 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인 원 | 1,000 | 1,157 | 1,165 | 1,209 | 1,282 | 1,356 | 999 | 1,084 | 1,142 | 1,198 |

### | 표 5-160 |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인원

(단위 : 명)

| 연 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인 원 | 2,994 | 5,108 | 4,323 | 4,099 | 4,245 | 4,417 | 4,322 | 4,991 | 5,080 | 4,850 |

### | 표 5-161 | 가족만남의 날 행사 인원

(단위 : 명)

| 연 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인 원 | 6,807 | 11,078 | 11,566 | 11,681 | 11,578 | 11,855 | 12,755 | 14,393 | 11,095 | 8,891 |

### | 표 5-162 | 가족만남의 집 이용 인원

(단위 : 명)

| 연 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인 원 | 795 | 1,223 | 1,120 | 1,177 | 1,261 | 1,338 | 1,361 | 1,431 | 1,583 | 1,913 |

## 다. 교정위원 활동

### | 표 5-163 | 교정위원 현황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계 | 4,574 | 5,220 | 5,069 | 4,915 | 4,833 | 4,688 | 4,706 | 4,765 | 4,830 | 4,777 |
| 교화위원 | 2,255 | 2,232 | 2,070 | 1,971 | 1,915 | 1,778 | 1,804 | 1,790 | 1,845 | 1,812 |
| 종교위원 | 1,925 | 1,963 | 1,962 | 1,942 | 1,967 | 1,924 | 1,895 | 1,931 | 1,910 | 1,891 |
| 교육위원 | 241 | 248 | 225 | 218 | 211 | 246 | 275 | 315 | 329 | 328 |
| 의료위원 | 153 | 140 | 123 | 112 | 108 | 98 | 102 | 98 | 97 | 91 |
| 취업위원 | - | 637 | 689 | 672 | 632 | 642 | 630 | 631 | 649 | 655 |

### | 표 5-164 | 교화위원 현황

(2018. 12. 31. 현재, 단위 : 명)

| 구 분 | 계 | 교 육 | 법 조 | 사회사업 | 실 업 | 공무원 | 기 타 |
|---|---|---|---|---|---|---|---|
| 인 원 | 1,812 | 72 | 37 | 71 | 1,226 | 24 | 382 |

### | 표 5-165 | 종교위원 현황

(2018. 12. 31. 현재, 단위 : 명)

| 구 분 | 계 | 기독교 | 불 교 | 천주교 | 기 타 |
|---|---|---|---|---|---|
| 인 원 | 1,891 | 871 | 628 | 361 | 31 |

### | 표 5-166 | 교육위원 현황

(2018. 12. 31. 현재, 단위 : 명)

| 구 분 | 계 | 교 수 | 교 사 | 학원강사 | 직업훈련 강사 | 기 타 |
|---|---|---|---|---|---|---|
| 인 원 | 328 | 75 | 8 | 26 | 13 | 206 |

### | 표 5-167 | 의료위원 현황

(2018. 12. 31. 현재, 단위 : 명)

| 구 분 | 계 | 의 사 | 한의사 | 약 사 | 간호사 | 기 타 |
|---|---|---|---|---|---|---|
| 인 원 | 91 | 78 | 2 | 2 | 1 | 8 |

### | 표 5-168 | 취업위원 현황

(2018. 12. 31. 현재, 단위 : 명)

| 구 분 | 계 | 실 업 | 사회사업 | 교 육 | 공무원 및 정부산하기관 | 기 타 |
|---|---|---|---|---|---|---|
| 인 원 | 655 | 434 | 21 | 51 | 53 | 96 |

### | 표 5-169 | 교화위원 활동실적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상 담 ( 명 ) | 1,896 | 1,454 | 1,728 | 1,615 | 1,591 | 2,390 | 1,629 | 1,734 | 1,704 | 1,334 |
| 교화강연(회) | 61 | 15 | 13 | 6 | 3 | 8 | 11 | 15 | 5 | 3 |
| 자매결연(명) | 549 | 778 | 719 | 186 | 363 | 515 | 519 | 341 | 204 | 306 |
| 수용생활지원 ( 명 ) | 4,439 | 4,747 | 4,739 | 4,440 | 4,619 | 6,992 | 5,867 | 6,726 | 4,434 | 5,363 |

### | 표 5-170 | 종교위원 활동실적

| 구분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교리지도(명) | 38,201 | 44,678 | 37,072 | 39,667 | 41,207 | 37,790 | 29,560 | 36,876 | 33,215 | 37,085 |
| 자매결연(명) | 13,428 | 12,466 | 9,652 | 2,920 | 3,989 | 3,448 | 3,828 | 3,333 | 7,158 | 11,641 |
| 수용생활지원(명) | 25,309 | 24,891 | 26,093 | 27,305 | 24,780 | 22,336 | 22,170 | 23,962 | 24,725 | 28,224 |
| 교화도서기증(권) | 9,028 | 3,429 | 2,361 | 1,782 | 401 | 670 | 346 | 3,441 | 164 | 3,809 |

### | 표 5-171 | 교육위원 활동실적

| 구분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교육훈련지도(명) | 12,905 | 8,777 | 8,783 | 7,665 | 6,761 | 7,668 | 11,401 | 14,162 | 18,003 | 20,428 |
| 자매결연(명) | 5 | 6 | 7 | 4 | 8 | 29 | 18 | 13 | 44 | - |
| 수용생활지원(명) | 720 | 400 | 110 | 1 | - | 11 | 36 | 187 | 67 | 93 |
| 교화도서기증(권) | 514 | 97 | 89 | 276 | - | 20 | 100 | 43 | 249 | - |

### | 표 5-172 | 의료위원 활동실적

| 구분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의료지원(명) | 6,757 | 2,754 | 6,029 | 4,970 | 4,762 | 4,731 | 10,716 | 12,310 | 11,566 | 13,295 |
| 자매결연(명) | 2 | 1 | - | 3 | 2 | 5 | 9 | 3 | - | - |
| 수용생활지원(명) | 33 | 29 | 38 | 19 | - | - | 45 | 115 | 68 | 120 |
| 교화도서기증(권) | - | - | 33 | - | - | - | - | - | - | 100 |

# 3.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

## 가. 교도작업

### | 표 5-173 | 취업 인원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수형자 총인원 | | 32,575 | 31,975 | 31,032 | 31,620 | 32,076 | 32,867 | 34,425 | 36,082 | 35,990 | 34,633 |
| 취업 불가능인원 | | 8,562 | 8,575 | 8,469 | 9,053 | 9,140 | 9,085 | 10,458 | 12,154 | 11,613 | 11,510 |
| 취업가능인원 | 계 | 24,013 | 23,400 | 22,563 | 22,567 | 22,936 | 23,782 | 23,967 | 23,928 | 24,377 | 23,123 |
| | 취업인원 | 19,441 | 18,892 | 19,379 | 18,826 | 18,991 | 21,471 | 22,090 | 22,100 | 22,265 | 21,351 |
| | 비율(%) | 81 | 81 | 86 | 83 | 83 | 90 | 92 | 92 | 91 | 92 |
| | 불취업인원 | 4,572 | 4,508 | 3,184 | 3,741 | 3,945 | 2,311 | 1,877 | 1,828 | 2,112 | 1,772 |

※ 감호작업은 제외

### | 표 5-174 | 생산실적

(단위 : 백만 원)

| 구분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계획 | 31,600 | 31,800 | 32,000 | 32,913 | 33,789 | 37,699 | 42,082 | 55,541 | 57,033 | 60,056 |
| 실적 | 33,713 | 33,053 | 39,220 | 38,038 | 42,099 | 47,247 | 55,792 | 62,239 | 66,127 | 65,732 |
| 실적/계획(%) | 106.7 | 103.9 | 122.6 | 115.6 | 124.6 | 125.3 | 132.6 | 112.1 | 115.9 | 109.5 |
| 실적 증가율(%) | 7.4 | △2.0 | 18.7 | △3.0 | 10.7 | 12.2 | 18.1 | 11.6 | 6.2 | △0.6 |

## | 표 5-175 | 작업형태별 생산실적

(단위 : 백만 원)

| 구분 \ 연도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계 | 실 적 | 33,713 | 33,053 | 39,220 | 38,038 | 42,099 | 47,246 | 55,792 | 62,239 | 66,127 | 65,732 |
| 직영작업 | 실 적 | 23,187 | 21,284 | 26,496 | 22,951 | 22,873 | 24,801 | 30,228 | 34,998 | 38,141 | 37,905 |
| | 구성비 (%) | 68.8 | 64.4 | 67.6 | 60.3 | 54.3 | 52.5 | 54.2 | 56.2 | 57.7 | 57.7 |
| 위탁작업 | 실 적 | 4,811 | 5,455 | 6,170 | 7,907 | 11,548 | 15,026 | 17,448 | 18,763 | 19,312 | 19,886 |
| | 구성비 (%) | 14.3 | 16.5 | 15.7 | 20.8 | 27.4 | 31.8 | 31.3 | 30.1 | 29.2 | 30.2 |
| 외통·개방 | 실 적 | 5,560 | 6,154 | 6,256 | 7,004 | 7,020 | 7,217 | 7,914 | 8,330 | 8,456 | 7,807 |
| | 구성비 (%) | 16.5 | 18.6 | 16.0 | 18.4 | 16.7 | 15.3 | 14.2 | 13.4 | 12.8 | 11.9 |
| 기타 | 실 적 | 155 | 160 | 298 | 176 | 658 | 202 | 202 | 148 | 218 | 134 |
| | 구성비 (%) | 0.5 | 0.5 | 0.8 | 0.5 | 1.6 | 0.4 | 0.4 | 0.2 | 0.3 | 0.2 |

## | 표 5-176 | 연도별 관수용품 등 공급실적

(단위 : 백만 원)

| 구분 \ 연도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생산총액 | | 33,713 | 33,053 | 39,220 | 38,038 | 42,099 | 47,247 | 55,792 | 62,239 | 66,127 | 65,732 |
| 관수용품 | 계 | 21,287 | 19,146 | 23,857 | 20,320 | 19,354 | 22,504 | 28,503 | 31,723 | 35,343 | 28,617 |
| | 교정기관 | 19,960 | 18,492 | 23,081 | 19,513 | 18,757 | 20,535 | 25,971 | 27,479 | 31,060 | 24,949 |
| | 법무부산하 | 367 | 145 | 153 | 346 | 296 | 311 | 205 | 994 | 74 | 99 |
| | 부 외 처 | 960 | 509 | 623 | 461 | 301 | 1,658 | 2,327 | 3,250 | 4,209 | 3,569 |
| 일반판매 | | 12,426 | 13,907 | 15,363 | 17,718 | 22,745 | 24,743 | 27,289 | 30,516 | 30,784 | 37,115 |

## | 표 5-177 | 작업장려금 지급실적

| 구분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지급액 (천 원) | 10,800,307 | 10,174,852 | 10,550,869 | 11,966,506 | 14,901,986 | 17,798,954 | 20,231,129 | 20,853,628 | 22.641.637 | 22,074,502 |
| 지 급 연인원 (명) | 5,168,684 | 4,745,771 | 4,958,200 | 4,965,893 | 5,022,670 | 4,435,528 | 5,634,098 | 5,615,637 | 5,874,204 | 4,967,883 |
| 1인당 1일평균 (원) | 2,090 | 2,144 | 2,128 | 2,410 | 2,967 | 4,013 | 3,591 | 3,713 | 3,854 | 34,443 |

### | 표 5-178 | 수용자 조위금·위로금 지급실적

(단위 : 천 원)

| 구분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지급인원 | 6 | 8 | 6 | 5<br>(1) | 3 | - | 5 | 5<br>(2) | 2 | 5<br>(2) |
| 지 급 액 | 42,694 | 69,627 | 60,804 | 73,735<br>(42,709) | 11,346 | - | 98,729 | 96,308<br>(90,034) | 20,040 | 145,466<br>(103,986) |

※ ( )는 조위금

### | 표 5-179 | 피보호감호자 근로보상금 지급실적

(단위 : 천 원)

| 구분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지 급 액 | 329,100 | 423,956 | 549,227 | 599,907 | 700,846 | 630,667 | 687,043 | 449,740 | 405,258 | 167,154 |
| 지급인원 | 80 | 90 | 97 | 122 | 117 | 98 | 92 | 64 | 32 | 16 |
| 1인당 평균 지급액 | 4,114 | 4,711 | 5,662 | 4,917 | 5,990 | 6,435 | 7,468 | 7,027 | 36,241 | 36,520 |

### | 표 5-180 | 최근 5년간 세입·세출현황

(단위 : 백만 원)

| 연도별 \ 구분 | 총세입액 | 총세출액 | 다음연도 이월금 | 비 고 |
|---|---|---|---|---|
| 2014 | 69,195 | 51,816 | 17,379 | |
| 2015 | 85,801 | 53,834 | 31,967 | |
| 2016 | 104,461 | 86,244 | 18,217 | |
| 2017 | 97,566 | 90,298 | 7,268 | |
| 2018 | 118,233 | 110,222 | 11 | |

※ 총세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포함

### | 표 5-181 | 국유재산 및 주요장비 현황

(단위 : 백만 원)

| 계 | 국유재산 | 공작물 등 |
|---|---|---|
| 160,036 | 158,041 | 1,995 |

### | 표 5-182 | 작업장려금 1일 지급기준표

(단위 : 원)

| 구 분 | 생 산 작 업 | | | | | | | | | 비 생 산 작 업 | | | | | | | | |
|---|---|---|---|---|---|---|---|---|---|---|---|---|---|---|---|---|---|---|
| 작 업 종 류 | 직영 개방지역작업 | | | 직영 집중근로 (위탁 집중근로) | | | 직영 일반생산작업 (위탁 일반생산작업) | | | 운영지원작업 | | | | | | 직업훈련 | | |
| | | | | | | | | | | 일반운영 지원작업 | | | 취사원 | | | | | |
| 등 급 | 상 | 중 | 하 | 상 | 중 | 하 | 상 | 중 | 하 | 상 | 중 | 하 | 상 | 중 | 하 | 상 | 중 | 하 |
| 지급액 | 15,000 | 12,000 | 10,000 | 8,500 (8,000) | 7,500 (7,000) | 6,500 (6,000) | 3,000 (2,800) | 2,500 (2,300) | 2,000 (1,900) | 1,400 | 1,300 | 1,200 | 3,500 | 3,000 | 2,500 | 1,100 | 1,000 | 900 |

### | 표 5-183 | 연도별 취업 및 창업지원 실적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계 | 1,165 | 1,243 | 1,138 | 1,298 | 1,489 | 1,696 | 1,561 | 1,707 | 1,702 | 1,573 |
| 취업 | 1,107 | 1,174 | 1,080 | 1,238 | 1,405 | 1,636 | 1,503 | 1,663 | 1,670 | 1,542 |
| 창업 | 58 | 69 | 58 | 60 | 84 | 60 | 58 | 44 | 32 | 31 |

## 나. 직업훈련

### | 표 5-184 | 직업훈련 실시인원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계 | 3,537 | 3,725 | 3,825 | 4,129 | 4,852 | 6,276 | 6,484 | 6,644 | 6,727 | 6,939 |
| 양성·향상 훈 련 | 2,783 | 3,164 | 3,076 | 3,386 | 3,336 | 3,811 | 3,758 | 3,913 | 3,719 | 4,313 |
| 숙련훈련 | 430 | 327 | 369 | 350 | 249 | 397 | 360 | 364 | 457 | 608 |
| 일반훈련 | 324 | 234 | 380 | 393 | 1,267 | 2,068 | 2,366 | 2,367 | 2,551 | 2,018 |

### | 표 5-185 | 기술자격 취득인원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계 | 2,740 | 2,856 | 2,803 | 2,813 | 2,953 | 3,278 | 3,264 | 3,316 | 3,443 | 3,424 |
| 기 술 사 | - | - | - | - | - | - | - | - | - | - |
| 기 능 장 | 8 | - | 2 | 4 | 4 | 1 | 5 | 4 | - | - |
| 기 사 | 2 | 4 | 4 | - | 11 | - | - | 1 | - | 1 |
| 산업기사 | 145 | 277 | 288 | 252 | 158 | 79 | 50 | 56 | 92 | 87 |
| 기 능 사 | 2,585 | 2,575 | 2,509 | 2,557 | 2,780 | 3,198 | 3,209 | 3,255 | 3,351 | 3,336 |

### | 표 5-186 | 기능경기대회 입상실적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계 | 128 | 134 | 86 | 85 | 95 | 101 | 87 | 76 | 77 | 98 |
| 지방대회 | 118 | 118 | 71 | 72 | 84 | 88 | 77 | 64 | 63 | 76 |
| 전국대회 | 10 | 16 | 15 | 13 | 11 | 13 | 10 | 12 | 14 | 22 |

# 제6절 출입국·외국인정책업무 통계

## 1. 연도별 출입국자 현황

| 표 5-187 |

| 구분 \ 연도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합계 | 계 | 35,206,504 | 42,988,101 | 45,422,910 | 50,322,102 | 54,966,229 |
| | 승 객 | 31,431,486 | 38,863,373 | 40,976,012 | 45,744,545 | 48,888,699 |
| | 승무원 | 3,775,018 | 4,124,728 | 4,446,898 | 4,577,557 | 6,077,530 |
| 국민 | 소 계 | 19,586,995 | 25,585,627 | 26,064,463 | 28,136,628 | 30,352,303 |
| | 승 객 | 17,576,130 | 23,419,302 | 23,759,315 | 25,557,744 | 27,646,533 |
| | 승무원 | 2,010,865 | 2,166,325 | 2,305,148 | 2,578,884 | 2,705,770 |
| 외국인 | 소 계 | 15,619,509 | 17,402,474 | 19,358,447 | 22,185,474 | 24,613,926 |
| | 승 객 | 13,855,356 | 15,444,071 | 17,216,697 | 20,186,801 | 21,242,166 |
| | 승무원 | 1,764,153 | 1,958,403 | 2,141,750 | 1,998,673 | 3,371,760 |

| 구분 \ 연도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합계 | 계 | 61,652,158 | 66,372,908 | 79,987,974 | 80,407,702 | 88,908,420 |
| | 승 객 | 55,316,870 | 60,054,078 | 73,916,823 | 75,134,915 | 83,558,252 |
| | 승무원 | 6,335,288 | 6,318,830 | 6,071,151 | 5,272,787 | 5,350,168 |
| 국민 | 소 계 | 32,722,368 | 39,111,816 | 45,313,898 | 53,445,030 | 57,859,670 |
| | 승 객 | 29,971,333 | 36,228,736 | 42,197,580 | 50,130,062 | 54,321,526 |
| | 승무원 | 2,751,035 | 2,883,080 | 3,116,318 | 3,314,968 | 3,538,144 |
| 외국인 | 소 계 | 28,929,790 | 27,261,092 | 34,674,076 | 26,962,672 | 31,048,752 |
| | 승 객 | 25,345,537 | 23,825,342 | 31,719,243 | 25,004,853 | 29,236,726 |
| | 승무원 | 3,584,253 | 3,435,750 | 2,954,833 | 1,957,819 | 1,812,024 |

# 2. 국적별 외국인 입국현황

| 표 5-188 |

| 구분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총계 | 6,942,183 | 7,774,645 | 8,666,503 | 10,121,950 | 10,678,334 |
| 중국 | 1,212,305 | 1,723,849 | 2,045,380 | 2,731,121 | 3,923,190 |
| 일본 | 3,032,376 | 3,004,066 | 3,270,290 | 3,497,525 | 2,715,451 |
| 미국 | 647,566 | 693,892 | 694,990 | 733,984 | 743,017 |
| 타이완 | 411,591 | 438,041 | 457,680 | 570,442 | 566,200 |
| 홍콩 | 206,918 | 221,121 | 272,600 | 352,019 | 391,340 |
| 필리핀 | 86,477 | 94,897 | 113,552 | 126,566 | 133,595 |
| 태국 | 156,167 | 219,231 | 262,703 | 334,502 | 313,347 |
| 말레이시아 | 66,148 | 98,807 | 136,531 | 161,970 | 187,322 |
| 베트남 | 76,537 | 92,810 | 106,360 | 110,250 | 114,357 |
| 인도네시아 | 48,891 | 61,592 | 85,351 | 110,209 | 119,179 |
| 러시아 | 65,180 | 77,024 | 86,129 | 104,273 | 119,691 |
| 싱가포르 | 84,351 | 100,526 | 110,610 | 138,813 | 157,696 |
| 인도 | 40,877 | 49,762 | 52,009 | 56,329 | 60,675 |
| 캐나다 | 102,145 | 112,496 | 112,417 | 119,943 | 122,330 |
| 오스트레일리아 | 94,262 | 105,304 | 114,844 | 121,795 | 114,106 |
| 영국 | 84,213 | 90,331 | 97,817 | 104,724 | 106,783 |
| 독일 | 80,525 | 81,396 | 80,142 | 86,327 | 86,759 |
| 프랑스 | 53,721 | 58,531 | 60,209 | 63,555 | 67,836 |
| 몽골 | 38,192 | 41,889 | 48,632 | 61,771 | 65,446 |
| 우즈베키스탄 | 15,763 | 22,385 | 29,910 | 42,133 | 44,326 |
| 뉴질랜드 | 23,074 | 25,792 | 25,504 | 28,239 | 27,065 |
| 기타 | 314,904 | 360,903 | 402,843 | 465,460 | 498,623 |

| 구분 \ 연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총계 | 12,682,019 | 13,359,701 | 17,418,307 | 13,569,509 | 15,630,522 |
| 중국 | 5,663,482 | 6,154,730 | 8,268,262 | 4,393,936 | 5,032,906 |
| 일본 | 2,254,307 | 1,859,190 | 2,321,842 | 2,337,588 | 2,976,444 |
| 미국 | 798,858 | 859,361 | 960,683 | 969,277 | 1,068,173 |
| 타이완 | 666,805 | 551,362 | 865,948 | 957,836 | 1,146,215 |
| 홍콩 | 550,268 | 524,116 | 651,639 | 659,182 | 679,942 |
| 필리핀 | 162,615 | 412,197 | 566,693 | 459,588 | 471,532 |
| 태국 | 412,217 | 375,021 | 474,262 | 503,777 | 565,784 |
| 말레이시아 | 227,434 | 223,782 | 311,686 | 308,152 | 383,467 |
| 베트남 | 141,827 | 199,323 | 299,084 | 380,929 | 519,448 |
| 인도네시아 | 132,547 | 194,472 | 296,377 | 231,908 | 250,248 |
| 러시아 | 164,628 | 191,214 | 238,171 | 275,779 | 308,665 |
| 싱가포르 | 185,712 | 160,402 | 221,844 | 216,574 | 232,359 |
| 인도 | 68,097 | 154,294 | 196,773 | 124,458 | 120,975 |
| 캐나다 | 135,163 | 147,715 | 178,023 | 178,761 | 196,859 |
| 오스트레일리아 | 129,504 | 134,357 | 153,125 | 151,583 | 154,390 |
| 영국 | 113,786 | 124,833 | 136,900 | 128,046 | 133,149 |
| 독일 | 89,004 | 101,251 | 111,413 | 111,077 | 117,173 |
| 프랑스 | 73,846 | 85,093 | 93,039 | 94,013 | 101,854 |
| 몽골 | 63,584 | 81,201 | 82,780 | 108,139 | 118,783 |
| 우즈베키스탄 | 48,777 | 59,453 | 71,299 | 81,711 | 89,391 |
| 뉴질랜드 | 29,119 | 28,806 | 32,038 | 33,526 | 34,652 |
| 기타 | 570,439 | 737,528 | 886,426 | 863,669 | 928,113 |

※ 외국인입국자 현황은 2014년까지 승무원 제외, 2015년 이후 승무원 포함

# 3. 항구별 외국인 입국현황

| 표 5-189 |

| 항구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총계 | 6,942,183 | 7,774,645 | 8,666,503 | 10,121,950 | 10,678,334 |
| 인천공항 | 4,874,647 | 5,360,400 | 5,810,937 | 6,694,670 | 6,791,570 |
| 제주공항 | 325,048 | 372,620 | 374,352 | 610,609 | 1,035,720 |
| 김해공항 | 442,303 | 462,688 | 578,389 | 706,527 | 768,412 |
| 김포공항 | 747,496 | 867,397 | 1,097,356 | 1,200,431 | 1,080,350 |
| 부산항 | 217,310 | 250,111 | 236,334 | 259,977 | 244,125 |
| 인천항 | 218,857 | 296,826 | 364,524 | 364,662 | 416,320 |
| 청주공항 | 7,829 | 23,292 | 20,577 | 37,470 | 70,967 |
| 평택항 | 28,444 | 42,008 | 71,655 | 113,328 | 96,698 |
| 대구공항 | 9,455 | 8,700 | 12,039 | 9,962 | 11,961 |
| 군산항 | 22,479 | 24,889 | 28,568 | 28,877 | 30,859 |
| 감천항 | 7,246 | 7,509 | 7,327 | 9,384 | 9,800 |
| 울산항 | 6,717 | 6,772 | 8,120 | 7,928 | 8,593 |
| 광양항 | 1,606 | 2,164 | 3,431 | 2,452 | 9,651 |
| 오산공항 | 8,171 | 17,037 | 21,388 | 26,380 | 24,943 |
| 무안공항 | 2,771 | 3,490 | 4,135 | 4,591 | 23,639 |
| 양양공항 | 0 | 2,437 | 2,253 | 11,320 | 19,231 |
| 동해항 | 3,952 | 7,581 | 11,017 | 9,962 | 8,329 |
| 여수항 | 3,933 | 4,388 | 4,774 | 12,376 | 10,809 |
| 창원항 | 1,300 | 1,319 | 1,879 | 1,658 | 1,659 |
| 서산항 | 1,751 | 2,153 | 2,309 | 2,216 | 2,186 |
| 속초항 | 6,015 | 4,138 | 56 | 526 | 7,452 |
| 기타 | 4,853 | 6,726 | 5,083 | 6,644 | 5,060 |

| 항구 \ 연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총계 | 12,682,019 | 13,359,701 | 17,418,307 | 13,569,509 | 15,630,522 |
| 인천공항 | 7,910,157 | 7,778,178 | 10,010,950 | 9,288,559 | 10,789,900 |
| 제주공항 | 1,188,019 | 958,601 | 1,327,513 | 555,387 | 839,775 |
| 김해공항 | 826,736 | 789,992 | 1,059,397 | 1,062,683 | 1,279,277 |
| 김포공항 | 1,056,803 | 943,451 | 1,029,912 | 922,837 | 1,084,115 |
| 부산항 | 223,248 | 460,625 | 850,990 | 412,465 | 380,537 |
| 인천항 | 465,523 | 543,334 | 621,693 | 332,305 | 410,667 |
| 청주공항 | 190,906 | 194,255 | 237,282 | 61,021 | 68,166 |
| 평택항 | 141,425 | 170,805 | 179,051 | 211,138 | 210,495 |
| 대구공항 | 40,523 | 51,145 | 103,339 | 68,730 | 107,407 |
| 군산항 | 35,035 | 47,844 | 65,265 | 76,979 | 109,649 |
| 감천항 | 10,070 | 56,558 | 57,818 | 57,964 | 56,697 |
| 울산항 | 8,429 | 48,852 | 48,071 | 46,328 | 43,955 |
| 광양항 | 9,622 | 29,080 | 44,614 | 38,986 | 35,377 |
| 오산공항 | 29,920 | 36,431 | 34,994 | 32,599 | 32,306 |
| 무안공항 | 32,019 | 37,727 | 34,295 | 4,074 | 7,717 |
| 양양공항 | 86,785 | 47,005 | 34,202 | 2,446 | 13,699 |
| 동해항 | 8,320 | 21,234 | 27,978 | 31,066 | 28,465 |
| 여수항 | 4,649 | 20,337 | 26,904 | 26,031 | 31,798 |
| 창원항 | 2,380 | 13,526 | 13,191 | 13,034 | 13,071 |
| 서산항 | 2,380 | 6,433 | 6,590 | 7,782 | 8,527 |
| 속초항 | 8,879 | 1,386 | 1,101 | 11,858 | 4,969 |
| 기타 | 400,191 | 1,102,902 | 1,603,157 | 305,237 | 73,953 |

※ 외국인입국자 현황은 2014년까지 승무원 제외, 2015년 이후 승무원 포함

# 4. 체류자격별 외국인 입국현황

| 표 5-190 |

| 체류자격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총 계 | 6,942,183 | 7,774,645 | 8,666,503 | 10,121,950 | 10,678,334 |
| 사증면제(B-1) | 657,800 | 803,617 | 909,930 | 1,066,334 | 1,090,907 |
| 관광통과(B-2) | 4,409,336 | 4,601,828 | 4,969,884 | 5,524,120 | 5,040,354 |
| 단기상용(C-2) | 226,416 | 224,574 | 182,404 | 22 | - |
| 단기종합(C-3) | 617,044 | 959,374 | 1,324,640 | 2,102,656 | 2,728,573 |
| 유 학(D-2) | 85,439 | 106,961 | 112,291 | 111,219 | 114,818 |
| 기술연수(D-3) | 1,371 | 2,274 | 2,274 | 1,951 | 1,806 |
| 일반연수(D-4) | 37,573 | 30,938 | 37,432 | 34,413 | 37,282 |
| 종 교(D-6) | 2,254 | 2,346 | 2,190 | 4,083 | 2,362 |
| 주 재(D-7) | 7,537 | 7,930 | 8,469 | 8,908 | 9,234 |
| 기업투자(D-8) | 36,471 | 37,966 | 38,102 | 39,584 | 39,859 |
| 무역경영(D-9) | 11,729 | 16,848 | 18,191 | 17,456 | 32,326 |
| 교 수(E-1) | 6,184 | 7,454 | 7,824 | 8,181 | 8,186 |
| 회화지도(E-2) | 45,006 | 47,405 | 44,108 | 40,848 | 38,572 |
| 연 구(E-3) | 6,456 | 7,829 | 8,023 | 8,525 | 9,223 |
| 예술흥행(E-6) | 4,577 | 4,183 | 3,655 | 4,162 | 4,368 |
| 특정활동(E-7) | 21,022 | 24,525 | 29,143 | 35,907 | 36,904 |
| 비전문취업(E-9) | 85,654 | 82,099 | 106,442 | 99,140 | 105,738 |
| 선원취업(E-10) | 5,947 | 7,084 | 8,900 | 7,173 | 8,281 |
| 방문동거(F-1) | 29,787 | 34,595 | 29,597 | 38,883 | 41,740 |
| 거 주(F-2) | 114,463 | 122,063 | 117,377 | 19,099 | 24,948 |
| 동 반(F-3) | 25,082 | 26,459 | 27,671 | 31,704 | 36,544 |
| 재외동포(F-4) | 77,948 | 129,142 | 190,212 | 227,836 | 280,130 |
| 영 주(F-5) | 29,257 | 41,561 | 58,805 | 70,890 | 87,497 |
| 기 타 | 397,830 | 445,590 | 428,939 | 618,856 | 898,682 |

| 체류자격 \ 연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총 계 | 12,682,019 | 13,359,701 | 17,418,307 | 13,569,509 | 15,630,522 |
| 사증면제(B-1) | 1,426,293 | 1,249,506 | 1,556,536 | 1,634,095 | 1,908,616 |
| 관광통과(B-2) | 5,335,626 | 4,632,593 | 5,833,225 | 5,269,825 | 6,378,362 |
| 단기상용(C-2) | - | - | - | - | - |
| 단기방문(C-3) | 3,725,073 | 3,635,898 | 5,026,435 | 3,319,579 | 4,127,283 |
| 유 학(D-2) | 117,836 | 140,160 | 169,715 | 212,295 | 248,472 |
| 기술연수(D-3) | 1,663 | 1,934 | 1,678 | 1,723 | 1,449 |
| 일반연수(D-4) | 45,624 | 62,550 | 81,033 | 90,357 | 83,538 |
| 종 교(D-6) | 2,323 | 2,292 | 2,348 | 2,428 | 2,313 |
| 주 재(D-7) | 9,103 | 8,991 | 9,160 | 8,548 | 8,460 |
| 기업투자(D-8) | 40,550 | 40,795 | 42,007 | 41,984 | 41,886 |
| 무역경영(D-9) | 38,867 | 33,958 | 26,302 | 18,288 | 9,705 |
| 교 수(E-1) | 7,323 | 7,555 | 7,550 | 7,491 | 7,160 |
| 회화지도(E-2) | 34,567 | 32,299 | 32,158 | 30,922 | 27,291 |
| 연 구(E-3) | 9,670 | 9,810 | 9,494 | 9,618 | 9,508 |
| 예술흥행(E-6) | 4,710 | 4,596 | 3,996 | 3,765 | 4,570 |
| 특정활동(E-7) | 39,260 | 43,300 | 46,324 | 47,528 | 46,661 |
| 비전문취업(E-9) | 115,294 | 123,433 | 134,764 | 140,072 | 145,174 |
| 선원취업(E-10) | 9,574 | 9,431 | 9,877 | 10,720 | 11,737 |
| 방문동거(F-1) | 41,043 | 49,310 | 69,742 | 82,857 | 88,747 |
| 거 주(F-2) | 30,189 | 35,728 | 43,041 | 48,924 | 53,672 |
| 동 반(F-3) | 40,173 | 43,222 | 43,684 | 40,048 | 38,402 |
| 재외동포(F-4) | 349,137 | 405,948 | 468,336 | 515,587 | 565,636 |
| 영 주(F-5) | 101,184 | 118,553 | 134,138 | 151,115 | 162,760 |
| 기 타 | 1,156,937 | 2,667,839 | 3,666,764 | 1,881,740 | 1,659,120 |

※ 외국인입국자 현황은 2014년까지 승무원 제외, 2015년 이후 승무원 포함

# 5. 국적별 체류외국인 현황

| 표 5-191 |

| 국가 \ 연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총계 | 1,797,618 | 1,899,519 | 2,049,441 | 2,180,498 | 2,367,607 |
| 중국 | 898,654 | 955,871 | 1,016,607 | 1,018,074 | 1,070,566 |
| 베트남 | 129,973 | 136,758 | 149,384 | 169,738 | 196,633 |
| 미국 | 136,663 | 138,660 | 140,222 | 143,568 | 151,018 |
| 태국 | 94,314 | 93,348 | 100,860 | 153,259 | 197,764 |
| 필리핀 | 53,538 | 54,977 | 56,980 | 58,480 | 60,139 |
| 우즈베키스탄 | 43,852 | 47,103 | 54,490 | 62,870 | 68,433 |
| 일본 | 49,152 | 47,909 | 51,297 | 53,670 | 60,878 |
| 인도네시아 | 46,945 | 46,538 | 47,606 | 45,328 | 47,366 |
| 캄보디아 | 38,395 | 43,209 | 45,832 | 47,105 | 47,012 |
| 몽골 | 24,561 | 30,527 | 35,206 | 45,744 | 46,286 |
| 네팔 | 26,790 | 30,185 | 34,108 | 36,627 | 40,456 |
| 타이완 | 31,200 | 30,002 | 34,003 | 36,168 | 41,306 |
| 러시아 | 14,425 | 19,384 | 32,372 | 44,851 | 54,064 |
| 스리랑카 | 26,057 | 26,678 | 27,650 | 26,916 | 25,828 |
| 캐나다 | 24,353 | 25,177 | 26,107 | 25,692 | 25,934 |
| 미얀마 | 15,921 | 19,209 | 22,455 | 24,902 | 28,074 |
| 방글라데시 | 14,644 | 14,849 | 15,482 | 16,066 | 16,641 |
| 오스트레일리아 | 12,468 | 12,303 | 13,870 | 13,008 | 14,279 |
| 파키스탄 | 11,209 | 11,987 | 12,639 | 12,697 | 13,275 |
| 인도 | 10,196 | 10,414 | 10,515 | 11,244 | 11,945 |
| 영국 | 7,398 | 7,275 | 7,180 | 6,727 | 6,972 |
| 기타 | 86,910 | 97,156 | 114,576 | 127,764 | 142,738 |

# 6.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현황

| 표 5-192 |

| 체류자격 \ 연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총 계 | 1,797,618 | 1,899,519 | 2,049,441 | 2,180,498 | 2,367,607 |
| 사증면제(B-1) | 93,619 | 95,427 | 112,323 | 177,629 | 228,194 |
| 관광통과(B-2) | 96,113 | 104,287 | 118,566 | 121,725 | 149,474 |
| 단기방문(C-3) | 146,357 | 154,105 | 190,443 | 199,518 | 218,743 |
| 단기취업(C-4) | 593 | 685 | 594 | 1,719 | 1,302 |
| 유 학(D-2) | 61,257 | 66,334 | 76,040 | 86,875 | 102,690 |
| 기술연수(D-3) | 3,507 | 3,497 | 2,950 | 2,705 | 2,461 |
| 일반연수(D-4) | 27,000 | 31,810 | 41,592 | 49,939 | 59,729 |
| 종 교(D-6) | 1,855 | 1,727 | 1,719 | 1,723 | 1,594 |
| 상사주재(D-7) | 1,593 | 1,492 | 1,631 | 1,340 | 1,308 |
| 기업투자(D-8) | 6,026 | 5,924 | 5,999 | 5,939 | 5,889 |
| 무역경영(D-9) | 8,856 | 7,236 | 5,697 | 2,982 | 2,520 |
| 교 수(E-1) | 2,664 | 2,612 | 2,511 | 2,427 | 2,341 |
| 회화지도(E-2) | 17,949 | 16,144 | 15,450 | 14,352 | 13,749 |
| 연 구(E-3) | 3,195 | 3,145 | 3,174 | 3,214 | 3,145 |
| 예술흥행(E-6) | 5,162 | 4,924 | 4,302 | 3,704 | 3,633 |
| 특정활동(E-7) | 19,109 | 20,299 | 21,498 | 21,206 | 21,884 |
| 비전문취업(E-9) | 270,569 | 276,042 | 279,187 | 279,127 | 280,312 |
| 선원취업(E-10) | 14,403 | 15,138 | 15,312 | 16,069 | 17,447 |
| 방문동거(F-1) | 71,203 | 85,759 | 103,826 | 111,449 | 118,192 |
| 거 주(F-2) | 37,504 | 38,881 | 39,681 | 40,594 | 41,099 |
| 동 반(F-3) | 21,809 | 22,652 | 22,828 | 22,457 | 22,360 |
| 재외동포(F-4) | 289,427 | 328,187 | 372,533 | 415,121 | 444,880 |
| 영 주(F-5) | 112,742 | 123,255 | 130,237 | 136,334 | 142,151 |
| 방문취업(H-2) | 282,670 | 285,342 | 254,950 | 238,880 | 250,381 |
| 기 타 | 202,436 | 204,615 | 226,398 | 223,470 | 232,129 |

# 7. 청·사무소(출장소)별 등록외국인 현황

| 표 5-193 |

| 사무소 \ 연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총 계 | 1,091,531 | 1,143,087 | 1,161,677 | 1,171,762 | 1,246,626 |
| 서 울 | 115,235 | 118,466 | 116,280 | 113,921 | 119,496 |
| 서 울 남 부 | 127,086 | 130,208 | 126,799 | 121,990 | 130,854 |
| 부 산 | 63,060 | 66,351 | 47,788 | 48,752 | 51,849 |
| 인 천 | 90,072 | 94,630 | 97,343 | 102,281 | 112,056 |
| 수 원 | 144,892 | 153,856 | 119,924 | 123,675 | 132,472 |
| 제 주 | 14,204 | 16,960 | 19,593 | 21,689 | 24,841 |
| 대 구 | 44,165 | 46,183 | 47,524 | 48,647 | 51,947 |
| 대 전 | 31,396 | 33,696 | 35,358 | 36,771 | 39,186 |
| 여 수 | 5,270 | 5,734 | 5,897 | 6,004 | 6,576 |
| 양 주 | 34,854 | 35,473 | 36,416 | 36,774 | 38,212 |
| 광 주 | 26,006 | 27,635 | 29,724 | 31,564 | 33,479 |
| 창 원 | 30,725 | 31,728 | 31,279 | 30,815 | 30,911 |
| 춘 천 | 9,854 | 10,138 | 10,561 | 11,146 | 11,808 |
| 청 주 | 29,348 | 31,290 | 34,169 | 35,357 | 38,148 |
| 전 주 | 19,864 | 20,661 | 21,830 | 23,322 | 25,647 |
| 울 산 | 34,280 | 35,380 | 32,933 | 30,701 | 31,295 |
| 세 종 로 ( 출 ) | 56,466 | 59,947 | 63,173 | 63,312 | 67,776 |
| 안 산 ( 출 ) | 83,738 | 87,233 | 85,796 | 85,764 | 91,433 |
| 구 미 ( 출 ) | 13,463 | 13,360 | 13,287 | 13,127 | 13,140 |
| 포 항 ( 출 ) | 6,985 | 7,166 | 7,557 | 7,844 | 8,612 |
| 천 안 ( 출 ) | 31,637 | 32,239 | 34,530 | 37,231 | 39,703 |
| 서 산 ( 출 ) | 11,264 | 6,925 | 7,394 | 7,676 | 8,115 |
| 고 양 ( 출 ) | 21,037 | 22,024 | 22,524 | 22,929 | 23,939 |
| 목 포 ( 출 ) | 12,469 | 14,122 | 14,452 | 13,386 | 14,204 |
| 거 제 ( 출 ) | 13,724 | 15,051 | 14,178 | 9,089 | 7,473 |
| 군 산 ( 출 ) | 5,222 | 5,533 | 5,490 | 5,266 | 5,700 |
| 평 택 ( 출 ) | - | - | 37,829 | 40,424 | 43,855 |
| 김 해 ( 출 ) | - | - | 20,761 | 21,123 | 21,315 |
| 기 타 | 15,215 | 21,098 | 21,288 | 21,182 | 22,584 |

# 8. 지역별 등록외국인 현황

| 표 5-194 |

| 지역 \ 연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총 계 | 1,091,531 | 1,143,087 | 1,161,677 | 1,171,762 | 1,246,626 |
| 경 기 | 352,166 | 369,665 | 373,923 | 381,628 | 408,526 |
| 서 울 | 266,360 | 274,957 | 273,441 | 267,153 | 283,984 |
| 경 남 | 77,778 | 82,316 | 81,021 | 75,136 | 74,304 |
| 충 남 | 57,316 | 60,064 | 64,098 | 68,280 | 73,174 |
| 인 천 | 55,323 | 57,669 | 59,103 | 62,596 | 67,869 |
| 경 북 | 47,805 | 49,765 | 51,351 | 53,364 | 56,969 |
| 부 산 | 38,315 | 39,991 | 41,840 | 42,837 | 45,738 |
| 충 북 | 30,671 | 32,637 | 35,499 | 36,656 | 39,537 |
| 전 남 | 28,254 | 30,566 | 31,750 | 31,221 | 33,042 |
| 전 북 | 25,086 | 26,194 | 27,320 | 28,588 | 31,347 |
| 대 구 | 25,203 | 26,141 | 26,493 | 26,442 | 28,033 |
| 울 산 | 25,885 | 26,183 | 23,457 | 20,513 | 20,002 |
| 광 주 | 17,064 | 18,455 | 19,920 | 21,279 | 22,815 |
| 제 주 | 14,204 | 16,960 | 19,593 | 21,689 | 24,841 |
| 대 전 | 15,658 | 16,416 | 17,035 | 17,431 | 18,184 |
| 강 원 | 14,443 | 15,108 | 15,833 | 16,949 | 18,261 |

※ 충남(73,174명)은 세종시(4,940명) 포함

# 9. 연도별 외국국적동포 체류현황

| 표 5-195 |

| 구분 \ 연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총 계 | 704,536 | 754,427 | 775,715 | 841,308 | 878,665 |
| 중 국 | 606,964 | 647,717 | 652,028 | 702,932 | 728,539 |
| 미 국 | 46,426 | 46,737 | 46,050 | 45,177 | 45,011 |
| 캐 나 다 | 14,598 | 15,397 | 15,959 | 15,947 | 15,933 |
| 우즈베키스탄 | 17,637 | 20,653 | 26,385 | 31,081 | 34,355 |
| 러 시 아 | 5,524 | 8,590 | 15,555 | 21,264 | 25,302 |
| 오스트레일리아 | 4,288 | 4,521 | 4,609 | 4,617 | 4,624 |
| 뉴 질 랜 드 | 2,155 | 2,310 | 2,387 | 2,395 | 2,436 |
| 카 자 흐 스 탄 | 1,869 | 2,504 | 5,236 | 9,223 | 12,586 |
| 독 일 | 916 | 920 | 908 | 854 | 841 |
| 일 본 | 802 | 812 | 817 | 827 | 826 |
| 기 타 | 3,357 | 4,266 | 5,781 | 6,991 | 8,212 |

# 10. 외국인 유학생 체류현황

| 표 5-196 |

| 구분 \ 연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총 계 | 86,410 | 96,357 | 115,927 | 135,087 | 160,671 |
| 유 학(D-2) | 61,257 | 66,334 | 76,040 | 86,875 | 102,690 |
| 한국어연수(D-41) | 25,138 | 30,017 | 39,873 | 48,208 | 57,971 |
| 외국어연수(D-47) | 15 | 6 | 14 | 4 | 10 |
| 증 감 률 (전년대비, %) | (5.6%) | (11.5%) | (20.3%) | (16.5%) | (18.9%) |

| 국가 \ 연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총 계 | 86,410 | 96,357 | 115,927 | 135,087 | 160,671 |
| 중 국 | 55,008 | 59,192 | 66,614 | 67,133 | 68,994 |
| 베 트 남 | 5,177 | 7,445 | 15,193 | 27,563 | 45,143 |
| 몽 골 | 3,735 | 4,847 | 6,000 | 7,784 | 8,650 |
| 우 즈 베 키 스 탄 | 1,064 | 1,442 | 2,386 | 4,793 | 7,840 |
| 일 본 | 2,147 | 2,213 | 2,384 | 2,464 | 2,676 |
| 인 도 네 시 아 | 1,011 | 1,316 | 1,365 | 1,418 | 1,520 |
| 파 키 스 탄 | 1,052 | 1,164 | 1,266 | 1,461 | 1,720 |
| 인 도 | 1,011 | 1,059 | 1,151 | 1,406 | 1,411 |
| 말 레 이 시 아 | 860 | 961 | 1,099 | 1,093 | 1,075 |
| 미 국 | 1,081 | 1,119 | 1,062 | 1,119 | 1,210 |
| (타 이 완) | 890 | 911 | 1,030 | 1,211 | 1,354 |
| 방 글 라 데 시 | 620 | 677 | 824 | 1,016 | 1,206 |
| 러 시 아 | 730 | 708 | 769 | 826 | 884 |
| 네 팔 | 616 | 690 | 722 | 1,078 | 1,636 |
| 필 리 핀 | 590 | 660 | 672 | 666 | 659 |
| 기 타 | 10,818 | 11,953 | 13,390 | 14,056 | 14,693 |

# 11. 국민의 배우자 체류현황

| 표 5-197 |

| 연 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인 원 | 150,994 | 151,608 | 152,374 | 155,457 | 159,206 |
| 증감률 (전년대비, %) | (0.1%) | (0.4%) | (0.5%) | (2.0%) | (2.4%) |

| 국가 \ 연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총 계 | 150,994 | 151,608 | 152,374 | 155,457 | 159,206 |
| 중 국 | 60,663 | 58,788 | 56,930 | 57,644 | 58,706 |
| 베 트 남 | 39,725 | 40,847 | 41,803 | 42,205 | 42,460 |
| 일 본 | 12,603 | 12,861 | 13,110 | 13,400 | 13,738 |
| 필 리 핀 | 11,052 | 11,367 | 11,606 | 11,783 | 11,836 |
| 캄 보 디 아 | 4,618 | 4,555 | 4,473 | 4,459 | 4,496 |
| 미 국 | 3,006 | 3,192 | 3,354 | 3,471 | 3,658 |
| 태 국 | 2,675 | 2,821 | 3,182 | 3,671 | 4,411 |
| 몽 골 | 2,394 | 2,384 | 2,381 | 2,396 | 2,438 |
| 우 즈 베 키 스 탄 | 2,219 | 2,244 | 2,302 | 2,367 | 2,425 |
| 캐 나 다 | 1,300 | 1,295 | 1,318 | 1,345 | 1,320 |
| 러 시 아 | 1,308 | 1,305 | 1,321 | 1,367 | 1,494 |
| 네 팔 | 1,138 | 1,081 | 1,032 | 974 | 901 |
| 파 키 스 탄 | 889 | 915 | 936 | 937 | 968 |
| 타 이 완 | 740 | 823 | 929 | 1,072 | 1,213 |
| 영 국 | 742 | 792 | 842 | 911 | 969 |
| 인 도 네 시 아 | 616 | 653 | 687 | 748 | 809 |
| 방 글 라 데 시 | 352 | 355 | 369 | 369 | 368 |
| 기 타 | 4,954 | 5,330 | 5,799 | 6,338 | 6,996 |

# 12. 연도별 국적 처리현황

| 표 5-198 |

| 국가 \ 연도 | 허가 유형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합 계 | 귀화 | 11,314 | 10,924 | 10,108 | 10,086 | 11,556 |
| | 회복 | 2,886 | 2,610 | 2,303 | 2,775 | 2,698 |
| 중 국 | 귀화 | 6,650 | 6,477 | 5,126 | 4,781 | 4,838 |
| | 회복 | 402 | 193 | 113 | 245 | 144 |
| 베 트 남 | 귀화 | 2,977 | 2,722 | 3,289 | 3,742 | 4,849 |
| | 회복 | 67 | 47 | 56 | 57 | 45 |
| 필 리 핀 | 귀화 | 392 | 280 | 337 | 359 | 597 |
| | 회복 | 8 | 6 | 3 | 7 | 7 |
| 몽 골 | 귀화 | 120 | 101 | 107 | 93 | 99 |
| | 회복 | 13 | 10 | 7 | 17 | 14 |
| 우즈베키스탄 | 귀화 | 80 | 81 | 62 | 48 | 72 |
| | 회복 | 16 | 28 | 19 | 27 | 12 |
| 일 본 | 귀화 | 30 | 44 | 35 | 29 | 17 |
| | 회복 | 52 | 49 | 31 | 38 | 53 |
| 태 국 | 귀화 | 71 | 45 | 41 | 52 | 58 |
| | 회복 | 13 | 5 | 5 | 4 | 5 |
| 파 키 스 탄 | 귀화 | 39 | 24 | 33 | 51 | 42 |
| | 회복 | 1 | 0 | 0 | 10 | 2 |
| 기 타 | 귀화 | 955 | 1,150 | 1,078 | 931 | 984 |
| | 회복 | 2,314 | 2,272 | 2,069 | 2,370 | 2,416 |

# 13. 연도별 난민심사 및 처리현황

| 표 5-199 |

| 구분 \ 연도 | 합계 | '9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
| 난민 신청 | 48,906 | 809 | 278 | 717 | 364 | 324 | 423 | 1,011 | 1,143 | 1,574 | 2,896 | 5,711 | 7,541 | 9,942 | 16,173 |
| 심사 결정 | 23,208 | 204 | 138 | 108 | 129 | 1,086 | 248 | 339 | 649 | 586 | 2,376 | 2,123 | 5,322 | 6,021 | 3,879 |
| 난민 인정 | 936 | 41 | 11 | 13 | 36 | 70 | 45 | 42 | 60 | 57 | 93 | 105 | 98 | 121 | 144 |
| 인도적 체류허가 | 1,988 | 27 | 13 | 9 | 14 | 22 | 35 | 20 | 31 | 6 | 539 | 194 | 246 | 318 | 514 |

※ 2009년 난민인정을 받은 미얀마인 4명, 2011년 난민인정 취소됨
※ 2010년 난민인정을 받은 방글라데시인 2명, 2016년 난민인정 취소됨
※ 2014년 난민인정을 받은 이집트인 1명, 2017년 난민인정 취소됨

# 法務年鑑



# 자 료

제1절 직제
제2절 훈령·예규 및 주요지시
제3절 장관 연설문
제4절 역대 법무·검찰 간부 명단
제5절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명단
제6절 인사
제7절 국외훈련·출장
제8절 국제교류 현황
제9절 상훈
제10절 위원회 현황
제11절 소속기관 및 단체 현황

# 제1절 직제

## 1. 직제 연혁

| 순위 | 공포일자 | 법령호수 | 건 명 | 내 용 |
|---|---|---|---|---|
| 1 | 1948. 7.17. | 법률 제1호 | 정부조직법 제정 공포 | • 정부수립과 동시 법무부 설치 |
| 2 | 1948. 9.13. | 대통령령 제3호 | 남조선과도정부기구의 인수에 관한 건 | • 과도정부 사법부(법률기초국과 법률조사국 제외)와 그 소속기관을 인수 |
| 3 | 1948.11. 4. | 대통령령 제21호 | 법무부직제 제정 공포 | • 1실 4국 21과 설치 |
| 4 | 1950. 3.31. | 대통령령 제307호 | 법무부직제 개정 | • 3국 10과로 개편 |
| 5 | 1954. 9. 1. | 대통령령 제936호 | 〃 | • 법무국 조사과 폐지, 소년과 신설 |
| 6 | 1955. 2. 7. | 법률 제354호 | 정부조직법 개정 | • 법제처를 법제실로 개칭하고 법무부에 소속시킴 |
| 7 | 1955. 2.17. | 대통령령 제1008호 | 법제실직제 제정 공포 | • 법제실에 제1·2국을 두고 제1국에 운영지원과를 둠 |
| 8 | 1960. 7. 1. | 법률 제552호 | 정부조직법 개정 | • 정무차관·사무차관 신설, 법제실을 폐지하고 그 업무를 국무원 사무국으로 이관 |
| 9 | 1961. 8.25. | 법률 제698호 | 〃 | • 정무차관·사무차관 폐지 기획조정관 신설 |
| 10 | 1961.10. 2. | 각령 제177호 | 법무부직제 개정 | • 검찰국에 출입국관리과 신설, 김포·인천·부산에 각 출입국관리사무소 설치 |
| 11 | 1962. 5.21. | 각령 제770호 | 〃 | • 형정국을 교정국으로, 형무과를 교정과로 각 개칭, 출입국관리과를 법무국으로, 소년과를 교정국으로 각 이관 |
| 12 | 1962. 7. 4. | 각령 제885호 | 공보사무담당공무원의배치및직무에관한건 제정 공포 | • 공보담당 일반직 3급갑류 1인 신설 |
| 13 | 1963.12.14. | 법률 제1506호 | 정부조직법 개정 | • 기획조정관실을 기획관리실로 개칭 |
| 14 | 1966.10.26. | 대통령령 제2798호 | 법무부직제 개정 | • 일본국 해외주재관 2명 주재 |
| 15 | 1967. 4.10. | 대통령령 제2986호 | 〃 | • 법무국을 법무실로 승격하고 소송수행담당관 신설 |
| 16 | 1967. 7. 7. | 대통령령 제3139호 | 법무부직제 개정 | • 교정국에 시설과 설치 |
| 17 | 1969. 3.24. | 대통령령 제3829호 | 〃 | • 기획관리실에 비상계획담당관 신설 |
| 18 | 1970. 2.20. | 대통령령 제3900호 | 〃 | • 비상계획담당관을 비상계획관으로 하고 그 밑에 비상계획보좌관을 둠 |
| 19 | 1970. 2.27. | 대통령령 제4678호 | 〃 | • 본부 각과의 계제도 폐지, 출입국관리담당관 신설. 경제기획원에 주재관(3갑) 신설 |
| 20 | 1970. 8.20. | 대통령령 제5278호 | 〃 | • 출입국관리담당관을 출입국관리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그 밑에 입국심사과·체류심사과 설치 |

| 순위 | 공포일자 | 법령호수 | 건 명 | 내 용 |
|---|---|---|---|---|
| 21 | 1973. 3.14. | 대통령령 제6570호 | 〃 | • 교정국장 밑에 교정기획관 신설, 비상계획관은 차관직속으로 개편 |
| 22 | 1973. 3.28. | 대통령령 제6594호 | 〃 | • 공보담당관(3갑)을 공보관(2갑, 2을 또는 별정직)으로 조정 |
| 23 | 1975. 7.16. | 대통령령 제7697호 | 〃 | • 검찰과를 검찰 제1·2·3·4과로 하고 인권옹호과를 인권과로 개편하여 법무실 이관, 출입국관리국에 기록관리과 신설 |
| 24 | 1976.12. 9. | 대통령령 제8293호 | 〃 | • 출입국관리국장 밑에 출입국관리심의관 신설 |
| 25 | 1977. 9.20. | 대통령령 제8698호 | 〃 | • 차관 밑에 감사관 신설 |
| 26 | 1978. 5. 2. | 대통령령 제9000호 | 〃 | • 법무실에 조사과를 신설하고 송무과를 송무제 1·2과로 하며, 교정국에 보안과·직업훈련과를 신설하고 계획과를 작업지도과로 개칭 |
| 27 | 1981. 1. 9. | 대통령령 제10160호 | 〃 | • 보호국을 신설하고 그 밑에 보호과·조정과·심사과를 설치 |
| 28 | 1981.11. 2. | 대통령령 제10526호 | 법무부직제 개정 | • 송무담당관 2인을 1인으로 감축하고, 법무실의 송무제1·2과를 송무과로 통합. 검찰국장 밑에 연구검사 신설. 교정국의 교정기획관을 폐지하고 관리과를 재정과로, 직업훈련과를 교육과로 개칭. 출입국관리국의 출입국관리심의관을 폐지함 |
| 29 | 1982. 8.11. | 대통령령 제10891호 | 〃 | • 검사로 보하게 되어있던 실·국장 및 과장을 검사장 및 고등검찰관으로 하고, 송무담당관을 검사장으로 함 |
| 30 | 1983. 7.22. | 대통령령 제11179호 | 〃 | • 검사장으로 보하게 되어 있던 실·국장을 검사장 및 고등검찰관으로 하고 출입국관리국장을 일반직으로 조정하며, 법무실·검찰국·보호국 소속 과장 직급을 고등검찰관에서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으로 조정. 송무담당관과 조사과를 폐지하고 법무실장 밑에 법무심의관, 교정국장 밑에 교정심의관과 교화심의관을 신설하며, 비서관 직급을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으로 조정 |
| 31 | 1984.12.31. | 대통령령 제11592호 | 〃 | • 교정국 소속의 소년과를 보호국 소속으로 하고, 조정과를 조사과로, 심사과를 관찰과로 하며, 교정국에 경비과를 신설함. 법무심의관의 기능 일부 조정 |
| 32 | 1986. 4. 3. | 대통령령 제11879호 | 〃 | • 보호국장을 고등검찰관에서 검사장으로 직급 조정하고, 별정직 전산처리사 4인(6급상당 2인, 7급상당 2인)을 전산처리사 또는 별정직으로 직렬 조정 |
| 33 | 1986.10.11. | 대통령령 제11978호 | 〃 | • 법무실에 섭외법무심의관, 교정국에 보안제2과를 신설하고, 보안과를 보안제1과로 개편 |
| 34 | 1988.12. 2. | 대통령령 제12553호 | 〃 | • 교정국 시설과를 기획관리실 시설관리담당관으로 개편 |

| 순위 | 공포일자 | 법령호수 | 건 명 | 내 용 |
|---|---|---|---|---|
| 35 | 1990.10.29. | 대통령령 제13149호 | 법무부직제 개정 | • 법무실 송무과를 송무심의관으로 개편, 섭외법무심의관을 국제법무심의관으로 명칭 변경 |
| 36 | 1991. 2. 1. | 대통령령 제13279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 법무부와 산하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던 직제를 법무부와 그소속기관직제(법무부·법무연수원·교도소·치료감호소·소년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관찰소·출입국관리사무소)로 통합 조정 |
| 37 | 1991. 9.30. | 대통령령 제13483호 | 〃 | • 교화심의관, 경비과 폐지(4개 지방교정청 신설에 따름), 출입국기획과 신설, 투자외국인관리담당관 폐지 및 입국심사과를 출입국심사과로 변경<br>• 서울·대구·대전·광주 지방 교정청 신설<br>• 영등포·수원·부산·마산교도소와 인천구치소에 분류심사과 신설<br>• 광주소년감별소 신설<br>•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리과 및 심사과 신설<br>•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전산실 설치 |
| 38 | 1992. 2.15. | 대통령령 제13588호 | 〃 | • 법무실에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관계법령 정비를 위하여 특수법령과(현 통일법무과) 신설 |
| 39 | 1992. 8.31. | 대통령령 제13720호 | 〃 | • 법무사설 공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사설관리담당관을 사설기획담당관과 건설관리담당관으로 확대개편<br>• 청송제2교도소 신설<br>• 서울남부·의정부·울산보호관찰지소 신설<br>• 서울외국인수용소와 의정부·대산출장소 신설<br>•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심사국에 조사2과, 김포·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조사과 신설 |
| 40 | 1993. 3.30. | 대통령령 제13872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출입국관리법시행령 부칙 제7조제5항) | • "외국인수용소"를 "외국인보호소"로 명칭변경<br>• "외국인수용장"을 "외국인보호실"로 명칭변경 |
| 41 | 1993. 6.28. | 대통령령 제13918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검사정원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 | • 법무부 기획관리실장·법무실장·검찰국장·보호국장·교정국장을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관"으로 보하던 것을 "검사장"으로, 법무실·검찰국·보호국(소년과 제외) 각 과장을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으로 보하던 것을 "검사"로, 법무실의 법무·송무·국제법무심의관을 "고등검찰관"으로 보하던 것을 "검사"로 보함<br>•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관"으로 보하던 것을 "검사장"으로, 기획과장 및 |

| 순위 | 공포일자 | 법령호수 | 건 명 | 내 용 |
|---|---|---|---|---|
| | | | | 교관을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으로 보하던 것을 "검사"로, 연구위원 중 3인을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관"으로 보하던 것을 "검사장 또는 검사"로 보함 |
| 42 | 1994. 1.17. | 대통령령 제14124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 중앙행정기관의 중간정책관리계층을 보강하기 위하여 주요계장의 직위를 4급으로도 보할 수 있게 함(운영지원과 1, 기획예산담당관실 1, 교정과 1, 출입국기획과 1) |
| 43 | 1994. 2. 5. | 대통령령 제14157호 | 〃 | • 공보관을 0사관·부0사관 2·3급 별정직 또는 검사로 보할 수 있게 함<br>• 보호국의 검찰사무직중 조사과 3인(검찰사무직 또는 보도직), 관찰과 3인(검찰사무직 또는 보호관찰직)을 복수직화<br>• 울산구치소 신설 |
| 44 | 1994. 4.30. | 대통령령 제14237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 법무실의 송무심의관을 송무과로 개편<br>•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 중 검사연구위원(3인)을 폐지하고 그 중 검사장 1인을 감축하며, 나머지 검사 2인은 교관으로 활용함<br>•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리과 및 심사과 설치 |
| 45 | 1994. 9.17. | 대통령령 제14383호 | 〃 | • UR협상 타결에 따른 국내법령정비의 지원 및 통상법률 관계 등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국제법무심의관실에 검사 2인을 증원 |
| 46 | 1995. 3.23. | 대통령령 제14548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소년원법시행령 부칙 제2조) | • "소년감별소"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명칭 변경 |
| 47 | 1995. 4.12. | 대통령령 제14584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기능을 보강하고 실적주의에 입각한 인사관리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무부의 주요 과장 및 과장급 담당관의 직위를 3급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하고 4급 정원 중 3인(운영지원과장·교정과장·출입국기획과장)을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으로 조정<br>• 주요 기획사무를 담당하는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정원을 확대하여 5급 정원 중 11인(공보관실·행정관리담당관실·시설기획담당관실·건설관리담당관실·법무과·검찰제1과·검찰제2과·보호과·소년과·보안제1과·출입국심사과)을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으로 조정 |
| 48 | 1995. 7. 8. | 대통령령 제14724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 출입국심사과를 입국심사과로 개편<br>•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대구·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 직급 하향조정(별정직 3급상당→별정직 4급상당) |

| 순위 | 공포일자 | 법령호수 | 건 명 | 내 용 |
|---|---|---|---|---|
| | | | |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조사 3과 신설 |
| 49 | 1995.10.19. | 대통령령 제14792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 교정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하여 교정국장의 직급을 검사장에서 검사장·교정이사관 또는 교정부이사관으로 복수직화 |
| 50 | 1996. 6.29. | 대통령령 제15064호 | 〃 | • 보호국의 소년과를 소년제1과와 소년제2과로 개편<br>• 서울지방교정청에 수원구치소 및 수원구치소 평택구치지소를 각각 신설<br>• 대전보호관찰소에 홍성지소를 신설<br>• 중앙행정기관의 주요과장 및 주요계장의 복수직급화 계획에 따라 본부의 4급정원 3인을 3급 또는 4급으로, 5급정원 10인을 4급 또는 5급으로 복수직급화 하고 소속기관의 4급정원 6인을 3급 또는 4급으로, 5급정원 22인을 4급 또는 5급으로 복수직급화 |
| | | | | • 중앙행정기관의 실무기획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6급 및 7급정원 11인을 감축하여 그중 9인을 5급으로 상향조정 |
| 51 | 1997. 3.20. | 대통령령 제15305호 | 〃 | • 기능직공무원 25인 감축 |
| 52 | 1997. 8.13. | 대통령령 제15459호 | 〃 | • 소년제1과장 직급을 3·4급 복수직급화<br>• 대전교도소강경구치지소를 신설하고, 인천구치소 부소장을 신설<br>• 대구보호관찰소에 김천지소, 대전·수원보호관찰소에 사무과·관호과 신설<br>• 동해출입국관리사무소를 출장소로 축소개편하고,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를 신설하며, 대구·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리과·심사과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과를 두고, 익산출입국관리사무소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개편<br>• 보호관찰, 계호, 출입국심사인력 등 222인 증원 |
| 53 | 1997. 8.13. | 대통령령 제15462호 | 실무인력조정등을위한중앙행정기관등직제일부 개정 | • 실무·기획인력조정 및 복수직급화로 일부 직급의 정원 조정<br>(6·7급 26인 감, 5급 9인 증) |
| 54 | 1997. 8.23. | 대통령령 제15467호 | 실무인력조정등을위한중앙행정기관등직제일부 개정 | • 법무연수원 상임연구위원 4인(1급 2, 2급 2) 신설 |
| 55 | 1998. 2.28. | 대통령령 제15711호<br>법무부령 제455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br>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정 | • 각부처의 조직운영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조직 개편방향에 따라 기존 직제의 전문개정과 함께 법무부와 그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법무부령)을 제정 |

| 순위 | 공포일자 | 법령호수 | 건 명 | 내 용 |
|---|---|---|---|---|
| | | | | • 시설기획담당관실과 건설관리담당관실을 통합하여 시설관리담당관실로 개편(정원 34인→26인) |
| | | | | • 기획관리실에 여성정책담당관실(정원 7인) 신설 |
| | | | | • 국제법무심의관실을 국제법무과로 명칭변경하고 비상계획관을 기획관리실 소속으로 변경 |
| | | | | • 본부 기구개편에 따라 정원 13인 감축 |
| | | | | • 법무연수원 자료과를 폐지하고 분장사무를 기획과로 이관(정원 7인 감축) |
| | | | | • 서울·대구·대전·광주지방교정청의 관리국·교화국 폐지 |
| 56 | 1998. 4. 1. | 대통령령 제15765호<br>법무부령 제460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br>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 법무연수원에 상임연구위원 1인 증원(2급) |
| 57 | 1998. 7. 1. | 법무부령 제462호 | 〃 | • 서울소년원 대덕지원 신설 |
| 58 | 1998.12. 7. | 법무부령 제468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br>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 교정국의 교정행정 전산업무를 보안제1과 분장사무에서 교정과 분장사무로 조정 |
| | | | | • 출입국관리국 기록관리과를 출국심사과로 명칭 변경 |
| 59 | 1998.12.31. | 대통령령 제16006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 법무연수원 기획부와 일반연수부를 기획부로 통합 |
| | | 법무부령 제470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 대구구치소 신설 |
| | | | | •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개편 |
| | | | | •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광양출장소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으로 조정 |
| 60 | 1999. 5.24. | 대통령령 제16337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신설 |
| | | 법무부령 제481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 비상계획담당관 폐지 |
| | | | | • 소년분류심사원의 관호과를 교무과로 명칭 변경 |
| 61 | 1999.12. 2. | 법무부령 제488호 | 〃 | • 출국심사과를 출국관리과로 명칭변경 |
| | | | | •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 도심공항 출장소 신설 |
| 62 | 2000. 2.28. | 대통령령 제16725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규정 | • 개방형임용제 실시를 위하여 교정심의관·교정연수부장·천안개방교도소장·치료감호소장·치료감호소 의료부장 및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을 계약직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 |

| 순위 | 공포일자 | 법령호수 | 건 명 | 내 용 |
|---|---|---|---|---|
| 63 | 2000. 3. 7. | 대통령령 제16748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 정보화담당관실 신설 및 보호국 조사과 폐지 |
| | | 법무부령 제493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 보호관찰소 서울서부·수원성남·부산서부지소 신설 |
| | | | | • 대덕지원을 대덕소년원으로 승격 |
| 64 | 2000.11.20. | 대통령령 제17003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 서울외국인보호소를 화성으로 이전, 화성외국인보호소로 명칭 변경 |
| | | 법무부령 제499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 기획검사 설치 근거규정 신설 |
| 65 | 2001. 3.29. | 대통령령 제17163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를 인천공항으로 이전하고,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로 명칭 변경 |
| | | 법무부령 제504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 도심공항출장소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도심공항출장소로 명칭 변경 |
| 66 | 2001. 4.23. | 대통령령 제17201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 법무실에 법조인력정책과 신설 |
| | 2001. 4.24. | 법무부령 제505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 대구·대전·안양·광주·전주·마산·의정부·춘천교도소에출정과 신설 |
| | | | | •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속초출장소 신설 |
| 67 | 2001. 9.29. | 대통령령 제17370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 및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 신설 |
| | 2001.10.10. | 법무부령 제509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 수원교도소를 여주로 이전하고, 여주교도소로 명칭 변경 |
| | | | |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평택출장소 신설 |
| 68 | 2002. 3.25. | 대통령령 제17549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규정 | • 홍성교도소 서산구치지소 신설 |
| | | | | • 여주교도소 계호인력 29인 증원 |
| | 2002. 3.30. | 법무부령 제513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 홍성교도소 서산구치지소 신설에 따른 45인 증원 및 여주교도소 계호인력 29인 증원 |
| | | | | • 본부 공보관실 소속 촬영기사의 직급을 7급 상당에서 6급상당으로 상향조정 |
| 69 | 2002. 5.27.<br>2002. 6. 8. | 대통령령 제17610호<br>법무부령 제520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br>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 서울소년원에 창업지원과 신설<br>• 보호관찰소 및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실무인력 50인 증원<br>• 출입국관리사무소 실무인력 16인 증원<br>• 광주 및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직급을 상향조정(5급→4급) |
| 70 | 2002. 7.10.<br>2002. 8. 9. | 대통령령 제17664호<br>법무부령 제523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br>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 안산의료소년원 신설 (2002. 10. 1.부) |
| | | | | • 청주여자교도소를 확장함에 따라 계호인력 6인 증원 |

| 순위 | 공포일자 | 법령호수 | 건 명 | 내 용 |
|---|---|---|---|---|
| 71 | 2002. 8.16.<br>2002. 8.16. | 대통령령 제17715호<br>법무부령 제526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br>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 법무연수원 상임연구위원(관리관·이사관, 1급 또는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검사→관리관·이사관, 1급 또는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고등검사장·검사장·검사)<br>• 본부 교화과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과장급 직위로 정함 |
| 72 | 2002.11. 9. | 법무부령 제527호 | 〃 | •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및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 신설 |
| 73 | 2003. 5.15. | 법무부령 제530호 | 〃 | • 장관정책보좌관 신설<br>–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별정직(2급상당 또는 3급상당) 1인<br>–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교정감 또는 별정직 4급상당 1인 |
| 74 | 2003. 7.25.<br>2003. 8.22. | 대통령령 제18054호<br>법무부령 제537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br>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감천출장소 신설 및 이에 따른 소요인력 6인 증원 |
| 75 | 2003. 9.29. | 대통령령 제18107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 법무부 개방형직위 중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직위를 출입국관리국장 직위로 대체 지정하고,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직업훈련교사를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 |
| 76 | 2003.12. 3. | 대통령령 제18148호 | 〃 | •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2004. 1. 1.부) 및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김포출장소 신설<br>• 출입국심사업무에 필요한 인원 43인 증원 |
| 77 | 2003.12.30.<br>2003.12.31. | 대통령령 제18195호<br>법무부령 제544호 | 〃<br>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 충주구치소와 포항구치소 신설 및 이에 소요되는 인원 120인 증원<br>• 창원소년원 신설 및 이에 소요되는 인원 15인 증원 |
| 78 | 2004. 1.29.<br>2004. 2. 9. | 대통령령 제18252호<br>법무부령 제545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br>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 치료감호소에 약물중독재활센터 신설 및 신설에 따른 운영인력 24인 증원<br>• 보호관찰전담인력 45인 및 구치소·교도소의 호송·계호인력 100인 증원 |
| 79 | 2004. 2. 9.<br>2004. 2.28. | 대통령령 제18275호<br>법무부령 제547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br>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 법무부 본부의 정책·기획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부의 6·7급 정원 중 13명을 5급으로 조정<br>• 법무부 소속기관의 집행기능 강화를 위하여 7급 정원 중 58명을 6급으로 조정 |
| 80 | 2004. 3.22.<br>2004. 3.22. | 대통령령 제18328호<br>법무부령 제548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br>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 참여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정부혁신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4개 중앙행정기관 등에 업무혁신전담기구를 설치하게 됨에 따라, 기획관리실장 밑에 행정관리담당관을 없애는 대신 인사·조직 및 혁신업무를 담당하는 혁신인사담당관을 신설하고, 혁신인사담당관의 분장업무를 정함 |

| 순위 | 공포일자 | 법령호수 | 건 명 | 내 용 |
|---|---|---|---|---|
| 81 | 2004. 5.24.<br>2004. 6.12. | 대통령령 제18399호<br>법무부령 제554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br>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 청주외국인보호소 및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고성출장소를 신설하고, 그 실무인력 59인 증원<br>• 계호인력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증원된 실무인력 92인 증원 |
| 82 | 2004.12.31. | 대통령령 제18643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 검찰에 대한 외부감찰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직속으로 감찰관을 신설하고, 일부보호감호소 및 소년교도소의 명칭을 변경<br>• 상사실무인력 및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강화를 통하여 외국인고용 허가제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 인천공항의 출입국심사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실무인력 보강 |
| 83 | 2005. 3. 2.<br>2005. 3.24. | 대통령령 제18729호<br>법무부령 제564호 |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br>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 • 기록연구사 6급 1인 증원<br>• 정책·기획업무 중심으로 실무인력구조를 재조정함으로써 정책역량의 강화와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원범위 안에서 직급조정<br>- 본부 : 5급 8명 증원, 6급 6명, 7급 2명 감축<br>- 소속기관 : 6급 49명 증원, 7급 49명 감축 |
| 84 | 2005. 4.15.<br>2005. 5. 2. | 대통령령 제18876호<br>법무부령 제568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br>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 • 행정수요의 변화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과 단위 기구의 설치한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는 등 관련규정 정비<br>• 정책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과 공보관실을 정책홍보관리실로 통합·신설하며, 홍보관리관(구 공보관) 설치 및 홍보관리관 밑에 정책홍보담당관을 설치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을 재정기획관실로 명칭변경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총 3인(4급 1인, 5급 2인)을 증원<br>• 성매매사범의 보호관찰실시와 외출제한명령 전면시행 등 급속한 보호관찰 영역의 확대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보호관찰소 공무원 정원 증원(2005. 7. 4.부) |
| 85 | 2005. 7. 4. | 법무부령 제573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 • 성매매사범의 보호관찰실시와 외출제한명령 전면시행 등 급속한 보호관찰 영역의 확대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보호관찰소 공무원 정원 증원(150인)(2005. 8. 15.) |
| 86 | 2005. 8.12.<br>2005. 8.12. | 대통령령 제18997호<br>법무부령 제574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br>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 • 2005년도 소요정원 3인(건축주사 1, 전산주사 1, 전산주사보 1) 및 검사적격 심사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2인(검사 1, 전산주사 1)증원하고 공무원임용령중 일부개정(2005. 5. 6.)으로 "부이사관", "기술서기관"으로 직군·직렬 통합(검찰사무직 제외)<br>• 포항교도소 신설, 순천교도소 소록도 지소 |

| 순위 | 공포일자 | 법령호수 | 건 명 | 내 용 |
|---|---|---|---|---|
| | | | | 기관폐지 |
| 87 | 2006. 2. 3.<br>2006. 2. 3. | 대통령령 제19316호<br>법무부령 제581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br>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 • 출입국관리국 밑에 국적난민과와 외국적동포과를 신설하여 국제적 수준의 난민인정 업무와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출입국관리국의 분장사무에 이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고,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정부출장소를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로 승격<br>• 2006년도 소요정원으로 반영된 인력 중 279인(3급 또는 4급 1, 4급 2, 5급 13, 6급 38, 7급 50, 8급 83, 9급 74, 기능직 18)과 외국국적 동포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인력 6인(4급 1, 5급 2, 6급 2, 7급 1)을 증원하는 등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과 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정 |
| 88 | 2006. 5. 3.<br>2006. 5. 3. | 대통령령 제19465호<br>법무부령 제586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br>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추진을 통하여 국제적 수준의 인권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 보호·지원과 법 집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법무실의 인권과를 확대 개편하여 인권국에 인권정책과등 3개과를 신설하고, 그에 따른 소요인력 13인(2·3급 1, 3·4급 1, 3·4급 또는 검사 1, 4·5급 2, 4·5급 또는 검사 1, 5급 3, 6급 2, 7급 1, 기능10급 1)을 증원<br>•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민원 폭주로 야기되는 외국인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출입국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세종로출장소를 신설하는 등 민원처리 실무인력 30인(5급 1, 6급 5, 7급 8, 8급 9, 9급 6, 기능10급 1)을 증원 |
| 89 | 2006. 6.12.<br>2006. 6.12. | 대통령령 제19508호<br>법무부령 제588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br>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 • 교정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경비교도대원 감축에 따른 계호인력 확보 등을 위하여 2006년도 소요정원으로 반영된 교정공무원 821인(4급 4, 5급 4, 6급 85, 7급 127, 8급 303, 9급 298)을 증원하고, 7급 정원 42인을 6급으로, 8급 정원 42인을 7급으로 각각 상향 조정<br>• 법무연수원의 사이버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담당 인력 6인(5급 4, 7급 2)을 증원하려는 것임<br>•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등의 업무를 위하여 정책홍보관리실에 성과관리팀을 신설하고, 교정국 일부 과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대전교도소 논산구치지소를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로 하는 등 4개 구치지소의 명칭을 지소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순위 | 공포일자 | 법령호수 | 건 명 | 내 용 |
|---|---|---|---|---|
| 90 | 2006. 6.30. | 대통령령 제19596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에 따라 실·국장급 직위의 계급을 삭제하고, 실·국장급 공무원의 정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 |
| 91 | 2006. 8. 3. | 법무부령 제594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 •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19596호, 2006. 6. 30 공포, 2006. 7. 1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 부여와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직위의 개방형 변경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
| 92 | 2006.12.29. | 대통령령 제19796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 총액인건비제를 전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 실시함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조직과 정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정원을 추가로 증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계급별로 정원을 규정하는 현행 방식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총정원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일부 직급의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 93 | 2007. 2. 1. | 대통령령 제19860호 | 〃 | • 장관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정책보좌관을 일반직·별정직공무원보다 계약직 공무원으로 우선적으로 보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전자정부 고도화 및 정보보호와 보안 등 행정수요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정보화담당부서의 기능 강화 및 필요인력 증원 및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 분류체계가 개선·보완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 94 | 2007. 5. 4.<br>2007. 5.10. | 대통령령 제20048호<br>법무부령 제610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br>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 • '출입국관리국'을 출입국과 외국인정책에 관한 업무 총괄 수행을 위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확대개편하고, 이에 따른 소요인력 35인(고위공무원단 2, 3·4급 1, 4급 3, 4·5급 2, 5급 8, 6급 11, 7급 5, 기능직 3)을 증원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보호 전담인력 28인(5급 2, 6급 6, 7급 7, 8급 8, 9급 5)을 증원하고 감사관을 폐지하여 이원화되어 있는 감찰·감사조직을 통합하여, 감찰관 밑에 감찰기획관 및 감사기획관을 두며, 정책홍보관리실장 밑에 성과기획조정관을 설치하고, 성과기획조정관 밑에 고객만족팀을 신설하며,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소속과 명칭을 인권국 및 여성정책과로 바꾸며, 2007년도 소요정원으로 인정된 교정공무원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인력 400인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승객정보사전분석 |

| 순위 | 공포일자 | 법령호수 | 건 명 | 내 용 |
|---|---|---|---|---|
| | | | | 시스템 관리인력 등 33인을 직제에 반영하며 교정기관의 수용규모 등을 감안하여 청송교도소와 광주교도소의 보건의료과장의 직급을 현실에 맞게 상호 조정하려는 것임 |
| 95 | 2007. 7.23. | 대통령령 제20180호<br>법무부령 제615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br>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 보호국의 업무조정과 기관폐지 및 신설 및 인력재배치(광주소년분류심사원 등 7개 소년보호기관을 폐지하고 6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로 기능을 전환하고 남는 인력 213명 중 212명은 교정, 보호관찰 등에 재배정하고 1명은 감축) 등을 반영하는 한편, '07년도 3/4분기 소요정원으로 반영된 176명(보호 127, 교정 25, 출입국 16, 감사 8명)을 반영 |
| 96 | 2007. 8.22.<br>2007. 9.13. | 대통령령 제20236호<br>법무부령 제617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br>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 | • 대변인제 도입에 따라 홍보관리관이 대변인을 겸하고 대변인의 기능 규정 |
| 97 | 2007.11.30. | 대통령령 제20400호<br>법무부령 제620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br>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수용자의 인권신장, 새로운 교정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등 교정행정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정사무에 관한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정국을 교정본부로 개편하고 필요인력을 소속기관 정원에서 법무부로 재배치(고위공무원단 1, 4급 3, 5급 6, 6급 9, 7급 6, 기능10급 3) 하는 한편, 「상법」의 개정으로 전자선하증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무실장 및 법무심의관의 소관사무를 일부 조정 |
| 98 | 2008. 2.29.<br>2008. 3. 3. | 대통령령 제20674호<br>법무부령 제634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br>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을 조정하는 한편, 보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정책홍보관리관실을 기획조정실로 개편하는 등 대국(大局) 체제로 조직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br>• 홍보관리관을 폐지하고 장관 직속 기구인 대변인으로 개편하고, 성과기획조정관을 폐지하고, 기획조정관을 신설하며, 정책홍보관리실은 기획조정실로, 총무과는 운영지원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br>• 정책홍보담당관은 홍보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장관 직속 대변인 밑으로 재편하고, 재정기획관은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혁신인사기획관은 창의혁신담당관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성과관리팀과 고객만족팀을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창의혁신담당관실로 이관<br>•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법질서 선진화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을 총괄·추진하는 법질서·규제개혁담당관실(4급·검사 |

| 순위 | 공포일자 | 법령호수 | 건 명 | 내 용 |
|---|---|---|---|---|
| | | | | 1, 5급 2, 6급 2, 기능직 1)을 신설<br>• 교정본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각 정책관을 정책단으로, 각 과를 팀으로 변경하고, 보호국을 범죄예방정책국으로 하는 한편, 법무실·보호국·인권국·교정국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아래의 일부 부서의 명칭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 |
| | | | |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공무원 중 보호직 1명(4급)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가능하도록 조정하고 고위공무원단 개방형직위의 수를 7개(인권국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천안개방교도소장, 치료감호소장, 치료감호소 의료부장, 서울소년원 창업지원과장)에서 4개(인권국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보안정책단장, 치료감호소장)로 조정<br>• 인권옹호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쉽도록 일반직(3·4급)으로 되어 있는 인권정책과장의 직급을 일반직(3·4급) 또는 검사로 복수직급화<br>•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정책기획관(3·4급)을 폐지한 후 정책기획평가팀장의 직급을 4급에서 3·4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4급 정원 1명은 4급 또는 검사로 복수 직급화하여 신설되는 법질서·규제개혁담당관 정원으로 활용하되, 서기관 또는 교정관 정원 1명을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변경함<br>• 공무원 4명(7급 1, 기능10급 3)을 감축 |
| 99 | 2008. 8. 7. | 대통령령 제20954호<br>법무부령 제644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br>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교도소의 경비업무 등을 담당하는 전투경찰·의무경찰 인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정규인력으로 전환함에 따라 필요한 교정공무원 118명(7급 24, 8급 47, 9급 47)을 증원하는 한편, 교정본부장의 분장사무 중 수형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교육교화팀장의 분장사무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신설된 수형자 사회복귀지원 관련 사무를 사회복귀지원팀장이 분장하도록 하는 등 교정본부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인의 접근편의성을 고려하여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등 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할구역을 조정 |
| 100 | 2008.10.22. | 법무부령 제648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행정직 5급 정원 중 1명을 행정·기술직 5급으로, 기술직 6급 정원 중 1명을 행정·기술직 6급으로 각각 복수직화하여 인사운영의 탄력성을 제고 |
| 101 | 2008.12.31. | 대통령령 제21209호<br>법무부령 제656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br>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 | •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이 2단계로 축소됨에 따라 해당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을 재배정 |

| 순위 | 공포일자 | 법령호수 | 건 명 | 내 용 |
|---|---|---|---|---|
| | | | 규칙 일부개정 | • 국민들이 보다 알기 쉽도록 인권국의 구조지원과의 명칭을 인권지원과로 변경,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사무의 지휘·감독 기능을 검찰국 형사기획과에서 인권국 인권지원과로 이관<br>•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시스템의 운영과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위치추적관제센터 설치<br>•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소년법」에 따른 결정전조사와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구전조사에 관한 사항을 보호관찰과장의 분장사무로 추가<br>• 인권국장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보직범위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서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확대<br>•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인권정책과장의 분장사무로 추가<br>• 교정기획팀장 수행기능 중 교정행정 정보화 및 전산장비 운영·관리에 관한 기능을 수용기획팀장에게 이관<br>• 서울지방교정청에 교정업무 관련 전산프로그램의 개발·운영·관리 등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는 전산관리과를 신설<br>• 서울소년원의 하부조직 중 기능1이관 등에 따라 업무가 축소된 창업지원과를 폐지한 후 소년보호교육에 필요한 컨텐츠 개발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교육정보관리과 신설<br>• 보호관찰기관의 관할구역 광역화해소를 위해 안양·영월·공주·제천·상주·거창·해남 지역에 7개의 보호관찰지소를 신설<br>• 감찰기능 수행강화를 위해 정원 4명을 소속기관에서 본부 감찰담당관실로 이체, 치료감호소의 정보화시스템 운영을 위해 정원 1명을 본부에서 소속기관으로 이체 |
| 102 | 2009. 1.29. | 법무부령 제658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대통령령 제21209호, 2008. 12. 31. 공포·시행)으로 인권국장의 보직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개방형 직위인 인권국장 직위를 자율 직위로 변경, 치료감호소 의료부장의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대체 |
| 103 | 2009. 3.18.<br>2009. 3.19. | 대통령령 제21350호<br>법무부령 제660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br>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 |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9168호, 2008. 12. 26. 공포, 2009. 3. 27. 시행)으로 한국갱생보호공단의 명칭이 한국 |

| 순위 | 공포일자 | 법령호수 | 건 명 | 내 용 |
|---|---|---|---|---|
| | | | 규칙 일부개정 | 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변경, 관련 규정 정비,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서면의결이 가능한 경우를 가석방·임시퇴원의 취소결정, 보호관찰 가해제의 취소결정 등으로 구체화 |
| 104 | 2009. 5.25. | 대통령령 제21502호<br>법무부령 제667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br>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창의혁신담당관을 행정관리담당관으로, 법질서·규제개혁담당관을 법질서담당관으로, 시설관리담당관을 시설담당관으로 각각 명칭 변경<br>• 법조인력정책과를 법조인력과로 명칭 변경<br>• 공공형사과를 공안기획과로 명칭 변경<br>• 사회보호정책과를 보호법제과로, 소년보호과를 소년과로, 법문화진흥팀을 법교육팀으로 각각 명칭 변경<br>• 여성아동과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인권정책과, 인권지원과를 인권구조과로, 인권옹호과를 인권조사과로 변경<br>• 교정본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각 팀을 과로 변경, 교육교화팀 폐지, 기능을 사회복귀과로 이관, 경비정책팀 폐지, 보안과로 기능 이관, 외국적 동포팀 폐지, 기능을 사회통합과로 이관, 국제이민협력팀 폐지, 기능을 출입국심사과로 이관, 급증 하는 국적민원 업무적체 해소를 위한 실무인력 5명(5급 1, 6급 2, 7급 2) 증원<br>• 수형자의 사회복귀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을 소장으로 하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신설 하부조직으로 총무과 등 8개 과를 설치, 운영인력 110명(3·4급 1, 5급 8, 6급 16, 7급 18, 8급 45, 9급 15, 기능 7) 증원<br>• 8호 처분 여자 소년원생의 교육 내실화 및 사회복귀지원 강화를 위해 청주소년원을 신설하고 전담인력 10명(6급 4, 7급 2, 8급 4) 증원<br>• 보호관찰기관의 관할구역 광역화 해소 및 현장밀착 지도·감독을 위해 영덕·밀양·남원보호관찰지소를 신설,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관련 전담 수행인력 61명(6급 19, 7급 21, 8급 21) 증원<br>•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난민과를 신설하고 그 실무인력 7명(5급 1, 6급 2, 7급 2, 8급 2) 증원, 출입국관리기관의 일부 부서명칭의 변경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동향조사인력 40명(6급 7, 7급 20, 8급 13)과 출입국심사인력 37명(7급 14, 8급 16, 9급 7) 증원.<br>•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의 개정에 따라 법무부 및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

| 순위 | 공포일자 | 법령호수 | 건 명 | 내 용 |
|---|---|---|---|---|
| | | | |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정원을 계약직으로 보할 수 있게 변경 |
| 105 | 2009. 7. 6. | 법무부령 제675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교정기관 부서명칭을 핵심업무가 부각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간결한 명칭으로 변경, 지방교정청의 5급 과장 직위와 소속기관의 3·4급 또는 4·5급 과장 직위를 상호 이체<br>• 외국인수형자에 대한 처우 및 1통역지원을 위해 천안소년교도소에 국제협력과를 신설<br>• 천안소년교도소 천안지소를 폐지 천안소년교도소에 통합, 중복인력을 전환·재배치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임<br>• 보호관찰기관의 관할구역 조정을 통해 현장밀착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높임 |
| 106 | 2009. 7.17. | 법무부령 제676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위를 개방형직위에서 삭제,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 |
| 107 | 2009.12.31. | 대통령령 제21946호<br>법무부령 제683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br>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영월·해남교도소, 밀양구치소 등 3개 교정시설의 신설에 따른 운영 인력 134명과 「사회복무제도 개선계획」(2007. 7. 10 국무회의 보고)에 따른 경비교도대 대체인력 235명, 국가송무시스템 전담인력 3명 등 총 372명을 증원<br>• 기능직공무원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무부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45명을 일반직공무원 45명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능직공무원 직렬의 명칭 변경 사항 등을 반영 |
| 108 | 2010. 8. 2. | 대통령령 제22313호<br>법무부령 제712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br>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본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및 청주보호관찰소 영동지소 등 기구 신설과 벌금 대체 사회봉사명령 집행인력 55명 등 총 109명 증원 |
| 109 | 2010.10.18. | 대통령령 제22453호<br>법무부령 제723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br>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사회복무제도 개선계획」(2007. 7. 10 국무회의 보고)에 따른 경비교도대 대체 인력 235명과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처우 인력 18명, 영월·해남교도소 및 밀양구치소 정상 운영을 위한 실무인력 78명, 출입국 안산출장소 및 천안출장소 신설에 따른 운영인력 8명 등 총 339명 증원 |
| 110 | 2011. 5. 4.<br>2011. 5.11. | 대통령령 제22917호<br>법무부령 제740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br>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법질서담당관실(기획조정실)과 법교육팀(범죄예방정책국) 통폐합, 법질서선진화과(범죄예방정책국) 신설(9. 1. 시행)<br>• 행정관리담당관실 성과·고객업무 분장, 성과고객팀 신설<br>(9. 1. 시행) |

| 순위 | 공포일자 | 법령호수 | 건 명 | 내 용 |
|---|---|---|---|---|
| | | | | • 영등포구치소·영등포교도소→서울남부구치소·서울남부교도소로 명칭변경<br>• 「성폭력 범죄자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2011. 4. 16.)에 따른 본부 보호관찰과 성폭력범 신상공개 인력 2명, 교정심리치료센터 운영인력 16명, 특정범죄자 전자감독 확대에 따른 실무인력 21명,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수강명령 집행인력 7명, 구미·고양 등 2개 신설 출입국출장소 운영인력 4명 등 총 40명 증원<br>※ 교정기관 전화상담원 10명 감축<br>•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개방형직위에서 공모형직위로 변경, 본부 홍보담당관 개방형직위 지정<br>•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총액인건비제 시행(2014. 4. 30.까지) |
| 111 | 2011. 5.30. | 대통령령 제22937호<br>법무부령 제742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br>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사이버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보안인력 3명 증원 |
| 112 | 2011. 8.23. | 법무부령 제747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사무기능직렬 48명을 일반직으로 전환(기능9급 4, 기능10급 44 → 9급 10, 8급 37, 7급 1) |
| 113 | 2011.10.10.<br>2011.10.13. | 대통령령 제23211호<br>법무부령 제754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br>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역출장소 신설 및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김포출장소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로 승격<br>• 대구보호관찰소 김천지소를 대구보호관찰소 구미지소로 명칭 변경<br>• 경북직업훈련교도소와 경북북부제3교도소 분류심사과를 대구구치소 및 청주여자교도소 분류심사과로 이관(2012. 1. 1. 시행)<br>• 법조인력과 변호사시험 시행인력 4명, 국제법무과 외국법자문사 관리인력 2명, 보호관찰과 성충동약물치료 집행 등 중간관리 인력 1명, 경비교도대 대체 계호 인력 235명, 교정기관 의료처우 개선인력 16명, 성폭력 범죄자 치료·재활 인력 6명, 신설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운영인력 9명, 성충동 약물치료 집행 전담인력 4명, 신설 서울역출입국출장소 운영인력 1명, 김포출입국출장소 사무소 승격에 따른 운영 및 심사인력 5명,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심사 인력 3명 등 총 286명 증원<br>• 천안개방교도소장 : 고위공무원→4급,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 3·4급→고위공무원, 창원교도소장 : 4급→3·4급으로 직급 조정(2012. 1. 1. 시행) |

| 순위 | 공포일자 | 법령호수 | 건 명 | 내 용 |
|---|---|---|---|---|
| | | | | • 본부 대변인실 "온라인대변인" 지정 근거 신설 |
| 114 | 2012. 3.26.<br><br>2012. 3.30. | 대통령령 제23675호<br><br>법무부령 제768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br><br>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서울서부·북부보호관찰지소 보호관찰소 승격, 울산출입국출장소 사무소 승격<br>• 청소년비행예방센터 4개 신설 및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 신설<br>• 재정업무 담당인력 2명, 전문 감사인력 1명,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운용 및 관리인력 1명, 교화방송센터 운영 인력 1명, 남북법률통합 실질화사업 추진인력 2명 등 7명 증원<br>• 조사인력 10명, 전자감독 확대 시행인력 11명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시설 인력 24명 등 45명 증원<br>•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인력 17명, 4부제 개편 소요 인력 28명, 교정직 직급구조 개선 인력 2명 등 47명 증원<br>• 지문관리점담 운영인력 6명, 울산출장소의 사무소 승격에 따른 필요 인력 3명, 복수국적 허용 심사인력 2명, 청주공항 활성화에 따른 심사인력 2명, 핵안보 정상회의 관련 심사인력 21명 등 34명 증원<br>• 급여인력 감축 30명 감원<br>• 체류조사과→이민조사과로 명칭변경<br>• 사회통합과→이민통합과로 명칭변경 |
| 115 | 2012. 6.10.<br><br>2012. 7.12. | 대통령령 제23857호<br><br>법무부령 제776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br><br>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제주공항 심사인력 10명 증원 |
| 116 | 2012. 9.10.<br><br>2012.10.22. | 대통령령 제24116호<br><br>법무부령 제779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br><br>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전자발찌 비상출동 전담인력 43명, 성폭력사범 지도감독 인력 19명, 재범방지를 위한 밀착 보호관찰 인력 75명, 경비교도대 대체 인력 235명 증원 |
| 117 | 2013. 1. 8. | 법무부령 제782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사무기능직렬 28명을 일반직으로 전환(기능9급 28 → 7급 4, 8급 17, 9급 7) |
| 118 | 2013. 3.23.<br><br>2013. 3.23. | 대통령령 제24115호<br><br>법무부령 제787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br><br>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기획조정관, 비상계획관 →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으로 각각 명칭 변경<br>• 성과고객팀 폐지<br>• 정보팀 → 이민정보과 변경<br>•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국 폐지 및 총무과 신설<br>• 공통지원부서 정원 6명 감축(5급 1, 6급 2, 7급 1, 8급 1, 기능9급 1) |
| 119 | 2013. 5.22.<br><br>2013. 6.12. | 대통령령 제24537호<br><br>법무부령 제794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br><br>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난민과를 국적과와 난민과로 분리<br>•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를 신설하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위치를 경기도 과천시로 변경 |

| 순위 | 공포일자 | 법령호수 | 건 명 | 내 용 |
|---|---|---|---|---|
| | | | | • 개인정보보호 담당인력 등 본부 정원 15명 및 소속기관 정원 125명 증원 |
| 120 | 2013. 9.17. | 대통령령 제24732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 • 행정관리담당관 → 창조행정담당관으로 명칭 변경 |
| | 2013.10. 1. | 법무부령 제800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여성아동인권과 신설<br>• 치료감호소 및 소년원 등의 하부조직 중 '서무과'를 '행정지원과'로 명칭 변경<br>• 춘천·전주·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신설<br>• 정부3.0 전담 및 협업과제 추진 인력 등 본부 정원 11명, 소속기관 정원 26명 증원<br>• 사무기능직렬 16명을 일반직으로 전환(기능9급 16 → 7급 6, 8급 7, 9급 3)<br>• 안전행정부(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로 정원 이체(기능8급 △1) |
| 121 | 2013.11. 5. | 대통령령 제24829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 • 정읍교도소, 상주교도소 신설<br>• 정읍·상주교도소 신설 인력 등 소속기관 정원 257명 증원 |
| | 2013.11.13. | 법무부령 제801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 122 | 2013.12.12. | 대통령령 제24949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 • 기능직공무원 폐지 및 일반직 전환 : 1,098명(7급 25, 8급 56, 9급 1,017) |
| | 2013.12.12. | 법무부령 제802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계약직공무원 폐지 및 별정직 전환 : 2명<br>• 별정직공무원 일반직 전환 : 160명<br>• 통합정원 감축 95명(5급 3, 6급 15, 7급 19, 8급 24, 9급 34)<br>• 홍보 담당 인력 1명(4·5급) 증원 |
| 123 | 2014. 4. 1. | 법무부령 제816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서울보호관찰소 전산실 → 범죄예방정보화센터로 개편<br>– 범죄예방정책국 소속기관의 정보화 관련 업무 통합에 따른 업무분장 조정<br>• 총액인건비제 운영 출입국관리사무관(12명) 존속기한 연장<br>• 관리운영직군 일반직 전환 : 9급 9명→7급2명, 8급 4명, 9급 3명 |
| 124 | 2014. 8.27. | 대통령령 제25565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 • 서울·부산·광주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관리과 신설 |
| | 2014. 9. 4. | 법무부령 제824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부산동부·울산·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신설<br>•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인력 등 본부 7명,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신설 인력 등 소속기관 49명 정원 증원 및 직급 상향 55명<br>• 별정직공무원 일반직(임기제) 전환 : 5명(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br>•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라 청주보호관찰소의 관할 구역에 '청원군'을 삭제 |
| 125 | 2015. 1. 6. | 대통령령 제25973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 •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과 신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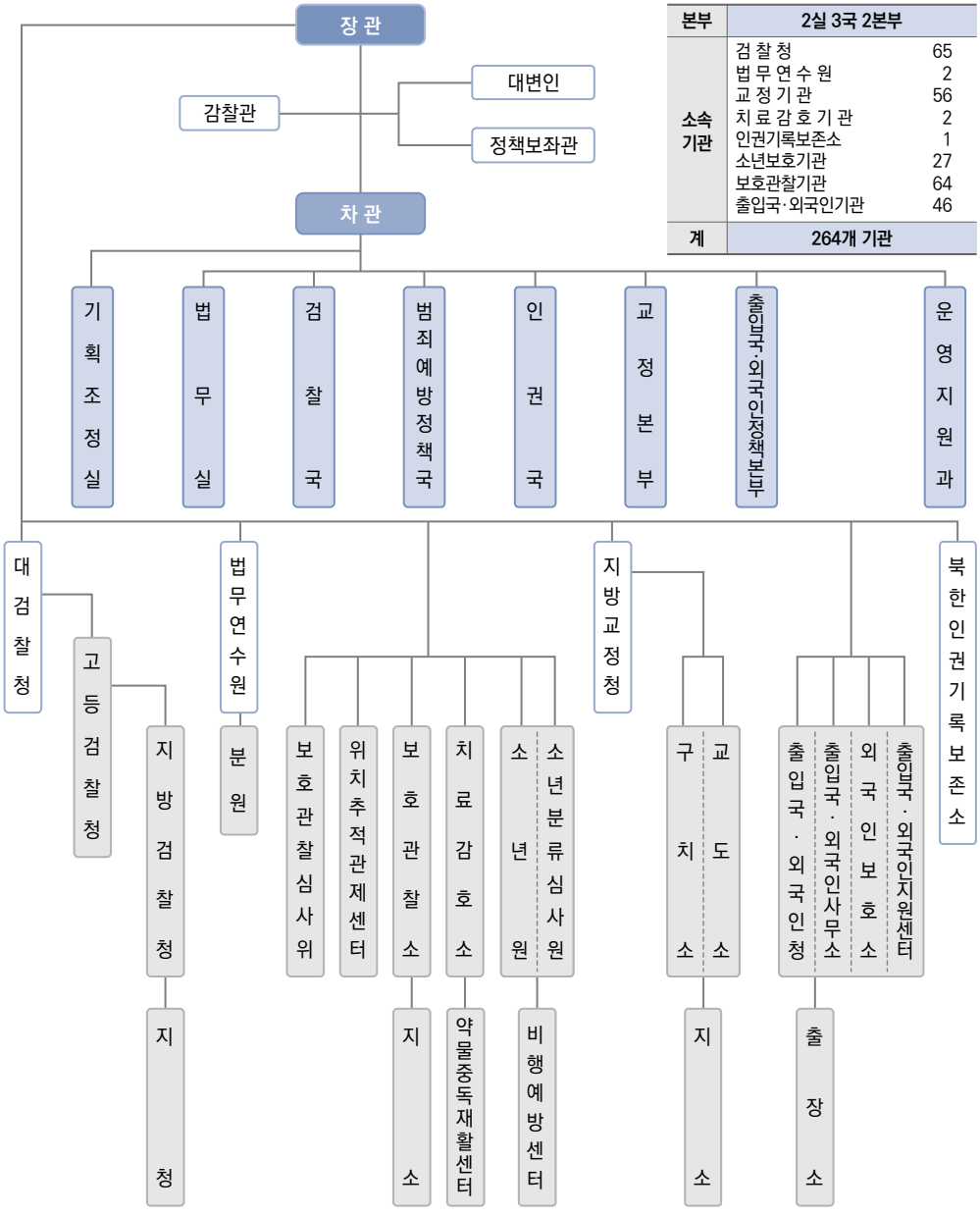
| 순위 | 공포일자 | 법령호수 | 건 명 | 내 용 |
|---|---|---|---|---|
| | 2015. 1. 6. | 법무부령 제834호 | 개정<br>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당진출장소,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무안공항출장소 신설<br>• 출입국관리인력 22명, 치료감호소 의료인력 15명 등 소속기관 정원 37명 증원<br>• 소속기관 정원 본부 이체(6급 1, 7급 1)<br>• 통합정원 감축 85명(5급 2, 6급 11, 7급 14, 8급 25, 9급 33)<br>• 관리운영직군 일반직 전환 : 관리운영직군 119명→행정직군 1명, 기술직군 118명<br>• 개방형직위 규정 정비(국장급 2개 직위→실·국장급 7개 직위 범위내) |
| 126 | 2015. 2.26.<br>2015. 2.27. | 대통령령 제26117호<br>법무부령 제839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br>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신설 : 대외연수과, 운영지원과 신설, 과명칭 변경(교정연수부 운영과→교정훈련과) 및 기구폐지 (연구위원△1, 연구개발팀△1)<br>•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관리인력 6명, 용인분원 신설 인력 13명 등 소속기관 정원 19명 증원<br>• 직급 상향 : 본부 5→4·5급 2명, 소속기관 5→4·5급 1명, 7→6급 31명<br>•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과→사범과로 변경<br>•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규정 신설 |
| 127 | 2015. 5.26.<br>2015. 5.28. | 대통령령 제26263호<br>법무부령 제843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br>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범죄예방정책국 특정범죄자관리과 신설<br>•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 조사대 신설<br>• 개인정보보호 인력 1명, 특정범죄자관리과 인력 6명 등 본부 정원 7명 및 교정기관 의료인력 4명, 소년보호기관 호송인력 9명, 특정범죄자 관리 인력 23명 등 소속기관 정원 57명 증원<br>• 직급 상향 : 본부 5→4·5급 2명, 소속기관 4→3·4급 1명, 5→4·5급 4명, 6→5급 13명, 7→6급 31명<br>• 관리운영직군 일반직 전환 : 관리운영직군 25명→행정직군 4명, 기술직군 21명<br>• 교정기관 임기제공무원 대체 정원 확대(의무직 5급 8명→13명) |
| 128 | 2015.11.30.<br>2015.12. 1. | 대통령령 제26675호<br>법무부령 제857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br>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사이버보안 관리 역량 강화 인력 본부 정원 1명 증원(4·5급)<br>• 소년보호기관 임기제공무원 대체 정원 확대(의무직 5급 6명→7명)<br>• 과장급 개방형직위 변경(난민과장, 치료감호소 신경과장·특수치료과장→군산교도소 의료과장, 치료감호소 일반정신과장·사회정신과장) |
| 129 | 2015.12.30.<br>2015.12.30. | 대통령령 제26782호<br>법무부령 제860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br>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 |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전자비자센터 신설<br>• 국고손실 환수송무 인력 2명 등 본부 정원 2명 및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전자비자센터 |

| 순위 | 공포일자 | 법령호수 | 건 명 | 내 용 |
|---|---|---|---|---|
| | | | 규칙 일부개정 | 인력 2명, 공항 및 크루즈터미널 심사 인력 66명, 불법체류자 단속 인력 9명 등 소속기관 정원 77명 증원<br>• 통합정원 감축 85명(5급 3, 6급 15, 7급 9, 8급 25, 9급 33)<br>• 관리운영직군 일반직 전환 : 관리운영직군 32명→행정직군 2명, 기술직군 30명<br>•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평택출장소→평택항만출장소, 오산출장소→평택출장소로 변경 |
| 130 | 2016. 2.29.<br>2016. 3. 2. | 대통령령 제27001호<br>법무부령 제863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br>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지원과·교육운영과, 대전·대구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관리과 신설<br>• 아동인권보호 전담 본부 정원 1명 및 치료감호소 병동 운영 인력 12명,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지원과·교육운영과 신설 인력 9명 등 소속기관 정원 21명 증원<br>• 기구 신설, 정책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한 직급 상향 16명 |
| 131 | 2016. 5.10.<br>2016. 5.10. | 대통령령 제27134호<br>법무부령 제867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br>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김해출장소 신설<br>•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과 신설<br>• 김해·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 → 김해공항·김포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각각 명칭변경<br>• 감찰담당 본부 정원 2명 및 교정기관 수용자 의료개선 인력 4명,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과 신설 인력 4명 등 소속기관 정원 12명 증원 |
| 132 | 2016. 9. 5.<br>2016. 9. 5. | 대통령령 제27483호<br>법무부령 제873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br>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교정본부 심리치료과, 서울지방교정청 분류센터 신설<br>• 지방교정청 의료분류과·직업훈련과 → 보안과·사회복귀과로 통폐합<br>• 교정본부 및 교정기관 인력재배치 337명<br>• 직급상향 20명 |
| 133 | 2016.10.11.<br>2016.10.11. | 대통령령 제27540호<br>법무부령 제877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br>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보안관리과 신설<br>•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신설 인력 12명,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보안관리과 신설 인력 20명, 크루즈 심사 인력 15명 등 소속기관 정원 69명 증원 |
| 134 | 2016.12.27.<br>2016.12.30. | 대통령령 제27685호<br>법무부령 제884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br>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통합정원 감축 85명<br>• 관리운영직군 28명 일반직 전환<br>• 치료감호소 및 외국인보호소 직렬 조정 8명 |
| 135 | 2017. 2.28.<br>2017. 2.28. | 대통령령 제27876호<br>법무부령 제889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br>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민원 담당 본부 정원 2명 및 보호관찰소 치료명령제도 운영 인력 37명,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체류자 단속 인력 30명 등 소속기관 정원 96명 증원 |

| 순위 | 공포일자 | 법령호수 | 건 명 | 내 용 |
|---|---|---|---|---|
| | | | | • 정책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한 직급 상향 28명<br>• 한시조직(법무연수원 대외연수과) 존속기한 연장(2017. 2. 28. → 2019. 2. 28., 2년) 및 정원 1명 감축 |
| 136 | 2017. 4.28. | 법무부령 제900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총액인건비제 존속기한 연장(2017. 4. 30. → 2020. 4. 30., 3년 ) |
| 137 | 2017. 5. 8.<br>2017. 5.24. | 대통령령 제28021호<br>법무부령 제901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br>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한시조직(범죄예방정책국 특정범죄자관리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 존속기한 연장(2017. 5. 31. → 2019. 5. 31., 2년) |
| 138 | 2017. 6.20.<br>2017. 6.20. | 대통령령 제28118호<br>법무부령 제903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br>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소속기관 명칭 변경(성동구치소 → 서울동부구치소)<br>• 교정기관 수용자 관리 및 급식운영 인력 26명, 소년원 정신질환 소년원생 교육 인력 15명,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 심사 및 불법체류자 조사 인력 14명 등 소속기관 정원 79명 증원<br>• 인력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직급 상향 1명 |
| 139 | 2017. 8. 1.<br>2017. 8. 1. | 대통령령 제28225호<br>법무부령 제905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br>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3개 실국장 직위(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의 보임범위 확대(검사 → 검사 또는 일반직고위공무원)<br>• 본부 하부조직 명칭 변경(창조행정담당관 → 혁신행정담당관) |
| 140 | 2017.10.20.<br>2017.10.20. | 대통령령 제28396호<br>법무부령 제909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br>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국장급 이하 39개 직위의 보임범위 확대(검사 → 검사 또는 일반직) |
| 141 | 2017.10.31.<br>2017.10.31. | 대통령령 제28402호<br>법무부령 제910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br>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2국, 입국재심2과, 심사13, 심사14, 심사15과 신설<br>•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기구 신설(1국 4과) 인력 198명 증원 |
| 142 | 2017.11.16. | 법무부령 제910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본부 임기제 보임범위 확대(23명 → 45명) |
| 143 | 2017.12.29.<br>2017.12.29. | 대통령령 제28520호<br>법무부령 제913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br>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한시조직(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전자비자센터) 존속기한 연장(2017. 12. 31. → 2019. 12. 31., 2년)<br>•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임기제 정원 1명 신설 |
| 144 | 2018. 2.20.<br>2018. 2.20. | 대통령령 제28664호<br>법무부령 제919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br>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신설기구 정규화(2개 부서) 및 존속기한(2개 부서) 연장<br>- 정규화 : 대전 및 대구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관리과<br>- 존속기한 연장 :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

| 순위 | 공포일자 | 법령호수 | 건 명 | 내 용 |
|---|---|---|---|---|
| | | | | 교육지원과·교육운영과(2018. 2. 28. → 2020. 2. 28., 2년) |
| 145 | 2018. 3.30.<br><br>2018. 3.30. | 대통령령 제28736호<br><br>법무부령 제921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br><br>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및 관찰과 신설<br>• 상사분야 법령 정비 등 본부 정원 11명 및 출입국기관 출입국심사 및 불법체류자 단속 인력 107명, 교정기관 수용자 관리 및 급식운영 인력 98명, 소년원생 교육·관리 인력 50명 등 소속기관 정원 263명 증원<br>• 본부 하부조직 명칭 변경(법질서선진화과 → 보호정책과)<br>• 소속기관 하부조직 개편<br>– 신설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호송과<br>– 폐지 :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연구개발과<br>• 한시조직(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과) 존속기한 연장(2018. 4. 30. → 2020. 4. 30., 2년) 등 |
| 146 | 2018. 4. 9. | 법무부령 제922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규정에 감찰관 직위를 추가 |
| 147 | 2018. 5. 8.<br><br>2018. 5.10. | 대통령령 제28870호<br><br>법무부령 제926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br><br>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소속기관 명칭 변경<br>– 19개 출입국관리사무소 → 6개 출입국·외국인청, 13개 출입국·외국인사무소 |
| 148 | 2018. 5.31. | 법무부령 제929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규정에 법무심의관 직위를 추가 |
| 149 | 2018. 6.26.<br><br>2018. 6.26. | 대통령령 제28994호<br><br>법무부령 제934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br><br>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본부 하부조직 명칭 변경<br>– 보호법제과 → 치료처우과<br>– 소년과 → 소년보호과<br>• 신설기구 정규화(2개 부서)<br>– 본부 심리치료과, 서울지방교정청 분류센터 |
| 150 | 2018.10. 2.<br><br>2018.10. 4. | 대통령령 제29207호<br><br>법무부령 제938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br><br>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교정기관 수용자 관리 인력 30명 증원<br>• 신설기구 정규화(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보안관리과) |
| 151 | 2018.12. 4.<br><br>2018.12. 4. | 대통령령 제29326호<br><br>법무부령 제941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br><br>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출입국기관 출입국 체류센터 관리 인력 5명 증원 |
| 152 | 2018.12.31.<br><br>2018.12.31. | 대통령령 제29442호<br><br>법무부령 제944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br><br>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보호관찰소 전자감독 전담 인력 30명, 출입국기관 출입국심사 및 난민심사 인력 21명 등 소속기관 정원 51명 증원<br>• 검찰국 과장 2개 직위의 보임범위 확대(검사 → 일반직 또는 검사)<br>• 평가대상 조직(법무연수원 대외연수과) 평가기간 연장(2019. 2. 28. → 2020. 2. 28., 1년) 등 |

# 2. 조직도




| 본부 | 2실 3국 2본부 | |
|---|---|---|
| 소속기관 | 검찰청 | 65 |
| | 법무연수원 | 2 |
| | 교정기관 | 56 |
| | 치료감호기관 | 2 |
| | 인권기록보존소 | 1 |
| | 소년보호기관 | 27 |
| | 보호관찰기관 | 64 |
| | 출입국·외국인기관 | 46 |
| 계 | 264개 기관 | |

# 3. 정원 변동표

| 구분 \ 연도 | 1948 | 1949 | 1950 | 1951 | 1952 | 1953 | 1954 | 1955 | 1956 | 1957 | 1958 | 1959 | 1960 | 1961 | 1962 | 1963 | 1964 | 1965 | 1966 | 1967 | 1968 | 1969 |
|---|---|---|---|---|---|---|---|---|---|---|---|---|---|---|---|---|---|---|---|---|---|---|
| 총 계 | 4,573 | 4,621 (+148) | | | | 4,556 (−65) | | 4,526 (−30) | 4,553 (−27) | 4,080 (−473) | 3,859 (−221) | | 3,952 (+93) | 4,403 (+451) | 4,438 (+35) | 4,872 (+434) | 4,976 (+104) | 5,197 (+221) | 5,354 (+157) | 6,440 (+1,086) | 6,677 (+237) | 6,855 (+178) |
| 본 부 | | 148 | | | | 83 (−65) | | 53 (−30) | | 68 (+15) | | | | 170 (+102) | 177 (+7) | 199 (+22) | 189 (−10) | | 232 (+43) | 269 (+37) | 314 (+45) | 318 (+4) |
| 검찰청 검 사 | 163 | | | | | | | | 190 (+27) | | | | | | 220 (+30) | | 243 (+23) | | 300 (+57) | | | |
| 검찰청 일반직등 | 586 | | | | | | | | | | | | 58 (+3) | 904 (+135) | 903 (−3) | 996 (+93) | 1,089 (+93) | | | 1,273 (+184) | 1,338 (+65) | |
| 교도소 (구치소, 감호소 포함) | 3,372 | | | | | 형무소 | | | | 2,914 (−458) | 2,790 (−124) | | 2,840 (+50) | 2,837 (−3) | 2,836 (−1) | 3,089 (+253) | | 3,229 (+140) | | 3,979 (+750) | 4,066 (+87) | 4,216 (+150) |
| 소 년 원 | 126 | | | | | | | | | 96 (−30) | | | 136 (+40) | 164 (+28) | | 181 (+17) | | 250 (+69) | | 363 (+113) | 397 (+34) | |
| 출입국관리 사무소 (외국인보호소 포함) | | | | | | | | | | | | | | | | 49 | 47 (−2) | 59 (+12) | 116 (+57) | 118 (+12) | 124 (+6) | 148 (+24) |
| 법무연수원 | 조선형무관학교 126 | | | | | | | | | 형무관학교 | 129 (−97) | | | 138 (+9) | | | 교도관학교 | | | | | |

| 구분 \ 연도 | 1970 | 1971 | 1972 | 1973 | 1974 | 1975 | 1976 | 1977 | 1978 | 1979 | 1980 | 1981 | 1982 | 1983 | 1984 | 1985 | 1986 | 1987 | 1988 | 1989 |
|---|---|---|---|---|---|---|---|---|---|---|---|---|---|---|---|---|---|---|---|---|
| 총 계 | 6,975 (+120) | 7,568 (+593) | 7,526 (-42) | 8,024 (+498) | 8,257 (+233) | 8,556 (+229) | 9,589 (+1,033) | 9,938 (+349) | 10,628 (+690) | 10,959 (+331) | 11,502 (+543) | 13,210 (+1,708) | 13,431 (+221) | 13,820 (+130) | 13,820 (+259) | 13,967 (+147) | 14,216 (+147) | 15,216 (+961) | 16,708 (+492) | 19,126 (+2,418) |
| 본 부 | 332 (+120) | 256 (-67) | 245 (-10) | 248 (+3) | 210 (-38) | 291 (+81) | 295 (+4) | | 350 (+55) | 355 (+5) | 360 (+5) | 426 (+66) | 420 (-6) | 430 (+10) | 429 (-1) | | 444 (+15) | | | |
| 검찰청 검 사 | | 343 (+43) | | 360 (+17) | 377 (+17) | | 417 (+40) | | 473 (+20) | | | 467 (+30) | 497 (+30) | 527 (+30) | 557 (+30) | 587 (+30) | | 667 (+80) | 707 (+40) | 747 (+40) |
| 검찰청 일반직등 | | 1,457 (+119) | | 1,473 (+16) | 1,539 (+66) | 1,565 (+26) | | 1,866 (+301) | 2,024 (+158) | 2,161 (+137) | 2,309 (+148) | 2,996 (+687) | 3,165 (+169) | 3,226 (+101) | 3,372 (+106) | 3,489 (+117) | 3,647 (+158) | 3,904 (+257) | 4,067 (+163) | 4,886 (+819) |
| 교도소 (구치소, 감호소 포함) | 4,312 (+96) | 4,772 (+460) | 4,753 (-19) | 5,179 (+426) | 5,292 (+113) | 5,554 (+262) | 6,474 (+920) | | 6,776 (+302) | 6,921 (+145) | 7,185 (+264) | 8,076 (+891) | | 8,074 (-2) | 8,092 (+18) | | | 8,447 (+355) | 8,574 (+127) | 10,780 (+2,006) |
| 소년원 (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포함) | | 427 (+30) | 425 (-2) | | 484 (+59) | | | 532 (+48) | 625 (+93) | 652 (+27) | 676 (+24) | 684 (+8) | 695 (+11) | | 749 (+54) | | 769 (+20) | 998 (+229) 치료감호소 195포함 | | 1,047 (+49) |
|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 포함) | 168 (+20) | 175 (+8) | 166 (-10) | 202 (+36) | 218 (+16) | | 279 (+61) | | 340 (+61) | 357 (+17) | 455 (+98) | 475 (+20) | 492 (+17) | 479 (-13) | 531 (+52) | | 581 (+50) | 621 (+40) | 783 (+162) | 795 (+62) |
| 법무연수원 | | 137 (-1) | | | 67 (-70) | 75 (+8) | | 76 (+1) | | | 80 (+4) | 86 (+6) | | 90 (+4) | | | 135 (+45) | | | 148 (+13) |

| 구분 \ 연도 | 1990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
| 총 계 | 19,126 (+1,082) | 21,211 (+1,003) | 21,795 (+404) | 21,931 (+136) | 22,213 (+282) | 22,603 (+390) | 22,161 (+558) | 23,427 (+266) | 23,436 (+9) | 23,360 (−76) | 23,736 (+376) | 23,981 (+245) | 24,376 (+395) | 24,788 (+412) | 25,334 (+546) | 25,809 (+475) | 27,137 (+1,328) | 28,067 (+930) | 28,262 (+195) | 28,986 (+829) |
| 본 부 | 459 (+15) | 467 (+8) | 498 (+11) | 491 (−7) | 479 (−12) | | 488 (+9) | 473 (−15) | 455 (−18) | 446 (−9) | 436 (−10) | 453 (+17) | | 455 (+2) | | 479 (+24) | 507 (+28) | 594 (+87) | 590 (−4) | 605 (+15) |
| 검찰청 검 사 | 787 (+40) | 827 (+40) | 867 (+40) | 907 (+40) | 947 (+40) | 987 (+40) | 1,037 (+50) | 1,087 (+50) | 1,137 (+50) | 1,207 (+70) | 1,287 (80) | | 1,357 (+70) | 1,427 (+70) | 1,507 (+80) | 1,587 (+80) | 1,627 (+40) | 1667 (+40) | 1,752 (+85) | 1,847 (+95) |
| 검찰청 일반직등 | 5,288 (+402) | 5,823 (+535) | 5,984 (+161) | 6,095 (+111) | 6,222 (+127) | 6,424 (+202) | 6,575 (+151) | 6,607 (+32) | 6,612 (+5) | 6,520 (−92) | 6,689 (169) | 6,715 (+26) | 6,873 (+158) | 7,029 (+156) | 7,175 (+146) | 7,336 (+161) | 7,468 (+132) | 7,685 (+217) | 7,681 (−4) | 7,769 (+88) |
| 교도소 (구치소, 감호소 포함) | 11,254 (+474) | 11,515 (+261) | 11,784 (+269) | 11,778 (−6) | 11,898 (+120) | 11,901 (+3) | 12,165 (+264) | 12,216 (+51) | 12,287 (+71) | 12,245 (−42) | | 12,308 (+63) | 12,388 (+80) | 12,508 (+120) | 12,700 (+192) | 12,751 (+51) | 13,748 (+997) | 14,162 (+414) | 14,280 (+118) | 14,757 (+477) |
| 소년원 (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포함) | 1,185 (+138) | 1,278 (+93) | 1,293 (+15) | | | 1,354 (+61) | | 1,396 (+42) | 1,380 (−16) | 1,368 (−12) | 1,371 (+3) | | 1,392 (+21) | 1,407 (+15) | 1,431 (+24) | 1,299 (−132) | 1,298 (−1) | 1,092 (−206) | | 1,102 (+10) |
|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 포함) | 870 (+62) | | 930 (+60) | 929 (−1) | 937 (−2) | 1,006 (+69) | 1,062 (+56) | 1,099 (+37) | 1,060 (−39) | 1,068 (+8) | 1,154 (+86) | 1,266 (+112) | 1,282 (+16) | 1,331 (+49) | 1,390 (+59) | 1,476 (+86) | 1,551 (+75) | 1,619 (+68) | | 1,702 (+83) |
| 법무연수원 | | | 150 (+2) | 149 (−1) | 147 (−2) | | 156 (+9) | | 99 (−57) | | | | | | | | 105 (+6) | | | |
|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심사위원회 포함) | | | 289 (+6) | | 290 (+1) | 305 (+15) | 324 (+19) | 393 (+69) | 406 (+13) | 407 (+1) | 455 (+48) | 482 (+27) | 532 (+50) | | 577 (+45) | 782 (+205) | 833 (+51) | 1,143 (+310) | | 1,204 (+61) |

| 구분 \ 연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총 계 | 29,738<br>(+647) | 30,077<br>(+339) | 30,620<br>(+543) | 30,883<br>(+263) | 30,968<br>(+85) | 31,099<br>(+131) | 31,513<br>(+414) | 32,070<br>(+557) | 32,607<br>(+537) |
| 본 부 | 611<br>(+6) | 623<br>(+12) | 630<br>(+7) | 647<br>(+17) | 654<br>(+7) | 656<br>(+2) | 666<br>(+10) | 668<br>(+2) | 679<br>(+11) |
| 검찰청 검 사 | 1,942<br>(+95) | | | | | 2,032<br>(+90) | 2,112<br>(+80) | 2,182<br>(+70) | 2,252<br>(+70) |
| 검찰청 일반직등 | 7,873<br>(+104) | 7,883<br>(+10) | 7,941<br>(+58) | 7,870<br>(−71) | 7,899<br>(+29) | 7,910<br>(+11) | 8,224<br>(+314) | 8,337<br>(+113) | 8,444<br>(+107) |
| 교 도 소<br>(구치소, 감호소 포함) | 15,088<br>(+331) | 15,345<br>(+257) | 15,623<br>(+278) | 15,839<br>(+216) | 15,850<br>(+11) | 15,756<br>(−94) | 15,701<br>(−55) | 15,732<br>(+31) | 15,860<br>(+128) |
| 소 년 원<br>(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포함) | 1,122<br>(+20) | 1,128<br>(+6) | 1,148<br>(+20) | 1,146<br>(−2) | 1,169<br>(+23) | 1,181<br>(+12) | 1,196<br>(+15) | 1,238<br>(+42) | 1,291<br>(+53) |
| 출입국외국인 기 관<br>(외국인보호소 포함) | 1,738<br>(+36) | 1,751<br>(+13) | 1,789<br>(+38) | 1,800<br>(+11) | 1,809<br>(+9) | 1,903<br>(+94) | 1,946<br>(+43) | 2,197<br>(+251) | 2,330<br>(+133) |
| 법 무 연 수 원 | | | | | 107<br>(+2) | 124<br>(+17) | 131<br>(+7) | 130<br>(−1) | 130 |
| 보 호 관 찰 소<br>(보호관찰심사위원회 포 함 ) | 1,259<br>(+55) | 1,300<br>(+41) | 1,442<br>(+142) | 1,534<br>(+92) | 1,538<br>(+4) | 1,537<br>(−1) | 1,525<br>(−12) | 1,574<br>(+49) | 1,609<br>(+35) |
| 북 한 인 권<br>기 록 보 존 소 | | | | | | | 12<br>(+12) | 12 | 12 |

# 제2절 훈령·예규 및 주요지시

## 1. 훈 령

| 번호 | 일자 | 제 목 | 주요골자 | 비 고 |
|---|---|---|---|---|
| 1135 | 1. 8. |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 • 개인정보 보호법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정보화담당관실 |
| 1136 | 1. 16. |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시 신청인이 조회 시작일과 종료일을 모두 선택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 | 이민정보과 |
| 1138 | 1. 26. |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 | •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공급업무가 교정공제회에서 장관이 정한 지방교정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 개정 | 교정기획과 |
| 1139 | 2. 13. |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규정 | • 법무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성범죄 등 성적 침해 행위의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제안하기 위하여 설치할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여성아동인권과 |
| 1140 | 2. 19. | 검사윤리강령 | • 검찰의 경직된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검사 상호간에 존중하고 소통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검사윤리강령」정비 | 감찰담당관실 |
| 1141 | 3. 21. | 공무원 교육상 기금운영 규정 | • 3년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 설정 | 혁신행정담당관실 |
| 1142 | 3. 26. |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정(안) | • 수용관리, 계호업무 등 보안과 업무 관련 규정을 통폐합함으로써 현장 근무자 역량 강화 및 업무 효율성 도모 | 보안과 |
| 1143 | 3. 26. | 교정시설 방호 및 교정장비 관리지침 제정(안) | • 교정시설 방호 및 교정장비 관련 규정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통폐합함으로써 현장근무자 역량 강화 및 업무 효율성 도모 | 보안과 |
| 1147 | 4. 19. | 법무부 위임전결규정 |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부서 명칭 변경 및 위임전결 사항의 조정 및 일부 미비점 보완 등 | 혁신행정담당관실 |
| 1148 | 4. 19. |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 | • 상위 근거 법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의 개정된 내용 반영<br>• 부패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반부패·청렴교육 이수 의무화 규정 신설 | 감사담당관실 |
| 1149 | 4. 24. |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 • 특수경비원을 감호실무관으로 용어변경<br>• 감호실무관의 근무형태를 주·야간 교대 근무로 일원화 등 | 소년과 |
| 1150 | 4. 24. | 보호소년 처우지침 | • 소년원 출원생의 개별처우 목표달성도 보고 주기 분기에서 반기로 변경<br>• 교육성과 가점기준에 신규 자격증을 추가, 가점기준을 조정함 | 소년과 |

| 번호 | 일자 | 제 목 | 주 요 골 자 | 비 고 |
|---|---|---|---|---|
| 1151 | 4. 30. | 인권보호수사준칙 | • 출석 요구시 3일 이상 출석준비기간 부여 규정 신설<br>• 출석 요구시 죄명 및 피의사실 요지 고지 규정 신설<br>• 피의자의 휴식권 보장 규정 신설<br>• 피의자의 메모할 권리 보장 규정 신설<br>• 인권교육 강화 규정 신설 | 형사기획과 |
| 1152 | 4. 30. |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운영지침 | • 인권정책자문단의 인적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위촉 기준 개정<br>• 인권정책자문 기능의 내실화 제고를 위해 서면회의 개최 가능 조항 신설 | 인권정책과 |
| 1153 | 5. 9. |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 • 교정기관 지휘체계 확립, 교과제 운영 합리화, 사무부서로의 전보 대상자 선정 방식 개선, 6급 공무원의 소속기관 유임을 확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교정기획과 |
| 1154 | 5. 9. | 법무부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 | • 「공무원임용령」 개정사항 반영<br>• 2018년도 전문직위 신설 및 확대 | 혁신행정담당관실 |
| 1155 | 5. 11. | 보호관찰대상자 등 지명수배 절차에 관한 규칙 | • 지명수배 입력의뢰서와 지명수배해제 입력의뢰서의 작성책임자란에 대한 기재방법 통일 및 재검토기한 재설정 | 보호관찰과 |
| 1157 | 6. 7. | 법무부 본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 본부에 노사협의회를 신설하고 이에 대한 운영규정 마련 | 운영지원과 |
| 1158 | 6. 12. |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 • 「치료감호법」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정비<br>• 피치료감호자 등에 대한 처우 규정 개선<br>(면회시간명시, 근로보상금 지급 및 실외운동 규정 신설)<br>• 치료감호기간 만료 출소자 보고기한 및 서식 개정<br>• 병동, 감정수당 등 운영현실 반영 | 보호법제과 |
| 1159 | 6. 18. |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 • 소속기관 명칭변경 반영<br>• 출입국관리기록 대외기관 제공 서식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으로 일원화 | 이민정보과 |
| 1161 | 6. 29. | 시설공사 검사업무 규칙 | • 재검토기한을 명기 | 시설담당관실 |
| 1162 | 6. 29. | 공사감독자업무규정 | • 공사감독자 정의 수정 및 적용범위 확대<br>• 현장여건에 맞게 출장감독 고려<br>• 관련 법령 현행화 오기 수정 및 재검토 기한을 명기 | 시설담당관실 |
| 1163 | 7. 3. | 보호소년 처우지침 | • 소년원생의 전화통화 신청에 대한 허가 제한(월 1회 이상)을 삭제<br>• 소년원생의 전화통화 시간을 3분이내에서 5분 이내로 연장함 | 소년보호과 |
| 1164 | 7. 3. |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 • 벨트형 포승의 도입을 위해 [별표 6-2]를 신설함 | 소년보호과 |
| 1165 | 7. 3. | 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분류 및 처우지침 | • 소년원생의 의료접근성 향상과 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의무관의 순회 진료를 주1회에서 주2회로 조정함 | 소년보호과 |
| 1166 | 7. 6. |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개정 | • 마약류수용자 재범 방지 및 범죄수법 공유 방지를 위한 분리수용 및 거실지정 관련 개정 | 보안과 |
| 1167 | 7. 19. | 보호직 공무원의 조사관 자격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 • 직제와 분장 사무 조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br>• 조사관자격인정심의회 외부위원 해촉 규정 신설 등 개선 | 치료처우과 |

| 번호 | 일자 | 제 목 | 주요골자 | 비 고 |
|---|---|---|---|---|
| 1168 | 7. 26.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 • 센터 이용신청 관련 제출서류 정비, 이용신청 접수 확인서 등 서식 신설<br>• 지원센터 이용제한 및 중단사유 추가<br>• 이용자에 대한 면회자와 센터 방문자의 구분 규정 마련<br>• 센터 내 자원봉사자 관련 조항 정비 | 난 민 과 |
| 1169 | 7. 31. |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 • 한국어 능력시험 종류 및 요건 명확화<br>• 재검토기한 설정<br>• 기관명칭 변경사항 등 반영 | 체류관리과 |
| 1170 | 8. 16. | 인권보호수사준칙 |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055호)」에 의해 대검찰청에 인권부가 설치됨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와 적법절차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두는 인권보호관을 '감찰본부장'에서 '인권부장'으로 변경 | 형사기획과 |
| 1171 | 8. 24. | 변호사 보수 규정 | • 舊 변호사 보수 규정(법무부훈령 제854호, '舊 규정')이 존속기한 만료로 실효됨에 따라 국가소송, 행정소송 및 헌법소송 등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에 관한 법령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 | 국가송무과 |
| 1172 | 9. 13. | 법무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 정부조직개편 등에 따른 기관 명칭 현행화 및 소속기관 명칭 변경 반영 | 비상안전기획관실 |
| 1173 | 9. 14. | 검사윤리강령 | • 검사의 외부 기고·발표에 관한 원칙을 소속 기관장 승인에서 사전 신고로 개선 | 감찰담당관실 |
| 1174 | 9. 28. | 보호일시해제업무처리 규정 | • 직권 보호일시해제 관련 구체적인 처리 규정 마련<br>•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 명칭 변경 반영 | 이민조사과 |
| 1175 | 10. 4. | 치료감호소 주·부식 급여 규칙 | • 피치료감호자에게 급여하는 주·부식의 총 열량을 조정<br>• 쌀과 보리쌀 혼합비율 삭제 및 1일 급여량 조정 | 치료처우과 |
| 1176 | 10. 18. | 검찰과거사위원회 규정 | • 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 | 운영지원과 |
| 1177 | 11. 1. | 법무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 •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 협의회를 설치·운영<br>• 국민들이 법무부 관련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체계화 | 대변인실 |
| 1178 | 11. 12. | 경비교도 보상 등에 관한 지침 개정 | •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과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근거 법령을 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법률에 따라 용어를 변경 | 보 안 과 |
| 1179 | 11. 13. | 법무부 성과관리운영규정 | • 성과관리운영규정의 기관·부서 명칭을 직제 상 명칭으로 현행화<br>• 성과관리협의체 및 성과관리실무협의체 개최시기 변경<br>• 평가점수 조정방법 중 범죄예방정책국 소속기관의 편차를 재조정할 수 있는 단서조항 삭제 | 정책성과관리팀 |
| 1180 | 12. 6 |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 • 재검토 기한 연장<br>•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 명칭 변경 반영 | 이민조사과 |
| 1181 | 12. 11. | 출입국사범 고발규정 | •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 명칭 변경 반영 | 이민조사과 |

| 번호 | 일자 | 제 목 | 주 요 골 자 | 비 고 |
|---|---|---|---|---|
| 1182 | 12. 12. |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 |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재검토기한 개정 | 보호관찰과 |
| 1183 | 12. 13. | 법무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식 수정<br>• 훈령 재검토기한 규정 신설 | 감 사 담 당 관 실 |
| 1184 | 12. 18. | 비행예방교육 등에 관한 지침 | • 훈령 재검토 기간 도래에 따른 지침 타당성 검토 및 개선 등의 조치(제명 변경, 기존 55개 조문 중 33개 수정) | 범 죄 예 방 기 획 과 |
| 1185 | 12. 18. | 소년사건 검사의 결정전 조사 처리 규정 | • 훈련재검토기한 만료 도래에 따라 재검토기한 재설정<br>• 부산보호관찰소서부지소 개청 등 최근 직제개정사항을 반영, 검찰청에 대응하는 조사 담당기관 정비 | 범 죄 예 방 기 획 과 |
| 1186 | 12. 20. |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재검토 기한 연장 | 이민통합과 |
| 1187 | 12. 20. |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기본규정 | • 재검토 기한 연장<br>•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 명칭 변경 반영 | 이민통합과 |
| 1188 | 12. 21. | 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 | • 검사국외훈련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에서 "국제법무과장"을 제외<br>• 재검토기한 설정 | 검 찰 과 |
| 1189 | 12. 24. | 검찰과거사위원회 규정 | • 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 | 운영지원과 |
| 1190 | 12. 28. |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 준칙 | • 면회, 서신, 전화통화시 법정대리인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 삭제<br>• 수용질서를 유지하거나 치료상 필요한 경우 신문 열람 등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 삭제 | 치료처우과 |
| 1191 | 12. 28. | 치료감호소 의류 및 침구 제식 규칙 | • 치료감호소 의류 및 침구 제식 규칙에 대한 재검토 기한 설정 | 치료처우과 |
| 1192 | 12. 28. | APEC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 | • 우대카드 발급전담부서 및 소속기관 명칭변경 사항 반영 | 출 입 국 심 사 과 |

# 2. 예 규

| 번호 | 일자 | 제 목 | 주 요 골 자 | 비 고 |
|---|---|---|---|---|
| 1177 | 1. 3. | 행사관련 법무부장관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지침 | • 「정부 표창 규정」 개정 사항 반영<br>• 3년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 설정 | 혁신행정 담당관실 |
| 1178 | 1. 25. |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 • 가족관계회복 지원 대상 선정 요건 중 생활의 모범성 삭제하고 기본 요건이 되는 수형자가 가족만남의 집 이용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 신설<br>• 가족접견 시 아동이 참석할 경우 귀주복 착용 규정 신설 | 사 회 복 귀 과 |
| 1179 | 1. 25. |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 • 집중인성교육 면제자의 신청 교육 시 과정 명확화를 통한 혼선 예방<br>•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서신에 금지물품이 아닌 물품도 동봉할 수 있음을 고려 관련 규정 정비 | 사 회 복 귀 과 |
| 1180 | 3. 1. | 국적업무처리지침 | • '17. 8. 29. 국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귀화필기시험이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되어 시행됨에 따른 개정내용 반영<br>• 독립유공자 후손의 배우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면접심사 면제 등 심사 절차를 완화<br>• 그 밖의 타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 국 적 과 |
| 1190 | 3. 27. | 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 | • 법무부 업무포털시스템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 | 정 보 화 담당관실 |
| 1191 | 4. 10. |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 • 법무부 탈검찰화에 따라 변호사를 채용하여 종래 검사가 수행하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 바, 향후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행정사무관을 심의회 간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간사로 임명될 수 있는 자에 행정사무관을 추가 | 국 가 송 무 과 |
| 1193 | 7. 2. |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 • 수형자 처우의 형평성에 문제가 드러난 일부 규정 삭제, 상위 법령과 상충 또는 중복되는 규정 개선, 교정용어 순화에 따른 용어 변경, 중간처우 대상자 선정 관련 내용 보완, 준용규정 개정 사항 반영 등 지침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보완 | 분 류 심 사 과 |
| 1195 | 8. 9. | 소년교도소 운영지침 | • 소년수형자 등의 특성을 고려한 호칭 개선, 신입식·폭행사고 예방 및 교육훈련 관련 규정 보완,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용어 개선 등 지침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 분 류 심 사 과 |
| 1196 | 8. 10. | 교도작업 운영지침 | • 교도작업제안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모집주기를 변경하는 등 교도작업 운영상 미비점 보완 | 직 업 훈 련 과 |
| 1197 | 8. 10. | 교도작업 특별회계 운영지침 | • 교정작품전시회 출품 수형자에 대한 작업장려금 인상 근거 마련, 직영작업의 작업성적등급 인원 비율 사항 등 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 | 직 업 훈 련 과 |
| 1198 | 9. 14. | 법무부 공증제도 개선위원회 운영지침 | • 법무부 법무과의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가진 5급 이상의 공무원도 간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당연직 위원(법무부 법무과장)을 대리하여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개정 | 법 무 과 |

| 번호 | 일자 | 제 목 | 주 요 골 자 | 비 고 |
|---|---|---|---|---|
| 1199 | 9. 21. |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15253호)」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에 의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융감독원 직원에 대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관련 근거규정을 추가 | 형 사 기 획 과 |
| 1200 | 10. 4. | 법무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 • 법무부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처리기준 규정 | 운 영 지 원 과 |
| 1201 | 12. 20. | 국적업무처리지침 | • 국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18. 12. 20.부로 시행 예정임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지침 상 관련 조항을 정비<br>• 2016. 1. 1. 기준으로 3년을 주기로 설정한 일몰 재검토기한 재설정<br>•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2018. 5. 10.) 개정에 따른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명칭변경사항 반영 | 국 적 과 |
| 1202 | 12. 20. |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 2016. 1. 1. 기준으로 3년을 주기로 설정한 일몰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그 기한을 재설정<br>•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2018. 5. 10.) 개정으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 | 국 적 과 |
| 1203 | 12. 18. |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 • 경향교류원칙 강화<br>• 법무부·대검·외부기관 파견 근무 관련 보임기준 설정 및 편중 근무 제한<br>• 검사의 일·가정의 양립 지원 | 검 찰 과 |
| 1204 | 12. 26. | 법무부 공무국외 출장 운영지침 | • 출장 예산 외부지원 시 '외부위원 심사' 의무화<br>• '물품구매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출장 제한<br>• GTR제도 폐지에 따른 내용 반영 | 혁신행정 담당관실 |
| 1205 | 12. 26. | 교도관 급양관리지침 | • 교도관 급식과 관련하여 식품위생직 등 검수관 임명, 조리·식품위생·안전 교육, 생산명령부 폐지 등<br>•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복 지 과 |
| 1206 | 12. 26. | 수용자 급양관리지침 | • 수용자 급식관리 중 비상식량 급식, 검수 지연, 중앙기준식단 및 생산명령부 폐지 등<br>•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복 지 과 |

# 3. 주요지시

| 일자 | 제 목 | 주 요 골 자 | 수신처 | 비 고 |
|---|---|---|---|---|
| 1. 9. | 동남아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허가 시행방안 시달 및 협조요청 | • 재외공관에서 지정한 현지 전담여행사를 통해 양양공항으로 입국하는 동남아(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 5인 이상 단체관광객에게 무사증 입국 허용 | 기,외교부,강원도,문체부 | 출입국심사과 |
| 1. 11. | 2018년 제11회 세계인의 날 기념, 자체 행사계획 수립 지시 | • 2018. 5. 20. 제11회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자체 행사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 | 기 | 이민통합과 |
| 1. 12. |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사건의 위자료 적정성 판단'에 대한 업무 지시 | • 정부법무공단 자문 결과를 토대로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사건의 위자료 산정액을 유형화하여 정리, 각 검찰청의 과거사 사건 진행과정에서 참고하도록 지시 | 대검찰청 및 소송수행검찰청 | 국가송무과 |
| 1. 17. | 「상소권의 적정행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관련 업무 지시 | • 주요 패소사례 분석 결과 및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사건의 위자료 적정성 판단에 대한 업무 지시'를 「상소권 적정행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에 반영<br>• 국가송무 상소심의회 적극 활용 지시 | 대검찰청 및 소송수행검찰청 | 국가송무과 |
| 1. 17. | 특별단속지역 지정 및 운영방안 시행 | • 전국 34개 권역별 특별단속지역 지정 및 기관별 관리계획 수립, 광역단속팀 주관의 합동단속팀 편성 및 정기적인 단속 실시 등 | 기 | 이민조사과 |
| 1. 18. |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 철저 지시 | • 공중보건의사에게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관련 사항 및 공무원의 의무 등에 대한 교육실시 등 복무관리 철저 지시 | 무 | 의료과 |
| 2. 1.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협의회 운영지침 개정 | • 중앙협의회 당연직 위원 재정비, 재심청구 기한 연장(7일 이내 → 14일 이내) 등 | 기 | 이민통합과 |
| 2. 6. | 불법취업 외국인 적발 시 신병처리 개선방안 지시 | • 적발된 불법취업 외국인 중 불법취업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출석하여 사범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석보증서 징구 후 현장에서 방면, 사후 자진출석토록 하여 사범처리(체류허가 등) | 기 | 이민조사과 |
| 2. 9. | 감염병 예방관리 철저지시 | • 광주교도소 수용자 및 평창올림픽 동원 요원 등이 노로바이러스 감염사례가 발생하니 감염병 예방 및 개인위생에 철저 지시 | 무 | 의료과 |
| 2. 14. | 설날 연휴기간 보호외국인 안전관리 강화 및 특별급식 제공 지시 | • 보호시설 안전점검, 보호 경비근무 강화, 비상근무태세 확립, 보호 업무 관련 적법절차 준수 철저, 보호외국인 인권보호 철저, 특별급식 제공 등 | 기 | 이민조사과 |
| 2. 14. | 지시공문 내 각종 규제사항 개선방안 시달 | • 기동순찰팀 배치기준(인원) 완화, 작업장 계호근무자 복수배치 완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각 기관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수용관리 방안을 마련한 개선방안 시달 | 무 | 보안과 |

| 일자 | 제 목 | 주 요 골 자 | 수신처 | 비 고 |
|---|---|---|---|---|
| 2. 21 | 민간보조사업(직장어린이집) 운영실태 점검 계획 시달 | • 교정본부의 보조사업인 직장어린이집 보조금예산의 적정 집행 여부 및 보육사업 추진사항 현장 점검<br>•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사업 수행 이행여부 확인<br>• 각 어린이집별 현안문제 등 파악 | 무 | 복지과 |
| 2. 23. | 공용차량 안전운행 지시 | • 사고사례 전파 및 공용차량 안전운전을 위한 이행사항 지시 | 무 | 복지과 |
| 2. 23. | 평창 동계패럴림픽 참가자에 대한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 시달 | • 평창 동계패럴림픽 참가자에 대한 지문 및 얼굴정보 제공의무 면제 지시 | 기 | 출입국심사과 |
| 2. 23. | 상반기 불법체류자 정부합동단속 계획 시달 | • 2. 26.(월) ~ 5. 11.(금) 11주간,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해양경찰청과 함께 건설현장·공단 등 대규모 사업장, 유흥주점·마사지업소 등 풍속저해 업소 등에 대한 합동단속 실시 | 기 | 이민조사과 |
| 2. 28. | 2018년도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지침 시달 | • 방문취업동포(H-2)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이수 개선방안 등 기존 지침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 개선 | 기 | 이민통합과 |
| 3. 2. | 「국적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 알림 | • 국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귀화필기시험이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국적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업무처리 지시 | 기 | 국적과 |
| 3. 6. | 유흥업소 및 마사지 업종 불법취업자·알선브로커 등 집중단속 실시 지시 | • 3. 12.(월) ~ 4. 6.(금) 4주간 외국인 불법고용 성행 및 풍속저해 야기 유흥·마사지업소 등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 지시 | 기 | 이민조사과 |
| 3. 19. | 국적심사 우선처리 기준 개선(안) 시달 | •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국적신청자 처리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개선안 시달 | 기 | 국적과 |
| 3. 22. | 「이주여성 성폭력 종합 대책」 시달 | • 이주 여성 성폭력 신고 활성화,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 이주여성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 | 기 | 외국인정책과 |
| 3. 22 | 환절기 환자관리 철저 지시 | • 심장, 폐, 뇌혈관질환 등으로 인한 수용자 사망 발생과 관련하여 직원교육등을 통해 돌연사 예방 및 환자관리 철저에 지시 | 무 | 의료과 |
| 4. 10. | 교정스마트관제센터 운영지침 및 경보처리 규정 시달 | • 교정스마트관제센터의 직무범위와 운영 등을 규정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율적 운영을 지시 | 무 | 보안과 |
| 4. 11. |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운영기관 추가모집 및 지정심사 지시 | •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운영기관 추가공모<br>- 공모기간 : '18. 4. 13. ~ 4. 27.<br>- 모집대상 : 일반운영기관<br>- 운영기간 : 지정일 ~ '19. 12. 31. | 기 | 이민통합과 |
| 4. 24.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 신고 및 투표 등 선거업무 지침 시달 | • 거소투표 신고에 따른 제반규정을 충분히 숙지, 거소투표 대상자가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선거요령 안내 및 계도 철저 지시 | 무 | 보안과 |
| 5. 2. | 2018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일정 일부변경 | • 교육참여자 평가 참여 제고, 평가준비기간 확대 등을 위해 평가일정 및 신청기간 변경을 알려 평가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시 | 기 | 이민통합과 |

## 자료

| 일자 | 제 목 | 주 요 골 자 | 수신처 | 비 고 |
|---|---|---|---|---|
| 5. 9. | 불법입국·취업알선 브로커 집중단속 실시(안) 시달 | • 5. 14.(월) ~ 6. 15.(금) 5주동안 불법취업 목적 사증면제 입국 외국인 및 불법입국·취업알선 브로커, 단기사증·사증면제 및 제주무사증 입국자에 대한 불법 입국·취업 알선 행위 등 단속 실시 | 기 | 이 민<br>조 사 과 |
| 5. 9. | 누락 보험금 검토 철저 지시 | • 국가의 공용차량 교통사고 관련 국가배상소송에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의 누락 방지 및 보험금 공제 항변 행사 지시<br>• 피해자가 지급받을 보험금이 누락된 사례 전수 조사 지시 | 소송수행<br>검찰청 | 국 가<br>송 무 과 |
| 5. 21. |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불허국가 지정 등 알림 및 업무협조요청 | •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불허국가에 예멘 추가 지정(11개국 → 12개국) | 외교부<br>제주도 | 출 입 국<br>심 사 과 |
| 5. 24. | 일반귀화 신청 재외동포에 대한 생계유지능력 요건 기준 시달 | • 재외동포자격 또는 재외동포 자격이었던 영주자격 소지자 일반귀화 신청 시 생계유지능력 요건 기준 시달 | 기 | 국 적 과 |
| 5. 24. | 교정장비 휴대용 조끼 개선·배정 계획 시달 | • 교정이미지 쇄신 및 편의증진을 위해 휴대용 조끼를 배정, 구입계약 체결과 기관별 장비 배정 철저 지시 | 무 | 보 안 과 |
| 5. 28. | 이민자네트워크를 통한 국적취득자의 맞춤형 교육 실시 지시 | •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들을 위한 교육 실시를 통해 국민으로서 소양을 보다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이민자네트워크를 활용한 실생활 맞춤형 교육 실시 | 기 | 이 민<br>통 합 과 |
| 5. 30. | 무사증 입국허가 통합지침 개정 시행 | • 제3국 통과여객 및 일반환승객 무사증 입국불허가 국가 조정, 일반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신청시간 조정(72시간 → 24시간) 반영 | 기,<br>문체부 | 출 입 국<br>심 사 과 |
| 5. 30. | 거동불능자의 국적회복 신청 관련 개선안 시달 | • 거동불능자의 국적회복 신청 대행 허용 관련 개선안 시달 | 기 | 국 적 과 |
| 5. 30. | 하절기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지시 | • 설사 발생 등 집단감염 사례가 있어 유의사항을 전파하니 하절기 수용자 관리<br>(특히, 식중독·감염병 예방)철저 지시 | 무 | 의 료 과 |
| 6. 1. | 벌과금미납자의 교정시설 노역장 유치 집행 관련 개선방안 시달 | • 노역수형자가 입소 후 중증질환자로 확인된 경우 신속하게 외부의료시설로 후송 진료 철저 지시 | 무 | 보 안 과 |
| 6. 4. | 하절기 보호외국인 위생 등 안전관리 강화 지시 | • 급식관련 위생 점검·관리강화, 식자재 및 구입식품 검수 등 관리감독 철저, 보호실 등에 대한 청소·방역 등 위생관리 철저 등 | 기 | 이 민<br>조 사 과 |
| 6. 11. | 여름철 캠필로박터 등 식중독 예방·관리 재강조 지시 | • 폭염주의보 발령으로 캠필로박터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 지시<br>• 조리종사자 위생수칙 준수 및 개인 위생교육 실시 | 무 | 복 지 과 |
| 6. 12. | 유흥업소 등 불법취업자 및 알선 브로커 등 집중단속 실시 지시 | • 6. 18.(월) ~ 7. 13.(금) 4주간, 마사지업소 등 신종 유흥업소의 선량한 미풍양속 저해 행위, 유흥업소 및 마사지 업소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 집중단속 실시 | 기 | 이 민<br>조 사 과 |
| 6. 18. | 국가간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확대 관련 업무 지시 | • 6. 27. 한·대만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시행에 따른 조치사항 시달 | 기 | 출 입 국<br>심 사 과 |
| 7. 16. | 공익법무관 업무 인수·인계 철저 지시 | • 상반기 공익법무관 정기인사 관련 업무공백 발생 방지를 위한 인수·인계 철저 지시 | 공익법무관<br>파견 소송<br>수행청 | 국 가<br>송 무 과 |

| 일자 | 제 목 | 주 요 골 자 | 수신처 | 비 고 |
|---|---|---|---|---|
| 7. 26. |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불허국가 지정 등 알림 및 업무협조요청 | •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불허국가에 12개국(카메룬, 소말리아, 감비아, 세네갈, 카메룬, 방글라데시, 네팔, 파키스탄, 미얀마, 이집트, 키르기즈, 우즈베키스탄) 추가 지정 | 외교부, 제주도 | 출입국심사과 |
| 7. 27. | 혹서기 단속·보호 외국인 호송시 안전사고 예방 철저 지시 | • 단속 및 호송차량 내 생수 등 음료수 상시 비치, 단속 및 호송차량 냉방장치 정비 철저, 호송차량 내 단속에 적발된 외국인 장시간 긴급보호 자제 등 | 기 | 이 민 조사과 |
| 8. 1. |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준수 철저 지시 | •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준수 철저, 단속·보호 등의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폭언·구타 등 인권침해 행위 금지, 운전원 등 권한 없는 직원의 단속·조사 등 업무의 직접 수행 금지 등 | 기 | 이 민 조사과 |
| 8. 2. |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위촉장 전수 지시 | • 2015년도 이후 활동 중인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연임 희망자에 대한 위촉장 전수 | 기 | 이 민 통합과 |
| 8. 20. | 하반기 불법체류외국인 정부합동단속 계획 시달 | • 9. 3.(월) ~ 11. 16.(금) 11주간,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해양경찰청과 함께 건설현장·공단 등 대규모 사업장, 유흥주점·마사지업소 등 풍속저해 업소 등에 대한 합동단속 실시 | 기 | 이 민 조사과 |
| 8. 23. | 태풍 피해 방지를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수업 휴강 검토 지시 | • 제19호 태풍 솔릭에 의한 피해에 대비하여 전국 운영기관에서 기상상황에 따라 휴강여부 검토 등 지시 | 기 | 이 민 통합과 |
| 8. 23. | 개정 구상권 행사 업무 처리 지침 시행 | • 구상권 행사의 지연·누락 방지 및 대상사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개정 「구상권 업무 처리 지침」시행<br>• 구상권 행사 여부 미검토 사례 전수 조사 지시 | 소송수행 검찰청 | 국 가 송무과 |
| 8. 30. | 제4회 출입국 안전의 날 행사 계획 시달 | • 故 조영남 사무관에 대한 추모, 출입국안전현장 이행결의, 화재 예방 관련 취약시설 점검, 단속 시 적법절차 준수 등 | 기 | 이 민 조사과 |
| 9. 4. | 2018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 일부 개정 알림 | • 9. 21.부터 영주자격 취득 요건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또는 종합평가 합격 신설 등에 따른 조치 | 기 | 이 민 통합과 |
| 9. 7. |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확대 관련 업무 지시 및 개정지침 배포 | • 등록외국인(거소 포함) 자동출입국 심사 사전 등록면제 시행 등에 따른 소속기관 업무처리 절차 지시 | 기 | 출입국심사과 |
| 9. 10. | MERS 확진자 국내유입에 따른 위기경보 수준(주의)별 조치 시달 | • MERS 확진자 국내유입과 관련하여 감염의심환자 등 발생 시 조치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신속한 조치를 하고 교정기관 내 전파가 되지 않도록 예방 철저 지시 | 무 | 의료과 |
| 9. 13. | 직업소개소 등 불법취업 알선자 집중단속 실시 지시 | • 9. 17.(월) ~ 10. 19.(금) 5주 동안, 직업소개소, 무허가 업체 및 SNS 등 온라인을 통한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 기 | 이 민 조사과 |
| 9. 14. | 사회통합프로그램 영주용 종합평가 대상 확대 관련 홍보 지시 | •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영주용 종합평가 대상 확대' 안내 | 기 | 이 민 통합과 |
| 9. 18. | 수용자 외부의료시설 진료·입원 시 계호인원 기준(안) 시달 | • 외부의료시설 진료·입원 시 계호인원 세부 기준(안)을 마련하여 교정사고를 방지하고 효율적 인력운용을 지시 | 무 | 보안과 |
| 9. 28. | 불법체류자 특별 자진출국 기간 운영 알림 | • 기간 : '18. 10. 1. ~ '19. 3. 31.(6개월)<br>• 대상 : 해당 기간 자진출국하는 외국인<br>• 혜택 : 입국금지 유예 대상과 입국금지 완화 대상으로 구분 적용 | 기 | 이 민 조사과 |

| 일자 | 제 목 | 주 요 골 자 | 수신처 | 비 고 |
|---|---|---|---|---|
| 10.11. | 운영지원작업(취사장) 취업자 정원 조정(안) 시달 | • 교정기관 신설, 수용정원 조정, 과밀수용 등으로 인한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 취사장 취업 정원 조정 | 무 | 분류심사과 |
| 10. 16. | 교정공무원 건강관리 기본 계획 | • 교정공무원 건강관리 강화로 사망사고 등 예방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 무 | 교정기획과 |
| 10. 17. | 만성질환자 등 진료 강화 지시 | • 의무관의 진료를 강화하고 특히, 만성질환자에 대한 수시 바이탈 체크, 문진 등 신체이상 징후를 조기 발견 하여 외부병원 이송진료 등 선제적 조치를 하여 위험군 환자에 대한 건강관리 철저 지시 | 무 | 의료과 |
| 10. 17. | 개인정보보호법 철저 준수 지시 | • 개인정보의 불법 오남용으로 인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법적절차 준수 철저 및 소속직원 개인정보보호 정례 교육 실시 등 지시 | 기 | 이민정보과 |
| 11. 12. | 노로바이러스 예방 철저 지시 | • 식약처의 노로바이러스 예방철저 요청문서, 전국 교정시설에 시달 | 무 | 복지과 |
| 11. 13.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위반 외국인 유학생 및 알선자 집중단속 실시 지시 | • 11. 12.(월) ~ 12. 7.(금) 4주간 자격외 활동 허가 없이 불법취업하는 유학생 등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 | 기 | 이민조사과 |
| 11. 13.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협의회 운영지침 개정 알림 | • 소속기관 명칭 등 직제 개편사항 반영, 협의회 운영상 미비점 등 보완 | 기 | 이민통합과 |
| 11. 26. | 국가간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확대 관련 업무 지시 | • 12. 1. 한·독일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시행에 따른 조치사항 시달 | 기 | 출입국심사과 |
| 11. 28. | 수용거실 합리적 운용 방안 검토 시달 | • 과밀수용 장기화에 따라 수용거실 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안정적 수용관리를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 수용거실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시달 | 무 | 보안과 |
| 12. 3. | 단기체류 외국인 출국 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관련 업무지시(협조) | • 단기체류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시범운영에 따른 소속기관 조치사항 시달 | 기 | 출입국심사과 |
| 12. 4. | A형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철저 지시 | • A형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와 관련하여 주증상 및 예방법 등을 전파,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관리 철저 지시 | 무 | 의료과 |
| 12. 10. | 혹한기 환자관리 철저지시 | • 겨울철 갑자기 기온이 낮아지는 등 혼한기 대비와 기온변화에 민감한 질환자 등 환자관리에 철저 지시 | 무 | 의료과 |
| 12. 11. | 연말연시 테러대비 활동 및 출입국심사 강화 지시 | • 외국인 입국심사 강화, 체류관리 및 사증심사 활동 강화 등 | 기 | 출입국심사과 |
| 12. 17. | '2019년부터 달라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알아보기' 리플릿 배포 및 홍보 지시 | • 평가 응시수수료 신설, 평가 신청방식 변경 등 '19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변경사항 홍보 | 기 | 이민통합과 |
| 12. 20. | 교정시설 수용자 사망사고 예방 대책(案) 시달 | • 노인수용자, 환자(정신질환 포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수용환경 변화를 반영한 사망사고 예방 대책 시달 | 무 | 보안과 |
| 12. 20. | 「국적업무처리지침」 및 「외국국적동포의 국적 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개정 알림 | • 현 지침 일부 개정 사항 알림 및 이에 따른 업무 지시 | 기 | 국적과 |

# 제3절 장관 연설문

▣ 2018년도 법무부 장관의 주요연설 현황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설현황 |**

| 일 자 | 주요 행사명 | 비 고 |
|---|---|---|
| 2. 7. | • 법무부-대한의사협회 업무협약 격려사 | |
| 2. 8. | • 제4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격려사 | |
| 2. 9. | • 2018년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 | |
| 2.26. | • 제1차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 |
| 3.21. | • 전자투표 현장 정책 간담회 | |
| 3.21. | • 제4기 이민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 |
| 4. 9. | • 독립유공자 후손 배우자에 대한 귀화증서 수여식 | |
| 4.20. | • 서울중재센터 개소식 및 국제중재센터 출범식 | |
| 4.25. | • 제55회 법의 날 기념사 | |
| 5.10. | •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창립 10주년 기념식 축사 | |
| 5.11. | • 제36회 교정대상 시상식 | |
| 5.18. | • 제11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 |
| 5.31. | • 전국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 주재관회의 | |
| 6. 5. | • 맥그린치 신부 명예국민증 수여식 | |
| 6.16. | • 제5회 다링행사 인사말씀 | |
| 6.18. | • 제10차 세계헌법대회 축사 | |
| 7. 6. | • 2018년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격려사 | |
| 8.13. | •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 | |
| 9. 6. | •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제7기 개강행사 축사 | |
| 9. 6. | • 전자감독제도 시행 10주년 행사 | |
| 9.10. | • UNCITRAL 회기간 회의 개회식 | |
| 9.14. | • 제53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 | |
| 9.17. | •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현장 정책 간담회 | |
| 9.19. | • 대한법률구조공단 현장방문 격려말씀 | |
| 10.18. | • 제11회 한국법률가대회 축사 | |
| 10.23. | • 세계성년후견인대회 환영사 | 차관 대참/대독 |
| 10.26. | • 제73주년 교정의 날 | |
| 10.26. | • 스쿨미투 현장방문 | |
| 11. 7. | • 2018년 허그(HUG) 후원의 날 격려사 | |
| 11.14. | • 제11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기념사 | |
| 12.13. | • 선진법제포럼 개회사 | |
| 12.13. | • 2018년 올해의 교사상 및 보호관찰상 시상식 | |
| 12.19. | • 모범귀화자 기념패 수여식 | |
| 12.20. | • 울산스마일센터 개소식 축사 | |

## • 법무부-대한의사협회 업무협약 격려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소년원의 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해 법무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서도 귀한 시간을 내주신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님, 김록권 부회장님, 안양수 총무이사님, 김해영 법제이사님 및 협회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업무협약은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료인들의 재능을 나누어 각 소년원 별로 '의료자문단'을 구성하고, 소년원생들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제가 얼마전 소년원에 직접 방문해보니 소년원의 의료시스템은 시설과 인력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한의사협회 같은 민간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의료자문단' 재능나눔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소년원 의료시스템 개선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 아라비아 속담에 '건강한 자는 모든 희망을 안고, 희망을 가진 자는 꿈을 이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료인들의 재능나눔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건강과 꿈을 함께 찾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의료자문단'의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길 당부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과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2월 7일
법무부장관 박 상 기

## • 제4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격려 말씀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제4회 '법무부 법령 경연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열정으로 가득찬 젊은 학생 여러분을 직접 마주하고 보니,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예선부터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열과 성을 다해 경연대회를 준비한 참가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 송덕수 심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심사위원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참가자 여러분!

법무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법무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는 좋은 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의 수립부터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과 함께 하는 법무부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해 왔습니다. 오늘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또한 미래의 주인공들인 학생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여러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법무정책 마련에 큰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학생 여러분!

오늘 대회에 참가한 여러분은 총 119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치러진 치열한 예선을 거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선에서도 좋은 법률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젊음과 열정을 마음껏 펼쳐 보이기를 기대합니다. 과거에는 법치의 의미가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법으로 국민을 보호하는데 그쳤다면, 오늘날의 법치는 법을 통해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적극적 역할에 중점이 있습니다. 오늘 대회가 여러분에게 입법에 대한 기초 경험을 쌓게 할 뿐만 아니라, 법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론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률은 집행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정의가 실현되고, 인권이 더욱 존중받고 있음을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쁜 학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대회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참가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심사위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2월 8일

법무부 장관 박 상 기

## •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

친애하는 전국 교정기관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이 열리는 날입니다. 국가적 축제의 날에 여러분과 국정운영 방침을 공유하며, 교정행정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과밀수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 기관장 여러분과 전 교정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정기관장 여러분!

새 정부 출범 후 정의롭고 깨끗한 사회를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개혁 작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자기반성과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공정한 수사와 법집행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바로 세우고 인권의 가치를 정립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교정본부도 법무행정 역점시책에 부응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정교화 프로그램의 도입, 실효적인 사회복귀지원 시스템 구축, 수용환경과 의료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교정 현장이 드라마와 예능의 소재로까지 등장하는 등 교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 증진을 통해 그간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재의 성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여 국민들께 더욱 신뢰받는 교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교정기관장 여러분 !

저는 장관으로 부임한 이래 국가운영에 있어서 교정의 역할과 중요성을 한시도 잊어 본 적이 없습니다. 범죄자를 교정·교화하여 건전한 국민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교정의 사명이야말로 얼마나 보람 있고 숭고한 일인가를 마음 속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교정의 막중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오늘 전국 교정기관장 여러분이 모인 자리를 빌려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법과 원칙에 입각한 엄정하고 공정한 수용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정시설에서 수용질서의 확립은 다른 모든 업무에 우선하는 기본과제입니다.

수용질서가 확보되지 않으면 그 어떤 교정처우도 의미를 잃어버리게 됨은 물론, 공정한 처우에도 어려움을 줄 것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수용자에 대하여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게 유도하여 준법정신을 함양시키고, 사회적 신분에 구애되지 않고 모든 수용자를 공정하게 처우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둘째, 수용자 인권보장의 내실화를 위해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가운영에 있어서 존중되어야 하는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인간의 기본권은 국가권력이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제한할 수 있을 뿐임을 명심하고, 혹여 수용관리 현장에서 위법·부당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용자 재범방지에 교정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정의 목적은 수용자의 성공적 사회복귀를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행해온 각종 교정프로그램의 운영성과를 분석해 개선점을 보완하는 한편, 수용자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이끌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효과적인 교정교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과 배려가 넘치는 따뜻한 교정조직을 만들어 갑시다. 제복공무원의 업무특성상 지나친 위계질서와 일방적인 상명하달의 업무환경은 조직구성원의 창의적 업무수행이나 자발적 참여를 가로막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다양한 인적 구성원들이 각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 내'성범죄 대책위원회'가 발족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직장 내 양성평등 의식의 보편화를 통해 남녀 직원 상호 간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직장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교정기관장 여러분!

다산 정약용 선생은 "사람들이 가마 타는 즐거움은 알아도 가마꾼의 어려움을 잘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국민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 정책을 펴야한다는 뜻입니다. 교정행정의 편의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여 교정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장관으로 부임하는 동안 저 역시 과밀수용 해소, 교정공무원 인력 증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여러분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에서 현안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훈시에 갈음합니다.

교정기관장 여러분과 교정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2월 9일

법무부 장관 박 상 기

## • 제1차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및 민간위원 위촉식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평소 인권분야에 헌신적으로 몸 담고 계시는 외부위원님들을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민·관이 손잡고 외국인의 인권 보호와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모인 자리입니다.

오늘 10시부터 시작된 회의에서 ①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체류요건 완화 ② 고려인 4세 동포 학생에 대한 체류허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사회 곳곳에서 우리와 함께 구성원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외국인들 가운데는 경직된 행정이나 제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협의회가 더욱 활성화되어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외국인의 고충처리와 권리구제기능 역할을 충분히 다하고 외국인 한분 한분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법무부가 인권선진국가로 발돋움하는 데에 일조할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2월 26일

법무부장관 박 상 기

## • 전자투표 현장정책 간담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법무부 장관 박상기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예탁결제원에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저는 국민의 소중한 주주권이 행사되는 현장에서 전자투표와 전자증권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월은 2,500여개의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여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특정일에 주주총회가 집중되어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전자투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주의 의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번 방문으로 전자투표의 편리함과 안정성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정 상장회사를 대상으로한 전자투표제 의무화가 도입된다면, 국민들이 훨씬 편리하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자투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예탁결제원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달 말, 내달 초까지 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집중되어 있는 만큼 한국예탁결제원은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더 소중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자증권제도가 내년 9월 경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주주의 권리관계를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 주주권 행사 환경에 큰 혁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법무부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와 전자증권 업무를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투표의무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3월 21일
법무부장관 박 상 기

## • 제4기 이민정책자문위원 위촉식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입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아름다운 계절, 봄에 이민정책 분야 최고의 전문가이신 위원님들을 이렇게 한자리에서 만나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10년이면 강산(江山)도 변한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외국인정책을 시행해 온 지도 어느 새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하고 2008년부터 외국인 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가오는 이민사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는 향후 5년 간 범정부적으로 시행될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절벽의 위기에 처해있으며, 2016년부터 생산가능 인구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1997년 30만 명에 불과했으나, 2007년 100만 명에 도달한 후 2016년에는 전체 인구의 4%인 200만 명을 상회하는 등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성장률도 높은 '성장시대'에 맞는 정책을 수립·추진해 왔으나, 미래에는 '저성장시대'가 도래하므로 기존의 인식과 사고의 틀을 뛰어넘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수 외국인을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며,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민자가 우리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통합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이민정책은 본질적으로 국제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현 정부의 신남방정책 등 외교정책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일 때 베트남 사회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고, 하나의 역사적인 산물인 베트남의 라이따이한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위원님들께 바람직한 이민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자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인사말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3월 21일
법무부장관 박 상 기

## • 독립유공자 후손 배우자에 대한 귀화증서 수여식

여러분, 반갑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입니다.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 되시는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주신 독립유공자 후손 가족분들께 진심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중화 광복회 부회장님을 비롯한 외빈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국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즈음하여, 일제에 침탈당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헌신하셨던 독립유공자 후손 가족들께 국적증서를 수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번영은 독립유공자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그간, 법무부에서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는 특별귀화 허가를 통해 예우를 해오고 있었습니다만, 독립유공자 후손의 배우자분들에 대해서는 국적취득과 관련한 배려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가족들에 대한 위로와 예우 차원에서 올해부터는 귀화 면접심사를 면제하고, 생계유지능력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독립유공자 후손의 배우자분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어렵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가족 여러분 !

오늘 국적증서 수여식을 통해 여러분은 이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고 평화 통일을 지향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조들을 비롯한 독립유공자들의 값진 희생으로 지켜낸 조국의 독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가족 여러분 !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권자로서 우리 선조들이 지켜낸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우리 사회의 법·질서와 문화를 존중하는 등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선조들의 목숨과 바꿔 지켜낸 조국,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더욱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여러분 같은 독립유공자의 후손과 그 가족들이 국내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9일
법무부 장관 박 상 기

## • 서울중재센터 개소식 및 국제중재센터 출범식

만물이 태동하는 봄날에, 우리 중재산업의 미래를 이끌 서울중재센터와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가 출범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가 더욱 빛나도록 함께 해주신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님,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님,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준비에 힘써주신 김영주 대한상사중재원 이사장님, 지성배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앞으로 중책을 맡아주실 신희택 국제중재센터 신임 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국제화, 다원화된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 분쟁 양상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국제중재는 소송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복잡다기한 현대 분쟁을 효율적·중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또한 국제중재는 상당한 경제적 효과와 고급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도 각광 받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써 중재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중재 발전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재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분쟁해결시설과 같은 물적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하고, 우수한 중재전문인력 양성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법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중 분쟁해결시설의 설립은 국제중재 발전을 위한 초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서울중재센터의 출범은 우리나라가 국제중재의 중심무대로 나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중재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2016. 12월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고, 서울중재센터 건립, 국제중재 사건유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국제중재 활성화를 위해 중재산업진흥 기본계획을 마련,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중재전문인력양성, 국제중재사건 유치 등과 같은 중재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한상사중재원과 오늘 자리하신 내·외빈 여러분들께서도 중재산업의 성공적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중재산업 초창기부터 실무와 학계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중재제도의 발전을 이끌어 오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서울중재센터와 국제중재센터 출범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20일
법무부장관 박 상 기

## • 제55회 법의 날 기념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법의 존엄성과'법의 지배'가 지니는 숭고한 의미를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의지를 다지기 위해 제정된 제55회 법의 날입니다. 먼저 이렇게 뜻 깊은 날을 맞아, 그 동안 우리 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인권 보장을 위해 헌신해 오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 정부 출범 1주년이 가까워진 이 때 제55회 법의 날을 맞이하여 법과 법치주의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됩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법과 정의는 하나의 어원에서 파생된 개념입니다. 이는 법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임을 나타내는 동시에 정의로운 사회는 법의 지배가 바로 서있을 때에야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엄정한 법질서와 국민의 준법의식을 강조했던 정부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기본권 보호가 쇠퇴하였던 역설적 사실을 목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국의 광장은 시민들의 촛불과 함성으로 가득했습니다. 촛불의 열망은 강하였으나 시민들은 질서와 평화를 지켜내었고,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을 묻는 분노는 컸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절차를 존중함으로써 시민들은 소중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정의를 바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제기구의 사법신뢰도 평가에서는 정부기관의 부정부패, 권력기관에 대한 외부통제, 국민의 기본적 권리 보장이 미흡하다는 뼈아픈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의 법치는 권력기관이 아닌 국민들이 지켜온 것임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법의 날을 맞이하여 촛불시민들이 추운 겨울 간절한 마음으로 염원했던 법의 지배를 튼튼히 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려 합니다.

먼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무너진 사회 정의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자행되어 온 불법과 부조리를 청산하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부패범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과거의 불법과 민주주의 훼손의 역사를 바로 잡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도 탈법 행위가 민의를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공평하고 엄정한 법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의와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당면한 현안을 하나하나 풀어가겠습니다.

시대적 요청인 헌법 개정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사회변화에 따른 인권 수요를 담아 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공수처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모든 권력은 분산되고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 아래 형사절차에서 인권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실질적 정의를 실현함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나 사회적 배제로 인해 어깨를

움츠리거나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 모두는 몸을 낮추고 푸근한 가슴을 가져야 한다는 점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는 법무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신기술 발전으로 인한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기술발전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제를 세심히 살펴볼 것입니다. 이 땅의 평화를 기원하는 열망과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한 가운데 법이 그 평화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미국의 철학자 존 롤스(John Rawls)는 "모든 사회 제도의 제1 덕목은 정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고 정연할지라도 그것이 정의롭지 못하다면 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진정한 법치주의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먼저 여기 모인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법의 지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고, 사회구성원들이 법을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 약속한 법을 지켜갈 때 비로소 우리 헌법 전문을 통해 그려온 자유롭고 평등하며 정의가 살아 숨 쉬는 법의 지배가 생명력을 얻을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신 공을 인정받아 영예로운 훈·포장과 표창을 받으시는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그 가정에 화창한 봄날 같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25일

법무부장관 박 상 기

##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창립 10주년 기념식 축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창립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형규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에 의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법학전문대학원간 의견교환과 발전을 위한 구심체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은 우리나라 법조인 양성의 틀을 바꾼 역사적인 변화였습니다. 작년에 사법시험이 마지막으로 실시되었고, 이제 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시험제도가 명실상부하게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비록 제도 도입의 초기단계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더라도 제도 자체의 존재 이유를 부정할 내용의 문제라기보다는 법학전문대학원 운영과 교육과정, 진로문제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배출된 1만 명 이상의 법조인들이 전통적인 법조영역인 법원, 검찰, 송무 영역뿐만 아니라 기업과 공익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전문적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그 동안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특히 올해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10주년, 변호사시험 시행 7회를 맞이하여 법무부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제도의 안정적 정착 단계를 넘어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변호사시험 개선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법조인력 양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취지와 교육현장 및 법률시장 등 현실여건을 반영한 발전 및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협 등 각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창립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10일

법무부장관 박 상 기

## • 제36회 교정대상 시상식

사랑하는 교정가족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봄기운이 짙어져 가는 5월에 제36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교정가족 등에게 가장 큰 영예라고 할 수 있는 교정대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상자 곁에서 어려움과 보람을 함께 나누신 가족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교정대상을 주관하고 후원해주신 서울신문사 고광헌 사장님, 한국방송공사의 양승동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정가족 여러분!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 가운데 하나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범죄가 빈번한 사회에서 누구도 안심하고 자신의 일에 종사할 수 없을 것이고, 범죄로 인해 불안한 사회가 정상적으로 발전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예방은 매우 중요한 교정의 목표입니다. 특히 재소자로 하여금 출소 후에 재범의 늪에 빠지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밤낮으로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입니다.

교정가족 여러분은 폐쇄된 공간에서 재소자를 관리하는 점에서 재소자와 마찬가지로 지치고 힘들어 하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교정시설은 수용률이 120%에 가까운 과밀수용 상태입니다. 이로 인한 여러분의 노고는 더욱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도 확보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지만 민원 등 여러 가지 장애요인 때문에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밀수용으로 인한 교정행정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유발효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권침해적 요소가 없는 교정행정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헌신적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으로 인해 가능하였습니다.

교정가족 여러분!

범죄는 환경의 산물입니다. 가정과 사회환경이 개인의 성격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참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비록 한 때의 잘못으로 범죄자가 되었지만 과거의 생활과 결별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열망과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한 시기입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열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법 제도적 뒷받침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살아 숨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 전반의 부조리를 바로잡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인권친화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교정행정도 그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변화의 추진동력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교정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자와 가족분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11일

법무부장관 박 상 기

## • 제11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재한외국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열한 번째를 맞이하는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전체 인구의 약 4퍼센트인 220만 여명의 외국인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양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들이 각종 매체에 등장하고 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일하는 모습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는 문화적 배경과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편견과 차가운 시선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5년마다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가오는 이민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차별을 방지하고 문화다양성 존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 소통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동포의 자유왕래와 경제활동 보장 등 적극적인 동포정책을 추진하였고, 재정착난민 수용 시범사업 등 난민정책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첫해로 정부는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 있는 개방 정책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고령화에

따라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농어업 등 산업분야에 지원을 확대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민자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사회통합 정책을 실시하고, 미래사회에 적합한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이민배경 자녀의 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이민자가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남북관계 호전 등 국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맞추어 선제적으로 국경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질서유지를 위한 계도활동 참여 등 외국인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국내 체류 중인 여성, 아동 등 취약한 이민자의 인권을 우선 보호하는 한편, 외국인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해 체계적인 인권보호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각 국가의 이민당국과 인적교류 등 이민관련 협력을 활성화하고, 국제사회의 공동번영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재한외국인 여러분!

'세계인의 날'은 국적, 인종, 문화 등 차이에 따른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서로 어우러져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열린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날입니다. 오늘의 기념행사에 이은 '세계인의 주간' 기간 동안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세계인의 날 행사가 문화적 소통과 화합을 일궈내는 값진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18일

법무부장관 박 상 기

## • 전국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 주재관 회의

출입국기관장과 해외 주재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출입국·외국인청으로 명칭을 바꾸는 등 외국인정책 총괄기구로 새롭게 출범한 시기에 여러분을 한자리에서 뵙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해외 공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교부 영사님 네 분도 참석하셨습니다.

출입국기관장회의에 타 부처 직원이 참석하는 것은 이번 회의가 처음으로, 양 부처 간에 정보를 공유하면서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유익하고 보람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남과 북이 하나 된 '평화올림픽'을 실현한 이후, 4월에는 역사적인 남북한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얼마 후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전망입니다. 그동안의 남북관계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차분하게 상황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남북협력관계 증진에 따른 거대한 흐름에 잘 맞출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부는 외교의 다변화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신(新)남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아세안 국가의 성장잠재력, 역할의 증대 가능성을 감안할 때 아세안 국가들과의 인적교류는 점점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말 대통령님께서 아세안 정상회의 연설 중 아세안과의 민간교류를 위해 한국 입국비자를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일본과 대만이 중국 일변도에서 벗어나 동남아 여행객 적극 유치 정책으로 바꾼 것처럼, 우리도 아세안 국가 국민에 대한 비자정책을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다양한 부류의 세계시민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체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는 물론 아프리카 지역 출신의 불법체류자, 남용적 난민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법체류나 남용적 난민신청자는 법질서를 저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높으므로 국익위해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의 입국을 사전에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항만 출입국 심사 강화도 필요하지만 해외에서 비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영사 여러분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해외주재관들께서는 해외 비자발급이 국내체류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을 인식하고, 맡은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변화하고 혁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가 빠른 속도로 변하는 만큼 그간의 업무 방식과 사고의 틀을 벗어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정책도 법무부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부단한 소통, 관계부처 간 협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을 마련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조직의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값진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회의 마치고 국내외 임지에 잘 복귀하시기 바라고,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31일
법무부장관 박 상 기

## • 맥그린치 신부 명예국민증 수여식

오늘 맥그린치 신부님에 대한 명예국민증 수여식 참석을 위해 멀리 외국에서 와 주신 조카분과 천주교교구 사제님 그리고 아일랜드대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 받는 소외된 이웃을 위해 일생을 바치신 맥그린치 신부님의 고귀한 희생정신은 우리 국민들에게 한없는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낮은 곳에서 겸손과 사랑으로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추고, 절망을 희망으로 이끌어 주신 고인의 숭고한 삶을 우리 국민은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신부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드렸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마음에 많은 아쉬움이 남지만, 지금이라도 이러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맥그린치 신부님께서는 6·25전쟁 직후인 '54년부터 64년이라는 긴 세월을 제주도에 머물며 도민들과 함께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어 내셨고 이는 제주도 발전의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직물회사를 만들어 도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4H클럽을 만들어 젊은이들을 교육 시켰으며 신용협동조합을 만들어 경제적 자립의 토대를 만들었고, 양과 돼지 사육으로 시작된 성이시돌 목장은 제주 축산의 토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양로원, 요양원, 호스피스 복지원, 유치원 등을 세워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신 것에 대해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전쟁 직후, 정말 힘든 시기에 제주 도민들이 좌절하지 않고 사랑과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도록 64년 이란 긴 세월동안 겸손과 섬김의 마음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한 맥그린치 신부님의 숭고한 인류애와 희생정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 그 분의 삶을 귀감으로 삼아 우리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노력하고 사랑과 봉사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2018년 6월 5일
법무부장관 박 상 기

## • 제5회 다링행사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장관입니다.

다링행사는 범죄피해자를 응원하는 행사입니다. 다링행사는 오늘로 5회를 맞았습니다. 작년에는 10월에 어린이대공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걸었고, 오늘은 천 만 이상의 국민들이 적폐청산을 요구하며 촛불을 들었던 여기 광화문 광장에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고,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은 법무부가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국정과제입니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법률적 지원, 그리고 심리치료 등, 모든 분야의 지원을 더 강화하고 넓혀 나갈 것입니다. 특히 범죄피해자 지원이 신속하게 제공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범죄피해자 지원기능을 통합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통합지원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역할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다링'은 우리 모두가 범죄피해자를 위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도 범죄피해자들과 함께 광화문 광장 일대를 걸으면서 범죄피해자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응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범죄피해자가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나 행복하고 건강한 일상으로 되돌아 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다링 행사에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화창한 햇살과 따뜻한 기운이 가득한 광화문과 청계천을 따라 소중하고 뜻 깊은 발걸음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갑식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회장님, 육현표 에스원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6월 16일

법무부장관 박 상 기

## • 제10차 세계헌법대회 축사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어느 때보다 평화의 기운이 넘치는 서울에서, 헌법학과 관련하여 가장 권위 있는 국제 학술대회인 '세계헌법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마누엘 세페다(Manuel Cepeda)' 회장님을 비롯한 세계헌법학회 관계자 여러분, 이번 대회를 위해 세계 각국에서 오신 참석자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이번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정재황 조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핵심가치를 규정하는 최고 규범으로,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해 대한민국은 '촛불혁명'으로 표현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경험하였습니다.

국민들은 헌법 가치의 훼손을 바로 잡기 위해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고, 그 결과 헌법 절차에 따른 대통령 탄핵, 그리고 새 정부 출범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촛불혁명'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주권과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최근 한반도에서는 한국 전쟁 이후 70년 가까이 지속된 군사적 긴장관계가 완화되고, 평화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약 11년 만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판문점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는 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지금 한반도에서는 평화와 협력, 공존과 번영을 위한 역사적인 순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폭력적 충돌, 평화구축, 그리고 헌법"이라는 주제로 세계헌법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더욱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회 기간 동안 평화 구축을 위한 열띤 토론과 함께 한반도에서의 역사적인 순간들도 함께 공유하기를 기원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세계헌법대회는 각국의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모여 헌법적 가치에 대한 토론을 넘어 헌법 질서를 통한 평화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장입니다. 약 20년만에 아시아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도 세계가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논의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갈등 원인을 진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이번 대회가 각국의 교류와 협력, 그리고 이해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대한민국 방문이 민주주의를 향한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6월 18일
법무부장관 박 상 기

## • 2018년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격려사

법사랑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를 빛내주신 YTN 사장직무대행 김호성 총괄상무님과 신정택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참석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사랑 위원을 비롯한 자원 봉사자 여러분! 전국 각지에서 범죄예방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2018년도 「한마음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전국의 법사랑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남다른 봉사활동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영예로운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과 법사랑위원 여러분! 우리 사회는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 시기를 거쳐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람 중심"의 가치는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법무부는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정의 해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범죄의 유혹에 빠져 드는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위기의 청소년들이 범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범죄예방활동에 국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격언처럼 위기의 청소년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마을 어르신 같은 명예보호관찰관제를 도입하였고, 자칫 환경적인 이유로 꿈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재능나눔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소년원 학생들에게는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전국의 모든 소년원에서 지역사회 의사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소년원 과민을 해소하여 인권적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소년원생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민영소년원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시도와 성과는 모두 수년간 묵묵히 범죄예방활동을 해 오신 법사랑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희생과 수고로 수많은 위기의 청소년들이 인생의 갈림길에서 올바른 사회인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문화·새터민 청소년들에 대한 멘토링을 통해 이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끌어안은 것은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로 가기 위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또한 수천 명의 교도소 출소자들에게 주거를 지원하고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 출소자들이 재범하지 않고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이들은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헌신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위원님들이 위기의 청소년들과 출소자 지원에 동참하여 주신다면 우리사회는 더 안전해 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인생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 하고 사랑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헌신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이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소년과 출소자들의 희망의 등불이 될 것이며, 나아가 범죄 없는 사회로 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는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6일
법무부장관 박 상 기

## •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독립유공자 후손 및 가족 분들, 그리고 나중화 광복회 부회장님을 비롯한 내·외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라와 겨레가 빛을 잃었던 일제시대, 그 빛을 되찾기 위해 머나먼 이국땅에서 자기를 희생한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되새겨 보며, 오늘 그 후손인 여러분들께 국적증서를 수여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여러분 !

먼저, 대한민국 국민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선조이신 독립유공자들께서는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 사는 길을 버리고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사는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길은 진정 조국의 독립을 되찾겠다는 위대한 용기가 아니면 갈 수 없는 험난한 노정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역만리의 낯선 환경 속에서 힘들게 살아 오셨을 후손 여러분들의 고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꿋꿋하게 생활해 오신 후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부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이 땅에서 각자가 꿈꾸어왔던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과 독립유공자 후손 여러분 !

우리 대한민국은 광복 이후 많은 위기 속에서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경제발전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룩하였고,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에 평화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산고를 겪어야 새 생명이 태어나고, 꽃샘추위를 겪어야 봄이 오며, 어둠이 지나야 새벽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이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여러분들도 선조들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더 크고 든든한 국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부는 앞으로도 국가보훈처와 협업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를 발굴하는데 앞장서는 한편, 그 후손들이 국내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대한민국 국민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13일
법무부장관 박 상 기

## •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제7기 개강행사 축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 통일에 기여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 변호사님들과 예비 법조인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제7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 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김 현 회장님을 비롯한 대한변협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최근 한반도 상황과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더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풀릴 것 같지 않던 남북관계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남북교류의 물꼬가 트였고, 이어서 북미정상회담까지 개최됨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를 구상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위한 노력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전제조건이자 우리의 시대적 사명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 발맞추어 우리는 북한과 관계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남북관계의 진전과 통일에 대한 준비를 꾸준히 내실 있게 해 나가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구축 해가는 과정에서나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법률가들이 해야 할 일은 매우 다양하고 중요합니다. 향후 진행될 남북교류협력 과정을 규율하고, 그 과정에서 파생된 분쟁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등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법적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전선언과 평화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두될 수 있는 법적 과제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법률교육·상담 등 법률지원을 확대해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법무부는 남북교류협력을 포함한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과 관련된 법적 과제들을 연구하고 실무적인 준비를 해오는 한편,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술지인 「통일과 법률」을 연4회 발간하고,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통일법 연구자들에게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는 미래의 통일법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는 2014년 첫 번째 과정을 개설한 이래 지난 4년간 320여 명의 법률가들이 참여하였고, 올해에는 북한이탈주민 예비법조인들도 함께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카데미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은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가 현실로 다가오고, 이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70년이라는 분단이 가져온 시간의 무게는 남북관계의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상호간의 법체계에도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그 이질성은 향후 진전될 교류협력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10주간의 대장정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교류협력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번 강좌들이 여러분들의 통일법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법률전문가로서 통일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노력은 한반도 평화·번영과 분단 극복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꺼이 강의를 맡아주신 김기정 교수님을 비롯한 전문가 분들과 행사실무 담당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알찬 프로그램이 만나 통일전문가로서 귀한 결실을 맺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9월 6일

법무부장관 박 상 기

## • 전자감독 시행 10주년 기념행사

보호관찰관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금태섭 국회 법제사법위회위원님,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님, 한영수 보호관찰학회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된 전자감독을 도입한 지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뜻깊은 날에 여러분과 함께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제도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자감독 제도의 초석을 다져온 보호관찰관과,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남다른 헌신과 공적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께도 각별한 축하의 뜻을 전합니다. 돌이켜보면, 전자감독이라는 경험해보지 못한 생소한 제도를 정착시키는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국회와 정부부처뿐 아니라 학계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과 협조를 구하고 국민들의 공감도 이끌어 법적, 제도적 기반을 다져야 했습니다.

보호관찰관 여러분! 지난 10년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헌신한 여러분의 노력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의 주춧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과거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은 14.1%에 달하였으나, 제도시행 이후 성폭력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률은 1/8수준인 1.8%로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전자감독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벤치마킹이 쇄도하고 있고, 내년에는 몽골에서 한국형 전자감독이 운용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내·외빈과 보호관찰관 여러분! 지난 10년간의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보다 더 안전한 사회 인권친화적인 전자감독 제도를 위해 창의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장치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여 범죄위험성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등 고위험사범에 대해서도 지역사회 전문가와 적극 협력하여 맞춤형 관리체계를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과밀수용 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여러 선진 국가에서 활용 중인 재택감독 제도의 도입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보호관찰관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되어 지금까지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이제 더욱 발전된 미래의 전자감독 제도 시행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량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난 10년간 여러분들의 열정과 땀을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9월 6일

법무부장관 박 상 기

## • UNCITRAL 회기간 회의 개회식

존경하는 국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이번 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해 주신 아나 주뱅브레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사무국장님,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님, 대한상사중재원(KCAB) 인터내셔널 신희택 의장님, 박남춘 인천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신 귀빈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제도(ISDS)는 근래 매우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65건의 새로운 사건이 제기되었고, 지금까지 평균 소송가액이 약 13억 달러에 달합니다. 아시아 지역의 경우 1987년부터 2009년까지 76건에 불과하던 ISDS 사건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47건이 접수될 정도로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ISDS 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재판정의 정당성과 일관성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하여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세계 각국 전문가들이 ISDS 제도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변화와 전망을 모색하는 오늘의 자리는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특히, UNCITRAL 최초로 시도되는 이번 회기간 회의는 ISDS 제도 개선이라는 시의적절한 주제로 아시아-태평양 국가를 중심으로 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UNCITRAL에서 그동안 다뤄진 ISDS 제도에 관한 쟁점들을 공유하고, 'ISDS 개선에 대한 지역적 관점'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회의의 주제인 '중재비용과 기간', '중재판정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 '중재인의 윤리', '제3자의 펀딩'에 관한 각 세션은 국내·외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에게 활발한 토론의 장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각국 정부, 실무계, 학계의 전문가들께서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여 귀중한 경험과 식견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외 귀빈 여러분! 이번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회기간 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에서 ISDS 제도의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국내외 귀빈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9월 10일

법무부장관 박 상 기

## • 제53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

친애하는 선수단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교정가족과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가을의 정취가 스미는 이곳 법무연수원에서 교정공무원들의 화합과 우의를 다지기 위한 「제53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이 대회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각 경기단체 관계자와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대회 준비를 위해 여러모로 애써주신 법무연수원과 교정본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수용자 인권보호와 교정교화의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틈틈이 무도 기량을 갈고 닦아 오늘 이 대회에 참가하시는 선수단 여러분들께도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정공무원 여러분 !

1949년 시작된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는 올해로 어느덧 53회를 맞이하는 뜻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본 대회를 통해 참가 선수들이 보여준 상무정신과 페어플레이는 교정 직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오늘 이 대회를 통해 모든 교정공무원들이 자랑스러운 교정문화를 공유하고 교정발전의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그리고 교정가족 여러분 !

그 동안 교정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희생과 열정으로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법과 원칙에 입각한 엄정하고 공정한 수용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한 편, 수용자 인권보장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수용자를 건강한 국민으로 사회에 복귀시키는 일을 묵묵히 수행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며, 국민 중심의 스마트 접견을 활성화하고 교정민원콜센터를 구축하는 등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뤄낸 발전과 성과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교정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이러한 수고와 헌신에 상응하는 대우나 근무조건 향상은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년 예산을 통해 132명의 교정직 증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합니다. 인사문제를 포함하여 교정공무원의 사기를 조금이라도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선수단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는 단지 승부를 위한 대회가 아닙니다. 승자는 패자를 격려하고, 패자는 승자를 축하하는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대회가 교정조직의 단결과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가 되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오늘 행사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과 전국의 교정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9월 14일
법무부장관 박 상 기

## •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현장 정책 간담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연이은 BMW 차량 화재 사고를 계기로 다수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대한 한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적은 몇 해 전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가습기 살균제,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의 사고 당시에도 동일하게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반복되는 집단적 피해사고에도 불구하고 개별 피해자들이 손해를 배상받기에는 여전히 제약이 있다는 점이 또다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비용, 시간, 절차상 부담으로 인해 피해 구제를 단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실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게 됨에 따라 기업이 스스로 피해를 예방하고 사후에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에 응할 유인책도 미약해지게 됩니다.

이에 근본적인 개선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신용카드사 정보유출 등 사고와 현재 BMW 차량화재 사건의 피해자 분과 그 관계자 분, 소비자 단체, 시민단체, 집단소송 전문가를 모시고 그 소중한 경험을 듣고자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국정과제로서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법무부가 준비해온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행 증권분야에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다른 분야에도 확대 도입할 계획입니다.

둘째, 구체적으로 제조물책임, 담합,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 표시·광고행위, 금융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금융투자상품, 식품 분야 등 집단적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큰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집단소송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허가 요건과 집단소송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모이신 분들의 실제 경험과 전문적 시각을 통해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가감 없이 듣고자 합니다. 법무부는 조만간 구체적 확대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회 법안심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과 발 걸음을 내어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연구하여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9월 17일

법무부장관 박 상 기

## • 대한법률구조공단 현장방문 격려말씀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단 본부가 서울에서 김천 혁신도시로 이전한지 4년이 지났습니다. 새 터전에 잘 정착하여 국민들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직접 보게 되니 매우 기쁘고 뜻깊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무더웠던 지난여름에도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다 해주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공단 이사장으로 부임하시어 수고하고 애쓰시는 조상희 이사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난 1987년 설립된 이래 올해로 창립 3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31년 간,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를 증진한다는 설립 목적에 따라 법률구조사업에 매진하였고, 그동안 외형적 성장을 거듭하여 현재 전국 131개의 사무실과 1,000여 명의 구성원을 갖춘 전국적 조직망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갑질 근절이라는 정부 기조에 따라, 그동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온 갑질 피해자들의 손해배상문제 뿐만 아니라 복직소송 등 2차 피해회복에 이르기까지 무료법률구조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개최된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일본, 대만 등 법률구조기관과 교류하며 우리나라의 법률구조제도를 소개하고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법률구조제도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오늘날 공단의 발전과 성과는 공단 구성원 모두의 수고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며, 또한 그 뒤에는 언제나 우리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단 가족 여러분! 올해 상반기, 공단은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으며 큰 아픔을 겪은 바 있습니다. 직원들이 공단 설립 이래 최초로 쟁의행위에 돌입하고, 이후에는 전임 이사장의 해임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아픔의 이면에는, 그동안 쌓여온 공단 내 구성원 간 갈등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적 불안정은, 공단이 앞으로도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부강한 국가가 내부 분열로 인해 한순간에 쇠퇴하듯, 조직의 내부 분열은 그 무엇보다도 경계해야 할 일이며,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곳이어야 하며, 특히 법률복지를 사명으로 하는 공단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봉사기관이라는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지위와 권한은 오직 국민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허락된 것입니다. 그동안 이어져온 직렬 간 기득권 다툼을 중단하고,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이라는 공단 본연의

목적에 집중하여 공단 구성원 모두가 한식구로서 일치단결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은 공단 구성원의 사익을 추구하는 곳이 아닌 오로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곳임을 잊지 마시고, 공단의 공공성 회복에 심혈을 기울여주십시오.

또한 공단의 재정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단의 진정한 주인은 국민임을 유념하시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국민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직렬 간 기득권 다툼에 치중하거나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등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등한시하는 행태가 있다면 법무부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국민의 편에 서는 공단으로 혁신하십시오.

다음으로,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던 양적 성장보다는 법률구조의 내실화를 위하여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공단은 전국적으로 확대된 조직망을 기반으로 법률구조 실적을 계속적으로 향상시켜왔고, 다수의 외부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법률구조사업의 외연을 확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공공기관의 평가기준이 효율과 수익 극대화에서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변하고 있으므로, 성과위주의 외형 확대에 치중하기보다는 공단의 공공성 강화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개선할 사항들은 적극 개선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하시어, 법률구조서비스를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데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현재 공단은 무변촌 해소라는 목적 하에 72개의 지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소의 실태를 잘 점검하여 무변촌 지역에 설치된 각 지소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과 재정적 효율성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지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현 지소 운영 실태를 적극 개선하고, 법률복지 사각지대가 실질적으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이 끝나고, 제법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9월입니다.

추수를 앞둔 농부가 농사일에 수고한 것처럼, 지난 31년 간, 그리고 올 한해에도 우리 국민들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땀 흘리고 애쓰신 공단 가족 모두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당부 드린 사항들을 유념하시고, 조상희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모두 한 뜻이 되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공단으로 거듭나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법률복지 증진에 매진해주십시오.

끝으로, 공단 가족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고, 언제나 복된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9월 19일

법무부장관 박 상 기

## • 제11회 한국법률가 대회 축사

존경하는 전국의 법률가 여러분, 그리고 권오곤 한국법학원장님을 비롯한 한국법학원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제11회 「한국법률가대회」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법률가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때로부터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현행 헌법이 개정된 지도 30여년이 지났습니다. 헌법이 제정된 이후 70년 동안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은 상상을 넘어설 만큼 바뀌었습니다. 시대정신이나 헌법의식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거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사회의 발전을 짓눌렀던 남과 북의 대치상황은 남과 북의 지도자 사이에 한반도를 평화와 번영으로 이끌기 위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앞으로 그 결실을 맺게 되기를 우리 모두가 간절히 소망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오늘 "헌법 제정 70년과 법학의 변화"라는 주제로 한국법률가 대회가 개최되는 것은 이러한 역사적 상황변화에 비추어 시의적절하고 미래를 조망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헌법 제정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허다한 곡절을 겪었던 대한민국 헌정사 속에서 법학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법률가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법률가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많은 헌법적 가치 충돌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체복무제, 낙태문제, 양성평등의 문제를 넘어서서 동성애 등 성적 소수자 문제, 난민과 자국민 보호문제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체의 요구와 개인의 선택의 자유 사이에서 정의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자유롭게 선택 하고 싶어 하는 개인과 공동체적 삶을 실현하기 위한 개인의 의무라는 충돌상황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난관을 헌법적 가치에 맞도록 해결하는 것이 헌법을 비롯한 법학연구의 목적이고 또한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클 샌델이 한 말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도덕에 개입하는 정치는 회피하는 정치보다 시민의 사기진작에 더 도움이 된다. 더불어 정의로운 사회 건설에 더 희망찬 기반을 제공한다."

존경하는 법률가 여러분!

법무부 역시 헌법정신을 토대로 하여, 공정하고 인권이 존중받는 정의로운 사회를 목표로 삼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을 결정짓거나 인권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공정한 경쟁의 틀을 마련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가임차인의 영업권 보호, 기업 내 인권 문제, 소수 주주 보호와 투명한 기업경영 확립 문제, 경쟁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전속고발권의 제한적 폐지, 인권 침해적 수준인 수형시설의

과밀화 해소를 위한 교정시설의 신축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법무행정에 대한 법률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법률가 여러분!

이번 제11회 한국법률가 대회는 특히 한반도의 정치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삼아 한반도의 미래를 조망하는 법학연구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법무부장관 박 상 기

## • 세계성년후견대회 환영사

존경하는 국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대회를 위해 세계 각국에서 오신 참석자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10년 처음 시작된 세계 성년후견대회는 그 동안 후견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왔으며, 벌써 제5회 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후견에 관한 법률가, 실무자,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서울에서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 동안 노력해 주신 소순무 조직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법적 능력을 획일적으로 과도하게 제약했던 종전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대신하여,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구성된 제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고령인구 증가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고, 그로 인해 필연적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주는 치매, 뇌질환 등을 앓는 사람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자신의 재산 또는 신상에 대한 사무처리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성년후견제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번 대회는 법적 권리와 능력을 행사하는 데 조력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우리의 성년후견제도가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매우 적절하고 의미있는 행사라고 할 것입니다.

이번 제5회 대회의 주제는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회통합” 입니다. 이번 대회의 활발한

논의를 토대로,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자기결정권 행사를 제한당하거나 박탈당하지 않는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가 의사결정능력 장애인 정책을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개별국가를 넘어 국제사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훌륭한 교류와 이해의 장이 되기를 함께 기원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한국의 아름다운 가을 정취를 만끽하면서, 소중한 추억을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법무부장관 박 상 기

## • 제73주년 교정의 날

친애하는 교정가족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오늘은 제73주년 교정의 날입니다.

교정의 날은 우리가 자주적인 교정행정을 시작하게 된 것을 기념하여, 수형자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해 오신 교정공무원과 교정참여인사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교정의 참 뜻을 새기는 날입니다. 이런 뜻깊은 날에 교정공무원과 교정참여인사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격려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영예로운 포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특히 바쁘신 가운데서도 교정 가족을 각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박지원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장에서 땀 흘리고 계시는 교정공무원 여러분과 오늘의 교정이 있기까지 헌신해 주신 퇴직 교정공무원과 교정참여인사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사랑하는 교정가족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저는 장관 취임 이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실현과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구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사회 곳곳에 만연한 적폐를 척결하고, 부패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우리 사회의 올바른 가치를 회복하고 인권 가치의 재정립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교정 분야에서는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교정시설 신·증축을 지속 추진하는 한 편, 사회적 약자와 생계형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하였으며, 구인피의자의 입소절차를 개선하고 수용환경을 개선하는 등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직업훈련을 다양화하고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내실화하였으며, 범죄유형에 따른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출소 후 수형자가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드라마, 영화 등을 통한 생활밀착형 교정 홍보로 국민 여러분들께 보다 친근한 교정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고 있으며, 교정민원콜센터 개소를 통해 민원전화 응답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국민 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이토록 자랑스러운 오늘날 우리 교정의 모습은 우리 모두가 남다른 사명감과 열정으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노력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교정가족 여러분!

우리 교정행정은 그동안 국민 안전과 행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교정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날로 흉포화 되는 범죄로 인하여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교정시설의 과밀화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에게 고통을 주고, 교정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원칙에 입각한 근무를 통해 엄정한 수용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정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수형자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내야 합니다. 특히 과밀수용 문제는 국가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교정공무원 여러분!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더 큰 보폭으로 앞으로 나아갑시다. 저도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이 긍지와 보람을 느끼며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교정공무원 증원과 처우 개선, 인사문제를 포함하여 교정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정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오늘 제73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 우리 모두가 교정행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는 긍지와 신념으로 수형자 교정교화에 대한 우리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나갑시다. 교정참여인사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교정가족 및 수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축하를 드리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법무부장관 박 상 기

## • 스쿨미투 현장방문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어 직접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학생, 학부모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 사회 각 분야에서 미투운동이 이어지고 안전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바라는 여성들의 외침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에 대해서 엄정 대처하며,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SNS 등을 통해 이어지고 있는 스쿨미투는 이제 더 이상 성폭력에 침묵하지 않으려는 학생들의 용기있는 목소리입니다. 학생들은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온 성희롱, 성폭력 피해를 드러내면서, 학생들의 피해진술이 무시되고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불합리한 구조를 고발하고,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보장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오랜 정서와 학교 구조의 특성상 학생이 교사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낸 학생들에게 우리는 이제 응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학생들이, 학교와 선생님을 믿고 법과 제도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졸업과 함께 발을 내딛게 될 사회가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라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되는 스쿨미투 사안에 대해, 법무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것입니다. 각 사건마다 구체적 사정은 다르겠지만, 어린 학생들의 피해정도, 죄질 등에 따라 가해자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엄중한 처리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성폭력 전담 검사가 사건을 맡도록 하고, 조사 과정에서 학생들의 사생활이 보호되고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피해 학생들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지 않고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피해 학생들의 성범죄 피해 사실과 학교의 부당한 대응에 대해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또 학생들이 미투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불안함에 대해 마음을 열고 공감하고, 어리다는 점이, 학생이라는 지위가, 성폭력에 취약하고 도움받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의 문제점은 없는지 살피겠습니다. 무엇보다 재발방지를 위하여 법무부가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법무부장관 박 상 기

## • 2018년 허그(HUG) 후원의 날 격려사

존경하는 내외귀빈과 보호위원님, 그리고 공단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출소자 지원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허그 후원의 날'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김춘진 위원장님, 손현덕 매일경제 대표이사님, 허 식 농협중앙회 부회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남다른 헌신과 열정으로 영예로운 상을 수상하신 보호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공단 가족과 보호위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출소자의 사회정착을 위한 활동은 민간영역에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1910년 출옥인 구호사업을 비롯해서 출소자 지원 사업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에 발맞추어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2006년부터 시작한 주거지원 사업은 현재까지 총 2천호의 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출소자와 가족들이 가족 기능을 회복하는데 좋은 가교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전문화된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직업훈련은 매년 5천명에게 일자리를 마련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공단 임·직원 모두의 열정적인 노력과 보호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의 결과입니다. 묵묵히 최선을 다해 주신 공단 임직원 여러분과 보호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과 보호위원 여러분!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서는 초범의 진입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50% 이상의 재범률을 감안할 때 출소자의 사회정착을 통한 범죄예방이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주거, 일자리가 마련되어야 하고, 가족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출소자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와 공단은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청소년 및 여성보호대상자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심리치료를 강화하고 출소자의 심리적 안정에도 더욱 관심을 갖겠습니다. 위와 같은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호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출소자에 대한 따뜻한 손길과 범죄예방을 위한 보호위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보호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뜻 깊은 행사를 마련해주신 신용도

이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홍보대사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7일
법무부장관 박 상 기

## • 제11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기념사

범죄피해자 및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헌신하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님, 조상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님, 장화정 중앙아동전문보호기관 관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해 헌신하신 공로를 인정받아 오늘 수상하시는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범죄피해자구조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30년 간 정부는 범죄피해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에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드리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립하여 연간 1,000억 원대의 기금을 운영하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피해자들에게 제공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의 빠른 심리적·경제적 회복을 위하여, 범죄피해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로 어느덧 11주년을 맞이하게 된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는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범죄피해자를 위로하며, 범죄피해자 지원 종사자를 격려하는 자리입니다.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는 지난 10년 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사회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전국 단위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발전을 거듭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6월에는 시민들의 촛불 함성이 살아 숨 쉬는 역사적 장소인 광화문 광장에서 다섯 번째 다링행사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노력하고 헌신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범죄피해자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분의 관심과 헌신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안정적인 기틀이 마련되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많은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강서구에서 발생한 PC방 살인사건을 비롯하여 잔혹한 강력범죄들이 증가함에 따라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두려움은 더욱 커져가고 있으며, 사회적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처벌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비하여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아직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와 사회가 협력하여,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더 나아가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여, 함께 살아가는 포용적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주무부처로서, 앞으로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있어 미흡한 점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가 범죄피해자 및 가족 분들이 겪으신 고통스러운 마음을 헤아려,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고 진심으로 격려하며 위로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법무부장관 박 상 기

## • 2018년 올해의 교사상 및 보호관찰관상 시상식

사랑하는 보호기관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 소년원과 보호관찰소 직원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높이고 바람직한 보호인상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된 「올해의 교사상」과 「올해의 보호관찰관상」 시상식에 함께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영예의 수상자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상자 여러분은 소년원 학생과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묵묵히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빛나지 않는 자리에서 불평하기보다는 뜨거운 사명감으로 값진 결과를 이루어 낸 수상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보호기관 직원 여러분 !

2018년은 탈검찰화를 통해 범죄예방정책국이 전문성을 가지고, 일관성 있는 범죄예방정책을 펼칠 수 있게 새 진용을 갖춘 한 해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소년원학생 의료처우 강화와 올레길 하이킹 등 열린 체험교육 확대, 명예 보호관찰관 등을 통한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 10주년을 맞은 전자감독 시스템의 고도화 등 많은 일들을 추진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업무 성과는 여러분이 보여주신 소년원 학생, 보호관찰 대상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이 뒷받침되었기에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신념으로 진심어린 노력과 헌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법무부도 보호기관 직원 여러분이 자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기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져보면 참 좋겠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수상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다가오는 2019년 황금돼지의 해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법무부장관 박 상 기

## • 선진법제포럼 개회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입니다.

오늘 사회를 맡아주신 김홍엽 교수님, 발표를 맡아주신 함영주 교수님, 토론자로서 귀한 의견을 주실 김주영 변호사님, 이승희 변호사님, 정선주 교수님, 송해연 변호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종민 의원님을 비롯하여 오늘 「선진법제포럼」에 참석해 주신 많은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진법제포럼」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주요한 정책과 사회의 중요 쟁점에 대하여 학계·법조계·경제계·관계 전문가 및 오피니언 리더들의 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번 선진법제포럼은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집단소송 도입 방향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의견을 듣고자 마련하였습니다.

법무부는 피해자 일부의 소송으로 전체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증권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다른 분야에도 확대 도입하기 위해 정부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9월 김종민 의원님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집단소송제 도입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법무부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통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도모함과 동시에 기업의 준법경영 수준을 높여 국민의 기업활동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이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집단소송제가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고 효과적인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여러분들이 들려주시는 의견을 가감 없이 듣고 다가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에서 적극 반영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법무부가 추진하는 집단소송제가 조속히 도입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법무부장관 박 상 기

## • 모범귀화자 기념패 수여식

여러분, 반갑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입니다.

어느덧 2018년 무술년 한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범귀화자 여러분과 가족 분들께 진심어린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12월 20일은 국적법이 처음 제정되어 시행된 지 70년째 되는 날로서, 지금까지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19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깊은 국적법 제정 70주년을 맞이하여, 네 분의 모범귀화자를 선정하고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매우 의미 있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모범귀화자로 선정된 분들은 평소 자기계발과 기업경영, 그리고 사회 봉사활동에 힘쓰는 등 모범적인 생활로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되고, 이민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하신 분들입니다. 처음에 낯선 대한민국 땅으로 이민을 결심하고 입국하신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이제는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모범귀화자분들께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여러분과 같은 과정을 거쳐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범귀화자로 선정되신 여러분들은 한국에 온 많은 이민자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처음은 누구나 힘들 수 있지만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같은 모범귀화자를 적극 발굴·홍보하여, 이민자와 그 가족들이 자기 발전은 물론, 우리 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범귀화자 여러분,

대한민국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이루고, 다음 세대에게도 자랑스럽고 살기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보여준 열정과 봉사는 우리 사회를 지켜주는 견고한 울타리가 되어 줄 것이며, 정의롭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자랑스러운 최초의 모범귀화자로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19일
법무부장관 박 상 기

## • 울산 스마일센터 개소식 축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입니다.

울산 스마일센터를 개소하는 뜻깊은 날을 맞아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느라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 해주신 정갑윤 국회의원님, 송철호 울산시장님,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님, 송인택 울산지검장님,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합회장님을 비롯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외상을 경험한 사람은 외상의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추어 버린 것처럼 느끼고, 위험이 지나간 후에도 사건을 반복적으로 체험하며, 결국 일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족이나 이웃과 즐거운 연말연시를 보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외부와 단절된 삶 속에서 홀로 외로움과 싸우고 있을 범죄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생각해봅니다.

성숙한 사회는 모든 구성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사회일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범죄피해자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임을 잊지 말고 그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스마일센터는 강력범죄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분들께 전문적인 심리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죄피해 트라우마 전문 치유기관'입니다. 스마일센터에서 제공하는 정신과 전문의 및 임상심리전문가들에 의한 심리치료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회복지사들의 사례지원 서비스는 범죄피해자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마일센터는 2010년 7월 처음 서울에 설치된 이래, 지난 12월 5일 청주 스마일센터에 이어 오늘 이곳 울산에서 열세 번째 개소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1월에는 행정지원을 전담하는 총괄지원단을 설치하고, 지난달에는 "범죄피해 유가족 심리지원"을 주제로 한 제3회 스마일센터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보다 체계적인 범죄피해자 지원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렇게 지난 7년 간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해 온 힘을 다해온 결과 전국 스마일센터에서는 만천여 명에게 22만 건이 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울산 스마일센터 역시 앞으로 이 지역 피해자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따듯한 거점 센터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법무부도 피해자들이 더욱 가까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울산 스마일센터가 지역 피해자들에게 최고의 치유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스마일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국가·지역사회·스마일센터 간의

원만한 협력관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이곳의 범죄 피해자들이 울산 스마일센터를 통해 아픔을 극복하고 다시 행복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울산 스마일센터는 경제 도약을 위해 넓은 대양을 거침없이 항해하는 울산과 같이 범죄피해자 지원의 선두에서 트라우마 치유의 발전을 이끌어나가는 센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울산 스마일센터 개소를 위해 힘써주신 김복광 울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님과 권국주 울산 스마일센터장님, 그리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스마일센터 임직원 분들께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온정의 손길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 전해지는 따뜻한 연말이 되기를 기원하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법무부장관 박 상 기

# 제4절 역대 법무·검찰 간부 명단

## 1. 법무부장관

| 대 순 | 성 명 | 재 임 기 간 | 비 고 |
|---|---|---|---|
| 초 대 | 이 인(李 仁) | 1948. 8. 2. ~ 1949. 6. 5. | |
| 2 대 | 권승렬(權承烈) | 1949. 6. 6. ~ 1950. 5. 21. | |
| 3 대 | 이우익(李愚益) | 1950. 5. 22. ~ 1950. 11. 22. | |
| 4 대 | 김준연(金俊淵) | 1950. 11. 23. ~ 1951. 5. 6. | |
| 5 대 | 조진만(趙鎭滿) | 1951. 5. 7. ~ 1952. 3. 4. | |
| 6 대 | 서상환(徐相懽) | 1952. 3. 5. ~ 1954. 6. 29. | |
| 7 대 | 조용순(趙容淳) | 1954. 6. 30. ~ 1955. 9. 15. | |
| 8 대 | 이 호(李 澔) | 1955. 9. 16. ~ 1958. 2. 19. | |
| 9 대 | 홍진기(洪璡基) | 1958. 2. 20. ~ 1960. 3. 23. | |
| 10 대 | 권승렬(權承烈) | 1960. 4. 25. ~ 1960. 8. 19. | |
| 11 대 | 조재천(曺在千) | 1960. 8. 23. ~ 1961. 5. 2. | |
| 12 대 | 이병하(李炳夏) | 1961. 5. 3. ~ 1961. 5. 18. | |
| 13 대 | 고원증(高元增) | 1961. 5. 20. ~ 1962. 1. 8. | |
| 14 대 | 조병일(趙炳日) | 1962. 1. 9. ~ 1963. 1. 31. | |
| 15 대 | 장영순(張榮淳) | 1963. 2. 1. ~ 1963. 4. 21. | |
| 16 ~ 18대 | 민복기(閔復基) | 1963. 4. 22. ~ 1966. 9. 25. | |
| 19 대 | 권오병(權五柄) | 1966. 9. 26. ~1968. 5. 20. | |
| 20 대 | 이 호(李 澔) | 1968. 5. 21. ~ 1970. 12. 20. | |
| 21 대 | 배영호(裵泳鎬) | 1970. 12. 21.~ 1971. 6. 3. | |
| 22 대 | 신직수(申稙秀) | 1971. 6. 4. ~ 1973. 12. 2. | |
| 23 대 | 이봉성(李鳳成) | 1973. 12. 3. ~ 1974. 9. 17. | |
| 24 ~ 25대 | 황산덕(黃山德) | 1974. 9. 18. ~ 1976. 12. 3. | |
| 26 대 | 이선중(李善中) | 1976. 12. 4. ~ 1978. 12. 21. | |
| 27 대 | 김치열(金致烈) | 1978. 12. 22. ~ 1979. 12. 13. | |
| 28 대 | 백상기(白翔起) | 1979. 12. 14. ~ 1980. 5. 21. | |
| 29 ~ 30대 | 오탁근(吳鐸根) | 1980. 5. 22. ~ 1981. 4. 9. | |
| 31 대 | 이종원(李鐘元) | 1981. 4. 10. ~ 1982. 5. 20. | |
| 32 대 | 정치근(鄭致根) | 1982. 5. 21. ~ 1982. 6. 23. | |
| 33 대 | 배명인(裵命仁) | 1982. 6. 24. ~ 1985. 2. 18. | |
| 34 대 | 김석휘(金錫輝) | 1985. 2. 19. ~ 1985. 7. 15. | |

| 대 순 | 성 명 | 재 임 기 간 | 비 고 |
|---|---|---|---|
| 35 대 | 김성기(金聖基) | 1985. 7. 16. ~ 1987. 5. 25. | |
| 36 ~ 37대 | 정해창(丁海昌) | 1987. 5. 26. ~ 1988. 12. 4. | |
| 38 대 | 허형구(許亨九) | 1988. 12. 5. ~ 1990. 3. 18. | |
| 39 대 | 이종남(李種南) | 1990. 3. 19. ~ 1991. 5. 26. | |
| 40 대 | 김기춘(金淇春) | 1991. 5. 27. ~ 1992. 10. 8. | |
| 41 대 | 이정우(李正雨) | 1992. 10. 9. ~ 1993. 2. 25. | |
| 42 대 | 박희태(朴熹太) | 1993. 2. 26. ~ 1993. 3. 7. | |
| 43 대 | 김두희(金斗喜) | 1993. 3. 8. ~ 1994. 12. 23. | |
| 44 대 | 안우만(安又萬) | 1994. 12. 24. ~ 1997. 3. 5. | |
| 45 대 | 최상엽(崔相曄) | 1997. 3. 6. ~ 1997. 8. 4. | |
| 46 대 | 김종구(金鍾求) | 1997. 8. 5. ~ 1998. 3. 2. | |
| 47 대 | 박상천(朴相千) | 1998. 3. 3. ~ 1999. 5. 23. | |
| 48 대 | 김태정(金泰政) | 1999. 5. 24. ~ 1999. 6. 7. | |
| 49 대 | 김정길(金正吉) | 1999. 6. 8. ~ 2001. 5. 20. | |
| 50 대 | 안동수(安東洙) | 2001. 5. 21. ~ 2001. 5. 23. | |
| 51 대 | 최경원(崔慶元) | 2001. 5. 24. ~ 2002. 1. 28. | |
| 52 대 | 송정호(宋正鎬) | 2002. 1. 29. ~ 2002. 7. 10. | |
| 53 대 | 김정길(金正吉) | 2002. 7. 11. ~ 2002. 11. 5. | |
| 54 대 | 심상명(沈相明) | 2002. 11. 9. ~ 2003. 2. 26. | |
| 55 대 | 강금실(康錦實) | 2003. 2. 27. ~ 2004. 7. 28. | |
| 56 대 | 김승규(金昇圭) | 2004. 7. 29. ~ 2005. 6. 29. | |
| 57 대 | 천정배(千正培) | 2005. 6. 30. ~ 2006. 7. 26. | |
| 58 대 | 김성호(金成浩) | 2006. 8. 30. ~ 2007. 9. 3. | |
| 59 대 | 정성진(鄭城鎭) | 2007. 9. 4. ~ 2008. 2. 28. | |
| 60 대 | 김경한(金慶漢) | 2008. 2. 29. ~ 2009. 9. 29. | |
| 61 대 | 이귀남(李貴男) | 2009. 9. 30. ~ 2011. 8. 10. | |
| 62 대 | 권재진(權在珍) | 2011. 8. 11. ~ 2013. 3. 10. | |
| 63 대 | 황교안(黃敎安) | 2013. 3. 11. ~ 2015. 6. 18. | |
| 64 대 | 김현웅(金賢雄) | 2015. 7. 9. ~ 2016. 11. 29. | |
| 65 대 | 박상기(朴相基) | 2017. 7. 19. ~ | |

## 2. 검찰총장

| 대 순 | 성 명 | 재 임 기 간 | 비 고 |
|---|---|---|---|
| 초 대 | 권승렬(權承烈) | 1948. 10. 31. ~ 1949. 6. 5. | 임기제 (1988 ~ ) |
| 2 대 | 김익진(金翼鎭) | 1949. 6. 6. ~ 1950. 6. 21. | |
| 3 대 | 서상환(徐相懽) | 1950. 6. 22. ~ 1952. 3. 5. | |
| 4 대 | 한격만(韓格晩) | 1952. 3. 14. ~ 1955. 9. 29. | |
| 5 대 | 민복기(閔復基) | 1955. 9. 30. ~ 1956. 7. 5. | |
| 6 대 | 정순석(鄭順錫) | 1956. 7. 6. ~ 1958. 3. 10. | |
| 7 대 | 박승준(朴承俊) | 1958. 3. 11. ~ 1960. 5. 4. | |
| 8 대 | 이태희(李太熙) | 1960. 5. 5. ~ 1961. 5. 27. | |
| 9 대 | 장영순(張榮淳) | 1961. 5. 28. ~ 1963. 1. 31. | |
| 10 대 | 정창운(鄭暢雲) | 1963. 2. 1. ~ 1963. 12. 6. | |
| 11 대 | 신직수(申稙秀) | 1963. 12. 7. ~ 1971. 6. 3. | |
| 12 대 | 이봉성(李鳳成) | 1971. 6. 5. ~ 1973. 12. 2. | |
| 13 대 | 김치열(金致烈) | 1973. 12. 3. ~ 1975. 12. 18. | |
| 14 대 | 이선중(李善中) | 1975. 12. 19. ~ 1976. 12. 4. | |
| 15 대 | 오탁근(吳鐸根) | 1976. 12. 7. ~ 1980. 5. 21. | |
| 16 대 | 김종경(金鍾卿) | 1980. 5. 28. ~ 1981. 3. 9. | |
| 17 대 | 허형구(許亨九) | 1981. 3. 10. ~ 1981. 12. 15. | |
| 18 대 | 정치근(鄭致根) | 1981. 12. 16. ~ 1982. 5. 21. | |
| 19 대 | 김석휘(金錫輝) | 1982. 5. 24. ~ 1985. 2. 18. | |
| 20 대 | 서동권(徐東權) | 1985. 2. 21. ~ 1987. 5. 26. | |
| 21 대 | 이종남(李種南) | 1987. 5. 27. ~ 1988. 12. 5. | |
| 22 대 | 김기춘(金淇春) | 1988. 12. 6. ~ 1990. 12. 5. | |
| 23 대 | 정구영(鄭銶永) | 1990. 12. 6. ~ 1992. 12. 5. | |
| 24 대 | 김두희(金斗熙) | 1992. 12. 6. ~ 1993. 3. 7. | |
| 25 대 | 박종철(朴鍾喆) | 1993. 3. 8. ~ 1993. 9. 13. | |
| 26 대 | 김도언(金道彦) | 1993. 9. 16. ~ 1995. 9. 15. | |
| 27 대 | 김기수(金起秀) | 1995. 9. 16. ~ 1997. 8. 6. | |
| 28 대 | 김태정(金泰政) | 1997. 8. 7. ~ 1999. 5. 24. | |
| 29 대 | 박순용(朴舜用) | 1999. 5. 26. ~ 2001. 5. 25. | |
| 30 대 | 신승남(愼承男) | 2001. 5. 26. ~ 2002. 1. 15. | |
| 31 대 | 이명재(李明載) | 2002. 1. 17. ~ 2002. 11. 5. | |
| 32 대 | 김각영(金珏泳) | 2002. 11. 11. ~ 2003. 3. 10. | |
| 33 대 | 송광수(宋光洙) | 2003. 4. 3. ~ 2005. 4. 2. | |
| 34 대 | 김종빈(金鍾彬) | 2005. 4. 4. ~ 2005. 10. 17. | |
| 35 대 | 정상명(鄭相明) | 2005. 11. 24. ~ 2007. 11. 23. | |
| 36 대 | 임채진(林采珍) | 2007. 11. 24. ~ 2009. 6. 4. | |
| 37 대 | 김준규(金畯圭) | 2009. 8. 20. ~ 2011. 7. 13. | |
| 38 대 | 한상대(韓相大) | 2011. 8. 11. ~ 2012. 12. 2. | |
| 39 대 | 채동욱(蔡東旭) | 2013. 4. 4. ~ 2013. 9. 27. | |
| 40 대 | 김진태(金鎭太) | 2013. 12. 2. ~ 2015. 11. 30. | |
| 41 대 | 김수남(金秀南) | 2015. 12. 2. ~ 2017. 5. 15. | |
| 42 대 | 문무일(文武一) | 2017. 7. 25. ~ | |

# 3. 법무부차관

| 대 순 | 성 명 | 재 임 기 간 | 비 고 |
|---|---|---|---|
| 초 대 | 권승렬(權承烈) | 1948. 8. 7. ~ 1948. 10. 30. | |
| 2 대 | 백한성(白漢成) | 1948. 10. 31. ~ 1949. 6. 7. | |
| 3 대 | 김갑수(金甲洙) | 1949. 6. 8. ~ 1950. 3. 13. | |
| 4 대 | 김윤근(金潤根) | 1950. 3. 14. ~ 1951. 11. 29. | |
| 5 대 | 민복기(閔復基) | 1951. 11. 30. ~ 1952. 5. 26. | |
| 6 대 | 정재환(鄭在煥) | 1952. 5. 27. ~ 1954. 2. 9. | |
| 7 대 | 홍진기(洪璡基) | 1954. 2. 17. ~ 1955. 10. 5. | |
| 8 대 | 임석무(林碩茂) | 1955. 10. 12. ~ 1956. 6. 12. | |
| 9 대 | 배영호(裵泳鎬) | 1956. 6. 23. ~ 1958. 3. 10. | |
| 10 대 | 신언한(申彦瀚) | 1958. 3. 11. ~ 1960. 5. 3. | |
| 11 대 | 김영천(金永千) | 1960. 7. 1. ~ 1960. 9. 29. | |
| 12 대 | 김영환(金英煥) | 1960. 8. 23. ~ 1961. 5. 15. | |
| | 김영천(金永千) | 1960. 9. 29. ~ 1962. 3. 18. | 정무차관 |
| 13 대 | 서일교(徐壹敎) | 1962. 3. 19. ~ 1963. 8. 7. | 사무차관 |
| 14 대 | 권오병(權五柄) | 1963. 8. 8. ~ 1965. 8. 27. | |
| 15 대 | 이경호(李坰鎬) | 1965. 8. 28. ~ 1968. 5. 23. | |
| 16 대 | 김병화(金炳華) | 1968. 5. 24. ~ 1969. 7. 27. | |
| 17 대 | 오탁근(吳鐸根) | 1969. 7. 28. ~ 1971. 8. 23. | |
| 18 대 | 이선중(李善中) | 1971. 8. 24. ~ 1973. 3. 8. | |
| 19 대 | 김 선(金 璿) | 1973. 3. 9. ~ 1974. 7. 7. | |
| 20 대 | 김종경(金鍾卿) | 1974. 7. 8. ~ 1977. 2. 16. | |
| 21 대 | 이종원(李鐘元) | 1977. 2. 17. ~ 1979. 2. 18. | |
| 22 대 | 이용훈(李龍薰) | 1979. 2. 19. ~ 1980. 5. 22. | |
| 23 대 | 정태균(鄭泰均) | 1980. 5. 26. ~ 1981. 4. 17. | |
| 24 대 | 서동권(徐東權) | 1981. 4. 25. ~ 1981. 12. 16. | |
| 25 대 | 이영욱(李永旭) | 1981. 12. 17. ~ 1982. 6. 17. | |
| 26 대 | 정해창(丁海昌) | 1982. 6. 18. ~ 1985. 2. 27. | |
| 27 대 | 김종건(金鍾鍵) | 1985. 2. 28. ~ 1985. 10. 18. | |
| 28 대 | 이종남(李種南) | 1985. 10. 19. ~ 1987. 5. 26. | |
| 29 대 | 한영석(韓永錫) | 1987. 5. 30. ~ 1988. 3. 4. | |
| 30 대 | 서정신(徐廷信) | 1988. 3. 5. ~ 1989. 3. 28. | |
| 31 대 | 김두희(金斗喜) | 1989. 3. 29. ~ 1991. 4. 17. | |
| 32 대 | 조성욱(趙成郁) | 1991. 4. 18. ~ 1993. 3. 3. | |
| 33 대 | 신 건(辛 建) | 1993. 3. 4. ~ 1993. 5. 27. | |

| 대 순 | 성 명 | 재 임 기 간 | 비 고 |
|---|---|---|---|
| 34 대 | 김기석(金基錫) | 1993. 5. 31. ~ 1994. 9. 15. | |
| 35 대 | 김종구(金鍾求) | 1994. 9. 16. ~ 1995. 9. 19. | |
| 36 대 | 김태정(金泰政) | 1995. 9. 20. ~ 1997. 8. 6. | |
| 37 대 | 원정일(元正一) | 1997. 8. 8. ~ 1998. 3. 18. | |
| 38 대 | 최경원(崔慶元) | 1998. 3. 19. ~ 1999. 6. 8. | |
| 39 대 | 김경한(金慶漢) | 1999. 6. 9. ~ 2001. 5. 30. | |
| 40 대 | 김학재(金鶴在) | 2001. 5. 31. ~ 2001. 9. 11. | |
| 41 대 | 신광옥(辛光玉) | 2001. 9. 12. ~ 2001. 12. 13. | |
| 42 대 | 김승규(金昇圭) | 2001. 12. 18. ~ 2002. 2. 7. | |
| 43 대 | 한부환(韓富煥) | 2002. 2. 8. ~ 2002. 8. 18. | |
| 44 대 | 김각영(金珏泳) | 2002. 8. 19. ~ 2002. 11. 10. | |
| 45 대 | 명로승(明魯昇) | 2002. 11. 18. ~ 2003. 3. 11. | |
| 46 대 | 정상명(鄭相明) | 2003. 3. 13. ~ 2004. 5. 31. | |
| 47 대 | 김상희(金相喜) | 2004. 6. 1. ~ 2005. 8. 26. | |
| 48 대 | 김희옥(金熙玉) | 2005. 9. 8. ~ 2006. 8. 25. | |
| 49 대 | 정동기(鄭東基) | 2006. 8. 25. ~ 2007. 3. 4. | |
| 50 대 | 정진호(鄭振昊) | 2007. 3. 5. ~ 2008. 3. 9. | |
| 51 대 | 문성우(文晟祐) | 2008. 3. 10. ~ 2009. 1. 18. | |
| 52 대 | 이귀남(李貴男) | 2009. 1. 19. ~ 2009. 7. 11. | |
| 53 대 | 황희철(黃希哲) | 2009. 8. 12. ~ 2011. 8. 12. | |
| 54 대 | 길태기(吉兌基) | 2011. 8. 22. ~ 2013. 12. 23. | |
| 55 대 | 김학의(金學義) | 2013. 3. 14. ~ 2013. 3. 22. | |
| 56 대 | 국민수(鞠敏秀) | 2013. 4. 10. ~ 2013. 12. 23. | |
| 57 대 | 김현웅(金賢雄) | 2013. 12. 24. ~ 2015. 2. 10. | |
| 58 대 | 김주현(金周賢) | 2015. 2. 11. ~ 2015. 12. 23. | |
| 59 대 | 이창재(李昌宰) | 2015. 12. 24. ~ 2017. 5. 21. | |
| 60 대 | 이금로(李今魯) | 2017. 5. 22. ~ 2018. 6. 21. | |
| 61 대 | 김오수(金洿洙) | 2018. 6. 22. ~ | |

# 4. 대검찰청 차장검사

| 대 순 | 성 명 | 재 임 기 간 | 비 고 |
|---|---|---|---|
| 초 대 | 박승준(朴承俊) | 1949. 11. 14. ~ 1952. 4. 6. | |
| 2 대 | 정창운(鄭暢雲) | 1952. 4. 7. ~ 1955. 10. 25. | |
| 3 대 | 정순석(鄭順錫) | 1955. 10. 26. ~ 1956. 7. 6. | |
| 4 대 | 박천일(朴天一) | 1956. 7. 25. ~ 1958. 2. 28. | |
| 5 대 | 소진섭(蘇鎭燮) | 1959. 4. 22. ~ 1960. 5. 20. | |
| 6 대 | 주운화(朱雲化) | 1962. 4. 11. ~ 1963. 5. 8. | |
| 7 대 | 김영천(金永千) | 1963. 5. 9. ~ 1963. 12. 30. | |
| 8 대 | 주운화(朱雲化) | 1963. 12. 31. ~ 1964. 3. 2. | |
| 9 대 | 김병화(金炳華) | 1964. 3. 16. ~ 1968. 5. 31. | |
| 10 대 | 이봉성(李鳳成) | 1968. 6. 1. ~ 1971. 6. 4. | |
| 11 대 | 김영천(金永千) | 1971. 8. 24. ~ 1973. 3. 19. | |
| 12 대 | 이영환(李永煥) | 1973. 4. 6. ~ 1977. 2. 16. | |
| 13 대 | 김일두(金一斗) | 1977. 2. 17. ~ 1980. 7. 9. | |
| 14 대 | 허형구(許亨九) | 1980. 7. 28. ~ 1981. 3. 9. | |
| 15 대 | 배명인(裵命仁) | 1981. 4. 27. ~ 1981. 12. 16. | |
| 16 대 | 서동권(徐東權) | 1981. 12. 17. ~ 1982. 5. 23. | |
| 17 대 | 이명희(李明熙) | 1982. 6. 18. ~ 1985. 3. 4. | |
| 18 대 | 이중근(李重根) | 1985. 3. 5. ~ 1985. 3. 11. | |
| 19 대 | 김세권(金世權) | 1985. 5. 25. ~ 1986. 5. 1. | |
| 20 대 | 정해창(丁海昌) | 1986. 5. 2. ~ 1987. 5. 25. | |
| 21 대 | 최상엽(崔相曄) | 1987. 5. 30. ~ 1990. 3. 19. | |
| 22 대 | 서정신(徐廷信) | 1990. 3. 27. ~ 1991. 4. 17. | |
| 23 대 | 김두희(金斗喜) | 1991. 4. 18. ~ 1992. 12. 5. | |
| 24 대 | 박종철(朴鍾喆) | 1992. 12. 12. ~ 1993. 3. 8. | |
| 25 대 | 김도언(金道彦) | 1993. 3. 17. ~ 1993. 9. 15. | |
| 26 대 | 송종의(宋宗義) | 1993. 9. 21. ~ 1995. 9. 14. | |
| 27 대 | 최명선(崔明善) | 1995. 9. 20. ~ 1997. 8. 9. | |
| 28 대 | 이원성(李源性) | 1997. 8. 11. ~ 1999. 6. 3. | |
| 29 대 | 신승남(愼承男) | 1999. 6. 9. ~ 2001. 5. 25. | |
| 30 대 | 김각영(金珏泳) | 2001. 5. 31. ~ 2002. 2. 7. | |
| 31 대 | 김승규(金昇圭) | 2002. 2. 8. ~ 2002. 8. 18. | |
| 32 대 | 김학재(金鶴在) | 2002. 8. 19. ~ 2003. 3. 13. | |
| 33 대 | 김종빈(金鍾彬) | 2003. 3. 13. ~ 2004. 5. 31. | |
| 34 대 | 이정수(李廷洙) | 2004. 6. 1. ~ 2005. 3. 31. | |

| 대 순 | 성 명 | 재 임 기 간 | 비 고 |
|---|---|---|---|
| 35 대 | 정상명(鄭相明) | 2005. 4. 8. ~ 2005. 11. 23. | |
| 36 대 | 임승관(林承寬) | 2005. 11. 28. ~ 2007. 3. 4. | |
| 37 대 | 정동기(鄭東基) | 2007. 3. 5. ~ 2007. 11. 23. | |
| 38 대 | 권재진(權在珍) | 2007. 11. 26. ~ 2009. 1. 18. | |
| 39 대 | 문성우(文晟祐) | 2009. 1. 19. ~ 2009. 7. 13. | |
| 40 대 | 차동민(車東旻) | 2009. 7. 20. ~ 2011. 8. 3. | |
| 41 대 | 채동욱(蔡東旭) | 2011. 8. 22. ~ 2012. 12. 5. | |
| 42 대 | 김진태(金鎭太) | 2012. 12. 6. ~ 2013. 4. 4. | |
| 43 대 | 길태기(吉兌基) | 2013. 4. 10. ~ 2013. 12. 4. | |
| 44 대 | 임정혁(任正赫) | 2013. 12. 5. ~ 2015. 2. 10. | |
| 45 대 | 김수남(金秀南) | 2015. 2. 11. ~ 2015. 12. 1. | |
| 46 대 | 김주현(金周賢) | 2015. 12. 24. ~ 2017. 5. 21. | |
| 47 대 | 봉 욱(奉 旭) | 2017. 5. 22. ~ | |

# 5. 법무부 실·국·본부장

## • 기획조정실장

| 대 순 | 성 명 | 재 임 기 간 | 비 고 |
|---|---|---|---|
| 초 대 | 김락윤(金洛潤) | 1961. 9. 25. ~ 1962. 3. 8. | |
| 2 대 | 이두성(李斗成) | 1962. 8. 14. ~ 1966. 11. 18. | |
| 3 대 | 나길조(羅吉祚) | 1966. 11. 19. ~ 1969. 1. 9. | |
| 4 대 | 윤두식(尹斗植) | 1969. 1. 20. ~ 1972. 11. 21. | |
| 5 대 | 정익원(鄭益源) | 1972. 11. 22. ~ 1974. 8. 31. | |
| 6 대 | 설동훈(薛東勳) | 1974. 9. 1. ~ 1976. 2. 28. | |
| 7 대 | 강우영(姜友永) | 1976. 3. 1. ~ 1978. 2. 10. | |
| 8 대 | 안경열(安慶烈) | 1978. 2. 11. ~ 1981. 4. 26. | |
| 9 대 | 송병철(宋炳喆) | 1981. 4. 27. ~ 1981. 12. 16. | |
| 10 대 | 김세권(金世權) | 1981. 12. 17. ~ 1982. 6. 17. | |
| 11 대 | 김양균(金亮均) | 1982. 6. 18. ~ 1983. 7. 31. | |
| 12 대 | 김유후(金有厚) | 1983. 8. 1. ~ 1985. 3. 4. | |
| 13 대 | 신 건(辛 建) | 1985. 3. 5. ~ 1987. 6. 7. | |
| 14 대 | 송종의(宋宗義) | 1987. 6. 8. ~ 1989. 3. 28. | |
| 15 대 | 지헌범(池憲範) | 1989. 3. 29. ~ 1991. 4. 17. | |
| 16 대 | 정성진(鄭城鎭) | 1991. 4. 18. ~ 1991. 7. 31. | |
| 17 대 | 김종구(金鍾求) | 1991. 8. 1. ~ 1992. 7. 28. | |
| 18 대 | 김태정(金泰政) | 1992. 7. 29. ~ 1993. 3. 16. | |
| 19 대 | 김상수(金相洙) | 1993. 3. 17. ~ 1993. 9. 20. | |
| 20 대 | 최경원(崔慶元) | 1993. 9. 21. ~ 1994. 9. 15. | |
| 21 대 | 최병국(崔炳國) | 1994. 9. 16. ~ 1995. 9. 19. | |
| 22 대 | 김경한(金慶漢) | 1995. 9. 20. ~ 1997. 1. 22. | |
| 23 대 | 신승남(愼承男) | 1997. 1. 23. ~ 1997. 8. 13. | |
| 24 대 | 윤동민(尹東旻) | 1997. 8. 14. ~ 1998. 3. 22. | |
| 25 대 | 신광옥(辛光玉) | 1998. 3. 23. ~ 1999. 2. 21. | |
| 26 대 | 김각영(金珏泳) | 1999. 2. 22. ~ 1999. 6. 8. | |
| 27 대 | 이범관(李範觀) | 1999. 6. 9. ~ 2000. 7. 14. | |
| 28 대 | 장윤석(張倫碩) | 2000. 7. 15. ~ 2001. 5. 30. | |
| 29 대 | 채수철(蔡秀哲) | 2001. 5. 31. ~ 2002. 2. 7. | |
| 30 대 | 정상명(鄭相明) | 2002. 2. 8. ~ 2003. 3. 12. | |
| 31 대 | 박상길(朴相吉) | 2003. 3. 13. ~ 2004. 5. 31. | |
| 32 대 | 김회선(金會瑄) | 2004. 6. 1. ~ 2005. 4. 4. | |

| 대 순 | 성 명 | 재 임 기 간 | 비 고 |
|---|---|---|---|
| 33 대 | 이귀남(李貴男) | 2005. 4. 8. ~ 2006. 2. 5. | 2005. 5. 2. |
| 34 대 | 황희철(黃希哲) | 2006. 2. 6. ~ 2006. 3. 15. | 정책홍보 |
| 35 대 | 박한철(朴漢徹) | 2006. 3. 16. ~ 2007. 3. 4. | 관리실로 |
| 36 대 | 박영렬(朴永烈) | 2007. 3. 5. ~ 2008. 3. 10. | 개편 |
| 37 대 | 소병철(蘇秉哲) | 2008. 3. 11. ~ 2009. 1. 18. | 2008. 2. 29. |
| 38 대 | 김수남(金秀南) | 2009. 1. 19. ~ 2009. 8. 11. | 기획조정실로 |
| 39 대 | 최재경(崔在卿) | 2009. 8. 12. ~ 2010. 7. 14. | 개편 |
| 40 대 | 김희관(金熙官) | 2010. 7. 15. ~ 2011. 8. 21. | |
| 41 대 | 조성욱(曺成旭) | 2011. 8. 22. ~ 2012. 7. 17. | |
| 42 대 | 김주현(金周賢) | 2012. 7. 18. ~ 2013. 4. 9. | |
| 43 대 | 봉 욱(奉 旭) | 2013. 4. 10. ~ 2013. 12. 23. | |
| 44 대 | 안태근(安兌根) | 2013. 12. 24. ~ 2015. 2. 10. | |
| 45 대 | 진경준(陳炅準) | 2015. 2. 11. ~ 2015. 12. 23. | |
| 46 대 | 권익환(權益煥) | 2015. 12. 24. ~ 2017. 7. 31. | |
| 47 대 | 조상철(趙商喆) | 2017. 8. 1. ~ 2018. 6. 21. | |
| 48 대 | 강남일(姜南一) | 2018. 6. 22. ~ | |

## • 법무실장

| 대 순 | 성 명 | 재 임 기 간 | 비 고 |
|---|---|---|---|
| 초 대 | 김갑수(金甲洙) | 1948. 11. 4. ~ 1949. 7. 1. | 1948. 11. 4. |
| 2 대 | 민복기(閔復基) | 1949. 7. 2. ~ 1949. 12. 31. | 법무국 신설 |
| 3 대 | 홍진기(洪璡基) | 1950. 4. 1. ~ 1954. 2. 17. | |
| 4 대 | 배영호(裵泳鎬) | 1954. 4. 6. ~ 1956. 6. 22. | |
| 5 대 | 김영천(金永千) | 1956. 6. 23. ~ 1960. 6. 30. | |
| 6 대 | 이경호(李坰鎬) | 1960. 7. 1. ~ 1965. 8. 27. | |
| 7 대 | 김 선(金 璿) | 1965. 10. 1. ~ 1966. 11. 18. | |
| 8 대 | 이선중(李善中) | 1966. 11. 19. ~ 1971. 8. 23. | 1967. 4. 10. |
| 9 대 | 김종경(金鍾卿) | 1971. 8. 26. ~ 1974. 7. 7. | 법무실로 |
| 10 대 | 주문기(朱文基) | 1974. 9. 1. ~ 1978. 2. 10. | 개편 |
| 11 대 | 변무관(卞務寬) | 1978. 2. 11. ~ 1979. 8. 31. | |
| 12 대 | 강우영(姜友永) | 1979. 9. 1. ~ 1980. 6. 8. | |
| 13 대 | 이길주(李桔柱) | 1980. 6. 9. ~ 1981. 4. 26. | |
| 14 대 | 백광현(白光鉉) | 1981. 4. 27. ~ 1981. 12. 16. | |
| 15 대 | 이준승(李準昇) | 1981. 12. 17. ~ 1982. 6. 17. | |

| 대 순 | 성 명 | 재 임 기 간 | 비 고 |
|---|---|---|---|
| 16 대 | 한영석(韓永錫) | 1982. 6. 18. ~ 1985. 3. 4. | |
| 17 대 | 김유후(金有厚) | 1985. 3. 5. ~ 1987. 6. 7. | |
| 18 대 | 임상현(任尙鉉) | 1987. 6. 8. ~ 1989. 3. 28. | |
| 19 대 | 황길수(黃吉秀) | 1989. 3. 29. ~ 1991. 7. 31. | |
| 20 대 | 정성진(鄭城鎭) | 1991. 8. 1. ~ 1992. 7. 28. | |
| 21 대 | 문종수(文鍾洙) | 1992. 7. 29. ~ 1993. 3. 16. | |
| 22 대 | 신창언(申昌彦) | 1993. 3. 17. ~ 1993. 9. 20. | |
| 23 대 | 주광일(朱光逸) | 1993. 9. 21. ~ 1994. 9. 15. | |
| 24 대 | 김수장(金壽長) | 1994. 9. 16. ~ 1995. 9. 19. | |
| 25 대 | 김상수(金相洙) | 1995. 9. 20. ~ 1995. 9. 26. | |
| 26 대 | 신승남(愼承男) | 1995. 9. 27. ~ 1997. 1. 22. | |
| 27 대 | 공영규(孔永規) | 1997. 1. 23. ~ 1997. 8. 13. | |
| 28 대 | 강신욱(姜信旭) | 1997. 8. 14. ~ 1998. 3. 22. | |
| 29 대 | 김영철(金永喆) | 1998. 3. 23. ~ 1999. 6. 8. | |
| 30 대 | 송광수(宋光洙) | 1999. 6. 9. ~ 1999. 8. 23. | |
| 31 대 | 정충수(鄭忠秀) | 1999. 8. 24. ~ 2000. 7. 14. | |
| 32 대 | 명로승(明魯昇) | 2000. 7. 15. ~ 2001. 5. 30. | |
| 33 대 | 김영진(金永珍) | 2001. 5. 31. ~ 2002. 2. 7. | |
| 34 대 | 장윤석(張倫碩) | 2002. 2. 8. ~ 2002. 8. 18. | |
| 35 대 | 유창종(柳昌宗) | 2002. 8. 19. ~ 2002. 11. 17. | |
| 36 대 | 박종열(朴淙烈) | 2002. 11. 18. ~ 2003. 3. 12. | |
| 37 대 | 홍경식(洪景植) | 2003. 3. 13. ~ 2003. 8. 4. | |
| 38 대 | 이기배(李棋培) | 2003. 8. 5. ~ 2004. 5. 31. | |
| 39 대 | 안영욱(安永昱) | 2004. 6. 1. ~ 2005. 4. 7. | |
| 40 대 | 김준규(金畯圭) | 2005. 4. 8. ~ 2007. 3. 4. | |
| 41 대 | 한상대(韓相大) | 2007. 3. 5. ~ 2009. 1. 18. | |
| 42 대 | 채동욱(蔡東旭) | 2009. 1. 19. ~ 2009. 8. 11. | |
| 43 대 | 성영훈(成永薰) | 2009. 8. 12. ~ 2010. 7. 14. | |
| 44 대 | 한명관(韓明官) | 2010. 7. 15. ~ 2011. 8. 21. | |
| 45 대 | 정병두(鄭炳斗) | 2011. 8. 22. ~ 2012. 7. 17. | |
| 46 대 | 황윤성(黃允成) | 2012. 7. 18. ~ 2013. 4. 9. | |
| 47 대 | 강찬우(姜燦佑) | 2013. 4. 10. ~ 2013. 12. 23. | |
| 48 대 | 정인창(鄭仁昌) | 2013. 12. 24. ~ 2015. 2. 10. | |
| 49 대 | 봉 욱(奉 旭) | 2015. 2. 11. ~ 2015. 12. 23 | |
| 50 대 | 김호철(金浩徹) | 2015. 12. 24. ~ 2017. 7. 31. | |
| 51 대 | 이용구(李容九) | 2017. 8. 22. ~ | |

## • 검찰국장

| 대 순 | 성 명 | 재 임 기 간 | 비 고 |
|---|---|---|---|
| 초 대 | 민복기(閔復基) | 1948. 11. 4. ~ 1949. 7. 1. | 1948. 11. 4. 신설 |
| 2 대 | 이태희(李太熙) | 1949. 7. 2. ~ 1949. 9. 22. | |
| 3 대 | 최병석(崔秉錫) | 1949. 11. 8. ~ 1950. 4. 20. | |
| 4 대 | 신언한(申彦瀚) | 1950. 6. 8. ~ 1952. 7. 17. | |
| 5 대 | 권오병(權五柄) | 1952. 7. 18. ~ 1953. 11. 6. | |
| 6 대 | 김장섭(金長涉) | 1953. 11. 23. ~ 1954. 3. 23. | |
| 7 대 | 박천일(朴天一) | 1954. 4. 3. ~ 1956. 7. 24. | |
| 8 대 | 김치열(金致烈) | 1956. 9. 17. ~ 1958. 3. 13. | |
| 9 대 | 김장섭(金長涉) | 1958. 3. 14. ~ 1958. 8. 30. | |
| 10 대 | 주운화(朱雲化) | 1958. 9. 10. ~ 1960. 9. 23. | |
| 11 대 | 김찬수(金纘洙) | 1960. 9. 24. ~ 1961. 7. 19. | |
| 12 대 | 위청용(韋靑龍) | 1961. 7. 20. ~ 1961. 12. 22. | |
| 13 대 | 김용제(金龍濟) | 1962. 1. 26. ~ 1963. 5. 30. | |
| 14 대 | 윤두식(尹斗植) | 1963. 5. 31. ~ 1964. 10. 16. | |
| 15 대 | 윤운영(尹雲永) | 1964. 10. 17. ~ 1966. 11. 18. | |
| 16 대 | 김일두(金一斗) | 1966. 11. 19. ~ 1968. 5. 31. | |
| 17 대 | 김성재(金聖在) | 1968. 6. 1. ~ 1969. 8. 1. | |
| 18 대 | 박원호(朴元鎬) | 1969. 8. 2. ~ 1971. 8. 25. | |
| 19 대 | 이종원(李鐘元) | 1971. 8. 26. ~ 1973. 4. 5. | |
| 20 대 | 서정각(徐廷覺) | 1973. 4. 6. ~ 1975. 9. 30. | |
| 21 대 | 허형구(許亨九) | 1975. 10. 1. ~ 1979. 2. 18. | |
| 22 대 | 문상익(文相翼) | 1979. 2. 19. ~ 1980. 6. 8. | |
| 23 대 | 배명인(裵命仁) | 1980. 6. 9. ~ 1981. 4. 26. | |
| 24 대 | 정해창(丁海昌) | 1981. 4. 27. ~ 1981. 12. 16. | |
| 25 대 | 김기춘(金淇春) | 1981. 12. 17. ~ 1982. 6. 17. | |
| 26 대 | 정구영(鄭銶永) | 1982. 6. 18. ~ 1985. 3. 4. | |
| 27 대 | 김두희(金斗喜) | 1985. 3. 5. ~ 1987. 6. 7. | |
| 28 대 | 김유후(金有厚) | 1987. 6. 8. ~ 1989. 3. 28. | |
| 29 대 | 박종철(朴鍾喆) | 1989. 3. 29. ~ 1990. 3. 26. | |
| 30 대 | 김도언(金道彦) | 1990. 3. 27. ~ 1991. 4. 17. | |
| 31 대 | 최명부(崔明夫) | 1991. 4. 18. ~ 1993. 3. 16. | |
| 32 대 | 김종구(金鍾求) | 1993. 3. 17. ~ 1993. 9. 20. | |
| 33 대 | 최영광(崔永光) | 1993. 9. 21. ~ 1994. 9. 15. | |
| 34 대 | 최 환(崔 桓) | 1994. 9. 16. ~ 1995. 9. 19. | |
| 35 대 | 김진세(金鎭世) | 1995. 9. 20. ~ 1997. 1. 22. | |

| 대 순 | 성 명 | 재 임 기 간 | 비 고 |
|---|---|---|---|
| 36 대 | 박순용(朴舜用) | 1997. 1. 23. ~ 1997. 8. 13. | |
| 37 대 | 최경원(崔慶元) | 1997. 8. 14. ~ 1998. 3. 18. | |
| 38 대 | 신승남(愼承男) | 1998. 3. 23. ~ 1999. 6. 8. | |
| 39 대 | 한부환(韓富煥) | 1999. 6. 9. ~ 2000. 7. 14. | |
| 40 대 | 김학재(金鶴在) | 2000. 7. 15. ~ 2001. 5. 30. | |
| 41 대 | 송광수(宋光洙) | 2001. 5. 31. ~ 2002. 2. 7. | |
| 42 대 | 김진환(金振煥) | 2002. 2. 8. ~ 2002. 8. 18. | |
| 43 대 | 장윤석(張倫碩) | 2002. 8. 19. ~ 2003. 3. 12. | |
| 44 대 | 홍석조(洪錫肇) | 2003. 3. 13. ~ 2003. 8. 4. | |
| 45 대 | 이종백(李鍾伯) | 2003. 8. 5. ~ 2004. 5. 31. | |
| 46 대 | 임채진(林采珍) | 2004. 6. 1. ~ 2006. 2. 5. | |
| 47 대 | 문성우(文晟祐) | 2006. 2. 6. ~ 2008. 3. 9. | |
| 48 대 | 차동민(車東珉) | 2008. 3. 11. ~ 2009. 1. 18. | |
| 49 대 | 한상대(韓相大) | 2009. 1. 19. ~ 2009. 8. 11. | |
| 50 대 | 최교일(崔敎一) | 2009. 8. 12. ~ 2011. 8. 21. | |
| 51 대 | 국민수(鞠敏秀) | 2011. 8. 22. ~ 2013. 4. 9. | |
| 52 대 | 김주현(金周賢) | 2013. 4. 10. ~ 2015. 2. 10. | |
| 53 대 | 안태근(安兌根) | 2015. 2. 11. ~ 2017. 5. 21. | |
| 54 대 | 박균택(朴均澤) | 2017. 5. 22. ~ 2018. 6. 18 | |
| 55 대 | 윤대진(尹大鎭) | 2018. 6. 19. ~ | |

## • 보호국장

| 대 순 | 성 명 | 재 임 기 간 | 비 고 |
|---|---|---|---|
| 초 대 | 서동권(徐東權) | 1981. 1. 26. ~ 1981. 4. 26. | 1981. 1. 19. |
| 2 대 | 박일흠(朴一欽) | 1981. 4. 27. ~ 1982. 6. 20. | 신설 |
| 3 대 | 이병근(李秉根) | 1982. 6. 21. ~ 1983. 7. 31. | |
| 4 대 | 김도언(金道彦) | 1983. 8. 17. ~ 1985. 3. 5. | |
| 5 ~ 6대 | 임상현(任尙鉉) | 1985. 3. 12. ~ 1987. 6. 7. | |
| 7 대 | 변재일(卞在日) | 1987. 6. 8. ~ 1989. 3. 28. | |
| 8 대 | 장응수(張應水) | 1989. 3. 29. ~ 1991. 4. 17. | |
| 9 대 | 지헌범(池憲範) | 1991. 4. 18. ~ 1992. 7. 28. | |
| 10 대 | 김기수(金起秀) | 1992. 7. 29. ~ 1993. 3. 16. | |
| 11 대 | 김태정(金泰政) | 1993. 3. 17. ~ 1993. 4. 2. | |
| 12 대 | 원정일(元正一) | 1993. 4. 3. ~ 1993. 9. 20. | |
| 13 대 | 김수장(金壽長) | 1993. 9. 21. ~ 1994. 9. 15. | |
| 14 대 | 김병학(金秉學) | 1994. 9. 16. ~ 1995. 9. 19. | |
| 15 대 | 이재신(李載侁) | 1995. 9. 20. ~ 1997. 1. 22. | |
| 16 대 | 송정호(宋正鎬) | 1997. 1. 23. ~ 1997. 8. 13. | |
| 17 대 | 김영철(金永喆) | 1997. 8. 14. ~ 1998. 3. 22. | |
| 18 대 | 윤동민(尹東旻) | 1998. 3. 23. ~ 1999. 2. 3. | |
| 19 대 | 신광옥(辛光玉) | 1999. 2. 22. ~ 1999. 6. 8. | |
| 20 대 | 정충수(鄭忠秀) | 1999. 6. 9. ~ 1999. 8. 23. | |
| 21 대 | 박종열(朴淙烈) | 1999. 8. 24. ~ 2001. 5. 30. | |
| 22 대 | 김종빈(金鍾彬) | 2001. 5. 31. ~ 2002. 2. 7. | |
| 23 대 | 조규정(趙圭政) | 2002. 2. 8. ~ 2002. 11. 17. | |
| 24 대 | 윤종남(尹鍾南) | 2002. 11. 18. ~ 2003. 3. 12. | |
| 25 대 | 정동기(鄭東基) | 2003. 3. 13. ~ 2004. 5. 31. | |
| 26 대 | 정진호(鄭振昊) | 2004. 6. 1. ~ 2005. 4. 7. | |
| 27 대 | 이승구(李承玖) | 2005. 4. 8. ~ 2005. 9. 11. | |
| 28 대 | 김수민(金秀敏) | 2005. 9. 12. ~ 2007. 3. 4. | |
| 29 대 | 이상도(李相燾) | 2007. 3. 5. ~ 2008. 3. 10. | |

## • 범죄예방정책국장

| 대 순 | 성 명 | 재 임 기 간 | 비 고 |
|---|---|---|---|
| 초 대 | 박기준(朴基俊) | 2008. 3. 11. ~ 2009. 1. 18. | |
| 2 대 | 소병철(蘇秉哲) | 2009. 1. 19. ~ 2009. 8. 11. | |
| 3 대 | 주철현(朱哲鉉) | 2009. 8. 12. ~ 2010. 7. 14. | |
| 4 대 | 김수남(金秀南) | 2010. 7. 15. ~ 2011. 8. 21. | |
| 5 대 | 김희관(金熙官) | 2011. 8. 22. ~ 2012. 7. 17. | |
| 6 대 | 이건주(李健周) | 2012. 7. 18. ~ 2013. 4. 9. | |
| 7 대 | 문무일(文武一) | 2013. 4. 10. ~ 2013. 12. 23. | |
| 8 대 | 황철규(黃喆奎) | 2013. 12. 24. ~ 2015. 2. 10. | |
| 9 대 | 오광수(吳桄洙) | 2015. 2. 11. ~ 2015. 12. 23. | |
| 10 대 | 이상호(李相虎) | 2015. 12. 24. ~ 2017. 7. 31. | |
| 11 대 | 고기영(高基榮) | 2017. 8. 1. ~ 2018. 2. 27. | |
| 12 대 | 강호성(姜鎬成) | 2018. 4. 2. ~ | |

## • 인권국장

| 대 순 | 성 명 | 재 임 기 간 | 비 고 |
|---|---|---|---|
| 초 대 | 김준규(金畯圭) | 2006. 5. 3. ~ 2006. 8. 6. | 2006. 5. 3.신설 |
| 2 대 | 김종훈(金鍾勳) | 2006. 8. 7. ~ 2009. 2. 15. | 개방직 |
| 3 대 | 조영곤(曺永昆) | 2009. 2. 28. ~ 2009. 8. 11. | 검 사 |
| 4 대 | 송찬엽(宋讚燁) | 2009. 8. 31. ~ 2010. 7. 14. | 검 사 |
| 5 대 | 박민표(朴珉豹) | 2010. 8. 2. ~ 2011. 9. 4. | 검 사 |
| 6 대 | 이명재(李明宰) | 2011. 9. 5. ~ 2012. 7. 17. | 검 사 |
| 7 대 | 봉 욱(奉 旭) | 2012. 7. 26. ~ 2013. 4. 9. | 검 사 |
| 8 대 | 안태근(安兌根) | 2013. 4. 23. ~ 2013. 12. 23. | 검 사 |
| 9 대 | 한찬식(韓璨湜) | 2014. 1. 16. ~ 2015. 2. 10. | 검 사 |
| 10 대 | 차경환(車京煥) | 2015. 2. 25. ~ 2015. 12. 23. | 검 사 |
| 11 대 | 권정훈(權政勳) | 2016. 1. 13. ~ 2017. 8. 16. | 검 사 |
| 12 대 | 황희석(黃希錫) | 2017. 9. 29. ~ | 개방직 |

## • 감찰관

| 대 순 | 성 명 | 재 임 기 간 | 비 고 |
|---|---|---|---|
| 초 대 | 임채진(林采珍) | 2005. 2. 1. ~ 2005. 4. 7. | 직무대리 |
| 2 대 | 선우영(鮮于泳) | 2005. 4. 8. ~ 2005. 9. 11. | |
| 3 대 | 이승구(李承玖) | 2005. 9. 12. ~ 2006. 2. 5. | |
| 4 대 | 안종택(安鍾澤) | 2006. 2. 6. ~ 2007. 3. 4. | |
| 5 대 | 이복태(李福泰) | 2007. 3. 5. ~ 2008. 3. 10. | |
| 6 대 | 곽상욱(郭相煜) | 2008. 4. 15. ~ 2009. 8. 11. | |
| 7 대 | 이경재(李慶在) | 2009. 9. 10. ~ 2010. 7. 14. | |
| 8 대 | 안장근(安章根) | 2010. 9. 1. ~ 2012. 8. 31. | 개방직 |
| 9 대 | 안장근(安章根) | 2012. 9. 1. ~ 2014. 8. 31. | 개방직 |
| 10 대 | 김주현(金周賢) | 2014. 9. 1. ~ 2015. 2. 10. | 직무대리 |
| 11 대 | 안태근(安兌根) | 2015. 2. 11. ~ 2015. 3. 15. | 직무대리 |
| 12 대 | 장인종(張仁鍾) | 2015. 3. 16. ~ 2017. 3. 15. | 개방직 |
| 13 대 | 장인종(張仁鍾) | 2017. 3. 16. ~ 2018. 4. 19. | 개방직 |
| 14 대 | 송규종(宋奎鍾) | 2018. 4. 20. ~ 2018. 7. 18. | 직무대리 |
| 15 대 | 이정현(李定炫) | 2018. 7. 18. ~ | 직무대리 |

## • 교정국장

| 대 순 | 성 명 | 재 임 기 간 | 비 고 |
|---|---|---|---|
| 초 대 | 윤용섭(尹用燮) | 1948. 11. 8. ~ 1949. 11. 8. | 1948. 11. 4. |
| 2 대 | 원탁연(元鐸淵) | 1949. 11. 8. ~ 1951. 8. 28. | 형정국 신설 |
| 3 대 | 최세황(崔世璜) | 1951. 8. 29. ~ 1952. 7. 18. | |
| 4 대 | 신언한(申彦瀚) | 1952. 7. 19. ~ 1958. 3. 11. | |
| 5 대 | 이병호(李丙浩) | 1958. 3. 12. ~ 1960. 9. 23. | |
| 6 대 | 이홍규(李弘圭) | 1960. 9. 24. ~ 1961. 6. 21. | |
| 7 대 | 서일교(徐壹敎) | 1961. 6. 22. ~ 1962. 3. 18. | 1962. 5. 21. |
| 8 대 | 이봉성(李鳳成) | 1962. 3. 19. ~ 1964. 10. 16. | 교정국으로 |
| 9 대 | 윤두식(尹斗植) | 1964. 10. 17. ~ 1966. 11. 18. | 개편 |
| 10 대 | 윤운영(尹雲永) | 1966. 11. 19. ~ 1968. 12. 1. | |
| 11 대 | 김덕문(金德文) | 1968. 12. 2. ~ 1971. 8. 25. | |
| 12 대 | 김일두(金一斗) | 1971. 8. 26. ~ 1973. 4. 5. | |
| 13 대 | 이종원(李鐘元) | 1973. 4. 6. ~ 1975. 9. 30. | |
| 14 대 | 김윤근(金潤槿) | 1975. 10. 1. ~ 1977. 2. 16. | |

| 대 순 | 성 명 | 재 임 기 간 | 비 고 |
|---|---|---|---|
| 15 대 | 송종진(宋鍾辰) | 1977. 2. 17. ~ 1979. 2. 18. | |
| 16 대 | 김석휘(金錫輝) | 1979. 2. 19. ~ 1981. 4. 26. | |
| 17 대 | 안경상(安景相) | 1981. 4. 27. ~ 1981. 12. 16. | |
| 18 대 | 김종건(金鐘鍵) | 1981. 12. 17. ~ 1983. 7. 31. | |
| 19 대 | 이병근(李秉根) | 1983. 8. 1. ~ 1986. 5. 2. | |
| 20 대 | 허은도(許殷道) | 1986. 5. 3. ~ 1987. 6. 7. | |
| 21 대 | 김동철(金東哲) | 1987. 6. 8. ~ 1988. 8. 24. | |
| 22 대 | 신 건(辛 建) | 1988. 8. 25. ~ 1991. 4. 17. | |
| 23 대 | 유순석(柳淳錫) | 1991. 4. 18. ~ 1993. 3. 16. | |
| 24 대 | 김기수(金起秀) | 1993. 3. 17. ~ 1993. 5. 31. | 직무대리 |
| 25 대 | 원정일(元正一) | 1993. 6. 1. ~ 1993. 9. 20. | |
| 26 대 | 김택수(金澤秀) | 1993. 9. 21. ~ 1994. 9. 15. | |
| 27 대 | 원정일(元正一) | 1994. 9. 16. ~ 1995. 9. 19. | 검사장급 |
| 28 대 | 박순용(朴舜用) | 1995. 9. 20. ~ 1997. 1. 22. | |
| 29 대 | 유재성(柳在成) | 1997. 1. 23. ~ 1997. 8. 13. | |
| 30 대 | 김수장(金壽長) | 1997. 8. 14. ~ 1998. 3. 22. | |
| 31 대 | 김경한(金慶漢) | 1998. 3. 23. ~ 1999. 6. 8. | |
| 32 대 | 이순길(李淳吉) | 1999. 6. 9. ~ 2001. 6. 30. | 일반직 |
| 33 대 | 김명환(金明煥) | 2001. 7. 1. ~ 2002. 12. 31. | |
| 34 대 | 하근수(河根洙) | 2003. 1. 1. ~ 2003. 12. 31. | |
| 35 대 | 양봉태(梁奉泰) | 2004. 1. 19. ~ 2005. 12. 31. | |
| 36 대 | 이인순(李仁焞) | 2006. 1. 1. ~ 2006. 6. 25. | |
| 37 대 | 승성신(承聖信) | 2006. 6. 26. ~ 2007. 11. 29. | |

## • 교정본부장

| 대 순 | 성 명 | 재 임 기 간 | 비 고 |
|---|---|---|---|
| 초 대 | 승성신(承聖信) | 2007. 11. 30. ~ 2008. 6. 29. | |
| 2 대 | 이태희(李台熙) | 2008. 6. 30. ~ 2010. 6. 29. | |
| 3 대 | 안동주(安東珠) | 2010. 6. 30. ~ 2012. 6. 30. | |
| 4 대 | 김태훈(金兌勳) | 2012. 7. 1. ~ 2014. 6. 30. | 일반직 |
| 5 대 | 윤경식(尹慶植) | 2014. 7. 16. ~ 2016. 6. 30. | |
| 6 대 | 김학성(金學成) | 2016. 7. 1. ~ 2018. 6. 30. | |
| 7 대 | 최강주(崔康柱) | 2018. 7. 1. ~ | |

## • 출입국관리국장

| 대 순 | 성 명 | 재 임 기 간 | 비 고 |
|---|---|---|---|
| 초 대 | 이영환(李永煥) | 1970. 9. 1. ~ 1971. 8. 25. | 1970. 8. 20. |
| 2 대 | 정익원(鄭益源) | 1971. 8. 26. ~ 1972. 11. 21. | 신설 |
| 3 대 | 안경열(安慶烈) | 1972. 11. 22. ~ 1976. 6. 20. | |
| 4 대 | 이길주(李桔柱) | 1976. 6. 21. ~ 1978. 2. 10. | 검사장급 |
| 5 대 | 정명래(鄭明來) | 1978. 2. 11. ~ 1980. 6. 8. | |
| 6 대 | 김용인(金用璘) | 1980. 6. 9. ~ 1981. 4. 26. | |
| 7 대 | 김기춘(金淇春) | 1981. 4. 27. ~ 1981. 12. 16. | |
| 8 대 | 정구영(鄭銶永) | 1981. 12. 17. ~ 1982. 6. 17. | |
| 9 대 | 박희태(朴熹太) | 1982. 6. 18. ~ 1983. 7. 31. | |
| 10 대 | 안태현(安泰鉉) | 1983. 8. 1. ~ 1987. 2. 28. | 일반직 |
| 11 대 | 조기현(曺麒鉉) | 1987. 3. 2. ~ 1989. 4. 14. | |
| 12 대 | 김우진(金宇鎭) | 1989. 4. 15. ~ 1991. 6. 30. | |
| 13 대 | 김시평(金時評) | 1991. 7. 1. ~ 1993. 9. 30. | |
| 14 대 | 홍석종(洪錫宗) | 1993. 10. 1. ~ 1995. 3. 31. | |
| 15 대 | 유병랑(兪炳郎) | 1995. 4. 1. ~ 1997. 5. 31. | |
| 16 대 | 구창덕(具昌德) | 1997. 6. 1. ~ 1999. 4. 1. | |
| 17 대 | 김수영(金秀永) | 1999. 4. 2. ~ 2001. 6. 30. | |
| 18 대 | 최수근(崔洙根) | 2001. 7. 1. ~ 2003. 11. 21. | |
| 19 대 | 이민희(李珉熙) | 2003. 12. 5. ~ 2005. 12. 4. | 계약직 |
| 20 대 | 강명득(姜命得) | 2005. 12. 5. ~ 2007. 4. 15. | |

##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대 순 | 성 명 | 재 임 기 간 | 비 고 |
|---|---|---|---|
| 초 대 | 추규호(秋圭昊) | 2007. 7. 10. ~ 2009. 7. 10. | 계약직 |
| 2 대 | 석동현(石東炫) | 2009. 8. 12. ~ 2011. 8. 21. | 검사장 |
| 3 대 | 이창세(李昌世) | 2011. 8. 22. ~ 2013. 4. 3. | 검사장 |
| 4 대 | 정동민(鄭東敏) | 2013. 4. 10. ~ 2013. 12. 23. | 검사장 |
| 5 대 | 한무근(韓武根) | 2013. 12. 24. ~ 2015. 2. 10. | 검사장 |
| 6 대 | 김영준(金英晙) | 2015. 2. 11. ~ 2015. 12. 23. | 검사장 |
| 7 대 | 진경준(陳炅準) | 2015. 12. 24. ~ 2016. 5. 22. | 검사장 |
| 8 대 | 김우현(金宇鉉) | 2016. 5. 23. ~ 2017. 7. 31 | 검사장 |
| 9 대 | 차규근(車圭根) | 2017. 9. 4. ~ | 일반직 |

# 제5절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명단
## (2018. 12. 31. 기준)

## 1. 본 부(5급 이상)

| 직 위 | 성 명 | 발 령 일 |
|---|---|---|
| **장 관** | **박상기** | **2017. 7. 19.** |
| **차 관** | **김오수** | **2018. 6. 22.** |
| 장관비서관 | 허철안 | 2017. 7. 26. |
| 장관정책보좌관 | 이종근 | 2017. 8. 17. |
| 〃 | 구승희 | 2017. 8. 16. |
| 감찰관 | | |
| 감찰담당관 | 이정현 | 2018. 7. 19. |
| 검사 | 이광석 | 2018. 7. 19. |
| 검사 | 이진용 | 2018. 7. 19. |
| 검찰사무관 | 조민호 | 2015. 8. 31. |
| 〃 | 김봉석 | 2015. 8. 31. |
| 교정관 | 정 진 | 2015. 1. 19. |
| 감사담당관 | 문권점 | 2016. 7. 4. |
| 서기관 | 이영일 | 2017. 1. 1. |
| 〃 | 김종관 | 2018. 1. 8. |
| 〃 | 이한식 | 2015. 8. 3. |
| 행정사무관 | 정동환 | 2018. 1. 15. |
| 〃 | 조시형 | 2018. 1. 15. |
| 〃 | 한제오 | 2018. 5. 23. |
| 〃 | 이상영 | 2018. 1. 15. |
| 공업사무관 | 최해규 | 2018. 7. 1. |
| 운영지원과장 | 유지중 | 2016. 7. 4. |
| 행정사무관 | 허태구 | 2018. 1. 15. |
| 〃 | 김경수 | 2018. 1. 15. |
| 〃 | 김범영 | 2018. 1. 15. |
| 〃 | 홍진희 | 2017. 8. 1. |
| 시설사무관 | 임영탁 | 2016. 12. 23. |
| 대변인 | 심재철 | 2018. 7. 19. |
| 홍보담당관 | 한정진 | 2013. 9. 1. |
| 서기관(일반임기제) | 송세시리아 | 2010. 9. 29. |
| 행정사무관 | 고영석 | 2016. 12. 22. |
| 검찰사무관(일반임기제) | 이상우 | 2014. 5. 1. |
| **기획조정실장** | **강남일** | **2018. 6. 22.** |
| 정책기획관 | 이상순 | 2018. 1. 8. |
| 검사 | 박은혜 | 2016. 8. 31. |
| 검사 | 김영준 | 2018. 7. 19. |
| 비상안전기획관 | 김만하 | 2014. 1. 1. |

| 직 위 | 성 명 | 발 령 일 |
|---|---|---|
| 행정사무관 | 이강채 | 2013. 7. 29. |
| 기획재정담당관 | 김상권 | 2018. 1. 8. |
| 서기관 | 최상혁 | 2016. 7. 4. |
| 〃 | 김홍준 | 2018. 1. 8. |
| 행정사무관 | 이준석 | 2015. 4. 7. |
| 〃 | 이현정 | 2017. 4. 1. |
| 혁신행정담당관 | 최정석 | 2016. 1. 1. |
| 서기관 | 조오행 | 2016. 7. 4. |
| 행정사무관 | 임성훈 | 2018. 10. 15. |
| 〃 | 양동규 | 2016. 11. 30. |
| 시설담당관 | 조록환 | 2014. 12. 31. |
| 행정서기관 | 김정복 | 2015. 1. 1. |
| 시설서기관 | 이석재 | 2015. 8. 3. |
| 시설사무관 | 김영채 | 2013. 12. 4. |
| 〃 | 홍성운 | 2014. 11. 12. |
| 〃 | 엄동철 | 2014. 11. 12. |
| 〃 | 강동헌 | 2015. 4. 7. |
| 〃 | 최기홍 | 2018. 4. 16. |
| 공업사무관 | 이형섭 | 2014. 11. 12. |
| 〃 | 강병홍 | 2014. 11. 12. |
| 정보화담당관 | 김종협 | 2018. 7. 1. |
| 기술서기관 | 윤석태 | 2018. 1. 15. |
| 〃 | 진우석 | 2018. 7. 1. |
| 전산사무관 | 유상동 | 2018. 7. 1. |
| 〃 | 정혜찬 | 2015. 10. 12. |
| 〃 | 서종석 | 2018. 1. 15. |
| 〃 | 정성훈 | 2018. 10. 11. |
| 정책성과관리팀장 | 이천재 | 2018. 1. 8. |
| 행정사무관 | 김용갑 | 2016. 5. 23. |
| 〃 | 박상열 | 2018. 2. 19. |
| 행복민원센터장 | 강의곤 | 2018. 1. 8. |
| 시설사무관 | 손영조 | 2018. 7. 2. |
|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 김영기 | 2018. 7. 19. |
| 검사 | 박혜영 | 2018. 2. 26. |
| 전산사무관 | 원민정 | 2017. 1. 16. |
| 〃 | 김봉우 | 2016. 5. 2. |
| 보호사무관 | 이성실 | 2018. 8. 27. |

| 직 위 | 성 명 | 발 령 일 |
|---|---|---|
| **법 무 실 장** | **이용구** | **2017. 8. 22.** |
| 법 무 심 의 관 | 전태석 | 2018. 10. 1. |
| 검 사 | 조민우 | 2016. 1. 27. |
| 〃 | 김준선 | 2017. 2. 20. |
| 검 찰 사 무 관 | 이보균 | 2018. 4. 30. |
|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 고민지 | 2018. 2. 5. |
| 〃 | 김도윤 | 2018. 2. 5. |
| 〃 | 정혜림 | 2018. 2. 5. |
| 법 무 과 장 | 박하영 | 2018. 7. 19. |
| 검 사 | 신재홍 | 2017. 2. 20. |
| 검 찰 수 사 서 기 관 | 김용관 | 2017. 1. 16. |
| 검 찰 수 사 서 기 관 | 박치활 | 2018. 1. 26. |
| 검 찰 사 무 관 | 손주근 | 2017. 9. 27. |
|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 윤성훈 | 2018. 2. 5. |
| 〃 | 설기석 | 2018. 7. 30. |
| 국 제 법 무 과 장 | 한창완 | 2018. 4. 9. |
| 검 사 | 신동환 | 2017. 2. 20. |
| 〃 | 김상현 | 2017. 2. 20. |
| 검 찰 사 무 관 | 김진형 | 2018. 7. 9. |
|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 이언호 | 2018. 2. 5. |
| 〃 | 최 초 | 2016. 10. 4. |
| 〃 | 박주현 | 2018. 2. 5. |
| 〃 | 김수진 | 2018. 2. 13. |
| 국 가 송 무 과 장 | 김지완 | 2018. 7. 19. |
| 검 사 | 최성수 | 2017. 8. 17. |
| 검 찰 사 무 관 | 김연천 | 2016. 8. 29. |
| 〃 | 이창균 | 2018. 7. 9. |
|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 류정민 | 2016. 4. 1. |
| 〃 | 박건우 | 2018. 2. 5. |
| 통 일 법 무 과 장 | 조광환 | 2018. 7. 19. |
| 검 사 | 김정훈 | 2017. 2. 20. |
| 〃 | 최용보 | 2016. 1. 27. |
| 검 찰 사 무 관 | 장석경 | 2017. 9. 27. |
| 〃 | 윤석인 | 2018. 1. 26. |
| 행 정 사 무 관 | 유재륜 | 2018. 10. 15. |
|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 황성연 | 2018. 9. 17. |
| 상 사 법 무 과 장 | 명한석 | 2018. 7. 23. |
| 검 사 | 조재철 | 2017. 2. 20. |
| 행정서기관(일반임기제) | 이규철 | 2015. 11. 16. |

| 직 위 | 성 명 | 발 령 일 |
|---|---|---|
| 검찰사무관(일반임기제) | 배근수 | 2016. 2. 17. |
|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 이지은 | 2018. 2. 25. |
| 〃 | 김효선 | 2018. 7. 30. |
| 법 조 인 력 과 장 | 이영남 | 2018. 7. 19. |
| 검 사 | 김인숙 | 2018. 7. 19. |
| 〃 | 박기태 | 2017. 8. 17. |
| 검 찰 사 무 관 | 안태성 | 2016. 8. 29. |
| 행 정 사 무 관 | 최영만 | 2016. 5. 24. |
| 〃 | 김효민 | 2018. 1. 8. |
| 〃 | 이승항 | 2013. 7. 29. |
| **검 찰 국 장** | **윤대진** | **2018. 6. 22.** |
| 사 법 연 수 원 부 원 장 | 노승권 | 2018. 6. 22. |
| 검 찰 과 장 | 신자용 | 2018. 7. 19. |
| 검 사 | 김윤선 | 2018. 7. 19. |
| 〃 | 김수홍 | 2016. 1. 27. |
| 〃 | 나희석 | 2017. 2. 20. |
| 〃 | 이건표 | 2018. 2. 5 |
| 검 찰 수 사 서 기 관 | 박영서 | 2018. 7. 9. |
| 〃 | 김동규 | 2017. 9. 27. |
| 검 찰 사 무 관 | 이동영 | 2018. 1. 26. |
| 형 사 기 획 과 장 | 진재선 | 2018. 7. 19. |
| 검 사 | 최재순 | 2018. 2. 5. |
| 〃 | 조수영 | 2018. 7. 19. |
| 검 찰 수 사 서 기 관 | 김성곤 | 2018. 7. 9. |
| 검 찰 사 무 관 | 백상홍 | 2015. 8. 31. |
| 〃 | 정영운 | 2016. 2. 22. |
| 공 안 기 획 과 장 | 서인선 | 2018. 7. 19. |
| 검 사 | 신상우 | 2018. 2. 5. |
| 〃 | 김종욱 | 2018. 7. 19. |
| 검 찰 사 무 관 | 김광수 | 2015. 8. 31. |
| 〃 | 고영록 | 2018. 7. 9. |
| 국 제 형 사 과 장 | 구승모 | 2018. 7. 19. |
| 검 사 | 김형원 | 2017. 2. 20. |
| 〃 | 김남수 | 2018. 2. 5. |
| 검 찰 사 무 관 | 최창환 | 2017. 1. 16. |
| 〃 | 고영호 | 2018. 7. 9. |
| 형 사 법 제 과 장 | 최지석 | 2018. 7. 19. |
| 검 사 | 신희영 | 2017. 8. 17. |
| 〃 | 한상형 | 2018. 2. 5. |

| 직 위 | 성 명 | 발 령 일 |
|---|---|---|
| 검 찰 사 무 관 | 윤병득 | 2016. 2. 22. |
| 〃 | 김창옥 | 2017. 9. 27. |
| **범 죄 예 방 정 책 국 장** | **강호성** | **2018. 4. 2.** |
| 범 죄 예 방 기 획 과 장 | 황진규 | 2018. 8. 27. |
| 서 기 관 | 염정훈 | 2018. 8. 27. |
| 보 호 사 무 관 | 오상섭 | 2013. 10. 1. |
| 〃 | 김충섭 | 2016. 1. 1. |
| 〃 | 김병배 | 2018. 1. 22. |
| 〃 | 강신원 | 2018. 1. 22. |
| 행 정 사 무 관 | 신한헌 | 2018. 7. 16. |
| 보 호 정 책 과 장 | 정소연 | 2018. 4. 2. |
| 서 기 관 | 이영미 | 2018. 8. 27. |
| 보 호 사 무 관 | 이동준 | 2017. 1. 9. |
| 보 호 사 무 관 | 정주호 | 2018. 1. 22. |
| 보 호 사 무 관 | 홍성학 | 2018. 7. 16. |
| 행 정 사 무 관 | 이동훈 | 2018. 1. 15. |
| 〃 | 임혜진 | 2018. 1. 1. |
| 치 료 처 우 과 장 | 이형섭 | 2018. 8. 27. |
| 서 기 관 | 양현규 | 2018. 6. 14. |
| 검 찰 사 무 관 | 최수종 | 2015. 8. 31. |
| 보 호 사 무 관 | 김영배 | 2018. 8. 27. |
| 〃 | 권은아 | 2015. 1. 12. |
| 보 호 관 찰 과 장 | 이영면 | 2018. 8. 27. |
| 서 기 관 | 심선옥 | 2018. 8. 27. |
| 보 호 사 무 관 | 김동하 | 2018. 1. 22. |
| 〃 | 성봉호 | 2015. 8. 31. |
| 〃 | 김구회 | 2016. 7. 18. |
| 소 년 보 호 과 장 | 김용운 | 2018. 1. 22. |
| 서 기 관 | 김태섭 | 2018. 8. 27. |
| 보 호 사 무 관 | 김지수 | 2016. 7. 18. |
| 〃 | 전상호 | 2018. 7. 16. |
| 특 정 범 죄 자 관 리 과 장 | 손세헌 | 2018. 8. 27. |
| 서 기 관 | 김양곤 | 2018. 8. 27. |
| 보 호 사 무 관 | 민덕희 | 2015. 8. 31. |
| 〃 | 강영욱 | 2016. 1. 1. |
| 〃 | 김충원 | 2017. 1. 9. |

| 직 위 | 성 명 | 발 령 일 |
|---|---|---|
| **인 권 국 장** | **황희석** | **2017. 9. 29.** |
| 인 권 정 책 과 장 | 오유진 | 2017. 11. 16. |
| 서 기 관 | 김에오 | 2017. 9. 29. |
| 검 찰 사 무 관 | 박광수 | 2018. 1. 26. |
| 행 정 사 무 관 | 김현우 | 2018. 7. 2. |
| 〃 | 김경모 | 2018. 8. 6. |
| 〃 | 박은영 | 2017. 12. 4. |
| 〃 | 신유정 | 2018. 2. 5. |
| 인 권 구 조 과 장 | 김종현 | 2018. 9. 3. |
| 서 기 관 | 조상민 | 2017. 9. 29. |
| 검 찰 사 무 관 | 최현태 | 2016. 2. 22.. |
| 행 정 사 무 관 | 홍주영 | 2018. 10. 15. |
| 〃 | 서혜주 | 2014. 9. 22.. |
| 〃 | 윤지원 | 2018. 2.. 5. |
| 인 권 조 사 과 장 | 최두천 | 2018. 7. 19. |
| 검 사 | 허용준 | 2018. 2.. 5. |
| 검 찰 사 무 관 | 조수희 | 2017. 9. 27. |
| 〃 | 이창준 | 2016. 2. 22. |
| 여 성 아 동 인 권 과 장 | 김영주 | 2018. 4. 2. |
| 검 찰 수 사 서 기 관 | 이정국 | 2017. 9. 27. |
| 행 정 사 무 관 | 김유호 | 2017. 1. 1. |
| 검 찰 사 무 관 | 이진선 | 2018. 1. 26. |
| **교 정 본 부 장** | **최강주** | **2018. 7. 1.** |
| 교 정 정 책 단 장 | 유승만 | 2018. 8. 27. |
| 보 안 정 책 단 장 | 박병용 | 2018. 8. 27. |
| 교 정 기 획 과 장 | 유태오 | 2018. 8. 27. |
| 서 기 관 | 조병주 | 2018. 8. 27. |
| 〃 | 금용명 | 2017. 2. 13. |
| 교 정 관 | 안영삼 | 2017. 2. 13. |
| 〃 | 박대철 | 2015. 8. 3. |
| 〃 | 조관성 | 2017. 2. 13. |
| 〃 | 이정용 | 2016. 1. 25. |
| 〃 | 최재우 | 2017. 7. 31. |
| 〃 | 문정훈 | 2018. 8. 27. |

| 직 위 | 성 명 | 발 령 일 |
|---|---|---|
| 직업훈련과장 | 최규철 | 2018. 12. 17. |
| 교정관 | 허만혁 | 2017. 2. 13. |
| 〃 | 장원재 | 2018. 1. 1. |
| 행정사무관 | 이준서 | 2016. 4. 5. |
| 사회복귀과장 | 윤창식 | 2018. 12. 17. |
| 교정관 | 김광희 | 2016. 9. 12. |
| 〃 | 이규성 | 2017. 2. 13. |
| 〃 | 송진수 | 2016. 9. 12. |
| 〃 | 주기남 | 2018. 8. 27 |
| 복지과장 | 김남주 | 2018. 12. 17. |
| 교정관 | 심재동 | 2016. 3. 14. |
| 행정사무관 | 권태성 | 2018. 1. 15. |
| 시설사무관 | 오성근 | 2015. 8. 3. |
| 보안과장 | 우희경 | 2018. 12. 17. |
| 교정관 | 서호성 | 2015. 8. 3. |
| 〃 | 조진호 | 2018. 12. 17. |
| 〃 | 황진석 | 2018. 1. 1. |
| 〃 | 허영열 | 2018. 10. 29 |
| 분류심사과장 | 하영훈 | 2018. 12. 17. |
| 서기관 | 윤순풍 | 2018. 12. 17. |
| 교정관 | 허덕환 | 2018. 1. 1. |
| 〃 | 최종일 | 2018. 8. 27. |
| 의료과장 | 김동환 | 2018. 8. 27. |
| 교정관 | 박기주 | 2016. 9. 12. |
| 〃 | 김선희 | 2018. 8. 27. |
| 심리치료과장 | 박수연 | 2018. 12. 17. |
| 교정관 | 정혜리 | 2018. 1. 1. |
| 〃 | 이도곤 | 2018. 8. 27. |
| 행정사무관 | 김병천 | 2016. 9. 12. |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차규근** | **2017. 9. 4.** |
| 출입국정책단장 | 김영근 | 2018. 8. 6. |
| 국적·통합정책단장 | 유복근 | 2018. 8. 20. |
| 출입국기획과장 | 이재유 | 2018. 7. 16. |
| 서기관 | 문수용 | 2018. 7. 16. |
| 출입국관리사무관 | 김태형 | 2018. 1. 1. |
| 〃 | 박제성 | 2018. 7. 23. |
| 〃 | 이대우 | 2017. 1. 9. |
| 〃 | 이향숙 | 2018. 7. 23. |
| 출입국심사과장 | 김두락 | 2018. 1. 1. |
| 서기관 | 나현웅 | 2018. 7. 16. |
| 출입국관리사무관 | 이호원 | 2018. 7. 23. |
| 〃 | 손흥기 | 2018. 6. 4. |
| 체류관리과장 | 이덕룡 | 2018. 1. 1. |
| 출입국관리사무관 | 김종복 | 2018. 2. 19. |
| 〃 | 이승현 | 2015. 8. 10. |
| 〃 | 김명훈 | 2018. 1. 1. |
| 〃 | 주지정 | 2018. 7. 23. |
| 이민조사과장 | 이기흠 | 2018. 8. 27. |
| 출입국관리사무관 | 강성록 | 2018. 3. 5. |
| 〃 | 박홍상 | 2018. 1. 1. |
| 〃 | 박주현 | 2018. 7. 23. |
| 이민정보과장 | 이상달 | 2018. 1. 1. |
| 출입국관리사무관 | 임준식 | 2017. 1. 9. |
| 〃 | 김기성 | 2017. 1. 9. |
| 외국인정책과장 | 강성환 | 2017. 9. 4. |
| 서기관 | 공존행 | 2018. 7. 16. |
| 출입국관리사무관 | 김세진 | 2018. 1. 1. |
| 〃 | 김기락 | 2018. 2. 27. |
| 〃 | 서석주 | 2018. 7. 23. |
| 국적과장 | 반재열 | 2018. 1. 1. |
| 출입국관리사무관 | 김진성 | 2013. 7. 29. |
| 〃 | 황민하 | 2018. 1. 1. |
| 〃 | 배창준 | 2018. 1. 1. |
| 이민통합과장 | 육승훈 | 2016. 7. 20. |
| 출입국관리사무관 | 유성오 | 2018. 1. 1. |
| 〃 | 유현송 | 2018. 7. 23. |
| 〃 | 윤병승 | 2018. 1. 1. |
| 〃 | 주태길 | 2018. 7. 23. |
| 난민과장 | 김정도 | 2018. 4. 1. |
| 출입국관리사무관 | 구병모 | 2015. 3. 7. |
| 〃 | 이정미 | 2016. 1. 27. |
| 〃 | 김종승 | 2018. 1. 7. |

# 2. 법무연수원(4급 이상)

| 직 위 | 직 급 | 성 명 | 발 령 일 |
|---|---|---|---|
| 원 장 | 검 사 | 조 은 석 | 2018. 06. 22. |
| 기 획 부 장 | 검 사 | 이 영 주 | 2018. 06. 22. |
| 용 인 분 원 장 | 검 사 | 안 권 섭 | 2018. 07. 19. |
| 교 정 연 수 부 장 | 고 위 공 무 원 | 김 명 철 | 2018. 08. 27. |
| 연 구 위 원 | 검 사 | 장 호 중 | 2017. 10. 30. |
| | | 윤 영 준 | 2018. 07. 19. |
| | | 김 재 구 | 2018. 07. 19. |
| | | 안 미 영 | 2017. 08. 17. |
| | | 류 장 만 | 2014. 04. 21. |
| | | 정 규 영 | 2017. 08. 17. |
| | 고 위 공 무 원 | 천 우 정 | 2018. 08. 06. |
| 검 사 교 수 | 검 사 | 전 승 수 | 2018. 07. 19. |
| | | 조 재 빈 | 2018. 07. 19. |
| | | 박 지 영 | 2018. 07. 19. |
| | | 한 제 희 | 2018. 07. 19. |
| | | 김 재 하 | 2018. 02. 23. |
| | | 반 종 욱 | 2018. 07. 19. |
| | | 이 성 식 | 2018. 07. 19. |
| | | 위 수 현 | 2017. 02. 20. |
| | | 김 은 미 | 2017. 02. 20. |
| | | 장 준 호 | 2018. 02. 05. |
| | | 양 선 순 | 2018. 07. 19. |
| | | 황 현 아 | 2018. 02. 05. |
| | | 김 익 수 | 2018. 07. 19. |
| | | 진 을 종 | 2018. 07. 19. |
| 로 스 쿨<br>검 사 교 수 | 검 사 | 조 남 철 | 2017. 02. 20. |
| | | 이 상 민 | 2018. 02. 05. |
| | | 이 효 진 | 2017. 02. 20. |
| | | 최 재 아 | 2017. 02. 20. |
| | | 서 효 원 | 2018. 02. 05. |
| | | 권 내 건 | 2018. 07. 19. |
| | | 최 미 화 | 2018. 07. 19. |
| 기 획 과 장 | 검 사 | 박 기 동 | 2018. 07. 19. |
| 대 외 연 수 과 장 | 검 사 | 박 영 진 | 2018. 07. 19. |
| 총 무 과 장 | 서 기 관 | 천 정 훈 | 2015. 01. 01. |
| 일 반 연 수 과 장 | 검 찰 수 사 서 기 관 | 서 맹 웅 | 2018. 07. 09. |
| 교 정 연 수 과 장 | 서 기 관 | 김 평 근 | 2018. 01. 01. |
| 교 정 훈 련 과 장 | 서 기 관 | 김 정 열 | 2018. 01. 09. |
| 운 영 지 원 과 장 | 검 찰 수 사 서 기 관 | 현 임 | 2018. 07. 09. |
| 시 설 팀 장 | 기 술 서 기 관 | 배 성 용 | 2018. 01. 08. |

# 3. 검 찰 청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 대 검 찰 청 )** | | |
| 검 찰 총 장 | 문무일 | 2017.07.25 |
| 차 장 검 사 | 봉 욱 | 2017.05.22 |
| 기 획 조 정 부 장 | 문찬석 | 2018.06.22 |
| 반 부 패 · 강 력 부 장 | 이성윤 | 2018.07.23 |
| 형 사 부 장 | 구본선 | 2018.06.22 |
| 공 안 부 장 | 오인서 | 2018.01.19 |
| 공 판 송 무 부 장 | 김후곤 | 2018.06.22 |
| 과 학 수 사 부 장 | 조남관 | 2018.06.22 |
| 인 권 부 장 | 권순범 | 2018.07.23 |
| 감 찰 부 장 | 정병하 | 2018.06.13 |
| 수 사 정 보 정 책 관 | 이정수 | 2018.07.19 |
| 수 사 정 보 1 담 당 관 | 김종오 | 2018.07.19 |
| 수 사 정 보 2 담 당 관 | 박진원 | 2018.07.19 |
| 대 변 인 | 주영환 | 2017.08.17 |
| 정 책 기 획 과 장 | 김태훈 | 2018.07.19 |
| 정 보 통 신 과 장 | 권기대 | 2017.08.17 |
| 수 사 지 휘 과 장 | 김형근 | 2018.07.23 |
| 수 사 지 원 과 장 | 김남순 | 2018.07.23 |
| 범 죄 수 익 환 수 과 장 | 김민형 | 2018.07.23 |
| 형 사 1 과 장 | 민기호 | 2018.07.19 |
| 형 사 2 과 장 | 한윤경 | 2018.07.19 |
| 조 직 범 죄 과 장 | 이승호 | 2018.07.23 |
| 마 약 과 장 | 천기홍 | 2018.07.23 |
| 공 안 기 획 관 | 송규종 | 2018.07.19 |
| 공 안 1 과 장 | 송 강 | 2018.07.19 |
| 공 안 2 과 장 | 김도완 | 2018.07.19 |
| 공 안 3 과 장 | 김영기 | 2018.02.05 |
| 공 판 송 무 과 장 | 정유미 | 2018.07.19 |
| 과 학 수 사 기 획 관 | 심우정 | 2018.07.19 |
| 과 학 분 석 과 장 | 이정환 | 2018.07.19 |
| 디 엔 에 이 화 학 분 석 과 장 | 김윤희 | 2018.07.19 |
| 디 지 털 수 사 과 장 | 박현준 | 2018.07.19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사 이 버 수 사 과 장 | 이덕진 | 2018.07.19 |
| 인 권 기 획 과 장 | 이영림 | 2018.07.23 |
| 인 권 감 독 과 장 | 성상헌 | 2018.07.23 |
| 피 해 자 인 권 과 장 | 허정수 | 2018.07.23 |
| 감 찰 1 과 장 | 김종근 | 2018.07.19 |
| 감 찰 2 과 장 | 이종혁 | 2018.07.19 |
| 국 제 협 력 단 장 | 손영배 | 2018.07.19 |
| 검 찰 연 구 관 | 김찬중 | 2018.07.19 |
| 〃 | 문홍성 | 2018.07.19 |
| 〃 | 신성식 | 2018.07.19 |
| 〃 | 박종근 | 2018.07.19 |
| 〃 | 김영현 | 2018.07.19 |
| 〃 | 김 웅 | 2018.07.19 |
| 〃 | 박상진 | 2018.07.19 |
| 〃 | 전양석 | 2018.07.19 |
| 〃 | 전준철 | 2018.07.19 |
| 〃 | 박혁수 | 2017.08.17 |
| 〃 | 엄희준 | 2018.07.19 |
| 〃 | 이영창 | 2018.07.19 |
| 〃 | 김경근 | 2018.07.19 |
| 〃 | 김승언 | 2018.07.19 |
| 〃 | 이응철 | 2018.07.19 |
| 〃 | 정태원 | 2018.07.19 |
| 〃 | 이정우 | 2018.07.19 |
| 〃 | 유광렬 | 2018.07.19 |
| 〃 | 민경호 | 2018.07.19 |
| 〃 | 유경필 | 2018.07.19 |
| 〃 | 정원두 | 2018.02.05 |
| 〃 | 백승주 | 2018.02.05 |
| 〃 | 나의엽 | 2018.02.05 |
| 〃 | 정 현 | 2018.02.05 |
| 〃 | 김지영 | 2018.02.05 |
| 〃 | 박대환 | 2018.02.05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 | 김정옥 | 2018.02.05 |
| 〃 | 정일권 | 2018.02.05 |
| 〃 | 장대규 | 2018.02.05 |
| 〃 | 김정환 | 2018.02.05 |
| 사무국장 | 김영창 | 2017.10.12. |
| 운영지원과장 | 윤진웅 | 2017.09.27. |
| 집행과장 | 곽명규 | 2018.07.09. |
| 검찰총장실 | 정병인 | 2016.08.29. |
| 수사지원과 | 정기성 | 2017.09.27. |
| 디지털수사과 | 이재호 | 2017.09.27. |
| 운영지원과 | 권영갑 | 2018.01.26. |
| 복지후생과장 | 오만옥 | 2018.01.26. |
| 검찰연구관실 | 장병인 | 2017.09.27. |
| 감찰1과 | 이인주 | 2017.01.16. |
| 감찰2과 | 김삼술 | 2018.01.26. |
| 비상안전담당관 | 박정호 | 2018.03.28. |
| 정보통신서기관 | 윤미숙 | 2016.05.02. |
| 정보통신서기관 | 고성순 | 2014.02.24. |
| **(서울고등검찰청)** | | |
| 검사장 | 박정식 | 2018.06.22 |
| 차장검사 | 고 흥 | 2018.06.22 |
| 형사부장 | 김석재 | 2018.07.19 |
| 공판부장 | 이형택 | 2018.07.19 |
| 송무부장 | 최태원 | 2018.07.19 |
| 감찰부장 | 이영기 | 2018.07.19 |
| 검사 | 정명호 | 2017.08.17. |
| 〃 | 김기정 | 2017.08.17. |
| 〃 | 하종철 | 2018.07.19. |
| 〃 | 양보승 | 2014.01.16. |
| 〃 | 임무영 | 2018.07.19. |
| 〃 | 이의경 | 2018.07.19. |
| 〃 | 위성운 | 2013.04.23. |
| 〃 | 이종대 | 2018.07.19. |
| 〃 | 박길용 | 2017.08.17. |
| 〃 | 정의식 | 2018.08.29. |
| 〃 | 서정식 | 2018.09.23.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 | 오정돈 | 2017.08.17. |
| 〃 | 이재구 | 2014.01.16. |
| 〃 | 강길주 | 2018.02.05. |
| 〃 | 방봉혁 | 2016.01.13. |
| 〃 | 김태광 | 2018.07.19. |
| 〃 | 김 훈 | 2017.08.17. |
| 〃 | 이용민 | 2017.08.17. |
| 〃 | 정용수 | 2018.07.19. |
| 〃 | 박철완 | 2015.02.25. |
| 〃 | 손준호 | 2015.02.25. |
| 〃 | 박용호 | 2013.04.23. |
| 〃 | 유종완 | 2017.08.17. |
| 〃 | 김현철 | 2017.08.17. |
| 〃 | 안성수 | 2018.07.19. |
| 〃 | 김한수 | 2018.07.19. |
| 〃 | 박장우 | 2018.07.19. |
| 〃 | 김국일 | 2018.07.19. |
| 〃 | 김 훈 | 2017.04.17. |
| 〃 | 김충한 | 2018.07.19. |
| 〃 | 변창범 | 2017.08.17. |
| 〃 | 김병현 | 2018.07.19. |
| 〃 | 윤재필 | 2018.07.19. |
| 〃 | 서종혁 | 2018.07.19. |
| 〃 | 서봉규 | 2018.07.19. |
| 〃 | 배종혁 | 2018.07.19. |
| 〃 | 이원석 | 2018.07.19. |
| 〃 | 김 신 | 2018.07.19. |
| 〃 | 명점식 | 2018.07.19. |
| 〃 | 박승환 | 2018.07.19. |
| 〃 | 최영운 | 2018.07.19. |
| 〃 | 정규영 | 2018.07.19. |
| 〃 | 이용일 | 2018.09.04. |
| 〃 | 신명호 | 2018.07.19. |
| 〃 | 홍승욱 | 2018.07.19. |
| 〃 | 김현선 | 2017.08.17. |
| 〃 | 박광배 | 2018.07.19.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 | 전영준 | 2018.07.19. |
| 〃 | 배창대 | 2018.07.19. |
| 〃 | 김택균 | 2018.07.19. |
| 〃 | 남상관 | 2018.07.19. |
| 〃 | 황금천 | 2018.07.19. |
| 〃 | 유현정 | 2018.04.26. |
| 〃 | 임창국 | 2018.07.19. |
| 사무국장 | 복두규 | 2018.07.09. |
| 총무과장 | 박귀원 | 2018.01.26. |
| 사건과장 | 박형석 | 2018.01.26. |
| 관리과장 | 최장수 | 2018.07.09. |
| 소송사무제1과장 | 전덕진 | 2018.01.26. |
| 소송사무제2과장 | 이운연 | 2018.01.26.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 |
| 검사장 | 윤석열 | 2017.05.22 |
| 제1차장검사 | 이두봉 | 2018.07.19 |
| 제2차장검사 | 박찬호 | 2017.08.17 |
| 제3차장검사 | 한동훈 | 2017.08.17 |
| 제4차장검사 | 이노공 | 2018.07.19 |
| 인권감독관 | 정순신 | 2018.07.19 |
| 형사1부장검사 | 김남우 | 2018.07.19. |
| 형사2부장검사 | 권순정 | 2018.07.19. |
| 형사3부장검사 | 신응석 | 2018.07.19. |
| 형사4부장검사 | 이진수 | 2018.07.19. |
| 형사5부장검사 | 형진휘 | 2018.07.19. |
| 형사6부장검사 | 김도균 | 2018.07.19. |
| 형사7부장검사 | 김유철 | 2018.07.19. |
| 형사8부장검사 | 정영학 | 2018.07.19. |
| 형사9부장검사 | 이헌주 | 2018.07.19. |
| 총무부장검사 | 정진용 | 2018.07.19. |
| 공안1부장검사 | 양중진 | 2018.07.19. |
| 공안2부장검사 | 김성훈 | 2018.07.19. |
| 공공형사부장검사 | 김수현 | 2018.07.19. |
| 외사부장검사 | 예세민 | 2018.07.19. |
| 공판1부장검사 | 이정훈 | 2018.07.19. |
| 공판2부장검사 | 최용규 | 2018.02.05.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공판3부장검사 | 김선화 | 2018.07.19. |
| 특수1부장검사 | 신봉수 | 2018.07.19. |
| 특수2부장검사 | 송경호 | 2017.08.17. |
| 특수3부장검사 | 양석조 | 2017.08.17. |
| 특수4부장검사 | 김창진 | 2017.08.17. |
| 공정거래조사부장검사 | 구상엽 | 2018.07.23. |
| 방위사업수사부장검사 | 정희도 | 2018.07.19. |
| 조세범죄조사부장검사 | 최호영 | 2018.02.05. |
| 조사1부장검사 | 김종범 | 2018.07.19. |
| 조사2부장검사 | 노만석 | 2018.07.19. |
| 강력부장검사 | 김태권 | 2018.07.23. |
| 과학기술범죄수사부장검사 | 조용한 | 2018.07.23. |
|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 | 박은정 | 2018.07.19. |
| 범죄수익환수부장검사 | 박철우 | 2018.02.05. |
| 부장검사 | 유병두 | 2018.07.19. |
| (부부장)검사 | 우기열 | 2018.07.19. |
| 〃 | 한태화 | 2018.07.19. |
| 〃 | 이정섭 | 2017.08.17. |
| 〃 | 김훈영 | 2017.08.17. |
| 〃 | 조상원 | 2017.08.17. |
| 〃 | 단성한 | 2017.08.17. |
| 〃 | 정재현 | 2018.07.19. |
| 〃 | 박주성 | 2017.08.17. |
| 〃 | 이주영 | 2018.07.19. |
| 〃 | 이만흠 | 2017.08.17. |
| 〃 | 백수진 | 2018.07.19. |
| 〃 | 최재봉 | 2018.07.19. |
| 〃 | 강석철 | 2018.07.19. |
| 〃 | 조주연 | 2018.07.19. |
| 〃 | 황정현 | 2018.07.19. |
| 〃 | 이장우 | 2018.07.19. |
| 〃 | 이상록 | 2018.07.19. |
| 〃 | 정수진 | 2018.07.19. |
| 〃 | 이상현 | 2018.07.19.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 | 강세현 | 2018.07.19. |
| 〃 | 추혜윤 | 2018.07.19. |
| 〃 | 나욱진 | 2018.07.19. |
| 〃 | 김락현 | 2018.07.19. |
| 〃 | 용성진 | 2018.07.19. |
| 〃 | 김제성 | 2018.07.19. |
| 〃 | 임일수 | 2018.07.19. |
| 〃 | 신종곤 | 2018.07.19. |
| 〃 | 최행관 | 2018.07.19. |
| 〃 | 김도엽 | 2018.07.19. |
| 〃 | 차범준 | 2018.07.19. |
| 〃 | 신준호 | 2018.07.19. |
| 〃 | 이동원 | 2018.07.19. |
| 〃 | 박대범 | 2018.07.19. |
| 〃 | 김진호 | 2018.07.19. |
| 〃 | 김현아 | 2018.07.19. |
| 〃 | 손진욱 | 2018.07.19. |
| 〃 | 양선순 | 2018.07.19. |
| 검 사 | 박건욱 | 2016.01.27. |
| 〃 | 이용균 | 2017.02.20. |
| 〃 | 김해경 | 2017.02.20. |
| 〃 | 홍완희 | 2016.01.27. |
| 〃 | 김영남 | 2018.02.05. |
| 〃 | 최대건 | 2016.01.27. |
| 〃 | 이유선 | 2018.02.05. |
| 〃 | 임유경 | 2017.02.20. |
| 〃 | 문지선 | 2017.02.20. |
| 〃 | 강민정 | 2016.08.31. |
| 〃 | 최재훈 | 2017.02.20. |
| 〃 | 김 중 | 2017.02.20. |
| 〃 | 오기찬 | 2016.01.27. |
| 〃 | 민병권 | 2016.01.27. |
| 〃 | 강상묵 | 2016.01.27. |
| 〃 | 허성환 | 2016.01.27. |
| 〃 | 조용후 | 2018.02.05. |
| 〃 | 오세문 | 2015.02.25.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 | 손상욱 | 2018.02.05. |
| 〃 | 임선화 | 2017.02.20. |
| 〃 | 김성원 | 2018.07.19. |
| 〃 | 김영주 | 2017.02.20. |
| 〃 | 홍성준 | 2016.08.31. |
| 〃 | 김재혁 | 2017.02.20. |
| 〃 | 박진성 | 2016.01.27. |
| 〃 | 신건호 | 2018.02.05. |
| 〃 | 박경섭 | 2017.02.20. |
| 〃 | 김종필 | 2017.08.17. |
| 〃 | 서현욱 | 2018.02.05. |
| 〃 | 허지훈 | 2018.02.05. |
| 〃 | 채희만 | 2017.02.20. |
| 〃 | 김재화 | 2016.01.27. |
| 〃 | 송정은 | 2016.01.27. |
| 〃 | 노선균 | 2017.02.20. |
| 〃 | 공준혁 | 2017.02.20. |
| 〃 | 김은하 | 2018.02.05. |
| 〃 | 김보성 | 2016.01.27. |
| 〃 | 이병주 | 2016.01.27. |
| 〃 | 장준호 | 2018.02.05. |
| 〃 | 김상민 | 2018.02.05. |
| 〃 | 김태훈 | 2017.02.20. |
| 〃 | 김승걸 | 2017.02.20. |
| 〃 | 최태은 | 2017.02.20. |
| 〃 | 허 훈 | 2015.02.25. |
| 〃 | 박진석 | 2017.02.20. |
| 〃 | 김지용 | 2017.02.20. |
| 〃 | 김윤용 | 2016.01.27. |
| 〃 | 채양희 | 2018.07.19. |
| 〃 | 김지혜 | 2018.02.05. |
| 〃 | 엄재상 | 2018.02.05. |
| 〃 | 국 원 | 2017.02.20. |
| 〃 | 이상목 | 2016.01.27. |
| 〃 | 정희선 | 2017.08.17. |
| 〃 | 이승학 | 2015.02.25.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 | 윤수정 | 2016.01.27. |
| 〃 | 이치현 | 2016.01.27. |
| 〃 | 정유선 | 2018.02.05. |
| 〃 | 김현우 | 2018.02.05. |
| 〃 | 나하나 | 2018.02.05. |
| 〃 | 김봉진 | 2018.02.05. |
| 〃 | 유민종 | 2018.02.05. |
| 〃 | 송봉준 | 2018.07.19. |
| 〃 | 박경택 | 2017.02.20. |
| 〃 | 천헌주 | 2018.02.05. |
| 〃 | 소정수 | 2018.02.05. |
| 〃 | 박 철 | 2017.02.20. |
| 〃 | 배철성 | 2017.02.20. |
| 〃 | 정화준 | 2018.02.05. |
| 〃 | 이태순 | 2018.07.19. |
| 〃 | 한상윤 | 2016.01.27. |
| 〃 | 인 훈 | 2016.01.27. |
| 〃 | 문하경 | 2018.02.05. |
| 〃 | 이태협 | 2017.08.17. |
| 〃 | 김창섭 | 2016.01.27. |
| 〃 | 강성기 | 2018.07.19. |
| 〃 | 김가람 | 2016.01.27. |
| 〃 | 신기련 | 2017.08.17. |
| 〃 | 류주태 | 2018.02.05. |
| 〃 | 박건영 | 2017.08.17. |
| 〃 | 최두헌 | 2016.01.27. |
| 〃 | 송민경 | 2016.01.27. |
| 〃 | 서성목 | 2016.01.27. |
| 〃 | 박지나 | 2017.02.20. |
| 〃 | 강용묵 | 2016.01.27. |
| 〃 | 박지훈 | 2017.02.20. |
| 〃 | 정우석 | 2017.02.20. |
| 〃 | 배상윤 | 2017.02.20. |
| 〃 | 김영빈 | 2017.02.20. |
| 〃 | 김용제 | 2015.02.25. |
| 〃 | 진을종 | 2016.01.27.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 | 남철우 | 2017.02.20. |
| 〃 | 조정호 | 2017.02.20. |
| 〃 | 조성윤 | 2017.02.20. |
| 〃 | 허윤희 | 2017.02.20. |
| 〃 | 김성태 | 2018.02.05. |
| 〃 | 이정호 | 2017.02.20. |
| 〃 | 고영하 | 2017.02.20. |
| 〃 | 이세원 | 2018.07.19. |
| 〃 | 이근정 | 2018.02.05. |
| 〃 | 서정화 | 2017.02.20. |
| 〃 | 이주용 | 2017.02.20. |
| 〃 | 이대헌 | 2017.02.20. |
| 〃 | 홍정연 | 2018.02.05. |
| 〃 | 윤효선 | 2015.02.25. |
| 〃 | 조아라 | 2016.01.27. |
| 〃 | 김태겸 | 2016.01.27. |
| 〃 | 김경목 | 2016.01.27. |
| 〃 | 엄영욱 | 2018.02.05. |
| 〃 | 소재환 | 2018.02.05. |
| 〃 | 최형규 | 2016.01.27. |
| 〃 | 윤석환 | 2018.02.05. |
| 〃 | 천재인 | 2018.02.05. |
| 〃 | 오대건 | 2018.02.05. |
| 〃 | 박영식 | 2016.01.27. |
| 〃 | 이재원 | 2016.01.27. |
| 〃 | 서동범 | 2018.02.05. |
| 〃 | 김병욱 | 2016.01.27. |
| 〃 | 김성훈 | 2016.01.27. |
| 〃 | 유시동 | 2016.01.27. |
| 〃 | 양익준 | 2018.02.05. |
| 〃 | 김민정 | 2016.01.27. |
| 〃 | 전영우 | 2018.02.05. |
| 〃 | 전철호 | 2016.01.27. |
| 〃 | 이선기 | 2016.01.27. |
| 〃 | 김지윤 | 2018.02.05. |
| 〃 | 하일수 | 2016.01.27.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 | 이혜현 | 2018.02.05. |
| 〃 | 황나영 | 2016.01.27. |
| 〃 | 허선주 | 2018.02.05. |
| 〃 | 박채원 | 2016.01.27. |
| 〃 | 장태형 | 2018.02.05. |
| 〃 | 김영신 | 2016.01.27. |
| 〃 | 홍지예 | 2017.02.20. |
| 〃 | 이승현 | 2017.02.20. |
| 〃 | 우옥영 | 2018.02.05. |
| 〃 | 양재영 | 2017.02.20. |
| 〃 | 정승원 | 2018.02.05. |
| 〃 | 김승기 | 2018.02.05. |
| 〃 | 신영민 | 2018.02.05. |
| 〃 | 오준근 | 2018.02.05. |
| 〃 | 이슬기 | 2018.02.05. |
| 〃 | 성재호 | 2018.02.05. |
| 〃 | 이상민 | 2018.02.05. |
| 〃 | 김희송 | 2018.02.05. |
| 〃 | 안성민 | 2018.02.05. |
| 〃 | 이승철 | 2018.02.05. |
| 〃 | 이희준 | 2018.02.05. |
| 〃 | 조도준 | 2018.02.05. |
| 〃 | 이소연 | 2018.02.05. |
| 〃 | 우재훈 | 2018.02.05. |
| 〃 | 심기호 | 2018.02.05. |
| 〃 | 전성환 | 2017.03.01. |
| 〃 | 장태원 | 2017.04.01. |
| 〃 | 김남엽 | 2017.04.01. |
| 〃 | 황익진 | 2018.03.02. |
| 〃 | 손성민 | 2018.04.01. |
| 〃 | 구자원 | 2018.04.01. |
| 〃 | 양효승 | 2017.03.01. |
| 〃 | 김진영 | 2017.03.01. |
| 〃 | 곽병수 | 2017.02.20. |
| 〃 | 신지원 | 2017.02.20. |
| 〃 | 이영훈 | 2018.03.02.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 | 주은혜 | 2018.03.02. |
| 〃 | 신충섭 | 2018.02.05. |
| 〃 | 박현우 | 2018.02.05. |
| 사무국장 | 강진구 | 2017.09.27. |
| 총무과장 | 박순우 | 2017.09.27. |
| 사건과장 | 이은상 | 2018.12.14. |
| 집행제1과장 | 조우현 | 2017.09.27. |
| 집행제2과장 | 윤재순 | 2018.07.09. |
| 기록관리과장 | 박희상 | 2018.07.09. |
| 형사증거과장 | 박무열 | 2018.07.09. |
| 피해자지원과장 | 장복 | 2018.07.09. |
| 공안과장 | 조창희 | 2018.01.26. |
| 수사제1과장 | 이원태 | 2018..07.09. |
| 수사정보과장 | 김동완 | 2018.07.09. |
| 수사제2과장 | 황세일 | 2018.07.09. |
| 수사지원과장 | 김태일 | 2017.09.27. |
| 조사과장 | 성찬오 | 2018.01.26. |
| 조직범죄수사과장 | 최진 | 2018.07.09. |
| 마약수사과장 | 정병수 | 2018.07.09. |
| 공판과장 | 김용욱 | 2017.09.27. |
| 검사직무대리 | 조경익 | 2018.07.09. |
| 검사직무대리 | 이형봉 | 2018.01.26. |
| 검사직무대리 | 박상식 | 2017.09.27. |
| 검사직무대리 | 김홍철 | 2018.01.26. |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 | |
| 검사장 | 한찬식 | 2018.06.22 |
| 차장검사 | 권순철 | 2018.07.19 |
| 인권감독관 | 김영익 | 2018.07.19 |
| 형사1부장검사 | 김효붕 | 2018.07.19 |
| 형사2부장검사 | 최성필 | 2018.07.19 |
| 형사3부장검사 | 윤상호 | 2018.07.19 |
| 형사4부장검사 | 장동철 | 2018.07.19 |
| 형사5부장검사 | 이정봉 | 2018.07.19 |
| 형사6부장검사 | 주진우 | 2018.07.19 |
| 사이버수사부장검사 | 김태은 | 2018.07.23 |
|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 | 신은선 | 2018.07.19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공판부장검사 | 윤중현 | 2018.02.05 |
| (부부장)검사 | 강신엽 | 2017.08.17 |
| 〃 | 최영의 | 2017.08.17 |
| 〃 | 전계광 | 2018.07.19 |
| 〃 | 이광우 | 2018.07.19 |
| 〃 | 양성필 | 2018.07.19 |
| 〃 | 최원석 | 2018.07.19 |
| 〃 | 유상민 | 2018.07.19 |
| 〃 | 김상현 | 2018.07.19 |
| 〃 | 원형문 | 2018.07.19 |
| 〃 | 정성현 | 2018.07.19 |
| 〃 | 이지형 | 2018.07.19 |
| 〃 | 위수현 | 2018.07.19 |
| 검사 | 신태훈 | 2017.02.20. |
| 〃 | 박명희 | 2017.02.20. |
| 〃 | 김기훈 | 2017.02.20. |
| 〃 | 박석용 | 2018.02.05. |
| 〃 | 강선주 | 2017.02.20. |
| 〃 | 서효원 | 2017.08.17. |
| 〃 | 이세희 | 2018.02.05. |
| 〃 | 이윤희 | 2016.01.27. |
| 〃 | 이재연 | 2017.02.20. |
| 〃 | 이시전 | 2018.02.05. |
| 〃 | 김주현 | 2017.02.20. |
| 〃 | 남수연 | 2016.01.27. |
| 〃 | 최용락 | 2017.02.20. |
| 〃 | 반 지 | 2017.02.20. |
| 〃 | 전세정 | 2018.07.19. |
| 〃 | 장송이 | 2017.02.20. |
| 〃 | 김승우 | 2018.02.05. |
| 〃 | 이승현 | 2018.07.19. |
| 〃 | 정효민 | 2016.01.27. |
| 〃 | 최윤희 | 2018.02.05. |
| 〃 | 이지은 | 2017.02.20. |
| 〃 | 노경은 | 2018.02.05. |
| 〃 | 양진선 | 2017.02.20.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 | 박수정 | 2018.02.05. |
| 〃 | 조규웅 | 2018.07.19. |
| 〃 | 허 정 | 2018.02.05. |
| 〃 | 이경환 | 2017.04.01. |
| 〃 | 이정우 | 2017.04.01. |
| 〃 | 나광윤 | 2017.04.01. |
| 〃 | 전경민 | 2018.04.01. |
| 〃 | 김성진 | 2018.08.01. |
| 〃 | 김준소 | 2018.08.01. |
| 〃 | 김범준 | 2017.03.01. |
| 〃 | 최혜진 | 2017.03.01. |
| 〃 | 서하나 | 2017.02.20. |
| 〃 | 이가은 | 2018.03.02. |
| 〃 | 안세영 | 2018.03.02. |
| 〃 | 김재현 | 2018.02.05. |
| 〃 | 조윤정 | 2018.02.05. |
| 〃 | 최형욱 | 2018.04.30. |
| 〃 | 김수현 | 2018.04.30. |
| 〃 | 박영웅 | 2018.04.30. |
| 사무국장 | 이성범 | 2018.01.26. |
| 총무과장 | 정안진 | 2018.07.09. |
| 사건과장 | 오범석 | 2018.07.09. |
| 집행과장 | 이길재 | 2018.07.09. |
| 공판과장 | 송영수 | 2017.09.27. |
| 조사과장 | 김기성 | 2018.01.26. |
| 수사과장 | 김영헌 | 2018.07.09. |
| 검사직무대리 | 김도석 | 2018.01.26. |
| 검사직무대리 | 조희영 | 2018.07.09. |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 |
| 검사장 | 권익환 | 2018.06.22 |
| 제1차장검사 | 이주형 | 2018.07.19 |
| 제2차장검사 | 김범기 | 2018.07.19 |
| 인권감독관 | 김후균 | 2018.07.19 |
| 형사1부장검사 | 오영신 | 2018.07.19 |
| 형사2부장검사 | 김지헌 | 2018.07.19 |
| 형사3부장검사 | 박억수 | 2018.07.19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형사4부장검사 | 최재민 | 2018.07.19 |
| 형사5부장검사 | 신형식 | 2018.07.19 |
| 형사6부장검사 | 강수산나 | 2018.07.19 |
|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 | 강대권 | 2018.02.05 |
| 공판부장검사 | 오현철 | 2018.07.19 |
| 금융조사1부장검사 | 김형록 | 2018.07.19 |
| 금융조사2부장검사 | 김영일 | 2018.07.19 |
| 공안부장검사 | 김성주 | 2018.07.19 |
| (부부장)검사 | 김영태 | 2017.08.17 |
| 〃 | 하충헌 | 2017.08.17 |
| 〃 | 유두열 | 2017.08.17 |
| 〃 | 이지윤 | 2018.07.19 |
| 〃 | 김세한 | 2018.07.19 |
| 〃 | 이곤호 | 2018.07.19 |
| 〃 | 이방현 | 2018.07.19 |
| 〃 | 최명규 | 2018.07.19 |
| 검사 | 김일권 | 2017.02.20. |
| 〃 | 김동희 | 2017.02.20. |
| 〃 | 박기환 | 2017.02.20. |
| 〃 | 임세진 | 2017.02.20. |
| 〃 | 윤원기 | 2016.08.31. |
| 〃 | 조아라 | 2015.08.27. |
| 〃 | 최형원 | 2018.02.05. |
| 〃 | 박기태 | 2016.01.27. |
| 〃 | 최청호 | 2016.01.27. |
| 〃 | 남계식 | 2017.02.20. |
| 〃 | 김윤정 | 2017.02.20. |
| 〃 | 강정영 | 2017.02.20. |
| 〃 | 기노성 | 2016.01.27. |
| 〃 | 최재만 | 2018.02.05. |
| 〃 | 최종필 | 2018.02.05. |
| 〃 | 조영성 | 2017.02.20. |
| 〃 | 김진호 | 2017.02.20. |
| 〃 | 최수봉 | 2018.02.05. |
| 〃 | 한문혁 | 2018.02.05. |
| 〃 | 이선녀 | 2015.02.25.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 | 이동현 | 2018.02.05. |
| 〃 | 용태호 | 2017.02.20. |
| 〃 | 김진혁 | 2018.07.19. |
| 〃 | 정선제 | 2016.01.27. |
| 〃 | 박선민 | 2017.02.20. |
| 〃 | 구민기 | 2017.02.20. |
| 〃 | 오민재 | 2018.02.05. |
| 〃 | 김민정 | 2016.01.27. |
| 〃 | 박상희 | 2016.01.27. |
| 〃 | 신은식 | 2018.02.05. |
| 〃 | 최수은 | 2015.02.25. |
| 〃 | 김효진 | 2017.02.20. |
| 〃 | 이경민 | 2015.02.25. |
| 〃 | 단정려 | 2017.02.20. |
| 〃 | 최상훈 | 2018.02.05. |
| 〃 | 김은정 | 2016.01.27. |
| 〃 | 정정욱 | 2018.02.05. |
| 〃 | 이은주 | 2018.02.05. |
| 〃 | 이수현 | 2018.02.05. |
| 〃 | 김세희 | 2016.01.27. |
| 〃 | 김지은 | 2016.01.27. |
| 〃 | 박재평 | 2018.02.05. |
| 〃 | 이정현 | 2017.02.20. |
| 〃 | 이상미 | 2017.02.20. |
| 〃 | 최여련 | 2018.07.19. |
| 〃 | 박신영 | 2017.02.20. |
| 〃 | 현동길 | 2017.02.20. |
| 〃 | 배지훈 | 2018.07.19. |
| 〃 | 김미영 | 2018.02.05. |
| 〃 | 서성광 | 2017.02.20. |
| 〃 | 전혜현 | 2017.02.20. |
| 〃 | 권슬기 | 2018.02.05. |
| 〃 | 이라영 | 2016.01.27. |
| 〃 | 황호석 | 2018.02.05. |
| 〃 | 이정아 | 2017.02.20. |
| 〃 | 김보미 | 2018.02.05.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 | 허수진 | 2018.02.05. |
| 〃 | 엄상준 | 2018.02.05. |
| 〃 | 문호섭 | 2017.04.01. |
| 〃 | 이윤석 | 2018.03.02. |
| 〃 | 최민혁 | 2018.04.01. |
| 〃 | 심기하 | 2016.03.02. |
| 〃 | 박제연 | 2018.08.01. |
| 〃 | 이재희 | 2018.08.01. |
| 〃 | 류정인 | 2017.03.01. |
| 〃 | 김규완 | 2017.03.01. |
| 〃 | 이혜원 | 2017.03.01. |
| 〃 | 최완영 | 2017.02.20. |
| 〃 | 박보영 | 2018.03.02. |
| 〃 | 이동욱 | 2018.03.02. |
| 〃 | 신가현 | 2018.02.05. |
| 〃 | 김병진 | 2018.04.30. |
| 〃 | 박조민 | 2018.04.30. |
| 〃 | 임여은 | 2018.04.30. |
| 사무국장 | 박천홍 | 2018.07.09. |
| 총무과장 | 유정민 | 2017.06.14. |
| 사건과장 | 이승철 | 2018.01.26. |
| 집행과장 | 이헌 | 2018.01.26. |
| 조사과장 | 소웅 | 2018.01.26. |
| 수사과장 | 박천섭 | 2017.01.16. |
| 공판과장 | 안병근 | 2018.07.09. |
| 검사직무대리 | 강신광 | 2017.01.16. |
| 검사직무대리 | 하영식 | 2017.09.27. |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 | |
| 검사장 | 김영대 | 2018.06.22 |
| 차장검사 | 최경규 | 2018.07.19 |
| 인권감독관 | 옥성대 | 2018.07.19 |
| 형사제1부장검사 | 김현수 | 2018.07.19 |
| 형사제2부장검사 | 고경순 | 2018.07.19 |
| 형사제3부장검사 | 서성호 | 2018.07.19 |
| 형사제4부장검사 | 권기환 | 2018.07.19 |
| 형사제5부장검사 | 김명수 | 2018.07.19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형사제6부장검사 | 박현철 | 2018.07.19 |
| 공판부장검사 | 장성훈 | 2018.07.19 |
|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 | 박기종 | 2018.02.05 |
| (부부장)검사 | 백종우 | 2017.08.17 |
| 〃 | 김성렬 | 2017.08.17 |
| 〃 | 최용석 | 2017.08.17 |
| 〃 | 박병규 | 2018.07.19 |
| 〃 | 진현일 | 2017.08.17 |
| 〃 | 김진남 | 2018.07.19 |
| 검사 | 최준호 | 2018.02.05. |
| 〃 | 장혜영 | 2017.02.20. |
| 〃 | 한상훈 | 2017.02.20. |
| 〃 | 김희주 | 2017.02.20. |
| 〃 | 김태헌 | 2017.08.17. |
| 〃 | 황정임 | 2017.02.20. |
| 〃 | 유정현 | 2017.02.20. |
| 〃 | 윤원일 | 2017.02.20. |
| 〃 | 김상문 | 2017.02.20. |
| 〃 | 하준호 | 2016.01.27. |
| 〃 | 강은선 | 2017.02.20. |
| 〃 | 정미란 | 2016.01.27. |
| 〃 | 김금이 | 2018.02.05. |
| 〃 | 이대성 | 2017.02.20. |
| 〃 | 김호경 | 2018.02.05. |
| 〃 | 이지영 | 2015.02.25. |
| 〃 | 김동율 | 2017.02.20. |
| 〃 | 윤인식 | 2018.02.05. |
| 〃 | 김미수 | 2016.01.27. |
| 〃 | 이종혁 | 2018.07.19. |
| 〃 | 임지연 | 2017.02.20. |
| 〃 | 정혜승 | 2017.08.17. |
| 〃 | 문정신 | 2017.02.20. |
| 〃 | 박지영 | 2018.02.05. |
| 〃 | 은종욱 | 2018.02.05. |
| 〃 | 이수환 | 2018.02.05. |
| 〃 | 오보미 | 2018.02.05.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 | 손정아 | 2018.07.19. |
| 〃 | 민수영 | 2017.02.20. |
| 〃 | 염호영 | 2018.02.05. |
| 〃 | 임재웅 | 2017.03.01. |
| 〃 | 김광락 | 2018.02.05. |
| 〃 | 성진영 | 2018.02.05. |
| 〃 | 김민수 | 2017.04.01. |
| 〃 | 김연재 | 2018.04.01. |
| 〃 | 김상직 | 2018.08.01. |
| 〃 | 김상순 | 2018.08.01. |
| 〃 | 안희경 | 2015.02.25. |
| 〃 | 최지윤 | 2017.03.01. |
| 〃 | 이혜진 | 2017.03.01. |
| 〃 | 김정원 | 2017.02.20. |
| 〃 | 박지향 | 2018.03.02. |
| 〃 | 김진호 | 2017.04.27. |
| 〃 | 박선영 | 2018.02.05. |
| 〃 | 김지혜 | 2018.02.05. |
| 〃 | 김은성 | 2018.04.30. |
| 〃 | 이지영 | 2018.04.30. |
| 〃 | 박민지 | 2018.04.30. |
| 사무국장 | 백운기 | 2018.07.09. |
| 총무과장 | 오영근 | 2018.07.09. |
| 사건과장 | 류재섭 | 2017.09.27. |
| 집행과장 | 이상남 | 2018.07.09. |
| 조사과장 | 이홍룡 | 2018.07.09. |
| 수사과장 | 최종필 | 2018.01.26. |
| 공판과장 | 구제일 | 2018.07.09. |
| 검사직무대리 | 박순주 | 2018.01.26. |
| 검사직무대리 | 송영근 | 2018.01.26. |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 | |
| 검사장 | 이동열 | 2018.06.22 |
| 차장검사 | 노정연 | 2018.07.19 |
| 인권감독관 | 류지열 | 2018.07.19 |
| 형사제1부장검사 | 문성인 | 2018.07.19 |
| 형사제2부장검사 | 정희원 | 2018.07.19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형사제3부장검사 | 김재호 | 2018.07.19 |
| 형사제4부장검사 | 안희준 | 2018.07.19 |
| 형사제5부장검사 | 강성용 | 2018.07.19 |
| 공판부장검사 | 나창수 | 2018.02.05 |
| 식품의약조사부장검사 | 김형석 | 2018.07.19 |
|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 | 오정희 | 2018.02.05 |
| (부부장)검사 | 최창호 | 2018.07.19 |
| 〃 | 고병민 | 2017.08.17 |
| 〃 | 유일석 | 2017.08.17 |
| 〃 | 김용규 | 2018.07.19 |
| 〃 | 구태연 | 2017.08.17 |
| 〃 | 김창수 | 2018.07.19 |
| 검사 | 정영수 | 2017.02.20. |
| 〃 | 조희영 | 2018.02.05. |
| 〃 | 정현승 | 2018.02.05. |
| 〃 | 구미옥 | 2017.02.20. |
| 〃 | 박성민 | 2016.01.27. |
| 〃 | 김상균 | 2018.02.05. |
| 〃 | 이승혜 | 2017.02.20. |
| 〃 | 박혜란 | 2018.02.05. |
| 〃 | 김재성 | 2018.02.05. |
| 〃 | 박윤희 | 2016.08.31. |
| 〃 | 이주현 | 2015.08.27. |
| 〃 | 방지형 | 2017.02.20. |
| 〃 | 이준희 | 2017.02.20. |
| 〃 | 김진용 | 2017.02.20. |
| 〃 | 왕선주 | 2016.01.27. |
| 〃 | 김현우 | 2017.02.20. |
| 〃 | 서민주 | 2018.07.19. |
| 〃 | 김재환 | 2018.02.05. |
| 〃 | 유관모 | 2017.08.17. |
| 〃 | 황윤재 | 2018.02.05. |
| 〃 | 송한섭 | 2018.02.05. |
| 〃 | 정가원 | 2016.01.27. |
| 〃 | 오창명 | 2018.07.19. |
| 〃 | 김지은 | 2016.08.31.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 | 송새봄 | 2018.02.05. |
| 〃 | 최우혁 | 2017.02.20. |
| 〃 | 김미경 | 2018.02.05. |
| 〃 | 김지혜 | 2017.02.20. |
| 〃 | 고명아 | 2018.02.05. |
| 〃 | 김석순 | 2017.02.20. |
| 〃 | 김녹원 | 2018.02.05. |
| 〃 | 김수지 | 2018.02.05. |
| 〃 | 박준석 | 2017.04.01. |
| 〃 | 최광진 | 2018.04.01. |
| 〃 | 권다송이 | 2016.03.02. |
| 〃 | 천재영 | 2018.08.01. |
| 〃 | 한웅세 | 2018.08.01. |
| 〃 | 전화정 | 2017.03.01. |
| 〃 | 김도희 | 2017.03.01. |
| 〃 | 김기왕 | 2017.02.20. |
| 〃 | 이명희 | 2018.03.02. |
| 〃 | 신명은 | 2018.03.02. |
| 〃 | 최정수 | 2018.02.05. |
| 〃 | 김태현 | 2018.04.30. |
| 〃 | 서지혜 | 2018.04.30. |
| 사무국장 | 김정호 | 2018.07.09. |
| 총무과장 | 서진학 | 2017.09.27. |
| 사건과장 | 조동규 | 2017.09.27. |
| 집행과장 | 백종동 | 2018.07.09. |
| 조사과장 | 김영규 | 2018.01.26. |
| 수사과장 | 김승현 | 2017.09.27. |
| 공판과장 | 전귀현 | 2017.09.27. |
| 검사직무대리 | 최성규 | 2017.09.27. |
| **(의정부지방검찰청)** | | |
| 검사장 | 양부남 | 2018.06.22 |
| 차장검사 | 김준연 | 2018.07.19 |
| 인권감독관 | 박봉희 | 2018.07.19 |
| 형사제1부장검사 | 박재현 | 2018.07.19 |
| 형사제2부장검사 | 김대룡 | 2018.07.19 |
| 형사제3부장검사 | 최성완 | 2018.07.19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형사제4부장검사 | 박찬록 | 2018.07.19 |
| 형사제5부장검사 | 이기영 | 2018.02.05 |
| 공안부장검사 | 김석담 | 2018.07.19 |
| 공판송무부장검사 | 이선혁 | 2018.07.19 |
| (부부장)검사 | 이종근 | 2018.07.19 |
| 〃 | 박재영 | 2018.07.19 |
| 〃 | 김현채 | 2018.07.19 |
| 〃 | 김종철 | 2016.01.13 |
| 〃 | 채수양 | 2018.07.19 |
| 〃 | 김태운 | 2018.07.19 |
| 〃 | 고진원 | 2018.07.19 |
| 〃 | 신혜진 | 2018.07.19 |
| 검사 | 국상우 | 2018.02.05. |
| 〃 | 박혜영 | 2015.02.25. |
| 〃 | 진호식 | 2018.02.05. |
| 〃 | 안창주 | 2017.02.20. |
| 〃 | 서원익 | 2017.02.20. |
| 〃 | 이정화 | 2018.02.05. |
| 〃 | 김명옥 | 2017.08.17. |
| 〃 | 남대주 | 2018.02.05. |
| 〃 | 권재호 | 2017.02.20. |
| 〃 | 김다래 | 2016.08.31. |
| 〃 | 이혜미 | 2015.02.25. |
| 〃 | 박 수 | 2017.02.20. |
| 〃 | 송명진 | 2018.02.05. |
| 〃 | 송찬우 | 2017.02.20. |
| 〃 | 강진욱 | 2017.02.20. |
| 〃 | 박상선 | 2017.02.20. |
| 〃 | 최혜경 | 2016.01.27. |
| 〃 | 이율희 | 2017.02.20. |
| 〃 | 황경원 | 2018.02.05. |
| 〃 | 서동민 | 2017.02.20. |
| 〃 | 설수현 | 2017.02.20. |
| 〃 | 박경화 | 2018.02.05. |
| 〃 | 정선철 | 2018.02.05. |
| 〃 | 박재호 | 2018.02.05.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 | 조현일 | 2018.02.05. |
| 〃 | 안미현 | 2018.02.05. |
| 〃 | 김경년 | 2018.02.05. |
| 〃 | 권동욱 | 2018.02.05. |
| 〃 | 김수희 | 2018.02.05. |
| 〃 | 이부용 | 2018.02.05. |
| 〃 | 이선미 | 2018.07.19. |
| 〃 | 남재현 | 2018.02.05. |
| 〃 | 민은식 | 2018.02.05. |
| 〃 | 이신애 | 2018.02.05. |
| 〃 | 박민지 | 2018.02.05. |
| 〃 | 유상우 | 2017.04.01. |
| 〃 | 정경영 | 2018.02.05. |
| 〃 | 이거량 | 2018.04.01. |
| 〃 | 최자윤 | 2017.03.01. |
| 〃 | 허성호 | 2016.05.02. |
| 〃 | 이동형 | 2017.02.20. |
| 〃 | 이재연 | 2018.03.02. |
| 〃 | 정다미 | 2018.03.02. |
| 〃 | 정주미 | 2018.02.05. |
| 〃 | 박동진 | 2018.04.30. |
| 〃 | 최윤미 | 2018.04.30. |
| 〃 | 박 현 | 2018.04.30. |
| 사무국장 | 정순철 | 2018.01.26. |
| 총무과장 | 강형규 | 2018.01.26. |
| 사건과장 | 장문옥 | 2017.09.27. |
| 집행과장 | 김준호 | 2018.07.09. |
| 수사과장 | 이경구 | 2018.07.09. |
| 공판송무과장 | 박종필 | 2018.01.26. |
| 검사직무대리 | 양기용 | 2018.01.26. |
| **(고양지청)** | | |
| 지청장 | 차맹기 | 2018.07.19 |
| 차장검사 | 신호철 | 2018.07.19 |
| 부장검사 | 이문성 | 2018.07.19 |
| 〃 | 김정호 | 2018.07.19 |
| 〃 | 양재혁 | 2018.07.19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 | 김은심 | 2018.02.05 |
| (부부장)검사 | 임세호 | 2018.07.19 |
| 〃 | 이곤형 | 2018.07.19 |
| 〃 | 하재무 | 2018.07.19 |
| 검사 | 김기윤 | 2017.02.20. |
| 〃 | 최재준 | 2017.02.20. |
| 〃 | 김지영 | 2018.02.05. |
| 〃 | 최선경 | 2017.02.20. |
| 〃 | 황수연 | 2018.02.05. |
| 〃 | 장혜영 | 2017.02.20. |
| 〃 | 박순애 | 2017.02.20. |
| 〃 | 박상범 | 2017.02.20. |
| 〃 | 유지연 | 2016.08.31. |
| 〃 | 김유나 | 2016.08.31. |
| 〃 | 류경환 | 2017.02.20. |
| 〃 | 김형섭 | 2017.02.20. |
| 〃 | 성기범 | 2018.02.05. |
| 〃 | 김미혜 | 2018.02.05. |
| 〃 | 김태호 | 2018.02.05. |
| 〃 | 허태훈 | 2018.02.05. |
| 〃 | 최종경 | 2017.02.20. |
| 〃 | 정경진 | 2016.01.27. |
| 〃 | 온정훈 | 2017.04.01. |
| 〃 | 박예진 | 2018.02.05. |
| 〃 | 이태훈 | 2018.08.01. |
| 〃 | 박혜진 | 2017.03.01. |
| 〃 | 김윤식 | 2017.02.20. |
| 〃 | 오승식 | 2018.03.02. |
| 〃 | 최종윤 | 2018.03.02. |
| 〃 | 김가연 | 2018.02.05. |
| 〃 | 김미리 | 2018.04.30. |
| 〃 | 조예림 | 2018.04.30. |
| 사무국장 | 강갑진 | 2018.07.06. |
| 총무과장 | 서희석 | 2018.07.09. |
| 사건과장 | 류경숙 | 2018.07.09. |
| 집행과장 | 주철중 | 2018.04.30.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수 사 과 장 | 정승원 | 2018.01.26. |
| **( 인 천 지 방 검 찰 청 )** | | |
| 검 사 장 | 김우현 | 2018.06.22 |
| 제 1 차 장 검 사 | 전형근 | 2018.07.19 |
| 제 2 차 장 검 사 | 노정환 | 2018.07.19 |
| 인 권 감 독 관 | 최헌만 | 2018.09.04 |
| 형 사 제 1 부 장 검 사 | 이성규 | 2018.07.19 |
| 형 사 제 2 부 장 검 사 | 신영식 | 2018.07.19 |
| 형 사 제 3 부 장 검 사 | 정진웅 | 2018.07.19 |
| 형 사 제 4 부 장 검 사 | 정종화 | 2018.07.19 |
| 형 사 제 5 부 장 검 사 | 이창수 | 2018.07.19 |
| 형 사 제 6 부 장 검 사 | 서정식 | 2018.07.19 |
| 여 성 아 동 범 죄 조 사 부 장 검 사 | 오세영 | 2018.02.05 |
| 공 판 송 무 부 장 검 사 | 이준식 | 2018.02.05 |
| 공 안 부 장 검 사 | 민기홍 | 2018.07.19 |
| 특 별 수 사 부 장 검 사 | 조대호 | 2018.07.19 |
| 강 력 부 장 검 사 | 이계한 | 2018.07.19 |
| 외 사 부 장 검 사 | 김도형 | 2018.07.19 |
| ( 부 부 장 ) 검 사 | 이승영 | 2018.07.19 |
| 〃 | 심학진 | 2018.07.19 |
| 〃 | 김재호 | 2017.08.17 |
| 〃 | 이상욱 | 2018.07.19 |
| 〃 | 이창온 | 2017.02.09 |
| 〃 | 양건수 | 2017.02.20 |
| 〃 | 김봉현 | 2018.07.19 |
| 〃 | 이영준 | 2016.01.13 |
| 〃 | 최임열 | 2018.07.19 |
| 〃 | 이동균 | 2018.07.19 |
| 〃 | 홍석기 | 2018.07.19 |
| 〃 | 김남훈 | 2018.07.19 |
| 검 사 | 김영오 | 2018.02.05. |
| 〃 | 이완희 | 2015.08.27. |
| 〃 | 김연실 | 2018.02.05. |
| 〃 | 이승훈 | 2017.02.20. |
| 〃 | 추의정 | 2018.02.05.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 | 정혁준 | 2015.02.25. |
| 〃 | 권내건 | 2018.07.19. |
| 〃 | 소창범 | 2018.02.05. |
| 〃 | 박향철 | 2018.02.05. |
| 〃 | 최소연 | 2015.08.27. |
| 〃 | 박수민 | 2017.02.20. |
| 〃 | 조 철 | 2018.02.05. |
| 〃 | 김병철 | 2017.02.20. |
| 〃 | 임풍성 | 2017.02.20. |
| 〃 | 정우준 | 2018.02.05. |
| 〃 | 우만우 | 2017.08.17. |
| 〃 | 홍희영 | 2018.07.19. |
| 〃 | 이윤구 | 2016.01.27. |
| 〃 | 이경화 | 2016.01.27. |
| 〃 | 이환우 | 2016.01.27. |
| 〃 | 김은형 | 2017.02.20. |
| 〃 | 박현규 | 2017.08.17. |
| 〃 | 이현주 | 2017.02.20. |
| 〃 | 안준석 | 2018.02.05. |
| 〃 | 최수지 | 2018.02.05. |
| 〃 | 김진우 | 2018.02.05. |
| 〃 | 이승민 | 2018.02.05. |
| 〃 | 손수진 | 2017.02.20. |
| 〃 | 박형수 | 2017.02.20. |
| 〃 | 임하나 | 2015.02.25. |
| 〃 | 김민석 | 2018.02.05. |
| 〃 | 이건웅 | 2017.02.20. |
| 〃 | 김성현 | 2017.02.20. |
| 〃 | 김민정 | 2018.02.05. |
| 〃 | 김지연 | 2017.02.20. |
| 〃 | 조동훈 | 2018.02.05. |
| 〃 | 백상준 | 2018.02.05. |
| 〃 | 이수정 | 2018.02.05. |
| 〃 | 김재우 | 2018.02.05. |
| 〃 | 김나리 | 2017.02.20. |
| 〃 | 서지원 | 2018.02.05.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 | 이정환 | 2017.02.20. |
| 〃 | 황진선 | 2018.02.05. |
| 〃 | 김수겸 | 2017.02.20. |
| 〃 | 심재신 | 2017.02.20. |
| 〃 | 정 혁 | 2017.02.20. |
| 〃 | 박지영 | 2017.02.20. |
| 〃 | 이홍열 | 2017.02.20. |
| 〃 | 강형윤 | 2017.02.20. |
| 〃 | 양귀호 | 2018.02.05. |
| 〃 | 권근환 | 2018.02.05. |
| 〃 | 유주현 | 2018.02.05. |
| 〃 | 전영경 | 2018.02.05. |
| 〃 | 조윤경 | 2018.02.05. |
| 〃 | 김동현 | 2016.08.01. |
| 〃 | 차대영 | 2018.02.05. |
| 〃 | 변재은 | 2018.02.05. |
| 〃 | 허윤행 | 2018.02.05. |
| 〃 | 박대한 | 2017.04.01. |
| 〃 | 권준택 | 2017.04.01. |
| 〃 | 하언욱 | 2018.03.02. |
| 〃 | 손용도 | 2018.02.05. |
| 〃 | 이수영 | 2018.04.01. |
| 〃 | 하 나 | 2017.03.01. |
| 〃 | 김소영 | 2016.05.02. |
| 〃 | 조윤영 | 2017.02.20. |
| 〃 | 김나연 | 2017.04.27. |
| 〃 | 이상범 | 2018.03.02. |
| 〃 | 성혜진 | 2018.02.05. |
| 〃 | 백가영 | 2018.04.30. |
| 사무국장 | 김영일 | 2018.07.09. |
| 총무과장 | 김태현 | 2018.07.09. |
| 사건과장 | 문명호 | 2018.01.26. |
| 집행과장 | 이용성 | 2018.01.26. |
| 조사과장 | 정규열 | 2018.01.26. |
| 수사과장 | 이대열 | 2017.09.27. |
| 마약수사과장 | 이상민 | 2018.07.09.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공판송무과장 | 임승철 | 2018.08.27. |
| 검사직무대리 | 최진호 | 2018.07.09. |
| 검사직무대리 | 김영일 | 2018.07.09. |
| 검사직무대리 | 정남수 | 2018.07.09. |
| **(부천지청)** | | |
| 지청장 | 김형길 | 2018.07.19 |
| 차장검사 | 이태승 | 2018.07.19 |
| 부장검사 | 신승호 | 2018.07.19 |
| 〃 | 박영준 | 2018.07.19 |
| 〃 | 김경우 | 2018.07.19 |
| 〃 | 강남수 | 2018.02.05 |
| (부부장)검사 | 정은혜 | 2018.07.19 |
| 〃 | 정지영 | 2018.07.19 |
| 검사 | 김재남 | 2018.02.05. |
| 〃 | 장진영 | 2018.02.05. |
| 〃 | 장유강 | 2018.02.05. |
| 〃 | 장아량 | 2017.08.17. |
| 〃 | 고은실 | 2017.02.20. |
| 〃 | 황재동 | 2018.02.05. |
| 〃 | 최진혁 | 2017.02.20. |
| 〃 | 나민영 | 2017.02.20. |
| 〃 | 신은정 | 2017.02.20. |
| 〃 | 이홍석 | 2017.02.20. |
| 〃 | 김세현 | 2018.02.05. |
| 〃 | 김하영 | 2018.02.05. |
| 〃 | 김소정 | 2016.01.27. |
| 〃 | 박상훈 | 2017.04.01. |
| 〃 | 이선미 | 2018.02.05. |
| 〃 | 손현진 | 2018.03.02. |
| 〃 | 이채훈 | 2018.02.05. |
| 〃 | 오자연 | 2016.03.02. |
| 〃 | 유경준 | 2018.08.01. |
| 〃 | 조수연 | 2018.03.02. |
| 〃 | 김정윤 | 2017.03.01. |
| 〃 | 강민욱 | 2017.02.20. |
| 〃 | 정재훈 | 2018.03.02.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 | 김시현 | 2018.04.30. |
| 〃 | 박상준 | 2018.04.30. |
| 사무국장 | 박공우 | 2017.09.27. |
| 총무과장 | 정상훈 | 2018.01.26. |
| 사건과장 | 양인식 | 2018.07.09. |
| 집행과장 | 정찬훈 | 2018.01.26. |
| 수사과장 | 이익희 | 2018.07.09. |
| **(수원지방검찰청)** | | |
| 검사장 | 차경환 | 2018.06.22 |
| 제1차장검사 | 서영수 | 2018.07.19 |
| 제2차장검사 | 이수권 | 2018.07.19 |
| 인권감독관 | 장봉문 | 2018.07.19 |
| 형사제1부장검사 | 김욱준 | 2018.07.19 |
| 형사제2부장검사 | 이준엽 | 2018.07.19 |
| 형사제3부장검사 | 송길대 | 2018.07.19 |
| 형사제4부장검사 | 변필건 | 2018.07.19 |
| 형사제5부장검사 | 강범구 | 2018.07.19 |
|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 | 박현주 | 2018.02.05 |
| 공안부장검사 | 김주필 | 2018.07.19 |
| 특별수사부장검사 | 김경수 | 2018.07.19 |
| 강력부장검사 | 박영빈 | 2018.07.19 |
| 공판송무부장검사 | 김 현 | 2018.07.19 |
| (부부장)검사 | 이광진 | 2018.07.19 |
| 〃 | 윤석주 | 2018.07.19 |
| 〃 | 임 현 | 2018.07.19 |
| 〃 | 이진동 | 2018.07.19 |
| 〃 | 박윤석 | 2018.07.19 |
| 〃 | 박혜경 | 2018.07.19 |
| 〃 | 정효삼 | 2016.08.08 |
| 〃 | 이환기 | 2018.07.19 |
| 〃 | 이영규 | 2018.02.05 |
| 〃 | 최인상 | 2018.07.19 |
| 〃 | 공봉숙 | 2018.07.19 |
| 〃 | 황우진 | 2018.07.19 |
| 〃 | 김윤후 | 2017.08.17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 | 김수민 | 2018.07.19 |
| 〃 | 김수환 | 2018.07.19 |
| 〃 | 이 춘 | 2018.07.19 |
| 검사 | 유정호 | 2016.01.27. |
| 〃 | 안성희 | 2018.07.19. |
| 〃 | 황현아 | 2015.02.25. |
| 〃 | 유옥근 | 2017.02.20. |
| 〃 | 임삼빈 | 2018.02.05. |
| 〃 | 권찬혁 | 2018.02.05. |
| 〃 | 이정민 | 2018.02.05. |
| 〃 | 이상혁 | 2018.02.05. |
| 〃 | 최종혁 | 2018.02.05. |
| 〃 | 고은별 | 2016.01.27. |
| 〃 | 정영서 | 2018.02.05. |
| 〃 | 장진성 | 2017.02.20. |
| 〃 | 손명지 | 2017.02.20. |
| 〃 | 곽금희 | 2017.08.17. |
| 〃 | 한지혁 | 2017.02.20. |
| 〃 | 이은윤 | 2017.02.20. |
| 〃 | 최성겸 | 2016.08.31. |
| 〃 | 김은정 | 2016.01.27. |
| 〃 | 유종건 | 2017.02.20. |
| 〃 | 신승호 | 2017.02.20. |
| 〃 | 김치훈 | 2017.02.20. |
| 〃 | 이지혜 | 2018.02.05. |
| 〃 | 김지아 | 2016.08.31. |
| 〃 | 김 건 | 2017.02.20. |
| 〃 | 진경섭 | 2017.02.20. |
| 〃 | 정성헌 | 2017.02.20. |
| 〃 | 김진영 | 2018.02.05. |
| 〃 | 김 진 | 2015.02.25. |
| 〃 | 김방글 | 2017.02.20. |
| 〃 | 강일민 | 2015.02.25. |
| 〃 | 박성욱 | 2017.02.20. |
| 〃 | 김진희 | 2016.08.31. |
| 〃 | 송민하 | 2017.02.20.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 | 김유나 | 2015.02.25. |
| 〃 | 이재연 | 2017.02.20. |
| 〃 | 한주동 | 2018.02.05. |
| 〃 | 윤성호 | 2018.02.05. |
| 〃 | 최명수 | 2018.02.05. |
| 〃 | 이지은 | 2014.02.05. |
| 〃 | 김정선 | 2016.01.27. |
| 〃 | 박한나 | 2017.02.20. |
| 〃 | 연제혁 | 2017.02.20. |
| 〃 | 이재표 | 2018.02.05. |
| 〃 | 서강원 | 2017.02.20. |
| 〃 | 허세진 | 2018.02.05. |
| 〃 | 박찬영 | 2017.02.20. |
| 〃 | 윤신명 | 2017.02.20. |
| 〃 | 남소정 | 2017.02.20. |
| 〃 | 조소인 | 2018.02.05. |
| 〃 | 김경태 | 2018.02.05. |
| 〃 | 봉진수 | 2018.02.05. |
| 〃 | 정덕채 | 2017.02.20. |
| 〃 | 구세희 | 2017.02.20. |
| 〃 | 이성화 | 2018.02.05. |
| 〃 | 박규남 | 2018.02.05. |
| 〃 | 서아람 | 2018.02.05. |
| 〃 | 이성직 | 2017.03.01. |
| 〃 | 권영우 | 2017.04.01. |
| 〃 | 한윤석 | 2018.04.01. |
| 〃 | 고은진 | 2018.02.05. |
| 〃 | 최윤영 | 2018.08.01. |
| 〃 | 오슬기 | 2017.03.01. |
| 〃 | 정수희 | 2017.03.01. |
| 〃 | 김남용 | 2017.02.20. |
| 〃 | 김정화 | 2018.03.02. |
| 〃 | 공소정 | 2018.03.02. |
| 〃 | 권예리 | 2018.02.05. |
| 〃 | 탁광진 | 2018.04.30. |
| 〃 | 홍철의 | 2018.04.30.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 | 하연지 | 2018.04.30. |
| 사무국장 | 김정옥 | 2018.01.26. |
| 총무과장 | 김한영 | 2018.07.09. |
| 사건과장 | 박영범 | 2018.01.26. |
| 집행과장 | 윤재원 | 2018.07.09. |
| 조사과장 | 김창수 | 2018.07.09. |
| 수사과장 | 이영철 | 2017.09.27. |
| 공판송무과장 | 김혜경 | 2018.07.09. |
| 검사직무대리 | 장정호 | 2017.01.16. |
| 검사직무대리 | 안동선 | 2017.01.16. |
| 검사직무대리 | 최원서 | 2018.01.26. |
| **(성남지청)** | | |
| 지청장 | 조종태 | 2018.07.19 |
| 차장검사 | 최기식 | 2018.07.19 |
| 부장검사 | 양인철 | 2018.07.19 |
| 〃 | 강형민 | 2018.07.19 |
| 〃 | 양동훈 | 2018.07.19 |
| 〃 | 정광일 | 2018.07.19 |
| (부부장)검사 | 권방문 | 2018.07.19 |
| 〃 | 이정렬 | 2018.07.19 |
| 〃 | 서지현 | 2018.07.19 |
| 검사 | 윤동환 | 2017.02.20. |
| 〃 | 장윤영 | 2017.02.20. |
| 〃 | 이유진 | 2017.08.17. |
| 〃 | 조용우 | 2017.02.20. |
| 〃 | 어인성 | 2018.02.05. |
| 〃 | 윤나라 | 2017.02.20. |
| 〃 | 박종선 | 2018.02.05. |
| 〃 | 여경진 | 2017.02.20. |
| 〃 | 최지현 | 2018.02.05. |
| 〃 | 유새롬 | 2015.08.27. |
| 〃 | 김현우 | 2018.02.05. |
| 〃 | 홍석기 | 2017.02.20. |
| 〃 | 조정복 | 2016.01.27. |
| 〃 | 최한나 | 2015.02.25. |
| 〃 | 신정수 | 2017.02.20. |

| 직위 | 성명 | 발령일 |
|---|---|---|
| 사무과장 | 홍승모 | 2018.07.09. |
| 수사과장 | 김영오 | 2018.01.26. |
| **(평택지청)** | | |
| 지청장 | 강지식 | 2018.07.19 |
| 부장검사 | 김우석 | 2018.07.19 |
| 부장검사 | 이동언 | 2018.07.19 |
| 검사 | 오진세 | 2015.02.25. |
| 〃 | 오지석 | 2015.02.25. |
| 〃 | 강현욱 | 2017.02.20. |
| 〃 | 차동호 | 2017.02.20. |
| 〃 | 김동직 | 2018.02.05. |
| 〃 | 박건태 | 2018.02.05. |
| 〃 | 류의준 | 2018.02.05. |
| 〃 | 김한준 | 2018.02.05. |
| 〃 | 장영롱 | 2017.02.20. |
| 〃 | 구재연 | 2017.02.20. |
| 〃 | 김자은 | 2017.02.20. |
| 〃 | 김수현 | 2017.02.20. |
| 〃 | 최재호 | 2018.02.05. |
| 〃 | 최혜민 | 2018.02.05. |
| 〃 | 하보람 | 2018.02.05. |
| 〃 | 양서원 | 2018.02.05. |
| 〃 | 김소영 | 2018.02.05. |
| 사무과장 | 김규하 | 2018.08.27. |
| 수사과장 | 이동진 | 2018.01.26. |
| **(안산지청)** | | |
| 지청장 | 박순철 | 2018.07.19 |
| 차장검사 | 안범진 | 2018.07.19 |
| 부장검사 | 이형관 | 2018.07.19 |
| 〃 | 윤원상 | 2018.07.19 |
| 〃 | 이병대 | 2018.07.19 |
| 〃 | 권재환 | 2018.07.19 |
| (부부장)검사 | 전미화 | 2017.08.17. |
| 〃 | 김향연 | 2018.02.05. |
| 〃 | 김준섭 | 2017.08.17. |
| 〃 | 하신욱 | 2018.07.19. |

| 직위 | 성명 | 발령일 |
|---|---|---|
| 〃 | 김혜주 | 2015.02.25. |
| 〃 | 강 현 | 2017.02.20. |
| 〃 | 오승은 | 2017.02.20. |
| 〃 | 장 진 | 2017.02.20. |
| 〃 | 정민희 | 2018.02.05. |
| 〃 | 김민아 | 2018.02.05. |
| 〃 | 이웅희 | 2017.03.01. |
| 〃 | 김환권 | 2017.04.01. |
| 〃 | 이해영 | 2018.08.01. |
| 〃 | 박형철 | 2017.03.01. |
| 〃 | 윤지윤 | 2017.02.20. |
| 〃 | 정성욱 | 2017.04.27. |
| 〃 | 이영주 | 2018.03.02. |
| 〃 | 김연중 | 2018.02.05. |
| 〃 | 박슬기 | 2018.04.30. |
| 〃 | 배상아 | 2018.04.30. |
| 사무국장 | 양우덕 | 2018.07.09. |
| 총무과장 | 김동욱 | 2018.01.26. |
| 사건과장 | 정해영 | 2018.01.26. |
| 집행과장 | 기용도 | 2018.01.26. |
| 수사과장 | 김병선 | 2018.07.09. |
| 검사직무대리 | 최선규 | 2018.01.26. |
| **(여주지청)** | | |
| 지청장 | 김춘수 | 2018.09.04 |
| 부장검사 | 임대혁 | 2018.07.19 |
| 검사 | 정유리 | 2018.02.05. |
| 〃 | 유병국 | 2015.02.25. |
| 〃 | 이승주 | 2015.02.25. |
| 〃 | 조현웅 | 2017.02.20. |
| 〃 | 김서현 | 2017.02.20. |
| 〃 | 조진용 | 2018.02.05. |
| 〃 | 박노산 | 2018.02.05. |
| 〃 | 정종헌 | 2017.02.20. |
| 〃 | 신주희 | 2017.02.20. |
| 〃 | 원경희 | 2018.02.05. |
| 〃 | 이휘소 | 2018.02.05. |

| 직위 | 성명 | 발령일 |
|---|---|---|
| 검사 | 신금재 | 2016.01.27. |
| 〃 | 홍승현 | 2017.02.20. |
| 〃 | 노정옥 | 2016.01.27. |
| 〃 | 박종선 | 2017.02.20. |
| 〃 | 심형석 | 2018.02.05. |
| 〃 | 박인우 | 2017.02.20. |
| 〃 | 추창현 | 2018.02.05. |
| 〃 | 이주현 | 2018.02.05. |
| 〃 | 김수민 | 2016.01.27. |
| 〃 | 김형아 | 2018.02.05. |
| 〃 | 강명훈 | 2018.02.05. |
| 〃 | 황영섭 | 2018.02.05. |
| 〃 | 권영주 | 2017.02.20. |
| 〃 | 송수연 | 2017.02.20. |
| 〃 | 문지연 | 2017.02.20. |
| 〃 | 최용희 | 2016.01.27. |
| 〃 | 송선민 | 2018.02.05. |
| 〃 | 정선희 | 2017.02.20. |
| 〃 | 김춘성 | 2018.02.05. |
| 〃 | 김은정 | 2018.02.05. |
| 〃 | 박선영 | 2017.02.20. |
| 〃 | 한승훈 | 2017.02.20. |
| 〃 | 이소연 | 2017.02.20. |
| 〃 | 최지예 | 2017.02.20. |
| 〃 | 심강현 | 2018.02.05. |
| 〃 | 김지웅 | 2017.04.01. |
| 〃 | 전종택 | 2017.04.01. |
| 〃 | 조 혁 | 2018.03.02. |
| 〃 | 이은정 | 2016.03.02. |
| 〃 | 나상현 | 2017.03.01. |
| 〃 | 박혜진 | 2017.03.01. |
| 〃 | 김미선 | 2017.02.20. |
| 〃 | 이아람 | 2018.03.02. |
| 〃 | 허강녕 | 2018.03.02. |
| 〃 | 이대희 | 2018.04.30. |
| 〃 | 홍유정 | 2018.04.30. |

| 직위 | 성명 | 발령일 |
|---|---|---|
| 사무국장 | 이강윤 | 2018.07.09. |
| 총무과장 | 전효수 | 2018.07.09. |
| 사건과장 | 이일남 | 2018.01.26. |
| 집행과장 | 권기원 | 2017.09.27. |
| 수사과장 | 정진수 | 2018.07.09. |
| 검사직무대리 | 박호문 | 2018.07.09. |
| **(안양지청)** | | |
| 지청장 | 이현철 | 2018.07.19 |
| 차장검사 | 배용원 | 2018.07.19 |
| 부장검사 | 강종헌 | 2018.07.19 |
| 〃 | 김성훈 | 2018.07.19 |
| 〃 | 장준희 | 2018.07.19 |
| (부부장)검사 | 고형곤 | 2018.02.05 |
| 〃 | 김선문 | 2018.07.19 |
| 〃 | 박순배 | 2018.07.19 |
| 〃 | 최 혁 | 2018.07.19 |
| 〃 | 곽영환 | 2018.07.19 |
| 검사 | 손정숙 | 2018.07.19. |
| 〃 | 조윤철 | 2018.02.05. |
| 〃 | 정영주 | 2018.07.19. |
| 〃 | 김윤정 | 2017.02.20. |
| 〃 | 최수경 | 2018.02.05. |
| 〃 | 변진환 | 2017.02.20. |
| 〃 | 김희연 | 2017.02.20. |
| 〃 | 최승환 | 2018.02.05. |
| 〃 | 김현수 | 2018.02.05. |
| 〃 | 나소라 | 2018.02.05. |
| 〃 | 송가형 | 2018.02.05. |
| 〃 | 정윤정 | 2018.02.05. |
| 〃 | 박기태 | 2017.04.01. |
| 〃 | 성찬용 | 2018.04.01. |
| 〃 | 정세연 | 2018.02.05. |
| 〃 | 김찬우 | 2018.08.01. |
| 〃 | 정혜라 | 2017.03.01. |
| 〃 | 강재하 | 2017.02.20. |
| 〃 | 조하림 | 2017.04.27. |

| 직위 | 성명 | 발령일 |
|---|---|---|
| 〃 | 유소영 | 2018.02.05. |
| 〃 | 정영지 | 2018.04.30. |
| 〃 | 백지은 | 2018.04.30. |
| 사무국장 | 홍현기 | 2018.01.26. |
| 총무과장 | 배길문 | 2018.07.09. |
| 사건과장 | 홍석표 | 2018.01.26. |
| 집행과장 | 박준 | 2018.07.09. |
| 수사과장 | 김현호 | 2017.09.27. |
| **(춘천지방검찰청)** | | |
| 검사장 | 고기영 | 2018.06.22 |
| 차장검사 | 황은영 | 2018.07.19 |
| 부장검사 | 박길배 | 2018.07.19 |
| 〃 | 손우창 | 2018.07.19 |
| (부부장)검사 | 김원호 | 2018.07.19 |
| 〃 | 이정우 | 2018.07.19 |
| 〃 | 이혜은 | 2018.07.19 |
| 검사 | 이정배 | 2017.02.20. |
| 〃 | 허 준 | 2018.02.05. |
| 〃 | 정보영 | 2018.02.05. |
| 〃 | 최희정 | 2017.02.20. |
| 〃 | 조은수 | 2018.07.19. |
| 〃 | 이자경 | 2018.02.05. |
| 〃 | 안재욱 | 2017.02.20. |
| 〃 | 이한별 | 2017.03.01. |
| 〃 | 장유나 | 2017.02.20. |
| 〃 | 양준열 | 2017.04.01. |
| 〃 | 안동찬 | 2018.04.01. |
| 〃 | 임병일 | 2018.02.05. |
| 〃 | 김지혜 | 2018.03.02. |
| 〃 | 정종일 | 2018.04.30. |
| 〃 | 정기하 | 2018.04.30. |
| 사무국장 | 윤득영 | 2018.01.26. |
| 총무과장 | 손동섭 | 2018.07.09. |
| 사건과장 | 위재홍 | 2018.01.26. |
| 수사과장 | 전병후 | 2018.07.09. |
| 집행과장 | 이동근 | 2018.01.26. |

| 직위 | 성명 | 발령일 |
|---|---|---|
| **(강릉지청)** | | |
| 지청장 | 한석리 | 2018.07.19 |
| 부장검사 | 박승환 | 2018.07.19 |
| 검사 | 진세언 | 2017.02.20. |
| 〃 | 구승기 | 2018.02.05. |
| 〃 | 민경원 | 2018.02.05. |
| 〃 | 박재성 | 2018.02.05. |
| 〃 | 김수길 | 2018.02.05. |
| 〃 | 하지수 | 2017.02.20. |
| 〃 | 서민우 | 2018.02.05. |
| 〃 | 박동준 | 2018.02.05. |
| 사무과장 | 전명관 | 2018.01.26. |
| 수사과장 | 박원백 | 2018.07.09. |
| **(원주지청)** | | |
| 지청장 | 배용찬 | 2018.07.19 |
| 부장검사 | 문영권 | 2018.07.19 |
| 〃 | 이복현 | 2018.07.19 |
| 검사 | 이강우 | 2016.01.27. |
| 〃 | 정종원 | 2017.02.20. |
| 〃 | 이현진 | 2018.02.05. |
| 〃 | 남상오 | 2018.02.05. |
| 〃 | 양재헌 | 2017.02.20. |
| 〃 | 나혜윤 | 2017.02.20. |
| 〃 | 정일두 | 2017.02.20. |
| 〃 | 김동민 | 2018.02.05. |
| 〃 | 김해슬 | 2018.02.05. |
| 〃 | 김다락 | 2018.02.05. |
| 〃 | 강인선 | 2018.02.05. |
| 사무과장 | 강종식 | 2017.01.16. |
| 수사과장 | 노진철 | 2018.07.09. |
| **(속초지청)** | | |
| 지청장 | 박성민 | 2018.07.19 |
| 검사 | 김세관 | 2016.01.27 |
| 〃 | 권오장 | 2018.02.05 |
| 〃 | 황해철 | 2017.02.20 |
| 〃 | 최선희 | 2018.02.05 |

| 직위 | 성명 | 발령일 |
|---|---|---|
| 사무과장 | 김승호 | 2017.09.27. |
| **(영월지청)** | | |
| 지청장 | 차순길 | 2018.07.19 |
| 검사 | 김영민 | 2017.02.20 |
| 〃 | 안홍균 | 2018.02.05 |
| 〃 | 안인수 | 2017.02.20 |
| 〃 | 김동휘 | 2018.02.05 |
| 사무과장 | 이영일 | 2017.09.27. |
| **(대전고등검찰청)** | | |
| 검사장 | 이금로 | 2018.06.22. |
| 검사 | 백순현 | 2017.08.17. |
| 〃 | 이학성 | 2018.07.19. |
| 〃 | 신은철 | 2018.07.19. |
| 〃 | 백찬하 | 2018.07.19. |
| 〃 | 강여찬 | 2017.08.17. |
| 〃 | 고석홍 | 2018.07.19. |
| 〃 | 박석재 | 2018.07.19. |
| 〃 | 김용빈 | 2017.08.17. |
| 〃 | 박광섭 | 2018.07.19. |
| 사무국장 | 김진우 | 2018.01.26. |
| 총무과장 | 곽대규 | 2017.09.27. |
| 사건과장 | 조연기 | 2017.09.27. |
| **(대전지방검찰청)** | | |
| 검사장 | 조상철 | 2018.06.22 |
| 차장검사 | 이성희 | 2018.07.19 |
| 인권감독관 | 황종근 | 2018.07.19 |
| 형사제1부장검사 | 나찬기 | 2018.07.19 |
| 형사제2부장검사 | 이영재 | 2018.07.19 |
| 형사제3부장검사 | 김윤섭 | 2018.10.01 |
|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 윤진용 | 2018.07.19 |
| 공안부장검사 | 박상진 | 2018.07.19 |
| 특별수사부장검사 | 임승철 | 2018.07.19 |
| 특허범죄조사부부장검사 | 강지성 | 2018.07.19 |
| 공판부장검사 | 하담미 | 2018.07.19 |

| 직위 | 성명 | 발령일 |
|---|---|---|
| (부부장)검사 | 이주일 | 2017.08.17 |
| 〃 | 김종칠 | 2018.07.19 |
| 〃 | 배성효 | 2017.08.17 |
| 〃 | 조석영 | 2015.02.25. |
| 〃 | 박홍규 | 2018.07.19. |
| 〃 | 이종민 | 2017.08.17. |
| 〃 | 김형주 | 2018.07.19. |
| 〃 | 김종현 | 2018.07.19. |
| 〃 | 이준범 | 2018.07.19. |
| 〃 | 김호준 | 2018.07.19. |
| 검사 | 이동원 | 2017.08.17. |
| 〃 | 권현유 | 2017.02.20. |
| 〃 | 이성범 | 2016.01.27. |
| 〃 | 이준호 | 2017.02.20. |
| 〃 | 박종민 | 2017.08.17. |
| 〃 | 조영희 | 2018.02.05. |
| 〃 | 오미경 | 2018.02.05. |
| 〃 | 손상희 | 2017.02.20. |
| 〃 | 권성희 | 2016.08.31. |
| 〃 | 김정국 | 2018.02.05. |
| 〃 | 송준구 | 2017.02.20. |
| 〃 | 임연진 | 2017.02.20. |
| 〃 | 이주희 | 2017.02.20. |
| 〃 | 김지언 | 2018.02.05. |
| 〃 | 이규원 | 2018.02.05. |
| 〃 | 호승진 | 2017.02.20. |
| 〃 | 김정화 | 2017.02.20. |
| 〃 | 최정민 | 2017.02.20. |
| 〃 | 김정은 | 2015.02.25. |
| 〃 | 장려미 | 2018.02.05. |
| 〃 | 고아라 | 2017.02.20. |
| 〃 | 김한민 | 2018.02.05. |
| 〃 | 이주훈 | 2018.02.05. |
| 〃 | 최근영 | 2018.07.19. |
| 〃 | 임은정 | 2017.02.20. |
| 〃 | 신기용 | 2017.02.20.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 | 김윤진 | 2018.02.05. |
| 〃 | 안화연 | 2017.02.20. |
| 〃 | 김민희 | 2017.02.20. |
| 〃 | 박영우 | 2018.02.05. |
| | 김정화 | 2018.02.05. |
| 사 무 과 장 | 이상돈 | 2018.07.09. |
| 수 사 과 장 | 서용기 | 2017.09.27. |
| **( 공 주 지 청 )** | | |
| 지 청 장 | 고필형 | 2018.07.19 |
| 검 사 | 윤기선 | 2017.02.20. |
| 〃 | 신기창 | 2018.02.05. |
| 〃 | 정소영 | 2018.02.05. |
| 〃 | 김연수 | 2017.02.20. |
| 사 무 과 장 | 김용대 | 2017.09.27. |
| **( 논 산 지 청 )** | | |
| 지 청 장 | 이건령 | 2018.07.19 |
| 검 사 | 유제민 | 2016.01.27 |
| 검 사 | 김우중 | 2017.02.20 |
| 〃 | 임진철 | 2018.02.05 |
| 〃 | 조재익 | 2017.02.20 |
| 〃 | 길선미 | 2017.02.20 |
| 사 무 과 장 | 이전철 | 2017.09.27. |
| **( 서 산 지 청 )** | | |
| 지 청 장 | 고은석 | 2018.07.19 |
| 부 장 검 사 | 장윤태 | 2018.07.19 |
| 검 사 | 이주형 | 2017.02.20. |
| 〃 | 정성두 | 2017.02.20. |
| 〃 | 차병곤 | 2018.02.05. |
| 〃 | 박민경 | 2017.02.20. |
| 〃 | 전우진 | 2017.02.20. |
| 〃 | 김희진 | 2017.02.20. |
| 〃 | 노영진 | 2018.02.05. |
| 〃 | 강민정 | 2018.02.05. |
| 사 무 과 장 | 박시중 | 2017.09.27. |
| 수 사 과 장 | 조형식 | 2017.09.27. |
| **( 천 안 지 청 )** | | |
| 〃 | 김태희 | 2017.02.20. |
| 〃 | 김해밝은 | 2018.02.05. |
| 〃 | 정윤식 | 2018.02.05. |
| 〃 | 박재훈 | 2018.02.05. |
| 〃 | 황윤선 | 2015.02.25. |
| 〃 | 신지나 | 2016.01.27. |
| 〃 | 김은혜 | 2018.02.05. |
| 〃 | 국양근 | 2018.02.05. |
| 〃 | 윤효정 | 2017.02.20. |
| 〃 | 현승록 | 2018.02.05. |
| 〃 | 김현곤 | 2016.01.27. |
| 〃 | 이승훈 | 2018.02.05. |
| 〃 | 이승수 | 2017.04.01. |
| 〃 | 김유완 | 2018.04.01. |
| 〃 | 오광일 | 2018.02.05. |
| 〃 | 김종민 | 2017.03.01. |
| 〃 | 이지은 | 2016.05.02. |
| 〃 | 임명환 | 2017.02.20. |
| 〃 | 황종현 | 2017.04.27. |
| 〃 | 정고운 | 2018.02.05. |
| 〃 | 박수영 | 2018.04.30. |
| 〃 | 김태완 | 2018.04.30. |
| 〃 | 김민영 | 2018.04.30. |
| 사 무 국 장 | 이갑수 | 2018.07.09. |
| 총 무 과 장 | 김동휘 | 2018.07.09. |
| 사 건 과 장 | 김춘호 | 2018.01.26. |
| 집 행 과 장 | 김태경 | 2017.09.27. |
| 조 사 과 장 | 신정호 | 2018.07.09. |
| 수 사 과 장 | 유광복 | 2017.09.27. |
| 검 사 직 무 대 리 | 김재영 | 2018.07.09. |
| **( 홍 성 지 청 )** | | |
| 지 청 장 | 이 용 | 2018.07.19. |
| 부 장 검 사 | 박광현 | 2018.07.19. |
| 검 사 | 석수민 | 2016.01.27. |
| 〃 | 문종배 | 2017.02.20. |
| 〃 | 이수행 | 2018.02.05. |

| 직위 | 성명 | 발령일 |
|---|---|---|
| 지청장 | 임관혁 | 2018.07.19 |
| 차장검사 | 이선욱 | 2018.07.19 |
| 부장검사 | 김양수 | 2018.07.19 |
| 〃 | 장성철 | 2018.07.19 |
| 〃 | 박인우 | 2018.07.19 |
| 검사 | 허수진 | 2017.02.20. |
| 〃 | 조석규 | 2016.01.27. |
| 〃 | 김형원 | 2018.07.19. |
| 〃 | 원신혜 | 2015.08.27. |
| 〃 | 강호준 | 2017.02.20. |
| 〃 | 정재신 | 2017.02.20. |
| 〃 | 이수창 | 2015.02.25. |
| 〃 | 차호동 | 2014.02.05. |
| 〃 | 서혜선 | 2014.08.29. |
| 〃 | 김연주 | 2017.02.20. |
| 〃 | 박배희 | 2016.08.31. |
| 〃 | 강현정 | 2018.02.05. |
| 〃 | 최지은 | 2017.02.20. |
| 〃 | 이종민 | 2017.04.01. |
| 〃 | 이평화 | 2018.02.05. |
| 〃 | 이동원 | 2018.03.02. |
| 〃 | 고재린 | 2017.02.20. |
| 〃 | 김동욱 | 2018.08.01. |
| 〃 | 심동선 | 2018.03.02. |
| 〃 | 신종화 | 2018.04.30. |
| 〃 | 정세연 | 2018.04.30. |
| 사무과장 | 박상락 | 2017.09.27. |
| 집행과장 | 이상민 | 2018.07.09. |
| 수사과장 | 강영진 | 2017.09.27. |
| **(청주지방검찰청)** | | |
| 검사장 | 여환섭 | 2018.06.22 |
| 차장검사 | 조기룡 | 2018.07.19 |
| 부장검사 | 황병주 | 2018.07.19 |
| 〃 | 김형수 | 2018.07.19 |
| 〃 | 최영아 | 2018.07.19 |
| (부부장)검사 | 곽규홍 | 2018.07.19 |

| 직위 | 성명 | 발령일 |
|---|---|---|
| 〃 | 김기준 | 2018.07.19 |
| 〃 | 박정의 | 2018.07.19. |
| 〃 | 김정환 | 2018.07.19. |
| 〃 | 이영화 | 2018.07.19. |
| 〃 | 손찬오 | 2018.07.19. |
| 〃 | 유지연 | 2018.07.19. |
| 검사 | 마수열 | 2017.02.20. |
| 〃 | 이승형 | 2017.02.20. |
| 〃 | 박현규 | 2018.02.05. |
| 〃 | 김도연 | 2018.02.05. |
| 〃 | 임예진 | 2018.02.05. |
| 〃 | 김해중 | 2017.02.20. |
| 〃 | 정가진 | 2018.02.05. |
| 〃 | 장영일 | 2018.02.05. |
| 〃 | 장욱환 | 2016.01.27. |
| 〃 | 최혜경 | 2017.02.20. |
| 〃 | 곽계령 | 2017.02.20. |
| 〃 | 홍상철 | 2017.02.20. |
| 〃 | 최하연 | 2017.02.20. |
| 〃 | 강화연 | 2017.02.20. |
| 〃 | 최현주 | 2018.02.05. |
| 〃 | 이도희 | 2017.02.20. |
| 〃 | 박동주 | 2017.02.20. |
| 〃 | 박세혁 | 2017.04.01. |
| 〃 | 박원영 | 2017.03.01. |
| 〃 | 최희선 | 2018.02.05. |
| 〃 | 김청아 | 2017.02.20. |
| 〃 | 김원재 | 2018.02.05. |
| 〃 | 김병준 | 2018.04.30. |
| 사무국장 | 유승준 | 2018.01.26. |
| 총무과장 | 김득호 | 2018.07.09. |
| 사건과장 | 이승재 | 2018.07.09. |
| 집행과장 | 이창희 | 2018.01.26. |
| 수사과장 | 박시우 | 2018.01.26. |
| 검사직무대리 | 정태운 | 2018.07.09. |

| 직위 | 성명 | 발령일 |
|---|---|---|
| 제1차장검사 | 서영민 | 2018.07.19 |
| 제2차장검사 | 김재옥 | 2018.07.19 |
| 인권감독관 | 손석천 | 2018.07.19 |
| 형사제1부장검사 | 김지용 | 2018.07.19 |
| 형사제2부장검사 | 홍종희 | 2018.07.19 |
| 형사제3부장검사 | 이재승 | 2018.07.19 |
| 형사제4부장검사 | 박주현 | 2018.07.19 |
|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 | 서창원 | 2018.07.19 |
| 공판부장검사 | 진철민 | 2018.07.19 |
| 공안부장검사 | 김성동 | 2018.07.19 |
| 특별수사부장검사 | 박성훈 | 2018.07.19 |
| 강력부장검사검사 | 전무곤 | 2018.07.19 |
| (부부장)검사 | 권도욱 | 2017.08.17 |
| 〃 | 이재덕 | 2017.08.17 |
| 〃 | 심재계 | 2017.08.17 |
| 〃 | 주용완 | 2018.07.19. |
| 〃 | 김정훈 | 2018.07.19. |
| 〃 | 유태석 | 2017.08.17. |
| 〃 | 김승호 | 2018.07.19. |
| 〃 | 김종우 | 2018.07.19. |
| 검사 | 김민아 | 2016.01.27. |
| 〃 | 오종렬 | 2018.02.05. |
| 〃 | 임길섭 | 2018.07.19. |
| 〃 | 안동건 | 2017.02.20. |
| 〃 | 최나영 | 2015.08.27. |
| 〃 | 유효제 | 2018.02.05. |
| 〃 | 정명원 | 2015.02.25. |
| 〃 | 송영인 | 2017.02.20. |
| 〃 | 정현주 | 2017.08.17. |
| 〃 | 이상훈 | 2018.02.05. |
| 〃 | 김희영 | 2016.01.27. |
| 〃 | 이원모 | 2018.07.19. |
| 〃 | 국 진 | 2018.07.19. |
| 〃 | 김지숙 | 2016.01.27. |
| 〃 | 정대희 | 2016.08.31. |

| 직위 | 성명 | 발령일 |
|---|---|---|
| **(충주지청)** | | |
| 지청장 | 박철완 | 2018.07.19 |
| 부장검사 | 임은정 | 2018.07.19 |
| 검사 | 함재원 | 2016.01.27 |
| 〃 | 오승환 | 2017.02.20 |
| 〃 | 강현호 | 2018.02.05 |
| 〃 | 김연희 | 2017.02.20 |
| 〃 | 김필수 | 2017.02.20 |
| 〃 | 김민수 | 2018.02.05 |
| 사무과장 | 홍흥표 | 2018.01.26. |
| **(제천지청)** | | |
| 지청장 | 서정민 | 2018.07.19 |
| 검사 | 송형진 | 2018.02.05. |
| 〃 | 김주혜 | 2017.02.20. |
| 〃 | 임정빈 | 2017.02.20. |
| 사무과장 | 이시동 | 2017.09.27. |
| **(영동지청)** | | |
| 지청장 | 배성훈 | 2018.07.19 |
| 검사 | 오흥식 | 2017.02.20 |
| 〃 | 신의호 | 2018.02.05 |
| 사무과장 | 장종철 | 2017.09.27. |
| **(대구고등검찰청)** | | |
| 검사장 | 김호철 | 2018.06.22 |
| 검사 | 신배식 | 2018.07.19 |
| 〃 | 김호영 | 2018.07.19 |
| 〃 | 손순혁 | 2018.07.19 |
| 〃 | 정성윤 | 2017.08.17 |
| 〃 | 류원근 | 2018.07.19 |
| 〃 | 주진철 | 2018.07.19 |
| 〃 | 채석현 | 2017.08.17 |
| 〃 | 이철호 | 2017.08.17 |
| 사무국장 | 강성식 | 2018.07.09. |
| 총무과장 | 노희동 | 2018.07.09. |
| 사건과장 | 윤영우 | 2018.01.26. |
| **(대구지방검찰청)** | | |
| 검사장 | 박윤해 | 2018.06.22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 | 이동근 | 2018.02.05. |
| 〃 | 이경석 | 2018.02.05. |
| 〃 | 차경자 | 2018.02.05. |
| 〃 | 황진아 | 2017.02.20. |
| 〃 | 김석훈 | 2017.02.20. |
| 〃 | 권영필 | 2018.02.05. |
| 〃 | 김민정 | 2018.02.05. |
| 〃 | 허정은 | 2017.02.20. |
| 〃 | 김동진 | 2017.02.20. |
| 〃 | 이기영 | 2016.01.27. |
| 〃 | 이진희 | 2017.02.20. |
| 〃 | 신헌섭 | 2018.02.05. |
| 〃 | 정동현 | 2016.01.27. |
| 〃 | 황수희 | 2017.02.20. |
| 〃 | 김정훈 | 2018.02.05. |
| 〃 | 이주연 | 2016.01.27. |
| 〃 | 홍민유 | 2017.02.20. |
| 〃 | 남경우 | 2017.02.20. |
| 〃 | 유재근 | 2017.02.20. |
| 〃 | 이종민 | 2017.02.20. |
| 〃 | 금명원 | 2017.02.20. |
| 〃 | 장영준 | 2017.02.20. |
| 〃 | 장준혁 | 2017.02.20. |
| 〃 | 김영석 | 2017.02.20. |
| 〃 | 나상돈 | 2017.02.20. |
| 〃 | 장지영 | 2018.02.05. |
| 〃 | 손정현 | 2017.02.20. |
| 〃 | 배석희 | 2018.02.05. |
| 〃 | 김슬아 | 2018.02.05. |
| 〃 | 문태권 | 2018.02.05. |
| 〃 | 조혜민 | 2018.02.05. |
| 〃 | 송성광 | 2018.02.05. |
| 〃 | 이동훈 | 2017.04.01. |
| 〃 | 안제홍 | 2018.03.02. |
| 〃 | 최정훈 | 2018.04.01. |
| 〃 | 장근보 | 2018.08.01.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 | 오정헌 | 2018.02.05. |
| 〃 | 박선하 | 2017.03.01. |
| 〃 | 차민형 | 2017.03.01. |
| 〃 | 한두현 | 2017.02.20. |
| 〃 | 김필수 | 2017.04.27. |
| 〃 | 이형우 | 2018.04.30. |
| 사무국장 | 권상일 | 2018.07.09. |
| 총무과장 | 신범수 | 2017.09.27. |
| 사건과장 | 임경진 | 2018.07.09. |
| 집행과장 | 마재익 | 2018.01.26. |
| 수사과장 | 박무선 | 2018.07.09. |
| 조사과장 | 박원길 | 2017.09.27. |
| 공판과장 | 김명규 | 2018.01.26. |
| 검사직무대리 | 구영한 | 2018.01.26. |
| 검사직무대리 | 강태수 | 2018.07.09. |
| **(대구서부지청)** | | |
| 지청장 | 백재명 | 2018.07.19 |
| 차장검사 | 이철희 | 2018.07.19 |
| 부장검사 | 박재휘 | 2018.07.19 |
| 부장검사 | 우승배 | 2018.07.19 |
| 〃 | 이태일 | 2018.07.19 |
| 〃 | 정일균 | 2018.07.19 |
| 검사 | 조만래 | 2017.02.20. |
| 〃 | 조지은 | 2018.07.19. |
| 〃 | 황보현희 | 2014.02.05. |
| 〃 | 진혜원 | 2018.02.05. |
| 〃 | 문지석 | 2016.01.27. |
| 〃 | 이수진 | 2018.02.05. |
| 〃 | 나영욱 | 2015.02.25. |
| 〃 | 이지연 | 2016.08.31. |
| 〃 | 김준호 | 2017.02.20. |
| 〃 | 최윤경 | 2018.02.05. |
| 〃 | 임지수 | 2018.02.05. |
| 〃 | 최성규 | 2016.01.27. |
| 〃 | 서소희 | 2017.02.20. |
| 〃 | 남지민 | 2017.02.20. |

| 직위 | 성명 | 발령일 |
|---|---|---|
| 〃 | 홍해숙 | 2017.02.20. |
| 〃 | 임수민 | 2017.02.20. |
| 〃 | 최민준 | 2018.02.05. |
| 〃 | 채필규 | 2018.02.05. |
| 〃 | 박철량 | 2018.02.05. |
| 〃 | 박대웅 | 2017.04.01. |
| 〃 | 최진우 | 2018.03.02. |
| 〃 | 장우혁 | 2017.03.01. |
| 〃 | 김민주 | 2017.02.20. |
| 〃 | 안창인 | 2017.04.27. |
| 사무국장 | 김묵진 | 2018.07.09. |
| 총무과장 | 한상임 | 2017.09.27. |
| 사건과장 | 김동욱 | 2018.07.09. |
| 집행과장 | 차한우 | 2018.01.26. |
| 수사과장 | 김재복 | 2018.07.09. |
| **(안동지청)** | | |
| 지청장 | 최종무 | 2018.07.19 |
| 검사 | 김대현 | 2015.02.25 |
| 〃 | 송태원 | 2017.02.20 |
| 〃 | 신현덕 | 2017.02.20 |
| 〃 | 이재원 | 2018.02.05 |
| 〃 | 여재영 | 2017.02.20 |
| 〃 | 윤오연 | 2018.02.05 |
| 사무과장 | 김윤기 | 2017.09.27. |
| 수사과장 | 권재영 | 2018.07.09. |
| **(경주지청)** | | |
| 지청장 | 한웅재 | 2018.07.19 |
| 부장검사 | 조홍용 | 2018.07.19 |
| 검사 | 이종원 | 2017.02.20. |
| 〃 | 박중화 | 2018.02.05. |
| 〃 | 고려진 | 2017.02.20. |
| 〃 | 박지연 | 2017.02.20. |
| 〃 | 이자희 | 2018.02.05. |
| 〃 | 홍등불 | 2018.02.05. |
| 〃 | 정주희 | 2018.02.05. |
| 사무과장 | 이문규 | 2018.07.09. |

| 직위 | 성명 | 발령일 |
|---|---|---|
| 수사과장 | 김종철 | 2017.09.27. |
| **(포항지청)** | | |
| 지청장 | 김동주 | 2018.07.19 |
| 부장검사 | 이성일 | 2018.07.19 |
| 검사 | 김원지 | 2018.07.19 |
| 〃 | 박영상 | 2015.02.25. |
| 〃 | 최성준 | 2016.01.27. |
| 〃 | 한승진 | 2017.02.20. |
| 〃 | 양근욱 | 2018.02.05. |
| 〃 | 박경남 | 2018.02.05. |
| 〃 | 조지현 | 2018.02.05. |
| 〃 | 석동현 | 2018.02.05. |
| 〃 | 김서영 | 2016.01.27. |
| 〃 | 송현탁 | 2017.02.20. |
| 〃 | 김승미 | 2017.02.20. |
| 〃 | 김지수 | 2017.02.20. |
| 〃 | 원상환 | 2018.02.05. |
| 〃 | 유승진 | 2018.02.05. |
| 〃 | 오세진 | 2018.02.05. |
| 사무과장 | 박문규 | 2018.07.09. |
| 집행과장 | 김재곤 | 2018.07.09. |
| 수사과장 | 김희철 | 2017.09.27. |
| **(김천지청)** | | |
| 지청장 | 황현덕 | 2018.02.05 |
| 부장검사 | 강승희 | 2018.07.19 |
| 〃 | 김정진 | 2018.07.19 |
| 검사 | 김도형 | 2017.02.20. |
| 〃 | 탁동완 | 2017.02.20. |
| 〃 | 박진섭 | 2018.02.05. |
| 〃 | 박광호 | 2018.02.05. |
| 〃 | 이경아 | 2016.01.27. |
| 〃 | 김아연 | 2017.02.20. |
| 〃 | 문동기 | 2017.02.20. |
| 〃 | 김준성 | 2017.02.20. |
| 〃 | 이안나 | 2017.02.20. |
| 〃 | 원민영 | 2018.02.05.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 | 김현창 | 2018.02.05. |
| 사무과장 | 주영호 | 2018.01.26. |
| 수사과장 | 한상수 | 2018.07.09. |
| **(상주지청)** | | |
| 지청장 | 송지용 | 2018.07.19 |
| 검사 | 김한울 | 2017.02.20 |
| 〃 | 임성수 | 2018.02.05 |
| 〃 | 도윤지 | 2018.02.05 |
| 사무과장 | 김정호 | 2018.07.09. |
| **(의성지청)** | | |
| 지청장 | 박태호 | 2018.07.19 |
| 검사 | 유광선 | 2018.02.05 |
| 〃 | 전형준 | 2017.02.20 |
| 사무과장 | 김종기 | 2017.09.27. |
| **(영덕지청)** | | |
| 지청장 | 정용환 | 2018.07.19 |
| 검사 | 신영삼 | 2016.01.27 |
| 〃 | 서동인 | 2017.02.20 |
| 〃 | 박승균 | 2018.02.05 |
| 사무과장 | 김재홍 | 2017.09.27. |
| **(부산고등검찰청)** | | |
| 검사장 | 황철규 | 2018.06.22. |
| 차장검사 | 박성진 | 2018.06.22. |
| 검사 | 최영권 | 2018.07.19. |
| 〃 | 정병대 | 2018.07.19. |
| 〃 | 박종기 | 2018.07.19. |
| 〃 | 이제관 | 2016.01.13. |
| 〃 | 박규은 | 2018.07.19. |
| 〃 | 최인호 | 2018.07.19. |
| 〃 | 박찬일 | 2016.01.13. |
| 〃 | 윤중기 | 2016.01.13. |
| 〃 | 노상길 | 2017.08.17. |
| 〃 | 신교임 | 2018.07.19. |
| 〃 | 이제영 | 2018.02.14. |
| 사무국장 | 이정범 | 2018.07.09. |
| 총무과장 | 이연성 | 2018.07.09.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사건과장 | 이철수 | 2018.01.26. |
| **(부산지방검찰청)** | | |
| 검사장 | 김기동 | 2018.06.22 |
| 제1차장검사 | 김광수 | 2018.07.19 |
| 제2차장검사 | 조상준 | 2018.07.19 |
| 인권감독관 | 송연규 | 2018.07.19 |
| 형사제1부장검사 | 이준식 | 2018.07.19 |
| 형사제2부장검사 | 주상용 | 2018.07.19 |
| 형사제3부장검사 | 이동수 | 2018.07.19 |
|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 | 윤경원 | 2018.07.19 |
| 공판부장검사 | 정재훈 | 2018.07.19 |
| 공안부장검사 | 이상진 | 2018.07.19 |
| 특별수사부장검사 | 박승대 | 2018.07.19 |
| 강력부장검사 | 류국량 | 2018.07.19 |
| 외사부장검사 | 유동호 | 2018.07.19 |
| (부부장)검사 | 김용주 | 2017.08.17 |
| 〃 | 박동진 | 2018.07.19 |
| 〃 | 이종구 | 2017.08.17 |
| 〃 | 류장만 | 2013.04.23. |
| 〃 | 박재억 | 2018.07.19. |
| 〃 | 정진우 | 2018.07.19. |
| 〃 | 장소영 | 2018.07.19. |
| 〃 | 최우영 | 2018.07.19. |
| 〃 | 김영철 | 2018.07.19. |
| 〃 | 하동우 | 2018.07.19. |
| 〃 | 박규형 | 2018.07.19. |
| 〃 | 장준호 | 2018.07.19. |
| 〃 | 한기식 | 2018.07.19. |
| 〃 | 김봉준 | 2018.07.19. |
| 검사 | 이준동 | 2018.02.05. |
| 〃 | 이일규 | 2018.02.05. |
| 〃 | 김용식 | 2017.02.20. |
| 〃 | 권나원 | 2018.02.05. |
| 〃 | 손정현 | 2018.02.05. |
| 〃 | 주혜진 | 2017.02.20.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 | 신승희 | 2016.01.27. |
| 〃 | 김영미 | 2015.02.25. |
| 〃 | 김희영 | 2015.08.27. |
| 〃 | 김창희 | 2018.07.19. |
| 〃 | 박상수 | 2018.07.19. |
| 〃 | 김민구 | 2016.01.27. |
| 〃 | 송규영 | 2018.02.05. |
| 〃 | 손지혜 | 2014.08.29. |
| 〃 | 신미량 | 2018.02.05. |
| 〃 | 이정훈 | 2018.02.05. |
| 〃 | 서민석 | 2017.02.20. |
| 〃 | 장세진 | 2017.02.20. |
| 〃 | 이주희 | 2015.02.25. |
| 〃 | 이세종 | 2016.01.27. |
| 〃 | 박성진 | 2017.02.20. |
| 〃 | 서재희 | 2017.08.17. |
| 〃 | 이창희 | 2018.02.05. |
| 〃 | 박은혜 | 2014.02.05. |
| 〃 | 오상연 | 2018.02.05. |
| 〃 | 손아지 | 2016.01.27. |
| 〃 | 이윤환 | 2017.02.20. |
| 〃 | 임홍석 | 2015.02.25. |
| 〃 | 이자영 | 2018.02.05. |
| 〃 | 김영식 | 2018.02.05. |
| 〃 | 조종민 | 2018.02.05. |
| 〃 | 진종규 | 2018.02.05. |
| 〃 | 김미선 | 2018.02.05. |
| 〃 | 김혜림 | 2016.01.27. |
| 〃 | 김정연 | 2017.02.20. |
| 〃 | 김희동 | 2017.02.20. |
| 〃 | 임상규 | 2017.02.20. |
| 〃 | 문민영 | 2015.02.25. |
| 〃 | 홍현준 | 2017.02.20. |
| 〃 | 김현웅 | 2018.02.05. |
| 〃 | 박경세 | 2018.02.05. |
| 〃 | 송윤상 | 2018.02.05.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 | 최주원 | 2018.02.05. |
| 〃 | 이정규 | 2018.02.05. |
| 〃 | 홍석원 | 2017.04.01. |
| 〃 | 박종현 | 2018.04.01. |
| 〃 | 문승철 | 2018.08.01. |
| 〃 | 김나영 | 2017.03.01. |
| 〃 | 정인혜 | 2017.03.01. |
| 〃 | 김준영 | 2017.02.20. |
| 〃 | 홍영기 | 2018.03.02. |
| 〃 | 김태영 | 2018.02.05. |
| 〃 | 최건호 | 2018.04.30. |
| 〃 | 가혜리 | 2018.04.30. |
| 〃 | 한채란 | 2018.04.30. |
| 사무국장 | 정연익 | 2018.01.26. |
| 총무과장 | 이이득 | 2018.07.09. |
| 사건과장 | 유동호 | 2017.09.27. |
| 집행과장 | 김종갑 | 2018.01.26. |
| 조사과장 | 조재화 | 2017.09.27. |
| 수사과장 | 김문곤 | 2018.01.26. |
| 조직범죄수사과장 | 김천수 | 2018.07.09. |
| 마약수사과장 | 고은호 | 2018.01.26. |
| 공판과장 | 최환경 | 2017.09.27. |
| 검사직무대리 | 장문찬 | 2017.09.27. |
| 검사직무대리 | 강균일 | 2017.01.16. |
| **(부산동부지청)** | | |
| 지청장 | 이철희 | 2018.07.19 |
| 차장검사 | 전성원 | 2018.07.19 |
| 형사제1부장검사 | 서정식 | 2018.07.19 |
| 형사제2부장검사 | 천관영 | 2018.07.19 |
| 형사제3부장검사 | 김희경 | 2018.07.19 |
| (부부장)검사 | 구자현 | 2018.02.05 |
| 검사 | 김병문 | 2016.01.27. |
| 〃 | 최우균 | 2016.01.27. |
| 〃 | 박성민 | 2016.01.27. |
| 〃 | 이동현 | 2017.02.20. |
| 〃 | 김은경 | 2018.02.05.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 | 이유현 | 2016.08.31. |
| 〃 | 최유리 | 2018.02.05. |
| 〃 | 송혜숙 | 2018.02.05. |
| 〃 | 이수진 | 2018.07.19. |
| 〃 | 김봉경 | 2015.02.25. |
| 〃 | 이현석 | 2018.02.05. |
| 〃 | 이나경 | 2016.01.27. |
| 〃 | 이용정 | 2018.02.05. |
| 〃 | 신지원 | 2018.02.05. |
| 〃 | 박병인 | 2017.04.01. |
| 〃 | 이기명 | 2015.02.25. |
| 〃 | 이희욱 | 2018.04.01. |
| 〃 | 박상환 | 2018.08.01. |
| 〃 | 이고은 | 2016.03.02. |
| 〃 | 정지희 | 2017.03.01. |
| 〃 | 양세동 | 2017.02.20. |
| 〃 | 박상희 | 2018.03.02. |
| 〃 | 정은경 | 2018.04.30. |
| 사 무 국 장 | 김종일 | 2018.07.09. |
| 총 무 과 장 | 원용주 | 2018.01.26. |
| 사 건 과 장 | 최정철 | 2017.09.27. |
| 집 행 과 장 | 남우채 | 2018.07.09. |
| 수 사 과 장 | 김영진 | 2017.09.27. |
| **( 부 산 서 부 지 청 )** | | |
| 지 청 장 | 김덕길 | 2018.07.19 |
| 차 장 검 사 | 박소영 | 2018.07.19 |
| 형 사 제 1 부 장 검 사 | 정연헌 | 2018.07.19 |
| 형 사 제 2 부 장 검 사 | 윤철민 | 2018.07.19 |
| 형 사 제 3 부 장 검 사 | 서봉하 | 2018.07.19 |
| ( 부 부 장 ) 검 사 | 김공주 | 2018.07.19 |
| 〃 | 윤재슬 | 2018.07.19. |
| 검 사 | 정지은 | 2017.03.01. |
| 〃 | 류남경 | 2017.03.01. |
| 〃 | 서영배 | 2017.03.01. |
| 〃 | 장형수 | 2017.03.01. |
| 〃 | 정원석 | 2017.03.01.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 | 성두경 | 2017.03.01. |
| 〃 | 정우성 | 2017.03.01. |
| 〃 | 김민정 | 2017.03.01. |
| 〃 | 최은미 | 2017.03.01. |
| 〃 | 권가희 | 2017.03.01. |
| 〃 | 정거장 | 2017.03.01. |
| 〃 | 이은우 | 2018.02.05. |
| 〃 | 장성훈 | 2017.04.01. |
| 〃 | 진아름 | 2018.02.05. |
| 〃 | 이재영 | 2018.02.05. |
| 〃 | 장혜수 | 2018.03.02. |
| 사 무 과 장 | 김두원 | 2018.01.26. |
| 수 사 과 장 | 이종현 | 2018.07.09. |
| 집 행 과 장 | 송난화 | 2017.03.01. |
| **( 울 산 지 방 검 찰 청 )** | | |
| 검 사 장 | 송인택 | 2018.06.22 |
| 차 장 검 사 | 황의수 | 2018.07.19 |
| 형 사 제 1 부 장 검 사 | 위성국 | 2018.07.19 |
| 형 사 제 2 부 장 검 사 | 이진호 | 2018.07.19 |
| 형 사 제 3 부 장 검 사 | 허인석 | 2018.07.19 |
| 형 사 제 4 부 장 검 사 | 배문기 | 2018.07.23 |
| 공 안 부 장 검 사 | 유도윤 | 2018.07.19 |
| 공 판 송 무 부 장 검 사 | 정우식 | 2018.07.19 |
| ( 부 부 장 ) 검 사 | 이중제 | 2018.07.19 |
| 〃 | 최현기 | 2018.07.19 |
| 〃 | 신대경 | 2017.08.17. |
| 〃 | 홍보가 | 2018.07.19. |
| 〃 | 김기룡 | 2018.07.19. |
| 검 사 | 강백신 | 2016.01.27. |
| 〃 | 이상민 | 2016.08.31. |
| 〃 | 장재완 | 2017.02.20. |
| 〃 | 박성민 | 2016.01.27. |
| 〃 | 서경원 | 2018.02.05. |
| 〃 | 김상준 | 2018.02.05. |
| 〃 | 윤국권 | 2015.02.25. |
| 〃 | 이한울 | 2016.01.27.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 창 원 지 방 검 찰 청 )** | | |
| 검 사 장 | 이정회 | 2018.06.22 |
| 차 장 검 사 | 조재연 | 2018.07.19 |
| 형 사 제 1 부 장 검 사 | 정대정 | 2018.07.19 |
| 형 사 제 2 부 장 검 사 | 이은강 | 2018.07.19 |
| 형 사 제 3 부 장 검 사 | 윤병준 | 2018.07.23 |
| 공 안 부 장 검 사 | 최창민 | 2018.07.19 |
| 공 판 송 무 부 장 검 사 | 진정길 | 2018.07.19 |
| ( 부 부 장 ) 검 사 | 이수철 | 2018.07.19 |
| 〃 | 윤춘구 | 2018.07.19 |
| 〃 | 김지연 | 2018.07.19. |
| 검 사 | 신승우 | 2017.02.20. |
| 〃 | 이희찬 | 2018.02.05. |
| 〃 | 장일희 | 2015.02.25. |
| 〃 | 이재만 | 2018.02.05. |
| 〃 | 박건영 | 2018.02.05. |
| 〃 | 손은영 | 2017.02.20. |
| 〃 | 한연규 | 2018.02.05. |
| 〃 | 홍정연 | 2017.02.20. |
| 〃 | 김희영 | 2016.01.27. |
| 〃 | 오진희 | 2016.01.27. |
| 〃 | 한강일 | 2018.02.05. |
| 〃 | 조미경 | 2015.02.25. |
| 〃 | 임홍주 | 2017.02.20. |
| 〃 | 박일규 | 2016.01.27. |
| 〃 | 황보영 | 2017.02.20. |
| 〃 | 이승필 | 2018.02.05. |
| 〃 | 문선주 | 2016.01.27. |
| 〃 | 이호재 | 2017.02.20. |
| 〃 | 이종광 | 2017.02.20. |
| 〃 | 김경완 | 2017.02.20. |
| 〃 | 한은지 | 2018.02.05. |
| 〃 | 김은오 | 2017.02.20. |
| 〃 | 이소현 | 2017.02.20. |
| 〃 | 이준석 | 2018.02.05. |
| 〃 | 임성환 | 2017.02.20. |
| 〃 | 김소현 | 2017.02.20. |
| 〃 | 임아랑 | 2018.02.05. |
| 〃 | 박상용 | 2017.02.20. |
| 〃 | 문승태 | 2017.02.20. |
| 〃 | 이주현 | 2015.02.25. |
| 〃 | 황근주 | 2015.02.25. |
| 〃 | 전효곤 | 2018.02.05. |
| 〃 | 이선화 | 2017.02.20. |
| 〃 | 이승우 | 2017.02.20. |
| 〃 | 송정범 | 2017.02.20. |
| 〃 | 정정화 | 2018.02.05. |
| 〃 | 문재웅 | 2017.02.20. |
| 〃 | 변준석 | 2017.02.20. |
| 〃 | 김대근 | 2017.02.20. |
| 〃 | 송민주 | 2017.02.20. |
| 〃 | 김보경 | 2017.02.20. |
| 〃 | 최갑진 | 2018.02.05. |
| 〃 | 손유빈 | 2018.02.05. |
| 〃 | 박성현 | 2018.02.05. |
| 〃 | 문지원 | 2016.01.27. |
| 〃 | 허창환 | 2017.04.01. |
| 〃 | 장현구 | 2018.04.01. |
| 〃 | 이영준 | 2018.08.01. |
| 〃 | 김정현 | 2017.03.01. |
| 〃 | 이재원 | 2017.02.20. |
| 〃 | 강지원 | 2018.03.02. |
| 〃 | 김마로 | 2018.02.05. |
| 〃 | 오종혁 | 2018.04.30. |
| 사 무 국 장 | 권태균 | 2018.01.26. |
| 총 무 과 장 | 이종흔 | 2018.07.09. |
| 사 건 과 장 | 이상준 | 2018.07.09. |
| 집 행 과 장 | 이동희 | 2018.07.09. |
| 공 안 과 장 | 윤두한 | 2018.07.09. |
| 수 사 과 장 | 허준영 | 2018.07.09. |
| 검 사 직 무 대 리 | 이의열 | 2018.07.09. |

| 직위 | 성명 | 발령일 |
|---|---|---|
| 〃 | 최세윤 | 2016.03.02. |
| 〃 | 김다현 | 2017.03.01. |
| 〃 | 김용선 | 2018.03.02. |
| 〃 | 안덕중 | 2018.02.05. |
| 〃 | 강정은 | 2018.04.30. |
| 사무국장 | 신현성 | 2017.09.27. |
| 총무과장 | 금광식 | 2018.07.09. |
| 사건과장 | 이재호 | 2018.07.09. |
| 집행과장 | 이원형 | 2017.09.27. |
| 조사과장 | 황인재 | 2018.01.26. |
| 수사과장 | 김붕배 | 2018.07.09. |
| 검사직무대리 | 이창우 | 2018.01.26. |
| **( 마산지청 )** | | |
| 지청장 | 양요안 | 2018.07.19 |
| 부장검사 | 이종찬 | 2018.07.19 |
| 〃 | 임종필 | 2018.07.19 |
| 검사 | 김미은 | 2015.02.25. |
| 〃 | 임기웅 | 2017.02.20. |
| 〃 | 배관성 | 2018.02.05. |
| 〃 | 반영기 | 2018.02.05. |
| 〃 | 박진덕 | 2017.02.20. |
| 〃 | 정다은 | 2017.02.20. |
| 〃 | 박윤상 | 2018.02.05. |
| 〃 | 정재연 | 2018.02.05. |
| 사무과장 | 이문학 | 2018.07.09. |
| 수사과장 | 김천교 | 2018.01.26. |
| **( 진주지청 )** | | |
| 지청장 | 최용훈 | 2018.07.19. |
| 부장검사 | 김종호 | 2018.07.19. |
| 〃 | 변수량 | 2018.07.19. |
| 검사 | 허성규 | 2017.02.20. |
| 〃 | 권경호 | 2016.01.27. |
| 〃 | 윤 경 | 2017.02.20. |
| 〃 | 안상현 | 2017.02.20. |
| 〃 | 이재인 | 2018.02.05. |
| 〃 | 박예주 | 2016.01.27. |

| 직위 | 성명 | 발령일 |
|---|---|---|
| 〃 | 고건영 | 2017.02.20. |
| 〃 | 주영선 | 2017.02.20. |
| 〃 | 김예은 | 2017.02.20. |
| 〃 | 김지혜 | 2018.02.05. |
| 사무과장 | 김호성 | 2017.09.27. |
| 집행과장 | 정부영 | 2018.01.26. |
| 수사과장 | 정성길 | 2018.01.26. |
| **( 통영지청 )** | | |
| 지청장 | 류 혁 | 2018.07.19. |
| 부장검사 | 윤대영 | 2018.07.19. |
| 〃 | 김효섭 | 2018.07.19. |
| 검사 | 김태엽 | 2017.02.20. |
| 〃 | 이한종 | 2017.02.20. |
| 〃 | 이형석 | 2018.02.05. |
| 〃 | 여한울 | 2018.02.05. |
| 〃 | 김승연 | 2017.02.20. |
| 〃 | 류수헌 | 2017.02.20. |
| 〃 | 권민정 | 2017.02.20. |
| 〃 | 조영주 | 2017.02.20. |
| 〃 | 고두성 | 2018.02.05. |
| 〃 | 박아름 | 2018.02.05. |
| 사무과장 | 김중근 | 2018.01.26. |
| 수사과장 | 정영호 | 2018.07.09. |
| **( 밀양지청 )** | | |
| 지청장 | 문현철 | 2018.07.19 |
| 검사 | 조범진 | 2017.02.20 |
| 〃 | 오재준 | 2018.02.05 |
| 〃 | 조재학 | 2018.02.05 |
| 〃 | 김정선 | 2017.02.20 |
| 사무과장 | 전영배 | 2018.01.26. |
| **( 거창지청 )** | | |
| 지청장 | 주민철 | 2018.07.19 |
| 검사 | 송보형 | 2017.02.20 |
| 〃 | 배한진 | 2018.02.05 |
| 사무과장 | 강철중 | 2018.01.26.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광주고등검찰청)** | | |
| 검사장 | 박균택 | 2018.06.22 |
| 차장검사 | 장영수 | 2018.06.22 |
| 검사 | 송승섭 | 2018.07.19 |
| 〃 | 오규진 | 2018.07.19 |
| 〃 | 홍효식 | 2013.04.23 |
| 〃 | 이선훈 | 2017.08.17 |
| 〃 | 박문수 | 2018.07.19 |
| 〃 | 임용규 | 2018.07.19 |
| 〃 | 이기선 | 2017.08.17 |
| 〃 | 김완규 | 2018.07.19 |
| 〃 | 최성국 | 2018.07.19 |
| 사무국장 | 이영호 | 2018.07.09. |
| 총무과장 | 위형량 | 2017.09.27. |
| 사건과장 | 김형관 | 2018.07.09. |
| **(광주지방검찰청)** | | |
| 검사장 | 배성범 | 2018.06.22 |
| 차장검사 | 정수봉 | 2018.07.19 |
| 인권감독관 | 나병훈 | 2018.07.19 |
| 형사제1부장검사 | 박철웅 | 2018.07.19 |
| 형사제2부장검사 | 손준성 | 2018.07.19 |
| 형사제3부장검사 | 신승희 | 2018.07.19 |
|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 | 전현민 | 2018.07.19 |
| 공안부장 | 이희동 | 2018.07.19 |
| 특별수사부장검사 | 허 정 | 2018.02.05 |
| 강력부장검사 | 김호삼 | 2018.07.19 |
| 공판부장검사 | 김지연 | 2018.07.19 |
| (부부장)검사 | 김석우 | 2017.08.17 |
| 〃 | 김 환 | 2017.08.17 |
| 〃 | 도상범 | 2017.08.17 |
| 〃 | 박세현 | 2018.07.19. |
| 〃 | 이세진 | 2018.07.19. |
| 〃 | 김형석 | 2018.02.05. |
| 〃 | 한진희 | 2018.07.19. |
| 〃 | 유진승 | 2018.07.19.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검사 | 김익수 | 2018.07.19. |
| 〃 | 송명섭 | 2015.02.25. |
| 〃 | 홍용화 | 2018.02.05. |
| 〃 | 황성민 | 2018.02.05. |
| 〃 | 장인호 | 2018.02.05. |
| 〃 | 김은미 | 2018.02.05. |
| 〃 | 장은희 | 2018.07.19. |
| 〃 | 신도욱 | 2018.02.05. |
| 〃 | 김형걸 | 2018.02.05. |
| 〃 | 전수진 | 2018.02.05. |
| 〃 | 방준성 | 2018.02.05. |
| 〃 | 황선옥 | 2017.02.20. |
| 〃 | 신현만 | 2018.02.05. |
| 〃 | 이정민 | 2018.02.05. |
| 〃 | 구진미 | 2014.02.05. |
| 〃 | 선현숙 | 2016.01.27. |
| 〃 | 조재철 | 2017.02.20. |
| 〃 | 김동규 | 2017.02.20. |
| 〃 | 홍성기 | 2015.02.25. |
| 〃 | 최은영 | 2017.02.20. |
| 〃 | 신비나 | 2015.02.25. |
| 〃 | 이영진 | 2018.02.05. |
| 〃 | 이주현 | 2018.02.05. |
| 〃 | 최한얼 | 2018.02.05. |
| 〃 | 이진순 | 2015.02.25. |
| 〃 | 김대철 | 2017.02.20. |
| 〃 | 임찬미 | 2017.02.20. |
| 〃 | 김혜경 | 2017.02.20. |
| 〃 | 곽중욱 | 2017.02.20. |
| 〃 | 장재정 | 2015.02.25. |
| 〃 | 홍동기 | 2018.02.05. |
| 〃 | 김형철 | 2018.02.05. |
| 〃 | 권인표 | 2018.02.05. |
| 〃 | 고병무 | 2017.03.01. |
| 〃 | 오연택 | 2018.02.05. |
| 〃 | 박영수 | 2018.02.05. |

| 직위 | 성명 | 발령일 |
|---|---|---|
| 〃 | 정성욱 | 2017.04.01. |
| 〃 | 고기철 | 2018.03.02. |
| 〃 | 박성현 | 2017.02.20. |
| 〃 | 최혜윤 | 2016.01.27. |
| 〃 | 류재현 | 2018.08.01. |
| 〃 | 정지원 | 2017.03.01. |
| 〃 | 김경회 | 2018.03.02. |
| 〃 | 서민욱 | 2018.02.05. |
| 〃 | 천대우 | 2018.04.30. |
| 〃 | 황성규 | 2018.04.30. |
| 사무국장 | 정동진 | 2017.09.27. |
| 총무과장 | 고이주 | 2018.07.09. |
| 사건과장 | 윤성진 | 2017.09.27. |
| 집행과장 | 김희곤 | 2018.07.09. |
| 조사과장 | 주기환 | 2018.01.26. |
| 수사과장 | 공승정 | 2017.09.27. |
| 공판과장 | 박춘광 | 2018.07.09. |
| 검사직무대리 | 서창수 | 2018.01.26. |
| **(목포지청)** | | |
| 목포지청장 | 정진기 | 2018.07.19. |
| 부장검사 | 정경진 | 2018.07.19. |
| 〃 | 김정헌 | 2018.07.19. |
| 검사 | 박지용 | 2018.02.05. |
| 〃 | 조상규 | 2018.02.05. |
| 〃 | 양준석 | 2017.02.20. |
| 〃 | 김지훈 | 2017.02.20. |
| 〃 | 윤기형 | 2018.02.05. |
| 〃 | 김영준 | 2018.02.05. |
| 〃 | 원세정 | 2017.02.20. |
| 〃 | 원선아 | 2017.02.20. |
| 〃 | 김상이 | 2017.02.20. |
| 〃 | 도용민 | 2017.02.20. |
| 〃 | 전유경 | 2017.02.20. |
| 〃 | 우세호 | 2018.02.05. |
| 〃 | 이하영 | 2018.02.05. |
| 사무과장 | 신승휴 | 2017.09.27. |

| 직위 | 성명 | 발령일 |
|---|---|---|
| 수사과장 | 박성재 | 2017.09.27. |
| **(장흥지청)** | | |
| 지청장 | 성상욱 | 2018.07.19 |
| 검사 | 김승곤 | 2018.02.05 |
| 〃 | 이동우 | 2017.02.20 |
| 사무과장 | 정병훈 | 2017.09.27. |
| **(순천지청)** | | |
| 지청장 | 박성근 | 2018.07.19 |
| 차장검사 | 김석우 | 2018.07.19 |
| 부장검사 | 황성연 | 2018.07.19 |
| 〃 | 김원학 | 2018.07.19 |
| 〃 | 김 우 | 2018.07.19 |
| (부부장)검사 | 최현철 | 2018.07.19 |
| 〃 | 양동우 | 2018.07.19 |
| 〃 | 신동원 | 2018.07.19 |
| 검사 | 조영찬 | 2017.02.20. |
| 〃 | 최미화 | 2017.02.20. |
| 〃 | 천대원 | 2018.07.19. |
| 〃 | 임두환 | 2018.02.05. |
| 〃 | 김진희 | 2016.01.27. |
| 〃 | 한대웅 | 2018.02.05. |
| 〃 | 김미지 | 2018.02.05. |
| 〃 | 김지연 | 2017.02.20. |
| 〃 | 황성아 | 2018.02.05. |
| 〃 | 오흥세 | 2016.01.27. |
| 〃 | 안지영 | 2017.02.20. |
| 〃 | 김상범 | 2018.02.05. |
| 〃 | 김지혜 | 2016.01.27. |
| 〃 | 장기영 | 2018.04.01. |
| 〃 | 천안문 | 2018.08.01. |
| 〃 | 함덕훈 | 2017.03.01. |
| 〃 | 김신혜 | 2017.02.20. |
| 〃 | 최인성 | 2017.02.20. |
| 〃 | 김문주 | 2018.02.05. |
| 사무국장 | 윤권호 | 2018.01.26. |
| 총무과장 | 박암 | 2017.09.27. |

| 직위 | 성명 | 발령일 |
|---|---|---|
| 사건과장 | 박노중 | 2017.09.27. |
| 집행과장 | 류재공 | 2018.01.26. |
| 수사과장 | 조형호 | 2018.07.09. |
| **(해남지청)** | | |
| 지청장 | 안동완 | 2018.07.19. |
| 검사 | 오신환 | 2018.02.05. |
| 〃 | 장지철 | 2017.02.20. |
| 〃 | 민경재 | 2018.02.05. |
| 사무과장 | 이승환 | 2018.01.26. |
| **(전주지방검찰청)** | | |
| 검사장 | 윤웅걸 | 2018.06.22 |
| 차장검사 | 김관정 | 2018.07.19 |
| 부장검사 | 신현성 | 2018.07.19 |
| 〃 | 이병석 | 2018.07.19 |
| 〃 | 김덕곤 | 2018.07.19 |
| (부부장)검사 | 임채원 | 2018.07.19 |
| 〃 | 정지영 | 2018.07.19 |
| 〃 | 조두현 | 2018.07.19 |
| 검사 | 이찬규 | 2018.02.05. |
| 〃 | 최순호 | 2016.08.31. |
| 〃 | 안광현 | 2016.01.27. |
| 〃 | 윤소현 | 2017.02.20. |
| 〃 | 이승희 | 2016.01.27. |
| 〃 | 정지영 | 2017.02.20. |
| 〃 | 최재현 | 2017.02.20. |
| 〃 | 김현서 | 2016.01.27. |
| 〃 | 이경선 | 2015.02.25. |
| 〃 | 이선영 | 2018.02.05. |
| 〃 | 김벼리 | 2018.02.05. |
| 〃 | 김현지 | 2017.02.20. |
| 〃 | 최준환 | 2018.02.05. |
| 〃 | 최영준 | 2018.02.05. |
| 〃 | 최대호 | 2018.02.05. |
| 〃 | 이병래 | 2017.04.01. |
| 〃 | 손재용 | 2018.03.02. |
| 〃 | 최우석 | 2018.08.01. |

| 직위 | 성명 | 발령일 |
|---|---|---|
| 〃 | 강병하 | 2018.02.05. |
| 〃 | 오정은 | 2017.03.01. |
| 〃 | 박원석 | 2017.02.20. |
| 〃 | 왕은진 | 2018.03.02. |
| 〃 | 배성재 | 2018.04.30. |
| 사무국장 | 전병렬 | 2018.07.09. |
| 총무과장 | 노행수 | 2018.01.26. |
| 사건과장 | 한재영 | 2018.01.26. |
| 집행과장 | 은희견 | 2018.07.09. |
| 수사과장 | 정택률 | 2018.07.09. |
| 검사직무대리 | 박종섭 | 2018.01.26. |
| **(군산지청)** | | |
| 지청장 | 이선봉 | 2018.07.19 |
| 부장검사 | 공태구 | 2018.07.19 |
| 〃 | 김명운 | 2018.07.19 |
| 검사 | 문성근 | 2017.02.20. |
| 〃 | 양찬규 | 2017.02.20. |
| 〃 | 김준엽 | 2017.02.20. |
| 〃 | 박기웅 | 2018.02.05. |
| 〃 | 임현철 | 2018.02.05. |
| 〃 | 강정욱 | 2018.02.05. |
| 〃 | 박민희 | 2017.02.20. |
| 〃 | 박정선 | 2017.02.20. |
| 〃 | 성인욱 | 2017.02.20. |
| 〃 | 김현경 | 2017.02.20. |
| 〃 | 유희경 | 2018.02.05. |
| 〃 | 최예원 | 2018.02.05. |
| 〃 | 김인선 | 2018.02.05. |
| 사무과장 | 김영한 | 2018.07.09. |
| 집행과장 | 양헌규 | 2018.01.26. |
| 수사과장 | 정형모 | 2018.01.26. |
| **(정읍지청)** | | |
| 지청장 | 노진영 | 2018.07.19 |
| 검사 | 신병우 | 2017.02.20 |
| 〃 | 정현욱 | 2018.02.05 |
| 〃 | 박진아 | 2017.02.20 |

| 직위 | 성명 | 발령일 |
|---|---|---|
| 〃 | 박형건 | 2018.02.05 |
| 〃 | 고현욱 | 2018.02.05 |
| 사무과장 | 김동현 | 2018.07.09. |
| **(남원지청)** | | |
| 지청장 | 안병수 | 2018.07.19 |
| 검사 | 황두평 | 2017.02.20 |
| 〃 | 박가희 | 2018.02.05 |
| 사무과장 | 김영규 | 2018.01.26. |
| **(제주지방검찰청)** | | |
| 검사장 | 송삼현 | 2018.06.22 |
| 차장검사 | 장기석 | 2018.07.19 |
| 부장검사 | 우남준 | 2018.07.19 |
| 부장검사 | 권상대 | 2018.07.19 |
| 부장검사 | 원지애 | 2018.07.19 |
| (부부장)검사 | 이현정 | 2016.01.13 |
| 〃 | 신지선 | 2018.07.19 |
| 〃 | 권유식 | 2018.07.19 |
| 검사 | 박준영 | 2018.02.05. |
| 〃 | 박양호 | 2018.02.05. |
| 〃 | 이호석 | 2018.02.05. |
| 〃 | 정수정 | 2018.02.05. |
| 〃 | 송인호 | 2017.02.20. |
| 〃 | 성대웅 | 2017.02.20. |
| 〃 | 정광병 | 2017.02.20. |
| 〃 | 류승진 | 2017.02.20. |
| 〃 | 고유진 | 2016.01.27. |
| 〃 | 박금빛 | 2018.02.05. |
| 〃 | 이지륜 | 2017.02.20. |
| 〃 | 이상후 | 2017.03.01. |
| 〃 | 김수민 | 2018.02.05. |
| 〃 | 박종호 | 2017.04.01. |
| 〃 | 윤장훈 | 2018.04.01. |
| 〃 | 하용만 | 2018.02.05. |
| 〃 | 조한이 | 2017.02.20. |
| 〃 | 김주현 | 2018.03.02. |
| 〃 | 양현세 | 2018.04.30. |

| 직위 | 성명 | 발령일 |
|---|---|---|
| 사무국장 | 조의곤 | 2018.07.09. |
| 총무과장 | 김상철 | 2017.09.27. |
| 사건과장 | 정병옥 | 2018.01.26. |
| 집행과장 | 신종근 | 2018.01.26. |
| 수사과장 | 오장수 | 2018.01.26. |
| **(사법연수원)** | | |
| 부원장 | 노승권 | 2018.06.22 |
| 교수 | 유천열 | 2017.08.17 |
| 〃 | 전윤경 | 2017.08.17 |
| 〃 | 김용자 | 2017.08.17 |
| 〃 | 민영현 | 2017.08.17 |

# 4. 보호관찰·소년보호기관

## • 보호관찰소

| 직 위 | 성 명 | 발 령 일 | 직 위 | 성 명 | 발 령 일 |
|---|---|---|---|---|---|
|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고위공무원) | 손외철 | 2017. 9. 18. |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소장 | 박재봉 | 2018. 1. 22. |
|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임기제 4급) | 황철주 | 2018. 1. 22. |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소장 | 조성민 | 2018. 1. 22. |
|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임기제 4급) | 정장면 | 2018. 1. 22. | 의정부보호관찰소 소장 | 장재영 | 2018. 1. 22. |
| 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고위공무원) | 김인상 | 2017. 11. 13. | 인천보호관찰소 소장 | 양봉환 | 2018. 1. 22. |
|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임기제 4급) | 박교식 | 2017. 12. 4. | 수원보호관찰소 소장 | 최우철 | 2018. 1. 22. |
| 서울보호관찰소 소장<br>관찰과장<br>행정지원과장 | 성우제<br>송인선<br>공 석 | 2018. 7. 2.<br>2018. 8. 27. | 춘천보호관찰소 소장 | 김태호 | 2018. 8. 27. |
|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소장 | 홍정원 | 2018. 8. 27. | 대전보호관찰소 소장<br>행정지원과장<br>관찰과장 | 이형재<br>이법호<br>정기조 | 2018. 1. 22.<br>2018. 1. 22.<br>2018. 1. 22. |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소장 | 윤태영 | 2018. 1. 22. | 청주보호관찰소 소장 | 민근기 | 2018. 1. 22. |

| 직 위 | 성 명 | 발 령 일 | 직 위 | 성 명 | 발 령 일 |
|---|---|---|---|---|---|
| 대구보호관찰소 소장<br>행정지원과장<br>관찰과장 | 이우권<br>남두화<br>이문호 | 2018. 1. 22.<br>2018. 8. 27.<br>2018. 8. 27. | 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소 지소장 | 최종철 | 2018. 8. 27. |
| 부산보호관찰소 소장<br>행정지원과장<br>관찰과장 | 이동환<br>공 석<br>김정렬 | 2018. 1. 22.<br><br>2018. 1. 22. |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 지소장 | 김상록 | 2018. 1. 22. |
| 울산보호관찰소 소장 | 권을식 | 2018. 1. 22. |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 지소장 | 김시종 | 2018. 1. 22. |
| 창원보호관찰소 소장 | 권기한 | 2018. 1. 22. |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지소장 | 이하성 | 2017. 7. 31. |
| 광주보호관찰소 소장<br>행정지원과장<br>관찰과장 | 이태원<br>공 석<br>김경렬 | 2018. 8. 27.<br><br>2018. 1. 22. |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지소장 | 이용호 | 2018. 8. 27. |
| 전주보호관찰소 소장 | 김행석 | 2018. 1. 22. |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지소장 | 이정민 | 2018. 1. 22. |
| 제주보호관찰소 소장 | 이은한 | 2018. 1. 22. |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 지소장 | 최성학 | 2018. 1. 22. |
|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장 | 노일석 | 2018. 1. 22. |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 지소장 | 김세훈 | 2018. 8. 27. |
|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장 | 박종국 | 2018. 8. 27. |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지소장 | 박준재 | 2018. 4. 9. |

## •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치료감호소

| 직 위 | 성 명 | 발 령 일 |
|---|---|---|
| 서울소년원 | | |
| 원장 | 고영종 | 2018. 1. 22. |
| 행정지원과장 | 배종상 | 2018. 1. 22. |
| 교무과장 | 배점호 | 2018. 8. 27. |
| 의무과장 | 이민재 | 2018. 1. 29. |
| 부산소년원 | | |
| 원장 | 이성칠 | 2018. 1. 22. |
| 교무과장 | 김원진 | 2018. 8. 27. |
| 분류보호과장 | 박우춘 | 2018. 8. 27. |
| 의무과장 | 공 석 | |
| 대구소년원 | | |
| 원장 | 황계연 | 2018. 8. 27. |
| 교무과장 | 안 흡 | 2018. 8. 27. |
| 분류보호과장 | 공 석 | |
| 의무과장 | 조태욱 | 2018. 1. 1. |
| 광주소년원 | | |
| 원장 | 안병경 | 2018. 1. 22. |
| 교무과장 | 이국희 | 2018. 8. 27. |
| 분류보호과장 | 공 석 | |
| 의무과장 | 정길영 | 2001. 2. 28. |
| 전주소년원 | | |
| 원장 | 오연호 | 2018. 1. 22. |
| 교무과장 | 김택수 | 2018. 8. 27. |
| 의무과장 | 공 석 | |
| 대전소년원 | | |
| 원장 | 이영호 | 2018. 1. 22. |
| 교무과장 | 박동식 | 2018. 1. 22. |
| 분류보호과장 | 최오수 | 2018. 8. 27. |
| 의무과장 | 장재호 | 2012. 11. 1. |

| 직 위 | 성 명 | 발 령 일 |
|---|---|---|
| 청주소년원 | | |
| 원장 | 윤웅장 | 2018. 8. 27. |
| 안양소년원 | | |
| 원장 | 오영희 | 2018. 1. 22. |
| 의무과장 | 최원석 | 2015. 7. 30. |
| 춘천소년원 | | |
| 원장 | 김정식 | 2018. 1. 22. |
| 의무과장 | 이희원 | 2001. 11. 14. |
| 제주소년원 | | |
| 원장 | 김일환 | 2018. 1. 22. |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 | |
| 원장 | 박수환 | 2018. 1. 22 |
| 교무과장 | 김용수 | 2018. 8. 27 |
| 분류심사과장 | 강종모 | 2018. 8. 27. |
| 의무과장 | 박정환 | 2011. 4. 8. |
|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 | |
| 센터장 | 서진남 | 2018. 1. 22. |
|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 | |
| 센터장 | 유병택 | 2018. 1. 22. |
|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 | |
| 센터장 | 윤용범 | 2018. 1. 22. |
| 치료감호소 | | |
| 소장 | 공석 | |
| 의료부장 | 공석 | |
| 행정지원과장 | 한상익 | 2018. 8. 27. |
| 감호과장 | 이승욱 | 2018. 8. 27. |

# 5. 북한인권기록보존소

| 직 위 | 성 명 | 발 령 일 |
|---|---|---|
| 보 존 소 장 | 정 원 혁 | 2018. 7. 19. |
| 검 사 | 홍 승 표 | 2016. 10. 11. |

# 6.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 직 위 | 성 명 | 발 령 일 |
|---|---|---|
| 서울지방교정청 | | |
| 청장 | 홍남식 | 2018. 8. 27. |
| 총무과장 | 서호영 | 2018. 12. 17. |
| 보안과장 | 남준락 | 2018. 12. 17. |
| 사회복귀과장 | 김도형 | 2018. 12. 17. |
| 분류센터장 | 최찬희 | 2016. 9. 12. |
| 대구지방교정청 | | |
| 청장 | 정유철 | 2018. 8. 27. |
| 총무과장 | 도재덕 | 2018. 1. 1. |
| 보안과장 | 정재열 | 2018. 1. 1. |
| 사회복귀과장 | 김태수 | 2018. 8. 27. |
| 대전지방교정청 | | |
| 청장 | 유병철 | 2018. 8. 27. |
| 총무과장 | 최병록 | 2018. 8. 27. |
| 보안과장 | 김일환 | 2018. 8. 27. |
| 사회복귀과장 | 정영진 | 2018. 8. 27. |
| 광주지방교정청 | | |
| 청장 | 이경식 | 2018. 8. 27. |
| 총무과장 | 박삼재 | 2018. 12. 17. |
| 보안과장 | 정봉수 | 2018. 8. 27. |
| 사회복귀과장 | 홍순철 | 2018. 1. 1. |
| 서울구치소 | | |
| 소장 | 윤재흥 | 2018. 1. 1. |
| 부소장 | 김재술 | 2018. 8. 27. |
| 총무과장 | 김영대 | 2018. 8. 27. |
| 보안과장 | 박동수 | 2018. 8. 27. |
| 의료과장 | 조수현 | 2001. 9. 17. |
| 분류심사과장 | 고성태 | 2018. 8. 27. |
| 시설과장 | 정병택 | 2018. 7. 1. |

| 직 위 | 성 명 | 발 령 일 |
|---|---|---|
| 대전교도소 | | |
| 소장 | 신경우 | 2018. 1. 01. |
| 부소장 | 양원동 | 2018. 12. 17. |
| 총무과장 | 이희정 | 2018. 12. 17. |
| 보안과장 | 유철흠 | 2018. 8. 27. |
| 의료과장 | 이준호 | 2009. 2. 17. |
| 분류심사과장 | | |
| 논산지소장 | 김진석 | 2018. 8. 27. |
| 대구교도소 | | |
| 소장 | 박호서 | 2017. 7. 31. |
| 부소장 | 박상용 | 2018. 8. 27. |
| 총무과장 | 박원흠 | 2017. 2. 13. |
| 보안과장 | 김영광 | 2018. 1. 1. |
| 의료과장 | 김경률 | 2014. 6. 5. |
| 분류심사과장 | 서보균 | 2018. 1. 1. |
| 광주교도소 | | |
| 소장 | 김천수 | 2018. 1. 1. |
| 부소장 | 한성주 | 2018. 8. 27. |
| 총무과장 | 김경화 | 2018. 8. 27. |
| 보안과장 | 노영길 | 2017. 7. 31. |
| 의료과장 | 박일웅 | 2006. 8. 16. |
| 안양교도소 | | |
| 소장 | 오홍균 | 2018. 1. 1. |
| 부소장 | 최진규 | 2018. 8. 27. |
| 총무과장 | 양동석 | 2018. 8. 27. |
| 보안과장 | 김성호 | 2018. 8. 27. |
| 의료과장 | 최광섭 | 2005. 11. 7. |
| 부산구치소 | | |
| 소장 | 김진구 | 2018. 8. 27. |
| 부소장 | 한천용 | 2018. 8. 27. |
| 총무과장 | 임채화 | 2017. 2. 13. |
| 보안과장 | 최철경 | 2018. 1. 1. |
| 의료과장 | 이희식 | 2013. 7. 1. |

| 직 위 | 성 명 | 발 령 일 |
|---|---|---|
| 수 원 구 치 소 | | |
| 소 장 | 권민석 | 2018. 1. 1. |
| 부 소 장 | 류동수 | 2018. 8. 27. |
| 총 무 과 장 | 손용대 | 2018. 8. 27. |
| 보 안 과 장 | 김현우 | 2018. 1. 1. |
| 의 료 과 장 | 이학용 | 2017. 8. 7. |
| 평 택 지 소 장 | 이현철 | 2017. 2. 13. |
| 서 울 동 부 구 치 소 | | |
| 소 장 | 최제영 | 2018. 8. 27. |
| 부 소 장 | 서 민 | 2018. 1. 1. |
| 총 무 과 장 | 박진홍 | 2018. 8. 27. |
| 보 안 과 장 | 박종관 | 2018. 8. 27. |
| 의 료 과 장 | 김 훈 | 2005. 11. 7. |
| 인 천 구 치 소 | | |
| 소 장 | 김정선 | 2018. 8. 27. |
| 부 소 장 | 박진열 | 2018. 12. 17. |
| 총 무 과 장 | 이효선 | 2018. 1. 1. |
| 보 안 과 장 | 유기용 | 2018. 8. 27. |
| 의 료 과 장 | 민형식 | 2001. 7. 7. |
| 서 울 남 부 구 치 소 | | |
| 소 장 | 신용해 | 2018. 8. 27. |
| 부 소 장 | 송상기 | 2018. 8. 27. |
| 총 무 과 장 | 이홍연 | 2018. 1. 1. |
| 보 안 과 장 | 차재성 | 2018. 8. 27. |
| 의 료 과 장 | 박종민 | 2016. 9. 26. |
| 천 안 개 방 교 도 소 | | |
| 소 장 | 홍성천 | 2018. 8. 27. |
| 의 료 과 장 | 장재구 | 2005. 11. 07. |
| 화 성 직 업 훈 련 교 도 소 | | |
| 소 장 | 김동현 | 2018. 1. 1. |
| 의 료 과 장 | 곽연우 | 2016. 10. 5. |
| 경 북 북 부 제 1 교 도 소 | | |
| 소 장 | 정병헌 | 2016. 1. 25. |
| 부 소 장 | 백금태 | 2018. 8. 27. |
| 총 무 과 장 | 주정민 | 2017. 7. 31 |
| 보 안 과 장 | 최종수 | 2018. 1. 1. |
| 의 료 과 장 | 한주섭 | 2002. 1. 21. |
| 시 설 과 장 | 김창섭 | 2018. 7. 1. |
| 전 주 교 도 소 | | |
| 소 장 | 류기현 | 2018. 8. 27. |
| 총 무 과 장 | 박융우 | 2018. 8. 27. |
| 보 안 과 장 | 허 휘 | 2018. 8. 27. |
| 의 료 과 장 | 김학성 | 2006. 8. 16. |

| 직 위 | 성 명 | 발 령 일 |
|---|---|---|
| 여 주 교 도 소 | | |
| 소 장 | 오세홍 | 2018. 12. 17. |
| 의 료 과 장 | 김득종 | 2018. 11. 26. |
| 부 산 교 도 소 | | |
| 소 장 | 성맹환 | 2018. 8. 27. |
| 의 료 과 장 | 윤종철 | 2015. 7. 14. |
| 의 정 부 교 도 소 | | |
| 소 장 | 구지서 | 2018. 8. 27. |
| 의 료 과 장 | 주재호 | 2001. 5. 21. |
| 창 원 교 도 소 | | |
| 소 장 | 김승만 | 2018. 12. 17. |
| 의 료 과 장 | 이승기 | 2006. 8. 16. |
| 순 천 교 도 소 | | |
| 소 장 | 최국진 | 2018. 8. 27. |
| 의 료 과 장 | 박경철 | 1996. 9. 1. |
| 서 울 남 부 교 도 소 | | |
| 소 장 | 박희수 | 2018. 8. 27. |
| 의 료 과 장 | 이종기 | 2014. 7. 1. |
| 포 항 교 도 소 | | |
| 소 장 | 류동백 | 2018. 8. 27. |
| 의 료 과 장 | 서보균 | 2017. 8. 7. |
| 진 주 교 도 소 | | |
| 소 장 | 황의호 | 2018. 8. 27. |
| 의 료 과 장 | 이진철 | 2007. 12. 13. |
| 목 포 교 도 소 | | |
| 소 장 | 박병일 | 2018. 1. 1. |
| 의 료 과 장 | 강 철 | 1990. 6. 26. |
| 대 구 구 치 소 | | |
| 소 장 | 전용희 | 2018. 8. 27. |
| 의 료 과 장 | 이재광 | 2005. 11. 7. |
| 군 산 교 도 소 | | |
| 소 장 | 김영식 | 2018. 8. 27. |
| 의 료 과 장 | 장성용 | 2006. 4. 17. |
| 청 주 교 도 소 | | |
| 소 장 | 이언담 | 2018. 12. 17. |
| 의 료 과 장 | 박현우 | 2018. 8. 27. |

| 직 위 | 성 명 | 발 령 일 |
|---|---|---|
| 천 안 교 도 소 | | |
| 소 장 | 윤길현 | 2018. 8. 27. |
| 의 료 과 장 | 신준식 | 2016. 9. 12. |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 |
| 소 장 | 김왕무 | 2018. 8. 27. |
| 의 료 과 장 | 최창학 | 2011. 1. 1. |
| 춘 천 교 도 소 | | |
| 소 장 | 김동윤 | 2018. 1. 1. |
| 의 료 과 장 | 이중구 | 2015. 1. 19. |
| 원 주 교 도 소 | | |
| 소 장 | 오광운 | 2018. 12. 17. |
| 의 료 과 장 | 김영진 | 2015. 6. 18. |
| 안 동 교 도 소 | | |
| 소 장 | 장종선 | 2018. 8. 27. |
| 의 료 과 장 | 이석균 | 2017. 9. 18. |
| 경북북부제2교도소 | | |
| 소 장 | 이승철 | 2018. 1. 1. |
| 의 료 과 장 | 공 석 | |
| 청주여자교도소 | | |
| 소 장 | 주점숙 | 2017. 7. 31 |
| 의 료 과 장 | 박병철 | 2018. 3. 13. |
| 김천소년교도소 | | |
| 소 장 | 이동희 | 2018. 8. 27. |
| 의 료 과 장 | 최인환 | 2008. 1. 24. |
| 공 주 교 도 소 | | |
| 소 장 | 김응분 | 2018 8. 27. |
| 의 료 과 장 | 송혜정 | 2011. 7. 11. |
| 경북북부제3교도소 | | |
| 소 장 | 서수원 | 2018. 1. 1. |
| 의 료 과 장 | 정만진 | 2011. 12. 5. |
| 울 산 구 치 소 | | |
| 소 장 | 정창헌 | 2018. 1. 1. |
| 의 료 과 장 | 김종원 | 2009. 7. 20. |
| 정 읍 교 도 소 | | |
| 소 장 | 홍정기 | 2018. 12. 17. |
| 의 료 과 장 | 공 석 | |

| 직 위 | 성 명 | 발 령 일 |
|---|---|---|
| 제 주 교 도 소 | | |
| 소 장 | 강군오 | 2018. 12. 17. |
| 의 료 과 장 | 박재홍 | 2018. 8. 20. |
| 홍 성 교 도 소 | | |
| 소 장 | 김춘오 | 2018. 8. 27. |
| 의 료 과 장 | 윤성로 | 1994. 11. 12. |
| 서 산 지 소 장 | 강기천 | 2017. 7. 31. |
| 경 주 교 도 소 | | |
| 소 장 | 이경우 | 2018. 1. 1. |
| 의 료 과 장 | 조윤철 | 2013. 12. 12. |
| 통 영 구 치 소 | | |
| 소 장 | 채완식 | 2018. 8. 27. |
| 의 료 과 장 | 정원석 | 2017. 2. 6. |
| 밀 양 구 치 소 | | |
| 소 장 | 김철민 | 2018. 1. 1. |
| 의 료 과 장 | 전윤식 | 2014. 5. 12. |
| 상 주 교 도 소 | | |
| 소 장 | 박경선 | 2018 8. 27. |
| 의 료 과 장 | 박순록 | 2017. 8. 21. |
| 강 릉 교 도 소 | | |
| 소 장 | 신동윤 | 2018. 12. 17. |
| 의 료 과 장 | 김일환 | 2017. 1. 1. |
| 영 월 교 도 소 | | |
| 소 장 | 민현기 | 2018. 1. 1. |
| 의 료 과 장 | 김건도 | 2015. 6. 23. |
| 장 흥 교 도 소 | | |
| 소 장 | 남상오 | 2018. 8. 27. |
| 의 료 과 장 | 김철주 | 2010. 11. 8. |
| 해 남 교 도 소 | | |
| 소 장 | 김재익 | 2018. 1. 1. |
| 의 료 과 장 | 최영기 | 2017. 4. 10. |
| 충 주 구 치 소 | | |
| 소 장 | 한태환 | 2018. 8. 27. |
| 의 료 과 장 | 윤완중 | 2017. 5. 15. |

# 7. 출입국·외국인청/출입국·외국인사무소/외국인보호소/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 직 위 | 성 명 | 발 령 일 |
|---|---|---|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 장세근 | 2018. 8. 6. |
| 지원국장 | 김현채 | 2018. 7. 16. |
| 심사1국장 | 심준섭 | 2018. 7. 16. |
| 심사2국장 | 류인성 | 2018. 9. 3. |
| 총무과장 | 이인숙 | 2018. 7. 16. |
|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 손홍기 | 2018. 8. 6. |
| 총무과장 | 구본준 | 2018. 7. 16. |
| 관리과장 | 안동관 | 2018. 7. 16. |
| 이민특수조사대장 | 고석곤 | 2018. 1. 1. |
| 출입국정보화센터장 | 주양근 | 2018. 7. 1. |
|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 이인규 | 2017. 12. 4. |
| 관리과장 | 오주호 | 2018. 9. 3. |
| 이민특수조사대장 | 윤종석 | 2018. 5. 10. |
|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 안규석 | 2018. 5. 10. |
|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 배상업 | 2018. 7. 16. |
|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 김도균 | 2018. 1. 1. |
|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 임진택 | 2018. 1. 1. |
|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 정수동 | 2018. 1. 1. |
|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 김병조 | 2018. 1. 16. |
|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 황택환 | 2018. 1. 1. |
|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 유병길 | 2018. 1. 1. |
|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 김민수 | 2018. 1. 1. |
|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 이춘용 | 2018. 1. 1. |
|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 김상진 | 2018. 1. 1. |
|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 우석환 | 2018. 1. 1. |
|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 백석현 | 2018. 9. 3. |
|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 천승우 | 2018. 1. 1. |
|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 고동기 | 2018. 1. 1. |
|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 이정욱 | 2018. 1. 1. |
| 화성외국인보호소소장 | 최영길 | 2018. 7. 16. |
| 청주외국인보호소소장 | 김수남 | 2018. 1. 1. |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센터장 | 김태수 | 2017. 1. 9. |

# 제6절 인사

## • 총 괄

(2018. 1 ~ 12월)

| 구 분 | | 계 | 승 진 | 전 보 | 신규임용 | 면 직 |
|---|---|---|---|---|---|---|
| 계 | | 14,113 | 3,610 | 7,909 | 1,871 | 723 |
| 검 사 | | 1,461 | 67 | 1,202 | 112 | 80 |
| 일반직 | 소 계 | 12,652 | 3,543 | 6,707 | 1,759 | 643 |
| | 본 부<br>( 연 수 원 ) | 410<br>(45) | 75<br>(7) | 285<br>(35) | 29<br>(2) | 21<br>(1) |
| | 검 찰 청 | 4,496 | 906 | 2,882 | 571 | 137 |
| | 보 호 기 관<br>(보호관찰소, 소년원, 치료감호소) | 1,794 | 306 | 1,275 | 136 | 77 |
| | 지 방 교 정 청<br>( 구 치 소 , 교 도 소 ) | 4,415 | 1,671 | 1,755 | 665 | 324 |
| | 출 입 국 · 외 국 인 기 관<br>( 출 입 국 · 외 국 인 청 ,<br>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 1,492 | 578 | 475 | 356 | 83 |

# 제 7 절 국외훈련·출장

## • 검 사

(2018. 1 ~ 12월)

| 직급 \ 기간 | 계 | 장 기 (6월 이상) | 단 기 (6월 이하) | 출장·연수 |
|---|---|---|---|---|
| 계 | 423 | 57 | 22 | 344 |
| 검찰총장 | 1 | - | - | 1 |
| 검사 | 422 | 57 | 22 | 343 |

## • 일반직

(2018. 1 ~ 12월)

| 기관 \ 기간 | 계 | 장 기 (6월 이상) | 단 기 (6월 이하) | 출장·연수 |
|---|---|---|---|---|
| 계 | 597 | 17 | 10 | 570 |
| 본부 | 198 | - | 4 | 194 |
| 검찰청 | 270 | 7 | 1 | 262 |
| 교정기관 | 35 | 3 | 2 | 30 |
| 보호관찰소<br>소년원<br>치료감호소 | 17 | - | 3 | 14 |
| 출입국·외국인기관 | 69 | 7 | - | 62 |
| 법무연수원 | 8 | - | - | 8 |

# 제8절 국제교류 현황

## 1. 외국 주요인사 법무부 방문 현황

(2018. 1. 1. ~ 12. 31.)

| 예방일 | 국 명 | 직책 | 성 명 | 예방목적 | 비 고 |
|---|---|---|---|---|---|
| 1. 9. | 몽골 | 주한 몽골대사 | 강볼드 등 3명 | • 한-몽골 출입국관리 분야 의제 논의 |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
| 1. 16. | 호주 | 주한 호주대사 | 제임스 최 등 7명 | • 출입국관리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회의 진행 |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
| 1. 18. ~ 19. | 일본 | 형사국 국제과장 | 야마우치 요시미츠 외 8명 | • 범죄인인도 및 형사사법공조 사건 상호 진행경과 확인 및 향후 협력방안 협의 | 검 찰 국 |
| 1. 23. | 호주 | 주한 호주부대사 | 리사 라이트 등 5명 | • 한-호주 출입국관리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회의 진행 |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
| 1. 24. | 독일 | 주한 독일대사관 일등서기관 | 쇼튼 식취르닝 | • 한-독일 출입국관리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독일대사관과 회의 진행 |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
| 1. 24. | 인도네시아 | 주한 인도네시아 이민연락관 | 수지토 수리아 등 3명 | • 한-인도네시아 출입국관리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과 회의 진행 |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
| 2. 2. | 일본 | 주한일본대사관 1등서기관 | 토루 시라토리 등 5명 | • 한-일본 출입국관리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주한 일본대사관과 회의 진행 |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
| 2. 13. | 이집트 | 주한 이집트대사관 대사대리 | 다아 엘 딘 하마드 | • 한-이집트 출입국분야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이집트 대사관과 회의 진행 |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
| 2. 21. | 독일 | 독일 연방경찰 청장 | 디터 로만 등 10명 | • 한-독일 출입국분야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독일 연방경찰청 및 대사관과 회의 진행 |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
| 2. 26. | UN국제상거래 법위원회 | 사무총장 | 안나 주뱅브레 | •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태지역 사무소 운영, ISDS 제도 개선 논의 | 법 무 실 |

## 자료

| 예방일 | 국 명 | 직책 | 성 명 | 예방목적 | 비 고 |
|---|---|---|---|---|---|
| 2. 28. | 미국 | 미 국세청 아시아지부장 | 데이비드 럼 | • 자금세탁 및 탈세 관련 공조사건 협력방안 논의 | 검 찰 국 |
| 3. 8. | OECD | 당사국 의장 | 드라고 코스 | • 뇌물방지협약 가입국 순방 및 협약이행상황 관련 협의 | 검 찰 국 |
| 3. 13. | 영국 | 주한영국대사, 영국사무변호사협회장 | 사이먼 스미스 대사, 조 이건 협회장 | • 법률시장개방, 반부패정책 논의 | 법 무 실 |
| 4. 4. | 필리핀 | 구치소관리국 운영부국장 | 이냐시오 판티 등 5명 | • 양국 간 협력 및 우호증진 등 | 교정본부 |
| 4. 5. | 호주 | 주한호주대사관 1등서기관 | 필 멕오리프 등 3명 | • 한-호주 출입국관리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주한 호주대사관과 회의 진행 |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
| 5. 9. | 일본 | 주한일본대사관 1등서기관 | 토루 시라토리 등 2명 | • 한-일 출입국관리 정책분야 논의 및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주한 일본대사관 공관원과 면담 실시 |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
| 5. 11. | 국제 이주기구 (IOM) | 사무총장 | 윌리엄 레이시 스윙 외 2명 | • 법무부—국제이주기구 간 상호협력방안 등 논의 |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
| 5. 15. | 호주 | 빅토리아주 법무부장관 | 마틴 파쿨라 | • 가정폭력 대응, 범죄예방정책 등 | 법 무 실 |
| 5. 16. | 멕시코 | 주한멕시코대사 등 3명 | 브르노 피규로아 등 3명 | • 유엔에서 주관하는 '이주 글로벌 컴팩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주한 멕시코 대사와 면담 |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
| 5. 23. | 조지아 | 주한조지아대사관 참사관 | 다빗 칙바이드즈 | • 한-조지아 출입국관리 협력관계 논의를 위해 주한 조지아대사관 공관원과 면담 |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
| 6. 1. | EU (유럽연합) | 법무 집행위원 | 베라 요로바 | • 법무 및 인권 정책 협의 | 법 무 실 |
| 6. 18. | 싱가포르 | 대사 | 입 웨이 키앗 | • 국제상사조정 협약 체결 및 법무 협력 | 법 무 실 |
| 6. 27. | 홍콩 | 홍콩출입경관리국 중견관리자 | 라우 위파이 안퍼니 등 3명 | • 한-홍콩 고위급 회담 시 중견관리자급 교환연수 실시 합의에 의한 방문 |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
| 7. 6. | 일본 | 주한일본대사관 참사관 | 마나부 무라카미 등 2명 | • 한-일본 출입국관리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주한일본대사관과 회의 진행 |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

| 예방일 | 국 명 | 직책 | 성 명 | 예방목적 | 비 고 |
|---|---|---|---|---|---|
| 7. 30. | 몽골 | 몽골이민청장 | 무룬 아쉬도즈 등 7명 | • 몽골이민청과 출입국관리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한-몽골 고위급 회의'진행 |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
| 8. 8. | EU (유럽연합) | 대사 | 미하엘 라이터러 | • 법무 및 인권 정책 개선 논의 | 법 무 실 |
| 8. 16. | 우즈베키스탄 | 검찰총장 | 무라도프 외 6명 | • 양국간 법무, 검찰 협력 강화 방안 등 논의 | 검 찰 국 |
| 8. 22. | 미국 | 주한미국 법무실장 | 펜랜드 외 3명 | • 주한미군 범죄예방 활동 및 양 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 논의 | 검 찰 국 |
| 8. 23. | 키르기즈 | 주한 키르기즈대사 | 클르츠벡 술탄 등 2명 | • 주한 키르기즈 대사관과 출입국관리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해 회의 진행 |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
| 8. 29. | 미국 | 대사 | 해리 해리스 | • 양국 법무행정 관련 논의 | 법 무 실 |
| 8. 30. | 일본 | 주한일본대사관 1등서기관 | 토루 시라토리 | • 한-일본 출입국관리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주한일본대사관과 회의진행 |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
| 9. 12. | 미국 | 법무부 부차관보 | 리차드 파워스 | • 양국 법무부 협력 강화, 공정거래 분야 교류 확대 | 법 무 실 |
| 9. 12. | 미국 | 법무부 반독점국 부차관보 | 리차드 파워스 외 3명 | • 공정거래 사건 관련 한미간 협조 방안 논의 | 검 찰 국 |
| 9. 12. | 태국 | 주한태국대사관 공사참사관 | 피뉴다 참찬스리 등 2명 | • 한-태국 출입국관리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주한 태국대사관과 회의 진행 |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
| 9. 13. | 호주 | 주한호주대사관 1등서기관 | 아만다 키드 | • 한-호주 출입국관리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주한 호주대사관과 회의 진행 |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
| 9. 21. | 일본 | 주한일본대사관 1등서기관 | 토루 시라토리 | • 한-일본 출입국관리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주한 일본대사관과 회의 진행 |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
| 9. 28. | 태국 | 태국노동부장관 | 아둘 상싱케오 등 9명 | • 한-태국 출입국관리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태국대사관, 태국노동부측과 면담 |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
| 10. 2. | 태국 | 태국 외교부 동아시아국 과장 | 파니도네 팟침사왓 등 5명 | • 한-태국 출입국관리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주한 태국대사관, 태국외교부측과 면담 |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
| 10. 26. | 카자흐스탄 | 주한카자흐스탄 대사관 | 바킷 듀센바에프 등 4명 | • 한-카자흐스탄 출입국관리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면담 |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

| 예방일 | 국 명 | 직책 | 성 명 | 예방목적 | 비 고 |
|---|---|---|---|---|---|
| 10. 31. | 우크라이나 | 주한우크라이나 대사 | 호린 알렉산더 등 4명 | • 한-우크라이나 출입국관리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우크라이나 대사관과 면담 |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
| 11. 29. | 태국 | 주한태국대사관 공사 | 슈마테 출라자타 등 7명 | • 한-태국 출입국관리 협력관리 강화를 위해 태국대사관, 태국이민청 관계자 면담 |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
| 11. 30. | 우즈베키스탄 | 법무부장관 | 루슬란벡 다브렛토프 | • 양국 법무부간 법무행정 교류 및 협력 확대 | 법 무 실 |
| 12. 4. | 일본 | 최고검찰청 공안부장 | 소기 테츠야 외 5명 | • 한일 형사사법 분야 협력 방안 등 논의 | 검 찰 국 |
| 12. 5. | 페루 | 주한 페루 대사 | 다울 메히야 대사 외 1명 | • 사법공조 요청 사건 관련 면담 | 검 찰 국 |
| 12. 10. | 일본 | 주한일본대사관 1등서기관 | 토루 시라토리 | • 한-일 출입국관리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주한 일본대사관과 회의 진행 |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
| 12. 11. | 캄보디아 | 법무부차관 | 치브송학 등 6명 | • 범죄피해자 상호협력 | 인권국·법 무 실 |
| 12. 12. | 호주 | 주한호주대사관 1등서기관 | 아만다 키드 | • 한-호주 출입국관리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주한 호주대사관과 회의 진행 |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

# 2. 중요 국제회의 참가 현황

(2018. 1. 1. ~ 12. 31)

| 기 간 | 국 가 | 회 의 명 | 참가자 | 비 고 |
|---|---|---|---|---|
| 1. 10. ~ 16. | 중국(심천),홍콩 | • 2018년 FATF 특별총회(APG/BAG 법관·검사 워크숍) 및 홍콩 율정사 형사협력 실무 회의 | 부장검사 손준성 외 1명 | 검 찰 국 |
| 1.15. ~ 20. | 오스트리아 (비엔나) | • INCB 인터넷 마약류 거래 대응 전문가 회의 | 마약수사관 김정욱 | 검 찰 국 |
| 1.29 ~ 2.1. | 호주 (브리즈번) | • 호주 국제공조사건 실무회의 | 검사 김자영 외 4명 | 검 찰 국 |
| 2. 5. ~ 10. | 인도네시아 | • 제21차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협상 | 이취경 출입국관리 사무관 외 1명 |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
| 2.5. ~ 2.9. | 일본(도쿄) | • 제23차 아태지역 약물단속회의 | 부장검사 우남준 외 1명 | 검 찰 국 |
| 2.17. ~ 24. | 프랑스(파리) | • 제2차 FATF 총회 및 실무그룹회의 (자금세탁방지 국제협력) | 검사 이광석 | 검 찰 국 |
| 2.19. ~ 25. | 뉴욕 | • 이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GCM) 1차 공식협상 | 김세진 출입국관리 사무관 |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
| 2.20. ~ 25. | 스위스(제네바) | • 제8차 UN 여성차별철폐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 사무관 박은영 외 2명 | 인 권 국 |
| 2.22. ~ 28. | 파푸아뉴기니 | • APEC 산하 기업인 이동 실무그룹 회의(BGM) | 김시화 출입국관리 주사보 외 1명 |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
| 2.22. ~ 28. |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 | • APEC 반부패 실무회의 | 검사 홍용화 | 검 찰 국 |
| 2.25. ~ 3.1. | 태국 | • 제5회 ANDEX 회의 | 곽준석 출입국관리 주사보 |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
| 2.25. ~ 3.2.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 • G20 반부패 실무회의 (부패범죄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 검사 이주현 | 검 찰 국 |
| 3.10. ~ 18. | 오스트리아 (비엔나) | • 제61차 유엔마약위원회(UNCND) 회의 | 대검 마약과장 이승호 외 1명 | 검 찰 국 |
| 3.11. ~ 15.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 2018년 상반기 아태지역 국제마약단속회의(IDEC) | 검사 이태순 외 1명 | 검 찰 국 |

| 기 간 | 국 가 | 회 의 명 | 참가자 | 비 고 |
|---|---|---|---|---|
| 3.12. ~ 16. | 프랑스<br>(파리) | • OECD 뇌물방지작업반 2018년도 제1차 전체회의 | 검사 김형원 | 검 찰 국 |
| 3.19. ~ 22. | 태국<br>(방콕) | • APEC 법집행 담당자회의(ACTNET) 범죄수익환수 워크숍(한국대표) | 검사 오진세 | 검 찰 국 |
| 3.19. ~ 23. | 태국<br>(방콕) | • APEC 법집행 담당자회의 (ACTNET) 범죄수익환수 워크숍(단체대표) | 검사 손지혜 외 1명 | 검 찰 국 |
| 3.19. ~ 24. | 필리핀<br>(보라카이) | • APT 인신매매 방지 및 초국경 공동 수사를 위한 테이블탑 회의 | 검사 이세희 | 검 찰 국 |
| 3.27. ~ 30. | 일본<br>(동경) | • 일본 법무성 형사사법공조 협력방안 실무협의 | 국제형사과장<br>서정민 외 2명 | 검 찰 국 |
| 4.2. ~ 4.5. | 오스트리아<br>(비엔나) | • UNODC 사이버범죄 정부전문가 회의 | 검사 김남수 | 검 찰 국 |
| 4.7. ~ 29. | 미국<br>(워싱턴 D.C 등) | • 2018년 미국무부 국제방문자 프로그램(IVLP)(1차) | 검사 손명지 | 검 찰 국 |
| 4.8. ~ 14. | 네덜란드<br>(로테르담) | • 2018년 국제마약단속회의(IDEC) 총회 | 부장검사 이계한 외<br>1명 | 검 찰 국 |
| 4.9. ~ 15. | 아제르바이잔<br>(바쿠), 독일 | • 국제마약단속회의(IDEC) | 대구고검장 황철규<br>외 1명 | 검 찰 국 |
| 4.9. ~ 13. | 스위스 | • 난민 글로벌 컴팩트(GCR) 채택을 위한 3차 공식회의 | 문아라<br>출입국관리<br>주사보 | 출입국·<br>외 국 인<br>정책본부 |
| 4.16. ~ 20. | 미국 | •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전자상거래분과 실무작업반 회의 | 검사 김상현,<br>사무관 박주현 | 법 무 실 |
| 4.17. ~ 19. | 필리핀<br>(마닐라) | • 필리핀 도피 범죄인(김성곤)의 임시 인도 기간연장을 위한 업무협의 | 검사 김형원 외 1명 | 검 찰 국 |
| 4.21. ~ 27. | 태국<br>(방콕) | • ASEAN+3 워크숍 | 검사 정용환 외 1명 | 검 찰 국 |
| 4.23. ~ 27. | 카자흐스탄<br>(아스타나) | • 중서부 아시아 범죄수익환수 기관 간 네트워크 창설 준비회의 | 검사 손지혜 | 검 찰 국 |
| 4.24. ~ 27. | 미국 | •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국제투자분쟁 제도개선분과 실무작업반 회의 | 검사 신동환 | 법 무 실 |
| 4.28. ~ 5.20. | 미국<br>(워싱턴 D.C 등) | • 2018년 미국무부 국제방문자 프로그램(IVLP)(2차) | 검사 최지예 | 검 찰 국 |
| 4.29. ~ 5.6. | 독일 | • 유엔기후변화협약 이행협약 협상 회의 | 전문위원 강지운 | 법 무 실 |
| 5.3. ~ 9. | 싱가포르 | • 제22차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협상 | 김시화<br>출입국관리<br>주사보 | 출입국·<br>외 국 인<br>정책본부 |

| 기 간 | 국 가 | 회 의 명 | 참가자 | 비 고 |
|---|---|---|---|---|
| 5.12. ~ 20. | 미국<br>(피닉스) | • 초국가적 조직범죄 및 테러 대응국제회의 | 부장검사 박영빈 외 2명 | 검 찰 국 |
| 5.13. ~ 18. | 오스트리아<br>(비엔나) | • UN 범죄예방 형사사법 협력회의 | 국제형사과장 서정민 외 1명 | 검 찰 국 |
| 5.19. ~ 26. | 스웨덴(스톡홀름) | • 2018년 유럽 범죄피해자보호 정기총회 | 부장검사 안희준 외 3명 | 인 권 국 |
| 5.22. ~ 27. | 폴란드<br>(바르샤바) | • 2018년 유럽 범죄 수익환수 네트워크(CARIN) 연례총회 | 검사 유진승 외 2명 | 검 찰 국 |
| 5.23. ~ 25. | 중국<br>(북경,칭다오) | • 중국 공안부 최고인민검찰원과의 협의 | 대검 국제협력단장 김철수 외 1명 | 검 찰 국 |
| 5.23. ~ 30. | 네덜란드 | •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외국판결의 승인집행 협약 특별위원회 | 검사 김상현,<br>사무관 박주현 | 법 무 실 |
| 5.24. ~ 31.<br>5.24. ~ 6.1. | 중국(북경),<br>베트남(하노이) | • 중국 공안부 금독국방문 및 아태지역 마약정보조정센터(APICC) 총회 | 대검 강력부장 고기영 외 3명 | 검 찰 국 |
| 5.27. ~ 31.<br>5.27. ~ 6.1. | 베트남<br>(하노이) | • 아태지역 마약정보 조정센터(APICC) 총회 준비 | 마약수사관 김윤식 외 1명 | 검 찰 국 |
| 5.30. ~ 6.1. | 베트남<br>(다낭) | • 인천지방검찰청과 다낭지방인민 검찰청간 MOU 체결 및 한-베트남 검찰세미나 | 인천지검장 공상훈 외 4명 | 검 찰 국 |
| 5.30. ~ 6.4. | 스리랑카<br>(콜롬보) | • 스리랑카 당국과 논의중인 공조 현안 관련 회의 | 부산지검장 김영대 외 5명 | 검 찰 국 |
| 6.2. ~ 10. | 오스트리아<br>(비엔나) | • UN 부패방지협약(UNCAC) 이행점검 실무그룹회의 및 자산회복작업반 회의 | 검사 오진세 | 검 찰 국 |
| 6.3. ~ 10. | 태국(방콕) | • 아세안정부간인권위원회(AICHR)기업과 인권에 관한 모범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회의 | 인권국장 황희석 외 2명 | 인 권 국 |
| 6.6. ~ 12. | 미국<br>(호놀룰루) | • 제9차 한-미 형사사법협력 정례회의 | 국제형사과장 서정민 외 3명 | 검 찰 국 |
| 6.9. ~ 17. | 프랑스<br>(파리) | • OECD 뇌물방지작업반 제2차 회의 및 제3회 뇌물범죄 법집행담당자회의 | 검사 강용묵 | 검 찰 국 |
| 6.16. ~ 20. | 네덜란드 | • IGC 위킹그룹 회의 | 이향숙<br>출입국관리<br>사무관 | 출입국·<br>외 국 인<br>정책본부 |
| 6.17. ~ 23. | 프랑스<br>(스트라스부르) | • 제74차 유럽평의회 국제공조담당자 회의(PC-OC) | 검사 김남수 | 검 찰 국 |
| 6.20. ~ 23. | 이탈리아<br>(베니스) | •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VENICE COMMISSION) 제115차 정기총회 참석 | 김정훈 검사 외 1명 | 법 무 실 |

| 기 간 | 국 가 | 회 의 명 | 참가자 | 비 고 |
|---|---|---|---|---|
| 6.23. ~ 7.1. | 프랑스<br>(파리) | • FATF 총회 및 실무그룹회의 | 부장검사 박철우 외<br>1명 | 검 찰 국 |
| 6.24. ~ 27. | 프랑스<br>(파리) | • OECD 이주작업반 회의 | 김명훈<br>출입국관리<br>사무관 | 출입국·<br>외 국 인<br>정책본부 |
| 6.24. ~ 29. | 제네바 | • 난민재정착 운영을 위한 ATCR회의 | 김종승<br>출입국관리<br>사무관 외 1명 | 출입국·<br>외 국 인<br>정책본부 |
| 6. 25. ~ 29. | 미국 | •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본회의 | 법무실장,<br>국제법무과장,<br>사무관 박주현 | 법 무 실 |
| 6.25. ~ 29. | 프랑스<br>(파리) | • G20 반부패 실무그룹회의 | 검사 조주연 | 검 찰 국 |
| 7.9. ~ 12. | 말레이시아<br>(쿠알라룸푸르) | • 아세안 주최 형사사법공조 워크샵 | 검사 손지혜 | 검 찰 국 |
| 7.17. ~ 18. | 중국<br>(칭다오) | • 중국에 은닉된 범죄수익 환수 | 마약수사관 원종필 | 검 찰 국 |
| 7.22. ~ 28. | 태국 | • 제23차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협상 | 김명훈<br>출입국관리<br>사무관 | 출입국·<br>외 국 인<br>정책본부 |
| 8.3. ~ 9. | 파푸아뉴기니 | • APEC 반부패 법집행기관회의(ACT-NET) | 검사 조아라 | 검 찰 국 |
| 8.4. ~ 9. | 파푸아뉴기니 | • APEC 산하 기업인 이동 실무그룹 회의(BGM) | 김시화<br>출입국관리<br>주사보 외 1명 | 출입국·<br>외 국 인<br>정책본부 |
| 8.5. ~ 9. | 인도네시아<br>(발리) | • 발리 프로세스(인신매매방지협약) 총회 | 인천지검장 김우현<br>외 1명 | 검 찰 국 |
| 8.6. ~ 10. | 베트남<br>(하노이) | • APICC 베트남 마약퇴치 지원 사업 종료식 수행 | 마약수사사무관<br>박기영 외 2명 | 검 찰 국 |
| 8.12. ~ 17. | 미국<br>(워싱턴DC) | • 해외불법재산 환수를 위한 미 법무부와의 공조회의 | 부산지검<br>제2차장검사<br>조상준 외 3명 | 검 찰 국 |
| 8.27. ~ 31. | 브루나이<br>(반다르세리베가완) | • 제39차 아세안 고위급 마약관계관회의(ASOD+3) | 대검 마약과장<br>천기홍 외 1명 | 검 찰 국 |
| 8.29. ~ 9.1. | 보스니아<br>(사라예보) | • 유럽범죄학회 참석 | 오연호 원장<br>외 4명 | 범 죄<br>예 방<br>정 책 국 |

| 기 간 | 국 가 | 회 의 명 | 참가자 | 비 고 |
|---|---|---|---|---|
| 9.1. ~ 8. | 말레이시아 (말라카) | • 제38차 아태교정본부장회의 | 최강주 교정본부장 외 5명 | 교정본부 |
| 9. 2. ~ 10. | 태국 | • 유엔기후변화협약 이행협상 추가 회의 | 전문위원 강지운 | 법 무 실 |
| 9. 3. ~ 5. | 스위스 | • 세계지식재산기구 제13차 집행자문위원회 | 검사 김상현 | 법 무 실 |
| 9. 10. ~ 12. | 대한민국 | •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국제투자분쟁 제도개선분과 실무작업반 회기간 회의 | 법무부장관, 국제법무과장, 검사 신동환 | 법 무 실 |
| 9.23. ~ 28. | 제네바 | • 국가간 이민정책 협의체(IGC) 워크샵 | 류우형 출입국관리 주사보 |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
| 9.2. ~ 8. | 오스트리아 (비엔나) | • UNCAC(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이행점검 회의 | 검사 김남수 | 검 찰 국 |
| 9.4. ~ 12.<br>9.4. ~ 15. | 러시아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 • 러시아 대검찰청 방문 및 남아공 개최제23회 국제검사협회(IAP) 연례총회 | 검찰총장 문무일 외 3명 | 검 찰 국 |
| 9.4. ~ 7.<br>9.4. ~ 15. | 네덜란드 (헤이그),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 • 지역별 범죄수익환수 네크워크 회의 및 국제검사협회(IAP) 연례총회 | 검사 손지혜 외 1명 | 검 찰 국 |
| 9.7. ~ 15. |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 • 제23회 국제검사협회(IAP) 집행위원회 및 연례총회 | 부산고검장 황철규 외 1명 | 검 찰 국 |
| 9.25. ~ 10.3. |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 태국(방콕) | • 아세안초국경범죄에 관한 고위급 회의(SOMTC) | 국제형사과장 구승모 외 1명 | 검 찰 국 |
| 9.30. ~ 10.7. | 제네바 | • 유엔난민기구(UNHCR) 제69차 집행이사회 | 이정미 출입국관리 사무관 외 1명 |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
| 10.1. ~ 12. | 태국(방콕) 말레이시아 (다카) | • 제42차 마약 법집행 기관장 회의 및 마약 통제 행정역량 강화사업 중간보고회 | 대검 마약과장 천기홍 외 3명 | 검 찰 국 |
| 10.2. ~ 28. | 제네바 | • 국가간 이민정책 협의체(IGC) 실무자회의 | 김시화 출입국관리 주사보 |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

| 기 간 | 국 가 | 회 의 명 | 참가자 | 비 고 |
|---|---|---|---|---|
| 10.3. ~ 6. | 대만 | • 국제 국경관리세미나 | 남궁재형 출입국관리 주사 |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
| 10.6. ~ 12. | 프랑스 (파리) | • G20 반부패 실무회의 | 검사 이정섭 | 검 찰 국 |
| 10.7 ~ 11. | 프랑스 (파리) | • OECD 뇌물방지협약 작업반 회의 | 검사 김형원 | 검 찰 국 |
| 10.7. ~ 12. | 제네바 | • 국가간 이민정책 협의체(IGC) 사회통합정책 실무자회의 | 이황원 출입국관리 주사보 |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
| 10.8. ~ 12. | 오스트리아 | •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소규모기업 법제개선분과 실무작업반 회의 | 사무관 이언호 | 법 무 실 |
| 10.13. ~ 20. | 프랑스 (파리) | • FATF 총회 및 실무그룹회의 | 검사 오진세 외 1명 | 검 찰 국 |
| 10.13. ~ 20. | 오스트리아 (비엔나) | • UN 초국가적조직범죄방지협약(UNTOC) 당사국 총회 | 검사 김남수 | 검 찰 국 |
| 10.15. ~ 18. | 이스라엘 | • 공정거래네트워크 카르텔 작업반 회의 | 검사 신동환 | 법 무 실 |
| 10.16. ~ 20.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 노인수용자 처우 국제세미나 | 이남구 교정관 외 1명 | 교정본부 |
| 10.16. ~ 20. | 프랑스 | • ICAO PKD BOARD 회의 | 김유신 출입국관리 주사 외 1명 |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
| 10.17. ~ 22. | 이탈리아 (베니스) | •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VENICE COMMISSION) 제116차 정기총회 참석 | 김호철 대구고검장 김정훈 검사 | 법 무 실 |
| 10.19. ~ 27 | 미국 (라스베가스) | • 제42회 전미교정의료학술회의 | 장성용 기술서기관 외 2명 | 교정본부 |
| 10.20. ~ 28. | 캐나다 (몬트리올) | • 제20차 국제교정협회 연례회의 | 유승만 교정정책단장 외 2명 | 교정본부 |
| 10.20. ~ 28. | 덴마크 (코펜하겐) | • 월드뱅크 국제반부패연맹 회의 | 부장검사 이복현 | 검 찰 국 |
| 10.21. ~ 24. | 일본 (동경) | • 디지털시장경제의 반독점 실무학회 | 검사 김윤후 외 1명 | 검 찰 국 |

| 기 간 | 국 가 | 회 의 명 | 참가자 | 비 고 |
|---|---|---|---|---|
| 10.22. ~ 27. | 뉴질랜드 | • 제24차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협상 | 출입국관리주사 박병건 외 1명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 10.22. ~ 27. | 캐나다 | • 2018년 제14차 ICAO TRIP 심포지엄 | 출입국관리주사 임동영외 1명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 10.27. ~ 11.4. | 스위스 (제네바) | • 제334차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 검사 김성동 외 1명 | 검 찰 국 |
| 10.27. ~ 11.3.<br>10.29. ~ 11.3. | 미얀마 (네피도) | • 아세안 초국가범죄 각료급 회의(AMMTC+3) | 법무부차관 김오수 외 3명 | 검 찰 국 |
| 10.29. ~ 11.1. | 오스트리아 | •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국제투자분쟁 제도개선분과 실무작업반 회기간 회의 | 검사 신동환 | 법 무 실 |
| 11.4. ~ 8. | 인도네시아 (발리) | • 제5회 ARIN-AP 연례총회 및 워크숍 | 대검 국제협력단장 손영배 외 3명 | 검 찰 국 |
| 11.7. ~ 10.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 UN주관 전자증거 사법공조에 관한 워크숍 | 검사 김지연 | 검 찰 국 |
| 11.12. ~ 18. |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 • 제75차 유럽평의회 국제공조 담당자 회의(PC-OC) | 검사 김남수 | 검 찰 국 |
| 11.20. ~ 24. |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 • 중.서부아시아 지역네트워크(ARIN-WCA) 창립총회 | 대검 국제협력단장 손영배 외 2명 | 검 찰 국 |
| 11.19. ~ 22. | 오스트리아 | •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전자상거래분과 실무작업반 회의 | 검사 김상현, 사무관 박주현 | 법 무 실 |
| 11.25. ~ 12.2. | 프랑스(파리), 독일 | • 유럽평의회 제20차 사이버범죄협약위원회 총회 | 검사 오진세 | 검 찰 국 |
| 11.25. ~ 12.5. |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 • 유럽평의회 제20차 사이버범죄협약 위원회 총회 | 대검 과수기획관 심우정 외 2명 | 검 찰 국 |
| 11.26. ~ 12.1. | 제네바 | • 제109회 IOM 국제이주기구 총회 | 김영근 출입국정책단장 외 3명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 11.28. ~ 12.2. | 미국 (워싱턴) | • 공정거래법상 리니언시 실무운영방안 연구 | 국제형사과장 구승모 | 검 찰 국 |
| 12.1. ~ 9. | 스페인 (바르셀로나) 네덜란드(헤이그) 프랑스(파리) | • 제17차국제형사재판소(ICC)당사국총회 및 스페인 고등검찰청장, 프랑스 부패예방청장회담 | 서울고검장 박정식 외 2명 | 검 찰 국 |
| 12.1. ~ 7. | 스위스(제네바) | • UN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7·18·19차 심의 | 김정도 난민과장 외 4명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인권국 |

| 기 간 | 국 가 | 회 의 명 | 참가자 | 비 고 |
|---|---|---|---|---|
| 12.2. ~ 12. | 폴란드 | • 제24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 전문위원<br>강지운·한아인 | 법 무 실 |
| 12.3. ~ 5. | 몽골 | • 제10차 한-몽골 영사협의회 | 이덕룡<br>서기관 외 1명 | 출입국·<br>외 국 인<br>정책본부 |
| 12.3. ~ 9. | 모로코 | • 제11차 GFMD 회의 참석 | 이동용<br>출입국관리<br>주사 외 1명 | 출입국·<br>외 국 인<br>정책본부 |
| 12.5. ~ 8. | 이탈리아 | • 사법통일국제회의(UNIDROIT) 총회 및 담보분과 회의 | 국제법무과장,<br>사무관 이언호 | 법 무 실 |
| 12.5. ~ 14.<br>12.5. ~ 10. | 네덜란드<br>(헤이그)<br>프랑스(파리) | • 국제검사협회(IAP) 사무국 방문 및 OECD 뇌물방지협약 작업반 회의 및2018년도 제4차 전체회의 | 부산고검장 황철규<br>외 1명 | 검 찰 국 |
| 12.6. ~ 8. | 태국<br>(방콕) | • 태국 당사국과 형사사법공조 이행방안 협의 | 검사 김남수 외 2명 | 검 찰 국 |
| 12.8. ~ 15. | 프랑스<br>(파리) | • OECD 뇌물방지협약 회의 | 대검범죄수익환수<br>과장 김민형 외 3명 | 검 찰 국 |
| 12.17. ~ 22. | 러시아<br>(모스크바,<br>상트페테르부르크) | • 제2회 한-러 검찰세미나 | 부산지검장 김기동<br>외 3명 | 검 찰 국 |
| 12.17. ~ 21. | 오스트리아 | •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담보 법제개선분과 실무작업반 회의 | 사무관<br>이언호·정혜림 | 법 무 실 |

# 제9절 상훈

## 1. 총 괄

### • 검사 및 일반직

(2018. 1 ~ 12월)

| 상훈 \ 직급 | 계 | 정무직(등) | 검사 | 고위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계 | 1,519 | - | 47 | 11 | 36 | 40 | 160 | 470 | 623 | 124 | 8 |
| 청조근정훈장 | 0 | - | - | - | - | - | - | - | - | - | - |
| 황조근정훈장 | 1 | - | 1 | - | - | - | - | - | - | - | - |
| 홍조근정훈장 | 38 | - | 3 | 8 | 27 | - | - | - | - | - | - |
| 녹조근정훈장 | 96 | - | - | - | - | 18 | 78 | - | - | - | - |
| 옥조근정훈장 | 160 | - | - | - | - | - | - | 120 | 40 | - | - |
| 근 정 포 장 | 54 | - | - | 2 | 7 | 9 | 14 | 21 | 1 | - | - |
| 대통령표창 | 54 | - | - | 1 | 1 | 7 | 20 | 18 | 7 | - | - |
| 국무총리표창 | 35 | - | - | - | 1 | - | 15 | 12 | 6 | 1 | - |
| 모범공무원 | 172 | - | - | - | - | - | - | 150 | 22 | - | - |
| 법무부장관표창 | 909 | - | 43 | - | - | 6 | 33 | 149 | 547 | 123 | 8 |
| 유관기관표창 | 0 | - | - | - | - | - | - | - | - | - | - |

### • 기 관

(2018. 1 ~ 12월)

| 상훈 \ 기관 | 계 | 법무부 | 검찰청 | 보호관찰소 | 소년원 | 교정기관 | 출입국·외국인기관 |
|---|---|---|---|---|---|---|---|
| 법무부장관표창 | 70 | 4 | 17 | 14 | 8 | 16 | 11 |

# 2. 훈장·포장·표창자 명단

## • 법무부소속 공무원(훈장 이상)

(2018. 1 ~ 12월)

| 훈 격 | 소 속 | 직급 | 성명 | 수여일 | 비 고 |
|---|---|---|---|---|---|
| 황조근정훈장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 검사장 | 신유철 | 2018.4.25. | 법의날유공 |
| 홍조근정훈장 | 대검찰청 | 검사 | 조종태 | 〃 | 〃 |
| | 수원지방검찰청 | 검사 | 이주형 | 〃 | 〃 |
| | 대전지방검찰청천안지청 | 검사 | 노정연 | 〃 | 〃 |
| | 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 | 일반직고위공무원<br>(일반임기제) | 김철호 | 2018.6.30. | 상반기퇴직자유공 |
| | 부산출입국·외국인청 | 일반직고위공무원 | 김삼준 | 〃 | 〃 |
| | 제주출입국·외국인청 | 일반직고위공무원 | 정병열 | 〃 | 〃 |
| |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 부이사관 | 정점자 | 〃 | 〃 |
| | 서울구치소 | 부이사관 | 김주성 | 〃 | 〃 |
| | 경북북부제1교도소 | 부이사관 | 이명수 | 〃 | 〃 |
| | 대검찰청 | 일반직고위공무원 | 양희천 | 〃 | 〃 |
| | 서울고등검찰청 | 검찰부이사관 | 박재운 | 〃 | 〃 |
| | 대구고등검찰청 | 검찰부이사관 | 윤병현 | 〃 | 〃 |
|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검찰부이사관 | 장동준 | 〃 | 〃 |
|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 검찰부이사관 | 백문호 | 〃 | 〃 |
| | 의정부지방검찰청 | 검찰부이사관 | 김용운 | 〃 | 〃 |
| | 광주지방검찰청 | 검찰부이사관 | 문해식 | 〃 | 〃 |
| | 광주지방검찰청 | 검찰부이사관 | 노상래 | 〃 | 〃 |
| |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 검찰부이사관 | 김정열 | 〃 | 〃 |
|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 검찰부이사관 | 기성호 | 〃 | 〃 |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검찰부이사관 | 이동진 | 〃 | 〃 |
| | 법무연수원 | 일반직고위공무원 | 김명철 | 2018.10.26. | 교정의날유공 |
| | 서울소년원 | 일반직고위공무원 | 송화숙 | 2018.12.31. | 하반기퇴직자유공 |
| | 홍성교도소 | 부이사관 | 노용준 | 〃 | 〃 |
| | 법무부 | 부이사관 | 박상훈 | 〃 | 〃 |
| | 법무부 | 부이사관 | 홍순돌 | 〃 | 〃 |
| | 수원지방검찰청 | 검찰부이사관 | 김성범 | 〃 | 〃 |

| 훈 격 | 소 속 | 직급 | 성명 | 수여일 | 비 고 |
|---|---|---|---|---|---|
|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 일반직고위공무원 | 김성수 | 〃 | 〃 |
|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 검찰부이사관 | 박종철 | 〃 | 〃 |
| | 의정부지방검찰청 | 검찰부이사관 | 김취관 | 〃 | 〃 |
| | 대전지방검찰청 | 검찰부이사관 | 박영규 | 〃 | 〃 |
|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 검찰부이사관 | 서영종 | 〃 | 〃 |
| | 청주지방검찰청 | 검찰부이사관 | 김운상 | 〃 | 〃 |
| |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 검찰부이사관 | 국태홍 | 〃 | 〃 |
| | 부산지방검찰청서부지청 | 검찰부이사관 | 변해근 | 〃 | 〃 |
| | 전주지방검찰청 | 검찰부이사관 | 이은묵 | 〃 | 〃 |
|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 검찰부이사관 | 김학상 | 〃 | 〃 |
|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 검찰부이사관 | 홍영권 | 〃 | 〃 |
|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 일반직고위공무원 | 김동석 | 〃 | 〃 |
| 녹조근정훈장 |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 | 서기관 | 유종관 | 2018.6.30. | 상반기퇴직자유공 |
| |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 | 서기관 | 이송준 | 〃 | 〃 |
| | 춘천보호관찰소 | 서기관 | 김용성 | 〃 | 〃 |
| | 부산출입국·외국인청 | 서기관 | 신수용 | 〃 | 〃 |
|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 출입국관리사무관 | 유용인 | 〃 | 〃 |
|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 출입국관리사무관 | 윤기현 | 〃 | 〃 |
|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 출입국관리사무관 | 정재환 | 〃 | 〃 |
|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 출입국관리사무관 | 김두열 | 〃 | 〃 |
|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 출입국관리사무관 | 김석태 | 〃 | 〃 |
| |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서기관 | 우종균 | 〃 | 〃 |
| |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출입국관리사무관 | 박용국 | 〃 | 〃 |
| | 대구보호관찰소 | 서기관 | 조종기 | 〃 | 〃 |
| | 서울동부구치소 | 교정관 | 신현일 | 〃 | 〃 |
| | 서울동부구치소 | 간호사무관 | 김동명 | 〃 | 〃 |
| | 대구구치소 | 교정관 | 이대영 | 〃 | 〃 |
| | 부산구치소 | 교정관 | 윤형린 | 〃 | 〃 |
| | 창원교도소 | 교정관 | 류도식 | 〃 | 〃 |
| | 광주교도소 | 교정관 | 김문자 | 〃 | 〃 |
| | 전주교도소 | 교정관 | 한은호 | 〃 | 〃 |
| |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 교정관 | 황윤성 | 〃 | 〃 |
| | 부산출입국·외국인청 | 출입국관리사무관 | 손상태 | 〃 | 〃 |
| | 안양교도소 | 서기관 | 백홍기 | 〃 | 〃 |

| 훈 격 | 소 속 | 직급 | 성명 | 수여일 | 비 고 |
|---|---|---|---|---|---|
| | 안양교도소 | 서기관 | 김용태 | 〃 | 〃 |
| | 충주구치소 | 교정관 | 임희근 | 〃 | 〃 |
| | 천안교도소 | 교정관 | 안준근 | 〃 | 〃 |
| | 천안교도소 | 교정관 | 정영길 | 〃 | 〃 |
|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정관 | 이종율 | 〃 | 〃 |
| | 창원교도소 | 교정관 | 장호익 | 〃 | 〃 |
| | 서울남부교도소 | 교정관 | 이성근 | 〃 | 〃 |
| | 서울남부교도소 | 교정관 | 김준상 | 〃 | 〃 |
| | 법무부 | 기술서기관 | 서인석 | 〃 | 〃 |
| |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 | 출입국관리사무관 | 안재금 | 〃 | 〃 |
| | 서울고등검찰청 | 방송통신사무관 | 권양오 | 〃 | 〃 |
| | 대구지방검찰청 | 검찰수사서기관 | 김일동 | 〃 | 〃 |
| | 광주지방검찰청 | 방송통신사무관 | 이준행 | 〃 | 〃 |
| | 전주지방검찰청 | 방송통신사무관 | 오연종 | 〃 | 〃 |
|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 검찰사무관 | 하상봉 | 〃 | 〃 |
|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 검찰수사서기관 | 정찬선 | 〃 | 〃 |
| | 울산지방검찰청 | 검찰수사서기관 | 이진만 | 〃 | 〃 |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기술서기관 | 이상중 | 〃 | 〃 |
| | 인천지방검찰청 | 검찰수사서기관 | 조화익 | 〃 | 〃 |
|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 출입국관리사무관 | 김경숙 | 2018.12.31. | 하반기퇴직자유공 |
|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 출입국관리사무관 | 임현호 | 〃 | 〃 |
| | 광주소년원 | 보호사무관 | 김세일 | 〃 | 〃 |
| | 수원구치소 | 교정관 | 김중기 | 〃 | 〃 |
| | 수원구치소 | 교정관 | 박상옥 | 〃 | 〃 |
| | 원주교도소 | 교정관 | 주상근 | 〃 | 〃 |
| | 강릉교도소 | 교정관 | 임성업 | 〃 | 〃 |
| | 영월교도소 | 교정관 | 조학용 | 〃 | 〃 |
| | 대구교도소 | 교정관 | 장우영 | 〃 | 〃 |
| | 대구교도소 | 교정관 | 김형국 | 〃 | 〃 |
| | 진주교도소 | 교정관 | 김남중 | 〃 | 〃 |
| | 안동교도소 | 교정관 | 이동수 | 〃 | 〃 |
| | 밀양구치소 | 교정관 | 김희원 | 〃 | 〃 |
| |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정관 | 조해철 | 〃 | 〃 |
| | 청주여자교도소 | 교정관 | 석형득 | 〃 | 〃 |

| 훈 격 | 소 속 | 직급 | 성명 | 수여일 | 비 고 |
|---|---|---|---|---|---|
| | 홍성교도소 | 교정관 | 이능주 | 〃 | 〃 |
| | 홍성교도소 | 교정관 | 조성실 | 〃 | 〃 |
| | 장흥교도소 | 서기관 | 정병환 | 〃 | 〃 |
| | 해남교도소 | 교정관 | 이연희 | 〃 | 〃 |
| | 전주교도소 | 간호사무관 | 이화경 | 〃 | 〃 |
| | 군산교도소 | 교정관 | 차경록 | 〃 | 〃 |
| | 경주교도소 | 교정관 | 김정훈 | 〃 | 〃 |
| | 경주교도소 | 교정관 | 주도석 | 〃 | 〃 |
| | 수원구치소 | 교정관 | 박정서 | 〃 | 〃 |
| | 울산구치소 | 교정관 | 임철수 | 〃 | 〃 |
| | 안양교도소 | 교정관 | 김재준 | 〃 | 〃 |
| |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보호사무관 | 윤점숙 | 〃 | 〃 |
| | 천안교도소 | 교정관 | 양홍식 | 〃 | 〃 |
| | 김천소년교도소 | 교정관 | 이우정 | 〃 | 〃 |
| | 서울남부교도소 | 교정관 | 황호윤 | 〃 | 〃 |
| | 서울남부구치소 | 교정관 | 홍승만 | 〃 | 〃 |
| | 부산출입국·외국인청 | 출입국관리사무관 | 손종식 | 〃 | 〃 |
| | 인천출입국·외국인청 | 서기관 | 서철진 | 〃 | 〃 |
| | 수원출입국·외국인청 | 출입국관리사무관 | 정광수 | 〃 | 〃 |
| |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출입국관리사무관 | 신현세 | 〃 | 〃 |
| |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출입국관리사무관 | 문병욱 | 〃 | 〃 |
| | 서울고등검찰청 | 검찰사무관 | 최진훈 | 〃 | 〃 |
| | 서울고등검찰청 | 방송통신사무관 | 설수윤 | 〃 | 〃 |
| | 광주고등검찰청 | 검찰사무관 | 윤영하 | 〃 | 〃 |
| | 광주고등검찰청 | 검찰사무관 | 심갑석 | 〃 | 〃 |
| | 대검찰청 | 검찰사무관 | 김건원 | 〃 | 〃 |
| | 수원지방검찰청 | 검찰사무관 | 이환성 | 〃 | 〃 |
| | 광주지방검찰청 | 방송통신사무관 | 이영규 | 〃 | 〃 |
| | 청주지방검찰청 | 방송통신사무관 | 임재석 | 〃 | 〃 |
| |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 검찰사무관 | 최영수 | 〃 | 〃 |
|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 검찰사무관 | 정영길 | 〃 | 〃 |
| |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 방송통신사무관 | 김영석 | 〃 | 〃 |
| | 전주지방검찰청 | 검찰사무관 | 이두섭 | 〃 | 〃 |
| | 대검찰청 | 전산사무관 | 김완열 | 〃 | 〃 |

| 훈 격 | 소 속 | 직급 | 성명 | 수여일 | 비 고 |
|---|---|---|---|---|---|
| | 대구지방검찰청 | 검찰수사서기관 | 백종일 | 〃 | 〃 |
|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 검찰수사서기관 | 강귀남 | 〃 | 〃 |
|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 검찰사무관 | 임영신 | 〃 | 〃 |
|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 마약수사사무관 | 주재준 | 〃 | 〃 |
| | 인천지방검찰청 | 검찰사무관 | 윤태영 | 〃 | 〃 |
|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검찰사무관 | 김상진 | 〃 | 〃 |
| 옥조근정훈장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 출입국관리주사 | 김광태 | 2018.6.30. | 상반기퇴직자유공 |
| | 부산출입국·외국인청 | 출입국관리주사 | 강성숙 | 〃 | 〃 |
| | 제주출입국·외국인청 | 출입국관리주사 | 정재인 | 〃 | 〃 |
| | 제주출입국·외국인청 | 운전주사보 | 이기섭 | 〃 | 〃 |
| |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출입국관리주사 | 김자길 | 〃 | 〃 |
| | 부산소년원 | 전문경력관 나군 | 이창옥 | 〃 | 〃 |
| | 원주교도소 | 교감 | 박차영 | 〃 | 〃 |
| | 영월교도소 | 교감 | 최호선 | 〃 | 〃 |
| | 서울동부구치소 | 교감 | 신현팔 | 〃 | 〃 |
| | 부산교도소 | 교감 | 정용훈 | 〃 | 〃 |
| | 부산교도소 | 교위 | 차원철 | 〃 | 〃 |
| | 대구구치소 | 교감 | 이진표 | 〃 | 〃 |
| | 대구구치소 | 교감 | 유명근 | 〃 | 〃 |
| | 부산구치소 | 교감 | 장성환 | 〃 | 〃 |
| | 포항교도소 | 교감 | 안효창 | 〃 | 〃 |
| | 창원교도소 | 교감 | 조정원 | 〃 | 〃 |
| | 광주교도소 | 교감 | 김복기 | 〃 | 〃 |
| | 전주교도소 | 교위 | 조용규 | 〃 | 〃 |
| | 제주교도소 | 교위 | 강길종 | 〃 | 〃 |
| | 장흥교도소 | 교감 | 윤재량 | 〃 | 〃 |
| | 대구교도소 | 교감 | 이영화 | 〃 | 〃 |
| | 대구교도소 | 교감 | 윤병호 | 〃 | 〃 |
| | 대구교도소 | 교위 | 곽유환 | 〃 | 〃 |
| | 대구교도소 | 교감 | 이재대 | 〃 | 〃 |
| | 대전교도소 | 교감 | 박규영 | 〃 | 〃 |
| | 대전교도소 | 교감 | 강덕순 | 〃 | 〃 |
| | 대전교도소 | 교감 | 도한수 | 〃 | 〃 |
| | 전주교도소 | 교감 | 박정식 | 〃 | 〃 |

| 훈 격 | 소 속 | 직급 | 성명 | 수여일 | 비 고 |
|---|---|---|---|---|---|
| | 전주교도소 | 운전주사보 | 강덕원 | 〃 | 〃 |
| | 청주교도소 | 교감 | 박노영 | 〃 | 〃 |
| | 청주교도소 | 교감 | 조성락 | 〃 | 〃 |
| | 청주교도소 | 교감 | 김희성 | 〃 | 〃 |
| | 청주교도소 | 공업주사 | 김인수 | 〃 | 〃 |
| | 순천교도소 | 교감 | 김광호 | 〃 | 〃 |
| | 순천교도소 | 교감 | 황옥수 | 〃 | 〃 |
| | 공주교도소 | 교감 | 강광순 | 〃 | 〃 |
| | 공주교도소 | 교감 | 신용해 | 〃 | 〃 |
| | 공주교도소 | 교위 | 이용진 | 〃 | 〃 |
| | 경주교도소 | 교감 | 강익구 | 〃 | 〃 |
| | 홍성교도소 | 교감 | 편장범 | 〃 | 〃 |
| | 수원구치소 | 교감 | 허태욱 | 〃 | 〃 |
| | 수원구치소 | 운전주사보 | 박승권 | 〃 | 〃 |
| | 안양교도소 | 교감 | 김형열 | 〃 | 〃 |
| | 안양교도소 | 교감 | 김성일 | 〃 | 〃 |
| | 의정부교도소 | 교감 | 김희오 | 〃 | 〃 |
| | 의정부교도소 | 교감 | 이종근 | 〃 | 〃 |
| | 의정부교도소 | 시설주사 | 김동호 | 〃 | 〃 |
| | 춘천교도소 | 교감 | 조돈기 | 〃 | 〃 |
| | 춘천교도소 | 교감 | 서광철 | 〃 | 〃 |
| | 강릉교도소 | 교감 | 김삼현 | 〃 | 〃 |
| | 강릉교도소 | 교위 | 이규대 | 〃 | 〃 |
| | 인천구치소 | 교감 | 최병창 | 〃 | 〃 |
| | 인천구치소 | 교감 | 권광수 | 〃 | 〃 |
| | 여주교도소 | 교감 | 김갑숙 | 〃 | 〃 |
| | 여주교도소 | 전문경력관 나군 | 김재현 | 〃 | 〃 |
| | 여주교도소 | 공업주사보 | 권희양 | 〃 | 〃 |
| | 충주구치소 | 교감 | 김정태 | 〃 | 〃 |
|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감 | 김승진 | 〃 | 〃 |
|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감 | 이현순 | 〃 | 〃 |
| | 천안교도소 | 교감 | 채항석 | 〃 | 〃 |
| | 천안교도소 | 교위 | 지사영 | 〃 | 〃 |
| | 천안교도소 | 교위 | 이수한 | 〃 | 〃 |

| 훈 격 | 소 속 | 직급 | 성명 | 수여일 | 비 고 |
|---|---|---|---|---|---|
| | 김천소년교도소 | 교감 | 조점호 | 〃 | 〃 |
|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감 | 전재원 | 〃 | 〃 |
|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감 | 정익수 | 〃 | 〃 |
| | 창원교도소 | 교감 | 조현규 | 〃 | 〃 |
| | 창원교도소 | 교위 | 황선태 | 〃 | 〃 |
| | 창원교도소 | 교위 | 김종국 | 〃 | 〃 |
| | 창원교도소 | 기계운영주사보 | 신훈철 | 〃 | 〃 |
| | 서울남부교도소 | 교감 | 이선호 | 〃 | 〃 |
| | 서울남부교도소 | 운전주사보 | 김영철 | 〃 | 〃 |
| | 상주교도소 | 교감 | 윤성헌 | 〃 | 〃 |
| | 상주교도소 | 교감 | 조재현 | 〃 | 〃 |
| | 법무연수원 | 공업주사 | 민효기 | 〃 | 〃 |
| | 대구고등검찰청 | 전기운영주사보 | 강보근 | 〃 | 〃 |
|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운전주사보 | 이종귀 | 〃 | 〃 |
|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 운전주사보 | 장진규 | 〃 | 〃 |
| | 전주지방검찰청 | 운전주사보 | 최규복 | 〃 | 〃 |
| |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 사무운영주사보 | 최돈갑 | 〃 | 〃 |
|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 사무운영주사 | 강미숙 | 〃 | 〃 |
| |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 열관리운영주사보 | 권기원 | 〃 | 〃 |
| |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 운전주사보 | 장현갑 | 〃 | 〃 |
|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 방호주사보 | 박종현 | 〃 | 〃 |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사무운영주사보 | 배미옥 | 〃 | 〃 |
| | 인천보호관찰소 | 보호주사보 | 조인숙 | 2018.12.31. | 하반기퇴직자유공 |
| | 청주외국인보호소 | 출입국관리주사 | 한승욱 | 〃 | 〃 |
| | 대전소년원 | 방호주사 | 정건정 | 〃 | 〃 |
|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 출입국관리주사 | 김병광 | 〃 | 〃 |
| | 수원구치소 | 교감 | 장흥순 | 〃 | 〃 |
| | 수원구치소 | 교감 | 박영길 | 〃 | 〃 |
| | 수원구치소 | 교감 | 최병준 | 〃 | 〃 |
| | 수원구치소 | 교감 | 배상락 | 〃 | 〃 |
| | 수원구치소 | 교위 | 최윤규 | 〃 | 〃 |
| | 원주교도소 | 교감 | 김창기 | 〃 | 〃 |
| | 원주교도소 | 교위 | 안동진 | 〃 | 〃 |
| | 강릉교도소 | 교위 | 김진년 | 〃 | 〃 |

| 훈 격 | 소 속 | 직급 | 성명 | 수여일 | 비 고 |
|---|---|---|---|---|---|
|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감 | 김세준 | 〃 | 〃 |
| | 서울동부구치소 | 교감 | 문수희 | 〃 | 〃 |
| | 서울동부구치소 | 교감 | 허상진 | 〃 | 〃 |
| | 서울동부구치소 | 교감 | 김영식 | 〃 | 〃 |
| | 서울동부구치소 | 교감 | 유장익 | 〃 | 〃 |
| | 서울동부구치소 | 교감 | 이만규 | 〃 | 〃 |
| | 서울동부구치소 | 교위 | 배상선 | 〃 | 〃 |
| | 대구교도소 | 교감 | 최용택 | 〃 | 〃 |
| | 대구교도소 | 교감 | 박선주 | 〃 | 〃 |
| | 대구교도소 | 교위 | 오석동 | 〃 | 〃 |
| | 진주교도소 | 교감 | 전점주 | 〃 | 〃 |
| | 부산구치소 | 교감 | 유상수 | 〃 | 〃 |
| | 前 창원교도소 | 교감 | 故 김권실 | 〃 | 〃 |
| | 대전교도소 | 교감 | 김병태 | 〃 | 〃 |
| | 대전교도소 | 교감 | 온영섭 | 〃 | 〃 |
| | 대전교도소 | 교감 | 류재천 | 〃 | 〃 |
| | 충주구치소 | 교감 | 김선기 | 〃 | 〃 |
| | 충주구치소 | 교감 | 안광성 | 〃 | 〃 |
| | 광주교도소 | 교감 | 이육영 | 〃 | 〃 |
| | 광주교도소 | 교감 | 정효준 | 〃 | 〃 |
| | 제주교도소 | 교위 | 김영건 | 〃 | 〃 |
| | 제주교도소 | 교위 | 오한일 | 〃 | 〃 |
| | 대전교도소 | 교감 | 정우석 | 〃 | 〃 |
| | 전주교도소 | 교감 | 박상열 | 〃 | 〃 |
| | 전주교도소 | 교위 | 최병권 | 〃 | 〃 |
| | 대구구치소 | 교감 | 손문하 | 〃 | 〃 |
| | 군산교도소 | 교감 | 강우성 | 〃 | 〃 |
| | 천안개방교도소 | 교위 | 이홍구 | 〃 | 〃 |
| | 순천교도소 | 교감 | 정장철 | 〃 | 〃 |
| | 공주교도소 | 교감 | 강용길 | 〃 | 〃 |
| | 경주교도소 | 교감 | 최문경 | 〃 | 〃 |
| | 장흥교도소 | 교위 | 최선우 | 〃 | 〃 |
| | 서울구치소 | 교감 | 이경숙 | 〃 | 〃 |
| | 안양교도소 | 교감 | 성창규 | 〃 | 〃 |

| 훈 격 | 소 속 | 직급 | 성명 | 수여일 | 비 고 |
|---|---|---|---|---|---|
| | 안양교도소 | 교감 | 김난귀 | 〃 | 〃 |
| | 의정부교도소 | 교감 | 이성용 | 〃 | 〃 |
| | 의정부교도소 | 교감 | 백종찬 | 〃 | 〃 |
| | 의정부교도소 | 교감 | 윤강로 | 〃 | 〃 |
| | 춘천교도소 | 교감 | 정우현 | 〃 | 〃 |
| | 춘천교도소 | 교감 | 윤병철 | 〃 | 〃 |
| | 춘천교도소 | 전문경력관 나군 | 이치홍 | 〃 | 〃 |
| | 영월교도소 | 교감 | 박성철 | 〃 | 〃 |
| | 천안교도소 | 교위 | 한정환 | 〃 | 〃 |
| | 경북북부제1교도소 | 교감 | 이강현 | 〃 | 〃 |
| | 경북북부제1교도소 | 기계운영주사 | 김길동 | 〃 | 〃 |
| | 경북북부제2교도소 | 교감 | 정경수 | 〃 | 〃 |
| | 경북북부제2교도소 | 교감 | 최경환 | 〃 | 〃 |
|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감 | 이오우 | 〃 | 〃 |
| | 서울남부교도소 | 교감 | 황해천 | 〃 | 〃 |
| | 서울남부구치소 | 교감 | 김태헌 | 〃 | 〃 |
| |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출입국관리주사 | 문방주 | 〃 | 〃 |
| | 대검찰청 | 시설주사 | 이영기 | 〃 | 〃 |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사무운영주사 | 진인자 | 〃 | 〃 |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사무운영주사보 | 조근원 | 〃 | 〃 |
| | 의정부지방검찰청 | 사무운영주사보 | 김정자 | 〃 | 〃 |
| | 대전지방검찰청 | 검찰주사 | 김동수 | 〃 | 〃 |
| | 대전지방검찰청 | 검찰주사 | 류홍선 | 〃 | 〃 |
| | 광주지방검찰청 | 검찰주사 | 박석준 | 〃 | 〃 |
| | 제주지방검찰청 | 검찰주사 | 이계봉 | 〃 | 〃 |
| | 청주지방검찰청 | 운전주사 | 홍성관 | 〃 | 〃 |
| |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 검찰주사 | 김상현 | 〃 | 〃 |
| |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 검찰주사 | 최상일 | 〃 | 〃 |
| | 전주지방검찰청 | 사무운영주사보 | 이계자 | 〃 | 〃 |
|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사무운영주사 | 박순희 | 〃 | 〃 |

## • 외부인사 및 단체

(2018. 1 ~ 12월)

| 훈 격 | 소 속 | 직급 | 성명 | 수여일 | 비 고 |
|---|---|---|---|---|---|
| 국민훈장무궁화장 | 대한변호사협회 | 변호사 | 이석태 | 2018.4.25. | 법의날유공 |
| 국민훈장모란장 | 법사랑위원 제주지역연합회 | 법사랑위원 | 현승탁 | 2018.7.6. | 범죄예방자원봉사유공 |
| 국민훈장동백장 |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 법무사 | 박태열 | 2018.4.25. | 법의날유공 |
| | 법사랑위원 대전지역연합회 | 법사랑위원 | 정길영 | 2018.7.6. | 범죄예방자원봉사유공 |
| | 안양교도소 | 교정위원 | 박흥섭 | 2018.10.26. | 교정의날유공 |
| 국민훈장목련장 | 법사랑위원 울산지역연합회 | 법사랑위원 | 김용준 | 2018.7.6. | 범죄예방자원봉사유공 |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 보호위원 | 이계환 | 2018.11.7. | 갱생보호지원유공 |
| 국민훈장석류장 | 법사랑위원 부산동부지역연합회 | 법사랑위원 | 신한춘 | 2018.7.6. | 범죄예방자원봉사유공 |
| 황조근정훈장 | 경희대학교 | 교수 | 박균성 | 2018.4.25. | 법의날유공 |
| 홍조근정훈장 | 단국대학교 | 교수 | 정준현 | 2018.4.25. | 법의날유공 |
| 국민포장 | 서울동부구치소 | 교정위원 | 박이균 | 2018.10.26. | 교정의날유공 |
| | 부산교도소 | 교정위원 | 하준섭 | 〃 | 〃 |
| | 전주교도소 | 교정위원 | 황용주 | 〃 | 〃 |
| | 법사랑위원 고양지역연합회 | 법사랑위원 | 이흥윤 | 2018.7.6. | 범죄예방자원봉사유공 |
| | 법사랑위원 수원지역연합회 | 법사랑위원 | 박항영 | 〃 | 〃 |
| | 소년보호위원 대구소년원협의회 | 소년보호위원 | 류세락 | 〃 | 〃 |
| | (사)포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법사랑위원 | 배영미 | 2018.11.14. | 범죄피해자보호지원유공 |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 보호위원 | 송정옥 | 2018.11.7. | 갱생보호지원유공 |
| 대통령표창 | 법사랑위원 제주지역연합회 | 법사랑위원 | 김종길 | 2018.4.25. | 법의날유공 |
|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 김지선 | 〃 | 〃 |
| |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생활지원위원장 | 이호상 | 〃 | 〃 |
| | (사)고려인마을 | 대표 | 신조야 | 2018.5..18. | 세계인의날유공 |
| | (사)이주민사회통합지원센터 | 소장 | 서광석 | 〃 | 〃 |
| | (사)부천이주민지원센터 | 센터장 | 손인환 | 〃 | 〃 |
| | 천안교도소 | 교정위원 | 김태오 | 2018.10.26. | 교정의날유공 |
| | 공주교도소 | 교정위원 | 권이학 | 〃 | 〃 |
| | 광주교도소 | 교정위원 | 안영목 | 〃 | 〃 |
| | 대구구치소 | 교정위원 | 김대희 | 〃 | 〃 |
| | 법사랑위원 광주지역연합회 | 법사랑위원 | 장정순 | 2018.7.6. | 범죄예방자원봉사유공 |
| | 법사랑위원 포항지역연합회 | 법사랑위원 | 박승대 | 〃 | 〃 |
| | 법사랑위원 대구지역연합회 | 법사랑위원 | 이병욱 | 〃 | 〃 |

| 훈 격 | 소 속 | 직급 | 성명 | 수여일 | 비 고 |
|---|---|---|---|---|---|
| | 법사랑위원 천안지역연합회 | 법사랑위원 | 김병대 | 〃 | 〃 |
| | 법사랑위원 인천지역연합회 | 법사랑위원 | 김재준 | 〃 | 〃 |
| | 법사랑위원 서울중앙지역연합회 | 법사랑위원 | 김학철 | 〃 | 〃 |
| | 법사랑위원 안양지역연합회 | 법사랑위원 | 전 소 | 〃 | 〃 |
| | 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협의회 | 소년보호위원 | 박순정 | 〃 | 〃 |
| | (사)김천구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부이사장 | 황경희 | 2018.11.14. | 범죄피해자보호지원유공 |
| | (사)광주전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이사장 | 이은열 | 〃 | 〃 |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 | 보호위원 | 강선국 | 2018.11.7. | 갱생보호지원유공 |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br>광주전남지부 | 보호위원 | 신중관 | 〃 | 〃 |
|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 | 2018.12.20. | 법질서유공 |
| |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 | | 〃 | 〃 |
| | (사)한국건강관리협회 | | | 〃 | 〃 |
| 국무총리표창 | 유엔 국제이주기구(IOM)<br>한국사무소 | 소장 | 박미형 | 2018.5.18. | 세계인의날유공 |
| | 천주교 수원교구<br>광주이주사목센터 | 센터장 | Gorgiami<br>Maurizio | 〃 | 〃 |
| | 천주교 대구대교구<br>가톨릭근로자회관 | 관장 | 이관홍 | 〃 | 〃 |
| | (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 상임공동대표 | 홍성직 | 〃 | 〃 |
| | (사)국제과학기술자협력단 | 대표 | 임봉수 | 〃 | 〃 |
| | 시흥희망의료봉사단 | | | 〃 | 〃 |
| | 안산시다문화지원본부 | | | 〃 | 〃 |
| | 대전교도소 | 교정위원 | 이익한 | 2018.10.26. | 교정의날유공 |
| | 김천소년교도소 | 교정위원 | 장성윤 | 〃 | 〃 |
| | 인천구치소 | 교정위원 | 남인순 | 〃 | 〃 |
| | 여주교도소 | 교정위원 | 장선영 | 〃 | 〃 |
| | 군산교도소 | 교정위원 | 최봉규 | 〃 | 〃 |
| | 법사랑위원 마산지역연합회 | 법사랑위원 | 정선례 | 2018.7.6. | 범죄예방자원봉사유공 |
| | 법사랑위원 부산지역연합회 | 법사랑위원 | 최규덕 | 〃 | 〃 |
| | 법사랑위원 김천지역연합회 | 법사랑위원 | 이제철 | 〃 | 〃 |
| | 법사랑위원 거창지역연합회 | 법사랑위원 | 박순복 | 〃 | 〃 |
| | 법사랑위원 통영지역연합회 | 법사랑위원 | 김성기 | 〃 | 〃 |
| | 법사랑위원 서울서부지역연합회 | 법사랑위원 | 오환인 | 〃 | 〃 |
| | 법사랑위원 여주지역연합회 | 법사랑위원 | 황정호 | 〃 | 〃 |

| 훈 격 | 소 속 | 직급 | 성명 | 수여일 | 비 고 |
|---|---|---|---|---|---|
| | 법사랑위원 정읍지역연합회 | 법사랑위원 | 송희복 | 〃 | 〃 |
| | 소년보호위원 춘천소년원협의회 | 소년보호위원 | 백영호 | 〃 | 〃 |
|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 안성훈 | 2018.4.25. | 법의날유공 |
| | (사)대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사무처장 | 노재근 | 2018.11.14. | 범죄피해자보호지원유공 |
| | (사)논산부여계룡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자원봉사위원 | 임정란 | 〃 | 〃 |
| | (사)대구서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감사 | 박승로 | 〃 | 〃 |
| | (사)경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고문 | 김종원 | 〃 | 〃 |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 | 보호위원 | 이범중 | 2018.11.7. | 갱생보호지원유공 |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 보호위원 | 제승현 | 〃 | 〃 |
| | (재)천주교 의정부교구 교정사목위원회 | 상담실장 | 조정란 | 2018.12.20. | 법질서유공 |
| | 원광보건대학교 | 부교수 | 차진경 | 〃 | 〃 |
| | 동서울대학교 | 부교수 | 이경아 | 〃 | 〃 |
| | 국립정신건강센터 | | | 〃 | 〃 |
| | (사)국제라이온스협회354-A지구서울동남라이온스클럽 | | | 〃 | 〃 |

# 제10절 위원회 현황

## 1. 총 괄

(2018. 11월 현재)

| 소 관 별 | 계 | 장관실 | 기 획 조정실 | 법무실 | 검찰국 | 범죄 예방 정책국 | 감찰관실 | 인권국 | 교정 본부 |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 운 영 지원과 |
|---|---|---|---|---|---|---|---|---|---|---|---|
| 위원회 수 | 57 | 2 | 15 | 7 | 11 | 3 | 1 | 7 | 1 | 6 | 4 |

## 2. 위원회 개요

| 연번 | 위 원 회 명 | 근 거 | 설 치 목 적 | 구 성 | | 소관 부서 | 비고 |
|---|---|---|---|---|---|---|---|
| | | | | 위원장 | 위원수 | | |
| 1 | 법무부정책위원회 (분과위 : 법무시설건축협의위, 중앙급식관리위,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위) | 법무부정책위원회규정(훈령 제841호) | 법무행정운영에 관한 장관 자문 | 김혜숙 (교수) | 14명 | 정책 기획단 | 장관실 |
| 2 | 검찰 과거사 위원회 | 검찰과거사위원회규정(훈령 제1189호) |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 대상 사건의 선정 및 진상조사, 후속 조치 권고 | 김갑배 (변호사) | 7명 | | |
| 3 | 법무부 직장방위협의회 | 예비군설치법 14조의3, 대통령훈령 제28호 | 대비정규전 작전활동 및 예비군 법무부 직장분대 운영의 유기적 협조 조정 | 법무부 장관 | 11명 | 비상 안전 | 기획조정실 |
| 4 | 법무부 예산집행심의 위원회 | 예산집행심의회규정 (훈령 제870호) |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 기획 조정 실장 | 11명 | 기획 재정 | |
| 5 | 법무부 정책연구심의 위원회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8358호), 법무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훈령 1095호) | 법무부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 | 기획 조정 실장 | 16명 | 기획 재정 | |

| 연번 | 위원회명 | 근거 | 설치목적 | 구성 | | 소관부서 | 비고 |
|---|---|---|---|---|---|---|---|
| | | | | 위원장 | 위원수 | | |
| 6 | 법무부 공적심사위원회 | 상훈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2조 |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추천 심사 | 법무부 차관 | 9명 | 혁신행정 | 기획조정실 |
| 7 | 법무부 보통징계위원회 | 국가공무원법제81조, 공무원징계령 제5조 |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심의·의결 | 법무부 차관 | 14명 | | |
| 8 | 법무부 근무성적평가위원회 |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조, 법무부소속 공무원평가 등 업무처리지침 |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 조정 | 장관이 임명 | 5명 이상 | | |
| 9 | 법무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공무원고충처리규정(대통령령) 제3조 | 공무원의 고충 심사 | 인사과장 | 9명 | | |
| 10 | 법무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국가공무원법제40조의3, 공무원임용령제34조의3 | 공무원의 승진 심사 | 장관이 임명 | 3명 이상 | | |
| 11 | 법무부 성과급심사위원회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7조의2 | 성과급 심사 | 장관이 임명 | 3~7명 | | |
| 12 | 법무부 교육훈련심의위원회 |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대통령령) 제32조의3 | 위탁교육 훈련대상자 선발, 심의 등 | 법무부 차관 | 5명 이상 | | |
| 13 | 법무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법무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훈령 839호) | 규제신설(강화)에 대한 규제범위·대상·존속기한 등에 대한 심사, 입안부서(각 실·국·본부)에서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의 타당성 심사 | 기획조정실장, 최정진(변호사) | 4명 | 행복민원 | |
| 14 | 법무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1조, 법무부 갈등관리 규정(훈령 1077호) | 법무정책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장관 자문 | 이선우(교수) | 12명 | | |
| 15 | 법무부 자체평가위원회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 평가계획·평가결과 그밖에 당해 기관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 노명선(교수) | 24명 | 정책성과 | |
| 16 | 법무부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심의 | 기획조정실장 | 4명 | | |
| 17 | 법무정보화 자문위원회 |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4조의4 | 법무정보화 업무 및 정보기술을 활용한 발전방향 등 자문 | 김현곤(한국정보화진흥원 부원장) | 8명 | 정보화 | |
| 18 | 법무자문위원회(특별분과위 : 형사법개정, 형사소송법개정, 남북법령연구, 국제법무자문, 집단소송제개선) | 법무자문위원회규정 제1조, 제2조 | 법무관계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내외의 법률학설 및 판례를 조사·연구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함 | 윤진수(교수) | 14명 | 법무심의관실 | 법무실 |

| 연번 | 위원회명 | 근거 | 설치목적 | 구성 | | 소관부서 | 비고 |
|---|---|---|---|---|---|---|---|
| | | | | 위원장 | 위원수 | | |
| 19 | 주택임대차위원회<br>(주택임대차실무위원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 우선변제를 받는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 심의 | 법무부 차관 | 9명 | | 법무실 |
| 20 |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 변호사법 제92조, 제94조, 동법시행령 제21조 | 변호사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심의 | 법무부 장관 | 8명 | 법무과 | |
| 21 | 공증인징계위원회 | 공증인법 제85조 | 공증인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 | 법무부 차관 | 6명 | | |
| 22 |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 외국법자문사법 제38조, 제40조 | 비위 행위를 저지른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징계 | 법무부 장관 | 15명 | 국제법무과 | |
| 23 | 본부배상심의회 | 국가배상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결정 | 법무부 차관 | 6명 | 국가송무과 | |
| 24 |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 변호사시험법 제14조 | 변호사시험시행 관련 주요사항 심의 | 법무부 차관 | 14명 | 법조인력과 | |
| 25 | 검사 징계위원회 | 검사징계법 제4조, 제5조 | 검사에 대한 징계 사건 심의 및 의결 | 법무부 장관 | 6명 | 검찰과 | 검찰국 |
| 26 | 검찰인사위원회 | 검찰청법 제35조, 검찰인사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제2조 | 검찰인사 등에 대한 중요사항 심의 | 변호사 | 10명 | | |
| 27 | 검사적격심사위원회 | 검찰청법 제39조 검사적격심사위원회규정(대통령령)제2조, 제3조, 제4조 |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에 대한 적격심사 | 변호사 | 8명 | | |
| 28 | 검사직무성과금 심의위원회 |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10 | 직무성과금 지급등급·지급인원·지급액 심의 | 법무부 차관 | 4명 | | |
| 29 | 마약류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 | 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 제6조 | 마약류보상금지급 신청인의 자격, 지급액, 기타 보상금지급에 관한 사항 등 심의 | 검찰 국장 | 4명 | 형사기획과 | |
| 30 | 사면심사위원회 | 사면법 제10조의 2 | 법무부 장관의 사면 상신권 행사의 적정성 심사·자문 | 법무부 장관 | 7명 | | |
| 31 |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 | 국가보안법 제24조,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4조 | 상금·보로금지급 및 보상대상자 심의·결정 | 검찰 국장 | 6명 | 공안기획과 | |
| 32 |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 보안관찰법 제12조 |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 심의·의결 | 법무부 차관 | 6명 | | |
| 33 | 공안사범자료관리협의회 |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 (대통령훈령 제271호) 제3조 | 공안사범에 관한 자료관리 | 검찰 국장 | 10명 | | |
| 34 |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부령 제603호) 제8조 | 선거범죄 신고에 대한 포상으로 신고·제보 활성화 유도 | 검찰 국장 | 4명 | | |
| 35 |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심의 위원회 |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 규정 (훈령 제947호) | 범죄수익 환수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심의 | 검찰 국장 | 4명 | 국제형사과 | |

| 연번 | 위원회명 | 근거 | 설치목적 | 구성 | | 소관부서 | 비고 |
|---|---|---|---|---|---|---|---|
| | | | | 위원장 | 위원수 | | |
| 36 |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 | 고검 차장검사 | 각 8명 | 보호관찰과 | 범죄예방정책국 |
| 37 | 법교육위원회 | 법교육지원법 제4조 | 법교육에 관한 주요사업 추진 실적 및 차후 정책 방향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정재황 (교수) | 14명 | 보호정책과 | |
| 38 | 치료감호심의위원회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운영세칙 | 치료감호 종료·가종료 및 보호감호 가출소·취소 등 심사·결정 | 법무부 차관 | 8명 | 치료처우과 | |
| 39 | 법무부감찰위원회 |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1조 |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감사업무 수행과 관련된 법무부장관의 자문 | 유원규 (변호사) | 10명 | 감찰관실 | 감찰관실 |
| 40 |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장애인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심의 | 법무부 차관 | 7명 | 인권정책과 | 인권국 |
| 41 | 인권정책자문단 |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운영지침 (훈령 제890호) | 법무행정 및 국가인권정책에 관한 자문 | 인권국장 (주재) | 30명 | | |
| 42 |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범죄피해자보호실무위원회)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5조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 | 법무부 장관 | 17명 | 인권구조과 | |
| 43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심의 | 법무부 차관 | 14명 | | |
| 44 | 범죄피해구조본부 심의회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 지구심의회에서 구조금 지급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사건에 대한 재심 신청사건 심의·의결 | 법무부 차관 | 6명 | | |
| 45 | 법무부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훈령 제1076호) | 법무행정분야의 여성, 아동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및 조정 | 노혜련 (교수) | 14명 | 여성아동인권과 | |
| 46 | 법무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 법무부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사건 처리 지침(훈령 제1000호) 제12조 | 성희롱 고충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인권국장이 부치는 사항 심의·의결 | 인권국장 | 4명 | | |
| 47 | 가석방심사위원회 | 형집행법 제119조 | 수형자의 가석방자 적격여부 심사 및 결정 | 법무부 차관 | 8명 | 분류심사과 | 교정본부 |
| 48 | 법무부 투자이민협의회 | 투자이민협의회규정 (훈령 제896호) 제1조 | 투자이민제도 운영관련 법무부 장관 자문 | 법무부 차관 | 10명 | 체류관리과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 49 | 법무부이민정책 자문위원회 | 법무부이민정책자문위원회규정(훈령 제1068호) 제1조 | 중요 이민정책의 입안 등에 있어 전문가 의견 청취 | 정인섭 (교수) | 14명 | 외국인정책과 | |
| 50 | 국적심의위원회 | 국적법시행령 제28조 | 우수인재 특별귀화 대상자 선정 및 대한민국 국적 상실 결정에 관한 사항 등 심의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20명 | 국적과 | |

| 연번 | 위원회명 | 근거 | 설치목적 | 구성 | | 소관부서 | 비고 |
|---|---|---|---|---|---|---|---|
| | | | | 위원장 | 위원수 | | |
| 51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자문위원회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4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관련 법무부장관 자문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10명 | 이민통합과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 52 | 난민위원회 | 난민법 제25조 및 난민법 시행규칙 제12조 | 난민불인정결정 및 취소·철회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 법무부 차관 | 14명 | 난민과 | |
| 53 | 출국금지심의위원회 | 출국금지심의위원회 규정(훈령 제1160호) 제1조 | 출국금지·정지 및 그 연장 결정과, 그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에 앞서 그 적정성을 심의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4명 | 출입국심사과 | |
| 54 | 법무부 보안심사위원회 | 법무부보안업무시행세칙 (훈령 제1021호) 제3조 | 제반 보안대책의 수립 및 제규정 제정 | 법무부 차관 | 8명 | 운영지원과 | 운영지원과 |
| 55 | 법무부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산자부 고시 제2015-195호) |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과 이용효율 향상 | 법무부 차관 | 5명 | | |
| 56 | 법무부 정보공개심의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법무부 행정정보 공개지침 제14조 |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기획조정실장 | 5명 | | |
| 57 | 법무부 기록물평가 심의회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법무부 기록물평가 심의회운영지침 | 폐기 대상 기록물에 대한 폐기의 적정 여부 평가, 기타 보존기록물의 폐기와 관련하여 보존기간 재책정 등 필요한 사항을 평가 심의 | 기획조정실장 | 10명 | | |

# 제11절 소속기관 및 단체 현황



## • 소속기관

(2018. 12. 31. 현재)

| 구 분 | 기 관 | 정 원 |
|---|---|---|
| 계 | 264개 기관 | 32,607 |
| 법무부 | 2실 3국 2본부 | 679 |
| 검찰청 | 대검찰청 1, 고등검찰청 5, 지방검찰청 18, 지청 41 | 10,696 |
| 법무연수원 | 진천본원 1, 용인분원1 | 130 |
| 보호관찰심사위원회 | 보호관찰심사위원회 5 | 30 |
| 보호관찰소 | 보호관찰소 18, 지소 39, 위치추적관제센터 2 | 1,579 |
| 치료감호소 | 치료감호소 1, 약물중독재활센터 1 | 419 |
| 소년원 | 소년원 10, 소년분류심사원 1, 청소년비행예방센터 16 | 872 |
| 교정기관 | 지방교정청 4, 구치소 11, 교도소 38, 지소 3 | 15,860 |
| 출입국·외국인기관 | 출입국·외국인청 6, 출입국·외국인사무소 13, 출장소 24, 외국인보호소 2,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1 | 2,330 |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1 | 12 |

## • 소속단체

(2018. 12. 31. 현재)

| 구 분 | 기 관 | 정 원 |
|---|---|---|
| 계 | 4개 단체 | 1,094 |
| 대한법률구조공단 | 본부 1, 지부 18, 출장소 40, 지소 72, 법문화교육센터 1 | 727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본부 1, 지부 17, 지소 7, 교육원 1 | 222 |
| 정부법무공단 | 본부 1 | 124 |
| (IOM) 이민정책연구원 | 연구원 1 | 21 |

# 法務年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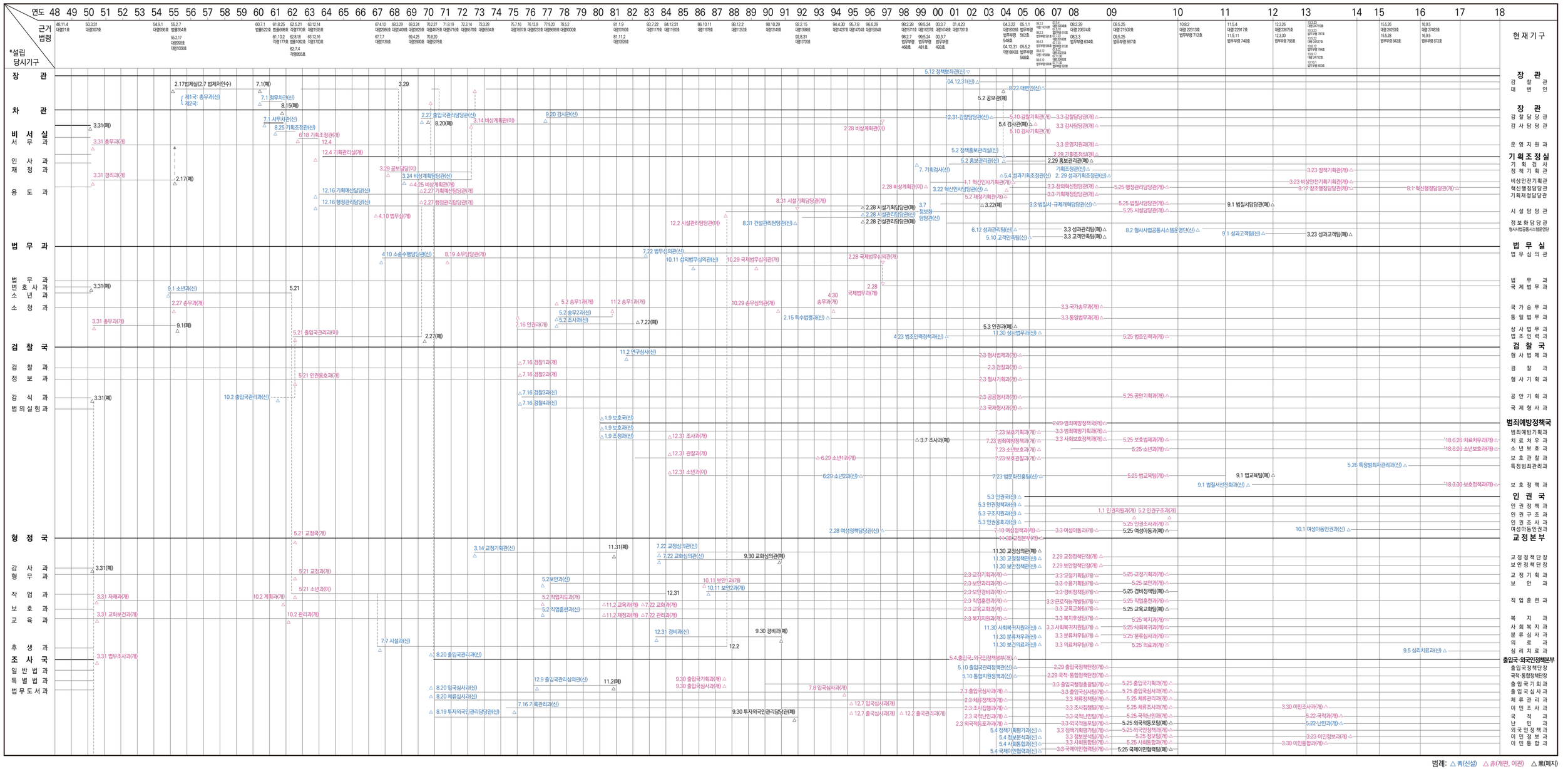


# 부 록

법무부 본부 기구 변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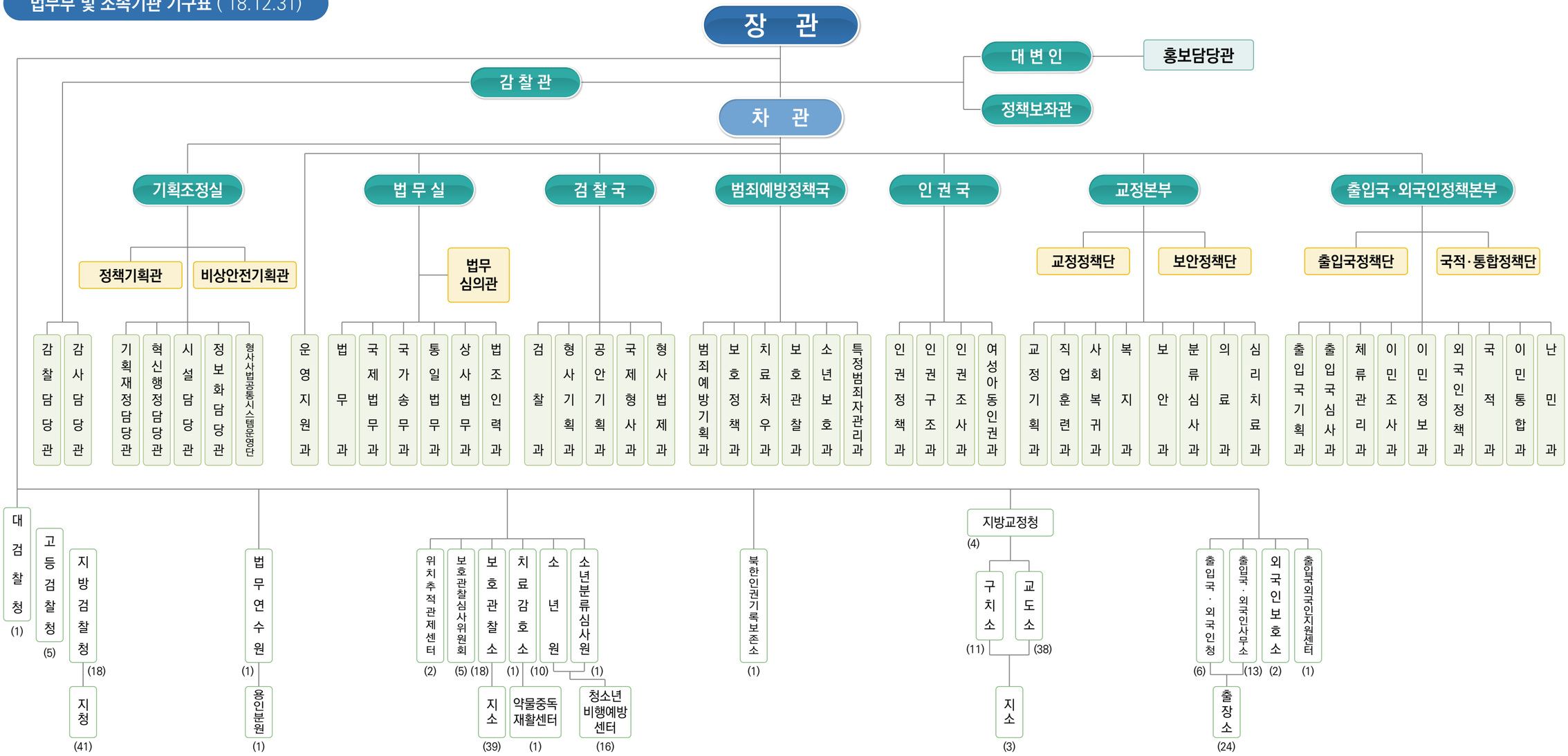
법무부 및 소속기관 기구표

# 법무부 본부 기구 변천표




범례: △ 靑(신설) △ 赤(개편, 이관) △ 黑(폐지)

# 법무부 및 소속기관 기구표 ('18.12.31)



# 법무연감 편집위원

## 편 집 위 원 장

| | | |
|---|---|---|
| 기획조정실장 | 검 사 장 | 강 남 일 |

## 편 집 위 원

| | | |
|---|---|---|
| 기획조정실 | 부이사관 | 김 상 권 |
| 법무실 | 검 사 | 신 재 홍 |
| 검찰국 | 검 사 | 이 건 표 |
| 범죄예방정책국 | 부이사관 | 황 진 규 |
| 감찰관실 | 검 사 | 이 진 용 |
| 인권국 | 서 기 관 (직무대행) | 김 영 주 |
| 교정본부 | 부이사관 | 유 태 오 |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부이사관 | 이 재 유 |
| 장관정책보좌관 | 검 사 | 이 종 근 |
| 대변인실 | 홍보담당관 | 한 정 진 |
| 운영지원과 | 부이사관 | 유 지 중 |
| 법무연수원 | 검 사 | 박 기 동 |

## 편 집 실 무 위 원

| | | |
|---|---|---|
| 기획조정실 | 사 무 관 | 이 현 정 |
| 법무실 | 사 무 관 | 설 기 석 |
| 검찰국 | 사 무 관 | 이 동 영 |
| 범죄예방정책국 | 사 무 관 | 신 한 헌 |
| 감찰관실 | 사 무 관 | 김 봉 석 |
| 인권국 | 서 기 관 | 김 에 오 |
| 교정본부 | 교 정 관 | 이 도 곤 |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사 무 관 | 박 주 현 |
| 대변인실 | 사 무 관 | 고 영 석 |
| 운영지원과 | 사 무 관 | 김 범 영 |
| 법무연수원 | 사 무 관 | 차 유 진 |

# 法 務 年 鑑

**발 행 일** 2019년 5월

**발행기관** 법무부 기획재정담당관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TEL : (02) 2110-3765
FAX : (02) 2110-0314

인 쇄 경성문화사
TEL : (02) 786-2999

〈비매품〉